연구보고서 2004-2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 승 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건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해 온 인구증가억제정책을 도입 35년만인 1996년에 폐지하고, 인구자질 향상과 복지증진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은 그간에 이룩된 고도의 경제성장과 가족계획사업 위주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1987년 이래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과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21세기 초에는 노동력 수급문제, 노년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부담, 핵가족화의 촉진과 가구원수의 감소에 따른 가족해체 등 제반 문제를 촉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한편 1980년대부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더불어 새로운 인구문제로 등장해온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포함하여 인공임신중절의 만연, 청소년의 성문제, 에이즈의 증가 등 시급한 정책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전환은 인구정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선진국은 100여 년에 걸쳐 사회·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이룩된 인구전환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30년 내외의 짧은 기간에 강력한 인구정책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정책전환은 그간 조성되어 온 저출산 및 피임실천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였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어 세계에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조사는 1964년 이후 18번 실시한 과거조사와는 달리 그 명칭에 '복지'를 포함하여 출산율의 측정과 저출산의 대책을 아울러 강구하는데 초점을 두어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조사대상가구를 대폭 확대하여 종전의 12,000가구 기준에서 16,000가구 기준으로 변경하였

다. 이는 출산율의 저하에 따라 분석대상을 적절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 김승권 박사의 책임 하에 연구진에 의해 완성되었다.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연구진의 구체적인 연구 및 조사활동과 보고서 집필을 위한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구조정 및 총괄 (김승권)
조사관리 및 자료처리 (이건우)
보고서 집필:
제1장 서 론 (김승권)
제2장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김유경)
제3장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 (김승권)
제4장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 (김승권)
제5장 피임수용실태 (김유경)
제6장 인공임신중절실태 (김승권)
제7장 모자보건실태 (박세경)
제8장 가족가치관의 변화 (김승권·조애저)
제9장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조애저)
제10장 기혼여성의 취업실태 (조애저)
제11장 자녀양육 및 가족부양 실태 (김승권)
제12장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욕구 (김승권·박세경)
제13장 종합논의 및 정책적 제언 (김승권)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현지조사를 위해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보건복지부, 각 시·도 및 시·군·구 관계기관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 면접조사를 실시한 조사원에게 사의를 표한다. 또한 표본추출을 위해 애써주신 도세록 책임연구원, 장충남 책임관리원과 자료처리를 도와 준 신창우 주임연구원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종전의 동 조사보다 조사대상가구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자료의 전산입력 및 오류수정을 짧은 기간동안 성실하게 마무리해 준 관계자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하여 주신 장영식 연구위원과 변용찬 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목 차

요 약 ····· 21

제1장 서 론 ····· 105
제1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105
제2절 조사의 방법 및 내용 ····· 108
제3절 출산력관련 조사의 연혁 및 특성 변화 ····· 114
제4절 표본설계 개요 ····· 116
제5절 현지조사 및 자료처리 ····· 122
제6절 응답자의 특성 및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 125

제2장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 129
제1절 가구의 특성 ····· 129
제2절 가족의 특성 ····· 135
제3절 주거 및 가구경제 실태 ····· 139
제4절 가구 및 가족 특성의 시사점 ····· 161

제3장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 ····· 164
제1절 임신경험 횟수 ····· 164
제2절 남아출산노력 경험 ····· 167
제3절 임신종결 형태 ····· 169
제4절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의 시사점 ····· 177

제4장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 ····· 179
제1절 출산율의 변동 ····· 179
제2절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 187
제3절 출생아와 현존자녀의 규모 및 성비 ····· 189

제4절 출산간격의 변화 ····· 203
제5절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의 시사점 ····· 206

제5장 피임수용실태 ····· 208
제1절 피임실천의 변동추이 ····· 209
제2절 피임실천양상 ····· 219
제3절 피임비실천실태 ····· 230
제4절 임신노출상태 및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태 ····· 237
제5절 피임수용실태 변화의 시사점 ····· 244

제6장 인공임신중절실태 ····· 246
제1절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 248
제2절 인공임신중절경험 실태 ····· 250
제3절 최근 인공임신중절수용부인의 피임실천 ····· 267
제4절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 271
제5절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경험여부 ····· 274
제6절 인공임신중절실태 변화의 시사점 ····· 276

제7장 모자보건실태 ····· 279
제1절 산전 및 산후관리 실태 ····· 279
제2절 분만실태 ····· 285
제3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태 ····· 295
제4절 수유양상 ····· 299
제5절 모자보건실태의 시사점 ····· 306

제8장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 310
제1절 자녀가치관의 변화 ····· 310
제2절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 ····· 320
제3절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 329
제4절 혼인가치관의 변화 ····· 335
제5절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 변화의 시사점 ····· 342

제9장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 344
제1절 결혼양상 ····· 344
제2절 해혼실태 ····· 353
제3절 가족주기 ····· 365
제4절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의 시사점 ····· 371

제10장 기혼부인의 취업실태 ····· 374
제1절 혼전 취업실태 ····· 374
제2절 현 취업실태 ····· 383
제3절 비취업 부인의 향후 취업희망 여부 및 이유 ····· 391
제4절 기혼부인의 취업실태의 시사점 ····· 393

제11장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실태 ····· 396
제1절 가족부양 실태 ····· 396
제2절 자녀의 양육실태 ····· 418
제3절 자녀양육비 실태 ····· 432
제4절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실태의 시사점 ····· 442

제12장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욕구 ····· 443
제1절 가족관계 ····· 443
제2절 가족생활의 질 ····· 478
제3절 가족정책과 복지욕구 ····· 497
제4절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욕구의 시사점 ····· 503

제13장 종합논의 및 정책적 제언 ····· 505
제1절 종합논의 ····· 506
제2절 정책적 제언 ····· 530

참고문헌 ····· 543

부 록 ····· 547

표 목 차

〈표 1- 1〉 한국에서의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관련조사의 연혁 ····· 115
〈표 1- 2〉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의 표본조사구 추출 ····· 118
〈표 1- 3〉 신축아파트의 표본조사구 추출 ····· 118
〈표 1- 4〉 지역별 15~59세 응답자의 특성 ····· 126
〈표 2- 1〉 연도별 가구원수별 분포(1966~2003년) ····· 130
〈표 2- 2〉 연도별 평균 가구원수(1966~2003년) ····· 131
〈표 2- 3〉 가구주의 일반특성 ····· 133
〈표 2- 4〉 성별 가구원의 거주지역 분포 ····· 134
〈표 2- 5〉 지역별 가구원의 성 분포 ····· 135
〈표 2- 6〉 연도별 세대별 구성 비율(1966~2003년) ····· 136
〈표 2- 7〉 지역별 친족가구 및 비친족가구의 유형별 분포 ····· 138
〈표 2- 8〉 핵가족의 형태별 분포 ····· 138
〈표 2- 9〉 확대가족 구성원의 연령분포 ····· 139
〈표 2-10〉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현 거주주택의 유형 ····· 141
〈표 2-11〉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 ····· 142
〈표 2-12〉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전세·월세인 경우 자가소유 여부 ····· 143
〈표 2-13〉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자가인 경우 소유명의 ····· 145
〈표 2-14〉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보유재산 규모분포 ····· 147
〈표 2-15〉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부채 규모 ····· 150
〈표 2-16〉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부채의 주된 원인 ····· 152
〈표 2-17〉 소득·소비 규모별 가구분포 ····· 155
〈표 2-18〉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계소득 수준분포 ····· 156
〈표 2-19〉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계 소비지출수준 분포 ····· 157

〈표 2-20〉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 159
〈표 2-21〉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 자립정도 ····· 161
〈표 3-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임신횟수의 변화(1994~2003년) ····· 165
〈표 3-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총 임신횟수 분포(2003년) ····· 167
〈표 3-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전·후 남아출산노력 경험률 ····· 169
〈표 3-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 형태별
평균횟수(1994~2003년) ····· 171
〈표 3-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형태의 구성비(1994~2003년) · 173
〈표 3-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임신종결형태(2003년) ····· 174
〈표 3-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소모 횟수 분포(2003년) ···· 175
〈표 3-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평균 임신소모 횟수(2003년) ···· 176
〈표 4- 1〉 합계출산율의 변화(1960~2002년) ····· 181
〈표 4- 2〉 합계출산율의 지역차이(2002년) ····· 182
〈표 4- 3〉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1960~2002년) ····· 184
〈표 4- 4〉 연령별 출산율의 지역차이 ····· 185
〈표 4- 5〉 세계 주요 국가의 출생통계 지표 ····· 187
〈표 4- 6〉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변동추이 ····· 189
〈표 4-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 190
〈표 4-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수 분포 ····· 194
〈표 4-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성비 ····· 197
〈표 4-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1994~2003년) ····· 199
〈표 4-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 ····· 200
〈표 4-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의 성비(2003년) ····· 202
〈표 4-13〉 15~49세 초혼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결혼연령과 첫째 및
막내아 출산시 연령 ····· 205
〈표 5-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태 변화(1976~2003년) ····· 211
〈표 5-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태 ····· 213
〈표 5-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피임실태 ····· 215

〈표 5-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1976~2003년) ····· 217
〈표 5-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1976~2003년) · 218
〈표 5-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방법별 피임실천율 ····· 220
〈표 5-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 연령 및 취업여부별 피임실천율 · 222
〈표 5-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 현존자녀수별 피임실천율 및 불임수실천율 ····· 223
〈표 5-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목적에 따른 피임실태 ····· 225
〈표 5-10〉 15~44세 유배우 피임실천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목적 ····· 227
〈표 5-11〉 15~44세 유배우부인 중 비영구적 피임실천부인의 방법별 계속 사용의향 및 변경희망 피임방법 ····· 229
〈표 5-12〉 15~44세 현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의 지역 및 연령별 과거사용 최종 피임방법 ····· 231
〈표 5-13〉 15~44세 현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중단 및 무경험부인의 비율과 이유 ····· 233
〈표 5-14〉 15~44세 현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비실천부인의 향후 실천의향 ····· 235
〈표 5-15〉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희망부인의 선호 피임방법 ····· 236
〈표 5-16〉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불원부인의 이유 ····· 237
〈표 5-1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노출상태 ····· 239
〈표 5-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보급대상자 ····· 241
〈표 5-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자녀추가 희망여부 및 피임실천 ····· 243
〈표 6- 1〉 20~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변동추이 ····· 249
〈표 6-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변동추이 ····· 252
〈표 6-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임신 및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 변화 ····· 253
〈표 6-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분포 ····· 254

〈표 6-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인공임신중절 횟수 분포 ····· 257
〈표 6-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별 분포와 당시 부인연령 ····· 260
〈표 6-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별 자녀수 분포 ····· 261
〈표 6-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별 자녀의 성 ····· 262
〈표 6-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별 분포와 당시 부인연령 ····· 264
〈표 6-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별 당시 자녀수 분포 ····· 266
〈표 6-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자녀의 성 ·· 267
〈표 6-12〉 15~44세 유배우부인 중 2001년 이후 인공임신중절 수용부인의 특성별 임신당시 피임실천여부 ····· 270
〈표 6-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 수용이유 ····· 272
〈표 6-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 인공임신중절 수용이유 ····· 274
〈표 6-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여부 ····· 276
〈표 7-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산전수진율(1985~2003년) · 280
〈표 7-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임신기간 중 초진시기 ····· 281
〈표 7-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임신기간중 산전수진횟수 ·· 283
〈표 7-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출산 후 산후수진율 ·· 284
〈표 7- 5〉 15~49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시설분만율 및 분만장소 ··· 286
〈표 7-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분만장소 ····· 287
〈표 7-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제왕절개분만 비율(1985~2003년) ····· 288
〈표 7-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출산시 분만형태 ··· 289
〈표 7-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권유자 및 이유 ····· 290

〈표 7-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권유자별 및 권유이유 ····· 291
〈표 7-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산시 분만장소별 분만형태 ····· 292
〈표 7-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생시 체중 ····· 293
〈표 7-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체중 ····· 294
〈표 7-14〉 모자보건사업에 의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종류 및 지급비용 ··· 296
〈표 7-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수검 여부 ····· 297
〈표 7-16〉 15~44세 유배우부인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비용지급형태 ····· 298
〈표 7-17〉 15~44세 유배우부인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비용부담 ····· 299
〈표 7-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모유수유 실태 ····· 300
〈표 7-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의 생후 15개월간 모유수유양상 ····· 301
〈표 7-2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생후 1개월시 수유양상 ····· 303
〈표 7-2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생후 6개월시 수유양상 ····· 304
〈표 7-2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생후 12개월시 수유양상 ····· 305
〈표 7-23〉 15~44세 유배우부인의 모유수유 중단이유 ····· 305
〈표 8-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1991~2003년) ····· 311
〈표 8-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 313
〈표 8-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 변동추이 ····· 316
〈표 8-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및 연령별 이상자녀수 분포 ····· 318
〈표 8-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및 연령별 이상자녀수 분포 ····· 320

〈표 8-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 필요성의 변화(1991~2003년) …… 321
〈표 8-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323
〈표 8-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의 필요이유 …… 326
〈표 8-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이상자녀의 성구별 여부 …… 328
〈표 8-10〉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태도 …… 331
〈표 8-11〉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 334
〈표 8-12〉 15세 이상 기혼부인의 특성별 결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 338
〈표 8-13〉 15세 이상 기혼부인의 특성별 이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 340
〈표 8-14〉 15세 이상 기혼부인의 특성별 재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 342
〈표 9- 1〉 기혼부인의 지역별 결혼상태 …… 345
〈표 9- 2〉 기혼부인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 …… 345
〈표 9- 3〉 기혼부인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의 비교 …… 346
〈표 9- 4〉 15~49세 기혼부인과 남편의 결혼경력 …… 347
〈표 9- 5〉 15세 이상 기혼부인과 남편의 초혼연령별 분포 …… 349
〈표 9- 6〉 남편 및 부인의 특성별 평균 초혼연령 …… 350
〈표 9- 7〉 15세 이상 기혼부인 및 남편의 교육수준별 분포 …… 352
〈표 9- 8〉 기혼부인의 특성별 평균 혼인지속기간 …… 353
〈표 9- 9〉 사별·이혼·별거부인의 일반특성 …… 354
〈표 9-10〉 사별 및 이혼·별거부인의 해혼사유별 특성 …… 355
〈표 9-11〉 해혼상태별 해혼당시 부인 및 남편의 연령분포 …… 356
〈표 9-12〉 이혼·별거 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이유 …… 358
〈표 9-13〉 이혼·별거 부인의 결혼연도별 이혼·별거 이유 …… 358
〈표 9-14〉 해혼부인의 결혼년도별 평균 결혼지속기간 …… 359
〈표 9-15〉 이혼·별거 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제의자 …… 360
〈표 9-16〉 이혼·별거 부인의 이혼·별거당시 연령별 18세 미만 자녀수 …… 362
〈표 9-17〉 이혼·별거 부인의 18세 미만 자녀의 동거자 …… 363
〈표 9-18〉 이혼·별거 부인의 18세 미만 자녀의 동거자별 양육비 제공자 …… 364
〈표 9-19〉 15세 이상 초혼부인의 초혼년도별 출생아 유무 …… 366

〈표 9-20〉 15세 이상 초혼 출산경험 부인의 초혼연도별 특성 ····· 367
〈표 9-21〉 가족주기 각 단계의 시작 및 종결당시 부인의 평균연령 ····· 369
〈표 9-22〉 가족주기 각 단계별 기간 ····· 370
〈표 10- 1〉 15세 이상 기혼부인의 결혼전·후 취업실태 ····· 375
〈표 10- 2〉 15세 이상 기혼부인의 특성별 결혼전 및 현 취업률 ····· 376
〈표 10- 3〉 15~49세 혼전 취업부인의 연령별 직업, 종사상 지위 및 직장유형 ····· 377
〈표 10- 4〉 부인의 특성별 혼전 취업 계속여부 ····· 379
〈표 10- 5〉 혼전 취업 중단 부인의 중단시기 ····· 381
〈표 10- 6〉 혼전취업 부인의 특성별 혼인 전, 출산 전·후 중단한 이유 ···· 382
〈표 10- 7〉 15~49세 현 취업부인의 연령별 직업, 종사상 지위 및 직장유형 ····· 384
〈표 10- 8〉 가구 및 남편 특성별 15세 이상 기혼부인의 취업률 ····· 386
〈표 10- 9〉 직종별 현 취업 계속여부 ····· 387
〈표 10-10〉 직종별 취업만족도 ····· 387
〈표 10-11〉 직종별 애로사항 ····· 388
〈표 10-12〉 15~49세 기혼부인의 특성별 현 취업이유 ····· 389
〈표 10-13〉 15~49세 기혼부인의 특성별 비취업이유 ····· 390
〈표 10-14〉 비취업 부인의 특성별 향후 취업희망 여부 ····· 391
〈표 10-15〉 비취업 부인의 특성별 향후 취업희망 이유 ····· 392
〈표 11- 1〉 15~59세 기혼가구 부부의 부모 생존율 ····· 397
〈표 11- 2〉 15~59세 기혼가구 부부의 부모와 동거율 ····· 398
〈표 11- 3〉 15~59세 기혼가구의 비동거 부모와 만난 횟수 ····· 400
〈표 11- 4〉 15~59세 기혼가구의 비동거 부모와 연락횟수 ····· 402
〈표 11- 5〉 15~59세 기혼가구의 지난 1년간 도움을 주고받은 비율 ····· 403
〈표 11- 6〉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큰 신체적 도움 ·· 405
〈표 11- 7〉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도움의 평균횟수 ····· 406

〈표 11- 8〉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에게 제공한 가장 큰 신체적 도움 ·· 408
〈표 11- 9〉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에게 제공한 가장 큰 신체적 도움의 평균횟수 ····· 409
〈표 11-10〉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큰 정서적 도움 ·· 411
〈표 11-11〉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에게 제공한 가장 큰 정서적 도움 ·· 413
〈표 11-12〉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큰 경제적 도움 ·· 415
〈표 11-13〉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의 총 금액 ····· 416
〈표 11-14〉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에게 제공한 가장 큰 경제적 도움 ·· 417
〈표 11-15〉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도움의 총금액 ····· 418
〈표 11-16〉 15~49세 기혼부인의 취업유형별 영유아 연령분포 ····· 419
〈표 11-17〉 15~59세 기혼부인의 특성별 영유아 분포 ····· 420
〈표 11-18〉 15~59세 기혼부인의 영유아 양육형태 ····· 422
〈표 11-19〉 0~5세 아동의 자녀양육자 및 이용시설의 유형 ····· 423
〈표 11-20〉 영아 연령별 현 자녀양육자 및 이용시설 유형 ····· 424
〈표 11-21〉 15~59세 기혼부인의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운영주체 ·· 424
〈표 11-22〉 15~59세 기혼부인의 특성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 ··· 426
〈표 11-23〉 영아 연령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 ····· 427
〈표 11-24〉 0~5세 아동을 가진 기혼부인의 향후 보육시설 및 아동교육기관 이용률 및 이용기관 ····· 428
〈표 11-25〉 미취학 아동을 가진 15~59세 기혼부인의 보육시설 이용희망률 ····· 429
〈표 11-26〉 15~59세 기혼부인의 아동연령별 초등학교 아동분포 ····· 429
〈표 11-27〉 아동학령별 기혼부인 특성 ····· 430
〈표 11-28〉 15~59세 기혼부인의 아동학령별 보육유형 및 시설이용률 ····· 432
〈표 11-29〉 지출항목별 내용 ····· 434
〈표 11-30〉 가구특성별 평균 자녀양육비: 공동비용 중 자녀 몫 ····· 435

〈표 11-31〉 가구특성별 평균 자녀양육아 개인비용 중 자녀 몫 ····· 436
〈표 11-32〉 가구특성별 평균 자녀양육비 ····· 438
〈표 11-33〉 자녀 1인당 평균 자녀양육비의 구조: 가족공동비용 중 개인자녀 몫 ····· 439
〈표 11-34〉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의 구조: 자녀 개인비용 ····· 440
〈표 11-35〉 가구 및 자녀 특성별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 ····· 441
〈표 12- 1〉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분담 형태 ····· 444
〈표 12- 2〉 15~59세 기혼가구의 부부권력관계 ····· 446
〈표 12- 3〉 15~59세 기혼가구의 일상생활비 지출에서의 의사결정 ····· 447
〈표 12- 4〉 15~59세 기혼가구의 주택매매 및 이사에서의 의사결정 ····· 449
〈표 12- 5〉 15~59세 기혼가구의 투자 및 재산증식에서의 의사결정 ····· 452
〈표 12- 6〉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의 의사결정 ····· 454
〈표 12- 7〉 15~59세 기혼가구의 배우자 만족수준 ····· 456
〈표 12- 8〉 15~59세 기혼가구의 배우자 이해도에 대한 만족수준 ····· 457
〈표 12- 9〉 15~59세 기혼가구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량에 대한 만족수준 ····· 459
〈표 12-10〉 15~59세 기혼가구의 부부 성생활에 대한 만족수준 ····· 460
〈표 12-11〉 15~59세 기혼가구의 배우자 부담 가사량에 대한 만족수준 ··· 462
〈표 12-12〉 15~59세 기혼가구의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수준 ····· 463
〈표 12-13〉 15~59세 기혼가구의 부부대화에 대한 만족수준 ····· 465
〈표 12-14〉 15~59세 기혼가구의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수준 ····· 467
〈표 12-15〉 15~59세 기혼가구의 전반적 부부관계 만족수준 ····· 468
〈표 12-16〉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관계 만족도 ····· 470
〈표 12-17〉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 ····· 471
〈표 12-18〉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 473
〈표 12-19〉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 의견·기대에 대한 자녀의 충족여부 ·· 475
〈표 12-20〉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 477

〈표 12-21〉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정의 행복결정 요인 ····· 480
〈표 12-22〉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생활의 변화정도 ····· 482
〈표 12-23〉 15~59세 기혼가구의 거주지역별 가족생활 악화의 주요 요인 · 484
〈표 12-24〉 15~59세 기혼가구의 거주지역별 주관적 사회적 지위 ····· 485
〈표 12-25〉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생활만족도 ····· 487
〈표 12-26〉 15~59세 기혼가구의 가정생활 영역별 만족도 평균 ····· 488
〈표 12-27〉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정 내 지위와 역할 및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만족도 ····· 490
〈표 12-28〉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와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 ····· 492
〈표 12-29〉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한 만족도 ····· 493
〈표 12-30〉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문화·여가활동과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 ····· 495
〈표 12-31〉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개인적 성취감에 대한 만족도 ··· 496
〈표 12-32〉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문제의 책임소재 인식 ····· 498
〈표 12-33〉 15~59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 및 대상가구원 동거여부에 따른 가족정책 ····· 500
〈표 12-34〉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건강가족 형성의 주요 요건 ····· 501
〈표 12-35〉 15~59세 기혼가구가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정책 ····· 502

그 림 목 차

〔그림 5-1〕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노출상태에 있는 부인의 추가자녀 희망여부별 피임실천상태 ····· 242

Abstract

Survey on The National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Despite of rapid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central government cannot shape effective population policies to improve total fertility rate. Central government not takes its responsibility over local governments which suffer destitution but has to face the severe challenges of population structure.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this study aimed to offer material for population strategies and to improve family welfare.

This survey divided into three parts including household survey, married women from 15 to 19 survey and married householders from 15 to 19 survey through face to face interview. This study selected 200 restricts and 16,000 households and completion rate was 98.5%.

According to survey result, it described characteristic of household and family, residence, actual condition of household economy. Chapter of pregnance and end of pregnance explained the number of pregnance experience, effort to birth a son and type of pregnance end. Chapter of birth and the number of babies demonstrated birth rate, the number of babies, present children and the sons to daughters ratio.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actual conditions of contraception acceptance, abortion and mother-child health condition. Perspective on children and marriage, trends of marriage behavior and family life-cycle and employment condition of married women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is study described family support and raising children. Finally,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need analyzed family relation, quality of family life and need of family welfare policies.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조사의 배경

- 급속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향후 전망되는 부정적 측면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증대되고 있음.
  -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저출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자체재원으로 제한적인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조사의 목적

- 부인의 임신행태, 출산행태, 피임행태 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최근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단기 인구정책의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 임신 및 출산 행태의 변화와 부부의 취업, 가족주기, 자녀양육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여 출산율 안정화 방안과 가족복지 증진방안을 동시에 모색함.
- 성비불균형 및 인공임신중절 등 사회병리현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자보건 수준을 분석하여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함.
- 도래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를 파악하여 가족관계 강화와 가족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제2절 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조사방법

- 본 조사는 본원의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사전 훈련된 전문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직접면접조사」로 이루어졌음.
  - 조사는 표본추출된 조사지역 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가구조사와 가구 내에 살고 있는 15~59세 기혼가구조사와 15~4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개인조사로 이루어짐.

□ 조사내용

- 가구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원의 특성, 출생에 관한 사항, 가구에 관한 사항 등임.
- 응답자 부부의 일반특성과 혼인사항, 가족주기, 응답자 부부의 취업사항, 가족부양, 가치관 및 가족관계, 가족생활의 질, 가족정책 등임.
-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 가족계획실태(피임실태) 등임.
-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으로는 산전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수유에 관한 사항 등임.

제3절 출산력관련 조사의 연혁 및 특성변화

□ 출산력관련 조사의 연혁

- 출산력 및 피임, 가족보건 등과 관련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는 금번조사가 18번째로 실시된 것임.
  - 1964년부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말부터는 3년 주기로 실시됨.

□ 출산력관련 조사의 특성변화

- 1960년대 조사는 단순히 피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내용에 치

중되었고, 1970년대 조사는 출산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이 추가됨.

- 1980년대 조사는 피임 및 출산 관련 내용에 추가하여 모자보건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조사는 출산력 전환과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2000년대 조사는 지속적인 저출산의 원인규명과 그 대책강구 및 원인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가족복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화되었음.

제4절 표본설계 개요

□ 기획단계 결정 사항

- 전체 표본조사수를 200개 조사구로 하고 조사구 당 가구수는 80가구로 하여 약 16,000가구를 조사대상 가구로 하였음.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의 총조사구수는 249,553개 조사구이며 총가구수는 14,331,807가구로 집계되었음.

□ 표본추출 및 추정방법

- 모집단 자료를 3개의 층, ⑴ 7대 시의 동·읍면, ⑵ 기타 시의 동, ⑶ 군의 읍·면으로 층화한 후 각 조사구의 주된 주택 특성에 따라 4가지의 주택형태로 분류하였음.
  - 유형에는 ⑴ 단독주택 조사구, ⑵ 아파트 조사구, ⑶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조사구, ⑷ 기타 조사구 등임.
  - 또한 각 조사구별로 가임여성(15~49세) 수를 집계하여 표본추출 보조변수로 활용하고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별 가구수를 10으로 나누어 크기의 측도(MOS; Measure of size)를 부여하였음.
  - 이렇게 모집단을 정리한 후 행정구역번호, 가임여성수, 주된 주택형태 순으로 정렬하였음.
- 전체 200개 조사구에서 그동안의 조사구의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서 194개 조사구를 추출한 결과 7대 시에 76개 조사구, 기타 시에 51개 조사구, 읍·면 지역에 67개 조사구를 추출하였음.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에 발생한 조사구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축된 아파트에서 추가로 표본을 추출하였음.
- 조사결과의 각종 통계치는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를 사용함.

제5절 현지조사 및 자료처리

□ 현지조사의 준비 및 지도·감독

- 조사원 모집, 2일간의 조사원 훈련, 1인의 지도원과 3인의 조사원으로 조사팀 구성 등 조사준비를 함.
- 현지조사는 약 3개월간 이루어졌으며, 2003. 5. 12~8. 16일 기간 중 실시되었음.
  - 조사초기단계에서는 연구진에 의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음.

□ 조사자료 처리

- 조사완료된 자료는 일차적으로 현지에서 지도원에 의해 오류수정을 하였고, 조사를 완료한 후 일부 지도원과 조사원에 의하여 약 3개월간 오류수정과 부호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음.
  - 자료분석을 위한 파일이 재구성되었고, 연구진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음.

제6절 응답자의 특성 및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 응답자의 특성

- 본 조사의 대상은 15~59세로 조사결과 11,111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동부지역 82.0%(9,111명), 읍·면부지역 18.0%(2,000명)가 거주하고 있었음.

- 전체 응답자 중 남자가 9.3%, 여자가 90.7%로 대부분이 여자 응답자이었음.
-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88.7%는 유배우이었으며, 사별 4.1%, 이혼 및 별거는 7.2%로 나타났음.

□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 가구사항 응답부인 및 남편의 특성, 결혼양상, 가족복지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분석은 전체 가구 또는 15~59세 기혼가구임.
  - 본 조사에서 개인조사는 15~5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임신·출산·피임, 모자보건에 관한 분석은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 지역별 구분을 함에 있어 도시와 농촌이 아닌 동부와 읍·면부지역으로 구분하였음.
  - 연령별출산율, 유배우출산율, 인공임신중절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전국의 결과만을 게재하고 지역별, 즉, 동부와 읍·면부를 구분하지 않았음.
– 각 통계표에는 편의상 '무응답' 수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음.

제2장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제1절 가구의 특성

□ 가구의 규모

– 가구규모의 변동추이를 보면 4명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임.
– 평균 가구원수는 1966년 5.5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5년 이후 3.3명으로 저하되었고, 본 조사에서는 2003년에는 3.0명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평균 가구원수는 동부지역 3.1명, 읍·면부지역 2.6명으로 나타났음.

□ 가구주의 특성

– 가구주는 남성 81.3%, 여성 18.7%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 및 별거, 사별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최근 우리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 가구주의 결혼상태는 유배우가 73.6%, 사별은 11.3%, 이혼·별거는 6.0%, 그리고 미혼은 9.2%이었음.
  - 연령별 가구주 비율은 30대와 40대가 동일한 수준인 52.6%를 차지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주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가구원의 특성

– 조사완료된 가구의 총가구원수는 47,147명으로 동부지역에 80.5%, 읍·면부지역에 19.5%가 거주하고 있었음.
  - 전국적으로는 여성가구원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남성 48.7%, 여성 51.3%),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 보다 여성가구원의 비율이 높았음.

제2절 가족의 특성

□ 가족의 세대별 구성

– 1세대 가족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3세대 이상의 가족은 감소하고 있으며, 2세대 가족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2세대 가족에 속하여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음.
  - 동부지역에 비해 읍·면부 지역의 1세대 가족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농촌지역 노인층의 부양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됨.

□ 친족가구 및 비친족가구

- 전체 조사대상가구 중 2인 이상의 혈연가구로 구성된 친족가구는 82.9%,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로 구성된 비친족가구는 17.1%의 분포를 보였음.
  - 친족가구 중 핵가족의 비율은 83.4%, 확대가족은 8.5%, 기타 친족가구는 8.2%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가족의 비율은 동부지역(84.3%)이 높은 반면, 확대가족은 읍·면부지역(11.4%)이 높은 분포를 보였음.
  - 비친족가구는 1인 가구가 96.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혈연가구는 3.8%에 불과하였으며, 1인 가구는 읍·면부지역이 높았고, 비혈연가구는 동부지역이 높았음.

제3절 주거 및 가구경제 실태

□ 주택유형 및 소유형태

- 조사대상가구의 45.4%가 단독주택에 거주하였으며, 36.6%는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소유형태는 59.3%가 자가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소유명의는 66.8%가 남편이었고, 부인이 20.3%, 부부공동명의인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였음.

□ 재산보유실태

- 전체가구의 평균 재산 보유액은 1억 3735만원이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가구는 전체의 6.1%에 불과하였음.
  -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원수가 높을수록 평균재산규모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평균 재산규모는 여성가구주 가구(1억 5392만원)가 남성가구주 가구(6395만원)보다 훨씬 낮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여성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부채규모

-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44.7%로 나타났으며, 평균 부채규모는 2149만원이었음.
  - 부채비율 및 부채규모는 읍·면부 지역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남성가구가 가구가 높은 경향을 보였음.

□ 부채원인

- 부채원인은 주로 주거비 및 주택마련(37.2%)과 사업자금(34.7%)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생계비 때문도 11.2%로 적지 않은 비율이었음.
  -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20대와 30대인 경우 부채원인은 주거비 및 주택마련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음.
  -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생계비, 의료비 등이 부채원인으로 나타났음.

□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실태

- 전체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23만원으로, 그중 23.3%는 월 99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수의 가정이 빈곤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음.
  -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가구는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높았으며, 49만원 이하인 경우도 22.8%로 나타나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은 178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의 80% 수준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99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가구는 전국 26.3%, 동부지역 20.9%, 읍·면부지역 44.7%이었음.
  - 전체가구의 소비지출규모는 소득수준보다 적게 지출되는 경향을 보이

는데, 이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가계의 일차적 대응으로 지출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됨.

- 소득이나 소비수준은 동부지역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3세대 이상의 가구가, 그리고 남성가구주 가구가 높아 가구특성별로 소득소비수준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경제적 곤란

- 전체가구의 90.0%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사교육비(15.4%)이었고, 이외에도 자녀양육 및 교육비(15.0%), 각종 공과금(13.6%), 주거비(11.1%) 등이었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읍·면부지역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여성가구주 가구가 높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의료비와 주거비, 식료품비,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문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적 자립정도

-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35.2%)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34.5%)보다 높았음.
  - 경제적 자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동부지역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2세대, 3세대 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높았으며, 부정적인 인식은 읍·면부지역이,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1세대가구,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높은 경향을 보였음.

제4절 가구 및 가족 특성의 시사점

□ 우리나라 가구규모의 축소 현상

- 이는 한 가구내 평균가구원수의 감소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원

인은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음.

□ 가구의 소규모화와 함께 세대구성의 변화 발생

-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던 2세대, 3세대 가족은 감소하는 대신에, 1세대 가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성인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노인부부만이 남는 노인부부가구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전체 노인 부양부담을 증가시켜서 노인복지수요와 함께 높은 사회비용을 초래할 것이 예상됨.

□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현상

- 이와 함께 가구주의 결혼상태로 유배우 가구주는 감소하는 반면 사별 및 이혼·별거 등의 해체가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해체가족을 결손가족의 개념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데올로기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지역 및 가구주별 자가소유율 특성

- 자가소유율은 높아져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이루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오히려 자가비율이 감소하여 지역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는 자가소유율이 낮아서 다른 가족에 비해 안정적이지 못한 주거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주거정책이 지역 및 가족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재산 및 부채규모

- 부동산과 동산을 합친 전체 재산의 규모는 농촌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

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수준이었으나, 반대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부채 규모는 평균보다 훨씬 적은 편이었음.

- 농촌가구는 평균 부채수준보다 상회하여서, 농촌가구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음.
  - 이는 정책지원대상으로 재산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재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부채원인도 주택마련부터, 기본적인 생계비 및 의료비 때문 등 다양하게 나타나서 지역 및 가족유형별로 차별화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경제적 곤란

- 도시지역과 남성가구주 가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이 주로 자녀와 관련된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그리고 각종 공과금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과 여성가구주 가구는 주거비, 의료비, 식료품비 등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따라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은 지역, 가족유형 및 가족주기별로 다양하게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3장 임신행태 및 임신 종결형태 변화

제1절 임신경험횟수

□ 임신경험횟수의 변화

- 2000년 조사에서는 2회의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의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고, 4회 이상 임신경험부인은 26.5%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2003년 조사에서도 동일하였음.
  - 즉, 2003년의 임신횟수 분포는 2회의 임신을 경험한 부인이 3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회 이상 26.5%, 3회 25.8% 등의 순이었음.

-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조사대상 부인의 평균임신횟수는 1994년의 3.0회에서 1997년에는 2.8회로 낮아졌고, 2000년에는 2.7회로 낮아져 동 수준이 2003년에도 지속되고 있었음.

제2절 남아출산노력

□ 남아출산 노력경험률

-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을 한 경험률은 6.0%인 것으로 나타났음.
-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의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자연요법이 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초음파검사 2.5%이었음.
  - 그 외에도 양수검사 0.5%, 융모막검사 0.1% 등이 있었음.

제3절 임신종결 형태

□ 임신종결 형태의 변화

- 응답부인이 경험한 전체 임신횟수 중 정상출생이 1994년 조사에서는 1.80회이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1.72회로 감소하였고, 2003년 조사에서는 다시 1.78회로 증가하여 1997년 조사결과와 동일한 수준이었음.
  - 정상출생 다음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은 1994년 조사에서는 0.84회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 조사에서는 0.63회이었음.
  - 사산과 자연유산은 1994년 조사에서는 각각 0.01회, 0.24회에서 2003년의 조사에서는 각각 0.01회, 0.26회로 증가하였음.
- 결국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2003년 조사에서는 총임신과 정상출생은 증가하였고, 인공임신중절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임신소모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됨.
  - 그렇지만 임신소모의 다른 형태인 사산과 자연유산의 절대횟수는 감

소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건의료적 측면의 관심이 요구됨.

□ 전체 임신 대비 정상출생으로 종결되는 경우

- 1994년 조사의 61.0%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62.9%, 2000년 조사에서는 63.8%, 그리고 2003년 조사에서는 65.5%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양상을 보였음.
  - 이는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경우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조사의 36.9%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35.5%, 2000년 조사에서는 34.0%, 그리고 2003년 조사에서는 32.9%로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보여 바람직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임신종결 형태

- 전체 임신의 32.9%가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부인의 임신소모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함.
- 높은 피임실천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신의 23.1%, 임신소모의 약 70%가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피임실천의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있다고 사료됨.
  - 즉, 아직까지 불원임신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불원임신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결과라 판단됨.
- 사산과 자연유산은 많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회적 및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것임.
  - 미혼청소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계몽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철저한 임산부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불원임신의 예방을 위한 효과적 피임사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피임법 사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청소년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제4절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의 시사점

-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 비추어 보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된 경우가 있었고, 원하지 않은 임신임에도 정상출생한 경우가 있었던 반면,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기에 인공임신중절 된 경우도 있었음.
  - 또한 원한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 사산 등으로 종결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음.
- 향후에는 교육수준의 향상, 경제발달, 의학기술의 발달,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원하지 않는 임신의 감소로 인공임신중절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자연유산 및 사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그 배우자의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정책차원에서 홍보·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임.
  - 임신전·후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개인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임.
- 일부 계층에서는 여전히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과학적인 자연요법에 의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음은 초음파검사와 양수검사에 의하여, 심지어는 융모막검사까지 실시되고 있었음.
-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에서 남성중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선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부간의 양성평등 의식과 임신당사자인 여성의 성평등의식을 제고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4장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

제1절 출산율의 변동

□ 합계출산율의 변화추이

- 1960~7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주로 홍보교육과 피임보급활동에 의해서, 그리고 1980년대는 소자녀 규범의 형성을 위한 각종 사회지원시책 등 인구증가억제시책의 강화에 따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합계출산율은 1960~87년 기간 중 6.0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었으며, 그 후에도 동일 수준의 저출산이 유지되어 왔음.
- 1996년 6월에 정부차원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993년 1.75명에서 1996년 1.71명, 1999년 1.425명으로 감소하였음.
-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은 1.165명으로 '인구동태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2년의 합계출산율 1.17과 같은 수준임. 이와 같은 결과는 출산력 변천이 종료되고 저출산 행태가 정착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 출산율의 저하는 1960년 이후 전체 연령층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전체기간동안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합계출산율에의 기여율은 1990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음.
- 1960~2002년 기간중 출산율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24세 연령층과 35~39세 연령층에서 보여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임.

- 즉, 여자 1,000명당 출산수는 20~24세 연령층의 경우 283명에서 24명으로, 35~39세 연령층에서는 196명에서 13명으로 큰 저하를 보여주었음.

– 최근 한국사회 출산율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하를 멈추고 상승하고 있다는 점임.
  - 결혼연령 상승으로 20~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의 출산율 저하에서 나타나는 파급효과로 특히 25~29세와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점임.

– 최근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변동의 다른 특징은 정도는 미미하지만 199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늦둥이 출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임.

– 가임여성은 15~49세이지만 한국사회에서 45~49세 연령층이 출산하지 않는 경향은 지난 1982년 이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출산율의 국제비교

–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이 한국은 2001년 11.6명에서 2002년 10.3명으로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는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이었음.
  - 반대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는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호주 등이었음.
  - 조출생률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로는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체코 등이었으며, 반대로 높은 국가는 미국, 프랑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이었음.

– 합계출산율이 한국은 저하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저하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는 일본,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었음.
  -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는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체코, 호주 등이었음.

제2절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 우리나라 유배우출산율 변화의 특징

-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합(合)은 1990년을 최저점으로 1996년까지는 점차 상승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다시 저하하기 시작하였음.
- 유배우출산율의 전반적 변화를 살펴보면, 저연령층일수록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음.
  - 이는 연령별 출산율이 25~34세 연령층이 높고 그 외의 연령층은 현저히 낮은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2002년 20~24세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이 313으로 가장 높았으며, 25~29세 연령층은 250, 30~34세 연령층은 106이었음.
  - 그러나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현저히 저하하여 35~39세 연령층에서는 16, 40~44세 연령층에서는 2 수준을 보여주었음.
- 이와 같은 추세는 초혼연령이 상승되고 있고 결혼 후 즉,시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으로 이해됨.
- 20~24세 연령층과 40~44세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은 1999년도에 비하여 낮아졌으나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높아졌음.
  - 특히 30~34세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다만 1999년에는 미미한 수준에서 감소) 1980년의 103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이 특징임.

제3절 출생아와 현존자녀의 규모 및 성비

□ 출생아 규모

- 2003년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1.8명으로 1994년 및 1997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2000년의 결과보다 0.1명 증가하였음.

- 부인의 제 특성별 출생아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부인 중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이 가장 많은 6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명을 가진 부인이 19.1%, 3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 11.2%, 그리고 출생아가 없는 부인이 8.1% 등의 순이었음.
  - 15~44세 유배우부인의 87.6%가 2명 이하의 출생아를 가졌음.

□ 출생아의 성비

-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출생아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아 0.95명, 여아 0.84명으로 부인의 누적된 출생아 성비는 111로 나타났음.
  - 따라서 1997년 조사의 출생아 성비 113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2000년 조사의 출생아 성비 111보다는 높았음.

□ 현존자녀수

-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는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감소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증가하였음.
  - 즉, 자녀가 0~1명인 부인은 27.4%이었고, 3명 이상인 부인은 12.0%이었으며,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60.6%로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와 평균 현존자녀수는 이들 부인의 출생아수 분포와 평균 출생아수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음.
  - 이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재혼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대상의 부인이 유배우상태의 경우만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영아사망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해석됨.
  - 그러나 최근 이혼 및 재혼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변화될 가능성이 전망됨.

□ 현존자녀의 성비

-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78명이었으며, 남아 0.94명, 여아 0.84명으로 부인의 현존자녀수의 성비는 112로 나타났음.
  - 이는 출생아의 성비 113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미혼모, 재혼 등의 사회현상이 미미하여 자녀규모 및 성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됨.

제4절 출산간격의 변화

□ 부인의 출산기간

- 15~49세 초혼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결혼연령은 23.9세이었고, 첫째아 출산연령은 25.2세, 막내아(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상태)를 출산하거나 단산한 연령은 28.2세로 나타났음.
  - 따라서 결혼 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1.3년, 첫째아 출산부터 막내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3.0년이 소요되어 결혼부터 막내아 출산까지의 전체기간은 4.3년이었음.
- 이와 같은 2003년 조사결과를 2000년과 비교하면, 결혼연령은 0.2세가 연장된 것이며,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0.3세가 연장되었고,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0.6세가 연장된 것임.

제5절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의 시사점

□ 정책효과의 한계 예상

- 임신경험횟수, 출생아수 및 현존자녀수의 미미한 변화 등으로 미루어보아 낮은 합계출산율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인구정책은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과 낮은 출산율은 피할 수 없

는 현상임을 인식하여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인구자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측면으로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청소년 성 보건사업 등 생식보건 관련사업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함.

□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심필요

- 인구정책은 적정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강구에 초점을 모아야 함과 병행하여 저출산의 지속에 따른 제반 사회경제적 현상을 분석하고 총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특히 다른 선진국에서의 인구전환은 100 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서서히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약 30년간의 단기간에 성취하였기 때문에 인구의 구조측면에서 심각한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임.
  - 따라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율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져야 할 시점임.

제5장 피임수용실태

제1절 피임실천의 변동추이

□ 연도별 피임실천수준

-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율은 84.5%로 2000년에 비하여 5.2%포인트가 증가한 수준이었음.
  -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피임실천율이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동안 피임실천이 안정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임.

□ 부인특성별 피임실천수준

- 부인의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및 현존자녀수에 따라 피임실천율은 차이를 보였음.
  - 피임실천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였음.
  -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연령에 의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음.

□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수준

- 최근 피임방법은 여성피임방법인 난관수술에서 탈피하여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로 변화되어 양성 평등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음.
  - 정관수술, 난관수술 등의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자궁내장치, 기타 피임방법 등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어 피임효과가 불확실한 방법의 사용증가로 여성의 생식보건을 저해할 가능성이 예상됨.

제2절 피임실천양상

□ 피임방법별 피임실천

-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피임방법별 실천율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동부지역의 경우 정관수술, 콘돔, 살정제, 월경주기법 및 기타방법 등이 높은 피임 실천율을 보였고,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등은 읍·면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음.
-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영구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았음.

□ 피임실천 목적

– 15~44세의 유배우부인이 피임을 하는 목적은 74.8%가 단산으로 나타났고, 터울조절은 9.4%,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피임을 하고 있는 경우는 0.3%에 불과하였음.
  • 피임방법별로는 일시적 피임방법의 경우 터울조절 뿐만 아니라 단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서, 적절한 피임사용법에 대한 홍보계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피임방법의 계속 사용의향

– 비영구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 중에서 현 피임방법을 계속 사용할 의향을 가진 부인은 64.9%, 변경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은 27.8%이었음.
  • 피임방법별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비율은 자궁내장치 수용부인이 77.7%로 가장 높았으며, 먹는 피임약의 경우 42.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 선호피임방법

– 향후 변경의향을 가진 부인 중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이 6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궁내장치가 11.2%, 난관수술이 7.0%, 기타방법 4.8%의 순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향후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사용상의 불편 및 실패임신의 위험이 낮은 영구피임방법 및 반영구피임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제3절 피임비실천실태

□ 과거에 사용한 피임방법

– 과거에 사용경험이 있는 부인의 마지막 사용한 피임방법은 기타방법이 2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월경주기법 22.2%, 콘돔 20.4%, 자궁내장

치 18.1%, 먹는 피임약 12.1%의 순이었음.

- 이외에 살정제 1.8%, 불임수술을 사용했던 부인은 극히 미미하였음

□ 피임중단 이유

–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나 조사당시 피임을 중단한 부인의 피임중단 이유는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큰 비율을 차지하였음.

- 임신을 원함이 62.9%, 영구적으로 피임 불필요 11.9%, 일시적 피임 불필요 10.6%, 실패임신 5.0%, 부작용 4.9%, 사용상 불편 2.3% 등이었음.

□ 피임무경험 이유

–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의 피임 무경험이유 중 자녀를 원하는 비율은 피임을 중단한 부인보다 높게 나타났음.

-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8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연불임인 경우가 14.0%, 피임이 일시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은 2.2%이었음.

□ 피임실천 의향

– 피임비실천 부인 중 51.5%가 실천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31.4%는 실천할 의향이 없었고, 아직 그 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17.1%이었음.

-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 부인이 피임무경험부인보다 향후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선호피임방법

– 현재 피임을 실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이 33.1%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자궁내장치 13.3%, 기타 방법 12.2%, 난관수술 7.4%, 콘돔 6.1%, 월경주기법 4.9%등의 순이었음.
- 향후 피임실천 의향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도 17.7%로 나타났음.

제4절 임신노출상태 및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태

□ 임신불가능 부인과 임신가능 부인

-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불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34.3%,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65.6%로 나타났음.
- 피임비실천부인 중 임신중인 부인은 4.2%, 자연불임 부인 2.2%, 자녀를 원하는 부인 1.1%, 임신불가능 부인 1.0%, 기타이유가 7.6% 등이었음.
  - 임신위험에 노출된 부인인 8.7% 중 기타 이유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인 7.6%의 부인을 피임보급 대상자로 볼 수 있음.

□ 정책관리대상

-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9.0%이었으며,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4.2%로 나타난 반면, 추가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하는 경우는 74.5%, 자녀를 원하지만 피임을 하는 경우는 12.3%이었음.
  - 따라서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인 4.2%의 부인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5절 피임수용실태 변화의 시사점

□ 피임실천율의 변화 추이

- 우리나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율은 2003년 84.5%로 2000년보다 5.2%포인트가 증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1996년 6월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는 등 인구자질정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높은 수준의 피임실천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기혼부부 사이에 피임실천이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임.

□ 피임방법별 실천율의 변화의 특징

– 여성피임방법인 난관수술에서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로 피임방법이 전환되는 추세임.
  - 이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양성 평등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짐.
–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음.
  - 단산을 한 부인의 경우에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다는 것은 피임실패의 가능성이 예상되어 피임실천의 질적인 측면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 피임을 비실천 이유로 불임 증가

–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1990년 25만쌍에서 2003년 64만쌍으로 156% 증가하였음.
  - 2000년도 우리나라 유배우 가임여성의 불임발생률은 13.5%로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적극적인 불임치료 대상임.
– 이와 같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불임률은 최근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피임관리대상

– 추가자녀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은 임신에 노출되어 있는 방임부인집단임.

- 따라서 이들 부인을 대상으로 피임지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6장 인공임신중절실태

제1절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의 연도별 변화추이

- 가장 높은 인공임신중절률을 보여주고 있는 20~24세 연령층은 1996년 79, 1999년 53으로 저하되었으나 2002년에는 다시 74로 상승하였음.
- 25~29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은 1984년의 146을 정점으로 저하하기 시작하여 1987년 103에서 1990년에는 112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그 후 급격히 떨어져 1999년에는 33 수준에 머물렀음.
- 30~34세 연령층은 1975년 158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1996년 49, 1999년 33으로 현저한 저하추세를 보였으며, 2002년에도 30으로 저하하였음.
- 35~39세와 40~44세 연령층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도 급격히 저하하여 1975년 153과 79에서 1999년 12와 1로 낮아졌으나, 2002년에는 오히려 21과 6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제2절 인공임신중절경험 실태

□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0~90년대 초반에는 약 52~54% 수준에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2000년 약 39%, 2003년 약 40이었음.
  -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점차 낮아지다가 2003년 조사에서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됨.

- 이는 피임방법이 불임시술에서 일시피임법으로의 전환과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홍보·계몽이 적극성을 띄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인공임신중절 종결율의 연도별 변화추이

- 1994년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임신수 2.96회 중 임신소모로 종결된 임신은 1.09회,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진 경우는 0.84회로 나타나 총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8.4%였음.
  -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7.1%이었음.
- 1997년 조사결과에서는 평균 임신수 2.83회 중 소모된 임신은 1.01회, 인공임신중절은 0.74회로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6.1%였음.
  -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3.3%로 1994년도에 비하여 다소 낮아졌음.
- 2000년 평균 임신 2.70회 중 소모된 임신은 0.92회, 인공임신중절은 0.65회로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4.1%이었음.
  -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0.7%로 낮아졌음.
- 2003년에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임신 2.72회 중 소모된 임신은 0.90회, 인공임신중절은 0.63회로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3.2%이었음.
  -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0.0%로 지속적 저하를 보였음.

□ 연도별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 인공임신중절을 2회 이상 반복경험한 부인은 1994년 조사에서는 20.9%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0년 17.1%, 2003년 15.8%이었음.
  - 이러한 결과로 인공임신중절의 평균 경험횟수도 1994년의 0.8회에서 2000년 0.7회, 2003년 0.6회로 낮아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였음.

□ 첫 인공임신중절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24.4%,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34.6%, 세 번째 이상의 임신순위인 경우가 41.0%를 차지하였음.
  - 그리고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26.6세로 나타났음.
-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당시 성비는 109이어서 성선호에 의하여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 마지막 임신중절

-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임신인 경우가 11.8%,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23.9%, 세 번째 이상의 임신순위인 경우가 64.3%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이 높은 임신순위에서 발생하고 있었음
  - 따라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보다는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가 높았으며,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28.5세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보다는 1.6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3절 최근 인공임신중절 수용부인의 피임실천

□ 임신중절 수용부인의 임신특성

- 전체 임신의 54.2%는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신이었고, 45.8%는 실패임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1997년 조사결과(38.7%)에 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며, 2000년의 조사결과(52.3%)에 비하여는 많이 감소한 것임.

□ 실패임신의 피임유형

- 실패한 피임의 유형을 살펴보면, 월경주기법이 1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콘돔 11.0%, 기타 일시피임방법 10.1%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가 91.2%나 되었으며, 임신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한 피임방법은 불임시술과 자궁내장치가 각각 1.0%이었음.
  - 그 외는 안전성이 낮은 피임방법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제4절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 첫 번째 임신중절의 수용이유

- 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는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35.3%로 가장 많았음.
  - 다음은 터울조절 16.1%, 혼전임신 12.4%, 임부의 건강과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경우가 9.4%, 경제적 곤란 7.5%, 태아이상 4.6% 등의 순이었음.
-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14.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인 것으로 추정됨.

□ 마지막 임신중절의 수용이유

- 15~44세 유배우부인이 수용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는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즉,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부인은 45.4%로 가장 주된 이유이었음.
  - 다음은 자녀의 터울조절이 10.9%로 많았음.

제5절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경험여부

□ 인공임신중절시의 태아 성감별

-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을 실시한 부인은 2.1%이었음.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태아 성감별 경험률은 2.5%이었음.

□ 태아 성감별시 자녀의 성

- 인공임신중절 수용당시의 아들과 딸의 규모에 의하여 태아 성감별을 한 비율은, 아들이 없는 경우에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많았음.
  - 아들이 없는 경우,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3.5%,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5.0%가 태아 성감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아들이 한 명 있는 경우에 태아 성감별을 한 부인은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0.5%에 불과하였음.
- 딸이 3명 이상 있는 경우에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많았음.
  - 딸이 3명 이상 인 경우,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11.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7.7%가 태아 성감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딸이 두 명 있는 경우에도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9.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10.7%가 태아 성감별을 하였음.

제6절 인공임신중절실태 변화의 시사점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인공임신중절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 것은 이를 피임의 한 방법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 피임은 원하는 자녀규모를 원하는 시기에 갖기 위한 것이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여 부인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는 사실을 간과한 것임.

□ 효과적 피임방법 사용 필요

- 원치 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피임보급과 피임방법에 대한 정확한 사용방법의 교육이 적극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임보급이 무료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양성 평등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제7장 모자보건실태

제1절 산전 및 산후관리

□ 산전수진율

- 산전수진율은 1985년 82.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 100.0%에 이르렀으며, 2003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99.8%로 나타났음.
  -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산전수진율은 99.9%,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99.6%이었음.
- 평균 초진시기는 임신 후 5.88주였으며, 전체 부인의 87.3%가 임신 후 8주 이내에 초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 산전수진 횟수는 12.68회였으며, 임신기간 중 총 11회에서 15회 방문한 경우가 53.7%로 가장 많았음.

□ 산후수진율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아 출산후 산후수진율은 1988년 52.3%에서 1997년 81.0%, 그리고 2003년도에는 90.9%로 높아졌음.
  -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산후수진율(91.7%)은 읍·면부지역(87.4%)에 비하여 다소 높았음.
  -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산후수진율이 높았으며, 25~29세 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산후수진율이 높은 편이었음.

제2절 분만실태

□ 시설분만율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시설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최종출생아의 시설분만율은 1997년 99.7%, 2000년에 99.9%였으나 2003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여 99.3%로 나타났음.

□ 분만장소

- 시설분만장소는 병원이 4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원 28.3%, 종합병원 22.4%의 순이었으며, 조산소나 보건소에서 분만한 경우는 없었음.

□ 분만형태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제왕절개분만율은 1997년 35.9%, 2000년의 37.7% 그리고, 2003년 3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읍·면부에 거주하는 유배우부인의 제왕절개분만율(39.8%)이 동부에 거주하는 유배우부인(39.1%)에 비하여 약간 높았음.

□ 정상체중과 저체중

- 2001~03년 4월까지 태어난 최종출생아 중 정상체중(2,500~4,000g 미만) 출생아 비율은 90.5%이었음.
  - 정상체중은 여아가 92.7%로 남아의 88.6%보다 높았음.
- (극)저체중아의 비율은 4.2%로 남아 3.9%, 여아 4.3%이었음.
  - 4,000g 이상인 과체중의 비율은 5.3%이었고, 남아는 7.5%, 여아는 3.0%가 과체중이었음.
- 체중이 2,500g 미만인 저체중아의 이유는 조기분만 54.2%,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 36.5%이었음.

제3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태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비율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비율은 1994년 35.7%에서, 1997년 73.6%, 2000년 88.8%, 그리고 2003년에 89.7%로 증가하였음.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율은 읍·면부지역이 91.3%로 동부지역 89.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인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동 비율이 높았음.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비용지불 형태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비용지불 형태는 전액 자비부담 72.5%, 정부지원에 의한 무료 4.7%, 무료와 자비부담이 1.6%로 나타났음.

제4절 수유양상

□ 최종출생아 수유방법

- 2001~03년 4월까지 출생한 최종출생아의 모유수유율은 16.5%로 2000년

보다 6.3%포인트 증가하였음.

- 모유수유율의 증가는 최근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교육 및 홍보 효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모유수유 못한 이유

– 최종출생아에게 모유수유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모유수유를 중단한 이유로는 '모유량이 부족해서'가 40.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산모 또는 출생아의 건강상의 이유가 각각 8.1%와 5.6%로 나타났음.
  - 또한, 아이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젖을 빨지 않아서 중단한 이유는 2000년도 조사결과보다 0.7%포인트 증가한 7.3%이었음.

제5절 모자보건실태의 시사점

□ 산전 및 산후관리의 중요성

– 임신, 분만, 산전·후 기간에 산모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모성과 태아의 건강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산전후 관리가 필요함.
  - 산전관리는 검사와 진찰을 통하여 이상임신 및 임신합병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며, 임산부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함.
  - 또한 건강한 임신, 분만 및 산욕에 관한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여 분만의 안전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2003년도 전국 기혼부인의 산전수진율은 99.8%로 거의 모든 여성이 산전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높은 산전수진율은 모자보건사업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산전수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의료기관의 이용 및 접근성이 동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

부에 거주하는 부인이나, 교육수준이 낮고 출산경험이 많은 부인을 대상으로 산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산후관리는 생식기능의 회복과 모성역할의 습득뿐만 아니라 노년기 여성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그러나 산후의료기관을 이용한 산후검진율은 90.9%로 나타나 9.1%의 부인이 산후관리를 적절히 받지 않았음.
  - 산후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산모가 산후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산모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제왕절개율은 39.2%로 2000년도(37.7%)에 비하여 1.5% 포인트 증가하여 증가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 부적절한 제왕절개시술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출생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의 실시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출생 시 신생아의 체중은 신생아의 건강상태 반영

- 의료적 주의와 관찰을 필요로 하는 저체중아 및 소아비만이나 소아당뇨 등 각종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과체중아의 출생은 태아와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와 생활습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 저체중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1%를 차지하였고, 과체중 출생아는 5.3%였음.
  - 신생아의 저체중 또는 과체중을 예방하기 위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임신 중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음.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생아를 조기에 진단하

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함.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률은 89.7%로 과거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음(1997년 73.6%, 2000년 88.8% 등).
- 산모의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전체 수검률보다 낮게 나타나, 이들 계층에 대한 적극적 교육·홍보 및 검사실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 우리나라에서도 모유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어, 2003년도 모유수유실천율은 16.5%로 나타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실천율은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 신생아의 건강 및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여성이 어려움 없이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8장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제1절 자녀가치관의 변화

□ 자녀가치관

–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한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파악한 결과, 1991년 90.3%, 1997년 73.7%, 2000년 58.1%, 그리고 2003년에는 54.5%로 지속적 감소추세였음.

–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이 1997년 9.4%, 2000년 10.0%, 그리고 2003년 12.6%로 증가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자녀 필요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동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이 더 많이 저하되었음.

-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53.0%,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62.5%이었음.
-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한 부인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3.1%,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9.4%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4세의 젊은 연령층 부인의 자녀 가치관이 '중간적 위치'에서 '꼭 필요함'으로 다소 변화를 보였음.

– 학력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고학력층의 부인은 젊은 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자녀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어 자녀 필요성 저하되었음

–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 가치관의 차이는 자녀가 '있는 것이 나음'과 '없어도 상관없음'의 차이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였음.

- 이러한 태도는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내실화, 육아휴직 등 사회제도의 확충 등에 달렸음.

– 현존자녀수에 따른 부인의 자녀가치관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음.

-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61.9%, 자녀가 없는 부인이 44.1%로 가장 적었음.
- 이는 현실적인 자녀양육부담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이상자녀수

– 15~44세 유배우부인의 20003년 이상자녀수는 2.2명으로 200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상자녀수는 1976년의 2.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88년에는 2.0명이었으나, 1997년에는 2.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2.2명으로 감소하여 2003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부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의 차이가 과거년도 조사에서는 0.2~0.8명이었으나 2003년 분석결과는 0.1명에 불과하여 15~24세와 25~29세 연령층

부인의 경우 2.2명이었고, 그 외의 연령층 부인들은 2.3명으로 나타났음.

- 거주지역별로는 2명 이하를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1.7%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10.5%보다 다소 많았고, 3명 이상이라고 한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32.9%로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27.6% 많았음.
- 교육수준에 따른 이상자녀수 분포의 차이는 현저하지 않았으며, 평균 이상자녀수의 차이도 초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2.4명이었고,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은 2.2명, 그 외 학력수준의 부인은 2.3명으로 나타났음.

제2절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

□ 아들 필요성

- 유배우부인 중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인은 1991년 40.5%, 1994년 26.3%, 1997년 24.8%, 2000년 16.2%, 그리고 금번 조사에서는 14.1%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음
  - 대략적으로 아들이 많을수록 아들 선호도가 높고, 아들이 적을수록 아들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강도는 현저히 낮아졌으며, 향후에도 이 경향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아들 필요이유

- 15~44세 유배우부인들의 아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는 심리적 만족이 72.9%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00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69.8%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 정신적 만족감과 같이 높지는 않았지만 가문유지와 제사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한 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부지역보다, 연령이 가장 낮거나 많은 부인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았음

□ 이상자녀수의 성 선호

- 이상자녀수를 성 구별없이 원한다는 부인은 64.3%로 나타나 2000년의 57.3%보다 7.0%포인트 증가하였음.
  - 성 구별하여 이상자녀수를 원한다는 경우는 35.6%로 2000년의 42.1%보다 6.5%포인트 감소하였음.
- 이는 양성평등적 측면이 다소 강화된 가치관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으나, 여전히 전체 부인의 35.6%가 남아선호에 기초한 성구별에 의한 이상자녀수를 제시하고 있었음.

제3절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 15~59세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중 부모들의 자녀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 74.8%가 '자녀들을 적극 지원하며, 부모의 규칙을 설명하여 이해하고 따르도록 함'이라고 응답하였음.
  - 이어서 '뚜렷한 자녀양육방법이 없으며, 지나친 자율성 부여'가 13.5%,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을 통제, 자율성 거의 없음' 9.7%, '그냥 내버려두며, 자녀들에게 요구도 반응도 보이지 않음' 이 1.9% 등의 순이었음.
- 적절한 자녀양육태도가 가장 높긴 하지만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25.2%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자녀양육 책임

-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교 졸업 때까지가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32.1%, 취업할 때까지 11.5% 등의 순이었음.

-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가족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대학 졸업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학 졸업~언제(까지)라도의 비율은 90.1%).

제4절 혼인가치관의 변화

□ 결혼가치관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또는 긍정적 태도는 2000년 55.6%에서 2003년에는 54.4%로 감소한 반면, 소극적 및 부정적 태도는 같은 연도에 43.6%에서 4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모두 동부 보다는 읍·면부에서 높았고, 소극적인 태도만이 동부에서 높게 나타났음.
  - 부인의 연령별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30대까지는 점차 감소하다가 40대부터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었음.
  -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높았음.

□ 이혼가치관

– 전체적으로 이혼을 수용하는 부인의 비율은 2000년 45.7%에서 2003년 48.9%로 증가하여 이혼에 대해 점차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이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동부가 읍·면부 보다 높았음.
  -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비율이 높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과 '이유가 있을 경우 하는 편이 좋다'는 비율이 높았음
  - 교육수준별로는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

이 좋다'는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음.

□ 재혼가치관

– 재혼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전체 부인의 20.7%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적극적 또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47.2%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 지역별로는 재혼에 관해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동부보다 읍·면부가 높았음.
  - 연령별로는 재혼에 관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25~29세에 21.9%로 가장 높다가 점차 낮아져 35~39세에는 18.5%에 이르나 40세 이후부터는 다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제5절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 변화의 시사점

□ 자녀가치관의 시사점

–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높은 책임성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자녀양육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의 발단이 되었음.
  - 이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 교육정책의 오류 등에 기인된 것임.

□ 혼인가치관의 시사점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점차 약화되고, 결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가치관도 점차 변하여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임.
–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남아선호가치관을 제외하고는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 가족, 사회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9장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제1절 결혼양상

□ 결혼상태

- 15세 이상 기혼부인 11,219명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 부인이 88.6%로 대부분의 부인이 유배우 상태이었으며, 사별 4.1%, 이혼·별거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지역별로는 유배우부인과 사별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이 높은 반면, 이혼·별거한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7.8%)이 읍·면부지역(4.6%)보다 높았음
  - 결혼경력별로는 대부분의 부인이 초혼(97.8%)으로서 재혼부인의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2.2%)이었음.
- 2000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인의 경우 초혼 비율은 2000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재혼비율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부부의 결혼경력별 결혼상태

- 부부의 결혼경력별 결합형태는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96.9%로 대부분이었으며, 남편, 부인 모두 재혼 1.6%, 부인 초혼·남편 재혼 0.9%, 그리고 부인 재혼·남편 초혼은 0.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여자보다는 남자의 재혼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변화양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 모두 초혼인 결합형태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재혼인 결합형태의 비율은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음.
  •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7년의 경우 부인, 남편 모두 초혼인 비율은 98.4%이었으나 2000년에는 98.0%, 그리고 2003년에는 97.4%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남편 초혼, 부인 재혼비율은 같은 연도에 0.3%, 0.4%, 그리고 0.7%로 점차 증가추세이었음.

□ 남녀 특성별 결합형태

– 남녀의 초혼연령별 결합형태를 살펴보면, 19세 이하 여성의 경우 20~24세 이하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44.2%, 25~29세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41.8%로 대부분(86.0%)이 20대의 남성과 결혼하였음.
  • 20~24세에 결혼한 여성은 25~29세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6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같은 연령층인 20~24세 연령층과 결혼한 비율(24.1%)이 높았음.
  • 그러나 부인의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연하의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최근의 초혼연령별 결합형태의 변화를 엿볼 수 있음.

□ 남편과 부인의 초혼연령

– 남편과 부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편 27.02세, 부인은 23.58세로 남녀간에 3.44세의 차이를 보였음.
  •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읍·면부지역 거주자 보다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높았으나, 남녀간의 초혼연령 차이는 읍·면부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음(동부 3.33세, 읍·면부 3.88세).
– 연령별 초혼연령은 남편은 39세 이하까지 높아지다가 40세 이후부터 점차 낮아지고, 부인은 34세 이하까지는 증가추세이나 35세 이상부터 차츰 감소하여 연령이 많을수록 초혼연령은 낮아졌음.

- 교육수준별로는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연령은 높아졌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고학력일수록 감소하였음.

□ 교육수준별 결합형태

– 본 조사대상 부인의 남편과의 교육수준별 결합형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경우 같은 학력을 가진 남성과의 결합률이 가장 높아 60.7%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동일한 학력간의 결합률이 높게 나타나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이 동일한 학력의 남성과 결합한 비율은 63.2%이었으며, 대학 이상 부인의 동일학력 남성과의 결합률은 더욱 높아 89.8%에 이름.

□ 혼인지속기간

– 본 조사에서 부인의 평균 초혼기간은 18.62년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18.3년인데 비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들은 21.27년으로 읍·면부지역 거주 부인의 결혼지속기간이 3.24년 더 길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경향은 부인의 연령 및 학력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저학력일수록, 그리고 초혼연도가 빠를수록 결혼지속기간은 길었으며, 또한 동부지역 거주부인들보다는 읍·면부지역의 거주부인들이 더욱 길었음.

제2절 해혼실태

□ 해혼부인의 일반특성

– 본 조사결과에서도 사별한 부인이 전체 응답대상 부인 중 4.1%, 이혼·별거 부인은 7.2%로 전체의 11.3%가 해혼부인 이었음.
  -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전체 해혼부인의 79.5%로 동부지역(78.8%)보

다 읍·면부지역(83.3%)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대 이하의 부인들은 20.4%로 읍·면부지역(16.8%)보다는 동부지역(21.2%)에 더 많았음.

-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학력층에서 해혼비율이 가장 높았으며(37.8%), 특히 동부지역이 높은 비율이었고, 읍·면부지역은 초등학교 이하의 부인들의 해혼비율이 가장 높았음(60.8%).

– 해혼부인 중 취업부인은 74.3%로서 읍·면부지역 해혼부인들의 취업률이 83.0%로 동부지역 해혼부인들의 취업률(72.6%) 보다 높았음.

□ 해혼사유별 부인특성

– 해혼사유별 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별부인의 경우 평균 연령은 50.29세로 이혼·별거부인들의 평균 연령인 43.41세보다 고령층이었음.

- 교육수준은 사별부인은 고등학교 이상 비율이 29.7%인데 비해 이혼·별거부인들은 56.7%이었고, 이들의 취업률은 각각 70.8%와 77.1%로 사별부인보다는 이혼·별거부인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었음.

□ 해혼시기

– 사별부인은 사별당시 40대였던 경우가 3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로서 35.9%, 그리고 50대가 17.8%이었음.

- 그러나 이혼·별거 부인의 경우는 30대가 51.2%, 40대가 30.1%로 30~40대에서 이혼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들의 해혼당시 평균연령은 사별부인은 40.81세, 이혼·별거 부인은 36.38세이었음.

– 남편의 경우도 사별은 40~50대(67.1%)에서, 그리고 이혼·별거는 30~40대(82.7%)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

- 해혼당시 남편의 평균연령은 사별은 45.40세, 이혼·별거는 40.22세이었음.

□ 해혼이유

- 이혼·별거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한 해혼이유는 성격차이 30.3%, 경제문제 23.6%, 배우자의 외도 20.5%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지역별로는 성격차이와 기타에 의한 해혼은 읍·면부지역에서의 비율이 높았고, 그 외 이유는 모두 동부지역에서의 비율이 높았음.
- 이혼·별거 당시 부인의 연령별 해혼이유를 보면,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는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별거가 주 요인이었으나 50대 이상은 경제문제가 해혼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어 다른 연령층과의 차이를 보였음.
- 부부의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부인은 성격차이에 의한 해혼비율(32.1%)이 가장 높았고,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부인은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그리고 외도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결혼기간에 따른 해혼이유에 차이를 보였음.
- 해혼당시 18세 미만의 자녀유무에 따른 해혼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있는 경우보다 성격차이, 경제문제 비율이 높은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외도에 의한 해혼비율이 높았음.

□ 해혼부인의 평균 결혼지속기간

- 이들 해혼부인들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24.36년으로 이 중 사별부인은 28.94년, 이혼·별거부인은 21.69년으로 사별부인의 결혼지속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음.

□ 이혼·별거 제의자

- 이혼·별거 제의자는 남편 30.6%, 부인 66.7%, 그 외 시부모나 친정부모 등에 의한 비율이 2.6%로 남편보다는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율이 높았음.

- 해혼당시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의 저연령층과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율이 높았음.
-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를 제외할 경우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인이 제의한 비율이 높아져 대학 이상 학력의 부인은 81.1%에 이름.
-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의율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의율이 높게 나타남.

□ 이혼·별거부인의 자녀양육

–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에 이혼·별거한 부인들의 경우 11.0%가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이었으며, 나머지 88.9%는 자녀를 둔 상태이었음(1명 38.1%, 2명 이상 50.8%).
  - 30대에 이혼·별거한 부인은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 93.9%이었으며, 40대에 이혼한 부인은 65.0%이었음.

□ 자녀와의 동거자 및 양육비 제공자

– 조사당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아와의 동거자는 52.8%가 자녀의 모, 그리고 39.1%는 자녀의 부로서 대부분이 부모 중 한 쪽과 동거하고 있었음.
  - 둘째아와의 동거자는 부와 동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46.6%이었으며, 그 다음은 모 45.4%, 조부모 5.5%, 그리고 기타 2.5%의 순이었음.
– 동거자별 양육비 제공자를 보면 대부분 동거자가 아동의 양육비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혼·별거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하였음.
  - 자녀의 부가 동거자일 경우 모가 자녀양육비를 제공하는 비율은 첫째아일 경우 2.2%이었으며, 둘째아일 경우에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

- 자녀의 모가 동거자일 경우 부가 자녀양육비를 제공하는 비율은 첫째아일 경우 10.2%, 둘째아일 경우 12.0%로 낮은 수준이었음.

제3절 가족주기

□ 조사대상 부인의 자녀출산경험

- 전체 조사대상 부인 중 94.5%가 자녀출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초혼년도별로 보면, 1970년대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들이었으며(99.4%), 198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98.7%, 1990년대는 96.2%, 그리고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 중에서는 47.9%만이 출산경험이 있었음.

□ 평균 연령, 출생아 수 및 현존자녀수

- 이들의 초혼년도별 평균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51.53세로 고령층에 속하였으며 1980~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41.66세, 1990~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33.61세, 그리고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28.51세이었음.
  - 평균 출생아 수는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은 2.80명, 1980~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2.07명, 1990~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1.88명, 그리고 200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들은 1.12명이었음.
- 평균 현존자녀수는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은 평균 2.71명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들은 1.12명이었음.
  -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출산완료율이 낮았으며 추가희망자녀수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많았음.
- 결혼한 자녀를 둔 부인은 연령이 높고 결혼년도가 빠를수록 비율이 높아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49.2%, 1980~89년에 결혼한 부인은 0.3%에 불과하였음.

- 평균 결혼자녀수 역시 결혼년도가 빠른 부인일수록 많아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은 1.77명, 1980~89년 결혼한 부인은 1.00명, 그리고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아직 결혼한 자녀가 없었음.

□ 가족주기 단계별 시작 및 종료시점의 변화

- 가족주기의 첫 단계인 형성기의 시작시점인 초혼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21.56세에 결혼하였으나, 1980~89년 결혼한 부인은 23.46세에, 1990~99년 결혼한 부인은 24.95세, 그리고 200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은 26.26세에 결혼하여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가족형성기의 시작시점이 늦어지고 있음.
- 확대기의 시작시점인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22.95세에 첫째아를 출산하였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27.35세에 첫째아를 출산하였음.
- 확대완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시작시 부인연령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의 경우 51.35세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55.75세로 추정됨.
  -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자녀출산완료 후 자녀결혼 시작시까지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축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완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완료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54.42세,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58.61세로 추정됨.
- 해체기의 시작시점인 남편사망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69.61세로,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76.82세로 추정되었음.
  - 해체기의 종료시점인 부인사망시 연령은 같은 기간에 결혼한 부인들간에 각각 72.76세에서 80.92세로 추정되었음.

□ 가족주기 단계별 기간의 변화

- 가족형성기는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1.39년이 소요되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1.09년이 소요되어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첫 자녀의 출산시기는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확대기는 한 가족의 전체 출산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3.07년이 소요되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2.86년이 소요되어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자녀출산기는 짧아지고 있음.
  - 이는 출산력 저하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와 출산간격의 단축으로 출산 완료시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
- 자녀출산 완료시기부터 자녀결혼 시작까지의 확대완료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음.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25.33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25.54년으로 추정되었음.
  - 이는 출생아 수의 감소 및 출산간격 단축으로 막내아 출산이 빨라지는 반면, 자녀의 초혼연령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임.
- 축소기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차 짧아져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3.07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2.86년으로 추정되었음.
- 축소완료기는 자녀를 모두 떠나보낸 후 노인부부만이 남는 빈 둥지시기로, 최근에 결혼한 젊은 부인일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보임.
  -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15.19년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18.21년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가족해체기는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3.15년이었으나 1980~89년 결혼한 부인들은 4.81년, 그리고 1990~99년 결혼한 부인들은 동 기간이 4.28년으로 길어지다가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4.10년으로 짧아지고 있음.
  - 해체기는 일관된 증가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나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길어지는 추세임.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인의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주기의 전체기간은 점점 길어질 것으로 기대됨.
  -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51.20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54.66년으로 추정되어 약 30여 년 동안 3.46년 정도 더 연장될 전망임.
  - 이러한 가족주기 전체 기간의 연장은 사망수준의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그에 따른 가족주기 전체기간의 연장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제4절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의 시사점

- 결혼가치관 변화와 함께 이혼·별거율이 상승함으로써 가족해체를 유발하여 한부모가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그러나 아직까지 이혼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들 이혼·별거가족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이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대상에게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상담을 통해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 가족주기는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자녀규모의 축소, 그리고 사망률 개선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각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이 뚜렷함을 볼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부터 남편 사망시까지의 부부 결혼기간은 최근으로 올수록 길어지고 있음.
  - 부부만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가족주기의 후기단계인 축소완료기 및 해체기의 연장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함께 성별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해 노인부부가구 및 여성 노인단독가구의 증가현상을 보여 이들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요구됨.
  - 따라서 이들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후 소득보장 정책과 노인 장기요양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제10장 기혼부인의 취업실태

제1절 혼전 취업실태

□ 기혼부인의 혼전 및 현 취업률

- 조사대상부인 중 결혼 전에는 비취업중이었으나 현재 취업중인 부인은 전체의 52.2%로 결혼 전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음.
- 전체 부인의 결혼전 취업률은 71.0%, 현 취업률은 52.0%로 그 차이는 19.0%포인트나 되었음.
  -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에서 보다 동부지역에서의 큰 차이를 보였음.
  - 혼전취업률은 24세 이하를 제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고, 현 취업률은 40대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률도 증가하였으나 50대 이후부터는 다소 낮아졌음.
  - 교육수준별 혼전 취업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 취업률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 결혼 전과 후의 취업률간의 차이를 보였음.

□ 결혼전 취업 직종, 종사상 지위 및 직장유형

- 혼전 취업부인의 직종은 사무직(41.3%), 서비스·판매직(13.6%), 기계장치조작원(11.3%), 전문직(10.3%) 등의 순이었음.

- 연령별로도 사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부인들의 사무직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 혼전 취업부인의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 상용직(72.3%)이었으며, 임시고·일용고(19.9%), 자영업자(4.2%), 무급가족종사자(2.0%) 순이었음.

□ 혼전 취업과 현 취업

– 혼전 취업 중이던 부인 중 현재까지 취업을 계속중인 부인은 7.4%에 불과하며, 나머지 92.6%는 중단한 상태이었음.
  -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경우 혼전 취업을 현재까지 지속중인 비율이 읍·면부 지역보다 높았음.
  -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이하는 혼전 취업을 계속하는 비율이 30대 후반보다는 높은 편이었음.

□ 혼전 취업중단 시기

– 전체적으로는 혼전 6개월~혼후 6개월 이내에 중단하는 비율이 50.2%로 가장 높았음.
  - 지역별로는 혼전 6개월~혼후 6개월 만이 읍·면부지역이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동부지역이 높았음.
  - 연령별로는 24세 이하는 혼전 6개월~혼후 6개월에 중단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혼인·출산과 상관없이 중단한 경우이었음.

– 혼전 취업의 중단시기는 결혼을 전·후한 시기가 가장 높았고, 자녀출산기 연령층에서는 첫째 자녀 출산전·후에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음.

□ 혼전 취업중단의 자발성 여부

– 대부분의 부인들이 자발적(97.9%)으로 취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3%는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해 취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자발적인 이유로는 구조조정, 결혼을 할 경우 퇴직, 회사 부도, 남

편이나 시댁 식구 등의 반대 등의 이유를 들고 있음.

- 읍·면부지역 보다는 동부지역이, 연령별로는 25~29세가 4.5%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30~34세 (3.5%), 35~39세(2.4%), 그리고 50세 이상(2.3%) 순이었음.
  -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자발적 취업 중단율이 높았음.

제2절 현 취업실태

□ 현 취업부인의 취업직종, 종사상 지위 및 직장유형

- 현재 취업중인 15~49세 부인들의 직업 분포율은 서비스·판매직이 3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단순노무직(14.1%), 사무직(11.6%), 전문직(8.4%) 등의 순이었음.
  - 종사상 지위는 상용고 비율이 가장 높아 30.5%이었음.
  - 직장유형은 개인사업체 종사비율이 54.3%로 가장 높았고,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종사비율은 2.3%로 가장 낮았음.

□ 가구특성별 취업률

- 가구특성별로는 월소득이 많은 경우 부인 취업률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고소득층은 고학력 젊은 부인의 자아성취를 위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영유아 자녀유무별로는 영유아가 모두 있는 경우 부인 취업률이 가장 낮았고(26.1%), 영아만 있는 경우에도 낮은 취업률(29.1%)을 보였으나 영유아가 모두 없는 경우 취업률이 가장 높아(57.5%) 자녀가 부인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인 취업률이 높았으며, 남편이 비취업인 경우에도 부인의 취업률은 낮게 나타났음.

□ 현 취업 계속여부 및 만족도

- 현 취업부인들의 경우 현 취업의 계속여부는 대부분 계속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계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타 직종보다 높은 편이었음.
- 현 취업부인의 취업 만족도는 만족 34.9%, 매우 만족 2.5%로 37.4%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직종별로는 전문직(73.4%), 준전문직(63.0%), 사무직(58.7%)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농·임·어업직(17.3%)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평균 만족도는 3.11점으로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직종별로는 차이를 보여 전문직 3.76점, 준전문직 3.61점, 사무직 3.52점 순으로 높았고, 단순노무직(2.92점), 농·임·어업(2.72점)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음.

□ 현 취업의 애로사항

- 현 취업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가사부담이 4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육아 및 자녀양육 부담이 22.7%,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이 14.6%의 순이었음.
  - 취업부인의 직종별로는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은 육아 및 자녀양육 부담을, 나머지 직종은 가사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음.

□ 부인의 취업 및 비취업 이유

- 본 조사결과 15~49세 취업부인의 취업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주요 이유로 72.5%이었음.
  - 특히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4세 이하와 40세 이상의 부인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비 보탬을 위해 취업중인 경우가 많았음.
  - 다음으로 제시된 조사대상부인의 현재 취업의 직접적인 이유는 자녀

교육비 충당 12.2%, 사회적 성취·자기발전이 11.8%, 노후대책 마련 1.9% 등이었음.

- 자녀교육비 충당을 위한 취업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35세 이상, 그리고 고졸학력 부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본생계비 외에 자녀교육비 충당이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비취업 이유

- 15~49세 이하 비취업 기혼부인들의 비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양육(49.0%)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음.
  - 특히 자녀양육으로 인한 비취업은 부인연령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인 경우와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음.
-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는 자발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부지역과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초등학교 이하 수준보다는 중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높았음.

제3절 비취업 부인의 향후 취업희망 여부 및 이유

□ 비취업 부인의 향후 취업희망 여부

- 현 비취업부인의 향후 취업희망 여부는 전체 비취업부인의 52.0%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음.
  - 지역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희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비취업 부인의 향후 취업희망 이유

- 현재 비취업 부인들 중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가계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가 가장 높은 비율(70.8%)이었으며, 사회활동 및 자기발

전을 위해(24.7%), 경제적 독립을 위해(4.2%), 기타 (0.3%) 순이었음.

-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읍·면부 지역보다는 동부지역에서, 30대 후반부터 40대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별이나 이혼·별거부인보다는 유배우 부인일수록 높은 비율이었음.

제4절 기혼부인 취업실태의 시사점

□ 취업부인의 직장생활과 가족생활

– 취업여성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환경과 직장환경의 변화 모두를 요구함.
  - 가족환경의 경우 여성의 공식적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위해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해 왔던 가사나 자녀양육의 비공식적 노동에 대한 남성의 참가를 요구함.
  - 직장환경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남성의 가사분담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 취업부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 최근 정부에서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성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OECD 차원에서도 남녀의 경제활동 및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임.
  - 따라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경우에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가제도 실시 등에 있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 내의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보육에 있어서도 보육료 지원의 확대, 특수보육의 활성화, 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제11장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실태

제1절 가족부양 실태

□ 부모의 생존 및 동거 여부

- 15~59세 기혼가구 중 일방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함께 사는 부부의 각각 부모 생존율을 살펴보면, 부(父)의 생존율은 55.1%, 모(母)의 생존율은 94.7%임.
  -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가구주 부부 중 남편의 부모 생존율을 살펴보면, 부(父)의 생존율은 50.5%, 모(母)의 생존율은 94.1%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15~59세 기혼가구 중 일방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부부 중 부인의 부(父)와의 동거율은 1.1%, 모(母)와의 동거율은 2.1%로 나타났음.
  - 부모 모두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만 부(父)와의 동거율이 모(母)와의 동거율보다 높은 것은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가구주 부부 중 남편부모와의 동거율을 살펴보면, 부(父)와의 동거율은 8.7%, 모(母)의 동거율은 14.2%이었음, 부인 부모와의 동거율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았음.
  - 이는 남편 부모와의 동거가 부인 부모와의 동거보다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모(母)와의 동거율이 부(父)와의 동거율보다 높은 것은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부모와의 접촉

- 비동거 부모와 만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그 빈도가 부인 부모와 남편 부모가 유사한 수준이었음.
  - 부인의 부(父)와는 98.1%, 모(母)와는 98.6% 만나고 있었으며, 남편의 부(父)와는 98.9%, 모(母)와는 98.8%가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와 만나는 빈도가 비교적 많은 주 1회 이상의 경우도 부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다는 남편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율이 높았음.
  - 즉, 주 1회 이상 만나는 경우는 남편의 부(父)와는 25.4%, 모(母)와는 23.6%이었던 반면 부인의 부(父)와는 18.0%, 모(母)와는 17.6%로 남편 부모와 더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와 만나는 빈도는 지역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여 부인 또는 남편의 부모인지를 불문하고 읍·면부지역 가구가 동부지역 가구보다 부모와의 만나는 횟수가 많았음.
-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 여부를 살펴보면, 연락하는 경우는 부인 부모와 남편 부모가 유사한 수준이었음.
  - 즉, 부인의 부(父)와는 98.8%, 모(母)와는 98.9%, 남편의 부(父)와는 98.4%, 모(母)와도 98.4%가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와의 상호지원

- 15~59세 기혼가구 중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가 사망한 가구를 제외하고 지난 1년간 부모와 주고받은 도움의 비율을 살펴보면, 부인의 부(父) 및 모(母)와의 관계에서는 각각 72.7%, 66.4%이었고, 남편의 부(父) 및 모(母)의 경우에는 각각 74.8%, 69.8%이었음.
  - 따라서 부인의 부모보다는 남편의 부모와 도움을 주고받은 비율이 더 높았고, 모(母)와 도움을 주고받은 비율 보다는 부(父)와 주고받은 비율이 더 높았음.

□ 신체적 도움

-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신체적 도움을 받은 평균 횟수는 부인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보다는 남편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음.
  - 즉, 부인의 부(父)로부터 도움을 받은 횟수는 평균 5.0회, 모(母)로부터 받은 횟수는 평균 4.2회이었으며, 남편의 부(父)로부터 도움을 받은 횟수는 평균 5.7회, 모(母)로부터 받은 횟수는 평균 7.0회였음.
- 부모에게 제공한 신체적 도움의 비율은 부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약 17.3~17.7%, 남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약 29.4~30.0% 수준이었음.

□ 정서적 도움

-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도움을 받은 비율은 부인의 부모로부터는 약 57.0~60.1%, 남편의 부모로부터 받은 비율은 약 54.4~55.7% 수준이었음.
- 부모에게 정서적 도움을 제공한 비율을 살펴보면, 부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약 62.0~64.5%, 남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약 60.2~61.0% 수준이었음
  - 이는 신체적 도움의 경우 부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 약 17.3~17.7%와 남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약 29.4~30.0%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임.

□ 경제적 도움

-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비율은 부인의 부모로부터는 약 14.8~21.8% 수준이었고, 남편의 부모로부터는 약 14.4~24.0% 수준으로 유사하였음.
-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 비율은 부인의 부모에게는 약 52.3~56.8% 수준이었고, 남편의 부모에게는 약 58.2~59.6% 수준으로 다소 차

이가 있었음.

- 전반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보다는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도움을 제공받는 대상자도 남편의 부모가 많았음.
  - 특히 부인의 부모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된다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제2절 자녀의 양육실태

□ 부모의 생존 및 동거 여부

- 전체 영유아는 3,679명이었으며, 이 중 취업모의 자녀는 33.9%인 1247명, 비취업모의 자녀는 66.1%인 2,432명이었음.
  - 유아 자녀를 가진 부인의 연령은 30~34세가 가장 많았으며, 영유아를 가진 부인 중 30~39세 이하에서는 취업모 70.9%, 비취업모 67.5%로 매우 높게 나타나 최근의 만혼에 따른 만산을 보여주고 있음.
  - 이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학력이 취업모 50.5%, 비취업모 56.6%, 대학 이상의 학력은 취업모 41.5%, 비취업모는 37.5%로 높게 나타났음.

□ 영유아의 양육실태

- 핵심적인 영유아 양육형태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전체 영유아의 35.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육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5.4%, '유치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4.4%였음.
  - '어머니가 돌보면서 보육시설에도 보내는 경우'는 9.7%, '어머니가 돌보면서 유치원에도 보내는 경우'는 13.1% 등
- 영유아 자녀를 돌봄은 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비취업모인 경우 가장 심하였고, 취업모인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음.

□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

-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원, 유치원이 교육효과가 크기 때문'이 58.7%로 가장 높았음.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다음 이유 중 '본인, 가까운 사람이 돌보아 주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가 19.9%로 나타나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태도가 부정적인 측면이 높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음.
- '보육료 부담'(8.1%), '가까운 곳에 돌보아 줄 사람 있음'(3.9%), 등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나타났음.

□ 향후 아동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여부

- 전체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가진 기혼부인의 39.1%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
  - 특히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희망률을 보면 0세아 67.3%, 1세아 64.9%, 2세아 53.9%로 매우 높게 나타나 영아전담보육시설의 확충이 있어야 함을 시사함.

□ 취학자녀의 특성

- 취학연령 자녀를 둔 기혼부인 중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인은 47.8%이었으며, 고학년 자녀를 둔 부인은 52.2%이었음.
-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저학년의 경우는 취업모가 45.2%, 비취업모가 50.5%였으며, 고학년의 경우 취업모가 54.8%, 비취업모가 49.5%였음.
  - 이는 자녀가 어릴 때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하지 않으나, 자녀가 고학년이 될 수록 사교육비 등의 문제로 취업하는 어머니가 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사료됨.

□ 취학아동의 양육실태

- 초등학교 자녀양육형태는 '어머니가 돌보면서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45.2%(취업모 26.5%, 비취업모 63.5%)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음.
  - '사설학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취업모가 42.9%, 비취업모가 17.2%로 나타났음.

제3절 자녀양육비 실태

□ 가구의 자녀양육비의 구조

- 가족공통비용 중 자녀 몫은 전체 평균 55만 6천원이었으며, 소비지출 항목별로 보면 기타 소비지출이 26만 2천원, 교통통신비가 15만 5천원이었고, 주거 및 광열 수도비는 9만 1천원 등의 순이었음.
- 가구소득과 자녀양육비용은 정비례 관계를 보여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자녀양육 비용도 점차 증가하였음.
  - 특히, 사교육비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9만 5천원이었지만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67만원으로 나타났음.

□ 가구의 자녀양육비 규모

-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는 135만 8천원이었음.
  - 가구원 공통비용 중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의 자녀 관련 비용은 55만 6천원이었음.
  - 자녀만의 비용은 80만 2천원이었음.
- 전체 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290만 2천원, 소비 지출액은 236만 5천원이었음.

-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8%,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7.4%나 되었음.

□ 개별아동의 자녀양육비 구조 및 규모

- 가족공동 지출비목 중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29만 4천원이었음.
  - 기타 소비지출이 13만 8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통신비 8만 2천원, 주거 및 광열수도비 4만 8천원, 교양오락비 1만 7천원,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는 9천원 등이었음.
- 가구 및 자녀특성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를 살펴보면, 가족공동 경비 중 개인자녀의 몫은 29만 4천원이었고, 자녀개인비용은 45만 4천원으로 자녀 1인당 양육비는 74만 8천원이었음.

제4절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실태의 시사점

□ 한국가족의 부양관계 및 자녀양육 실태

- 가족부양관계는 주로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이 보다는 적지만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음.
  - 그렇지만 도움의 정도는 크지 않아 노부모부양을 성인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한국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교육이고, 노부모 부양은 그 뒷전이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음.
  - 이는 노부모가 능력이 있는 경우는 큰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함을 시사하는 것임.
- 자녀양육에 지출되는 과다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과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할 것임.

- 전자를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 자녀양육비 지원 등이 요구되며, 후자를 위해서는 노인부양 비용의 세금감면, 노인복지의 확충 등이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제12장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욕구

제1절 가족관계

□ 가사분담 형태

-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3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33.6%로 많았음.
  -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도 18.4%로 많았다.
-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인의 취업여부를 떠나서 양육과 가사는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되어 출산율의 저하와도 직결될 것임.

□ 부부권력 관계

- 일상생활비 지출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33.6%,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32.5%,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가구도 27.1%가 있었음.
-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부공동 결정이 59.5%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결정이 4.5%,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36.0%나 되었음.
- 주택매매 및 이사는 부부공동 결정이 74.2%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14.5%,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11.3%, 투자 및 재산증식도 부부공동 결정이 69.1%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결정이 16.1%,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결정이 14.8%가 있었음.

- 일상생활비 지출과 자녀양육 및 교육은 주로 부인에게 결정권한을 많이 있고, 부동산 등의 재산과 관련된 것은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케 함.

□ 배우자 만족도

-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하여 51.1%, 다음은 배우자 이해도 47.6%, 부부대화 43.6%, 부부간의 성생활 38.5%,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량 35.6%. 배우자 부담의 가사량 34.3%,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 26.6% 등의 순이었음.
  - 따라서 전반적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43.3%로 높은 수준이었음.
- 배우자에게 불만족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38.4%, 다음은 배우자 부담의 가사량 28.1%,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량 20.9%, 부부대화 17.3%, 배우자 이해도 13.1% 등의 순이었으며, 부부 성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7.7%에 불과하였음.
  -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족도는 9.7%로 낮아 전술한 만족도 43.3%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만족도보다 불만족도가 높은 것은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이었음.

□ 부모-자녀관계

- 자녀와의 대화, 자녀관계 전반은 만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와의 대화는 55.8%가 (매우) 만족하고 있었고, 자녀와의 문화생활은 보통수준(41.8%), (매우) 만족은 27.5%이었으나 (매우) 불만족이 오히려 많은 30.8%를 차지하였음.

- 따라서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관심을 가지야 하며 자녀들이 학업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가족이 함께 문화생활을 할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됨.

– 부모의 의견·기대 충족여부는 보통과 (매우) 만족수준이 각각 41.7%, 41.9%로 유사하였고, (매우) 불만족은 16.3%이었음.

– 전반적으로 (매우) 불만족은 자녀와의 문화생활 30.8%, 부모의 의견·기대 충족여부 16.3%, 자녀와의 대화 9.5% 등이었음.

-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족 수준은 6.3%로 낮았음.

제2절 가족생활의 질

□ 가정생활의 질

–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가족원 모두의 사회적 성공, 가정의 안정, 권력이나 재산의 소유,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자녀의 역할 수행정도, 자녀의 효도 및 가족의 건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가정의 행복요인으로서 가족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의 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1%였음.

- 즉,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안정은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음.

□ 가족생활의 변화정도

– 전반적인 가족생활의 변화를 1년 전과 비교해 보도록 질문한 결과, ‘더 좋아졌다’고 응답한 경우는 20.8%에 불과하였고,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 29.4%, 그리고 ‘동일하다’고 응답한 경우 48.4%로 나타났음.

□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주관적으로 가족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가구의 70.6%가 중산층(중상위층 12.3%, 중중위층 38.0%, 중하위층 20.3%)으로 응답하였음.
  - 상위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6%에 불과하였고(상상위층 0.3%, 상중위층 2.0%, 상하위층 1.3%), 나머지 25.9%는 하위층으로(하상위층 9.5%, 하중위층 8.9%, 하하위층 7.5%) 인식하고 있었음.

□ 전반적인 가족생활 만족도

-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1.1%가 '만족스럽다' 또는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했으며, 12.3%는 '불만족스럽다' 혹은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나머지 46.6%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음.
-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사노동 분담 정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 가족의 의식주 수준, 가족갈등의 해결방식,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가족원의 건강, 그리고 삶의 성취도 등 9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음.
  - 읍·면부 지역보다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응답자의 가정내 지위와 역할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응답자가 여자인 경우(3.35점)가 가정내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남자(3.24점)에 비해 높았으며,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음.
  -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족내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비취업 중인 경우(3.37점)가 취업인 경우(3.31점)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았음.
  -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분담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99만원 이하 3.05점, 300만원 이상 3.16점), 가구

유형에 따라서는 2세대(3.08점)나 3세대 이상(3.13점)의 경우보다 부부로 구성된 1세대(3.32점)가 훨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 응답자가 남자인 경우(3.23점)가 여자(3.09점) 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연령의 경우 29세 이하(3.19점)와 50세 이상(3.16점)의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한편,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 이상(3.18점)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 응답자(3.13점)가,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의 응답자(3.12점)가 가정 내 가사노동분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3절 가족정책과 복지욕구

□ 가족정책의 책임

–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책임의 소재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았음.

- 전체 응답가구의 67.8%가 국가 또는 사회와 가족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29.1%, 전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가 져야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0%에 불과하였음.

□ 건강가족의 요건

–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주요 요건으로 가족의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2%로 가장 높았고, 가족원간의 심리·정서적 유대강화는 34.3%, 그 밖에 경제적 자립 8.5%, 가족공유의 문화생활 3.9% 등으로 나타났음.

–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하는 정책을 살펴보았음.

- 전체 응답자의 5% 이상이 희망한 정책은 자녀학자금 지원정책

(14.1%), 취업지원정책(13.4%), 의료비지원 또는 보조정책(13.2%), 노인보호서비스(8.8%), 아동보육시설의 확충(8.7%), 그리고 생계비지원정책(6.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제4절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욕구의 시사점

- 급박한 경제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임.
  - 다양한 가족정책 및 가족단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욕구에 부합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사회, 그리고 가족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임.
- 본 조사결과에서도 한국 가족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정책은 자녀교육 및 양육과 관련된 정책으로 나타났음.
  - 이는 자녀교육 및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정책적 개입의 시급성을 의미하는 것임.
-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통합정책을 강구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실업률의 증가는 가족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사회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제13장 종합논의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종합논의

□ 부인의 임신경험은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며,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임신은 점차 감소하고 정상

출생이 증가하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음.

- 그러나 지속적인 높은 피임실천율과 장기간에 추진된 모자보건사업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사산 등의 임신소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됨.

□ 1989년 가족계획사업의 축소와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사회변화, 개인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읍·면부지역보다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동부지역의 출산율이 현저히 낮음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현재의 출산수준이 쉽게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함.

□ 유배우 부인들의 출산수준은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최근의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핵심적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 다만, 합계출산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유배우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정부지원에 의한 피임보급이 폐지되었고, 피임비용은 스스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임의 생활화에 힘입어 피임실천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 또한 피임실천자가 여성위주에서 이제는 남성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 양성 평등적인 측면이 엿보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음.
  - 그렇지만 질적 측면에서 피임실천은 종전보다도 오히려 문제점을 갖

고 있으며, 특히 피임실천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피임비실천과 피임실패로 인한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됨.

□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임신노출상태의 부인이 각 연령층에 산재해 있었음.

- 이와 같은 피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임신할 경우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됨.

□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윤리적 측면, 준법적 측면, 그리고 모성건강의 측면에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태아 성감별을 위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음.

- 더군다나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도 자행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의료인에 대한 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음.

□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수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시설분만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전분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 그러나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율의 상승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임.

□ 최근 출생아 중 저체중아와 과체중아가 나타났음.

- 특히 저체중아는 임신 중 산모의 음주, 흡연, 약물복용 및 조기분만과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 등과 관련이 있었음.

□ 현존자녀수는 다소 증가하였고, 이상자녀수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특히, 이상자녀수와 현존자녀수의 차이가 크고, 현존자녀수의 증가현상이 출산율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미혼층의 초혼연령 상승과 독신율 증가 등이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은 개인주의화 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부모의 책임을 대학졸업시까지로 생각하는 부모가 가장 많았음.

- 남아선호가치관이 약화되고 있어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으나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우려됨.
  - 이러한 가치관이 실제 행위로 연결될 경우 불법적 의료행위에 의한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로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음.

- 이의 문제로서 이혼가정의 자녀양육 문제를 들 수 있음.

□ 초혼연령의 상승, 결혼행태의 변화, 자녀출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주기의 전체 기간 및 단계별 기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직까지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음.

-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한 연령인 1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결혼적령기인 25~29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30~34세를 기점으로 다시 급격히 증가하여 40~44세에 절정을 이루다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음.
  - 이는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산 및 육아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기혼자녀들의 부모와의 동거율은 매우 낮았고, 비동거부모와 접촉률은 높았음.

- 그러나 평균 접촉 횟수는 월 1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자주 접촉하지 못하고 있었음.

□ 기혼자녀들의 부모와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는 매우 빈번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에게 제공한 신체적 도움, 정서적 도움, 그리고 경제적 도움의 비율이 부모로부터 받은 비율보다 높았음.

□ 영유아 자녀를 돌봄은 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

- 취업모인 경우에도 영유아 양육의 책임은 어머니가 상당히 부담하고 있었고, 비취업모인 경우에는 더욱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음.
- 초등학교 학생의 자녀양육은 방과후 보육 또는 공부방 등에 의존하기 보

다는 사설학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음.

- 이는 취업모 자녀의 경우에 더욱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높은 사교육비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출산의 한 원인임에 틀림없음.

□ 자녀양육비는 가족생활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가구소득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심하였으며,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서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었음.

- 특히 자녀양육비 중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므로 이를 경감시킬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만이 가족생활의 안정과 출산율 제고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가족관계는 남자가장중심에서 점차 부부중심의 가족관계가 중요시되고 배우자에 대하여 만족하는 수준이 높음을 보였음.

– 또한 과거의 성 역할분담의 행동양식은 감소되고 있어 양성 평등적이고, 능력중심의 균등부담 형태로의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과 많은 남성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가치관의 향수에 젖어 사회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문화적 지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갈등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제2절 정책적 제언

□ 적정 인구규모와 인구구조를 산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출산율을 제시하며, 장·단기 사회정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우리 사회에서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TFR 2.1)의 70% 수준까지 저하

한 근본 원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혼부인의 소자녀관 정착과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또는 기피현상이 병존한 결과이며, 최근에는 후자가 더욱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점차 서구화,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미혼남녀의 결혼가치관을 변화시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가족형성에 대한 관심을 증대토록 하여야 할 것임.

– 미혼여성의 자아성취를 위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결혼이 경제활동에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자녀양육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육정책의 내실화, 출산휴가기간의 확대, 육아휴직의 활성화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부인이 주로 담당하는 가사역할이 양성 평등차원에서 분담되어 자녀양육이 부인의 몫으로 되는 현실을 타파하여야 함.

- 가사를 지원하는 자세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가사를 분담하려는 남편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범정부차원의 기구를 설치하고 다양한 정책의 개발 및 추진하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환류시키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저출산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한, 두개 부처에 국한될 수 없으며, 전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

□ 인공임신중절, 사산, 자연유산 등으로 많은 임신이 소모되고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전·후 관리, 피임실천의 효율화, 피임보급 및 관리의 사각지대와 비효율적 피임방법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임신소모감소를 위한 청소년 성교육의 강화, 산전·후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질적 강화 등이 요구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흡연, 음주의 위해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함.
  - 특히 이러한 행위는 임산부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할 것임.
- 학교교육을 통한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이에는 피임사용의 효과적 방법,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청소년에 대한 제한적 형태의 피임보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는 최근 만연되고 있는 성 개방 물결로 인한 혼전임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임신의 대부분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기 때문임.
-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실패임신을 예방하고 피임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피임목적에 적합한 피임방법의 선택과 정확한 피임실천에 대한 홍보·계몽, 상담 등이 강화되어야 함.
- 부부의 성생활 행태에 따라서는 일시적 피임방법보다는 효과가 높은 정관수술 및 난관수술과 같은 영구피임방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실패임신을 예방하고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것임.
-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고연령층 부인의 임신은 양적으로는 많지 않을지라도 임신이 될 경우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들 연령층 부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음.
  - 저소득층 고연령 부인에게는 피임기구의 무료보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남자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관수술 또는 콘돔에 의한 피임수용이 많다는 의미임.
  - 따라서 콘돔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계몽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성병 및 에이즈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기혼부인의 부정적 태도가 그들의 개별행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양성 평등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하며, 태아 성감별의 불법의료행위의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남아선호가치관은 단기간에 근절될 수 없는 전통적 의식구조에 기인되는 것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사회지원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가족 및 사회에 잔존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부장제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하겠음.
- 태아 성감별과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부정적 행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을 강화하여야 함.
- 태아성감별,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 등 불법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관련단체의 자율적인 자정노력 및 감시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이러한 의료행위를 요청하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쌍벌죄(雙罰罪)를 도입하는 것임.

□ 산전 및 산후 수진의 질적 향상, 저체중 및 과체중 출생아 예방, 자연분만의 증대, 모유수유율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인구자질향상을 위해서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함.

- 자녀를 원하는 부인에 대하여는 임신여부에 불문하고 '행동준칙'의 제공으로 홍보·계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임산부에 대하여는 산전수진의 내용을 더욱 확대하여 질적 관리를 증대하여야 함.
- 증가하고 있는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왕절개의

분만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일본의 경우처럼 분만을 의료수가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비의학적인 이유에 의한 제왕절개의 시술비용의 본인부담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저체중아의 출생으로 인한 신생아 및 영유아기의 사망과 질병이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고위험부인군을 집중 대상으로 저체중아의 출생방지를 위한 홍보·계몽이 강화되어야 함.

–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시기가 20대에서 30대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자연유산이나 기형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임신기간 중 기형아 검사, 출산후 선천성대사이상의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임산부와 출산아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영유아의 건강 및 지능발달을 위해서 모유수유율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상호 협조하여야 하겠음.

- 무엇보다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데, 이는 출산휴가기간의 연장과 육아휴직제도의 내실화를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부모봉양에 대한 기혼부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남편과 부인의 부모를 불문하고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음.

– 부모와의 동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노력이 뒤따라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노부모와의 동거시 과감한 세제혜택, 주거지원, 생활비 지원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3세대 이상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주택구조, 특히 아파트 구조도 다양화 되어야 하겠음.

– 비동거 부모에게 제공하는 생계비, 용돈, 기타 물품 등에 대한 소득세 감

면의 혜택이 있어야 하겠음.

- 이는 주거는 떨어져 살면서 경제적 지원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의 노부모 봉양을 지원하는 적절한 방안이라 사료됨.

□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의 내실화, 취학자녀의 방과후 지도 강화, 그리고 자녀양육비 지원 등의 정책이 과감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영유아보육시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요구됨.
  - 이는 우수한 보육교사의 확보, 양질의 프로그램, 안전이 확보된 시설환경 등이 전제조건이라 하겠으며, 특히, 영아보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확충,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됨.

– 취약계층, 농어촌지역 및 소외계층 아동들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자재(PC, 인터넷 통신비, 교재비 등)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함.

–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재능 취미를 계발하고, 예체능 및 기술 교육을 보완하고 인성을 함양함.
  - 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위하여 순회 강사를 확보하고 지역거점학교를 육성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시설인적 자원 및 프로그램의 활용을 극대화함.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 후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준별 보충 수업을 실시함.
  - 학교장의 심의를 거쳐서 학생 및 부모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강좌 내용 및 운영을 결정하며,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보육 및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함.

– 장기대책으로는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 극복 등 사회제도 및 의식을 개혁함.

-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학문분야 평가제도를 개선함.

–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자녀 양육비 세제 감면 확대 등의 추가적인 공제확대는 향후 재정여건과 세제 지원의 실효성 및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대출상환기간을 장기로 전환하도록 하고, 가계안정을 위한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함.

– 아동수당제도를 단계별로 도입하며, 예산한계를 감안하여 출생순위별·소득계층별·연령별 차등지급토록 함.
  - 제1단계는 출생순위로는 셋째 자녀 이상에게만 지급하며, 지급액은 셋째 자녀 이상의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함.
  - 제2단계는 지급대상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지급액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며, 둘째 자녀 이상에게 지급함.
  - 제3단계는 지급대상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첫째 자녀까지 포함하여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안임.

□ 이혼 예방 및 이혼 후 적응 측면에서 가정생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실시와 함께 이혼 전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이혼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즉,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및 결혼, 가족관계에 대한 교과내용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알맞은 결혼관과 새로운 부부의 역할 및 윤리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또한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등 세부적인 기법에 대한 프로그램 개

발 및 실시가 요구됨.

-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가족문제 및 이혼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혼 전·후의 가족관계, 가정생활, 가족문제 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이혼을 고려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혼 전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망됨.
- 이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혼가정의 여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확대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실시가 요구됨.

□ 저출산관의 정착,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가족주기의 전체 및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을 적극 고려한 가족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핵가족화 현상과 함께 가족주기에 있어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연장되고 있어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평등적, 협력적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 최근의 고령화 추세는 가족주기의 후기단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부부 및 여성노인 단독가구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책 확충, 노인성질환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사업 활성화 및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실시 등이 요구됨.

□ 경제적 풍요의 추구, 여성의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증대, 출산부담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가정 및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다양한 취업직종의 개발, 직급별 할당제 실시, 취업연령의 제한철폐 등을 통하여 취업의 문을 넓히고, 직업훈련·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여성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 특히 교육수준에 알맞은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취업희망자와 채용기관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임.
- 기혼부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지역적 균형설치를 기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가정도우미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이 강구되어야 함.
- 현재 채택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와 가정간호휴직제도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 활용도가 매우 낮으므로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통한 내실화로 실질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동 제도가 민간영역, 특히 중소기업까지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세제혜택이 병행되어야 함.

□ 부모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적은 수의 자녀를 둠으로써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양성평등적 문화가 가족 내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상담을 증대시켜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부부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만한 대화를 위한 기술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지배-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인격체로서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관계임을 강조하는 홍보·계몽이 있어야 하겠음.

- 특히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대리성취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과도한 요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한 사회의 인구변동은 제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출산력 변동을 포함한 제반 인구변동은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김승권 외, 2000). 한국사회의 인구정책은 1960년 당시에는 높은 인구증가율과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여 가족계획사업에 중점을 둔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인구정책의 효시라 하겠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연평균 8%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의 향상, 교육수준의 향상, 가족계획사업의 목표달성 등에 힘입어 합계출산율은 1960년의 6.0명에서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함으로써 약 2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출산율 안정을 기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군다나 사회경제적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치관 변화와 삶의 양식의 변화가 계속되어 합계출산율은 1987년에 1.6명으로 저하되었다. 이 수준은 서구 선진국의 출산율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88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 오던 가족계획사업의 물량을 대폭 축소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피임보급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출산율 전환은 불과 25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룩된 것으로 서구 선진국에서 100여 년이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높은 성과로 평가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합계출산율이 서구 선진국 수준에서 장기간 안정을 유지하게 되자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노동력 부족과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부담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난 출생성비의 불균형,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등 인구자질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인구정책이 인구증가억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94년 12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96년 6월 그간 추진되어온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철폐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책의 기본구상은 종래의 인구증가억제에 역점을 두어온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의 증진, 성비불균형의 시정,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성병 및 AIDS의 예방, 청소년 성문제의 예방 등에 의한 인구자질의 향상에 두는 것이었다. 가족계획사업의 추진방식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되 사업초기부터 답습되어온 정부지원에 의한 무료피임보급은 저소득주민 등의 취약계층에 국한하고 일반대상자는 의료보험 및 상업망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소자녀 규범과 피임실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각종 규제 및 보상제도는 폐지하였다. 아울러 출산당사자인 여성과 출산율 저하로 인구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노인을 위한 가족복지측면으로 전환을 꾀하였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면서 인구자질 향상과 가족복지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전환에 대해서 사회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즉, 서구 선진국의 출산력 전환은 사회·문화적 발전과 병행하여 장기간에 걸쳐 성취한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정부의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에 의한 단기간의 성과이기 때문에 정책전환으로 인하여 그 동안 이룩한 높은 피임실천율과 안정된 출산율은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런데 이는 기우(杞憂)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합계출산율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락시키게 되었다. 즉,

1997년 말 IMF 관리체제 하에서의 한국사회에서 결혼연기, 출산연기 등은 가치관 변화와 함께 출산율에 영향을 주어 1999년 1.42명, 2000년 1.47명, 2001년 1.30명으로 낮아졌고, 2002년에는 더욱 낮아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17명에 머물렀다(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연도별 자료).

이와 같은 출산율의 지속적 저하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대량 발생한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 급증, 소득격감, 개인파산, 불투명한 장래 등으로 젊은 연령층의 결혼연기와 기혼부부의 출산기피 또는 출산지연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김승권 외, 2002, 2003). 더군다나 소득수준의 향상,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여 증가, 초혼연령의 상승 등에 기인되어 현재의 저출산 수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일본의 경험을 감안한다면 출산율의 반전(反轉)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즉, 급속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향후 전망되는 부정적 측면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저출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자체재원으로 제한적인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964년 이래 19번째 실시된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첫째, 부인의 임신행태, 출산행태, 피임행태 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최근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단기 인구정책의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임신 및 출산 행태의 변화와 부부의 취업, 가족주기, 자녀양육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고, 출산율 안정화 방안과 가족복지 증진방안을 동시에 모색한다.

셋째, 성비불균형 및 인공임신중절 등 사회병리현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자보건 수준을 분석하여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도래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욕구를 파악하고, 가족관계 강화와 가족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 2 절 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조사방법

본 조사는 본원의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사전 훈련된 전문조사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직접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가구조사와 개인조사로 구분되었다. 가구조사는 연구자에 의하여 표본추출된 조사지역 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주1) 가구조사의 응답자는 가구내의 모든 가구원의 개인특성과 가구의 가족생활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가구원 중에서 가능한 가구주주2) 또는 기혼부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조사는 가구 내에 살고 있는 15~59세 기혼가구조사와 15~4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5~59세 기혼가구조사의 응답자는 가구주나 그 배우자이며, 15~49세 기혼부인 조사의 응답자는 기혼부인 당사자이며, 가구 내 기혼부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인을 만날 수 없어 개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남편, 가구 내 다른 기혼부인, 성인자녀 등을 대리응답자로 하여 조사되었다.주3) 특히, 가치관에 관한 제 내용과 본인이 직접 응답하여야 하는 문항이지만 가구방문시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원이 전화로 직접 설문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출산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와 출산후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에 간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2. 조사내용

본 조사에서는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의 행태, 피임행태, 인공임신중절, 가족 및 자녀가치관 등에 관련된 내용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임신 및 출

주1)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200개 표본조사지역을 추출함.
주2) 가구주는 '가족의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사실상의 가구주'로 정의하였음.
주3) 극히 일부 가구에서 발생하였으며, 남편 또는 시어머니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대리응답자를 통하여 응답을 받아 냄으로써 조사불가 또는 무응답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

산과 관련된 가족보건영역과 가족복지영역에서 주요한 모자보건실태와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의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본 조사는 과거에 실시된 조사자료의 분석결과와 시계열적 비교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인구관련 제 연구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출산력 전환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대응방안과 가족복지의 변화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가구조사

가구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즉, 개인조사에 해당되는 가구가 아닐지라도 가구조사는 수행하게 되므로 가구원과 가구의 특성파악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가구원의 특성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 생년월일, 교육정도 및 졸업여부, 취업여부, 직업직종, 종사상 지위, 혼인상태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출생에 관한 사항

2001년 1월 이후 출생아의 출생년월일, 성, 출생시 모(母)의 연령, 생존여부 및 사망일시, 출생아 및 모의 현 동거여부 및 비동거 이유, 생존기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내용들은 출산율을 산출하는데 중요하므로 출생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3) 가구에 관한 사항

집의 유형, 집의 소유, 가구소득, 저축액, 가구소비, 재산, 부채, 부채의 원인, 경제적 어려운 점, 경제적 자립수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특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가족소유가 아닐 경우 따로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의 세부 내용을 근로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장수혜, 기타 등으로 파악하였다.

나.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은 15~59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응답자 및 배우자의 일반특성과 혼인사항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현 결혼의 결혼시기, 혼인당시 연령, 초혼여부 등이다. 아울러 이혼·별거·사별 가정에 대하여는 해혼시 남편 및 부인의 연령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혼·별거 가정에 대하여는 이혼·별거의 이유, 먼저 제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혼·별거 당시 미성년 자녀의 존재여부, 자녀와의 동거자, 양육비 제공자 등이 조사내용으로 포함되었다.

2)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

현재 초혼인 부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조사문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녀출생에 관한 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자녀혼인에 관한 사항이다. 전자는 첫째와 막내아의 생년월일과 현재 연령, 이들 자녀의 성별에 관한 것이며, 후자는 부인이 출산한 자녀의 첫 결혼과 마지막 결혼에 대한 것으로 혼인자녀와 미혼자녀를 파악하였다. 특히 후자는 자녀의 첫 결혼과 마지막 결혼 당시의 자녀연령과 모(母)의 연령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결혼한 자녀의 기대 혼인시기와 이 때의 부인연령을 포함하고 있다.

3) 응답자와 배우자의 취업에 관한 사항

취업에 관한 사항은 부인의 혼인전 취업에 관한 사항과 응답자 부부의 현재 취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먼저 혼인전 취업에 관한 사항은 혼인직전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직장유형, 그 직장에서의 계속 근무여부, 그만 둔 시기 및 이유 등이다. 이는 여성들이 결혼을 전·후하여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율 변화와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다.

현재의 취업에 관한 내용으로는 부부의 취업여부, 현 직장의 총취업기간, 종사상 지위, 직장유형, 주당 평균근무시간, 지난 3개월 월평균 근로소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을 하고 있는 부인에게는 일을 하는 이유, 일에 대한 만족도,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 일의 계속 여부 등이 조사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부인에게는 향후 취업을 원하는지의 여부,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 그리고 향후 취업을 원하지 않는 부인에게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등을 조사문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조사에서 취업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출산의 장애요인이 취업이거나 취업의 장애요인이 출산이기 때문이다. 즉, 기혼부인의 취업은 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조사문항에 포함되었다.

4) 가족부양

가족부양에 관한 사항은 응답자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도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부양의 조사문항으로는 응답자와 배우자의 부모 생존여부, 동거여부, 부모의 연령, 부모의 혼인상태,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취업여부 등이다.

특히 비동거 부모인 경우 지난 1년간 만난 빈도와 연락빈도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본 영역의 핵심인 지난 1년간 부모와 주고받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도움에 대하여 월 몇 회인지, 월 금액 등이 조사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러한 도움은 제공한 것인지, 받은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였다.

5) 가치관 및 가족관계

가치관 및 가족관계는 혼인, 이혼, 재혼에 관한 태도와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도,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등으로 구분되어 조사문항이 개발되었다. 혼인, 이혼, 재혼에 관한 태도는 수용도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자녀가치관은 자녀의 필요성, 이상자녀수 등을, 그리고 남아선호가치관은 아들의 필요성과

그 이유, 이상자녀수의 성별 구분 등을 조사문항에 포함하였다.

부부관계에 대한 조사문항은 한부모가정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주요 문항으로는 가사분담, 부부권력관계 등이다. 특히 부부권력관계는 일상생활비 지출,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등에서의 최종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배우자의 이해도,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량, 성생활, 배우자의 가사량,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간의 대화, 부부간 문화생활, 부부관계 전반적 만족도 등으로 조사문항이 구성되었다.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양육태도, 자녀양육에서의 부모책임, 자녀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조사문항이 구성되었다. 특히 자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자녀와의 대화정도, 자녀와의 문화생활, 부모의 의견 및 기대 충족여부, 자녀관계 전반적 만족도 등이 조사문항이다.

6) 가족생활의 질

가족생활의 질은 가정행복을 위한 중요한 요인, 1년 전과 비교하여 가족생활의 변화, 나빠진 경우에는 그 이유, 가족의 사회적 지위, 전반적 가족생활의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등으로 조사문항이 구성되었다. 특히 가정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에는 가정에서 응답자의 지위와 역할, 가사노동 분담정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 가족의 의식주 수준,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가족원의 건강수준, 인생에서의 성취정도 등의 조사문항을 포함하였다.

7) 가족정책

가족기능약화에 대한 책임소재, 우선 가족정책, 건강가족의 조건, 건강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우선정책 등이 조사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은 15~4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는 크게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과 피임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1)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

이 영역은 기존의 조사자료와 시계열적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하므로 기존의 틀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였다. 주요 조사문항으로는 현존자녀수, 임신횟수, 정상출생횟수, 사망자녀수, 자연유산 및 사산횟수, 인공임신중절 횟수 및 수용이유, 현 임신여부 및 출산계획, 2001년 이후의 임신 및 출산기록표, 향후 출산계획 등이다.

임신 및 출산기록표의 주요 문항은 임신시기, 원한 임신인지의 여부, 임신당시 피임여부, 임신종결형태, 임신종결시기 등이다. 또한 남아출산을 위하여 임신전·후에 노력한 경험여부 및 노력유형을 조사문항에 포함하였다.

2) 가족계획실태(피임실태)

이 영역은 15~44세 유배우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의 조사자료와 시계열적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하므로 기존의 틀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였다. 주요 조사문항으로는 피임실천여부 및 목적, 피임수용방법 및 이유, 피임방법의 만족여부, 현 피임방법의 계속사용여부 및 원하는 변경방법, 현 방법의 사용시기, 비용부담 또는 구입처, 과거 사용한 피임방법 및 중단이유, 피임무경험 이유 및 향후 계획 등이다.

라.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는 크게 산전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1) 산전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

2001년 이후 출생아 중 최종아에 대한 산전진찰여부 및 횟수, 출산장소, 분만형태, 제왕절개의 권유자 및 이유, 최종 출생아의 임신기간, 아기 체중, 저체중 이유 등이 조사문항으로 포함되었다.

2)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최종출생아의 산후진찰여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이 주요 조사문항이다. 특히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경험여부, 비용 및 부담형태, 검사항목수 등이 포함되었다.

3) 수유에 관한 사항

최종출생아의 모유수유, 인공유(분유) 수유 등을 기록표에 의하여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혼합유도 파악하도록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혀 모유수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조사문항에 포함하였다.

제 3 절 출산력관련 조사의 연혁 및 특성 변화

출산력 및 피임, 가족보건 등과 관련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는 이번에 앞서 이미 17회나 이루어졌다. 최초의 조사는 1964년에 실시되었으며, 1970년대 말부터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이들 조사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의 발전과 함께 그 특징이 다양하게 변하여 왔다.

1960년대 전반에 실시된 조사(1964~67년)에서는 가족계획의 지식, 태도 및 실천(KAP)과 출산행태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가족계획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해 1967년 조사부터는 「출산기록표」에 의한 출산력과 피임수용실태 및 그 부작용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어서 1970년대 조사의 특징은 그간의

인구증가억제정책 및 가족계획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부인의 취업, 모유수유 및 출산계획 등의 조사내용이 추가·보완된 점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표 1-1〉 한국에서의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관련조사의 연혁

연대	조사년도	조사명칭
1960년대 (5회)	1964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
	1965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
	1966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
	1967	전국 가족계획 및 출산력조사
	1968	전국 출산력조사
1970년대 (6회)	197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73	가족계획종합실태조사
	1974	한국 출산력 조사
	197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78	가족계획 및 출산력실태조사
	1979	피임보급실태조사
1980년대 (3회)	1982	전국 가족보건실태조사
	198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8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0년대 (3회)	199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00년대 (2회)	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1980년대 조사는 1982년부터 3년 간격으로 3회가 실시되었는데, 정부가족계획사업의 특성 및 정책변화와 함께 종래의 조사에 소자녀 규범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규제 및 보상제도에 대한 인지도, 홍보·계몽,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등에 관한 항목이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1990년대에 3회 실시된 조사는 그간의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에 힘입어 저출산율과 높은 피임실천율이 유지되고 있는 여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종전의 조사내용에 추가하여 출산력 저하가 우리 사회와 가족 및 개인에게 미

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혼부인의 취업과 역할변화, 가족 및 노인문제 등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 조사는 단순히 피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내용에 치중되었고, 1970년대 조사는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출산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1980년대 조사는 피임 및 출산 관련 내용에 추가하여 모자보건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조사는 출산력 전환과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실시된 두 번의 조사는 1990년대의 조사내용 특성에 더하여 지속적인 저출산의 원인규명과 그 대책강구 및 원인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가족복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화되었다. 이는 출산율 저하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그리고 가족복지의 미흡에 기인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 4 절 표본설계 개요

1. 기획단계 결정 사항

가. 표본규모

최근의 출산력 감소에 따른 조사가구수의 증가를 고려할 수 있으나 주어진 예산을 감안하여 전체 표본조사수를 200개 조사구로 하고 조사구 당 가구수는 80가구로 하여 약 16,000가구를 조사대상 가구로 하였다.

나. 표본조사구 추출 모집단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자료에서 본 조사의 조사구로 적합하지 않은 시설조사구(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관광호텔)를 제외한 일반조사구 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의 총조사구수는 249,553개

조사구이며 총가구수는 14,331,807가구로 집계되었다.

2. 표본추출 방법

가. 모집단 자료의 정렬

모집단 자료를 3개의 층인 (1) 7대 시의 동·읍면, (2) 기타 시의 동, (3) 군의 읍·면으로 층화한 후 각 조사구의 주된 주택 특성에 따라 4가지의 주택형태로 분류하였다. 이들 유형에는 (1) 단독주택 조사구, (2) 아파트 조사구, (3) 연립 및 다세대주택 조사구, (4) 기타 조사구 등이다. 또한 각 조사구별로 가임여성(15~49세) 수를 집계하여 표본추출 보조변수로 활용하고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별 가구수를 10로 나누어 크기의 측도(MOS; Measure of size)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모집단을 정리한 후 행정구역번호, 가임여성수, 주된 주택형태 순으로 정렬하였다.

나. 표본조사구의 추출

각 층별 표본조사구수는 층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도록 하되 군의 읍·면 지역은 출산력이 감소하고 가임여성수가 줄어드는 상황임으로 2배의 가중치를 주었다. 각 층에서의 조사구 추출은 조사구별 가구수에 대한 크기의 측도에 의한 확률비례로 추출하였다. 전체 200개 조사구에서 그동안의 조사구의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서 194개 조사구를 추출한 결과 7대 시에 76개 조사구, 기타 시에 51개 조사구, 읍·면 지역에 67개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당 평균 가구수는 약 57가구가 됨으로 조사구당 80가구가 조사되기 위해서는 추가조사 가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가조사 가구를 위하여 추출된 표본조사구 다음에 오는 조사구를 뽑아서 조사구별로 시작거처를 순환시키면서 가구수를 추가하여 80가구가 되도록 하였다.

〈표 1-2〉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의 표본조사구 추출

구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수	가구수	크기의 측도(MOS)	가중치	조사구 추출확률	표본 조사구수
(1) 7대 시의 동	120,554	6,841,769 (47.8)	688,319 (47.8)	1	1/1,586	76
(2) 기타 시의 동	77,667	4,527,221 (31.6)	456,918 (31.7)	1	1/1,523	51
(3) 군의 읍·면	51,332	2,942,817 (20.6)	297,025 (20.5)	2	1/766	67
계	249,553	14,331,807 (100.0)	1,444,262 (100.0)		1/1,286	194

다. 신축아파트 표본조사구의 추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에 발생한 조사구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축된 아파트에서 추가로 표본을 추출하였는데, 대상은 2001년 1월~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신축된 아파트 652,093가구 중에서 80가구를 묶어서 6개 조사구를 신축아파트 표본조사구로 선정하였다. 신축아파트의 가구수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의 약 4.6%에 해당된다. 동일지역에 재건축된 아파트 등을 감안하여 전체 200개 조사구에서 6개 조사구를 신축아파트에 배분하고 3개의 층별 신축아파트 가구수에 비례하여 7대시에 3개, 기타 시 2개, 군의 읍·면에 1개의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할당하였다.

〈표 1-3〉 신축아파트의 표본조사구 추출

구 분	가구수[1)]	크기의측도[2)] (MOS)	신축아파트 표본조사구수
(4) 7대 시의 동	302,655(46.4)	30,266(46.4)	3
(5) 기타시의 동	245,103(37.6)	24,510(37.6)	2
(6) 군의 읍·면	104,335(16.0)	10,433(16.0)	1
계	652,093(100.0)	65,209(100.0)	6

주: 1) 2001. 1~02. 12. 31까지의 신축아파트 가구수
2) 가구수를 10으로 나눔.

3. 추정방법

조사결과의 각종 통계치는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를 사용하였다. 이는 조사구의 추출된 확률이 동일하지 않고 미방문가구율 및 조사미완율이 조사구마다 다르기 때문이며, 조사결과의 가구수의 가중표본합계치는 전체 조사완료가구수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 가구조사 결과의 가중표본합계치

어떤 특성 XY를 갖는 가구수 및 인구수에 대한 가중표본합계치는 조사완료된 가구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① 가구총수 추정용 승수

$$M_{hi} = \frac{S_h}{n_h S_{hi}} \quad \frac{A_{hi}}{A_{hi}'} \quad \frac{A_{hi}'}{B_{hi}}$$

$$= \frac{S_h}{n_h S_{hi}} \quad \frac{A_{hi}}{B_{hi}}$$

이 공식에서

M_{hi} = 가구총수 추정용 승수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 9

i =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n = 표본조사구수

S = 가구수 크기의 측도

A = 조사결과 조사구내 총가구수(미방문가구수 포함)

A' = 방문가구수

B = 가구조사 완료가구수

② 공식 (1)의 승수를 조사구별 조사완료 가구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모집단의 총가구수를 추정한다.

$$\hat{B} = \sum_{h}\sum_{i} M_{hi} B_{hi} \qquad (2)$$

③ 조사완료가구수를 집계

$$B = \sum_{h}\sum_{i} M_{hi} B_{hi} \qquad (3)$$

④ 공식 (2)의 총가구수 추정치를 (3)의 조사완료 가구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1)의 총수 추정용 승수를 가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한다.

$$W_{hi} = M_{hi} \left(\frac{B_{hi}}{\widehat{B_{hi}}}\right) \qquad (4)$$

⑤ 공식 (4)의 승수를 조사완료 가구수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표본합계치를 산출한다.

$$\hat{Y} = \sum_{h}\sum_{i} W_{hi} Y_{hi} \qquad (5)$$

이 공식에서

$\hat{Y}$ = 어떤 특성 Y를 갖는 가구수(인구수)의 가중표본합계

Y = 특성 Y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가구수(인구수)

나. 부인조사결과의 가중표본합계치

부인조사 결과에서 어떤 특성 XY를 갖는 부인수의 가중표본합계치는 조사완료된 부인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⑥ 부인총수 추정용 승수 산출은 가구승수에 부인조사 조사미완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M_{hi} = W_{hi} \frac{C_{hi}}{C_{hi}'} \frac{C_{hi}'}{D_{hi}}$$

$$= W_{hi} \frac{C_{hi}}{D_{hi}} \qquad (6)$$

eM_{hi} = 부인총수 추정용 승수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3, ……, 6

i =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n = 표본조사구수

C = 조사결과 조사구내 총부인수(미방문부인수 포함)

C' = 방문부인수

D = 부인조사 완료 부인수

⑦ 공식 (6)의 승수를 조사구별 조사완료 부인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모집단의 총부인수를 추정

$$\hat{D} = \sum_h \sum_i eM_{hi} D_{hi} \qquad (7)$$

⑧ 조사완료부인수를 집계

$$D = \sum_h \sum_i eM_{hi} D_{hi} \qquad (8)$$

⑨ 공식 (7)의 총부인수 추정치를 (8)의 조사완료 부인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6)의 부인총수 추정용 승수를 부인가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

$$eW_{hi} = eM_{hi} \left(\frac{D_{hi}}{\widehat{D_{hi}}}\right) \qquad (9)$$

⑩ 공식 (9)의 가중치를 조사가 완료된 부인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표본합계치를 산출

$$\hat{X} = \sum_{h} \sum_{i} eW_{hi} \; X_{hi} \qquad (10)$$

이 공식에서

$\hat{X}$ = 어떤 특성 X 를 갖는 부인수의 가중표본합계치

X = 특성 X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부인수

제 5 절 현지조사 및 자료처리

1. 현지조사의 준비 및 지도·감독

가. 조사준비절차

1) 조사원 모집

조사원 모집방법은 당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공고와 종전에 수 차례 연구원의 조사를 수행해 온 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통보를 병행하여 활용되었다. 접수된 조사원의 이력서는 연구진에 의하여 검토되었으며 조사원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조사원에 대한 면접은 엄격한 심사와 배점을 거쳐 성적순으로 선발되었다. 연구진은 당초 본 조사를 위해 60명의 조사인력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전문조

사원의 부족, 저렴한 인건비와 장기간의 지방출장, 그리고 본 조사의 어려움을 인식한 일부 조사원이 교육과정에서 탈락하여 최종 선발된 인원은 지도원 12명과 조사원 36명으로 전체 48명이었다.

2) 조사원 훈련

조사원에 대한 훈련은 당 연구원 대강당에서 당 연구진에 의해 2일간 실시되었다. 조사원 훈련을 위해 개발된 조사표, 조사지침서, 양·음력 환산표, 가구명부, 조사지역 요도 등이 활용되었으며, 이들 자료는 조사표와 함께 현지조사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3) 조사팀 구성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48명의 조사인력은 12개 팀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팀은 지도원 1명과 조사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과거조사에서도 많은 유사한 경험을 하였지만 특히 조사팀을 4명으로 구성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한 조사지역은 약 80 가구이기 때문에 1명의 조사원이 하루에 약 5~6 가구를 완료한다고 예상할 때 조사팀을 4명으로 할 경우 한 지역을 완료하는데는 약 3일 정도 소요된다. 이 기일은 한 조사지역의 구조와 특징을 익히고 조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가구원이 부재중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사원은 몇 차례까지도 재방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 조사지역에 최소한 4일 정도는 체류를 하여야 조사미완율을 낮추고 조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

둘째, 본 조사는 약 16,000가구가 조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여건에서 조사기간이 2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부득이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 이외 지방에서의 조사기간도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조사원의 이동, 숙박 등을 고려할 때 조사팀당 4명이 가장 적절하다.

셋째, 각 조사팀의 인원이 소수일 경우 많은 지도원이 필요하며 실제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늘어나야 하고, 따

라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넷째, 본 조사에서는 조사표의 오류를 해당 조사지역에서 수정·보완하여야 하므로 지도원과 조사원간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며, 지도원이 조사완료된 조사표를 해당지역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사원 3명이 가장 적당한 규모이다.

나. 현지조사의 운영 및 지도·감독

현지조사는 약 3개월간 이루어졌으며, 2003. 5. 12~8. 16일 기간 중 실시되었다. 특히 조사초기단계에서는 연구진에 의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기 설정된 조사지역의 확인 및 조사지역 내 가구의 증감상태 등은 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점적 확인사항이었다. 또한 지도원과 조사원의 원만한 관계, 조사팀과 조사지역 행정기관 및 주민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요청이 이루어졌다.

현지조사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부인들이 주간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많은 조사원들이 주간에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자의 소재와 약속시간을 정한 후 야간에 재방문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 조사자료 처리

조사완료된 자료는 일차적으로 현지에서 지도원에 의해 오류수정을 하였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는 완벽한 작업을 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완료한 후 일부 지도원과 조사원에 의하여 약 3개월간 오류수정과 부호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인력은 모두 조사에 참여한 지도원과 조사원으로 구성되었다. 오류수정작업과 부호화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본 조사를 실제로 실시한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동 작업은 사전에 연구진에 의해 작성된 「부호화 지침서」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특히 작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1일간의 사전교육이 실시되었다.

부호화 작업이 완료된 조사자료는 입력요원에 의하여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

졌다. 종전과 달리 동 작업은 외부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되지 않고 연구진이 숙련된 입력요원을 채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아 외부에서 이를 수행한 경우 입력과정에서의 오류가 많이 발생되어 전산화된 자료의 오류수정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전산화된 조사자료는 연구진에 의해 정확도가 검증되었고, 전산화된 자료의 정확한 수정을 위해 전 연구진과 4명의 전문 자료정리요원이 투입되었다.

이어서 자료분석을 위한 파일이 재구성되었고, 연구진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진이 주로 활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와 SAS 팩케이지 프로그램이었다.

제 6 절 응답자의 특성 및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가족보건실태 및 가족복지욕구가 다르고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적 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조사의 대상은 15~59세로 조사결과 11,111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동부지역에 82.0%(9,111명), 읍·면부지역에 18.0%(2,000명)가 거주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남자가 9.3%, 여자가 90.7%로 대부분이 여자 응답자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응답자의 성별비율은 동부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읍·면부는 남자가 10.4%, 여자가 89.7%로 동부보다 남자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이 15~44세인 비율은 62.8%였으며, 45~49세는 15.9%, 그리고 50~59세 연령층은 21.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에는 젊은 연령층이, 읍·면부지역에는 50세 이상의 장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1-4〉 지역별 15~59세 응답자의 특성

(단위: %)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성			
남자	9.3	9.0	10.4
여자	90.7	91.0	89.7
연령			
15~24세	1.1	1.1	1.0
25~29세	7.4	7.3	8.0
30~34세	15.6	16.1	13.5
35~39세	19.0	20.1	14.1
40~44세	19.7	20.3	17.2
45~49세	15.9	15.9	15.9
50~54세	11.6	10.7	15.7
55~59세	9.7	8.6	14.7
결혼상태			
유배우	88.7	88.6	89.1
이혼	5.7	6.1	3.7
별거	1.5	1.7	0.9
사별	4.1	3.7	6.2
교육수준			
무학	1.6	1.1	3.8
초등학교	13.8	10.6	28.2
중학교	16.2	15.5	19.8
고등학교	44.4	45.8	37.9
대학 이상	24.0	27.0	10.3
현취업여부			
취업	54.6	51.1	71.0
비취업	45.4	48.9	29.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18.8	18.9	18.7
배우자	81.2	81.1	81.4
기타	0.0	0.0	-
계	100.0	100.0	100.0
(수)	(11,111)	(9,111)	(2,000)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88.7%가 유배우이었으며, 사별 4.1%, 이혼 및 별거는 7.2%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유배우가 차지하는 비율과 사별인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읍·면부 지역(유배우 89.1%, 사별 6.2%)이 동부지역(유배우 88.6%, 사별 3.7%)보다 높은 반면, 이혼 및 별거인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부지역(7.8%)이 읍·면부지역(4.6%)보다 높았다.

교육수준별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인 44.4%의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대학 이상의 학력이 24.0%로 나타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8.4%나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읍·면부지역의 응답부인보다 훨씬 높았다. 즉,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동부지역에서는 27.2%인데 비하여 읍·면부지역에서는 51.8%나 되었고, 반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동부지역 72.8%, 읍·면부지역 48.2%로 현저한 학력격차를 보였다.

응답자의 54.6%가 취업하였으며, 취업한 응답자는 읍·면부지역(71.0%)이 동부지역(51.1%)보다 매우 높았는데, 이는 읍·면부지역은 농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81.2%로 높았으며, 가구주 본인인 경우는 18.8%였다. 이는 지역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본 보고서의 통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사항 응답부인 및 남편의 특성, 결혼양상, 가족복지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분석은 전체 가구 또는 15~59세 기혼가구이다.

둘째, 본 조사에서 개인조사는 15~5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임신·출산·피임, 모자보건에 관한 분석은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지역별 구분을 함에 있어 도시와 농촌이 아닌 동부와 읍·면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1996년에 시행된 전국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도시와 농촌으로의 구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부는 도시지역으로, 읍·면부는 농촌지역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넷째, 합계출산율, 연령별출산율, 유배우출산율, 그리고 인공임신중절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전국의 결과만을 게재하고 지역별, 즉, 동부와 읍·면부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1996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동부지역(도시)은 확대되고, 읍·면부지역(농촌)은 더욱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조사는 표본조사인 관계로 읍·면부지역의 응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출생아 한 명 또는 인공임신중절 한 건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통계결과의 제시로 이해를 잘못할 수 있는 지표는 전국 통계치만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각 통계표에는 '무응답' 수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 즉, 제1장과 제2장의 응답자 및 응답가구의 특성 등에서 제시된 수(數)와 각 통계표의 응답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응답자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된다.

제 2 장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제 1 절 가구의 특성

가구는 단순한 거주의 단위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주거집단을 말하며, 가족[주4)]은 혼인, 혈연 및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단위를 말한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가구의 개념은 주거단위를 기초로 동거형태를 이루면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생활공동체로 정의하였다.[주5)]

가구는 인구변천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출생률 및 사망률의 저하에 따라 가족규모, 가구구성, 가족형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인구변동이나 도시화에 따라 가족의 형성과 해체, 가족생활의 유형, 가족형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태환 외, 1995).

본 절에서는 인구변천과 사회변동의 결과로써 나타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구의 규모

최근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의 진전은 가구수의 증가현상과 함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윤종주, 1994). 가구규모의 변동추이를 연도별로 비교하면 4명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주4) 가족은 주거, 생계 또는 혈연관계에 따라 개념을 달리하는데, 최재석(1985)은 가족을 가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친족집단으로 보며, 김두헌(1985)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하는 생활공동체로정의하고 있음.

주5) 이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규정하는 가구개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한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로 규정하고 있음(통계청, 1997).

즉, 4명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1966년 36.0%, 1995년 81.7%, 2000년 86.6%이었으며, 본 조사의 결과인 2003년에는 88.9%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5명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1966년에 64.0%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1995년에는 18.3%, 2000년 13.4%, 그리고 2003년에는 11.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지난 30년 동안의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5명 이상의 가구는 52.8%포인트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표 2-1〉 연도별 가구원수별 분포(1966~2003년)

(단위: %)

가구원수	1966[1)]	1975[2)]	1985[3)]	1995[4)]	2000[5)]	2003[6)]
1명	2.8	4.2	6.9	12.7	15.5	16.7
2명	7.7	8.3	12.3	16.9	19.1	22.8
3명	11.5	12.3	16.5	20.4	20.9	20.1
4명	14.0	16.1	25.3	31.7	31.1	29.3
5명 이상	64.0	59.1	39.0	18.3	13.4	1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03년은 조사완료된 15,758가구를 분석한 것임.

자료: 1) 경제기획원, 『1966년도 인구센서스 보고』 제1권, 전국편, 1969.
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5년도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제1권, 전국편, 1977.
3) _____, 『1985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제1권, 전국편, 1987.
4) 통계청,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전국편, 1997.
5) 통계청,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전국편, 2001.
6) 본 조사결과

이와 같은 가구원수 분포의 변화는 평균 가구원수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966년 5.5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5년 이후 3.3명으로 저하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 3.1명, 2003년에는 3.0명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 평균 가구원수는 동부지역이 1966년 5.1명, 1995년 3.4명, 2000년 3.2명, 그리고 2003년에는 3.1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며, 읍·면부지역은 1966년 5.7명, 1995년 3.1명, 2000년 3.0명, 그리고 2003년

에는 2.6명으로 나타나 큰 폭으로 저하하였다. 따라서 1966~2003년 동안의 가구원수는 동부지역이 39.2%의 감소에 그친데 비하여 읍·면부지역은 54.4%나 감소되어 읍·면부지역의 가구원수 감소 속도가 동부지역보다 현저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2 참조).

이와 같이 읍·면부 지역의 가구규모의 축소는 저출산과 젊은 층의 대규모 이촌향도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농촌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이동은 도시의 미혼 1인 가구증가와 동시에 농촌의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복지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전체 노인 부양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표 2-2〉 연도별 평균 가구원수(1966~2003년)

(단위: 명)

지역	1966	1975	1985	1995	2000	2003
전국	5.5	5.0	4.1	3.3	3.1	3.0
동부	5.1	4.8	4.0	3.4	3.2	3.1
읍·면부	5.7	5.3	4.2	3.1	3.0	2.6

자료: 〈표 2-1〉 과 동일.

2. 가구주의 특성

가구주는 가구를 대표하며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주6)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가구주로 하였다.

본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는 남성 81.3%, 여성 18.7%로 여성가구주 비율은 2000년도의 17.3%보다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주7), 통계청의

주6) 통계청의 정의를 보면,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하고 있음(통계청, 2001). 다른 정의에 의하면,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하기도 함(통계청, 2000).

2000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인 남성가구주 가구 81.5%, 여성가구주 가구 18.5%와 비교하여도 여성가구주 가구가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이혼 및 별거, 사별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최근 우리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가구주의 성별 구성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는데, 여성가구주 비율은 읍·면부지역(21.8%)이 동부지역(17.8%)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읍·면부지역에 여성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구주의 결혼상태는 유배우가 73.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사별은 11.3%, 이혼·별거는 6.0%, 그리고 미혼은 9.2%였다. 이는 통계청의 2000년「인구 및 주택총조사」에서 전국 가구주의 결혼상태별인 유배우 75.0%, 사별 10.9%, 이혼 3.9%, 미혼 10.2%와 비교할 때 유배우 가구주는 약간 감소한 반면, 사별 및 이혼 가구주 등의 해체가족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배우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았고(동부 74.4%, 읍·면부 70.6%), 사별은 읍·면부지역(20.5%)이 동부지역(8.6%)보다 매우 높았다. 반대로 이혼·별거는 동부지역(6.7%)이 읍·면부지역(3.3%)보다 높았고, 가구주가 미혼인 경우는 동부지역(10.3%)이 읍·면부지역(5.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혼가구와 이혼·별거가구의 비율은 도시지역에서 높고, 사별가구는 농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미혼가구는 교육이나 취업 등을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읍·면부지역보다 동부지역에 많고, 이혼·별거 가구 또한 읍·면부지역보다 동부지역에서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별가구는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에 고령층의 인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연령별 가구주 비율은 30대와 40대가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52.6%를 차지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주의 비율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다수의 노인이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능력의 저하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 질 수 있는 기혼자녀가 가구주가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7) 2000년 13,42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가구주는 82.7%, 여성가구주는 17.3%의 분포를 보였음(김승권 외, 2000).

〈표 2-3〉 가구주의 일반특성

(단위: %, 세)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성			
남자	81.3	82.2	78.2
여자	18.7	17.8	21.8
결혼상태[1]			
미혼	9.2	10.3	5.6
유배우	73.6	74.4	70.6
이혼·별거	6.0	6.7	3.3
사별	11.3	8.6	20.5
연령			
15~19세	0.3	0.3	0.5
20~29세	6.9	7.5	4.7
30~39세	23.8	26.3	15.3
40~49세	28.8	31.4	19.5
50~59세	17.3	17.0	18.3
60~69세	14.3	11.6	23.3
70세 이상	8.7	5.9	18.4
계	100.0	100.0	100.0
(수)	(15,758)	(12,231)	(3,527)
평균연령	47.9	46.1	54.2

주: 1)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함.

가구주 연령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40대 이하의 가구주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50대 이상은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동부지역에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구주비율이 낮아졌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가구주비율은 읍·면부지역(60대 23.3%, 70대 18.4%)이 동부지역(60대 11.6%, 70대 5.9%)보다 매우 높아 젊은 층의 지속적인 이농으로 읍·면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6.1세이었고, 읍·면부지역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4.2세로 읍·면부지역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동부지역보다 약 8세가 높았다. 이는 2000년

에 조사한 가구주의 평균연령보다 동부지역 1.3세, 읍·면부지역 1.2세 상승한 것이다.주8)

3. 가구원의 특성

일반적으로 가구는 구성원의 성, 연령, 결혼상태에 따라 가구의 형태, 성비, 부양부담 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점에서 가구 구성원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사완료된 가구의 총가구원수는 47,147명으로 동부지역에 80.5%, 읍·면부지역에는 19.5%가 거주하였다. 남성은 동부지역에 80.8%, 읍·면부지역에 19.2%가 거주하였고, 여성은 동부지역에 80.1%, 읍·면부지역에 19.9%가 거주하여서 남성이 여성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2-4 참조).

가구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여성가구원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남성 48.7%, 여성 51.3%)주9),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 보다 여성가구원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었다(표 2-5 참조). 이는 젊은 층의 이농향도에 따른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평균수명의 성별격차로 인해 농촌지역에 사별한 여성노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2-4〉 성별 가구원의 거주지역 분포

(단위: %)

구분	동부	읍·면부	계(수)
전체	80.5	19.5	100.0(47,147)
남자	80.8	19.2	100.0(22,944)
여자	80.1	19.9	100.0(24,203)

주8) 2000년의 가구주 연령은 동부지역 44.8세, 읍·면부지역 53.0세로 나타났음(김승권 외, 2000 참조).

주9) 2003년 조사와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총 가구원 46,136,101명 중 남성가구원이 50.2%(23,158,582명), 여성가구원이 49.8%(22,977,519명)인 것과 비교할 때, 본 조사결과는 2000년에 비해 남성가구원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여성가구원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5〉 지역별 가구원의 성 분포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계(수)
전국	48.7	51.3	100.0(47,147)
동부	48.9	51.1	100.0(37,941)
읍·면부	47.8	52.2	100.0(9,206)

제 2 절 가족의 특성

인구변동의 결과로써 가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가족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다. 특히 가족이 갖는 세대별 및 형태별 특성은 최근 여성취업의 증대,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문제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적 변화와 맞물려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위하여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서구화 등의 영향에 의한 인구변동과 함께 나타나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세대별 가족유형

앞에서 살펴본 가구규모의 축소는 가족의 세대구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가족유형의 변동추이를 보면, 1세대 가족은 점차 증가하는 데 비해 3세대 이상의 가족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세대 가족도 1980년대 중반부터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2세대 가족으로 나타나서 핵가족이 일반적인 가족형태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연도별 세대별 구성 비율(1966~2003년)

(단위: %)

세대구성[1]	1966	1975	1985	1995	2000	2003
전국						
1세대	8.1	10.9	16.8	25.7	30.1	33.5
2세대	67.8	68.9	68.1	64.2	61.4	57.8
3세대 이상	24.1	20.2	15.1	10.1	8.5	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동부						
1세대	10.9	12.8	16.5	22.7	27.0	29.0
2세대	73.4	72.9	71.2	68.1	65.2	62.9
3세대 이상	15.7	14.3	12.3	9.3	7.8	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읍·면부						
1세대	6.5	9.1	17.3	35.9	41.4	48.9
2세대	64.7	64.9	62.1	51.2	47.8	40.3
3세대 이상	28.8	26.0	20.6	12.9	10.7	1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세대에 1인 가구를 포함하였으며, 1975년을 제외한 전체 연도에서 비혈연가구는 제외하였음.
2) 2003년은 전국 15,657가구, 동부 12,155가구, 읍·면부 3,502가구를 분석한 것임.

자료: 〈표 2-1〉 과 동일

가족의 세대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1966년에 8.1%이었던 1세대 가족은 1995년 25.7%, 2000년 30.1%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33.5%로 증가하였다. 반면 3세대 이상의 가족은 1966년 24.1%에서 1995년 10.1%, 2000년 8.5%로 감소하였으며, 2003년에는 8.7%로 약간 증가하였다. 또한 2세대 가족은 꾸준히 감소하여 1966년 67.8%에서 1995년 64.2%, 2003년에는 57.8%가 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 및 읍·면부지역 모두 1세대 가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세대, 3세대 이상 가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동부지역은 2세대 가족이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보인 반면, 읍·면부 지역은 1세대 가족과 2세대 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족의 세대별 구성은 2세대 가족이 주

류를 이루고 있으며, 1세대 가족은 증가하는 반면, 2세대와 3세대 가족은 점차 감소하였다. 특히 읍·면부지역에서 1세대 가족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농촌지역 노인층의 부양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 형태별 가족유형

일반적으로 가족형태의 분류는 세대별 가족유형과의 복합적인 관계에서 구분된다. 본 조사에서는 가족을 2인 이상의 혈연가구로 구성된 핵가족, 확대가족, 기타친족 등을 포함하는 친족가구를 말하며, 이외에 1인가구, 비혈연가구를 비친족가구로 분류하였다. 친족가구 중 핵가족은 1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과 2세대인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그리고 편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확대가족은 부부와 부모, 부부와 편친 등과 같이 2세대로 구성되었거나 부부와 자녀 및 부모나 편친 등으로 구성된 가족을 모두 포함하였다.[주10] 기타 친족가족은 2인 이상의 미혼 형제·자매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포함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를 친족가구와 비친족가구로 나누어 볼 때, 친족가구는 82.9%, 비친족가구는 17.1%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친족가구 중 핵가족의 비율은 83.4%, 확대가족은 8.5%, 기타 친족가구는 8.2%로 구성되어 핵가족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에서 친족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동부지역 84.7%, 읍·면부지역 76.6%), 그중 핵가족의 비율은 동부지역이 높은 반면, 확대가족은 읍·면부지역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비친족가구는 1인 가구가 96.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혈연가구는 3.8%에 불과하였다. 비친족가구의 비율은 읍·면부지역에서 높았으며(동부지역 15.3%, 읍·면부 23.4%), 그중 1인 가구의 비율은 읍·면부지역이 높았고, 비혈연가구는 동부지역이 높았다.

주10) 부부라 함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생존한 경우뿐만 아니라 한 쪽이 사망한 편부 또는 편모의 경우를 포함한 개념임.

〈표 2-7〉 지역별 친족가구 및 비친족가구의 유형별 분포

(단위: %, 가구)

구분	친족가구				비친족가구		
	핵가족	확대가족	기타 친족	계(수)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계(수)
전국	83.4	8.5	8.2	100.0(13,067)	96.2	3.8	100.0(2,691)
동부	84.3	7.7	7.9	100.0(10,364)	96.0	4.0	100.0(1,867)
읍·면부	79.6	11.4	9.0	100.0(2,703)	96.8	3.2	100.0(824)

<표 2-8>은 비친족가구인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친족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족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 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은 68.8%,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21.9%, 그리고 편부모가족은 9.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형태는 동부지역(73.0%)이 읍·면부지역(51.7%)보다 매우 높았으며, 부부가족은 읍·면부지역(41.9%)이 동부지역(17.0%)보다 높았다. 이는 농촌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이동에 따라 농촌에 노인부부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핵가족의 형태별 분포

(단위: %)

구분	부부	부부+자녀	편부모+자녀	계(수)
전국	21.9	68.8	9.3	100.0(10,892)
동부	17.0	73.0	10.0	100.0(8,740)
읍·면부	41.9	51.7	6.4	100.0(2,152)

확대가족의 구성원은 모두 5,132명으로 이들의 연령분포는 19세 이하가 25.4%, 기혼자녀로 볼 수 있는 30～40대가 30.3%였으며, 그리고 60대와 70대 연령층이 각각 10.3%, 14.6%로 나타났다(표 2-9 참조). 이는 젊은 미혼 손자녀와 노인이 동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동부지역보

다는 읍·면부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 농촌지역의 경우 확대가족과 노인부부 또는 노인독신가구 등의 가족형태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9〉 확대가족 구성원의 연령분포

(단위: %)

연령	전국	동부	읍·면부
0~19세	25.4	26.0	23.8
20~29세	9.6	10.6	6.9
30~39세	14.7	15.4	12.6
40~49세	15.6	15.4	16.3
50~59세	9.9	9.1	12.1
60~69세	10.3	10.1	10.7
70세 이상	14.6	13.4	17.7
계	100.0	100.0	100.0
(수)	(5,132)	(3,772)	(1,360)

제 3 절 주거 및 가구경제 실태

일반적으로 가족은 경제생활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의 경제생활은 임신 및 출산 등의 태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 가족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경제생활 현황을 파악하고자 주거형태와 부동산, 동산 등에 의한 재산실태, 그리고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실태, 주관적 경제수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주거실태

가족구성원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주요한 조건의 하나는 '안정된 주거'이다. 어떠한 주거형태에 살고 있으며, 주택의 소유 여부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가구 및 가족특성별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표 2-10>과 같다. 조사대상 가구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45.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36.6%이었다.주11)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에 비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주12) 이는 전국 13,42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동부지역의 경우 59.7%의 비율을 보여 2000년의 46.6%에 비해 13.1%포인트 증가하였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읍·면부 지역의 경우 75.8%로 나타나서 2000년의 76.6%에 비해 0.8%포인트 감소하였다(표 2-10 참조).주13)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과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 그리고 저학력층의 가구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아파트 거주비율은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30~40대의 가구주의 경우, 그리고 고학력층의 가구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생활이 안정적인 가구일수록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며, 향후 일반적 주거형태로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조사대상가구의 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를 보면 전체의 59.3%가 자가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전세 20.4%, 전·월세 11.2%, 월세 3.0%

주11) 2003년 본 조사결과와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국의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49.9%, 아파트 거주비율 36.8%(통계청, 2000)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본 조사결과는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감소하고, 아파트 거주비율은 증가한 것임.

주12)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단독주택 및 아파트 거주비율은 동부지역이 각각 44.0%, 41.9%, 읍·면부지역은 각각 71.5%, 18.3%이었음. 따라서 아파트의 증가는 동부지역 뿐 아니라 읍·면부지역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동안 신규 주택공급이 아파트에 의하여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주13) 2000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부지역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51.2%,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46.6%인 반면, 읍·면부지역은 각각 76.6%, 19.1%이었음(김승권 외 2000).

등이었다.주14) 이는 전국 13,42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2003년에는 2000년에 비해 자가와 전·월세는 각각 8.0%포인트, 1.2%포인트 증가한 반면, 전세와 월세는 각각 9.0%포인트, 2.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주15)

〈표 2-10〉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현 거주주택의 유형

(단위: %)

특성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계(수)
전체	45.4	36.6	7.0	6.7	4.3	100.0(15,741)
지역						
동부	36.6	43.5	8.0	8.2	3.8	100.0(12,217)
읍·면부	75.8	12.8	3.9	1.4	6.0	100.0(3,523)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69.2	18.2	4.6	4.4	3.7	100.0(3,587)
100~199만원	53.3	26.2	8.6	7.3	4.6	100.0(3,870)
200~299만원	36.4	41.7	9.0	8.8	4.1	100.0(3,654)
300만원 이상	26.1	56.7	6.4	6.3	4.6	100.0(4,267)
가구주 성						
남자	42.1	39.3	7.4	7.1	4.2	100.0(12,800)
여자	59.7	25.2	5.7	4.9	4.5	100.0(2,940)
가구주 연령						
15~29세	57.2	23.3	7.4	6.8	5.3	100.0(1,130)
30~39세	29.7	49.9	7.8	9.0	3.7	100.0(3,747)
40~49세	33.5	46.7	8.0	7.1	4.7	100.0(4,526)
50~59세	50.2	31.2	7.4	6.1	5.1	100.0(2,721)
60세 이상	69.2	18.5	4.8	4.0	3.5	100.0(3,619)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이하	73.3	13.9	4.8	4.5	3.5	100.0(3,463)
중학교	55.3	23.6	8.0	8.0	5.2	100.0(1,841)
고등학교	40.1	38.2	8.8	8.1	4.8	100.0(5,451)
대학 이상	28.0	55.5	6.4	6.1	4.0	100.0(4,973)

주14) 본 조사결과와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인 자가소유율 54.2%, 전세율 28.2%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자가소유율은 높아지고 전세율은 다소 낮아졌음.

주15) 2000년 13,42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가소유율이 51.3%, 전세 29.4%, 전·월세 10.0%, 월세 5.5%의 비율을 보였음(김승권 외, 2000).

지역별 자가소유율은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전세율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에 비해 약 3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화에 따르는 인구집중 등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간 주택공급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동부지역은 자가소유 비율은 증가, 전세비율과 전·월세 및 월세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읍·면부지역은 자가소유 비율이 감소하고, 전·월세 및 기타 주거소유 형태의 비율은 증가하였다.주16)주17)

〈표 2-11〉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

(단위: %)

특성	자가	전세	전·월세	월세	기타	계(수)
전체	59.3	20.4	11.2	3.0	6.1	100.0(15,750)
지역						
동부	56.7	24.1	12.5	2.7	4.1	100.0(12,225)
읍·면부	68.5	7.5	6.8	4.0	13.2	100.0(3,525)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58.7	14.3	12.0	5.0	10.0	100.0(3,585)
100～199만원	50.3	22.6	16.8	4.3	6.0	100.0(3,871)
200～299만원	59.4	24.6	9.7	2.2	4.2	100.0(3,655)
300만원 이상	67.5	19.8	6.9	0.7	5.1	100.0(4,275)
가구주 성						
남자	62.8	20.0	9.2	2.6	5.5	100.0(12,805)
여자	44.3	22.0	20.2	4.6	9.0	100.0(2,944)
가구주 연령						
15～29세	14.8	38.8	30.1	8.2	8.1	100.0(1,130)
30～39세	43.4	33.2	13.6	2.5	7.3	100.0(3,749)
40～49세	61.7	18.7	11.5	2.9	5.2	100.0(4,530)
50～59세	73.8	12.3	7.7	2.6	3.6	100.0(2,724)
60세 이상	75.8	9.4	5.3	2.2	7.4	100.0(3,618)

주16) 2000년 전국 가구의 자가, 전세, 기타 소유형태 구성비율은 54.2%, 28.2%, 17.6%이었으며, 동부지역은 49.1%, 32.6%, 18.3%, 읍·면부지역은 72.8%, 12.3%, 14.9%이었음(통계청, 2000)

주17) 2000년 조사결과를 보면, 동부지역은 자가 소유율이 48.4%, 전세 32.1%, 전·월세 10.7%, 월세 5.7%의 분포를 보인 반면, 읍·면부지역은 자가소유율이 72.5%, 전세 9.2%, 전·월세 5.4%, 월세 4.1%의 비율을 보였음(김승권 외, 2000).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택공급사정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농촌은 오히려 주택공급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IMF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의 속도가 지역간에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주택소유형태는 무엇보다 가계소득수준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또한 자가소유율은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율은 가구소득수준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와 가구주의 연령이 젊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체로 주택소유형태가 가구의 경제수준 및 가구주의 경제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구소득수준이 높음에도 현 주택소유가 전세로 나타난 것은 자녀의 교육 등으로 특정지역에 임시로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부동산 투기의 방편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최근의 사회현상 등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표 2-12〉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전세·월세인 경우 자가소유 여부

(단위: %, 평)

특성	자가 있음	자가 없음	계(수)
전체	23.9	76.1	100.0(6,274)
지역			
동부	23.4	76.6	100.0(5,175)
읍·면부	26.0	74.0	100.0(1,099)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15.1	84.9	100.0(1,454)
100~199만원	23.9	76.1	100.0(1,874)
200~299만원	22.5	77.5	100.0(1,455)
300만원 이상	34.0	66.0	100.0(1,367)
가구주 성			
남자	23.4	76.6	100.0(4,680)
여자	25.2	74.8	100.0(1,594)
가구주 연령			
15~29세	47.1	52.9	100.0(915)
30~39세	19.9	80.1	100.0(2,083)
40~49세	22.8	77.2	100.0(1,714)
50~59세	24.2	75.8	100.0(699)
60세 이상	10.9	89.1	100.0(863)

이와 같은 경향은 <표 2-12>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가구의 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월세인 경우 자가소유비율은 23.9%로 나타나서 조사대상가구의 실제 자가소유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 거주주택이 전·월세인 조사대상가구 중 자가를 소유한 비율은 읍·면부 지역의 경우,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로 가족형성기 및 가족확대기에 걸쳐서 자녀교육, 배우자의 직장 때문에 가족이 잠시 떨어져 살 경우 두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짐작된다.

<표 2-13>에서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 주택의 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소유명의를 살펴보았다.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소유명의는 과반수 이상인 66.8%가 남편이었고, 다음으로 부인이 20.3%, 직계존속 공동명의가 11.4%이었고 부부공동명의인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주택소유는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므로 대부분 부인보다 경제적 능력을 가진 가구주인 남편인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소유명의는 지역, 가구소득수준, 가구주의 성 및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대체로 주택소유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구주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경제능력이 없는 젊은 연령층의 경우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인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주택소유가 직계존속 공동명의인 비율이 높아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택소유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도시지역의,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고학력 젊은 연령층에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자가인 경우 소유명의

(단위: %)

특성	남편	부인	부부 공동명의	직계존속 공동명의	기타	계(수)
전체	66.8	20.3	1.4	11.4	0.0*	100.0(9,295)
지역						
동부	67.0	20.7	1.8	10.5	0.0*	100.0(6,889)
읍·면부	66.2	19.2	0.3	14.2	-	100.0(2,405)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53.9	29.2	0.2	16.7	-	100.0(2,093)
100~199만원	67.4	18.7	1.1	12.8	-	100.0(1,934)
200~299만원	72.3	16.3	1.3	10.0	-	100.0(2,165)
300만원 이상	71.7	18.0	2.5	7.8	0.1	100.0(2,871)
가구주 성						
남자	76.0	13.8	1.6	8.6	0.0*	100.0(8,001)
여자	10.1	60.8	0.2	28.8	-	100.0(1,293)
가구주 연령						
15~29세	33.9	10.1	3.6	52.4	-	100.0(168)
30~39세	62.3	17.4	3.0	17.2	0.1	100.0(1,619)
40~49세	71.7	18.9	1.6	7.9	-	100.0(2,783)
50~59세	72.5	20.2	1.1	6.2	-	100.0(1,996)
60세 이상	62.4	24.3	0.4	12.9	-	100.0(2,730)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이하	58.2	27.8	0.3	13.7	-	100.0(2,448)
중학교	73.0	17.4	1.1	8.5	-	100.0(1,201)
고등학교	69.2	18.9	1.2	10.8	-	100.0(3,024)
대학 이상	69.2	16.4	2.9	11.4	0.1	100.0(2,615)

주: * 실수가 2임.

2. 가구경제실태

가구의 경제수준은 재산보유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조사대상가구의 재산보유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규모와 가구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 등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가. 재산보유실태

재산은 건물, 토지, 임야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과 저축, 증권, 채권, 적금, 가치가 높은 물건 등을 포함하는 동산 등을 합친 것을 말한다.

조사대상 가구의 재산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가구는 전체의 6.1%에 불과하였다. 1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가구는 56.0%, 1~2억 미만은 21.3%, 3억원 미만은 6.7%, 그리고 3억원 이상은 6.9%로 나타나 전체 가구의 평균 재산 보유액은 1억 3735만원이었다(표 2-14 참조). 이는 일부 중·상층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금에 의한 재산보유가 대부분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전술한 <표 2-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세, 전·월세 등의 경우가 31.6%나 되는 것에서 추측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재산이 전혀 없는 가구는 동부지역에서 5.1%인 반면 읍·면부지역에서는 9.5%로 훨씬 높았는데, 이는 동부지역 자가소유율이 읍·면부지역보다 낮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2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동부지역 17.9%, 읍·면부지역 12.0%로 동부지역의 재산보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특성의 차이로 도시지역은 주택가격이 높은 반면, 농촌지역은 생계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지가 부동산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역별 평균 재산 보유액은 동부지역 1억 4908만원, 읍·면부지역 9696만원으로 지역간 재산규모의 차이가 잘 나타나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월 평균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규모는 607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재산규모는 상승하여 300만원 이상의 월 평균 가구소득인 경우는 재산규모가 2억 5805만원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재산규모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월 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도 1.3%의 비율을 보였다.

재산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평균 재산 보유액은 2인 이하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재산규모가 9,100만원이었고, 3~4인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1억 6,142만원, 5인 이상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1억 9,205만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현저하였다.

〈표 2-14〉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보유재산 규모분포

(단위: %, 백만원)

특성	보유 재산 규모						평균 재산 보유액
	없음	1~99	100~199	200~299	300 이상	계(수)	
전체	6.1	56.0	21.3	6.7	6.9	100.0(15,152)	137.35
지역							
동부	5.1	54.5	22.5	6.9	11.0	100.0(11,742)	149.08
읍·면부	9.5	61.3	17.2	6.0	6.0	100.0(3,409)	96.96
월 소득수준							
99만원이하	15.3	67.9	11.3	2.9	2.6	100.0(3,481)	60.70
100~199만원	6.2	68.4	17.0	3.8	4.6	100.0(3,723)	90.49
200~299만원	2.7	59.8	25.7	5.5	6.2	100.0(3,551)	106.99
300만원 이상	1.3	32.1	29.9	13.6	23.0	100.0(4,150)	258.05
가구규모							
2인 이하	10.9	64.6	14.7	3.8	6.1	100.0(5,916)	91.00
3~4인	2.9	52.8	24.8	7.9	11.6	100.0(7,542)	161.42
5인 이상	3.6	40.6	29.1	11.4	15.2	100.0(1,695)	192.05
가구주 성							
남자	4.5	52.9	23.6	7.7	11.3	100.0(12,362)	153.92
여자	13.2	70.0	11.0	2.0	3.7	100.0(2,790)	63.95

이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른 재산 규모의 차이는 가족주기에 의한 것이 크다고 생각된다. 즉, 2인 이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대부분 미혼독신 또는 가족형성 초기의 젊은 부부가구이거나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구 또는 노인독신가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3인 이상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가족확대기로 경제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재산이 없거나 재산규모가 1억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남성가구주 가구가 57.4%인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는 83.2%로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재산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도 남성가구주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매우 높았다. 평균 재산 규모는 이와 같은 경향을 잘 반영하여서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여성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과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부채실태

가구의 정확한 경제수준은 재산규모뿐 아니라 부채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조사대상가구의 부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채규모와 부채원인 등을 살펴보았다.

1) 부채규모

조사대상가구의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갚아야 할 부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가구는 전체의 55.3%에 해당되었으며, 나머지 44.7%는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규모가 1억원 미만인 가구는 40.0%이었고, 2억원 이상의 부채규모를 가진 가구는 4.7%이어서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는 2149만원이었다(표 2-15 참조).

지역별로는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부채규모도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 보다 높았다. 지역간 평균 부채액은 동부지역이 2095만원이었고, 읍·면부지역이 2334만원으로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부채율이 높고, 부채규모도 도시보다 농촌이 커서 농촌생활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부채율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규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 부채액은 월소득 99만원 이하가 1,054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액은 상승하여 300만원 이상의 월소득을 가진 가구는 3174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규모가 큰 것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정경제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부채율과 부채규모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부채를 갖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부채규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평균 부채액은 2인 이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1567만원이었고, 3~4인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2318만원, 5인 이상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3494만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부채액 규모에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부채율과 부채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가족주기 단계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2인 이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대부분 가족형성기 또는 가족축소완료기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3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가족확대기 이후에 속하는 가구로 자녀교육, 주택구입, 관혼상제 등으로 가족경제생활에 목돈 등이 상대적으로 필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남성가구주 가구가 47.9%, 여성 가구주 가구는 30.9%로 남성가구주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높았으며, 부채규모도 남성가구주 가구가 훨씬 높았다. 즉, 평균 부채액은 남성가구주 가구 2285만원, 여성가구주 가구 1563만원으로 남성가구주의 경우 여성가구주보다 부채율과 부채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부채 규모

(단위: %, 백만원)

특성	부채규모						평균 부채액
	없음	1~99	100~199	200~299	300 이상	계(수)	
전체	55.3	40.0	3.1	0.7	0.9	100.0(15,348)	21.49
지역							
동부	56.1	39.5	2.9	0.6	0.8	100.0(11,875)	20.95
읍·면부	52.9	41.7	3.7	0.8	0.9	100.0(3,473)	23.34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66.8	31.4	1.2	0.2	0.4	100.0(3,528)	10.54
100~199만원	53.1	43.7	2.4	0.3	0.4	100.0(3,795)	16.43
200~299만원	48.8	46.5	3.7	0.5	0.5	100.0(3,567)	20.79
300만원 이상	52.7	39.3	4.8	1.4	1.8	10000(4,181)	31.74
가구규모							
2인 이하	66.6	30.8	1.7	0.4	0.5	100.0(6,104)	15.67
3~4인	49.2	45.8	3.5	0.7	0.9	100.0(7,549)	23.18
5인 이상	42.3	47.6	6.6	1.8	1.7	100.0(1,694)	34.94
가구주 성							
남자	52.1	42.6	3.5	0.8	1.0	100.0(12,461)	22.85
여자	69.1	29.0	1.4	0.1	0.4	100.0(2,889)	15.63

2) 부채원인

부채를 갖게 된 원인을 보면 주로 주거비 및 주택마련(37.2%)과 사업자금(34.7%)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계비 때문도 11.2%로 적지 않은 비율이었고, 이외에 빚보증, 유흥비, 자동차구입비 때문이 7.4%, 교육비 5.5%, 의료비 2.7%, 관혼 상제비 1.3% 등이었다. 따라서 부채를 지게 되는 것은 대부분이 주거생활과 경제터전의 마련 때문이나 생계비 때문에 부채를 지는 경우도 있어서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별로 부채원인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채의 주요 원인은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외에도 사업자금과

생계비 때문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면부지역은 사업자금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주거비 및 주택마련, 생계비 및 교육비 등이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은 주로 주거생활안정 때문에 부채를 지고 있으나, 농촌은 생활터전 마련 때문에 부채를 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부채원인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채원인이 생계비, 의료비 그리고 관혼상제비 등인 경우가 많았으며,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원인은 주거비 및 주택마련에 편중되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은 기본생계비나 의료비 때문에 부채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수준의 현실화 방안이 요구된다.

부채원인은 가구원수에 따라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원 2인 이하와 5인 이상인 가구의 주된 부채원인은 사업자금, 주거비 및 주택마련과 생계비 순으로 나타난 반면, 3~4인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주거비 및 주택마련, 사업자금, 생계비 순으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가족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2인 이하 가구원과 5인 이상 가구원 가구는 대부분 가족형성기 또는 가족확대완료기로 이때는 주택마련보다 사업자금 등의 생활기반 마련에 집중할 시기이나, 3인 이상 가구원 가구는 가족확대기로 접어든 시기로 이때는 주택마련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채원인은 가구주의 성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가구주 가구는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기본 생계비나 교육비, 의료비 때문에 부채를 지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성 한부모 가정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부채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가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과 60세 이상인 고 연령층의 부채원인은 생계비인 비율이 높았으며, 고 연령층은 이외에도 의료비의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20대와 30대 연령층의 부채원인은 주거비 및 주택마련의 비율이 높았고, 30대 이상 연령층은 사업자금으로 부채를 지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다. 그리

고 보증이나 유흥, 자동차 구입 등으로 부채를 지는 비율은 30세 미만인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부채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서 대상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16〉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부채의 주된 원인

(단위: %)

특성	생계비	주거비/주택마련	교육비	사업자금	의료비	관혼상제비	기타[1]	계(수)
전체	11.2	37.2	5.5	34.7	2.7	1.3	7.4	100.0(6,962)
지역								
동부	12.1	42.8	4.9	29.4	2.5	1.1	7.2	100.0(5,322)
읍·면부	8.2	19.0	7.3	51.9	3.5	2.0	8.2	100.0(1,640)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23.0	20.5	5.0	33.8	9.1	2.3	6.5	100.0(1,193)
100~199만원	15.7	31.3	6.9	34.3	2.4	1.5	7.8	100.0(1,797)
200~299만원	7.5	43.9	5.3	34.0	1.2	0.9	7.1	100.0(1,849)
300만원 이상	3.7	46.8	4.7	35.3	0.8	0.8	7.9	100.0(2,002)
가구규모								
2인 이하	15.7	27.9	5.9	33.5	5.8	2.5	8.8	100.0(2,044)
3~4인	9.1	42.2	5.4	34.0	1.5	1.0	6.7	100.0(3,906)
5인 이상	10.2	36.4	4.8	39.9	1.3	0.2	7.2	100.0(1,012)
가구주 성								
남자	9.9	38.2	5.2	36.1	2.0	1.3	7.4	100.0(6,060)
여자	19.8	30.3	7.6	25.6	8.0	1.4	7.2	100.0(902)
가구주 연령								
15~29세	21.8	42.3	3.6	20.2	1.3	2.0	8.8	100.0(307)
30~39세	10.8	45.5	0.6	32.7	1.5	0.6	8.1	100.0(1,886)
40~49세	10.9	38.7	5.3	36.2	1.4	0.3	7.1	100.0(2,368)
50~59세	8.9	31.6	13.1	36.0	2.5	1.3	6.5	100.0(1,296)
60세 이상	12.2	24.7	5.8	37.4	8.3	4.4	7.3	100.0(1,103)

주: 1) 기타에는 빚보증, 유흥비, 자동차구입비 등이 포함됨.

다.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실태

다음으로 소득 및 소비지출 현황을 통해 가족의 실질적인 경제생활 상태를 살펴보았다. 조사대상가구의 전반적인 월소득 및 소비분포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23.3%가 월 99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었다. 또한 100~199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사는 가구의 비율은 25.2%, 200~299만원 이하는 23.7%, 300만원 이상은 27.8%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은 223만원이었다. 평균 가구원수 3인가구를 기준으로 2003년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경우 최저생계비는 81만원 수준으로 이와 비교할 때 조사대상가구의 약 20%는 최저생계비 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월 99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2000년도(김승권 외, 2000) 31.6%에 비해 8.3%포인트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다소 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다수의 가정이 빈곤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월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월소득이 99만원 이하의 가구는 동부지역 17.8%, 읍·면부지역 42.1%이었다. 100~199만원 이하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24.8%, 26.2%의 비율을 보였고, 200~299만원 이하는 각각 25.7%, 17.0%이었으며, 300만원 이상은 동부지역이 31.7%, 읍·면부지역이 14.6%이었다. 지역간 월평균 가구소득은 동부지역 243만원, 읍·면부지역 155만원으로 두 지역간에 88만원 정도의 소득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읍·면부지역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9만원 이하인 경우가 22.8%로 나타났다. 이는 동 지역의 평균가구원수가 2.6명[주18)]임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주19)]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주18) 본 조사 결과임.

주19) 1999년 계측된 중소도시 2인가족의 1인당 월 최저생계비 26만 8,307원을 기준으로 추산된 2003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58만 9,219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는 81만 431원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보건복지부, 2003).

가구별 소비규모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26.3%가 월 99만원 이하의 소비지출을 하였고, 100～199만원 이하는 36.2%, 200～299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은 23.7%, 300만원 이상은 13.8%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은 178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의 80% 수준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비규모를 보면, 월 99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은 동부지역 20.9%, 읍·면부지역 44.7%이었다. 100～199만원 이하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37.3%, 32.4%의 비율을 보였고, 200～299만원 이하는 각각 25.7%, 16.8%이었으며, 300만원 이상은 동부지역이 16.1%, 읍·면부 지역이 6.1%이었다. 지역간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은 동부지역은 192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242.9만원의 79.2%를, 읍·면부지역은 130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155.4만원의 83.8%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가구의 소비지출규모는 소득수준보다 적게 지출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구는 소득에 기준하여 소비 및 저축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수준은 소득보다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격감과 실직으로 인하여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됨으로써 이에 대한 가계의 일차적 대응[주20]으로 지출감소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된다.

가구 및 가구주특성별로 월 소득수준의 분포를 보면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3세대 이상의 가구가, 그리고 남성가구주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높은 소득분포를 보였다(표 2-18 참조).

이와 같이 도시가 농촌보다 소득분포가 높은 것은 전술된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수준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보다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원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주21] 또한 3세대 이상의 가구가 1세대나 2세대보다

주20) 가계경제의 위기대응전략 효과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그다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남(통계청, 2000).

주21) 세대구성에서 유추되는 경제활동참여 가구원의 연령별, 직급별 차이 등이 월평균 소득액

소득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리고 남성가구주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소득이 높은 것은 대체로 여성가구주는 저임금의 비전문직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2-17〉 소득·소비 규모별 가구분포

(단위: %, 만원)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월소득			
49만원 이하	11.1	7.7	22.8
50~99만원 이하	12.2	10.1	19.3
100~149만원 이하	12.2	11.6	14.1
150~199만원 이하	13.0	13.2	12.1
200~249만원 이하	13.4	14.5	9.8
250~299만원 이하	10.3	11.2	7.2
300만원 이상	27.8	31.7	14.6
계 (수)	100.0 (15,390)	100.0 (11,895)	100.0 (3,495)
평균 월소득(만원)	223.0	242.9	155.4
월소비지출			
49만원 이하	10.2	6.5	22.7
50~99만원 이하	16.1	14.4	22.0
100~149만원 이하	18.0	17.9	18.1
150~199만원 이하	18.2	19.4	14.3
200~249만원 이하	15.0	16.3	10.6
250~300만원 이하	8.7	9.4	6.2
300만원 이상	13.8	16.1	6.1
계 (수)	100.0 (15,609)	100.0 (12,100)	100.0 (3,509)
평균 월 소비지출(만원)	178.4	192.4	130.2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표 2-18〉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계소득 수준분포

(단위: %)

특성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계(수)
전체	23.3	25.2	23.7	27.8	100.0(15,388)
지역					
동부	17.8	24.9	25.7	31.7	100.0(11,894)
읍·면부	42.1	26.2	17.1	14.6	100.0(3,495)
가구규모					
2인 이하	48.0	28.9	13.1	10.0	100.0(6,107)
3~4인	7.8	23.9	31.1	37.2	100.0(7,568)
5인 이상	3.6	17.8	29.1	49.5	100.0(1,713)
세대결합형태					
1세대	50.9	27.4	12.2	9.4	100.0(5,157)
2세대	9.0	24.3	29.8	37.0	100.0(8,811)
3세대이상	11.6	22.0	28.5	37.9	100.0(1,321)
가구주 성					
남자	16.2	24.6	26.7	32.5	100.0(12,499)
여자	54.1	27.7	10.9	7.3	10000(2,888)

가구 및 가구특성에 따른 월 소비수준의 분포는 소득수준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소비지출의 분포가 높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3세대 이상의 가구가, 그리고 남성가구주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보다는 높은 소비지출 분포를 보였다(표 2-19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규모에 따라 소비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생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경우 소득 및 소비지출의 수준이 99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짐작된다. 특히 본 조사결과 농촌지역과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외에도 노인부부나 노인독신 등 노인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추정되어서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19〉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계 소비지출수준 분포

(단위: %)

특성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계(수)
전체	26.3	36.2	23.7	13.8	100.0(15,609)
지역					
동부	20.9	37.3	25.7	16.0	100.0(12,100)
읍·면부	44.7	32.4	16.7	6.1	100.0(3,509)
가구규모					
2인 이하	56.6	30.8	8.5	4.1	100.0(6,152)
3~4인	7.7	42.0	32.7	17.6	100.0(7,706)
5인 이상	1.7	29.8	37.6	30.9	100.0(1,751)
세대결합형태					
1세대	60.1	29.2	7.4	3.3	100.0(5,188)
2세대	9.2	40.5	31.5	18.8	100.0(8,980)
3세대 이상	9.4	34.5	35.0	21.2	100.0(1,341)
가구주 성					
남자	18.3	38.0	27.3	16.4	100.0(12,695)
여자	61.0	28.3	8.0	2.6	100.0(2,914)

라. 주관적 경제수준

조사대상가구의 주관적인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항목과 경제적 자립정도를 살펴보았다.

1) 경제적 곤란

<표 2-20>은 조사대상 가구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전체가구의 10.0%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반면, 나머지 90.0%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중 사교육비가 전체의 1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녀양육 및 교육비는 15.0%, 각종 공과금이 13.6%, 주거비가 11.1%이었다. 이외에도 부채상환 및 교제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비율이 9.5%이었다. 따라서 조사대상가구의 경제생활의 주된

어려움은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났고, 또한 주거 및 부채도 가구 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비율은 동부지역은 10.3%인 반면, 읍·면부지역은 8.9%의 비율을 보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농촌이 도시보다 높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지역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교육비,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각종 공과금, 주거비 및 부채상환 등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가구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읍·면부지역은 의료비, 각종 공과금,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채상환, 사교육비 부담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이었다. 도시지역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이 주로 자녀와 관련된 양육 및 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지역은 의료비와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문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비율은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높았다. 즉,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2인 이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각종 공과금, 의료비, 주거비, 부채상환, 식료품비 등 기본생활에 필요한 항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3인 이상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사교육비, 자녀양육 및 교육비, 각종 공과금, 주거비, 부채상환 등으로 어려움을 느껴서 주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비 등에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생활주기로 설명되는데 2인 이하 가구는 가족형성기 및 가족축소기의 가구로 이 시기는 자녀와 관련된 비용보다 주택구입이나 노인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등에 생활비의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3인 이상 가구는 가족확대기로 접어들면서 자녀가 교육중인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된다.

세대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비율은 1세대가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가구원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1세대 가구는 주로 기본 생활비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는 반면, 2세대, 3세대 가구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0〉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단위: %)

특성	1)자녀양육 및 교육비(수업료, 등록금 등) 3)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 5)각종 공과금(소득세, 보험료, 각종세금) 7)주거비(주택유지비, 집세 및 주택융자금 상환) 9)자동차유지비 등 교통비 11)기타(부채상환 및 교제비)								2)사교육비(학원, 과외 등) 4)식료품비(주식·부식비 등) 6)의료비 8)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10)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0	1	2	3	4	5	6	7	8	9	10	11	계(수)
전체	10.0	15.0	15.4	2.2	6.8	13.6	8.4	11.1	3.9	2.7	1.2	9.5	100.0(15,602)
지역													
동부	10.3	15.2	17.6	2.3	6.6	13.3	6.1	12.5	3.4	2.7	1.3	8.6	100.0(12,093)
읍·면부	8.9	14.3	8.1	2.0	7.5	14.5	16.3	6.2	5.6	2.9	1.2	12.5	100.0(3,509)
가구규모													
2인 이하	12.6	5.6	1.2	3.7	9.8	17.1	15.8	13.5	5.9	3.3	1.6	10.1	100.0(6,148)
3~4인	8.4	20.6	23.9	1.2	5.0	11.6	3.9	9.9	2.6	2.4	1.1	9.3	100.0(7,698)
5인 이상	7.5	23.7	28.2	1.2	4.4	9.8	2.3	8.6	3.0	2.4	0.6	8.3	100.0(1,753)
세대결합형태													
1세대	13.5	2.0	0.6	3.9	9.9	18.4	16.9	13.1	6.4	3.6	1.6	10.3	100.0(5,184)
2세대	8.2	21.9	23.9	1.3	5.2	10.7	4.1	10.1	2.6	2.2	1.1	8.8	100.0(8,973)
3세대 이상	7.1	20.9	17.3	1.3	5.1	14.9	5.4	9.3	3.8	3.2	0.7	10.9	100.0(1,345)
가구주 성													
남자	10.1	16.4	18.0	1.6	6.0	12.7	6.9	10.0	3.9	2.9	1.4	10.0	100.0(12,681)
여자	9.1	9.0	4.2	4.8	10.5	17.5	14.9	16.1	3.9	2.1	0.8	7.2	100.0(2,920)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비율은 남성가구주 가구가 10.1%, 여성가구주 가구는 9.1%로 나타나서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높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가구주 가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이 사교육비,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각종 공과금, 주거비 및 부채상환 등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는 각종 공과금, 주거비, 의료비, 식료품비,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순이었다. 이는 남성가구주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이 주로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문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2) 경제적 자립정도

조사대상가구의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적 자립정도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은 전체의 34.5%, 보통이다 30.2%,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35.2%로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동부지역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36.4%)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읍·면부 지역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42.3%)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재산규모, 부채규모 및 소득과 소비지출 등에서 나타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높았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인식은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높았다. 즉, 2인 이하의 가구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44.8%)는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3인 이상 가구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3~4인 38.4%, 5인 이상 38.5%)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2인 가구는 가족주기 상으로 볼 때 가족형성기 또는 가족축소기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였거나 소득원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설명되며, 3인 이상 가구는 가족확대완료기로 접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가구규모에 따른 경제적 자립정도의 인식은 세대별 경제적 자립정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1세대 가구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44.3%)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2세대와 3세대 가구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2세대 37.4%, 3세대 이상 35.4%)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서 경제적 자립정도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가구주 가구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여성가구주 가구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다는 비율(여성가구주 가구 53.8%, 남성가구주 가구 30.9%)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는 남성가구

주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재산규모, 부채규모 및 소득과 소비지출 등에서 나타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2-21〉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 자립정도

(단위: %)

특성	전혀 자립하지 못함	별로 자립하지 못함	보통	약간 자립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	계(수)
전체	11.3	23.9	30.2	18.8	15.7	100.0(15,722)
지역						
동부	10.2	23.0	30.5	19.0	17.4	100.0(12,201)
읍·면부	15.3	27.0	29.3	18.4	10.0	100.0(3,521)
가구규모						
2인 이하	19.4	25.4	26.6	16.6	12.0	100.0(6,204)
3~4인	6.3	22.9	32.3	20.5	17.9	100.0(7,759)
5인 이상	4.9	22.8	33.8	19.5	19.0	100.0(1,759)
세대결합형태						
1세대	20.1	24.2	26.2	17.0	12.5	100.0(5,225)
2세대	6.5	23.8	32.3	19.6	17.8	100.0(9,038)
3세대 이상	9.4	22.5	32.7	20.7	14.7	100.0(1,355)
가구주 성						
남자	8.1	22.8	31.5	20.0	17.5	100.0(12,785)
여자	25.2	28.6	24.7	13.7	7.9	100.0(2,938)

제 4 절 가구 및 가족 특성의 시사점

우리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결혼 및 부부관계 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요인들은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가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는 가족규모가 작아지며 세대구성은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또한 1인가구, 노인단독가구, 한부모 가족가구, 여성가구주가구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

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본 조사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가구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한 가구내 평균가구원수의 감소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가구의 소규모화와 함께 세대구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던 2세대, 3세대 가족은 감소하는 대신에, 1세대 가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인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노인부부만이 남는 노인부부가구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가구의 증가는 향후 사회전체 노인 부양부담을 증가시켜서 노인복지수요와 함께 높은 사회비용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이다. 이와 함께 가구주의 결혼상태로 유배우 가구주는 감소하는 반면 사별 및 이혼·별거 등의 해체가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해체가족을 결손가족의 개념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데올로기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은 가족구성원들이 영위하는 경제생활의 기본단위라는 점에서 가족과 경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조사결과, 조사대상가구의 자가소유율은 높아져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이루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오히려 자가비율이 감소하여 지역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는 자가소유율이 낮아서 다른 가족에 비해 안정적이지 못한 주거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거정책이 지역 및 가족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과 동산을 합친 전체 재산의 규모는 농촌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수준이었으나, 반대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부채규모는 평균보다 훨씬 적은 편이었다. 농촌가구는 평균 부채수준보다 상회하여서, 농촌가구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정책지원대상으로 재산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재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선정되어

야 하며, 부채원인도 주택마련부터, 기본적인 생계비 및 의료비 때문 등 다양하게 나타나서 지역 및 가족유형별로 차별화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월평균 가구소득과 소비수준을 보면 조사대상가구의 월 소비지출은 가구소득의 8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소비하였고, 지역간에도 농촌이 도시보다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과 재산 등 여러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도시지역과 남성가구주 가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이 주로 자녀와 관련된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그리고 각종 공과금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농촌지역과 여성가구주 가구는 주거비, 의료비, 식료품비 등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가족규모 및 세대결합 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은 지역, 가족유형 및 가족주기별로 다양하게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3 장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

본 장에서는 임신행태로서 임신경험횟수와 남아임신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전체 임신의 종결형태를 분석한다. 특히 종결형태는 정상출생과 임신소모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임신소모는 다시 자연유산, 사산,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파악한다.

제 1 절 임신경험 횟수

부인들의 임신횟수에 관한 분포는 큰 변화를 보였는데, 최근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1997년까지는 조사대상부인의 임신경험은 4회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00년 조사부터는 2회의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이다. 즉, 1994년에는 4회 이상 임신경험을 한 부인이 31.7%로 가장 높았고, 이는 1997년 29.2%로 다소 저하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조사에서는 2회의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의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고, 4회 이상 임신경험부인은 26.5%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2003년 조사에서도 동일하였다. 즉, 2003년의 임신횟수 분포는 2회의 임신을 경험한 부인이 3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회 이상 26.5%, 3회 25.8%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부인의 임신경험횟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최근에는 다소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조사대상 부인의 평균임신횟수는 1994년의 3.0회에서 1997년에는 2.8회로 낮아졌고, 2000년에는 2.7회로 낮아져 동 수준이 2003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연도별 비교자료에서 임신경험 횟수가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

나라 부인의 임신경험횟수는 현저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표 3-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임신횟수의 변화(1994~2003년)

(단위: %, 회)

연도	총 임신횟수					계(수)	평균 임신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1994[1]	4.5	13.2	25.6	25.1	31.7	100.0(5,183)	3.0
1997[2]	4.7	13.6	27.6	24.9	29.2	100.0(5,418)	2.8
2000[3]	4.7	15.6	29.5	23.7	26.5	100.0(6,408)	2.7
2003[4]	4.6	12.8	30.3	25.8	26.5	100.0(6,596)	2.7

자료: 1)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4) 본 조사결과

임신횟수를 조사대상부인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표 3-2>와 같이 제시된다. 먼저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들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들보다 임신횟수가 많았다. 즉, 4회 이상 임신경험이 있는 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8.8%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26.0%로 보다 높았고, 반면에 1회 이하의 임신경험이 있는 부인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8.0%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14.6%보다 높았다. 따라서 평균 임신횟수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69회,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2.85회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학력층의 부인과 젊은 연령층의 부인이 도시지역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임신횟수 분포는 부인의 연령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즉, 4회 이상 임신경험이 있는 부인은 15~24세의 낮은 연령층에서는 1.5%에 불과하였으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높아져 35~39세 연령층은 32.6%, 40~44세 연령층은 35.5%로 나타났다. 반면에 1회 이하의 임신경험이 있는 부인은 15~24세 저연령층에서는 69.1%로 높았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점차 낮아져 35~39세 연령층 부인은 8.6%, 40~44세 연령층 부인은 6.6%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평균 임신횟수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은 1.16회로 낮았으나 35~39세 연령층 부인은 3.02회, 40~44세 연령층 부인은 3.16회로 높았다. 이와 같이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임신횟수가 많음은 결혼기간과 관련되는 것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으면 임신횟수가 많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면 임신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4회 이상의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이 초교 이하의 학력층에서는 38.6%로 높았으나 대학 이상의 학력층에서는 18.5%로 약 절반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1회 미만의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은 초교 이하의 학력층에서는 5.5%에 불과하였으나 대학 이상의 학력층에서는 26.0%로 약 5배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교육수준별 평균 임신횟수는 초교 이하 부인은 3.35회로 높았으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대학 이상의 부인은 2.36회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자녀관 정착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원임신을 적절히 예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젊은 부인들이 많아 임신경험의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은데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임신횟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4회 이상 임신을 한 경우가 취업부인 27.1%, 비취업부인 26.0% 이었고, 반면에 1회 이하 임신을 한 경우는 취업부인 17.8%, 비취업부인 17.0%로 유사한 수준에 있었다. 따라서 부인의 취업여부별 평균 임신횟수는 2.72회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부인특성별 임신횟수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부인의 임신횟수와 부인연령은 정비례하고, 임신횟수와 부인의 교육수준과는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별 임신횟수의 차이도 이와 같은 결과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부인의 학력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영아사망률의 감소, 피임실천의 생활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향후 부인의 임신경험은 저출산관의 정착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감소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인 저하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총 임신횟수 분포(2003년)

(단위: %, 회)

특성	총 임신횟수							평균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수)	임신횟수
전체	4.6	12.8	30.3	25.8	16.4	10.1	100.0(6,596)	2.72
지역								
동부	4.9	13.1	30.3	25.7	16.3	9.7	100.0(5,577)	2.69
읍·면부	3.0	11.6	30.2	26.4	16.9	11.9	100.0(1,019)	2.85
연령								
15~24세	30.2	38.9	17.5	11.9	0.8	0.7	100.0(126)	1.16
25~29세	16.8	33.7	28.8	12.5	5.3	2.9	100.0(837)	1.65
30~34세	4.0	15.8	34.6	25.5	13.9	6.2	100.0(1,706)	2.50
35~39세	1.5	7.1	29.1	29.7	20.9	11.7	100.0(1,963)	3.02
40~44세	1.2	5.4	29.1	28.8	19.8	15.7	100.0(1,966)	3.16
교육수준								
초교 이하	3.7	1.8	28.0	28.0	14.2	24.4	100.0(218)	3.35
중학교	1.1	6.6	26.4	28.7	22.1	15.1	100.0(652)	3.19
고등학교	4.1	10.6	29.6	27.1	17.8	11.4	100.0(3,580)	2.81
대학 이상	6.5	19.5	32.7	22.8	12.4	6.1	100.0(2,143)	2.36
취업여부								
취업	6.0	11.8	29.1	26.0	16.5	10.6	100.0(3,152)	2.72
비취업	3.3	13.7	31.3	25.7	16.3	9.7	100.0(3,446)	2.72

제 2 절 남아출산노력 경험

원한 임신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과정에서의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임신종결 형태가 결정되어진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잔존하고 있는 남아선호의식

은 남아출산을 위하여 임신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후술하는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로 임신종결이 되는 양상이 발생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임신당사자 자신의 방법에 의하여 또는 일부 의료인의 협조에 의한 음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무튼 본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을 한 경험률은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남아출산 노력경험률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6.3%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4.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의 남아출산 노력경험률은 2.3%이었으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높아져 35~39세 연령층 부인은 6.8%, 40~44세 연령층 부인 6.6%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부인의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경험률은 약 4.6~4.8%이었으나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은 5.6%, 대학 이상 학력의 부인은 7.4%로 대체로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출산 노력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하고 있지 않은 부인이 취업하고 있는 부인보다 남아출산 노력경험률이 다소 높았다.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의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자연요법이 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초음파검사 2.5%이었다. 그 외에도 양수검사 0.5%, 융모막검사 0.1% 등이 있었다. 자연요법에 의한 노력은 동부지역 거주부인(3.8%)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2.4%)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34세 연령층 부인(4.0%)이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5.1%)이 가장 많았고, 비취업부인(4.1%)이 많았다.

자연요법 다음으로 높은 남아출산 노력경험률을 보인 초음파검사는 동부지역 거주부인(2.5%)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2.1%)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5~39세 연령층 부인(3.1%)이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2.6%)이 가장 많았고, 비취업부인(2.6%)이 많았다.

〈표 3-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전·후 남아출산노력 경험률

(단위: %, 명)

특성	노력 않음	노력유형별 경험률[1]						(분석 대상수)
		소계	자연 요법	양수검사	융모막 검사	초음파 검사	기타	
전체	94.0	6.0	3.6	0.5	0.1	2.5	0.6	(6,296)
지역								
동부	93.7	6.3	3.8	0.5	0.1	2.5	0.6	(5,309)
읍·면부	95.1	4.9	2.4	0.6	0.2	2.1	7	(987)
연령								
15~24세	97.7	2.3	-	-	-	2.3	-	(87)
25~29세	96.0	4.0	2.3	0.1	-	1.6	0.4	(694)
30~34세	94.6	5.4	4.0	0.4	-	1.6	0.3	(1,638)
35~39세	93.2	6.8	3.7	0.4	0.1	3.1	0.6	(1,932)
40~44세	93.4	6.6	3.7	1.0	0.2	2.9	0.9	(1,944)
교육수준								
초교 이하	95.2	4.8	3.3	-	-	2.4	0.5	(210)
중학교	95.4	4.6	2.3	0.9	0.2	2.0	0.3	(646)
고등학교	94.4	5.6	2.9	0.5	0.0	2.5	0.7	(3,432)
대학 이상	92.6	7.4	5.1	0.5	0.1	2.6	0.5	(2,004)
취업여부								
취업	94.5	5.5	3.0	0.6	0.1	2.4	0.5	(2,963)
비취업	93.5	6.5	4.1	0.5	0.1	2.6	0.7	(3,332)

주: 1) 임신경험이 있는 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비율임

제 3 절 임신종결 형태

모든 임신은 원한 임신과 원치 않은 임신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원하였든 원치 않았든 모든 임신은 어떤 형태로든 종결된다. 물론 종결형태는 본인의 의도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며, 원한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임신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신소모로 종결되기도 하겠으나 출산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 어떠한 과정을 겪든 모든 임신은 정상출생과 임신

소모라고 하는 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종결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임신의 결과는 그 사회의 경제수준, 문화적 배경, 보건의료 수준, 양성평등의 정도와 부부 또는 출산당사자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부인이 경험하는 임신규모와 이들 임신이 어떠한 형태로 종결되는지를 시계열적 분석에 의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종결형태가 의미하는 바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구자질의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부인의 임신종결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5~44세 유배우부인들이 경험한 모든 임신의 종결형태를 현재 임신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4년, 1997년, 2000년, 그리고 2003년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응답부인이 경험한 전체 임신횟수 중 정상출생이 1994년 조사에서는 1.80회이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1.72회로 감소하였고, 2003년 조사에서는 다시 1.78회로 증가하여 1997년 조사결과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정상출생 다음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은 1994년 조사에서는 0.84회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 조사에서는 0.63회이었다. 사산과 자연유산은 1994년 조사에서는 각각 0.01회, 0.24회에서 2003년의 조사에서는 각각 0.01회, 0.26회로 증가하였다. 이는 1997~2000년의 조사결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결국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2003년 조사에서는 총임신과 정상출생은 증가하였고, 인공임신중절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임신소모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그렇지만 임신소모의 다른 형태인 사산과 자연유산의 절대횟수는 감소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건의료적 측면의 관심이 요구된다. 즉, 사산과 자연유산의 이유를 규명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3-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 형태별 평균횟수(1994~2003년)

(단위: 회)

연도	총임신	출생	사산	자연유산	임신중절	현임신
1994[1)]	2.96	1.80	0.01	0.24	0.84	0.06
1997[2)]	2.83	1.78	0.01	0.26	0.74	0.04
2000[3)]	2.69	1.72	0.01	0.26	0.65	0.06
2003[4)]	2.72	1.78	0.01	0.26	0.63	0.04

자료: 〈표 3-1〉과 동일

이와 같은 임신종결 형태별 경험횟수의 변화를 전체 임신경험횟수를 감안하여 살펴보는 것은 임신종결형태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전체 임신 대비 정상출생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조사의 61.0%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62.9%, 2000년 조사에서는 63.8%, 그리고 2003년 조사에서는 65.5%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양상을 보였다. 이는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경우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조사의 36.9%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35.5%, 2000년 조사에서는 34.0%, 그리고 2003년 조사에서는 32.9%로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보여 바람직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임신소모의 세부형태별 비율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임신 중 사산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조사의 0.4%에서 1997과 2000년 조사에서는 0.3%로 다소 저하하였고, 2003년 조사에서는 0.2%로 더욱 감소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보였다. 자연유산은 1994년 조사의 8.2%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9.1%, 2000년 조사에서는 9.7%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2003년 조사에서는 9.6%로 미흡하나마 감소하였다. 따라서 자연유산이 감소될 수 있도록 임신전 관리, 산전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신소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은 1994년 조사의 28.3%에서 1997년 조사 26.1%, 2000년 조사 24.1%, 그리고 2003년 조사 23.1%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

임신의 약 1/4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다는 사실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으로 임신소모는 감소하고 정상출생으로 종결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는 높은 수준에 있으며, 자연유산과 사산에 의한 임신소모는 낮은 수준이 아니므로 인구자질 및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임산부 관리에 많은 취약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인의 임신종결 형태를 분석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전체 임신 중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임신의 32.9%가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부인의 임신소모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는 감소되고 있으나 높은 피임실천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신의 23.1%, 임신소모의 약 70%가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피임실천의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즉, 아직까지 불원임신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불원임신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셋째, 사산과 자연유산은 많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회적 및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부인의 건강상태가 임신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임신소모는 흡연, 음주, 약물복용 등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혼청소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계몽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철저한 임산부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겠다.

넷째,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경우에 자연유산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원임신의 예방을 위한 효과적 피임사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피임법 사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청소년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표 3-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형태의 구성비(1994~2003년)

(단위: %)

임신종결형태	1994[1)]	1997[2)]	2000[3)]	2003[3)]
정상출생	61.0	62.9	63.8	65.5
임신소모	36.9	35.5	34.0	32.9
(사산)	(0.4)	(0.3)	(0.3)	(0.2)
(자연유산)	(8.2)	(9.1)	(9.7)	(9.6)
(인공임신중절)	(28.3)	(26.1)	(24.1)	(23.1)
현 임신	2.1	1.6	2.1	1.6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5,316)	(15,311)	(17,241)	(17,920)

자료: 〈표 3-1〉 과 동일

2003년 조사에서 나타난 임신종결 형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상출생으로 종결된 임신은 읍·면부 거주부인이 67.5%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65.1%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신소모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지역별 임신종결 형태를 임신소모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산은 읍·면부 거주부인이 높았고,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의 지역별 임신종결형태[주22)]에 비하여 많이 개선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별 피임실천율의 차이가 미미한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수준이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임신소모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보다 높은 것은 주로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부지역 부인의 전체 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의 비율은 23.5%이었으며, 읍·면부지역 부인은 21.0%이었음에서 알 수 있다.[주23)]

주22) 2000년 조사에서는 정상출생으로 종결된 임신이 동부지역 63.5%, 읍·면부지역 66.1%, 임신소모는 동부지역 34.4%, 읍·면부지역 31.9%이었음.

주23) 2000년의 임신소모를 1997년의 임신소모와 비교하여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임신소모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보다 높은 것은 주로 자연유산에 의한 것이었음. 즉, 동부지역 부인의 전체 임신 대비 자연유산의 비율은 9.9%이었으며, 읍·면부지역 부인은 7.7%로 나타났음. 그렇지만 2003년 조사에서는 자연유산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미미하였음.

〈표 3-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임신종결형태(2003년)

(단위: %)

임신결과	전국	동부	읍·면부
정상출생	65.5	65.1	67.5
임신소모	32.9	33.3	30.9
(사산)	(0.2)	(0.2)	(0.4)
(자연유산)	(9.6)	(9.6)	(9.5)
(인공임신중절)	(23.1)	(23.5)	(21.0)
현 임신	1.6	1.6	1.5
계	100.0	100.0	100.0
(수)	(17,920)	(15,010)	(2,910)

이와 같은 임신종결형태 중 임신소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임신소모를 경험을 하지 않은 부인은 45.8%이었고, 경험한 부인은 54.2%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부인 중 임신소모를 1회 경험한 부인이 2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회 16.7%이었으며, 전체 부인의 평균임신소모횟수는 0.9회이었다.

동부지역 거주부인 중 임신소모를 경험을 하지 않은 부인은 45.6%이었고, 경험한 부인은 54.4%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동부지역 거주부인 중 임신소모를 1회 경험한 부인은 2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회 16.7%이었으며, 전체 부인의 평균임신소모횟수는 0.9회이었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중 임신소모를 경험을 하지 않은 부인은 46.6%이었고, 경험한 부인은 53.4%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중 임신소모를 1회 경험한 부인은 3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회 16.8%이었으며, 전체 부인의 평균임신소모횟수는 0.9회이었다. 따라서 부인의 거주지역별 임신소모의 분포와 평균횟수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부인의 연령에 따른 임신소모 경험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소모 경험률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27.0%로 가장 낮았고, 25~29세 연령층 부인 31.3%, 30~34세 연령층 부인 48.7%, 35~39세 연령층 부인 62.1%, 그리고 40~44세 연령층 부인 62.6% 등이었다. 따라서 임신소모 경험은 35세 이상 부인들이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부인의 평균 임신소모 횟수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은 0.4회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35~39세 연령층

부인은 1.0회, 40~44회 연령층 부인은 1.1회로 높았다.

연령과 교육수준은 대체로 반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같은 양상은 임신소모 횟수에서도 나타났다.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부인들의 임신소모 경험률은 45.0%이었고, 평균 횟수는 0.7회이었으나 그 외의 교육수준을 가진 부인들의 임신소모 경험률은 약 56.4~63.7%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평균 임신소모 횟수도 약 1.0~1.1회나 되었다. 따라서 임신소모의 경험은 대학 학력을 가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임신소모 경험 및 평균 횟수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며 현저하지는 않았다. 즉, 취업부인의 임신소모 경험률은 54.9%이었고, 비취업부인의 경험률은 53.6%이었으며, 따라서 평균 임신소모 경험횟수는 0.9회로 동일한 수준이었다. 물론 이 횟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미미한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임신소모는 부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소모 횟수 분포(2003년)

(단위: %, 회)

특성	총 임신소모 횟수							평균 임신소모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수)	
전체	45.8	29.9	16.7	5.5	1.3	0.8	100.0(6,598)	0.9
지역								
동부	45.6	29.9	16.7	5.7	1.3	0.8	100.0(5,578)	0.9
읍·면부	46.6	30.0	16.8	4.4	1.5	0.7	100.0(1,020)	0.9
연령								
15~24세	73.0	19.8	6.3	-	0.8	0.1	100.0(126)	0.4
25~29세	68.7	21.5	7.3	1.7	0.7	0.1	100.0(837)	0.5
30~34세	51.3	29.0	14.1	4.2	0.8	0.6	100.0(1,708)	0.8
35~39세	37.9	33.3	19.9	6.9	1.5	0.5	100.0(1,963)	1.0
40~44세	37.4	31.6	20.6	7.2	1.9	1.3	100.0(1,964)	1.1
교육수준								
초교 이하	43.6	31.2	15.6	4.6	2.8	2.2	100.0(218)	1.0
중학교	36.3	32.2	20.2	6.9	3.2	1.2	100.0(650)	1.1
고등학교	42.0	31.1	18.5	6.4	1.3	0.7	100.0(3,578)	1.0
대학 이상	55.0	27.3	13.0	3.6	0.7	0.4	100.0(2,143)	0.7
취업여부								
취업	45.1	30.3	17.3	5.4	1.3	0.6	100.0(3,152)	0.9
비취업	46.4	29.7	16.2	5.6	1.4	0.7	100.0(3,446)	0.9

부인의 특성별 임신소모 분포와 평균 횟수를 요약정리하면, 부인의 거주지역과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인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임신소모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여성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불원임신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홍보·계몽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와 같은 정책은 출산이 완료되는 시기인 35세 전·후를 대상으로 해야 만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임신소모의 평균 횟수를 부인의 거주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15~24세 연령층 부인의 평균 임신소모횟수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0.4회,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0.2회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많았다. 25~29세 연령층의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0.4회,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0.6회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많았다.

〈표 3-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평균 임신소모 횟수(2003년)

(단위: 회)

특성	(분석대상수)	동부	읍·면부	전체
연령				
15~24세	(126)	0.4	0.2	0.4
25~29세	(837)	0.4	0.6	0.5
30~34세	(1,707)	0.8	0.8	0.8
35~39세	(1,964)	1.1	1.0	1.0
40~44세	(1,965)	1.1	1.1	1.1
교육수준				
초교 이하	(218)	1.1	0.9	1.0
중학교	(652)	1.2	1.1	1.1
고등학교	(3,580)	1.0	0.9	1.0
대학 이상	(2,144)	0.7	0.6	0.7
취업여부				
취업	(3,153)	0.9	1.0	0.9
비취업	(3,446)	0.9	0.8	0.9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임신소모 경험횟수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경험횟수보다 평균 0.1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부지역 거주부인들은 취업여부에 따라 임신소모 경험횟수의 차이가 없었으나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취업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부인은 1.0회의 임신소모 경험을, 비취업부인은 0.8회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절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이 경험한 전체 임신과 이들 임신의 종결형태를 논의하였다. 기본적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에만 임신을 하고 임신된 경우는 모두 정상출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지만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 비추어 보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된 경우가 있었고, 원하지 않은 임신임에도 정상출생한 경우가 있었던 반면,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기에 인공임신중절 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원한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 사산 등으로 종결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물론 향후에는 교육수준의 향상, 경제발달, 의학기술의 발달,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원하지 않는 임신의 감소로 인공임신중절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자연유산 및 사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그 배우자의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정책차원에서 홍보·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임신전·후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개인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계층에서는 여전히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이러한 측면은 거주지역, 부인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비과학적인 자연요법에 의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음은 초음파검사와 양수검사에 의하여, 심지어는 융모막검사까지 실시되고 있었다.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에서 남성중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선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부간의 양성평등 의식과 임신당사자인 여성의 성평등의식을 제고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4 장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

한 사회의 출산행태는 많은 요인에 의하여 규명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며, 일반적으로 출산율이라고 말한다. 합계출산율의 개념을 살펴보면,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가임기 연령인 15~49세 여성을 산출기준으로 하여 한 여성이 생애동안 출산하는 자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결혼한 부인의 출산수준 검토에 유용한 유배우출산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출산한 자녀수와 그들의 성비를 분석하고, 현존자녀수의 규모와 성비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출산간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출산과 관련한 일련의 분석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출산행태가 어떠한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변화전망도 가능할 것이다.

제 1 절 출산율의 변동

출산력의 변동추이는 합계출산율에 의하여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합계출산율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최근 주요 국가의 출산수준을 출생통계지표인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에 의하여 비교한다. 이어서 유배우부인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유배우출산율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배우 출산율은 결혼율이 높은 한국사회에서의 출산수준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주24)

주24) 그러나 점차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우리 사회에서의 유배우출산율에 의한 전체 여성의 출산수준 파악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합계출산율의 변화

우리나라의 출산력 변천은 1960년 이후 약 30년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 인구학적 근대화를 달성함으로써 이룩한 성과로 판단된다. 1960~2002년 기간의 약 40여 년간 한 여성의 평생을 통한 예상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960~7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주로 홍보교육과 피임보급활동에 의해서, 그리고 1980년대는 소자녀 규범의 형성을 위한 각종 사회지원시책 등 인구증가억제시책의 강화에 따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합계출산율은 1960~87년 기간 중 6.0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었으며, 그 후에도 동일 수준의 저출산이 유지되어 왔다. 비록 1993년에는 1.75명 수준으로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1% 수준으로 저하된 1989년 이후 정부가족계획사업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1996년 6월에 정부차원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993년 1.75명에서 1996년 1.71명, 1999년 1.425명으로 감소하였음에서 알 수 있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은 1.165명이었다. 동 수준은 '인구동태통계자료'에 기초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2년의 합계출산율 1.17과 같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출산력 변천이 종료되고 저출산 행태가 정착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1997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IMF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증대, 소득격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혼 및 출산을 연기 또는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향후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될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기회복과 함께 연기된 결혼 및 출산이 이루어진다면 다소의 출산율 상승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출산율이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출산율의 반전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합계출산율의 변화(1960~2002년)

(단위: 명/여자 1명당)

연도	1960[1)]	1974[1)]	1982[2)]	1984[3)]	1987[4)]	1990[5)]	1993[6)]	1996[7)]	1999[8)]	2002[9)]
합계출산율	6.0	3.6	2.7	2.1	1.6	1.6	1.75	1.71	1.425	1.165

자료: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1977.
2) 문현상 외, 『1982년 전국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3) _____ ,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4) _____ , 『198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5)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6)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7)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8)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9) 본 조사결과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되었다. 이어서 지역간의 차이출산력은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합계출산율의 지역별 차이, 즉,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의 차이는 1994년 이전에 실시된 출산력 관련 조사에서는 제시되었지만, 1997년과 2000년의 조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주25)]

주25) 과거조사(1997년과 2000년)에서 제시되지 않은 이유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종전에 도시와 농촌에 의해 지역구분을 하여 왔으나 1996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도시와 농촌에 의한 지역구분은 동부와 읍·면부에 의한 구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동부지역은 확대되고, 읍·면부지역은 더욱 축소되었음. 결과적으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지역별 출산율 자료는 과거와의 시계열적 비교가 어렵고, 교통이 발달된 현 상황 하에서 읍·면부를 별도로 한 지표를 산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음; 둘째, 본 조사는 표본조사이므로 이들 조사가구 중 읍·면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아 어느 한 시점을 기준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토록 하였다. 이는 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비록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역별 차이출산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거년도의 조사에서 제시되지 않은 이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무튼 지역별 합계출산율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부지역은 1.10명, 읍·면부지역은 1.65명으로 0.55명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동부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규명하여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2〉 합계출산율의 지역차이(2002년)

(단위: 명/여자 1명당)

지역	동부	읍·면부	차이
합계출산율	1.10	1.65	0.55

2.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연령별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을 산출하는 부인연령인 15~49세를 5세 간격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여성 1,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고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하였으며 시계열적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출산율의 저하는 1960년 이후 전체 연령층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전체 기간동안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합계출산율에의 기여율은 1990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즉, 25~29세 연령층이 합계출산율에서 차지하

으로 한 지표인 '출산율'의 지역별 산출결과는 출생아' 한 명리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표설명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아울러 현지조사의 완벽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크게 달라질 우려가 있음.

는 기여율은 합계출산율이 6.0이던 1960년에는 27.6%이었으며,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이었던 1984년에는 44.8%로 상승하였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의 기여율은 합계출산율이 1.6이었던 1990년에는 60.5%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3년에는 55.9%, 1996년 52.8%, 1999년에는 49.8%, 그리고 2002년에는 47.2%로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연령층이 25~29세 연령층에서 서서히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최근 30~35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속도가 늦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에서 엿볼 수 있다.

둘째, 1960~2002년 기간중 출산율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24세 연령층과 35~39세 연령층에서 보여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이다. 즉, 여자 1,000명당 출산수는 20~24세 연령층의 경우 283명에서 24명으로, 35~39세 연령층에서는 196명에서 13명으로 큰 저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나 20~24세 연령층의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고용기회의 확대, 초혼연령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이며, 35~39세 연령층에서의 출산율 감소는 소자녀관의 형성에 따른 피임실천율의 증가, 인공임신중절, 그리고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35~39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1996년 10에서 1999년과 2002년에는 13으로 미미하나마 상승하였는데, 이는 만혼과 늦둥이 출산의 징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최근 한국사회 출산율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하를 멈추고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1960년 동 연령층에서의 출산율은 257이었으며 점차 저하하여 1987년에는 39수준으로 최저점에 있었다. 그러나 점차 상승하여 1990년 50, 1993년 64, 1996년 83이었으며, 1999년에는 75로 다시 저하하였으나 2002년에는 83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연령 상승으로 20~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의 출산율 저하에서 나타나는 파급효과라 하겠다. 특히 25~29세 연령층과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점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큰 의미를 가진다.

넷째, 최근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변동의 또 다른 특징은 비록 그 정도는 미미하지만 199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늦둥이 출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40~44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1960년 80에서 점차 저하하여 1984년에는 1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 잠깐 상승하더니 1990년과 1993년에는 다시 낮아졌다. 그러나 1996년에는 늦둥이 출산이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출산율이나 인구구조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정책 차원에서 관심을 둘 정도는 아니지만 모자보건 측면에서 산전 및 산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표 4-3〉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1960~2002년)

(단위: 명/여자 1,000명당)

연령	1960	1966	1974	1982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15~19세	37	15	11	12	7	3	3	3	3	2	1
20~24세	283	205	159	161	162	104	62	71	62	50	24
25~29세	330	380	276	245	187	168	188	195	181	142	110
30~34세	257	242	164	94	52	39	50	64	83	75	83
35~39세	196	150	74	23	8	6	7	15	10	13	13
40~44세	80	58	29	3	1	3	1	1	4	3	2
45~49세	14	7	3	-	-	-	-	-	-	-	-

자료: 〈표 4-1〉과 동일

다섯째, 가임여성은 15~49세이지만 한국사회에서 45~49세 연령층이 출산하지 않는 경향은 지난 1982년 이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과 늦둥이 출산의 징후가 이 연령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45~49세 연령층은 실제 출산층이 아닌 것이다.

이상에서 연령별 출산율의 시계열 변화와 최근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앞서 합계출산율의 지역별 차이가 현저히 나타났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경향이 연령별 출산율의 어느 연령층에서 나타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

다. 이는 지역에 따라 주요 출산연령층이 상이할 경우 정책대상에 차이를 주기 때문이다.

연령별 출산율의 지역차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25~29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지역에 관계없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읍·면부지역의 이 연령층 출산율은 151을 차지하여 전체 출산율의 약 46%, 동부지역의 이 연령층 출산율은 104로서 전체 출산율의 약 47%로 높았다.

둘째, 20~39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동부지역 거주여성보다 읍·면부지역 거주여성들이 모두 높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합계출산율이 읍·면부지역에서 현저히 높은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주요 연령층에서 모두 높다는 점은 큰 특징이라 하겠다.

셋째, 15~19세 연령층과 40~44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동부지역 거주여성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이는 일찍 동거 또는 결혼하는 경우와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도시지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표 4-4〉 연령별 출산율의 지역차이

(단위: 명/여자 1,000명당)

연도	동부	읍·면부	차이
15~19세	2	-	2
20~24세	20	58	38
25~29세	104	151	47
30~34세	80	102	22
35~39세	12	18	6
40~44세	2	-	2
45~49세	-	-	-

넷째, 20~24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이 두 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다. 즉, 이 연령층의 동부지역 출산율은 20에 불과하지만 읍·면부지역은 58로 약 3배에 달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초혼연령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다섯째, 30~34세와 35~39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동부지역이 각각 80과 12임

에 비하여 읍·면부지역은 각각 102와 18로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읍·면부지역 거주여성의 자녀출산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출산율의 국제비교

전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전반적으로 저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2.1 이상이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 출산수준은 그 사회의 문화적 차이, 경제발전의 정도, 그리고 출산율을 저하 또는 상승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의 강도 및 효과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의 출생통계 지표를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에 의하여 살펴본다.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이 한국은 2001년 11.6명에서 2002년 10.3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는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이었으며, 반대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는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호주 등이었다. 조출생률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로는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체코 등이었으며, 반대로 높은 국가는 미국, 프랑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이었다.

또 다른 출생통계지표인 합계출산율이 한국은 저하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저하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는 일본,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었으며,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는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체코, 호주 등이었다.

따라서 조출생률은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체코와 동일하였다. 이는 최근 짧은 기간에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 수준이 지속될 경우 조출생률도 동시에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표 4-5〉 세계 주요 국가의 출생통계 지표

국 가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명)		합계출산율(명)	
	2001	2002	2001	2002
한국	11.6	10.3	1.30	1.17
일본	9.3	9.2	1.33	1.32
미국	14.1	13.9	2.03	2.01
프랑스	13.0	12.8	1.89	1.88
영국	11.4	11.4	1.64	1.65
스웨덴	10.3	10.7	1.57	1.65
스페인	10.0	10.1	1.24	1.25
이탈리아	9.2	9.3	1.25	1.26
독일	8.9	8.8	1.35	1.40
그리스	9.3	9.7	1.25	1.25
체코	8.9	9.1	1.15	1.17
호주	12.7	12.8	1.73	1.75
뉴질랜드	14.4	13.7	1.97	1.90

자료: 후생노동성,「평성15년 인구동태통계월보연계(개수)」 (www.mhlw.go.jp)
NCHS,「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Vol.52, (www.cdc.gov)
Eurostat 「First results of the demographic data collection for 2002 in Europe」 (www.europa.eu.int)
series FM1 no. 31 「Birth statistics 」(www.statistics.gov.uk)
「3301.0 2002 Births」(www.abs.gov.au),
「Key Statistics」(www.stats.govt.nz)

제 2 절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한 사회의 출산행태 및 그 수준의 변화는 전술한 합계출산율과 후술하는 출생아수 및 현존자녀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기혼부인(ever-married women)의 배우출산율에 의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배우출산율은 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 즉, 유배우부인, 사별, 이혼 및 별거 부인의 출산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제 가정을 이루었거나 또는 현재 이루고 있는 여성의 출산행태를 알아 볼 수 있는 지표라 하겠다.

특히 한국사회는 서구 국가에 비하여 결혼율이 높기 때문에 배우출산율에 의

한 출산수준 측정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본 분석에서는 기혼부인 중 결혼상태가 이혼 및 별거 또는 사별인 경우는 제외하고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출산력관련 조사 및 분석이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로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유배우출산율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합(合)주26)은 1990년을 최저점으로 1996년까지는 점차 상승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다시 저하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표 3-3>의 연령별 출산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주27)

둘째, 유배우출산율의 전반적 변화를 살펴보면, 저연령층일수록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연령별 출산율이 25~34세 연령층이 높고 그 외의 연령층은 현저히 낮은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2002년 20~24세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이 313으로 가장 높았으며, 25~29세 연령층은 250, 30~34세 연령층은 106이었다. 그러나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현저히 저하하여 35~39세 연령층에서는 16, 40~44세 연령층에서는 2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초혼연령이 상승되고 있고 결혼 후 즉,시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넷째, 20~24세 연령층과 40~44세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은 1999년도에 비하여 낮아졌으나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높아졌다. 특히 30~34세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다만 1999년에는 미미한 수준에서 감소) 1980년의 103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이 특징이다.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에 의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주26) 유배우출산율의 합(合)은 통계학적 의미가 없어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함.

주27) 1994년 조사결과인 1993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연령별 출산율과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은 다른 연도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이러한 변화추이에 의하여 설명되지 못함.

〈표 4-6〉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변동추이

(단위: 명/유배우부인 1,000명당)

연령	1960[1)]	1970[1)]	1980[1)]	1990[2)]	1993[3)]	1996[4)]	1999[5)]	2002[6)]
20～24세	447	450	458	306	320	377	386	313
25～29세	351	356	292	234	237	264	224	250
30～34세	298	223	103	53	65	88	86	106
35～39세	232	122	28	7	15	11	14	16
40～44세	117	53	7	1	1	4	4	2
45～49세	22	8	1	-	-	-	-	-

자료: 〈표 4-1〉과 동일

제 3 절 출생아와 현존자녀의 규모 및 성비

1. 출생아의 규모와 성비

가. 출생아 규모

한 사회의 출산수준은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 외에도 한 부인이 출산한 총 출생아수(children ever-born)에 의해서도 간접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출생아'란 부인이 낳은 모든 아이를 말한다. 즉, 아이가 성장과정에서 사망하였든, 입양시켰든, 혼외 출산이든, 혼인중의 출산이든, 재혼부인인 경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도 그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여기서의 출생아에 포함된다. 물론 쌍태아 또는 삼태아인 경우도 2명 또는 3명의 출생아로 계산된다.

그렇지만 현재 부부의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다른 여자에게서 낳아 데리고 온 아이는 제외되며, 입양된 아이도 제외된다. 간략히 말해 현재 본인의 자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생겼던, 그리고 아이의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부인이 생애동안 출산한 모든 아이는 출생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1.8명으로

1994년 및 1997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2000년의 결과보다 0.1명 증가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평균 1.9명을 출산하였으나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1.8명을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3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출생아수는 2000년보다 0.1명 증가하였고,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0.1명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평균 출생아수가 과거에는 약 0.3~0.4명의 격차가 있었으나 2003년에는 0.1명만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부지역 거주부인들의 소자녀관 선호행태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들에게도 파급되고 있는 측면과 최근 저출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소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4-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특성	1994[1)]	1997[2)]	2000[3)]	2003[4)]
전체	1.8	1.8	1.7	1.8
지역				
동부	1.7	1.7	1.7	1.8
읍·면부	2.1	2.0	2.0	1.9
연령				
15~24세	0.7	0.7	0.8	0.6
25~29세	1.2	1.2	1.1	1.1
30~34세	1.8	1.8	1.7	1.7
35~39세	2.1	2.1	2.0	2.0
40~44세	2.5	2.5	2.1	2.1
교육수준				
초교 이하	2.6	2.5	2.2	2.3
중학교	2.1	2.1	2.1	2.1
고등학교	1.6	1.7	1.7	1.8
대학 이상	1.4	1.5	1.5	1.6

자료: 1)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2)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3)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4)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5) 본 조사결과

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교육수준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학력수준과 평균출생아수의 관계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초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출생아수는 1994년 이후 2000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2003년에는 2.3명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중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은 1994년 이후 2003년까지 동일한 수준인 2.1명을 유지하였으며,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출생아수는 1994년 이후 다소 상승하여 2003년에는 각각 1.8명, 1.6명이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저학력 수준의 부인 중에 고연령층 부인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격차는 전반적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과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의 출생아수의 차이는 1994년 1.2명, 1997년 1.0명, 2000년과 2003년에는 0.7명으로 감소되었다. 물론 최근 3년간의 변화는 없었으나 전반적인 양상은 교육수준의 영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일한 문화생활권에서 살고 있고 소자녀관이 전 계층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부인의 제 특성별 출생아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부인 중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이 가장 많은 6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명을 가진 부인이 19.1%, 3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 11.2%, 그리고 출생아가 없는 부인이 8.1%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15~44세 유배우부인의 87.6%가 2명 이하의 출생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주28] 지역별로는 2명 이하의 출생아를 두고 있는 부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 88.9%,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80.1%로 나타났다. 특히 1명 이하의 출생아를 둔 부인은 동부지역 27.6%, 읍·면부지역 23.9%로 지역간 3.7% 포인트로 과거연도보다 좁혀졌다.[주29] 그리고 3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

주28) 199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부인 중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57.3%, 1명을 가진 부인 20.9%, 그리고 출생아가 없는 부인 8.4%로 전체 부인의 86.6%가 2명 이하의 출생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부인 중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57.0%, 1명을 가진 부인 23.2%, 그리고 출생아가 없는 부인 8.0%로 전체 부인의 88.2%가 2명 이하의 출생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주29) 2000년 조사에서의 지역간 격차는 8.2%이었음.

은 동부지역 11.1%, 읍·면부지역 19.9%로 지역간 차이가 8.8%포인트로 좁혀졌다.주30) 따라서 지역에 따른 부인연령 및 교육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과거보다는 출생아수에 주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인의 출생아수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5~24세 연령층의 부인은 1명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가 36.8%, 출생아를 전혀 가지지 않은 경우도 51.2%나 되어 1명 이하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이 무려 88.0%나 되었다. 따라서 이 연령층의 부인은 평균 0.6명만의 출생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첫 출산이 점차 늦어진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25~29세 연령층 부인은 24세 이하 연령층 부인보다는 출생아수가 현저히 많았으나 1.1명에 불과하였다. 1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이 37.8%,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31.5%로 이 연령층 부인의 69.3%가 1~2명의 출생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출생아를 가지지 않은 부인도 29.1%나 되었는데 이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의 출생아수에 대한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첫 출산의 연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9세 이하 연령층의 부인과는 대조적으로 30세 이상의 부인의 출생아 분포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29세 이하 연령층 부인들은 1명의 출생아를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0세 이상 연령층 부인들은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30세 이상 연령층 부인들의 경우는 0~1명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는 현저하게 저하되고, 2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는 상승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부인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는 30~34세 연령층 부인이 0.4%, 35~39세 연령층 부인 1.6%, 40~44세 연령층 부인 2.3%로 극히 낮았다.주31) 이와 같은 영향에 의하여 30~34세 연령층 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1.7

주30) 2000년 조사에서는 동부지역 10.2%, 읍·면부지역 22.7%로 지역간 차이가 12.5%포인트에 달하였음.

주31) 199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4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30~34세 연령층 0.8%, 35~39세 연령층 3.1%, 그리고 40~44세 연령층의 부인은 5.8%로 2000년의 조사결과가 낮았으며,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4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30~34세 연령층 0.6%, 35~39세 연령층 1.5%, 그리고 40~44세 연령층의 부인은 3.5%로 2003년의 조사결과가 낮았음. 따

명인 반면 35~39세와 40~44세 연령층의 부인은 각각 2.0명과 2.1명으로 부인 연령과 출생아수는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관심을 가질 부분은 30세 이상 연령층 부인 중 출생아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즉, 30~34세 부인의 7.7%, 35~39세 부인의 3.0%, 그리고 40~44세 부인의 1.8%가 출생아가 없었다.주32) 이는 2000년의 조사결과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데,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만혼에 의하여 첫 출산이 늦어진 경우일 수도 있으며,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재혼부인이 전처의 자녀를 고려하여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라 비의도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즉, 출산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늦어지거나, 자연불임이 된 경우, 그리고 자연유산이 반복되는 경우 등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인의 교육수준과 출생아수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모든 교육수준에서 2명의 출생아를 가지고 있는 부인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출생아수 분포를 차지하는 것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3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비율이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1명의 출생아수를 가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0~1명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가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은 23.7%인데 비하여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37.8%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고학력층의 부인은 원하는 자녀수도 적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주33) 물론 이러한 현상은 낮은 학력수준의 부인이 일반적으로 고연령층에 분포되어 있고, 반대로 높은 학력수준의 부인은 보다 젊은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음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라서 최근에 이를수록 4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주32)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30~34세 부인의 5.6%, 35~39세 부인의 2.0%, 그리고 40~44세 부인의 1.1%가 출생아가 없었음.

주33)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 중 0~1명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는 43.6%로 높았음.

〈표 4-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수 분포

(단위: %)

특성	출생아수						평균 출생아수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수)	
전체	8.1	19.1	60.4	11.2	1.2	100.0(6,601)	1.8
지역							
동부	8.4	19.3	61.2	10.2	0.9	100.0(5,580)	1.8
읍·면부	6.4	17.5	56.2	16.5	3.4	100.0(1,021)	1.9
연령							
15~24세	51.2	36.8	12.0	-	-	100.0(125)	0.6
25~29세	29.1	37.8	31.5	1.4	0.2	100.0(836)	1.1
30~34세	7.7	24.1	59.9	7.9	0.4	100.0(1,708)	1.7
35~39세	3.0	13.0	69.0	13.4	1.6	100.0(1,964)	2.0
40~44세	1.8	11.6	67.7	16.6	2.3	100.0(1,965)	2.1
교육수준							
초교 이하	5.0	6.4	54.1	23.9	10.6	100.0(218)	2.3
중학교	2.5	13.4	64.1	17.8	2.2	100.0(651)	2.1
고등학교	7.3	16.4	64.6	10.6	1.1	100.0(3,580)	1.8
대학 이상	11.3	26.5	52.9	8.8	0.5	100.0(2,144)	1.6
취업여부							
취업	9.5	17.1	59.5	12.4	1.5	100.0(3,152)	1.8
비취업	6.7	20.8	61.3	10.0	1.2	100.0(3,448)	1.7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출생아수의 분포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으나 취업부인이 비취업부인보다 출생아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즉, 3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가 취업부인 13.9%, 비취업부인 11.2%이었고, 반대로 1명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가 취업부인 17.1%, 비취업부인 27.5%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 출생아수도 취업중인 부인 1.8명, 취업하지 않은 부인 1.7명이었다.[주34)]

주34) 199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평균 출생아수는 취업중인 부인 1.9명,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부인 1.7명이었음.

이는 우리나라 부인들이 결혼 후 취업을 중단하고 자녀양육후 재취업하는 등 현재 취업하고 있는 부인이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부인보다 대체로 연령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생아를 갖지 않은 부인의 비율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취업부인의 9.5%, 비취업부인의 6.7%가 출생아가 없었는데[주35] 이는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젊은 취업부인이 출산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출생아의 성비

출생아의 성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출생성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정년도의 출생남아 100명당 출생여아의 수를 나타내는 출생성비는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동태통계자료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출생성비의 시계열적 자료는 남아선호수준, 남녀 결혼대상자 규모 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출생성비는 이 자료 외에도 부인의 전체 출생아의 성비와 현존자녀수의 성비에 의하여도 파악될 수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리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생성비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부인의 전체 출생아의 성비를 살펴보고 현존자녀수의 성비는 후술한다. 여기서 논의하는 출생아의 성비는 '누적 출생성비'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영아사망률이 저하되어 출생아 성비와 현존자녀수 성비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1.8명이었는데, 보다 정확히 제시하면 1.79명이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아 0.95명, 여아 0.84명으로 부인의 누적된 출생아 성비는 111로 나타났다. 따라서 1997년 조사의 출생아 성비 113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2000년 조사의 출생아 성비 111보다

주35) 199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부인의 9.0%, 비취업부인의 7.9%가 출생아가 없었으며, 2000년 조사결과는 취업부인의 10.4%, 비취업부인의 7.1%가 출생아가 없었음.

는 높아진 수준이었다(표 3-9 참조). 이 수준은 정상적인 출생성비인 103～104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여전히 성비불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5～44세 유배우부인의 누적된 출생아의 성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다지 높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3～6년 전의 조사대상부인 중 고연령층은 본 조사대상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출생아 성비를 부인특성에 따라 살펴보는 것은 향후의 출생성비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다. 먼저 지역별로 출생아 성비를 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평균 출생아 1.76명중 남아는 0.93명, 여아는 0.83명으로 출생아 성비는 112를 보였고,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평균 출생아 1.94명중 남아는 1.03명, 여아는 0.91명으로 출생아 성비는 113을 나타냈다. 따라서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보다 남아를 많이 출산하지만 동시에 여아도 많이 출산하여 성비불균형은 유사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부인연령과 출생아 성비는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령층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장 젊은 연령층인 15～24세 부인의 평균 출생아 0.61명 중 남아는 0.31명, 여아 0.30명으로 103의 정상출생성비를 보여주었고, 25～29세 연령층 부인은 출생아 1.06명중 남아 0.52명, 여아 0.54명으로 여아가 많은 성비 불균형을 보였다. 특히 35～39세 연령층과 40～44세 연령층의 부인은 각각 120과 115의 성비불균형을 보였는데, 이들 연령층은 대체로 출산을 완료한 계층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태아성감별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성비불균형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출생아의 성비불균형을 살펴보면, 초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성비가 108로 평균보다 낮았으나 중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은 118로 성비불균형이 가장 심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과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은 각각 112, 113의 출생아 성비를 보여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선호적 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출생아 성비불균형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중인 부인의 출생아 성비는 120이었고, 비취업부인은 107로 무려 13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젊은 부인들보다는 출산을 종료하였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한 후에 취업하는 고연령의 부인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추측된다.

〈표 4-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성비

(단위: 명, %)

특성	출생아수			출생아 성비
	소계	남아수(A)	여아수(B)	(A/B)
전체	1.79	0.95	0.84	113
지역				
동부	1.76	0.93	0.83	112
읍·면부	1.94	1.03	0.91	113
연령				
15~24세	0.61	0.31	0.30	103
25~29세	1.06	0.52	0.54	96
30~34세	1.69	0.87	0.82	106
35~39세	1.98	1.08	0.90	120
40~44세	2.06	1.10	0.96	115
교육수준				
초교 이하	2.33	1.21	1.12	108
중학교	2.05	1.11	0.94	118
고등학교	1.82	0.96	0.86	112
대학 이상	1.60	0.85	0.75	113
취업여부				
취업중	1.80	0.98	0.82	120
비취업	1.78	0.92	0.86	107

2. 현존자녀의 규모와 성비

본 조사에서 사용된 현존자녀수에 대한 개념은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현존자녀는 전술한 출생아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녀를 낳은 사람이 누구이든, 입양하였든 상관없이 현재 두 부부사이에 생존하고 있는

자녀를 모두 현존자녀수의 개념에 포함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재혼한 가정의 경우 전처의 자식, 전남편의 자식도 포함되며, 자녀가 결혼을 하여 출가하였더라도 현존자녀에 포함된다. 물론 부부의 자녀이었지만 다른 집에 입양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망한 자녀도 포함되지 않는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개념 하에서 조사대상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 자녀의 성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현존자녀수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는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감소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증가하였다. 즉, 자녀가 0~1명인 부인은 27.4%이었고, 3명 이상인 부인은 12.0%이었으며,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60.6%로 나타났다.

따라서 0~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비율은 1994년의 31.6%에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된 1996년 직후의 조사인 1997년에는 29.3%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0년 조사에서는 31.7%로 증가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는 다시 27.4%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비율은 1994년의 15.1%에서 1997년 12.4%, 2000년 10.9%로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보였다가 본 조사에서는 12.0%로 다시 증가하였다.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1994~2003년까지의 전체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본 조사에서는 60.6%로 더욱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표 4-10 참조).

이와 같은 현존자녀수의 분포는 평균 현존자녀수의 시계열적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3년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8명으로 1994년과 1997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2000년보다는 0.1명이 증가하였다. 물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과거년도의 평균 현존자녀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미미하나마 증가한 것은 2000년의 조사당시에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리 하에서 매우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있었으나 이제는 가장 힘든 경제난을 넘긴 시기이며,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이 다소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결혼한 유배우부인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미혼여성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 합계출산율이 더욱 저하된 것과는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1994~2003년)

(단위: %)

연도	1명 이하	2명	3명 이상	계(수)	평균자녀수
1994	31.6	53.3	15.1	100.0(5,183)	1.8
1997	29.3	58.3	12.4	100.0(5,419)	1.8
2000	31.7	57.4	10.9	100.0(6,404)	1.7
2003	27.4	60.6	12.0	100.0(6,599)	1.8

자료: 〈표 4-7〉과 동일.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를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여부 등에 의하여 살펴본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19.3%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10.7%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반대로 0~1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8.1%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23.4% 보다 높았다. 따라서 평균 현존자녀수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8명,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1.9명으로 0.1명의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다. 이는 전술한 <표 3-8>의 출생아수의 지역별 차이(동부 1.8명, 읍·면부 1.9명)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소자녀 규모를 선호하는 고학력의 젊은 연령층 부인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존자녀수는 출생아수와 마찬가지로 부인의 연령에 정비례하고 교육정도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24세와 25~29세 연령층의 부인은 0~1명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각각 86.4%, 66.6%로 높았고, 30세 이상의 연령층 부인의 동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3명 이상의 현존자녀를 가진 비율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은 없었고, 25~29세 연령층 부인은 1.9%, 30~34세 연령층 부인은 8.0%, 35~39세 연령층 부인은 14.6%, 그리고 40~44

세 연령층 부인은 17.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0~1명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3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24.0%이었으며, 학력이 낮아질수록 비율은 낮았다. 반면에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초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3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학교 학력의 부인 19.2%이었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율은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저학력 수준의 부인이 연령이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표 4-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

(단위: %, 명)

특성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수)	평균 현존자녀수
전체	8.2	19.2	60.6	10.7	1.3	100.0(6,599)	1.8
지역							
동부	8.5	19.6	61.2	9.8	0.9	100.0(5,580)	1.8
읍·면부	6.4	17.0	57.3	15.8	3.5	100.0(1,019)	1.9
연령							
15~24세	49.6	36.8	13.6	-	-	100.0(125)	0.6
25~29세	29.2	37.4	31.5	1.3	0.6	100.0(837)	1.1
30~34세	7.7	24.0	60.3	7.7	0.3	100.0(1,707)	1.7
35~39세	2.9	13.5	69.0	12.9	1.7	100.0(1,964)	2.0
40~44세	2.5	11.7	67.9	15.9	2.0	100.0(1,968)	2.0
교육수준							
초교 이하	3.2	7.8	55.8	24.4	8.8	100.0(217)	2.3
중학교	3.2	13.6	64.0	16.7	2.5	100.0(653)	2.0
고등학교	7.6	16.4	64.7	10.1	1.2	100.0(3,580)	1.8
대학 이상	11.2	26.7	53.2	8.5	0.4	100.0(2,143)	1.6
취업여부							
취업	9.8	17.2	59.8	11.9	1.3	100.0(3,157)	1.8
비취업	6.8	20.9	61.4	9.7	1.2	10000(3,442)	1.8

일반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부인의 연령이 취업하고 있지 않은 부인보다 높기 때문에 취업부인의 현존자녀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0~1명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취업부인이 27.0%, 비취업부인 27.7%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취업부인이 13.2%, 비취업부인은 10.9%로 취업부인이 다소 높았다. 그렇지만 평균 현존자녀수는 1.8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와 평균 현존자녀수는 이들 부인의 출생아수 분포와 평균 출생아수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재혼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대상의 부인이 유배우상태의 경우만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영아사망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이혼 및 재혼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변화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나. 현존자녀의 성비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78명이었으며, 남아 0.94명, 여아 0.84명으로 부인의 현존자녀수의 성비는 112로 나타났다(표 3-12 참조).[주36] 이는 출생아의 성비 113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미혼모, 재혼 등의 사회현상이 미미하여 자녀규모 및 성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현존자녀수의 성비를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역별로는 동부지역과 읍·면부 거주부인의 성비는 각각 111과 113으로 출생아의 성비 112와 113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부인의 연령별 현존자녀수 성비는 35~39세 연령층 부인이 120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 연령층 부인은 98로 여아가 많은 성비불균형을 보였다. 이는 출생아의 성비와 유사한 양상이다.

주36) 2000년의 조사결과는 평균 현존자녀수 1.73명이었으며, 남아 0.91명, 여아 0.82명으로 현존자녀수의 성비는 111이었음.

〈표 4-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의 성비(2003년)

(단위: %)

특성	현존자녀수			현존자녀 성비
	계	남아수(A)	여아수(B)	(A/B)
전체	1.78	0.94	0.84	112
지역				
동부	1.75	0.92	0.83	111
읍·면부	1.94	1.03	0.91	113
연령				
15~24세	0.64	0.33	0.31	106
25~29세	1.07	0.53	0.54	98
30~34세	1.69	0.87	0.82	106
35~39세	1.98	1.08	0.90	120
40~44세	2.04	1.07	0.97	110
교육수준				
초교 이하	2.29	1.18	1.11	106
중학교	2.03	1.08	0.95	114
고등학교	1.81	0.95	0.86	110
대학 이상	1.60	0.85	0.75	113
취업여부				
취업중	1.78	0.96	0.82	117
비취업	1.78	0.92	0.86	107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현존자녀수의 성비는 중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이 1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113이었으며, 초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106으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교육수준에 따른 현존자녀의 성비불균형은 출생아의 성비차이보다는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현존자녀수의 성비는 취업부인이 117로 높았고, 비취업부인은 107로 낮았다. 이는 출생아의 성비인 취업부인 120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비취업부인의 출생아 성비와는 동일한 수준이었다.

제 4 절 출산간격의 변화

첫 자녀 출산에서부터 막내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을 부인의 출산기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기간은 부인의 결혼연령, 부부의 첫 자녀 출산시기, 그리고 막내자녀의 출산시기와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다. 물론 출산을 종료하는 시기의 결정은 부부, 특히 출산당사자인 부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다. 물론 불임이 되었거나 불임시술에 의한 영구피임을 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결혼,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에 의하여 결혼~막내아 출산까지의 전체 기간을 산출하고자 한다.주37)

우리나라의 15~49세 초혼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결혼연령은 23.9세이었고, 첫째아 출산연령은 25.2세, 막내아(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상태)를 출산하거나 단산한 연령은 28.2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 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1.3년, 첫째아 출산부터 막내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3.0년이 소요되어 결혼부터 막내아 출산까지의 전체기간은 4.3년이었다. 따라서 결혼 후 약 4년 만에 출산을 완료하였으며, 가족의 자녀규모는 결정된다고 하겠다.주38)

이와 같은 2003년 조사결과를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결혼연령은 0.2세가 연장된 것이며,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0.3세가 연장되었고,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0.6세가 늦어졌다. 다시 말해 결혼~첫째아 출산시까지의 기간은 2000년 조사에서는 1.2년이었으나 2003년 조사에서는 1.3년으로 0.1년이 연장되었고, 첫째아 출산~막내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2000년 조사에서는 2.7년이었으나 2003년 조사에서는 3.0년으로 0.3년이 연장되었다. 따라서 결혼~막내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2000년 조사에서는 3.9년이었으나 2003년 조사에서는 4.3년으

주37) 재혼부인은 결혼연령, 첫째아 및 막내아의 출산이 전 남편과 현 남편의 자녀 등의 여건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 관계로 우리나라 부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혼여성의 출산간격 분석에 오류를 줄 우려가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주38) 2000년의 조사결과는 결혼 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1.2년, 첫째아 출산부터 막내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2.7년이 소요되어 결혼부터 막내아 출산까지의 전체기간은 3.9년이었음. 2000년의 조사결과는 결혼 후 약 4년만에 출산을 완료하였음.

로 0.4년이 늦어졌다.주39)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나라 부인의 결혼연령의 상승, 첫째 자녀의 출산지연, 그리고 막내 자녀의 출산지연 등이 연차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자녀출산까지의 기간이 종전보다 약 0.1년 늦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결혼~막내아 출산까지의 전체기간을 부인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전반적 출산행태를 알 수 있을 것이며 향후의 출산행태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은 부인의 특성에 따라 약 0.9~1.4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40) 결혼~막내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약 1.7~5.5년으로 부인특성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났다.

부인특성에 따른 결혼연령, 첫째아 및 막내아 출산연령, 그리고 결혼~막내아 출산까지의 전체 기간 등은 부인의 결혼코호트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결혼~출산종료까지의 기간이 1979년까지의 결혼에서는 5.2년이나 되었으나 1980~89년에 결혼한 부인은 약 4.8년으로 감소하였고, 1990~99년의 결혼부인은 4.0년으로 더욱 감소하였으며, 최근(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약 1.9년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된다.

주39) 2000년 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를 1997년 조사의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결혼연령은 0.5세가 연장된 것이며,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0.4세가 연장되었고,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동일하게 나타났음. 다시 말해 결혼~첫째아 출산시까지의 기간은 1997년 조사에서는 1.3년이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1.2년으로 0.1년이 단축되었고, 첫째아 출산~막내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1997년 조사에서는 3.1년이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2.7년으로 0.4년이 단축된 것임. 따라서 결혼~막내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1997년 조사에서는 4.4년이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3.9년으로 0.5년이 단축되었음.

주40) 여기서 첫 자녀의 출산이 결혼 후 10개월 미만(약 0.8년 미만)인 경우는 조산 또는 혼전임신에 의한 출산으로 이해됨.

〈표 4-13〉 15~49세 초혼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결혼연령과 첫째 및 막내아 출산시 연령

(단위: 세, 년)

특성	결혼연령[1)]	첫째아 출산시 연령[1)]	막내아 출산시 연령[2)]	결혼~막내아 출산까지의 기간
1997년	23.2	24.5	27.6	4.4
2000년	23.7	24.9	27.6	3.9
2003년	23.9	25.2	28.2	4.3
지역				
동부	24.0	25.3	28.3	4.3
읍·면부	23.0	24.3	27.6	4.6
연령				
15~24세	19.8	20.7	21.5	1.7
25~29세	23.2	24.4	25.5	2.3
30~34세	24.5	25.9	28.1	3.6
35~39세	24.5	25.8	28.9	4.4
40~44세	23.7	25.0	28.4	4.7
45~49세	23.0	24.3	27.8	4.8
교육수준				
초교 이하	21.2	22.6	26.7	5.5
중학교	22.4	23.7	27.1	4.7
고등학교	23.8	25.1	28.0	4.2
대학 이상	25.3	26.7	29.5	4.2
결혼코호트				
1979년 이하	20.8	22.0	26.0	5.2
1980~89년	23.4	24.8	28.2	4.8
1990~99년	24.9	26.3	28.9	4.0
2000~03년	26.2	27.3	28.1	1.9

주: 1) 출산경험이 없는 부인은 제외함.
2) 출산경험이 없는 부인과 경험이 있어도 추가자녀를 원하는 부인은 제외함.

자료: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3) 본 조사결과

제 5 절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에 관한 지표로서 합계출산율, 유배우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출생아수, 그리고 현존자녀수 등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본 조사결과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가족계획사업, 산업화에 따른 사회·경제발전,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등이 동시에 수반되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수준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물론 최근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하나는 1997년 말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취업난, 실업 등에 기인하여 나타난 불투명한 미래와 가족경제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지연하거나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김승권 외, 2003).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 최근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서 기인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견해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사회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자연적 현상으로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회의 출산율은 피임보급 등의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에 의해서도 저하되지만 이는 출산율이 높은 사회에서 가능한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소자녀관이 정착된 사회에서는 이것이 아닌 사회·경제적 발전, 문화적 배경, 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판단된다. 즉,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소자녀관 규범이 무너지거나 출산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정부정책에 의하여 출산율이 상승하거나 저하되는 폭은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정부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본 조사의 결과도 이러한 견해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즉,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저하, 임신경험횟수, 출생아수 및 현존자녀수의 미미한 변화 등이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연령의 상승, 낮은 결혼율과 높은 미혼율 현상이 출산율 저하에 가장 큰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출산율의 급격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김승권 외, 2003 참조).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비록 출산율이 상승하는 다행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극히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단적으로 말해,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 이하에서 약 20년간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저출산 기조는 결코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향후 인구정책은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과 낮은 출산율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임을 인식하여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인구자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측면으로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청소년 성 보건사업 등 생식보건 관련사업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겠다. 더군다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0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 증가와 동시에 미미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30대 후반과 40대 연령층의 늦둥이 출산은 모자보건 및 인구자질 측면에서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인구정책은 적정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강구에 초점을 모아야 함과 병행하여 저출산의 지속에 따른 제반 사회경제적 현상을 분석하고 총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선진국에서의 인구전환은 100 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서서히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약 30년간의 단기간에 성취하였기 때문에 인구의 규모측면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더라도 인구의 구조측면에서 심각한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율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져야 할 시점이다.

제 5 장 피임수용실태

피임이란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임방법은 수용자의 성별, 피임효과의 영구성과 지속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수용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피임방법과 여성피임방법으로 분류된다. 남성피임방법으로는 정관수술, 콘돔주41), 질외사정법 등이 있으며, 여성피임방법으로는 난관수술, 자궁내장치주42), 먹는 피임약주43), 살정제주44) 등이 있다. 피임효과의 영구성 측면에서는 불임시술인 정관수술, 난관수술과 비영구적인 효과를 갖는 자궁내장치, 콘돔, 먹는 피임약 등이 있다. 또한 피임효과의 지속성에 따라서는 피임효과가 가장 높은 정관수술과 난관수술 같은 불임수술과 이 보다는 효과가 낮으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자궁내장치,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효과적인 피임방법으로 분류되는 콘돔, 먹는 피임약, 살정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피임방법의 선택은 수용자의 특성, 피임목적, 접근의 용이성, 비용 및 부작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피임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는 1961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서 시작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의 주된 목적은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가임기의 부인에게 피임을 권장하여 출산력을 저하하는 데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소자녀의 이점과 피임사용방법 등을 교육하면서 피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이후 약 30년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되자 1989년부터 정부의 피임보급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996년에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어 정부차원의 피임보급은 극히 일부계층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정부의 피임보급물량의 감소는 피임실천율에 변화를 주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불원임신을 증가시켜 인공

주41) 수정 즉, 난자와 정자의 결합상태를 저지시키는 방법임.
주42)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방법임.
주43) 배란 자체를 억제시키는 방법임.
주44) 정자의 활동력 감소 내지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방법임.

임신중절률을 높이므로 인구자질 측면에서 여성의 생식보건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주45)과 관련하여 최근 기혼부인의 피임실천행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장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 6,624명 중 무응답 26명을 제외한 6,598명을 분석대상으로 피임수용실태를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살펴본다. 첫째,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2003년의 피임실천상태를 파악하고, 둘째 피임실천부인을 대상으로 부인특성별 및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 피임실천 목적을 분석한다. 셋째, 피임비실천 부인을 대상으로 피임중단 및 무경험이유, 향후 피임실천 의향 및 선호피임방법 등을 파악하고, 넷째는 현재 피임노출 상태 및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태를 분석한다.

제 1 절 피임실천의 변동추이

가임기에 있는 유배우부인은 피임의 필요성에 의해서 실천이 이루어지므로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즉, 일정 시점에서 볼 때 피임을 실천하는 상태와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되고,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상태는 다시 과거에 피임을 실천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와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피임실천 양상을 4가지 유형 즉, 피임실천부인, 피임비실천부인으로 나누고, 피임비실천부인은 다시 피임경험부인, 피임무경험부인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파악하며, 또한 부인특성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 지를 살펴본다.

주45) 최근 지속되는 저출산과 함께 남아선호관은 출산행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즉, 기혼부인의 남아선호관은 성감별을 통하여 인공인신중절 등이 행하여질 것이 예측되어 출산저하뿐 아니라 성비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1. 피임실천율의 변화

연도별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상태를 살펴보면, 1976년의 피임실천율은 44.2%로 점차 증가하여 1985년 70.4%, 1991년에는 79.4%에 이르렀으며, 1994년에는 77.4%로 저하되었으나, 1997년에 다시 증가하여 80.5%의 높은 피임실천율을 나타냈다. 2000년에는 1997년에 비하여 1.2%포인트가 감소한 79.3%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03년에는 84.5%라는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피임실천율의 변화는 가족계획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1961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으로 피임보급물량이 지원됨에 따라 피임실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1996년 6월을 기점으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는 등 인구정책이 인구자질 및 복지정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피임실천율이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동안 피임실천이 안정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높은 피임실천 수준은 가임기에 있는 상당수의 유배우부인이 피임을 실천하는 상태로서 피임실천이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피임비실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1976년 55.8%에서 1991년에는 20.6%까지 감소하였고, 1994년에는 22.6%로 증가하였으며, 1997년에는 다시 19.5%로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20.7%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다시 15.5%로 감소하였다. 이를 과거경험이 있으나 현재 실천하지 않은 부인과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무경험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과거경험이 있으나 현재 피임실천을 하지 않은 부인의 비율은 1976년 18.7%에서 2003년에는 8.5%로 감소하였고, 피임무경험부인은 각각 37.1%에서 7.0%로 감소하여, 피임무경험부인의 경우 급격한 속도로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태 변화(1976~2003년)

(단위: %)

연도	실천	비실천			계
		소계	과거경험	무경험	
1976[1)]	44.2	55.8	18.7	37.1	100.0
1979[2)]	54.5	45.5	21.5	24.0	100.0
1982[3)]	57.7	42.3	23.0	19.3	100.0
1985[4)]	70.4	29.6	13.3	16.3	100.0
1988[5)]	77.1	22.9	11.4	11.5	100.0
1991[6)]	79.4	20.6	9.6	11.0	100.0
1994[7)]	77.4	22.6	11.1	11.5	100.0
1997[8)]	80.5	19.5	9.7	9.8	100.0
2000[9)]	79.3	20.7	10.1	10.6	100.0
2003[10)]	84.5	15.5	8.5	7.0	100.0

자료: 1) 박병태 외,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78.
2) 고갑석 외, 『1979년 한국피임보급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80.
3) 문현상 외,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4) _____,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5) _____,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6)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7)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8)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9)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10) 본 조사결과

일반적으로 피임은 출산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주46)] 피임실천율

주46) 최근 각국의 조사자료에 의한 합계출산율과 피임실천율과의 관계를 보면, 피임실천율이 10% 증가하는데 따라 합계출산율은 0.7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UN, 1997).

과 합계출산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1997년 80.5%로 정점을 이루었던 피임실천율은 2003년에 84.5%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1989년 정부피임보급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에 증감을 반복하다가주47) 1996년에 1.71의 수준에서 2002년에는 1.165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피임실천율이 낮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경향과 같은 결과를 보이나,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 가운데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2. 부인특성별 피임실천율의 변화

유배우부인의 특성별로 피임실천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84.8%, 82.5%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0년의 경우 읍·면부지역이 80.2%로 동부지역의 79.2%보다 1.0%포인트 높았던 것과 비교할 때 동부지역의 피임실천율의 증가는 읍·면부지역 보다 빠른 경향을 보였다(표 5-2 참조).주48)

피임비실천부인 중 과거경험이 있었던 비율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감소속도가 약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은 2000년에 동부지역이 10.2%, 읍·면부지역이 9.2%에서, 2003년에는 각각 8.6%, 8.0%로 3년 동안 피임실천율이 상승함에 따라 과거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은 감소하여 동부지역은 1.6%포인트, 읍·면부지역은 1.2%포인트 낮아졌다. 그리고 피임무경험부인의 비율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빠르게 감소하였다. 3년간 과거에 경험이 없었던 피임비실천 부인의 비율은 동

주47) 1989년 이후 출산수준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듯 1990년의 합계출산율은 1.6이었으나 1993년의 합계출산율은 1.75로 0.15가 높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1996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71수준으로 다시 낮아져 1993년의 출산율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음

주48) 2000년 15~44세 유배우부인 6,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동부지역은 피임실천율이 79.2%, 비실천율이 20.8%이었으며, 읍·면부지역은 피임실천율이 80.2%, 비실천율이 19.8%의 분포를 보였음(김승권 외, 2000).

부지역은 4.0%포인트, 읍·면부지역은 1.1%포인트가 낮아졌다(표 5-2 참조).[주49)]

결과적으로 과거경험이 있는 부인 및 과거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부인의 피임비실천율은 동부 및 읍·면부 지역 모두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동부지역이 읍·면부 지역보다 컸다.

〈표 5-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태

(단위: %)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소계	과거경험	무경험	
전체	84.5	15.5	8.5	7.0	100.0(6,598)
지역					
동부	84.8	15.2	8.6	6.6	100.0(5,577)
읍·면부	82.5	17.5	8.0	9.5	100.0(893)
연령					
15~24세	56.8	43.2	16.8	26.4	100.0(125)
25~29세	64.8	35.2	18.5	16.7	100.0(837)
30~34세	80.8	19.2	11.6	7.6	100.0(1,706)
35~39세	90.8	9.1	4.4	4.7	100.0(1,962)
40~44세	91.5	8.5	5.1	3.4	100.0(1,967)
교육수준					
초교 이하	88.5	11.5	4.6	6.9	100.0(218)
중학교	89.4	10.6	6.3	4.3	100.0(654)
고등학교	85.3	14.7	7.7	7.0	100.0(3,575)
대학 이상	81.3	18.7	10.9	7.8	100.0(2,144)
현존자녀수					
0명	38.7	61.3	23.7	37.6	100.0(540)
1명	67.0	33.0	18.2	14.8	100.0(1,264)
2명	94.5	5.5	3.9	1.6	100.0(3,996)
3명	93.4	6.6	5.9	0.7	100.0(708)
4명 이상	91.7	8.4	4.8	3.6	100.0(84)

주49)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부지역은 피임비실천 부인 중 과거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이 10.1%, 피임경험 부인은 10.6%인 반면 읍면부 지역은 각각 9.2%, 10.6%이었음(김승권 외, 2000).

부인연령에 따른 피임실천 수준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피임비실천 부인의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다. 피임비실천 부인 중 과거경험부인의 비율은 20대 후반에서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0대 연령층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40세 이후에 증가하고 있다. 또한 피임무경험부인의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30대 초반까지 자녀출산을 종료한 후 30대 후반에는 단산을 위하여 피임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보다는 최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연령에 의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즉, 15~44세 유배우부인의 교육수준별 평균연령을 보면 초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평균연령은 40.8세, 중학교 학력의 부인은 39.6세, 고등학교는 35.4세, 대학교 출신의 부인은 34.6세로 나타나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수는 부인의 연령과 정비례의 관계로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현존 자녀수는 많으며,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피임실천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조사결과, 자녀가 1명인 부인의 경우 피임실천율은 67.0%,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94.5%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부터는 비슷한 피임실천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소자녀 가치관의 정착때문으로 두 자녀가 일반화됨에 따라 그 이상의 자녀를 둔 부인의 경우는 대부분이 피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별로 교육수준에 따른 피임실천상태를 제시한 것이 <표 5-3>이다. 15~24세 연령층의 경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보다 결혼연령이 높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임신시기가 늦어지는데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또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에서는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경우는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보다 피임실천율이 낮았다.

〈표 5-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피임실태

(단위: %)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소계	과거경험	무경험	
15~24세					
초교 이하[1]	-	-	-	-	-
중학교	70.0	30.0	10.0	20.0	100.0(10)
고등학교	52.5	47.5	17.5	30.0	100.0(80)
대학 이상	62.9	37.1	17.1	20.0	100.0(35)
25~29세					
초교 이하[1]	-	-	-	-	-
중학교	33.3	66.7	55.6	11.1	100.0(9)
고등학교	69.2	30.8	16.0	14.8	100.0(481)
대학 이상	59.2	40.8	21.3	19.5	100.0(343)
30~34세					
초교 이하	60.0	40.0	-	40.0	100.0(5)
중학교	81.8	18.2	7.3	10.9	100.0(55)
고등학교	83.7	16.3	9.4	6.9	100.0(969)
대학 이상	76.5	23.5	15.2	8.3	100.0(676)
35~39세					
초교 이하	93.8	6.3	4.2	2.1	100.0(48)
중학교	89.4	10.6	5.0	5.6	100.0(160)
고등학교	91.3	8.7	3.8	4.9	100.0(1,080)
대학 이상	90.3	9.7	5.2	4.5	100.0(671)
40~44세					
초교 이하	88.1	11.9	4.4	7.5	100.0(160)
중학교	91.9	8.1	5.7	2.4	100.0(421)
고등학교	90.7	9.3	5.4	3.9	100.0(967)
대학 이상	94.5	5.5	3.8	1.7	100.0(416)

주: 1) 15~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의 초교 이하의 분석대상수는 각각 1명과 2명으로 조사되어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제시하지 않았음.

자녀출산이 종료되는 30대 후반 연령층에서는 피임실천율이 정점을 보였으며,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은 낮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여성의 고학력화, 취업기회 확대 및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등으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피임실천율의 변화를 유배우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4 참조). 지역별로는 1976년 이후 1988년까지 동부지역이 계속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1991년 이후부터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높아지면서, 지역간 차이가 줄어들었다. 그러다 2003년에는 동부지역이 읍·면부 지역을 상회하면서 지역간 차이가 약간 넓어졌다. 1991년 이후 지역간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피임에 대한 지식 및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2003년에 다시 동부지역의 피임실천율이 높아지면서, 지역간 차이가 약간 벌어지는 것은 유배우부인의 출산종료시기가 과거에 비해 빨라지면서 피임을 실천하는 연령층이 낮아지는데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부인의 연령 및 현존자녀수에 따른 피임실천율은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계속 상승추세를 보였던 피임실천율은 가족계획사업이 축소되던 시기인 1991년을 기점으로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1991년의 경우 25~34세 연령층의 피임실천율은 저하하였고, 나머지 15~24세, 35~44세 연령층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4년에 40~44세 연령층의 피임실천율은 상승하였으나, 이 연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저하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7년에는 다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다가 2000년에는 다소 저하하였다. 2003년에는 30~34세 연령층에서는 저하하였으나, 다른 연령층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존자녀수별 피임실천율 역시 계속 상승하다가 1991년부터 자녀수별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4년에는 1~3명의 자녀를 둔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저하되었다가, 1997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다시 증가되었고, 2000년에는 자녀수 1명과 3~4명인 경우에만 감소하고 나머지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03년에는 자녀수 3명 이하에서는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정부에서 피임시술 보급량을 크게 축소하기 시작한 시점인 1989년 이후에 피임실천율이 일시적인 저하를 보였으나, 피임실천의 보편화로 피임실천율이 계속 증가하여서 여성의 생식보건과 관련하여 질적인 관리에 집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1976~2003년)

(단위: %)

특성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전체	44.2	54.5	57.7	70.4	77.1	79.4	77.4	80.5	79.3	84.5
지역										
동부	48.0	55.1	58.7	71.5	77.7	79.3	77.1	80.5	79.2	84.8
읍·면부	40.2	53.6	55.7	67.7	75.5	80.0	78.4	80.7	80.2	82.7
연령										
15~24세	15.4	18.3	22.5	35.8	44.4	45.6	40.6	45.2	43.5	56.8
25~29세	31.9	40.9	44.6	60.8	65.4	61.4	60.1	60.6	57.0	64.8
30~34세	55.8	68.5	71.7	84.2	86.8	84.4	81.3	82.5	81.3	80.8
35~39세	61.5	71.9	79.9	87.2	89.6	93.7	89.6	91.1	89.3	90.8
40~44세	45.1	53.3	62.3	69.6	81.6	87.2	87.4	89.6	87.7	91.5
교육수준										
무학	39.3	50.9	57.6	70.2	78.8	-	88.0	-	68.8	71.4
초등학교	42.8	54.2	60.3	74.1	80.9	86.4	84.9	88.4	86.2	89.1
중학교	44.2	52.9	55.5	69.0	79.6	84.7	81.7	86.3	88.9	89.4
고등학교	50.9	58.0	54.6	66.8	74.0	75.3	74.8	78.2	78.4	85.3
대학 이상	51.8	61.1	64.6	78.2	73.5	72.8	74.2	78.6	75.4	81.3
현존자녀수										
0명	4.6	7.0	11.0	13.8	21.0	20.4	23.0	26.1	29.3	38.7
1명	18.2	20.7	24.3	44.7	58.1	61.8	58.7	62.0	58.7	67.0
2명	44.0	58.2	66.7	82.5	89.3	91.4	90.2	92.5	92.7	94.5
3명	59.0	69.0	76.4	84.5	90.5	92.8	91.4	91.4	90.7	93.4
4명	60.4	68.9	70.8	80.1	87.6	88.0[1)]	88.4[1)]	94.2[1)]	93.8	91.4
5명 이상	47.2	58.5	64.2	76.3	83.8	-	-	-	94.1	92.9

주: 1) 현존자녀수 5명 이상 포함

자료: 〈표 5-1〉과 동일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은 연도별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 1976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도 높았으나, 198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이 낮아져서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1997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에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임실천의 초기단계에서는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피임실천이 이루어졌으나, 피임이 보편화되고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기가 늦어지면서 원하는 자녀수를 가진 후 피임을 수용하는 경향이 정착됨에 따라 고학력층 여성의 피임실천율이 낮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은 1991년을 정점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표 5-5 참조). 난관수술은 1988년까지 큰 폭의 증가를 하다가 1991년부터 감소하였으며, 2003년에는 2000년보다 2.7%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반대로 먹는피임약의 실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에는 1.8%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부터 증가하여 2003년에는 2.0%로 나타났다. 정관수술 실천율은 1994년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외에 계속 상승하여 2003년에 15.7%까지 증가하였으며, 콘돔실천은 꾸준히 증가하다 2003년에는 2000년보다 8.0%포인트가 감소하여 8.5%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자궁내장치와 기타 방법 등은 1988년까지 계속 감소하다 1991년부터 난관수술이 감소하면서 사용이 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각각 16.1%와 26.6%의 실천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콘돔 실천율 감소는 기타 피임방법의 증가에 의한 영향으로 이해된다.

〈표 5-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1976~2003년)

(단위: %)

피임방법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난관수술	4.1	14.5	23.0	31.6	37.2	35.3	28.6	24.1	18.3	15.6
정관수술	4.2	5.9	5.1	8.9	11.0	12.0	11.6	12.7	13.0	15.7
자궁내장치	10.5	9.6	6.7	7.4	6.7	9.0	10.5	13.2	13.7	16.1
먹는 피임약	7.8	7.2	5.4	4.3	2.8	3.0	1.8	1.8	2.1	2.0
콘돔	6.3	5.2	7.2	7.2	10.2	10.2	14.3	15.1	16.5	8.5
기타	11.3	12.1	10.3	11.0	9.2	9.9	10.6	13.6	15.7	26.6

자료: 〈표 5-1〉과 동일

따라서 가족계획사업의 활성화 시기에는 정부정책의 목표가 여성으로 난관수술이 주도 하였으나, 정부의 피임보급이 감소함에 따라 난관수술의 의존도가 떨어졌으며, 오히려 남성피임법인 정관수술과 반영구적 피임방법인 자궁내장치,

일시적 피임방법인 기타 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피임방법의 변화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피임방법이 여성피임방법인 난관수술에서 탈피하여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성 평등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둘째,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자궁내장치, 기타 피임방법 등 반영구적 피임방법 및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피임효과가 불확실한 피임방법의 사용증가로 인공임신중절에 노출되어 여성의 생식보건을 저해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제 2 절 피임실천양상

본 절에서는 가임기에 있는 유배우부인 중 현재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부인을 중심으로 피임실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부인특성별로 피임방법별 피임실천, 피임을 실천하는 목적 및 현사용 피임방법에 대한 계속 사용의향 및 선호하는 피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인의 특성 및 피임방법별 피임실천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사용하는 피임방법에 따른 피임실천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6 참조).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정관수술, 콘돔, 살정제, 월경주기법 및 기타방법 등의 피임방법에서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고,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등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다. 따라서, 동부지역에서는 주로 남성용 피임방법이, 읍·면부지역에서는 여성용 피임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남성의 경우 동부지역보다 피임방법의 선택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

며, 또한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이 정부의 피임보급량의 감소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임시술 보급량의 감소는 그 속도를 완만하게 하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방법별 피임실천율

(단위: %)

특성	실 천									비실천	계(수)
	소계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 주기법	기타 방법		
전체	84.5	15.6	15.7	16.1	2.0	8.5	0.7	10.8	15.1	15.5	100.0(6,598)
지역											
동부	84.8	14.8	16.6	15.2	1.9	8.8	0.7	10.9	15.9	15.2	100.0(5,577)
읍·면부	82.5	20.1	10.7	21.6	2.6	6.2	0.5	10.2	10.6	17.5	100.0(893)
연령											
15~24세	56.8	0.8	2.4	6.3	4.7	11.8	0.8	7.9	22.1	43.2	100.0(125)
25~29세	64.8	2.8	4.1	10.8	2.3	12.9	0.7	12.3	18.9	35.2	100.0(837)
30~34세	80.8	7.1	11.1	15.9	3.1	10.7	0.5	13.2	19.2	19.2	100.0(1,706)
35~39세	90.8	16.0	20.2	20.4	1.3	7.5	0.5	11.1	13.8	9.1	100.0(1,962)
40~44세	91.5	29.1	21.1	15.1	1.3	5.1	0.8	8.2	10.8	8.5	100.0(1,967)
교육수준											
초교 이하	88.5	44.7	16.5	15.5	2.8	1.3	0.4	3.2	4.1	11.5	100.0(218)
중학교	89.4	36.0	13.7	18.6	2.6	3.5	1.1	6.2	7.7	10.6	100.0(654)
고등학교	85.3	15.1	16.9	18.4	2.2	8.0	0.6	9.9	14.2	14.7	100.0(3,575)
대학 이상	81.3	7.4	14.2	11.8	1.3	11.4	0.7	14.5	20.0	18.7	100.0(2,144)
현존자녀수											
0명	38.7	1.9	0.7	2.8	3.5	8.0	0.2	7.4	14.2	61.3	100.0(540)
1명	67.0	5.8	6.4	10.8	1.7	10.4	0.5	11.5	19.9	33.0	100.0(1,264)
2명	94.5	19.4	20.7	18.1	1.8	8.1	0.8	11.3	14.3	5.5	100.0(3,996)
3명	93.4	22.3	16.4	23.5	2.1	6.4	0.5	9.2	13.0	6.6	100.0(708)
4명 이상	91.7	19.1	11.9	29.8	3.6	8.3	-	13.1	5.9	8.4	100.0(84)

부인연령 및 피임방법별로 피임실천율을 보면, 난관 및 정관수술 등의 영구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은 부인연령이 높을수록 상승하였다. 반영구적 피임방법인 자궁내장치는 35~39세 연령층에서 피임실천율이 가장 높았으며, 먹는 피임약, 콘돔, 기타방법 등의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은 젊은 연령층 부인에

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는 이미 원하는 자녀를 갖고 단산을 원하기 때문에 불임수술을 수용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것이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아직 원하는 자녀를 모두 출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터울조절이 가능한 일시적 피임방법의 사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임방법의 지도는 부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관리 될 때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피임방법별 실천율을 보면,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난관수술 및 먹는피임약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높았고, 일시적 피임방법인 콘돔, 월경주기법 및 기타방법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천율이 높았으며,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등은 학력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연령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력과 피임방법의 관계만으로 단순히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존자녀수 및 피임방법별 실천율은 부인의 연령에 따른 피임방법 실천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난관수술과 정관수술 같은 영구피임방법과 자궁내장치 같은 반영구피임방법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먹는 피임약, 콘돔, 월경주기법, 기타방법 등의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취업여부는 피임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출산 및 자녀양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피임실천율을 살펴보면 <표 5-7>과 같다. 취업을 하는 부인의 경우 피임실천율은 87.7%로 비취업상태에 있는 부인의 피임실천율인 81.5%보다 6.2%포인트가 높았다. 지역별 피임실천율은 취업부인은 지역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비취업부인은 지역간에 차이를 보여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읍·면부지역보다 피임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에 따른 연령별 피임실천율은 연령층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대 이하와 35~39세 연령층에서는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의 피임실천율은 비

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30~34세와 40~44세 연령층은 피임실천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의 피임실천율의 차이는 40~44세 연령층이 11.8%포인트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이의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경우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의 피임실천율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읍·면부지역은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간의 피임실천율의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5-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 연령 및 취업여부별 피임실천율

(단위: %)

취업여부	실천						비실천	계(수)
	소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국								
취업	87.7	0.8	7.5	18.6	27.4	33.4	12.2	100.0(3,150)
비취업	81.5	1.4	8.8	23.0	26.7	21.6	18.5	100.0(3,447)
동부								
취업	87.5	0.8	7.7	18.3	27.9	32.8	12.5	100.0(2,548)
비취업	82.5	1.3	8.2	22.8	27.3	22.9	17.5	100.0(3,029)
읍·면부								
취업	88.3	0.4	6.9	18.9	25.5	36.6	11.7	100.0(523)
비취업	74.3	1.4	13.0	24.4	23.3	12.2	25.6	100.0(370)

대체로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의 피임실천경향은 출산가능시기인 젊은 연령층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출산종료 시기인 40대 연령층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취업부인은 짧은 시기 안에 출산행위를 종료하는 것에 비해, 비취업부인은 터울을 두고 출산을 조절하고 있으며, 또한 취업부인이 비취업 부인보다 소자녀 출산의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지역간 차이를 보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 동부지역보다 취업여부가 출산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인의 연령 및 현존자녀수별로 피임실천율 및 불임수술실천율을 살펴보면 <표 5-8>과 같다. 자녀가 없는 부인의 피임실천율은 38.7%이고, 불임수술실천율

은 6.2%로, 이를 연령별로 보면 15~24세 연령층의 피임실천율은 51.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도 조사결과, 30~34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던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표 5-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 현존자녀수별 피임실천율 및 불임수술실천율

(단위: %)

구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2000년[1]						
피임실천율	43.5	56.9	81.3	89.3	87.7	79.3
불임수술실천율	1.9	5.3	20.1	38.8	57.7	31.3
2003년[2]						
피임실천율	56.8	64.8	80.8	90.8	91.5	84.5
불임수술실천율	4.2	10.9	22.5	39.8	54.8	37.1
0명						
피임실천율	51.6	45.1	24.0	33.9	32.7	38.7
불임수술실천율	3.1*	-	6.3*	21.1*	37.5*	6.2
1명						
피임실천율	54.3	61.3	65.6	66.8	80.1	67.0
불임수술실천율	8.0*	2.6	4.5	22.6	51.9	18.3
2명						
피임실천율	88.2	85.2	92.6	97.0	95.1	94.5
불임수술실천율	6.7*	22.7	27.7	41.6	58.2	42.4
3명						
피임실천율	-	100.0*	90.1	94.5	93.6	93.4
불임수술실천율	-	18.2*	26.3	45.2	45.9	41.7
4명						
피임실천율	-	75.0*	83.3*	100.0*	88.2*	91.4
불임수술실천율	-	33.3*	20.0*	34.6*	40.0*	35.9

주: * 실수가 적어 의미가 없음.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본 조사결과

이와 같이 15~24세 연령층의 피임실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결혼 초기의 젊은 부부의 출산계획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0세 이상 연령층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낮았는데, 이는 불임에 의한 영향이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 자녀를 원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인의 불임수술실천율은 20대 후반부터 증가하였는데 25~29세와 30~34세의 불임수술실천율은 빠른 시기에 자녀출산을 완료하고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를 1명 가진 부인들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임실천율과 불임수술실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2명인 부인의 경우는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에 비하여 피임실천율과 불임수술실천율이 훨씬 높았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연령층에서 90% 이상의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고, 불임수술실천율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40~44세 연령층의 경우 58.2%로 가장 높았다.

자녀가 3명인 부인은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보다 35~39세 연령층에서 불임수술실천율이 높은 것을 제외하고, 30세 이상 연령층에서 피임실천율과 불임수술실천율은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보다 낮았다.

2. 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 목적

부인의 피임실천목적은 출산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표 5-9>와 같다. 우리나라 15~44세의 유배우부인의 74.8%가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고, 터울조절 목적의 피임실천부인은 9.4%, 그리고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피임을 하고 있는 경우는 0.3%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임실천부인의 약 89%가 단산을 목적으로, 나머지 약 11%는 터울조절 및 건강 등의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임신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다.

지역별로는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1.2%포인트 높은 반면, 터울조절 및 건강, 취업, 경제적인 이유로 피임을 하는 경우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 보다 각각 0.8%포인트, 0.3%포인

트가 더 높아 지역간 차이 없이 피임을 실천하는 목적이 단산에 편중되었다. 또한 젊은 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부지역은 읍·면부지역보다 터울조절과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피임을 하는 경우가 다소 많아 다양한 피임행태를 보여주었다.

〈표 5-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목적에 따른 피임실태

(단위: %)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소계	터울조절	단산	기타[1]		
2000년	79.3	7.4	68.8	3.1	20.7	100.0(6,408)
2003년	84.5	9.4	74.8	0.3	15.5	100.0(6,598)
지역						
동부	84.8	9.5	75.0	0.3	15.2	100.0(5,577)
읍·면부	82.5	8.7	73.8	-	17.5	100.0(893)
연령						
15~24세	56.8	41.8	14.2	0.8	43.2	100.0(125)
25~29세	64.8	35.4	28.7	0.7	35.2	100.0(837)
30~34세	80.8	12.3	68.0	0.5	19.2	100.0(1,706)
35~39세	90.8	2.3	88.4	0.1	9.1	100.0(1,962)
40~44세	91.5	0.9	90.6	-	8.5	100.0(1,967)
교육수준						
초교 이하	88.5	1.4	86.6	0.5	11.5	100.0(218)
중학교	89.4	1.5	87.9	-	10.6	100.0(654)
고등학교	85.3	8.4	76.6	0.3	14.7	100.0(3,575)
대학 이상	81.3	14.2	66.8	0.3	18.7	100.0(2,144)
현존자녀수						
0명	38.7	29.3	7.8	1.7	61.3	100.0(540)
1명	67.0	24.3	42.2	0.5	33.0	100.0(1,264)
2명	94.5	3.5	91.0	-	5.5	100.0(3,996)
3명	93.4	1.6	91.7	0.1	6.6	100.0(708)
4명 이상	91.7	1.2	90.5	-	8.4	100.0(84)

주: 1) 기타에는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이 포함됨.

부인의 연령별로는 15~24세, 25~29세 연령층에서 터울조절을 위한 피임실천

율은 각각 41.8%, 35.4%로 2000년의 25.7%, 22.0%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한 반면, 30~34세 연령층은 12.3%로 2000년의 8.3%에 비해 4.0%포인트가 증가하였는데(표 5-9 참조),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자아성취 등의 욕구 등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젊은 연령층에서 계획출산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15~29세 연령층에서는 터울조절을, 35세 이상 연령층의 부인은 주로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다.

교육수준별 피임실천목적도 교육수준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령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저연령층에 속해있는 고학력 수준의 부인일수록 터울조절 목적의 피임실천이 많았던 반면, 고연령층의 저학력 부인은 단산목적의 피임실천이 많았다. 즉,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14.2%는 터울조절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부인의 86.6%는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다.

현존자녀수는 부인의 연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연령에 따른 피임실천목적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없는 부인은 주로 터울조절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고,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단산과 터울조절을 목적으로 피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경우는 단산위주의 피임실천을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인은 1명의 자녀를 출산한 후부터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대부분도 피임을 통하여 단산하고 있어서 저출산의 실태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피임실천부인만을 대상으로 피임목적을 보면 부인의 88.6%가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고, 11.1%만이 터울조절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0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 부인의 대부분은 원하는 자녀를 모두 출산한 후 피임을 실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부인들이 사용하는 피임방법은 그 목적이 단산인지 또는 터울조절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일시적 피임방법의 경우, 터울조절뿐만 아니라 단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서 피임실패의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피임목적에 따라 적절한 피임사용법에 대한 홍보계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피임실천 목적에 대한 지역간 차이를 보면, 터울조절 목적의 피임실천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1.3%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10.3%보다 1.0%포인트가 높았다. 피임방법별로는 동부지역에서는 콘돔(23.1%), 살정제(18.9%) 등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읍·면부지역에서는 먹는 피임약(29.6%), 월경주기법(20.0%), 기타방법(24.3%)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15~44세 유배우 피임실천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목적

(단위: %)

피임방법	터울조절	단산	기타이유	계(수)
전국	11.1	88.6	0.3	100.0(5,570)
난관수술	0.6	99.4	-	100.0(1,033)
정관수술	0.7	99.1	0.2	100.0(1,037)
자궁내장치	7.7	92.0	0.3	100.0(1,064)
먹는 피임약	21.5	78.5	-	100.0(130)
콘돔	22.9	76.0	1.1	100.0(555)
살정제	16.7	83.3	-	100.0(42)
월경주기법	18.1	81.4	0.6	100.0(715)
기타	23.5	76.3	0.2	100.0(994)
동부	11.3	88.4	0.4	100.0(4,727)
난관수술	0.7	99.3	-	100.0(827)
정관수술	0.8	99.0	0.2	100.0(927)
자궁내장치	7.4	92.3	0.4	100.0(843)
먹는 피임약	19.4	80.6	-	100.0(103)
콘돔	23.1	75.7	1.2	100.0(493)
살정제	18.9	81.1	-	100.0(37)
월경주기법	17.9	81.5	0.7	100.0(610)
기타	23.3	76.4	0.2	100.0(887)
읍·면부	10.3	89.7	-	100.0(843)
난관수술	0.5	99.5	-	100.0(206)
정관수술	-	100.0	-	100.0(110)
자궁내장치	9.0	91.0	-	100.0(221)
먹는 피임약	29.6	70.4	-	100.0(27)
콘돔	21.0	79.0	-	100.0(62)
살정제	-	100.0	-	100.0(5)
월경주기법	20.0	80.0	-	100.0(105)
기타	24.3	75.7	-	100.0(107)

3. 현사용 피임방법에 대한 계속 사용의향 및 선호피임방법

<표 5-11>은 비영구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 중에서, 향후 사용의향 및 앞으로 피임방법을 바꾸려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향후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출산 및 여성의 생식건강과도 관련이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 피임방법을 계속 사용할 의향을 가진 부인은 64.9%이었으며, 다른 피임방법으로 변경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은 27.8%,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7.3%이었다. 피임방법별로는 자궁내장치 수용부인의 77.7%가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먹는 피임약을 사용하는 부인은 42.3%만이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을 변경하겠다고 응답한 부인은 먹는 피임약을 사용하고 있는 부인이 4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기타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이 33.1%, 콘돔을 사용하는 부인은 32.6%이었고, 이외에 살정제 및 월경주기법 사용부인도 각각 28.6%, 27.3%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궁내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부인은 18.2%만이 변경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른 방법으로 바꾸겠다는 의향을 가진 부인의 바꾸고자 하는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이 6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궁내장치 11.2%, 난관수술 7.0%, 기타방법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방법은 낮은 비율을 보여 향후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사용상의 불편 및 실패임신의 위험이 낮은 정관수술과 자궁내장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사용중인 피임방법별로 향후 사용을 희망하는 피임방법을 보면, 현재 사용하는 모든 피임방법에서 정관수술로 바꾸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자궁내장치를 사용중인 부인은 68.4%, 먹는 피임약 43.8, 콘돔 67.6%, 살정제 69.2%, 월경주기법 64.1%,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은 71.0%로 다른 방법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외에 현재 살정제 및 먹는 피임약을 사용하는 부인의 경우 자궁내장치로 바꾸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콘돔, 월경주기법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의 경우도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상의 번거로움이 따르는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의 경우 향후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안정성이 높고, 사용상의 불편함이 적은 영구적 및 반영구적 피임방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15~44세 유배우부인 중 비영구적 피임실천부인의 방법별 계속 사용의향 및 변경희망 피임방법

(단위: %)

구 분	현 사용 피임방법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 주기법	기타	전체
향후 계속사용 의향							
계속 사용하겠음	77.7	42.3	58.0	54.8	65.6	57.9	64.9
바꾸겠음	18.2	49.2	32.6	28.6	27.3	33.1	27.8
생각해보지 않았음 /모르겠음	4.1	8.5	9.4	16.7	7.1	9.0	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65)	(130)	(555)	(42)	(715)	(995)	(3,502)
변경희망 피임방법[1]							
난관수술	14.0	9.4	5.5	-	5.6	4.3	7.0
정관수술	68.4	43.8	67.6	69.2	64.1	71.0	66.7
자궁내장치	0.5	21.9	13.2	23.1	13.3	12.5	11.2
먹는 피임약	2.1	-	1.6	-	3.1	0.9	1.6
콘돔	0.5	1.6	-	-	1.0	0.3	0.5
살정제	0.5	-	0.5	-	-	0.3	0.3
월경주기법	-	1.6	-	-	-	0.3	0.2
기타	5.7	10.9	3.8	7.7	4.6	3.7	4.8
미결정	8.3	10.9	7.7	-	8.2	6.7	7.7
난관 또는 정관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93)	(64)	(182)	(13)	(195)	(328)	(975)

주: 1) 현재 사용중인 피임방법을 바꾸겠다고 응답한 부인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 3 절 피임비실천실태

본 절에서는 가임기에 있는 유배우부인 중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을 중심으로 피임비실천 양상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피임중단 및 무경험자로 구분하여 피임중단시 사용했던 피임방법, 피임중단 및 무경험 이유, 그리고 향후 피임실천 의향 및 선호하는 피임방법 그리고 피임불원부인의 이유 등을 살펴본다.

1. 피임중단시 사용했던 피임방법

피임비실천 부인 중 과거에 피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피임방법을 보면, 기타방법이 2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월경주기법 22.2%, 콘돔 20.4%, 자궁내장치 18.1%, 먹는 피임약 12.1%의 순이었다. 이외에 살정제 1.8%, 불임수술을 사용했던 부인은 극히 미미하였다(표 5-12 참조). 이를 2000년과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피임방법은 콘돔 및 기타 방법으로 2000년에 비해 2003년에는 각각 13.3%포인트 감소, 15.4%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먹는 피임약과 살정제를 제외한 그 외의 피임방법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피임방법은 콘돔, 월경주기법 및 기타 방법 등이었고,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에 비하여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및 불임수술 등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15~24세 연령층에서는 콘돔을 사용했던 부인이 38.1%이었고, 월경주기법 19.0%, 자궁내장치 및 먹는 피임약도 각각 14.3%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콘돔과 살정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 다. 25~29세 연령층에서는 월경주기법 및 기타 방법이 각각 26.6%로 가장 많았고, 콘돔 23.4%, 먹는 피임약 15.6%의 순으로 월경주기법 사용자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0~34세 연령층에서는 기타방법이 28.4%, 월

경주기법이 22.8% 그리고 콘돔이 21.3%로 평균수준을 보였고, 자궁내장치는 17.8%로 평균 이하 수준이었으며, 기타방법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35~39세 연령층은 월경주기법이 2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타방법이 21.2%, 자궁내장치 및 콘돔이 각각 20.0%, 먹는 피임약은 12.9% 등의 순이었다. 40~44세 연령층은 자궁내장치와 난관수술, 정관수술이 각각 35.1%, 4.1%, 2.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고, 콘돔은 10.3%, 월경주기법은 12.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24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의 경우, 콘돔과 월경주기법에 편중되었으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궁내장치, 살정제, 불임수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는 콘돔, 월경주기법 및 기타 방법 등을 사용했던 반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은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및 기타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15~44세 현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의 지역 및 연령별 과거사용 최종 피임방법

(단위: %)

특성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 주기법	기타	계(수)
2000년[1)]	1.2	0.5	19.6	9.6	33.7	1.4	25.2	8.8	100.0(647)
2003년[2)]	0.7	0.7	18.1	12.1	20.4	1.8	22.0	24.2	100.0(554)
지역									
동부	0.6	0.2	16.0	11.8	21.6	2.1	22.5	25.2	100.0(476)
읍·면부	1.3	3.8	30.8	14.1	12.8	-	19.2	17.9	100.0(78)
연령									
15~24세	-	-	14.3	14.3	38.1	4.8	19.0	9.5	100.0(21)
25~29세	-	-	7.1	15.6	23.4	0.6	26.6	26.6	100.0(154)
30~34세	-	0.5	17.8	7.6	21.3	1.5	22.8	28.4	100.0(197)
35~39세	-	1.2	20.0	12.9	20.0	2.4	22.4	21.2	100.0(85)
40~44세	4.1	2.1	35.1	14.4	10.3	3.1	12.4	18.6	100.0(97)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본 조사결과

2. 피임중단 및 무경험의 이유

본 조사결과,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부인의 비율은 15.5%로 이 중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나 중단한 부인은 8.5%, 그리고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은 7.0%이었다.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나 조사당시 피임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부인의 피임중단 이유는 임신을 원하기 때문에 중단한 비율이 62.9%로 피임의 중단 원인이 자녀를 갖는데 있었다. 이외에도 피임을 중단한 이유는 피임의 영구적 불필요 11.9%, 피임의 일시적 불필요 10.6%, 실패임신 5.0%, 부작용 4.9%, 그리고 사용상 불편 2.3% 등으로 나타났다.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피임을 중단한 이유로 실패임신, 자연배출, 사용상 불편 때문은 감소한 반면, 임신을 원하거나, 피임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불필요한 경우, 부작용 등의 이유는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임신희망, 부작용, 기타 등의 이유로 피임을 중단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 실패임신, 자연배출, 사용상 불편, 피임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불필요 등으로 중단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읍·면부지역 거주 부인의 경우 과거에 주로 사용했던 피임방법은 피임효과가 불확실한 일시적 피임방법으로 나타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의 피임 무경험이유로는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8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연불임인 경우가 14.0%, 피임이 일시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으로 응답한 부인은 2.2%이었다. 이를 2000년과 비교하면 피임이 일시적으로 불필요하거나 피임지식의 부족한 경우 등은 감소하는 대신에 자녀를 원하거나 자연불임인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자연불임, 피임의 일시적 불필요, 피임지식 부족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과거에 피임을 실천하였으나 현재 피임을 중단한 부인 또는 과거

에 전혀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없는 부인의 경우도 현재 피임을 비실천하는 이유로 불임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불임으로 임신을 못하는 부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불임치료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표 5-13〉 15~44세 현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중단 및 무경험부인의 비율과 이유

(단위: %)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2000년	2003년		
전체 부인 중 피임중단	10.1	8.5	8.6	7.8
부인의 비율(수)	(650)	(561)	(482)	(79)
피임중단 이유				
임신 원함	60.0	62.9	64.8	51.3
실패 임신	7.9	5.0	4.6	7.5
자연 배출	1.3	0.4	0.2	1.3
사용상 불편	2.9	2.3	2.1	3.8
피임 영구 불필요	10.0	11.9	11.8	12.5
피임 일시 불필요	9.1	10.6	9.3	18.8
부작용	4.6	4.9	5.1	3.8
기타	4.2	2.0	2.1	1.3
계	100.0	100.0	100.0	100.0
전체부인중 피임 무경험	10.6	7.0	6.6	9.5
부인의 비율(수)	(682)	(463)	(366)	(97)
피임무경험 이유				
자연 불임	11.6	14.0	14.2	13.3
자녀 원함	77.9	82.3	82.2	82.7
피임 일시 불필요	6.9	2.2	2.5	1.0
피임지식 부족	0.9	0.6	0.8	-
기타	2.7	0.9	0.3	3.1
계	100.0	100.0	100.0	100.0

3. 향후 피임실천 의향 및 선호 피임방법

현재 피임비실천상태에 있는 부인들의 향후 피임실천 의향을 살펴보면 <표 5-14>와 같다. 피임비실천 부인 중 51.5%가 실천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31.4%는 실천할 의향이 없었고, 아직 그 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17.1%이었다.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실천하지 않겠다는 부인의 비율은 37.2%로 2003년에 5.8%포인트가 감소한 반면, 실천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5.0%로 6.5%포인트가 증가하였다.

향후 피임실천의향을 과거에 피임실천 경험이 있는 부인과 피임실천 경험이 없는 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경우는 중단부인이 62.2%, 무경험부인이 38.5%로 중단부인이 무경험부인보다 23.7%포인트나 높았다. 또한 실천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중단부인이 24.6%, 무경험부인이 39.6%로 무경험부인이 15.0%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여서,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 부인이 향후 피임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임실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부인의 비율은 중단부인의 경우 13.3%, 무경험부인은 22.0%로 피임실천에 있어서 과거 피임경험자보다는 피임무경험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향후 피임실천 의향은 동부지역이 51.0%, 읍·면부지역이 54.0%로 읍·면부지역이 약간 높았다. 과거 피임경험이 있는 중단부인과 경험이 없는 비실천부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중단부인의 경우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은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8.6%포인트(동부지역 61.0%, 읍·면부지역 69.6%)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무경험부인도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이 3.5%포인트(동부지역 37.7%, 읍·면부지역 41.2%)가 높았다. 반면 실천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읍·면부지역이 약간 높았으며(동부지역 30.7%, 읍·면부지역 34.7%), 중단한 부인의 실천할 의향이 없는 비율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2.0%포인트(동부지역 24.8%, 읍·면부지역 22.8%) 높았으나, 무경험부인은 읍·면부지역이 6.0%포인트(동부지역 38.3%, 읍·면부지역 44.3%로)가 높았다. 그리고 피임실천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비율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6.9%포인트(동부지역 18.3%, 읍·면부지역 11.4%)높았으며, 중단부인과 무경험부인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동부지역보다 높은 피임실천의지를 보인 반면, 동부지역은 피임실천여부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표 5-14〉 15~44세 현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비실천부인의 향후 실천의향

(단위: %)

향후 피임실천의향	전국			동부			읍·면부		
	중단부인	무경험부인	전체	중단부인	무경험부인	전체	중단부인	무경험부인	전체
실천할 예정	62.2	38.5	51.5	61.0	37.7	51.0	69.6	41.2	54.0
모르겠음/생각해 보지 않았음	13.3	22.0	17.1	14.2	24.0	18.3	7.6	14.4	11.4
실천하지 않겠음/피임할 필요 없음	24.6	39.6	31.4	24.8	38.3	30.7	22.8	44.3	3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58)	(460)	(1,018)	(479)	(363)	(842)	(79)	(97)	(176)

피임비실천부인 중 향후 피임실천의향을 가지고 있는 부인의 선호하는 피임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피임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 피임을 희망하는 부인의 선호하는 피임방법을 살펴보면 <표 5-15>와 같다.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으나 향후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이 33.1%로 가장 높아서 정관수술 수용률이 향후 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자궁내장치 13.3%로 나타났고, 기타 방법 12.2%, 난관수술 7.4%, 콘돔 6.1%, 월경주기법 4.9%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향후 피임실천 의향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도 17.7%나 있었다.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부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즉, 두 지역 모두 가장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이었으나 그 다음은 지역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기타

방법 및 자궁내장치 그리고 난관수술 등을 선호한 반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자궁내장치, 난관수술 및 월경주기법 등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재 정관수술에 의한 피임실천율은 15.7%에 불과하나 피임비실천자의 정관수술 이용희망률이 33.1%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정관수술의 수요가 급증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5-15〉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희망부인의 선호 피임방법

(단위: %)

선호피임방법	전국	동부	읍·면부
난관수술	7.4	6.7	10.5
정관수술	33.1	32.9	33.7
난관 혹은 정관	1.0	0.9	1.1
자궁내장치	13.3	10.4	26.3
먹는 피임약	4.4	4.6	3.2
콘돔	6.1	5.8	7.4
살정제	-	-	-
월경주기법	4.9	4.2	8.4
기타	12.2	13.7	5.3
방법미결정	17.7	20.6	4.2
계	100.0	100.0	100.0
(수)	(526)	(431)	(9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으로 불임수술 및 자궁내장치 등 효과적인 피임방법이 높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피임실패의 우려가 있는 먹는 피임약, 콘돔, 월경주기법, 기타 방법 등을 이용하겠다는 부인도 상당수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이들 일시적 피임방법을 선호하는 부인과 아직 피임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들에 대하여 안전한 피임법 사용에 대한 홍보 및 계몽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피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피임을 실천할 의향이 없는 부인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년 이상 임신이 되

지 않는 자연불임이 49.7%로 가장 높았고,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24.7%, 자궁적출,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등으로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가 23.0%, 그리고 기타 이유로 피임을 하지 않겠다는 부인은 2.7%에 불과하였다. 즉, 전체 피임비실천부인 중 피임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부인(34.7%)의 72.7%가 임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6 참조).

〈표 5-16〉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불원부인의 이유

(단위: %)

이유	전국	동부	읍·면부
피임 불필요[1]	23.0	22.3	25.9
자연불임[2]	49.7	51.2	43.1
자녀 원함	24.7	24.4	25.9
기타	2.7	2.1	5.2
계	100.0	100.0	100.0
(수)	(300)	(242)	(58)

주: 1) 자궁적출, 폐경, 양측 나팔관 제거
2) 3년 이상 임신 안됨.

피임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궁적출이나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등으로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각각 22.3%, 25.9%로 3.6%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자연불임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51.2%)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43.1%)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제 4 절 임신노출상태 및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태

1. 임신노출상태

가임능력이 있는 유배우부인들의 임신가능여부는 일정 시점에서 임신불가능부인과 임신가능 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

은 다시 불임수술에 의하여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자궁적출,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등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은 자연불임상태의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현재 임신중인 부인, 현재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중인 부인, 또한 임신은 가능하나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노출상태를 살펴보면 <표 5-17>과 같다. 임신불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34.3%,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65.6%이었다. 임신불가능한 부인은 불임수술을 수용한 부인이 31.1%, 자연불임인 부인 2.2%, 임신이 불가능한 부인이 1.0% 등이었으며, 임신가능부인은 일시피임실천중에 있는 부인이 52.7%, 피임비실천중인 부인 8.7%, 현재 임신 중인 부인이 4.2%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임신에 노출되어 있는 부인은 전체 부인의 8.7%로 이는 현재 임신이 가능하면서 피임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부인이다. 그러나 이들 부인 가운데 실제로 피임이 필요하지만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방임상태에 있는 부인은 훨씬 낮은 수준이라 하겠다. 이는 현재 피임비실천 부인 중 약 73.0%가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주50] 피임을 중단하거나 피임을 실천하지 않았으며, 일시적으로 피임이 불필요한 부인도 약 8.0%[주51]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피임이 필요 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방임부인집단'은 극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신노출상태를 2000년과 비교하면, 임신불가능한 부인은 2000년에 비하여 1.1%포인트가 감소한 반면,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1.0%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불임수술 보급량의 감소에 따라 불임수술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감소한 반면,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지역별로 보면 불임수술수용의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31.2%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0.6%포인트가 높았던 반면,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1.7%포인트가 높았으나, 피

주50) 피임중단부인의 62.9%가, 피임무경험부인의 82.3%가 자녀를 원하여 피임을 하지 않았음.
주51) 피임중단부인의 10.6%가, 피임무경험부인의 2.2%가 일시적으로 피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었음.

임비실천중인 경우는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1.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 5-1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노출상태

(단위: %)

특성	임신불가능			임신가능			계(수)
	불임수술 수용	임신[1] 불가능	자연[2] 불임	현재 임신중	피임 실천중	피임 비실천	
2000년[1]	31.3	1.4	2.7	5.7	47.9	11.0	100.0(6,408)
2003년[2]	31.1	1.0	2.2	4.2	52.7	8.7	100.0(6,645)
지역							
동부	31.2	1.0	2.2	4.1	53.0	8.5	100.0(5,614)
읍·면부	30.6	1.5	2.4	4.3	51.3	10.0	100.0(1,029)
연령							
15~24세	2.4	-	-	17.6	54.4	25.6	100.0(125)
25~29세	7.0	0.1	0.4	14.9	57.7	19.8	100.0(837)
30~34세	18.1	0.2	1.1	6.2	62.4	11.9	100.0(1,711)
35~39세	36.0	0.9	2.6	0.9	54.4	5.3	100.0(1,971)
40~44세	49.9	2.3	3.8	0.2	41.1	2.6	100.0(1,977)
현존자녀수							
0명	2.4	0.6	7.6	24.3	36.1	30.0	100.0(540)
1명	12.2	1.7	5.1	9.0	54.8	17.2	100.0(1,264)
2명	40.0	0.8	0.8	0.9	54.4	3.2	100.0(4,000)
3명	38.8	1.7	1.0	0.1	54.4	3.9	100.0(709)
4명 이상	31.0	1.2	3.6	-	60.7	3.6	100.0(84)

주: 1) 자궁적출, 폐경, 양측 나팔관 제거
2) 3년 이상 임신 안됨.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본 조사결과

연령별 임신노출상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임신불가능한 상태의 부인이 증가하고,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의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15~24세 연령층에서는 임신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이 97.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5~29세 연령층에서 임신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의 비율이 92.4%로 나타났으며, 35~39세 연

령층에서는 불임수술수용 부인이 36.0%, 임신불가능이 0.9%, 자연불임이 2.6%로 임신불가능 상태에 있는 부인은 39.5%의 비율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40~44세 연령층에서는 임신불가능한 부인의 비율이 56.0%, 임신가능한 부인이 43.9%로 임신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이 임신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의 비율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존자녀수별 임신노출상태는 자녀수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대체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임신불가능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피임보급대상부인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피임보급 및 관련 홍보·계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피임실천상태를 피임실천과 피임비실천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피임비실천상태에 있는 부인 중 현재 임신중인 부인이 4.2%, 자연불임인 부인이 2.2%,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1.1%,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1.0%, 기타이유가 7.6% 등이었다. 따라서 현재 임신노출상태에 있는 부인의 비율은 자녀를 원하거나 기타 이유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로 8.7%에 해당된다(표 5-18 참조).

그런데 이 중 자녀를 원하는 경우는 피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타 이유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인 7.6%의 부인을 피임보급 대상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중에는 산후무월경기간으로 피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인, 남편의 해외출장,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피임이 불필요한 부인을 제외하면 피임이 필요하나 피임을 하고 있지 않는 부인은 7.6%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이다. 피임보급대상 부인은 읍·면부 지역이 동부지역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았으며, 젊은 연령의 부인인 경우, 자녀수가 적은 경우 피임보급대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5-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보급대상자

(단위: %)

특성	피임실천		피임비실천 이유					계(수)
	불임수술 수용	일시적 피임방법 수용	임신[1] 불가능	자연[2] 불임	현재 임신중	자녀 희망	기타	
전체	31.1	52.7	1.0	2.2	4.2	1.1	7.6	100.0(6,645)
지역								
동부	31.2	53.0	1.0	2.2	4.1	1.0	7.5	100.0(5,614)
읍·면부	30.6	51.3	1.5	2.4	4.3	1.5	8.5	100.0(1,029)
연령								
15~24세	2.4	54.4	-	-	17.6	2.4	23.2	100.0(125)
25~29세	7.0	57.7	0.1	0.4	14.9	1.8	18.0	100.0(837)
30~34세	18.1	62.4	0.2	1.1	6.2	1.6	10.3	100.0(1,711)
35~39세	36.0	54.4	0.9	2.6	0.9	1.0	4.3	100.0(1,971)
40~44세	49.9	41.1	2.3	3.8	0.2	0.3	2.3	100.0(1,977)
현존자녀수								
0명	2.4	36.1	0.6	7.6	23.3	7.0	23.0	100.0(540)
1명	12.2	54.8	1.7	5.1	9.0	2.2	15.0	100.0(1,264)
2명	40.0	54.4	0.8	0.8	0.9	0.1	3.1	100.0(4,000)
3명	38.8	54.4	1.7	1.0	0.1	-	3.9	100.0(709)
4명 이상	31.0	60.7	1.2	3.6	-	1.2	2.4	100.0(84)

주: 1) 자궁적출, 폐경, 양측 나팔관 제거
2) 3년 이상 임신 안됨.

2.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천여부

<표 5-19>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노출상태에서 추가자녀 희망여부와 피임실천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불임수술 수용(31.1%), 임신불가능(1.0%), 자연불임(2.2%), 현재 임신중(4.2%)인 부인 등을 제외한 부인(61.4%)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추가자녀 희망여부에 따른 피임실천여부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임신의 위험에 노출된 부인의 추가자녀 희망여부 및 현재 피임실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5-1]과 같이 요약된다. 앞으로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9.0%이었으며,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4.2%로 나타났다. 반면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하는 경우는 74.5%, 자녀를 원하지만 피임을 하는 경우는 12.3%이었다. 따라서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노출상태에 있는 부인의 추가자녀 희망여부별 피임실천상태

		추가자녀희망여부		
		희망(+)	비희망(-)	
피임 실천 여부	실천(+)	A(12.3%)	B(74.5%)	86.7%
	비실천(-)	C(9.0%)	D(4.2%)	13.3%
		21.3%	78.7%	100.0%

이와 같은 A, B, C, 그리고 D 집단을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5-19>와 같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자녀를 희망하면서 피임을 실천하는 경우주52)와 자녀를 희망하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경우가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피임보급대상인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3.8%)이 동부지역 거주부인(3.0%)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별로는 15~24세 연령층은 자녀를 희망하면서 터울조절 때문에 피임을

주52) 이들 부인은 자녀를 터울조절하기 위하여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실천하는 부인층에 집중되었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25~29세 연령층이 4.8%로 가장 많았고,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따라서 15~29세 연령층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19〉 15~44세 유배우부인[1)]의 특성별 자녀추가 희망여부 및 피임실천

(단위: %)

특성	자녀희망 피임실천 (A)	자녀비희망 피임실천 (B)	자녀희망 피임비실천 (C)	자녀비희망피임비실천 (D)	계(수)
전체	13.1	79.3	4.4	3.1	100.0(3,616)
지역					
동부	13.3	79.2	4.5	3.0	100.0(3,068)
읍·면부	11.7	80.4	4.0	3.8	100.0(547)
연령					
15~24세	57.3	25.3	13.3	4.0	100.0(75)
25~29세	48.5	35.4	11.3	4.8	100.0(520)
30~34세	13.5	76.7	6.2	3.6	100.0(1,101)
35~39세	2.2	93.7	1.5	2.6	100.0(1,095)
40~44세	0.7	96.1	1.1	2.1	100.0(828)
현존자녀수					
0명	59.0	13.7	25.7	1.6	100.0(249)
1명	32.7	53.1	10.8	3.3	100.0(719)
2명	3.9	92.5	0.7	2.9	100.0(2,194)
3명	1.2	92.8	0.5	5.5	100.0(402)
4명 이상	1.9	94.3	-	3.8	100.0(53)
교육수준					
초교 이하	-	98.2	-	1.8	100.0(57)
중학교	2.2	92.6	3.0	2.2	100.0(270)
고등학교	11.5	81.0	4.1	3.4	100.0(1,975)
대학 이상	18.2	73.5	5.4	2.8	100.0(1,310)

주: 1)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불가능(1.0%), 불임상태(2.2%), 불임수술을 받은 경우(31.1%) 및 현재 임신 중인 경우(4.2%) 등을 제외한 부인, 즉, 임신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일시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61.4%)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현존자녀수별로는 연령과 대체로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자녀를 희망하지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인 피임보급대상자층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5.5%,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3.8%가 관리대상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의 비율이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희망하면서 터울조절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경우와 자녀를 희망하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보였다. 이는 고학력일수록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출산기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자녀를 희망하지 않으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관리대상은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3.4%로 가장 높았다.

제 5 절 피임수용실태 변화의 시사점

우리나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율은 2003년 84.5%로 2000년보다 5.2%포인트가 증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임신중인 경우와 폐경, 자연불임 등과 같이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 등이 있어 피임실천율의 한계를 약 80% 전·후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1996년 6월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는 등 인구자질정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높은 수준의 피임실천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혼부부 사이에 피임실천이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장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임실태와 관련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피임방법별 실천율의 변화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여성피임방법인 난관수술에서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로 피임방법이 전환되는 추세로, 이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양성 평등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른 하나는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

로 바뀌고 있다는 점으로, 일시적 피임방법은 터울조절의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단산을 한 부인의 경우에는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다는 것은 피임실패의 가능성이 예상되어 피임실천의 질적인 측면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피임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임목적에 적합한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계몽, 상담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시적 피임방법의 사용은 출산 가능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에서 많았는데, 이들 연령층의 피임실패는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지며, 이는 여성의 생식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부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지도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임비실천 부인 중 피임을 비실천하는 이유로 불임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1990년 25만쌍에서 2003년 64만쌍으로 156% 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도 우리나라 유배우 가임여성의 불임발생률은 13.5%로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적극적인 불임치료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불임률은 최근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추가자녀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은 임신에 노출되어 있는 방임부인집단으로 인공임신중절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부인을 대상으로 피임지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고연령층 부인의 임신은 그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임신이 바로 인공임산중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고연령층 부인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인의 생식보건을 증진시키고 인구자질 향상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 6 장 인공임신중절실태

인공임신중절의 개념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기간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공유산이라고도 한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은 자연유산, 사산 등과 함께 임신소모의 한 형태로서는 동일한 성격을 갖지만, 자연유산과 사산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과임에 반하여 인공임신중절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임신종결의 형태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에서는 여성의 출산권 및 출산건강(Reproductive Health)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출산간격, 출산시기 및 자녀수의 결정, 출산조절을 위한 가족계획 정보의 접촉과 피임방법의 자유로운 선택 등을 여성의 출산권으로 보는 것을 전체 참석국가가 찬성하였다. 하지만 태아는 생성 중에 있는 존중되어져야 할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출산권 및 출산건강의 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종교단체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다. 또한 2004년 초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UN 회의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억제하자는 미국의 강력한 제기에 대하여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이들 제3세계 국가들은 인공임신중절의 폐해는 인정하지만 인공임신중절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공임신중절을 실시하는 국가에 대한 재정적 압박은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음성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증가시켜 국민의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여 시기상조임을 역설하였다.

어쨌든 인공임신중절은 낮은 피임접근성, 비효과적 피임방법의 보급 등으로 인하여 피임실패임신 또는 불원임신의 사후수단이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나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형법의 낙태죄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행위를 불법화하였으나, 많은 여성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에 의하여 원치 않는 출산을 피할 수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는 당사자와 의료인은 실정법상 위법행위로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큰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제한적 허용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넷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척간에 임신된 경우; 마지막으로, 임신의 지속이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시작된 1962년 이래 인공임신중절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출산으로 연결시키지 않기 위한 한 수단이 되어 왔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인구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임신초기에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부인에게 월경조절술(Menstruation Regulation, MR)이라는 이름아래 시술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한국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은 크게 성행하게 되었으며, 피임실천율의 증가와 초혼연령의 상승과 함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소자녀관의 정착과 함께 태아 성감별을 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자행되고 있어 인공임신중절 자체의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것으로 우려되며, 성비 불균형이라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인공임신중절률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고, 이어서 부인의 인공임신중절경험횟수,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 및 당시 부인연령, 수용이유, 그리고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 등을 부인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다.

제 1 절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인공임신중절률은 한 여성이 생애동안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횟수를 일정시점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본 실태조사는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과거조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20～44세 유배우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6-1>은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최근 우리나라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다소 상승하였다. 즉, 1962년부터 시작된 정부차원의 가족계획사업이 추진되면서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1990년을 절정으로 전체 연령층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1999년의 인공임신중절률도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그렇지만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2년의 인공임신중절률은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30～34세 연령층 부인만이 감소하였고,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일제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5세 간격별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인공임신중절률을 보여주고 있는 20～24세 연령층은 1990년의 186을 기록한 후 급격히 떨어져 1996년 79, 1999년 53으로 저하되었으나 2002년에는 다시 74로 상승하였다. 특히 동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어느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24세 연령층의 피임실천율이 다른 연령층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도 다소 안정성이 낮은 일시적 피임방법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서 나타나는 결과라 추측된다.

25~29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은 1984년의 146을 정점으로 저하하기 시작하여 1987년 103에서 1990년에는 112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그 후 급격히 떨어져 1999년에는 33 수준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2002년에는 38로 다소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20~24세 연령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출산을 늦추려는 의도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 20~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변동추이

(단위: 회/1000명당)

연령	1975[1)]	1984[2)]	1987[3)]	1990[4)]	1993[5)]	1996[6)]	1999[7)]	2002[8)]
20~24세	63	91	102	186	105	79	53	74
25~29세	86	146	103	112	94	51	33	38
30~34세	158	115	71	60	63	49	33	30
35~39세	153	40	29	21	25	16	12	21
40~44세	75	20	7	6	1	3	1	6

자료: 1) 박병태 외,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78.
2) 문현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3) _____,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4)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5)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6)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7)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8) 본 조사결과

30~34세 연령층은 1975년 158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1996년 49, 1999년 33으로 현저한 저하추세를 보였으며, 2002년에도 30으로 저하하였다. 특히 2002년 인공임신중절률의 연령별 계층 중에서 유일하게 저하되었음은 이 연령층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35~39세와 40~44세 연령층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도 급격히 저하하여 1975년 153과 79에서 1999년 12와 1로 낮아졌으나, 2002년에는 오히려 21과 6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고연령층에서의 인공임신중절률의 상승은 과거연도의 고연령층이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으로 불임시술에 의한 안정적인 피임방법을 많이 실천하였으나 이제는 상대적으로 덜 안정적인 피임방법인 일시피임방법에 의하여 피임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인공임신중절경험 실태

우리나라 부인이 얼마나 많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앞에서 살펴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과 함께 이들의 인공임신중절경험률, 인공임신중절횟수 분포 및 평균 인공임신중절횟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인공임신중절경험률은 전체 부인 중 인공임신중절을 1회 이상 경험한 부인의 비율을 의미하며, 인공임신중절횟수는 얼마나 많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전자는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여부를 중요시하고 반복경험은 감안하지 않으며, 후자는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부인의 경우 실제 경험횟수를 감안하므로 인공임신중절을 얼마나 자주 수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 하겠다.

1.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0~1990년대 초반에는 약 52~54% 수준에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2000년 39%, 2003년 40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997년과 2003년의 조사[주53)]에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았다. 유일하게

주53) 1994년 조사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없었고, 2000년 조사에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41%)이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경험률(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0년 자료에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보다 2.0%포인트 높았으나, 2003년 조사에서는 다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보다 3.0%포인트 높았다.

부인연령에 따른 연도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결혼생활의 길이와 불원임신의 가능성이 비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3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저하하였으나 2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상승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15～24세 연령층에서는 1991년을 절정으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4년과 1997년이 동일한 21%이었으며, 2000년에는 13%로 저하하였다. 그러나 2003년 조사에서는 다시 15%로 상승하여 미미하지만 저하를 멈추고 상승세를 보였다.

25～29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5년을 절정으로 저하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17%로 낮아졌다. 그렇지만 2003년 조사에서는 23%로 큰 폭의 증가를 보여 우려된다. 따라서 이들 20대 미혼층 및 기혼층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0～34세 연령층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5년을 정점으로 지속 하락하여 2003년에는 34%이었고, 35～39세 연령층 부인의 경우는 1985년과 1988년 63%를 정점으로 지속 저하하여 2003년에는 46%로 나타났다. 그리고 40～44세 연령층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5년을 정점으로 계속 저하하여 2003년에는 50%이었다.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점차 낮아지다가 2003년 조사에서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 이는 피임방법이 불임시술에서 일시피임법으로의 전환과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홍보·계몽이 적극성을 띄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시피임의 효율적 사용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계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6-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변동추이

(단위: %)

특성	1976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전체	39	53	52	54	49	44	39	40
지역								
동부	46	55	54	55	49	45	39	41
읍·면부	29	48	47	49	49	39	41	38
연령								
15~24세	16	22	27	29	21	21	13	15
25~29세	27	42	41	40	36	27	17	23
30~34세	46	61	57	55	51	45	35	34
35~39세	50	63	63	60	58	52	50	46
40~44세	45	67	62	65	60	53	52	50

주: 1) 1991년은 15~49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함.
자료: 〈표 6-1〉과 동일

2.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 종결율

조사완료 부인의 전체 임신횟수와 임신소모로 종결된 횟수, 그리고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횟수를 지난 10년간의 조사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본다.

1994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임신수 2.96회 중 임신소모로 종결된 임신은 1.09회,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진 경우는 0.84회로 나타나 총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8.4%였고,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7.1%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7년 조사결과에서는 평균 임신수 2.83회 중 소모된 임신은 1.01회, 인공임신중절은 0.74회로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6.1%였고,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3.3%로 1994년도에 비하여 다소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평균 임신 2.70회 중 소모된 임신은 0.92회, 인공임신중절은 0.65회로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4.1%,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0.7%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임신의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는 금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2003년에 조사완료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임신 2.72회 중 소모된 임신은 0.90회, 인공임신중절은 0.63회로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3.2%이었고,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0.0%로 지속적 저하를 보였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는 임신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되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생식보건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표 6-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임신 및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 변화

(단위: 회, %)

연도	총임신 (A)	임신소모 (B)	인공임신중절 (C)	총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 (C/A)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 (C/B)
1994[1)]	2.96	1.09	0.84	28.4	77.1
1997[2)]	2.83	1.01	0.74	26.1	73.3
2000[3)]	2.70	0.92	0.65	24.1	70.7
2003[4)]	2.72	0.90	0.63	23.2	70.0

자료: 1)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4) 본 조사결과

3.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부인은 과거연도 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3년 조사에서는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은 전술하였다. 그런데 경험여부가 아니라 실제 인공임신중절을 몇 회 하였는지를 감안한 지표는 경험분포와 평균 경험횟수이다. 특히 2회 이상 경험한 부인의 비율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평균 경험횟수와 관련하여 의미

가 있다.

인공임신중절을 2회 이상 반복경험한 부인은 1994년 조사에서는 20.9%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0년 17.1%, 2003년 15.8%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공임신중절의 평균 경험횟수도 1994년의 0.8회에서 2000년 0.7회, 2003년 0.6회로 낮아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였다.

〈표 6-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분포

(단위: %, 회)

연도	무경험	유경험			계(수)	평균 경험횟수
		소계	1회	2회 이상		
1994[1)]	50.8	49.2	28.3	20.9	100.0(5,183)	0.8
1997[2)]	55.8	44.2	24.9	19.3	100.0(5,420)	0.7
2000[3)]	60.8	39.2	22.1	17.1	100.0(6,408)	0.7
2003[4)]	59.6	40.4	24.6	15.8	100.0(6,597)	0.6

자료: 〈표 6-3〉과 동일.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경험횟수 분포, 평균 경험횟수는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를 부인의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현존자녀수, 취업여부 등에 의하여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른 결과를 보면, 인공임신중절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부인의 비율이 금번 조사에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 59.2%,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61.9%로 나타나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무경험률이 높았다.[주54)] 1회 경험한 부인은 동부지역 거주부인(24.8%)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23.1%)보다 다소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2회 이상 경험한 부인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동부지역 거주부인 16.0%,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15.0%). 그렇지만 이는 미미한 차이여서 평균 경험횟수는 0.6회로 동일한 수준이었다.

인공임신중절 무경험률은 부인연령이 낮을수록 높았고, 경험횟수는 부인의

주54) 2000년 조사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동부지역 거주부인 60.9%,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59.3%로 나타났음.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다. 즉, 15~24세 및 25~29세 연령층 부인의 2회 이상 반복경험률은 3.2%와 6.5%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연령이 상승할수록 반복경험률도 높아져 30~34세 11.2%, 35~39세 18.2%, 40~44세 22.3%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연령이 상승할수록 평균 경험횟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주55)

이처럼 인공임신중절경험이 부인연령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인의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임신력(pregnant history)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는 임신노출 또는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의 발생가능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성 경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젊은 연령층 부인에 대한 효과적인 피임보급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으며, 아울러 원하는 자녀를 모두 출산한 출산종료의 고연령층 부인의 임신은 대부분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부인을 대상으로 피임법 사용에 대한 홍보·교육 및 효과적 피임방법으로의 유도 등을 통한 피임실천의 내실화를 기하여 인구자질향상을 도모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과학분야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교육수준과 현존자녀수는 부인의 연령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대체로 학력이 낮은 부인과 자녀를 많이 가진 부인이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과 현존자녀수가 3명인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특별히 높았는데, 이는 특별한 의미를 두어야 할 수준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먼저 부인의 교육수준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학력수준

주55) 2000년 조사에서는 15~24세 및 25~29세 연령층의 부인은 각각 87.3%, 83.0%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지 않았고, 2회 이상 반복경험도 각각 2.8%, 3.9%로 낮았으며, 평균 인공임신중절횟수도 0.2회로 타 연령층의 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30세 이상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30~34세 연령층의 부인은 인공임신중절을 무경험률이 64.7%이었으며, 2회 이상의 반복경험은 13.1%로 20대 부인층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평균 인공임신중절경험횟수는 0.5회로 나타났음. 이러한 경향은 부인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더욱 심해져 35~39세, 40~44세 연령층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무경험률은 각각 50.4%, 48.3%로 감소한 반면,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비율은 각각 22.5%, 27.0%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평균 인공임신중절경험횟수는 각각 0.8회, 1.0회로 증가하였음.

의 부인이 5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초교 이하 학력의 부인 45.2%, 고등학료 학력수준의 부인 43.5% 등의 순이었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은 31.6%로 가장 낮았다. 특히 2회 이상 반복경험을 가진 부인은 중학교 학력의 부인이 23.4%로 매우 높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10.7%로 낮았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의 평균 경험횟수는 중학교 학력의 부인이 평균 0.9회로 가장 많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0.4회로 적었다.

현존자녀수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을 살펴보면,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50.6%로 가장 높았고,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 47.6%,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 47.1%이었으며, 자녀가 없는 부인과 한명인 부인은 각각 9.4%, 26.3%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회 이상 반복경험한 부인의 비율은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21.3%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부인은 3.1%이었다. 따라서 현존자녀수별 인공임신중절 평균 경험횟수는 3명 자녀를 가진 부인이 0.9회로 가장 많았고, 0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0.1회로 적었다.

그런데 인공임신중절 경험과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현존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이 9.4%나 되었으며, 특히 2회 이상 반복경험을 한 부인도 3.1%나 있었다는 점이다. 이 수준은 1997년의 결과보다는 낮은 것이나 2000년의 결과보다는 높은 것이다.[주56] 이와 같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첫째, 결혼후 가족이 경제적 기반을 잡을 때까지 출산의 부담없이 취업을 지속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출산을 지연시키기 위함이다. 셋째, 부부만의 신혼생활을 보다 오래 즐기기 위해서 아이 갖는 것을 가능한 한 늦추려는 젊은 세대의 세태이기도 하다. 넷째, 음주, 흡연, 약물복용 등 임신 전·후의 잘못된 행동에 의한 임신결과를 염려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혼전

주56) 1997년 조사에서는 현존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은 11.3%이었으며, 특히 2회 이상 반복경험을 한 부인도 4.9%나 되어 이들 부인층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는 0.2회이었음; 2000년 조사에서는 현존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비율이 7.5%이었으며, 특히 2회 이상 반복경험을 한 부인은 2.9%이었음. 따라서 자녀가 없는 부인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는 0.1회로 나타났음.

임신을 감추기 위한 방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표 6-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인공임신중절 횟수 분포

(단위: %, 회)

특성	무경험	유경험			계(수)	평균 횟수
		소계	1회	2회 이상		
전체	59.6	40.4	24.6	15.8	100.0(6,597)	0.6
지역						
동부	59.2	40.8	24.8	16.0	100.0(5,577)	0.6
읍·면부	61.9	39.1	23.1	15.0	100.0(1,020)	0.6
연령						
15~24세	86.4	13.6	10.4	3.2	100.0(125)	0.2
25~29세	78.1	21.9	15.4	6.5	100.0(837)	0.3
30~34세	66.8	33.2	22.0	11.2	100.0(1,707)	0.5
35~39세	53.5	46.5	28.3	18.2	100.0(1,963)	0.7
40~44세	49.9	50.1	27.8	22.3	100.0(1,965)	0.8
교육수준						
초교 이하	54.8	45.2	25.8	19.4	100.0(217)	0.8
중학교	48.9	51.1	27.7	23.4	100.0(650)	0.9
고등학교	56.5	43.5	26.1	17.4	100.0(3,580)	0.7
대학 이상	68.4	31.6	20.9	10.7	100.0(2,144)	0.4
현존자녀수						
0명	90.6	9.4	6.3	3.1	100.0(541)	0.1
1명	73.7	26.3	17.7	8.6	100.0(1,262)	0.4
2명	52.9	47.1	28.2	18.9	100.0(4,001)	0.7
3명	49.4	50.6	29.2	21.3	100.0(708)	0.9
4명 이상	52.4	47.6	31.0	16.6	100.0(84)	0.7
취업여부						
취업중	58.4	41.6	25.5	16.1	100.0(3,150)	0.7
비취업	60.7	39.3	23.7	15.6	100.0(3,447)	0.6

물론 이들 외에도 많은 이유에 의하여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서도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으나,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도 서구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DINK(Double Income, No Kids) 또는 SINK (Single Income, No Kids) 가족이 점차 나타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 아닌가 사료된다(김승권 외, 2000).

다음은 부인이 현재 취업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의 경험률과 경험횟수를 살펴보았다. 경험률은 취업중인 부인이 41.6%로 비취업부인의 39.3%보다 2.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회 이상 반복경험한 부인은 취업중인 부인 16.1%, 비취업부인 15.6%로 0.5%포인트의 차이만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의 평균횟수는 취업중인 부인 0.7회, 비취업부인 0.6회로 근소한 차이였다.

4. 인공임신중절 수용시의 임신순위 및 부인연령

15~44세 유배우부인이 경험한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임신순위에서 몇 번째인지, 그리고 당시의 부인연령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인공임신중절의 위해성이 이러한 특징에 따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 대상층의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24.4%,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34.6%, 세 번째 이상의 임신순위인 경우가 41.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26.6세로 나타났다(표 6-6 참조).[주57] 이들 임신의 일부는 혼전임신일 수도 있겠고, 부부 사이의 어떤 이유에서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임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태아에게 나쁜 음료와 약물을 음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모든 인공임신중절은 당연히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만, 특히 첫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었다는 것은 그 어느 임신순위에서 행해진 인공임신중절 보다 여성건강에 해악을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 예방에 보다 정책적

주57) 2000년 조사에 의하면,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21.9%,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38.6%, 세 번째 이상의 임신순위인 경우가 39.6%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이 높은 임신순위에서 발생하였음. 그리고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26.7세로 나타났음.

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미혼남녀,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신랑, 그리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성교육, 가족계획교육, 임산부 관리 등의 서비스가 강화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를 부인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젊은 연령층의 부인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계층에서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임신인 경우의 비율은 전체 부인의 24.3%로 높았다. 이와 같이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부인의 비율을 부인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24.5%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22.9%보다 높았다. 첫 인공임신중절시 평균연령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7.1세,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26.2세로 미미하나마 차이가 있었다.

연령층별로는 15~24세 부인이 64.7%로 가장 높았고, 부인연령이 상승할수록 급격히 낮아져 40~44세 연령층 부인은 16.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첫 인공임신중절시 부인의 연령은 15~24세 연령층이 20세, 25~29세 연령층은 23.8세로 나타났으며, 35세 이상 연령층은 27.5세이었다. 이와 같이 젊은 부인들이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출산을 뒤로 늦추는 경향이 강하거나 혼전임신으로 인한 영향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와는 달리 셋째 이상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시킨 경우는 부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은 25.4%가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처리하였는데,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의 24.1%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초교 이하와 중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비율은 각각 18.4%와 21.4%이어서 다른 학력수준의 부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주58] 따라서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할 당시의 부인연

주58) 2000년 조사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체로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령은 초교 이하의 학력층은 24.9세이었고, 교육수준이 높으면서 점차 상승하여 대학 이상의 학력층은 28.3세로 나타났다. 그런데 첫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는 경우의 위해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학력층 부인들이 낮은 학력수준의 부인보다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하고 있음은 출산할 경우 직장이 불안정해지거나 혼전임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표 6-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1]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별 분포와 당시 부인연령

(단위: %, 세)

특성	임신순위			계(수)	첫 인공임신중절시 부인의 평균연령
	첫째 임신	둘째 임신	셋째 이상 임신		
전체	24.3	35.3	40.4	100.0(2,663)	26.9
지역					
동부	24.5	36.0	39.5	100.0(2,275)	27.1
읍·면부	22.9	30.7	46.4	100.0(388)	26.2
연령					
15~24세	64.7	29.4	5.9	100.0(17)	20.0
25~29세	57.9	21.9	20.2	100.0(183)	23.8
30~34세	31.4	37.4	31.2	100.0(567)	26.3
35~39세	20.7	36.2	43.1	100.0(914)	27.5
40~44세	16.4	35.7	47.9	100.0(982)	27.5
교육수준					
초교 이하	18.4	28.6	53.0	100.0(98)	24.9
중학교	21.4	35.2	43.4	100.0(332)	26.0
고등학교	25.4	34.8	39.8	100.0(1,554)	26.7
대학 이상	24.1	37.1	38.8	100.0(677)	28.3
취업여부					
취업중	23.7	33.5	42.8	100.0(1,309)	26.8
비취업	24.7	36.9	38.4	100.0(1,354)	27.1

주: 1)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취업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시킨 경우는 비취업 부인이 미미하나마 많았고, 셋째 이상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시킨

경우는 취업중인 부인이 많았다. 따라서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은 취업중인 부인이 26.8세로 비취업 부인의 27.1세 보다 약간 낮았다(표 6-6 참조).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를 살펴보면, 1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3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명 35.1%, 자녀가 없는 경우 24.5%이었으며, 3명 이상인 경우는 3.8%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평균 자녀수는 1.19명으로 적었다. 따라서 소자녀관의 정착이 첫 인공임신중절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당시 부인연령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5~24세의 젊은 연령층 부인들이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때의 자녀수는 0.57명에 불과하였고, 25~29세 연령층 부인들의 경우는 1.22명, 그리고 30~34세 연령층 부인은 1.81명 등으로 나타나 2명의 자녀를 갖기 이전에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5~39세 연령층 부인의 경우만 평균 2.08명의 자녀를 가진 상태에서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1] 당시 연령별 자녀수 분포

(단위: %, 세)

당시 부인연령	당시 자녀수				계(수)	첫 인공임신 중절시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24.5	36.6	35.1	3.8	100.0(2,663)	1.19
15~24세	55.3	34.0	9.6	1.1	100.0(739)	0.57
25~29세	16.9	46.6	34.2	2.3	100.0(1,298)	1.22
30~34세	4.5	19.9	67.6	8.0	100.0(513)	1.81
35~39세	1.0	12.6	67.0	19.4	100.0(103)	2.08
40~44세	-	30.0	50.0	20.0	100.0(10)	1.88

주: 1)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되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40~44세 연령층의 부인은 실제 숫자가 적어 통계학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자녀가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시킨 경우가 15~24세 연령층 부인의 경우 무려 55.3%나

되었고, 25~29세 연령층은 16.9%가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30~34세 연령층과 35~39세 연령층 부인의 경우도 각각 4.5%, 1.0%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우는 태아이상, 배우자와의 결별, 혼전임신, 자녀불원, 출산연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당시 부인연령별로 당시 자녀수의 성분포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과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성비는 109이어서 성선호에 의하여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특히 15~24세와 25~29세, 그리고 35~39세 연령층의 부인은 이러한 경향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30~34세와 40~44세 연령층 부인은 아들을 (더) 갖기 위하여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 6-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1] 당시 연령별 자녀의 성

(단위: 명)

당시 부인연령	당시 평균 아들수	당시 평균 딸수	성비
전체	0.62	0.57	109
15~24세	0.32	0.25	128
25~29세	0.66	0.56	118
30~34세	0.87	0.95	92
35~39세	1.08	1.00	108
40~44세	0.93	0.95	98

주: 1)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되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를 살펴보는 것은 특히 인공임신중절의 반복경험이 있는 부인의 최근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 및 당시 부인연령을 감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임신인 경우가 11.8%,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23.9%, 세 번째 이상의 임신순위인 경우가 64.3%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이 높은 임신순위에서

발생하고 있었다.주59) 따라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보다는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가 높았으며,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28.5세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보다는 1.6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 및 당시 부인연령을 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 번째 이상 임신의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69.4%)이 동부지역 거주부인(63.5%)보다 높았다. 그렇지만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8.7세,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27.8세로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별로 부인의 초혼연령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라 추측된다.

젊은 연령층의 부인은 주로 첫 임신이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인 경우가 많았으나 30대 이상 연령층의 부인들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34세 연령층 부인의 경우는 53.8%가 셋째 이상 임신순위이었으며, 35~39세 연령층은 69.0%, 그리고 40~44세 연령층은 72.4%로 높았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젊은 연령층의 부인은 20대 초반이었으며, 연령이 상승할수록 인공임신중절 수용시 부인연령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는 학력에 상관없이 셋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학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셋째 이상 임신인 비율은 58.3%로 가장 낮았으며, 초교 이하 학력을 가진 부인은 76.3%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젊은 연령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은 학력에 따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즉, 초교 이하 학력을 가진 부인의 평균연령은 26.9세이었고,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상승하여 대학 이상 학력소지 부인은 29.7세이었다.

현재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가 셋째 이상 임신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그 정도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즉, 셋째 이상

주59) 2000년 조사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10.0%,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22.8%, 세 번째 이상의 임신순위인 경우가 67.2%를 차지하였음.

임신인 비율은 취업중인 부인이 65.7%, 비취업 부인은 63.1%이었고, 첫째 임신인 비율은 취업중인 부인이 11.4%, 비취업 부인은 12.1%이었다. 따라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은 취업중인 부인이 28.4세, 비취업 부인은 28.7세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6-9〉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1)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별 분포와 당시 부인연령

(단위: %, 세)

특성	임신순위			계(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시 부인의 평균연령
	첫째 임신	둘째 임신	셋째 이상 임신		
전체	11.8	23.9	64.3	100.0(2,660)	28.5
지역					
동부	11.7	24.8	63.5	100.0(2,272)	28.7
읍·면부	12.3	18.3	69.4	100.0(388)	27.8
연령					
15~24세	44.4	38.9	16.7	100.0(18)	20.3
25~29세	38.3	26.2	35.5	100.0(183)	24.6
30~34세	17.3	28.9	53.8	100.0(568)	27.5
35~39세	8.3	22.7	69.0	100.0(911)	29.2
40~44세	6.2	21.4	72.4	100.0(982)	29.4
교육수준					
초교 이하	8.2	15.5	76.3	100.0(97)	26.9
중학교	7.2	18.7	74.1	100.0(332)	28.1
고등학교	11.8	24.0	64.2	100.0(1,553)	28.2
대학 이상	14.4	27.3	58.3	100.0(675)	29.7
취업여부					
취업중	11.4	22.9	65.7	100.0(1,309)	28.4
비취업	12.1	24.8	63.1	100.0(1,352)	28.7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를 살펴보면, 2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명 31.2%, 자녀가 없는 경우 15.1%이었으며, 3명

이상인 경우는 6.1%였다. 전체적으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평균 자녀수는 1.46명에 불과하여 소자녀관의 정착이 가장 최근의 인공임신중절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연령별 자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5~24세의 젊은 연령층 부인이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때의 자녀수는 0명인 경우가 4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명 36.8%로 나타나 평균 자녀수는 0.72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녀출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즉,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결과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것으로 사료된다.

25~29세 연령층 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때의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명 41.8% 이어서 평균 자녀수는 1.35명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인과 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인, 그리고 자녀출산을 지연시키려는 부인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이해된다.

30세 이상 연령층 부인들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때의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약 66.7~71.8%로 높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평균 자녀수는 30~34세 연령층 부인이 1.85명, 35~39세 연령층 부인 2.09명, 그리고 40~44세 연령층 부인 2.19명 등으로 출산이 종료한 후에 나타나는 불원출산, 불원임신 등의 결과로서의 인공임신중절 수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시킨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비율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은 46.5%나 되었고, 25~29세 연령층은 12.9%, 30~34세 연령층 부인 3.9%, 35~39세 부인 1.4%가 있었다. 물론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첫 인공임신중절인 경우도 있겠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였다는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윤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불임의 우려, 모성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된다.

〈표 6-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1]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별 당시 자녀수 분포

(단위: %, 세)

당시 부인연령	당시 자녀수				계(수)	마지막 인공임신 중절시 평균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15.1	31.2	47.6	6.1	100.0(2,662)	1.46
15~24세	46.5	36.8	14.7	2.0	100.0(462)	0.72
25~29세	12.9	42.2	41.8	3.1	100.0(1,192)	1.35
30~34세	3.9	18.1	69.2	8.8	100.0(753)	1.85
35~39세	1.4	8.8	71.8	18.1	100.0(216)	2.09
40~44세	-	7.7	66.7	25.6	100.0(39)	2.19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당시 부인연령별로 자녀수의 성분포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과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의미가 있다. 전체적으로 성비는 112이어서 성선호에 의하여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15~24세와 40~44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 수용당시 자녀성비는 무려 140과 135로 나타나 아들이 많이 있었다. 그 외 연령층에서도 자녀성비가 높음을 보여주어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징후가 통계상 뚜렷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첫 인공임신중절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수용당시 부인특성, 자녀수, 자녀성비 등을 살펴보았다. 아직까지도 많은 부인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피임실패의 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임신전·후를 통한 태아건강관리에 소홀한 측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어느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녀출산을 연기하려는 진정한 이유를 규명하고 안정적 피임방법을 사용토록 정책을 강화하며, 그리고 철저한 산전산후관리를 통한 태아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6-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1] 인공임신중절 당시 자녀의 성

(단위: 명)

당시 부인연령	당시 평균 아들수	당시 평균 딸수	성비
전체	0.77	0.69	112
15~24세	0.42	0.30	140
25~29세	0.71	0.64	111
30~34세	0.94	0.91	103
35~39세	1.11	0.98	113
40~44세	1.32	0.87	135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제 3 절 최근 인공임신중절수용부인의 피임실천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명히 금지되어 있다. 과거와 같이 인공임신중절을 피임의 한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던 경향은 피임실천의 생활화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피임실천이 보편화된 1990년대부터 인공임신중절은 피임의 한 수단이 아니며, 이는 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폐해를 준다는 사실에 대하여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진 경우는 결코 적지 않음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피임을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실패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이를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어떠한 피임방법이 실패가 많은 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저출산의 도래로 인하여 피임은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현 상태가 지속되어도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2001년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15~44세 유배우부인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임신당시 피임실천 중에 발생했는지, 어떤 피임방법을 사용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전체 임신의 54.2%는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신이었고,

45.8%는 실패임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조사결과(38.7%)에 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며, 2000년의 조사결과(52.3%)에 비하여는 많이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실패임신의 수준차이는 있지만 높은 피임실천율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인들의 피임실패임신이 결코 감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패한 피임의 유형을 살펴보면, 월경주기법이 1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콘돔 11.0%, 기타 일시피임방법 10.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불임시술과 자궁내장치의 경우도 적으나마 각각 2.2%, 3.7%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족계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불임시술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콘돔 및 월경주기법 등의 일시피임방법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한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이 많았던데 기인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임비실천임에도 임신의 비율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임신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임실천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정책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겠다.

부인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부인의 거주지역별 최근 수용한 인공임신중절의 임신당시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55.7%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50.5%보다 많았다. 그리고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인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49.5%로 동부지역 거주부인 44.3%로 보다 많았다. 실패한 피임의 유형을 살펴보면, 월경주기법과 콘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 불임시술과 자궁내장치의 실패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각각 3.9%, 6.8%로 동부지역 거주부인(불임시술 1.6%, 자궁내장치 2.4%)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는 비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관리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의 사후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부인의 연령별 최근 수용한 인공임신중절의 임신당시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

는 30~34세 연령층이 6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5~29세 연령층 부인 53.8%, 40~44세 연령층 부인 51.4%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피임실패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의 비율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5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5~39세 연령층 부인 53,6%이었다. 실패한 피임의 유형을 살펴보면, 15~24세 부인은 콘돔, 기타 방법, 월경주기법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외의 연령층 부인들도 이들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35세 이상 연령층 부인의 경우는 불임시술의 실패임신이 각각 4.8%, 5.4%, 자궁내장치에 의한 경우가 각각 2.4%, 5.4% 등이었다. 따라서 비록 젊은 연령층 부인이 터울조절 목적의 피임을 수용할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시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피임사용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있어야 겠다. 또한 출산이 종료된 연령층의 부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임방법으로 변경하면서, 정기적으로 피임기구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야 할 것이다.

부인의 교육수준별 최근 수용한 인공임신중절의 임신당시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이 5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 52.4%이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의 경우는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이 55.6%로 높았다. 실패임신을 초래한 피임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월경주기법, 콘돔, 기타 방법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고연령층이 많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월경주기법 사용에 의한 실패임신이 25.9%나 되어 임신에 노출되어 있는 고연령층 부인이 적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표 6-12〉 15~44세 유배우부인 중 2001년 이후 인공임신중절 수용부인의 특성별 임신당시 피임실천여부

(단위: %)

특성	비실천	실천							계(수)
		소계	불임 수술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살(질)정제	콘돔	월경 주기법	기타	
전체	54.2	45.8	2.2	3.7	2.2	11.0	16.6	10.1	100.0(356)
지역									
동부	55.7	44.3	1.6	2.4	1.6	11.5	17.4	9.8	100.0(253)
읍·면부	50.5	49.5	3.9	6.8	3.9	9.7	14.6	10.67	100.0(103)
연령									
15~24세	41.7	58.3	-	-	-	25.0	8.3	25.0	100.0(12)
25~29세	53.8	46.2	-	5.0	1.3	11.2	21.2	7.5	100.0(80)
30~34세	60.8	39.2	1.4	3.5	3.5	11.9	7.7	11.2	100.0(143)
35~39세	46.4	53.6	4.8	2.4	1.2	9.5	26.2	9.5	100.0(84)
40~44세	51.4	48.6	5.4	5.4	2.7	5.4	21.6	8.1	100.0(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4.4	55.6	3.7	3.7	3.7	11.1	25.9	7.5	100.0(27)
고등학교	56.2	43.8	2.2	4.0	3.1	11.1	14.6	8.8	100.0(226)
대학 이상	52.4	47.6	1.9	2.9	-	10.7	18.5	13.6	100.0(103)
당시 자녀수									
0명	72.3	27.7	-	-	2.1	10.6	12.8	2.2	100.0(47)
1명	66.7	33.3	-	-	1.0	9.4	14.6	8.3	100.0(96)
2명	44.0	56.0	3.3	5.5	2.7	11.5	18.7	14.3	100.0(182)
3명 이상	48.4	51.6	6.5	9.7	3.2	12.9	16.1	3.2	100.0(31)
원한 임신여부									
원함	39.4	60.6	2.8	4.7	3.1	15.0	21.3	13.7	100.0(254)
불원	91.2	8.8	1.0	1.0	-	1.0	4.8	1.0	100.0(102)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당시 자녀수별 임신당시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녀가 없는 부인이 7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 66.7%,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 44.0%, 그리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 48.4%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원하는 자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은 부인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임을 하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기 보다는 실패가능성이 높은 피임방법인 월경주기법, 콘돔, 기타 방법 등을 선택하는 부인이 전체 연령층에서 많이 있었다.

부인의 최근 인공임신중절을 한 임신이 원한 임신이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구분하여 살펴보면,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가 91.2%나 되었음은 심각한 실정이라 하겠다. 또한 임신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한 피임방법은 불임시술과 자궁내장치가 각각 1.0%이었고, 그 외는 안전성이 낮은 피임방법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4 절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본 절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이 수용한 첫 번째 및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여 모자보건법상의 합법적 이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는 子女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터울조절 16.1%, 혼전임신 12.4%, 임부의 건강과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경우가 9.4%, 경제적 곤란 7.5%, 태아이상 4.6%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성 선택적인 경우(태아가 딸이어서) 1.7%, 취업중이어서와 가정문제가 각각 1.4% 등이 있었고, 기타 이유로서 쌍둥이어서, 입덧이 너무 심해, 임신중 약물복용, 혼외임신, 딸일 것 같아서, 아들이어서, 아들일 것 같아, 기형아 우려 등이 있었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14.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인 것으로 추정된다.[주60)]

이를 지역별로 보면,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35.4%)과 읍·면부지역 거주부인(34.9%)이 유사한 수준이었고, 터울조절에 의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16.3%)이 읍·면부지역 거주

주60) 2000년 조사결과에서는 모자보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이 14.3%이었음.

부인(15.0%)보다 다소 높았다. 그리고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14.4%)과 동부지역 거주부인(13.9%)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혼전임신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동부 12.4%, 읍·면부 12.1%).

그렇지만 경제적 곤란으로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10.9%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6.9%보다 많았고, 태아가 딸이어서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경우도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3.1%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1.4%보다 많았다.

〈표 6-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 수용이유

(단위: %)

인공임신중절 이유	2000년	2003년		
		전체	동부	읍·면부
자녀불원	35.9	35.3	35.4	34.9
터울조절	20.5	16.1	16.3	15.0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	9.5	9.4	9.5	8.5
태아이상	4.8	4.6	4.4	5.9
혼전임신	9.5	12.4	12.4	12.1
가정문제	1.5	1.4	1.5	0.8
경제적 곤란	6.6	7.5	6.9	10.9
태아가 딸이므로	1.8	1.7	1.4	3.1
취업중이어서	-	1.4	1.4	1.6
기 타	9.9	10.2	10.8	7.2
계	100.0	100.0	100.0	100.0
(수)	(2,507)	(2,662)	(2,275)	(387)

주: 기타에는 쌍둥이어서, 입덧이 너무 심해, 임신중 약물복용, 혼외임신, 딸일 것 같아서, 아들이어서, 아들일 것 같아, 기형아 우려 등이 포함됨.

15~44세 유배우부인이 수용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이유 역시 첫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부인은 1994년 58.4%, 1997년 49.7%, 2000년 48.4%이었고, 2003년 조사에서는 45.4%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그 다음의 주요 이유로는 자녀의 터울조절이 10.9%로 많았는데, 이는 1994년 11.1%, 1997년 11.0%, 2000년 13.1%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 이외에도 임부의 건강상 또는 자궁외 임신 9.8%, 경제적 곤란 8.4%, 혼전임신 6.9%, 태아이상 4.1%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태아가 딸이어서 2.1%, 취업중이어서 1.5%, 가정문제 1.2%, 약물 및 식품복용으로 태아이상의 우려가 추측되거나 태아가 아들 또는 딸일 것으로 추측되어 등이 있었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13.9%에 불과하고 그 외는 사회경제적 이유와 개인적 추측에 의한 경우였다.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곤란에 의한 경우가 1994년 3.7%, 1997년 7.3%, 2000년 6.5%, 2003년 8.4%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11.9%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7.8%보다 높았다.

둘째, 혼전임신으로 인하여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부인은 1994년 3.3%, 1997년 4.0%, 2000년 5.1%, 2003년 6.9%로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었다. 이는 미혼여성에 대한 충분한 성교육과 민간차원의 응급피임보급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태아가 딸이어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한 부인은 1994년 1.7%, 1997년 2.6%, 2000년 2.3%, 2003년 2.1%로 있어 사회발전이 이루어지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재 실정법상 태아 성감별을 방지하고 있고 이를 행하는 의사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녀차별을 철폐하는 사회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이의 남아선호관의 불식을 위한 홍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 인공임신중절 수용이유

(단위: %)

인공임신중절 이유	1994	1997	2000	2003		
				전국	동부	읍·면부
자녀불원	58.4	49.7	48.4	45.4	45.4	45.1
터울조절	11.1	11.0	13.1	10.9	11.3	8.8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	9.7	10.6	10.0	9.8	9.8	9.8
태아이상	5.1	3.6	4.7	4.1	3.9	5.2
혼전임신	3.3	4.0	5.1	6.9	7.1	5.9
가정문제	1.7	1.9	1.1	1.2	1.3	0.8
경제적 곤란	3.7	7.3	6.5	8.4	7.8	11.9
태아가 딸이므로	1.7	2.6	2.3	2.1	2.0	2.8
취업중이어서	-	-	-	1.5	1.5	1.8
기타	5.3	9.3	8.9	9.7	9.9	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41)	(2,394)	(2,508)	(2,663)	(2,275)	(388)

주: 기타에는 약물 및 식품복용으로 태아이상의 우려가 있거나 태아가 아들 또는 딸일 것 같아서(추측) 등이 포함됨.

자료: 〈표 6-3〉 과 동일

제 5 절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경험여부

전술한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태아가 딸이어서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경우가 다소 있었음은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직접 경험했음을 의견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태아의 성감별후 여아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시키는 행위를 직접 경험하였는지를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즉, 첫 인공임신중절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을 실시했는지의 여부이다.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을 실시한 부인은 2.1%이었고,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경험률은 2.5%이었다. 부인의 거주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각각 2.3%, 2.6%로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2.1%, 2.5% 보다 미미하나마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인연령별로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은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 비율이 0.5%,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 비율은 0.2%로 낮았으나, 35~39세 연령층 부인은 각각 4.9%, 5.6%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부인의 교육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 비율은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이 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초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 2.0%, 그 외 학력수준의 부인은 1.5%이었다. 그렇지만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태아 성감별 비율은 학력수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약 2.0~2.6% 범주에 있었다.

인공임신중절 수용당시의 아들과 딸의 규모에 의하여 태아 성감별을 한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3.5%,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5.0%가 태아 성감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들이 한 명 있는 경우에 태아 성감별을 한 부인은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0.5%에 불과하였다.

또한 딸이 3명 이상 있는 경우에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11.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7.7%가 태아 성감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이 두명 있는 경우에도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9.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10.7%가 태아 성감별을 하였다. 그렇지만 딸이 한 명인 경우에 태아 성감별을 한 비율은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2.0%,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1.4%로 현저히 적었다.

따라서 자녀 중에 딸이 한명일 경우에는 태아 성감별에 의한 아들출산을 주장하는 경우가 높지 않았으나 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 성감별에 의해서라도 추가자녀는 딸이 아닌 아들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여부

(단위: %)

특성	첫 중절시 태아 성감별		마지막 중절시 태아 성감별	
	(분석수)	실시율	(분석수)	실시율
전체	(2,663)	2.1	(2,664)	2.5
지역				
동부	(2,275)	2.1	(2,276)	2.5
읍·면부	(388)	2.3	(388)	2.6
당시 연령				
15~24세	(739)	0.5	(463)	0.2
25~29세	(1,297)	2.7	(1,190)	3.1
30~34세	(512)	2.1	(752)	2.1
35~39세	(103)	4.9	(216)	5.6
40~44세	(10)	-	(39)	-
교육수준				
초교 이하	(98)	2.0	(98)	2.0
중학교	(331)	1.5	(332)	2.4
고등학교	(1,555)	2.4	(1,555)	2.6
대학 이상	(677)	1.5	(677)	2.2
당시 아들수				
0명	(1,291)	3.5	((1,021)	5.0
1명	(1,098)	0.5	(1,247)	0.5
2명	(270)	1.9	(389)	2.6
3명 이상	(4)	-	(7)	-
당시 딸수				
0명	(1,461)	0.8	(1,243)	1.1
1명	(922)	2.0	(1,054)	1.4
2명	(253)	9.1	(328)	10.7
3명 이상	(27)	11.1	(39)	7.7

제 6 절 인공임신중절실태 변화의 시사점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에 명시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소모되는 경향이 많음은 제3장(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과 제4장(출산행태 변화)에서 논의된 바와 같다. 또한 본 장에서 인공임신중절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과거보다는 감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음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높은 피임실천율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인들에게서 인공임신중절이 사라지지 않음은 임신과 출산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노출된 부인이 많이 있고, 아울러 지나치게 안이한 피임실천을 하고 있음이 아닌가 사료된다.

다시 말하면, 피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다. 즉, 피임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추가자녀를 원치 않거나 터울조절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임을 실천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가능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피임방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시피임을 사용할 경우에도 피임사용법을 철저히 숙지하여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88년 이후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물량이 대폭 축소되고, 1996년에는 인구증가억제대책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그리고 최근에는 저출산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피임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인공임신중절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이를 피임의 한 방법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저출산과 인공임신중절이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함은 인공임신중절이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음에서 알 수 있다.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일지라도 실제 처벌되지 않고 있는 사문화된 규정 하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억제하는 것은 출산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비의료적인 행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자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성건강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는 피임이 출산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만 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피임은 원하는 자녀규모를 원하는 시기에 갖기 위한 것이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여 부인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공

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피임보급과 피임방법에 대한 정확한 사용방법의 교육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피임보급이 있어야 한다. 즉, 안전한 피임방법으로의 전환을 유도함과 동시에 안전한 피임방법 사용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자궁내장치의 교체시기 등에 대한 홍보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성건강의 유지와 인구자질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태아도 생명체라는 인명중시의 가치관에 대한 홍보계몽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성 평등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매스컴을 통한 국민계몽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성 차별적 사회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상호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제 7 장 모자보건실태

제 1 절 산전 및 산후관리 실태

1. 산전관리실태

급속히 진행되어온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급변으로 결혼연령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령임신과 출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와 특성 또한 매우 다양화되었다. 한편, 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소자녀 가치관의 정착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임신기간 중에 태아와 임산부에게 발생되는 건강상의 문제는 자연유산이나 사산 등 비정상적인 임신종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숙아 또는 장애아의 출생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과 많은 사회비용의 지출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출산과정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태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전·후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전관리의 주요 내용에는 임신의 조기진단과 임산부의 뇨검사주61), 혈액검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3).

본 분석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자녀를 출산한 15~49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최종출생아의 임신기간 중 산전 및 산후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

주61) 임산부의 뇨검사를 통하여 단백질 대사이상과 당뇨 징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혈액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정성 및 간염검사 등을 수행하게 됨.

과를 기초로 하였다.

산전수진율의 전국 평균은 99.8%로 조사대상 유배우부인의 인구학적 특성 즉,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과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부인은 산전수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전수진율은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1985년 82.4%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이며, 1994년 조사이후에는 전국적으로 9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3년도 조사결과(99.8%)는 2000년의 100%에 비하여 미미하나마 다소 감소한 것이다.

특히 행정구역상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산전수진율이 99.9%인 것에 비하여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산전수진율은 99.6%로 약간 낮았다. 이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에 비하여 모자보건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보건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관련 정보의 보급 및 교육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7-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산전수진율(1985~2003년)

(단위: %)

구분	1985년[1]	1988년[2]	1991년[3]	1994년[4]	1997년[5]	2000년[6]	2003년[7]
전체	82.4	88.5	94.4	99.2	99.6	100.0	99.8
동부	86.7	92.1	95.3	99.5	99.6	100.0	99.9
읍·면부	70.9	78.1	90.5	97.6	99.3	100.0	99.6

주: 1985년 자료는 1980~85년, 1988년 자료는 1983~88년, 1991년 자료는 1987~91년, 1994년 자료는 1990~94년, 1997년 자료는 1995~97년, 2000년 자료는 1998~2000년, 2003년 자료는 2001~03년의 조사시점까지의 최종출생아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1) 문헌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2) _____,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3)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4)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5)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6)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7) 본 조사결과

산전수진을 받기 위한 평균 초진시기는 임신 후 5.88주였으며, 특히 임신 5~8주 시기에 초진을 받은 부인이 전체 조사대상의 4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신 4주 이전이 38.3%를 차지하여, 전체 부인의 87.3%가 임신 후 8주 이내에 초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임신기간 중 초진시기

(단위: %, 명, 회)

구분	최종출생아 임신기간중 초진시기						평균 초진시기
	4주 이전	5~8주	9~12주	13~16주	17주 이후	계(수)	
전체	38.3	49.0	9.9	1.6	1.2	100.0(1,098)	5.88
지역							
동부	38.3	49.6	9.8	1.3	1.0	100.0(894)	5.84
읍·면부	38.4	46.3	10.3	3.0	2.0	100.0(203)	6.08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39.1	37.0	15.2	4.3	4.3	100.0(46)	7.25
고등학교	38.6	47.6	10.4	2.1	1.2	100.0(565)	5.98
대학 이상	37.8	51.5	9.0	0.8	0.8	100.0(487)	5.64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43.5	32.6	15.2	4.3	4.3	100.0(92)	6.68
25~29세	38.2	51.8	8.7	1.0	0.4	100.0(508)	5.64
30~34세	37.0	49.1	10.3	2.1	1.5	100.0(389)	6.02
35세 이상	38.9	49.1	10.2	0.9	0.9	100.0(108)	5.86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44.9	46.5	7.5	0.4	0.7	100.0(452)	5.37
둘째아	35.2	50.5	10.4	2.7	1.2	100.0(511)	6.08
셋째아 이상	28.4	51.5	17.2	0.7	2.2	100.0(134)	6.88

부인의 거주지역이나 교육수준에 따른 초진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임산부의 연령과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24세 이하 연령층 부인의 경우 평균 초진시기는 6.68주로 24세 이상의 연령층 부인에 비하여 1주 이상 차이가 있었으며, 35세 이상 부인의 평균 초진시기가 5.86주로 15~24세 부인의 경우나 30~34세 부인의 경우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연령층 부인이 임신관련 정보 및 지식의 부족으로 본인이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한 결과일수 있으며, 3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에는 노산의 위험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초진시기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가 둘째아 이상인 경우에 첫째아에 비하여 초진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생아가 첫째아인 경우 초진시기는 5.37주였고, 둘째아인 경우에는 6.08주, 그리고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6.88주였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아의 경우 임신에 대한 기대나, 첫 임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체적으로 임신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초진을 받으나, 출생순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출산경험 등에 비추어 초진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출생아의 임신과 관련하여 임신기간 동안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검진을 받은 횟수를 <표 7-3>에 제시하였다. 전국 평균 산전검진 횟수는 12.68회였으며, 임신기간 중 총 11회에서 15회 산전검진을 받은 경우는 53.7%로 가장 많았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르면 임신기간 중 최소 7회 이상의 산전검진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인 산전검진을 최소한 7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주62)

임신기간 중 수진횟수를 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 12.90회인 반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은 11.71회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산전수진 횟수가 많아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10.39회,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13.37회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산전수진 횟수가 감소하여 첫째아가 13.38회인 것과 비교하여, 둘째아는 12.43회, 그리고 셋째아 이상은 11.30회로 나타났다.

주62) 본 조사결과 최종출생아의 임신기간 중 산전수진 횟수가 7회 미만인 경우는 5.9%였음.

〈표 7-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임신기간중 산전수진횟수

(단위: %, 명, 주)

구분	수진횟수						평균 수진횟수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계(수)	
전체	4.0	26.8	53.7	12.4	3.0	100.0(1,097)	12.68
지역							
동부	3.5	26.0	53.5	13.7	3.2	100.0(895)	12.90
읍·면부	6.9	30.2	54.5	6.4	2.0	100.0(202)	11.71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19.1	31.9	38.3	10.6	-	100.0(47)	10.39
고등학교	5.3	29.6	51.7	10.9	2.5	100.0(561)	12.27
대학 이상	1.0	23.2	57.5	14.4	3.9	100.0(487)	13.37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7.4	25.3	51.6	13.7	2.1	100.0(95)	12.11
25~29세	3.8	25.5	56.1	10.5	4.2	100.0(506)	12.80
30~34세	2.3	28.6	53.6	14.2	1.3	100.0(388)	12.70
35세 이상	8.4	28.0	44.9	14.0	4.7	100.0(107)	12.57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1.3	22.6	58.4	13.9	3.8	100.0(452)	13.38
둘째아	4.9	26.4	53.4	12.9	2.3	100.0(511)	12.43
셋째아 이상	10.4	42.5	38.8	5.2	3.0	100.0(134)	11.30

2. 산후관리실태

산후관리는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회복과 정서·심리적 재적응 및 신생아의 출생으로 인한 모성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와 교육을 통해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모가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되는 데에는 약 6주가 소요되는데, 이 시기의 산모들은 피로감, 신체적 합병증, 정서적 변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산모에게 적합한 교육과 지지가 강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박미숙 외, 2000). 동 기간에 산모는 원활한 배뇨, 배변 및 회음과 유방관리, 그리고 영양섭취 등 자기간호 능력을 증진하고,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자기지각과 신생아 양육 등 모성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김광옥, 2003).

산후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산후검진을 받은 비율은 1988년 52.3%, 1997년 81.0%, 그리고 2000년에는 85.0%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15~49세 유배우부인의 산후수진율이 90.9%로 나타났다. 산후검진을 받은 비율은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가 91.7%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 87.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산후수진율이 높았다. 즉,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산후수진율이 85.4%인 것과 비교하여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93.4%로 나타났다. 특히, 부인의 교육수준과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를 교차해서 살펴보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산후수진율이 73.3%에 불과하여, 저학력이면서 출산 유경험 부인을 대상으로 산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수진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표 7-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출산 후 산후수진율

(단위: %)

구 분	1988년[1]	1997년[2]	2000년[3]	2003년[4]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체	52.3	81.0	85.0	90.9	88.6	94.2	85.8
지역							
동부	57.5	81.7	85.6	91.7	89.6	95.5	83.0
읍·면부	37.3	77.8	78.4	87.4	84.3	87.6	94.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0.8	74.3	79.5	85.4	84.6	95.0	73.3
고등학교	64.0	80.0	82.3	89.3	86.4	92.5	84.4
대학 이상	75.3	84.2	89.6	93.4	91.0	97.0	90.7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48.7	78.7	77.0	93.7	94.0	96.2	50.0
25~29세	54.1	81.6	86.8	89.8	86.7	93.0	95.8
30~34세	52.4	81.1	85.9	92.1	89.0	95.2	87.5
35세 이상	-	-	-	88.9	92.0	96.9	82.4

자료: 1) 문헌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4) 본 조사결과

한편, 부인의 연령에 따라서는 산후수진율이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15~24세 부인의 산후수진율이 93.7%인 반면, 25~29세 부인의 산후수진율은 89.8%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30~34세 부인의 산후수진율은 92.1%로 나타났다.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산후수진율은 88.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낮았으며, 특히 동 연령층 부인의 셋째아 이상 출산인 경우에는 산후수진율이 82.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5~24세 부인의 셋째아 이상 출산인 경우 산후수진율이 50.0%에 그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제 2 절 분만실태

1. 분만장소

총 분만건수 가운데 시설분만이 10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출산현상은 임신과 분만의 의료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박인화·황나미, 1993), 시설분만을 선택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이외에 가족의 구조와 기능변화에 따라 분만시 조력을 얻을 수 있는 인적·경험적 자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또한 시설의 경우 출산과정에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기술이 발달하였고, 항생제 및 진통제의 개발 및 첨단의료장비의 사용 등으로 분만과정에 과학적 의료원리가 체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모성사망률이나 이환율 및 주산기 사망률이 감소되는 효율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장순복, 1992).

그러나 시설분만의 대부분이 분만과정을 의료적 사건(event)으로 간주하고 분만여성과 신생아를 환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비인간적인 의료인의 태도와 생소한 분위기, 낯선 기계소리 등은 산모와 신생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치료와 회복을 방해하며 출산과정에서 여성에게 수동적인 역할을 강요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김희숙, 2003). 시설분만은 출산과정의 위험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출산여성과 태아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 및 긴장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최종출생아의 시설분만율은 1997년 이후 99%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1997년에는 99.7%, 2000년에 99.9%였으나 2003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여 99.3%로 나타났다. 2003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분만의 장소로는 병원이 4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원 28.3%, 종합병원 22.4%의 순이었으며, 조산소나 보건소에서 분만한 경우는 없었다. 종합병원에서의 분만은 1997년 39.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31.5%, 이어서 2003년에는 22.4%까지 낮아졌다. 반면, 병원분만의 경우 1994년 21.3%에서 1997년 28.2%, 2000년 43.1%, 그리고 2003년에 48.6%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병원에서의 분만이 증가하는 이유는 종합병원과 일반병원과의 분만시설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중분만, 그네분만 등 다양한 분만시술을 제공하고 있는 병원이 증가하면서 이용이 번거로운 종합병원에서의 분만을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7-5〉 15~49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시설분만율 및 분만장소

(단위: %)

구 분	1985년	1988년	1991년	1994년	1997년	2000년	2003년
비시설분만	24.8	12.3	1.9	1.2	0.3	0.1	0.7
시설분만	75.2	87.8	98.1	98.8	99.7	99.9	99.3
종합병원	17.8	23.6	-	31.8	39.0	31.5	22.4
병원	45.8[1)]	53.4[1)]	91.0[2)]	21.3	28.2	43.1	48.6
의원	-	-	-	43.1	31.1	24.6	28.3
조산소	9.1	7.4	5.1	2.0	1.1	0.3	-
보건소	2.5	3.4	2.0	0.7	0.3	0.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451)	(2,843)	(2,151)	(1,932)	(1,163)	(1,338)	(1,106)

주: 1) 의원 포함.
2) 종합병원, 의원 포함.
자료: 〈표 7-1〉과 동일.

부인의 특성별 분만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거주지역별, 교육수준별, 출산시 부인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

인의 경우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에 비하여 종합병원(22.9%)과 병원(50.0%)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 의원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동부지역에 비하여 높았다(읍·면부 36.6%, 동부 26.5%). 이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에 비하여 병원 및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7-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분만장소

(단위: %)

구분	시설분만			비시설분만	계(수)
	종합병원	병원	의원		
지역					
동부	22.9	50.0	26.5	0.6	100.0(902)
읍·면부	20.0	42.0	36.6	1.5	100.0(20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5	25.0	58.3	4.2	100.0(48)
고등학교	18.1	48.8	32.1	1.1	100.0(570)
대학 이상	28.4	50.5	21.1	-	100.0(489)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17.9	44.2	37.9	-	100.0(95)
25~29세	18.6	52.5	28.5	0.4	100.0(510)
30~34세	27.0	46.8	25.7	0.5	100.0(393)
35세 이상	27.8	39.8	29.6	2.8	100.0(108)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23.6	49.8	25.8	0.8	100.0(458)
둘째아	21.6	48.9	29.1	0.4	100.0(515)
셋째아 이상	22.2	42.2	34.1	1.5	100.0(135)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경우 의원(58.3%)에서 분만한 경우가 병원(25.0%)이나 종합병원(12.5%)을 이용한 경우보다 높았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병원에서 분만한 경우가 50.5%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28.4%)에서 분만한 경우도 의원(21.1%)에서 분만한 경우보다 높았다. 한편, 연령에 따라서는 35세 이상 연령층 부인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분만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는데, 이는 고령임신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분만을 위하여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분만형태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어서 출산문화 개선운동의 확산 등을 통하여 제왕절개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왕절개율이 높은 주요 요인으로는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상분만은 유죄, 제왕절개는 무죄'의 판결추세에 따른 의료진의 방어진료의 성행,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는 경우 진료비가 정상분만보다 약 2~3배 높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일부 임신부들의 제왕절개가 안전하다는 그릇된 인식과 태아의 출생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의도 등이 제왕절개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제왕절개 수술이 감소하게 되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2).

2003년 조사에서는 최종출생아의 제왕절개분만율은 39.2%로 나타나, 1997년 35.9%, 2000년의 37.7%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유배우부인의 거주지역별로 제왕절개분만율을 비교해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가 39.1%, 읍·면부 거주하는 경우는 39.8%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유배우부인의 제왕절개 분만이 동부에 거주하는 유배우부인에 비하여 약간 높았다.

〈표 7-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제왕절개분만 비율(1985~2003년)

(단위: %)

구분	1982년[1)]	1988년[2)]	1991년[2)]	1994년[2)]	1997년[2)]	2000년[2)]	2003년[2)]
전체	4.4	11.9	17.3	31.5	35.9	37.7	39.2
동부	5.8	13.4	17.9	31.9	36.1	36.9	39.1
읍·면부	2.1	7.7	14.8	29.2	34.8	46.8	39.8

자료: 1) 문헌상 외, 『1982년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2) 〈표 7-1〉과 동일.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제왕절개분만율을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제왕절개 분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즉, 교육수준이 중학교이하 부인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41.7%,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40.2%, 그리고 대학 이상 부인의 경우 37.8%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출생아 출산 시 부인의 연령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인의 연령이 24세 이하의 경우 36.8%인데 반하여 35세 이상 부인의 경우는 제왕절개분만율이 50.0%를 나타내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고령 출산에 따르는 분만 시 위험부담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제왕절개분만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출생순위가 둘째아인 경우가 제왕절개분만율이 42.1%로 가장 높았다.

〈표 7-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출산시 분만형태

(단위: %)

구 분	자연분만[1]	제왕절개	계(수)
전체	60.8	39.2	100.0(1,106)
지역			
동부	60.9	39.1	100.0(901)
읍·면부	60.2	39.8	100.0(20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8.3	41.7	100.0(48)
고등학교	59.8	40.2	100.0(569)
대학 이상	62.2	37.8	100.0(489)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63.2	36.8	100.0(95)
25~29세	63.7	36.3	100.0(510)
30~34세	59.2	40.8	100.0(392)
35세 이상	50.0	50.0	100.0(108)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63.2	36.8	100.0(457)
둘째아	57.9	42.1	100.0(515)
셋째아 이상	63.4	36.6	100.0(134)

주: 1) 유도분만 포함.

최종출생아의 출산시 제왕절개분만을 본인이 선택한 경우는 20.6%에 불과하였고, 가족이 권유한 경우(2.4%)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의사의 권유(77.0%)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제왕절개분만은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이 21.0%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인 18.5%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를 선택한 경우는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이 76.7%인 반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은 79.0%로, 읍·면부 의료진의 제왕절개 권유가 동부에 비하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권유자 및 이유

(단위: %)

구 분	1997년[1]	2000년[2]	2003년[3]		
			전체	동부	읍·면부
권유자					
본인의사	21.9	20.7	20.6	21.0	18.5
가족의 권유	-	4.1	2.4	2.3	2.5
의사의 권유	78.1	75.0	77.0	76.7	79.0
기타	-	0.2	-	-	-
제왕절개 이유					
산모이상	24.5	23.1	23.8	22.3	29.6
태아이상	13.1	20.2	19.0	20.1	14.8
양수조기파열	6.8	5.5	5.9	6.3	3.7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3.4	7.3	3.6	3.7	2.5
첫 출산이 제왕절개	23.4	25.1	30.2	30.1	32.1
산모의 건강상·노산	16.7	10.8	8.9	8.6	9.9
기타	12.1	8.0	8.6	8.9	7.4
계(수)	100.0(417)	100.0(508)	100.0(431)	100.0(349)	100.0(81)

주: 1) 가족, 기타 포함.

자료: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3) 본 조사결과

제왕절개 분만의 주요 이유는 첫 출산을 제왕절개로 분만했기 때문이 3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산모의 이상 때문이 23.8%이었다. 이밖에 태아의 이

상으로 인한 경우가 19.0%, 산모의 건강 또는 노산인 경우가 8.9%, 양수가 조기파열 한 경우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 요인으로 제왕절개를 선택한 경우는 3.6%에 불과하였다.

한편 제왕절개분만을 권유한 사람에 따라서 제왕절개분만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제왕절개를 선택한 경우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31.1%로 가장 높았고, 산모의 이상 때문이 21.2%, 첫 출산이 제왕절개로 이루어져서 13.3%, 양수조기파열 때문이 12.2% 등의 순이었다. 가족이 제왕절개를 권유한 경우에는 산모의 이상과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이 27.3%로 동일하였으며,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로 제왕절개를 권유한 경우도 18.1%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가 이루어 진 경우는 산모가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경우가 3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모의 이상 24.2%, 산모의 건강상 이유 22.9%, 첫 출산이 제왕절개인 경우 7.9% 등의 순이었다. 본인이나 가족의 권유, 그리고 의사의 권유에 의한 제왕절개 공히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연분만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자연스러운 신체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출산문화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권유자별 및 권유이유

(단위: %)

구 분	본인	가족	의사
산모이상	21.2	27.3	24.2
산모의 건강상	5.6	18.1	22.9
태아이상	4.4	9.1	6.0
양수조기파열	12.2	-	1.2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31.1	27.3	30.2
첫출산이 제왕절개	13.3	-	7.9
기타	12.2	18.2	7.6
계(수)	100.0(90)	100.0(11)	100.0(331)

한편 분만장소별 제왕절개분만율을 살펴보면, 전체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에 대한 제왕절개분만율이 39.2%인 것과 비교하여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분만한 경우에 제왕절개율이 각각 40.3%와 40.6%로 약간 높았다. 반면 병원에서 분만한 경우, 제왕절개율은 38.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7-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산시 분만장소별 분만형태

(단위: %)

구 분	자연분만	제왕절개	계(수)
전체	60.8	39.2	100.0(1,106)
종합병원	59.7	40.3	100.0(248)
병원	61.6	38.4	100.0(536)
의원	59.4	40.6	100.0(313)

3. 신생아 체중

신생아의 체중은 태내 성장정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신생아가 속한 가족과 사회집단의 사회·경제적 상태, 산모의 연령 및 체격, 임신기간 동안이나 과거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주63) 특히 2,500g 이하의 저체중 영아의 사망률이 2,500g 이상 영아의 사망률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이광렬 외, 1999), 한영자 외(2003)의 연구에 의하면 저체중아의 출생과 관련성이 높은 산모의 요인으로는 산모의 연령, 신장, 체중, 혈압수준, 그리고 혈색소 수준 등이었다.

즉, 산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히 35세 이상에서 저체중아출생률이 높았고, 산모의 연령이 20세 미만일 때도 역시 저체중아 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산모의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와 저체중아 출생위험과의 관련성에서는 산모의 신장이 저체중아의 출생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높다. 산모의 신장이 165cm 이상인 군에 비해 신장이 작을수록 저체중아 출생위험이 뚜

주63) 출생 체중이 신생아 및 영유아기의 사망, 질병이환 등을 포함한 영아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한영자 외, 1999; 이무식 외, 1999).

렷이 높았으며, 체중이 55~64Kg인 군에 비해 체중이 낮을수록 저체중아 출생위험이 높았다. 한편 혈압수준은 높을수록 저체중아 출생위험이 뚜렷이 증가하였으며, 혈색소가 낮아 빈혈이 있는 산모군에서도 저체중아 출생위험이 높았다(한영자, 2003).

2001년 1월 이후부터 2003년까지 4월까지 15~49세 유배우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최종출생아의 출생시 평균체중은 3,257.7g이었는데, 남아의 평균체중이 3,313.0g으로 여아의 평균체중 3,200.2g에 비해 다소 높았다. 최종출생아의 출생시 체중이 1,000~1,500g 미만의 극저체중아 비율은 0.4%였는데, 여아가 0.6%로 남아인 경우 0.2%에 비해 다소 높았다. 반면 1,500~2,000g 미만인 경우의 비율은 전체 출생아의 0.5%였는데, 남아가 0.7%로 여아인 경우 0.2% 비해 다소 높았다.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를 저체중, 2,500~4,000g 미만인 경우를 정상체중, 그리고 4,000g 이상인 경우를 과체중으로 분류할 경우, 최종출생아의 정상체중 비율은 90.5%이었으며, 여아가 92.7%로 남아의 88.6%보다 높았다. 또한 최종출생아 중 저체중인 비율은 4.2%이었으며, 남아는 3.9%, 여아는 4.3%로 성별차이가 있었다. 출생시 4,000g 이상인 과체중의 비율은 5.3%이었고, 남아는 7.5%로 여아의 3.0%보다 현저히 많았다(표 7-12 참조).

〈표 7-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생시 체중

(단위: %)

구 분	남아	여아	전체
1,000~1,500g 미만	0.2	0.6	0.4
1,500~2,000g 미만	0.7	0.2	0.5
2,000~2,500g 미만	3.0	3.5	3.3
2,500~4,000g 미만	88.6	92.7	90.5
4,000g 이상	7.5	3.0	5.3
계(수)	100.0(564)	100.0(542)	100.0(1,106)
출생시 평균체중	3,313.0g	3,200.2g	3,257.7

본 조사에서 최종출생아의 저체중 이유는 조기분만인 경우가 5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가 36.5%로 나타났다.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출생 시 체중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의 저체중 또는 과체중 비율이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최종출생아에 비하여 다소 높았다. 또한 최종출생아의 출생 시 체중은 유배우부인의 교육수준과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부인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정상체중의 최종출생아를 출산하는 비율이 중·고등학교 학력 수준의 부인에 비하여 다소 낮았다. 한편 부인의 연령이 35세 이상일 경우 최종출생아의 출생 시 체중이 정상인 경우가 96.2%로 다른 연령의 임신부에 비하여 체중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체중

(단위: %)

구 분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계(수)
전체	4.1	90.6	5.3	100.0(1,106)
지역				
동부	4.1	90.5	5.3	100.0(899)
읍·면부	3.9	91.2	4.9	100.0(20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1	91.6	6.3	100.0(48)
고등학교	4.0	91.4	4.6	100.0(569)
대학 이상	4.3	89.7	6.0	100.0(487)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2.1	92.6	5.3	100.0(95)
25~29세	5.3	89.6	5.1	100.0(510)
30~34세	3.8	89.8	6.4	100.0(393)
35세 이상	1.9	96.2	1.9	100.0(108)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3.9	91.3	4.8	100.0(457)
둘째아	4.5	91.4	4.1	100.0(513)
셋째아 이상	3.7	85.2	11.1	100.0(135)

주: 1) 저체중은 2,500g 미만, 정상체중은 2,500~4,000g, 과체중은 4,000g 이상임.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출생 시 체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아와 둘째아의 경우 정상체중으로 출생한 경우가 각각 91.3%와 91.4%인 반면,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체중으로 출생한 경우가 85.2%에 불과하였다. 출생순위 따른 저체중아의 비율은 첫째아의 경우 3.9%, 둘째아의 경우 4.5%, 그리고 셋째아의 경우 3.7%로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 과체중아의 비율은 첫째아가 4.8%, 그리고 둘째아가 4.1%인데 비하여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11.1%로 첫째아와 둘째아에 비교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7-13 참조).

제 3 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태

선천성대사이상은 선천적인 효소이상 또는 단백질 구조이상 때문에 물질대사가 잘 되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으로 단백질 대사이상으로서는 선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무피브리노겐혈증, 무카탈라아제혈증, 혈우병 등이 있다. 아미노산 대사이상에는 페닐케톤뇨증, 알캡톤뇨증, 티스틴뇨증 등이 있으며, 당질 대사이상으로는 당원병, 갈락토오스혈증 등이 있고, 지방 대사이상으로서는 고셰병(Gaucher disease), 니만피크병(Niemann-Pick disease), 테이삭스병(Tay-Sach disease) 등이 있다(이정명, 2000).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정신지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생후 3일에서 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선별검사는 1985년 국내에 도입되었고, 1995년부터 보건소에서 분만하거나 보건소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신생아, 모자보건 진료기관에서 분만한 저소득층 신생아,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무료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생아 등에 대해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1997년부터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페닐케톤뇨증 및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생활이 곤란하여 특수분유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특수조세분유를 제공하거나 처방전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3).

〈표 7-14〉 모자보건사업에 의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종류 및 지급비용

(단위: 원)

연도	검사비	사후관리항목
1991	8,000	5종: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히스티딘혈증
1992	14,000	5종: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히스티딘혈증
1993	14,000	5종: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히스티딘혈증
1994	14,000	5종: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히스티딘혈증
1995	8,000	1종: 페닐케톤뇨증
1996	8,000	1종: 페닐케톤뇨증
1997	8,640	2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1998～2003	9,500	2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자료: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지침」, 연도별 자료.

2001년 1월 이후부터 2003년 4월까지 출생한 최종출생아 중 선천성대상이상검사를 받은 비율은 89.7%로 지난 2000년 88.8%, 1997년 73.6%, 그리고 1994년 35.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검사율을 살펴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가 89.3%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91.3%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 농촌지역에 설치된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에 대한 정보제공 및 수검을 적극적으로 홍보·권유한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개별적 홍보 및 권유가 적극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부인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인 부인의 최종출생아의 경우, 검사율이 79.6%인데 비하여 대학 이상 학력수준인 부인의 최종출생아의 경우 검사율이 91.0%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인 부인의 경우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8.2%로 대학 이상 학력수준인 부인의 4.1%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출생아 출산 시 부인의 연령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율은 뚜렷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34세 부인의 경우 검사율이 92.6%로 가장 높았고, 35세 이상 부인의 검사율이 85.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표 7-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수검 여부

(단위: %)

구 분	1994년 검사율	1997년 검사율	2000년 검사율	2003년			
				하였음	하지 않았음	잘 모름	계(수)
전체	35.7	73.6	88.8	89.7	6.7	3.6	100.0(1,106)
지역							
동부	35.7	73.4	88.4	89.3	6.8	3.8	100.0(900)
읍·면부	35.8	74.4	93.0	91.3	6.3	2.4	100.0(20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1.2	65.7	81.5	79.6	12.2	8.2	100.0(49)
고등학교	33.5	71.6	86.7	89.5	7.7	2.8	100.0(569)
대학 이상	43.2	79.0	92.5	91.0	4.9	4.1	100.0(487)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36.6	70.2	83.3	87.4	11.6	1.0	100.0(95)
25~29세	33.9	72.7	90.9	89.2	6.1	4.7	100.0(509)
30~34세	39.3	77.3	87.9	92.6	4.8	2.6	100.0(392)
35세 이상	-	-	-	85.2	11.1	3.7	100.0(108)

자료: 〈표 7-1〉과 동일.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중 페닐케톤뇨증과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 정부에서 검사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밖의 질환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여 동 검사를 위한 검사비용 지불을 전액 자비로 하는 경우는 72.5%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에 의한 무료검사의 경우는 4.7%로 나타났으며, 일부 정부지원에 자비부담을 지불한 경우는 1.6%였다. 그러나 검사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이 어떤 형태

로 이루어졌는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도 21.1%가 있었다.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비용지불형태를 살펴보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자비부담 비율이 77.7%로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자비부담 비율 71.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무료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가 6.4%로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검사율 4.4%에 비하여 높았다.

〈표 7-16〉 15~44세 유배우부인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비용지급형태

(단위: %)

구 분	자비부담	무료	자비+정부	기타	잘모름	계(수)
전체	72.5	4.7	1.6	0.1	21.1	100.0(992)
지역						
동부	71.3	4.4	1.6	0.1	22.6	100.0(804)
읍·면부	77.7	6.4	1.1	-	14.8	100.0(18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4	10.5	-	-	21.1	100.0(38)
고등학교	72.1	4.3	1.4	0.2	22.0	100.0(509)
대학 이상	73.4	4.7	1.8	-	20.1	100.0(443)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65.1	1.2	1.2	-	32.5	100.0(83)
25~29세	73.0	4.6	1.3	0.2	20.9	100.0(455)
30~34세	73.1	4.4	2.5	-	20.0	100.0(364)
35세 이상	72.8	8.7	1.1	-	17.4	100.0(92)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73.1	3.8	1.7	-	21.4	100.0(402)
둘째아	72.5	4.2	1.5	-	21.8	100.0(473)
셋째아	69.8	10.3	0.9	0.9	18.1	100.0(116)

한편,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비용지불 방식이 다소 상이하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자비부담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5~24세 부인의 경우 자비부담 검사율이

65.1%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단,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검사비용 지불방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첫째아의 경우 자비부담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73.1%로 가장 높았고,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무료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10.3%로 첫째아나 둘째아의 자비부담 검사율 3.8%와 4.2%에 비하여 높았다(표 7-16 참조).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비용부담에 있어 전액자비로 하거나 또는 일부 지불하는 경우에 비용부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액 자비부담인 경우 4~5만원이 2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3~4만원 20.3%, 그리고 2~3만원 9.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만원 이상의 고액을 지불한 경우도 6.8%였다. 정부지원을 일부 받고 자비부담하는 경우에 비용부담 정도는 2~3만원이 25.1%로 가장 높았다.

〈표 7-17〉 15~44세 유배우부인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비용부담

(단위: %)

구분	1만원 미만	1~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4만원 미만	4~5만원 미만	5~6만원 미만	6~7만원 미만	7~8만원 미만	8~9만원 미만	9~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계(수)
자비	3.9	5.4	9.7	20.3	23.5	5.7	6.4	8.8	1.1	8.4	6.8	100.0(351)
자비+정부	-	10.3	25.1	9.7	15.4	19.7	-	19.8	-	-	-	100.0(12)

제 4 절 수유양상

모유수유가 신생아의 건강과 심리·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실천율은 상당히 낮다. 최근에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모유수유 실천율은 1985년 59.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에는 약 24~35%까지 감소하였다.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생

후 1년까지 모유를 수유한 비율은 10.2%였으며, 평균 모유수유기간은 3.0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0).

본 조사에서는 2001년 1월 이후부터 2003년 4월까지 출생한 최종출생아 1,106명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실태를 파악한 결과, 모유수유율은 지난 2000년보다 6.3%포인트 증가한 16.5%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표 7-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모유수유 실태

(단위: %)

연도	1985년[1]	1988년[2]	1994년[3]	1997년[4]	2000년[5]	2003년[6]
모유수유율	59.0	48.1	11.4	14.1	10.2	16.5

자료: 〈표 7-1〉과 동일.

영아의 월령에 따른 모유수유율을 살펴보면 <표 7-19>와 같다. 최종출생아의 생후 1주 이내 모유수유율은 59.4%로 가장 높으나 생후 1개월째에는 50.6%로 낮아졌고 생후 3개월에 34.1%, 생후 6개월시에는 25.3%로 낮아지면서 영아의 월령 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유수유율이 감소하면서 분유 등을 이용한 인공수유는 월령이 증가함께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1주에 인공수유율은 22.6%에 불과하였지만 생후 1개월 때에는 31.7%로 증가하고 이후 생후 3개월 째 54.8%, 생후 6개월 째 65.3% 그리고 생후 12개월에 이르면 인공수유율이 72.3%까지 증가하였다.

시설분만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분만과 함께 산모나 신생아에게 특별한 보건의료적 문제가 없을 때에는 모유수유를 권장하면서 생후 1주이내의 모유수유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유수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인공수유가 영양공급 측면에서 우수할 것으로 판단하여 영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수유가 증가하고 모유수유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7-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의 생후 15개월간 모유수유양상

(단위: %)

구 분	완전 모유수유	인공수유 /분유	혼합 모유수유	혼합식 (모유/분유+ 이유식)	혼합식 (분유+ 이유식)	완전 이유식	계(수)
생후 1주	59.4	22.6	18.0	-	-	-	100.0(1,106)
생후 2주	56.7	25.1	18.2	-	-	-	100.0(1,097)
생후 3주	53.2	29.3	17.5	-	-	-	100.0(1,094)
생후 4주	50.6	31.7	17.7	-	-	-	100.0(1,091)
1~2월 미만	45.6	39.1	15.3	-	-	-	100.0(1,065)
2~3월 미만	40.8	46.7	12.3	0.2	-	-	100.0(1,023)
3~4월 미만	34.1	54.8	10.6	0.5	-	-	100.0(981)
4~5월 미만	30.6	60.3	8.4	0.6	0.1	-	100.0(955)
5~6월 미만	29.5	61.6	7.9	0.7	0.1	0.3	100.0(911)
6~7월 미만	25.3	65.3	7.9	1.1	0.2	0.3	100.0(876)
7~8월 미만	22.4	67.5	6.9	1.7	0.5	1.0	100.0(838)
8~9월 미만	19.9	69.0	6.9	1.9	0.7	1.6	100.0(804)
9~10월 미만	18.8	70.5	6.4	1.6	0.8	1.9	100.0(771)
10~11월 미만	16.9	71.8	5.9	1.7	0.9	2.8	100.0(748)
11~12월 미만	15.5	71.7	5.9	2.0	1.1	3.8	100.0(710)
12~13월 미만	12.6	72.3	5.3	1.4	2.1	6.3	100.0(663)
13~14월 미만	10.2	73.3	5.1	1.5	1.8	8.1	100.0(617)
14~15월 미만	9.2	73.9	4.6	1.6	2.0	8.7	100.0(570)

황원주(2003)의 연구에 의하면 모유수유의 실천을 결정하는 요인은 분만형태나 출생아 체중 및 임신기간 동안의 건강상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특성 및 교육수준, 모의 취업여부, 가족유형 등도 모유수유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이다. 즉,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에는 자연분만보다 모유수유율이 현저히 낮고 산모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취업하고 있는 경우 또는 소득수준이 높을 때, 모유수유 실천율이 낮다. 응답자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생후 1개월시, 6개월시, 그리고 12개월 시의 수유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종출생아의 출생후 1개월시의 수유양상은 전체 모유수유율이 50.6%였고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51.2%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48.5%)

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인공수유율(35.3%)이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30.9%)에 비하여 다소 많았다.

또한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후 1개월시 모유수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중학교 이하 수준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38.8%와 비교하여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부인은 51.3%에 이르렀으며, 이에 반해 인공수유율은 중학교 이하 학력 부인의 경우 49.0%였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경우에는 28.3%로 교육수준에 따라 수유양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출산시 부인의 연령에 따라서는 수유양상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분만형태에 따라서는 출산 후 1개월시 수유양상이 달랐는데, 자연분만한 부인의 모유수유율이 54.0%로 제왕절개한 부인(45.3%)에 비하여 높았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율도 높게 나타나, 첫째아의 모유수유율이 49.0%인데 반하여 셋째아의 모유수유율은 52.6%였다(표 7-20 참조).

최종출생아의 출생직후 6개월 시의 수유양상을 살펴보면 <표 7-21>과 같다. 전체 모유수유율은 25.3%였고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26.1%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21.6%)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리고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나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 최종출생아의 이유식을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보다 다소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생후 6개월시 수유양상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출산시 부인의 연령에 따라서도 수유양상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7-2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생후 1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구 분	완전모유수유	인공수유/분유	혼합 모유수유	계(수)
전체	50.6	31.7	17.7	100.0(1,090)
지역				
동부	51.2	30.9	17.9	100.0(886)
읍·면부	48.5	35.3	16.2	100.0(204)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38.8	49.0	12.2	100.0(49)
고등학교	51.0	33.3	15.7	100.0(561)
대학 이상	51.3	28.3	20.4	100.0(481)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51.6	26.3	22.1	100.0(95)
25~29세	51.7	31.3	17.0	100.0(507)
30~34세	49.6	33.4	17.0	100.0(383)
35세 이상	48.1	32.1	19.8	100.0(106)
분만형태				
자연분만	54.0	26.8	19.2	100.0(663)
제왕절개	45.3	39.5	15.2	100.0(428)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49.0	30.7	20.3	100.0(449)
둘째아	51.4	32.5	16.1	100.0(510)
셋째아	52.6	33.1	14.3	100.0(133)

그러나 취업여성의 경우 통상적인 출산휴가기간이 출산 후 3개월 후에 만료되기 때문에 최종출생아의 생후 6개월시 수유형태는 모의 취업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취업부인의 경우 생후 6개월시 모유수유율은 16.4%에 불과하였으나, 비취업 상태에 있는 부인의 경우에는 28.6%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생후 6개월시의 수유양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종출생아의 출생후 12개월시 수유양상은 부인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생후 12개월경에는 대부분이 이유식을 섭취하였으며, 완전이유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파악되었다(전국적으로 6.3%).

〈표 7-2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생후 6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구 분	완전 모유수유	인공수유 /분유	혼합 모유수유	혼합식 (모유/분유 + 이유식)	혼합식 (분유+ 이유식)	완전 이유식	계(수)
전체	25.3	65.3	7.9	1.1	0.1	0.3	100.0(874)
지역							
동부	26.1	64.7	7.6	1.1	0.1	0.4	100.0(707)
읍·면부	21.6	68.3	8.9	1.2	-	-	100.0(167)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24.3	64.9	5.4	5.4	-	-	100.0(37)
고등학교	25.9	65.7	6.8	0.9	-	0.7	100.0(456)
대학 이상	24.5	64.8	9.4	1.0	0.3	-	100.0(381)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24.0	69.3	4.0	2.7	-	-	100.0(75)
25~29세	27.2	65.6	6.3	0.7	0.2	-	100.0(410)
30~34세	23.0	63.9	10.2	1.9	-	1.0	100.0(313)
35세 이상	25.3	63.3	11.4	-	-	-	100.0(76)
취업여부							
취업	16.4	72.2	9.8	1.2	-	0.4	100.0(245)
비취업	28.6	62.7	7.2	1.1	0.2	0.2	100.0(629)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23.6	66.9	7.8	1.4	0.3	-	100.0(347)
둘째아	26.0	64.7	7.9	1.2	-	0.2	100.0(416)
셋째아	27.7	63.4	8.0	-	-	0.9	100.0(112)

최종출생아에게 모유수유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모유수유를 중단한 이유를 살펴보면, '모유량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0.4%로 가장 높았다. 그 밖에 산모 또는 출생아의 건강상의 이유로 모유수유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8.1%와 5.6%로 나타났으며, 아이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젖을 빨지 않아서 중단한 이유는 2000년도 조사결과보다 0.7%포인트 증가한 7.3%였다.

〈표 7-2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생후 12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구 분	완전 모유수유	인공수유 /분유	혼합 모유수유	혼합식 (모유/분유+이유식)	혼합식 (분유+이유식)	완전 이유식	계(수)
전체	12.6	72.3	5.3	1.4	2.1	6.3	100.0(663)
지역							
동부	12.9	71.9	4.9	1.3	2.1	6.9	100.0(535)
읍·면부	11.7	74.2	7.0	1.6	1.6	3.9	100.0(12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8	61.5	7.7	3.8	11.5	7.7	100.0(26)
고등학교	13.4	73.7	4.2	1.1	1.4	6.2	100.0(357)
대학 이상	12.2	72.1	6.1	1.4	1.8	6.4	100.0(280)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16.0	72.0	6.0	-	6.0	-	100.0(50)
25~29세	11.2	74.3	5.5	1.6	1.0	6.4	100.0(311)
30~34세	12.4	71.9	5.1	1.3	2.1	7.2	100.0(235)
35세 이상	18.2	68.2	3.0	1.5	1.5	7.6	100.0(66)
취업여부							
취업	7.1	78.2	6.1	1.0	2.0	5.6	100.0(198)
비취업	15.1	70.1	4.9	1.5	1.7	6.7	100.0(465)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10.8	74.1	6.2	1.2	2.3	5.4	100.0(259)
둘째아	12.8	71.4	5.8	1.0	1.6	7.4	100.0(311)
셋째아	17.2	72.0	1.1	3.2	1.1	5.4	100.0(93)

〈표 7-23〉 15~44세 유배우부인의 모유수유 중단이유

(단위: %)

구 분	2000년	2003년[1]		
		전국	동부	읍면부
모유량 부족	49.3	40.4	40.2	41.2
엄마의 건강상 이유	9.3	8.1	7.6	10.3
아기의 건강상 이유	8.7	5.6	5.9	4.1
아기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젖을 빨지 않아서	6.6	7.3	7.0	8.4
취업때문에	8.1	7.8	7.7	8.5
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1.4	1.9	2.2	1.0
젖을 뗄 시기가 되어서	13.4	7.7	7.9	6.7
기타	3.2	3.3	3.1	3.9

주: 1) 2003년도 결과는 중복응답 결과임.

제 5 절 모자보건실태의 시사점

모자보건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본요인이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의료복지 및 사회복지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신, 분만, 산전·후 기간에 산모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모성과 태아의 건강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산전·후 관리가 필요하다.

산전관리는 임신의 진행과정에서 검사와 진찰을 통하여 이상임신 및 임신합병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며, 임산부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임신, 분만 및 산욕에 관한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여 분만의 안전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산후의 건강향상과 모체 및 태아의 임신소모를 예방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할 수 있다. 2003년도 전국 기혼부인의 산전수진율은 99.8%로 거의 모든 여성이 산전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높은 산전수진율은 모자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모자보건사업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산전수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의학적으로 임신기간 중의 산전수진 횟수는 최소 7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전수진이 7회 미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5.9%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전관리가 정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신에 대한 초진시기가 늦고 산전수진횟수가 적은 임산부에 대한 집중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의료기관의 이용 및 접근성이 동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이나, 교육수준이 낮고 출산경험이 많은 부인을 대상으로 산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만 후 산후조리 기간 동안 생식기능의 회복과 모성역할의 습득이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주며, 산후관리가 가임기뿐만 아니라 노년기 까지도 여성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산후관리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여성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신생아 양육 등 모성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산후에 경험하거나 습득하게 되는 각종 교육 및 정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산후의료기관을 이용한 산후검진율은 90.9%로 나타나 9.1%의 부인이 산후관리를 적절히 받지 않았다. 산후검진율은 2000년 조사결과 85.0%에서 4.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산후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산모가 산후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산모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시설분만의 경우 분만 후 퇴원과 함께 산후관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고, 일부 위험증상이 나타나는 산모나 요보호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산후관리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산후관리 내용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기혼부인의 제왕절개율이 39.2%로 2000년도(37.7%)에 비하여 1.5% 포인트 증가하여 증가추세는 지속되고 있었다. 물론 시설분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왕절개분만은 감염 및 출혈 등 출산과 관련된 의료문제의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거나 발생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분만과정에서 산모가 경험하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부적절한 제왕절개시술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출생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의 실시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생 시 신생아의 체중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향후 건강한 성장·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의료적 주의와 관찰을 필요로 하는 저체중아 및 소아비만이나 소아당뇨 등 각종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과체중아의 출생은 태아와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와 생활습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파악된 저체중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1%를 차지하였고, 과체중 출생아는 5.3%였다. 따라서 신생아의 저체중 또는 과체중을 예방하기 위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임신 중 생활

습관 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장애의 발생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전체에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본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생아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률은 89.7%로 과거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나(1997년 73.6%, 2000년 88.8% 등), 산모의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전체 수검률 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대한 적극적 교육·홍보 및 검사실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모유수유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모유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어, 2003년도 모유수유실천율은 2000년(10.2%)과 비교하여 6.3% 포인트 증가한 16.5%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실천율은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인공수유에 대한 편리성이나 영양학 측면에서의 인공수유에 대한 과잉신뢰, 그리고 모유수유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및 지지 등의 부족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외출 및 작업장에 수유를 위한 적절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 모유수유를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실제로 생후 6개월시 수유양상을 살펴본 결과, 취업여성의 모유수유실천율은 16.4%로 비취업여성의 모유수유실천율 28.6%보다 12.2% 포인트나 낮았다. 최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책적 효과가 실효를 나타내면서 공공장소에 수유공간이 마련되고 있기는 하지만 모유수유실천율을 제고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생아의 건강 및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여성이 어려움 없이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산전 및 산후관리 교육을 통하여 가정에서부터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모유수유는 단순히 출산여성과 신생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전체와 사회가 함께 지지하고 노력하여야 할 과제이다.

제 8 장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제 1 절 자녀가치관의 변화

자녀에 대한 가치는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가계계승, 노동력 창출, 노후부양에서의 기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가 매우 중요시되었고, 재산과 동등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자녀는 부부의 자녀부양부담을 증가시키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자녀를 노후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 자녀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부부중심의 가족생활을 강조함으로써 소자녀관 정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한국사회에서의 자녀 교육비는 가구경제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가족가치관의 한 영역으로서 부인의 자녀가치관을 '자녀의 필요성'에 의하여 살펴보고,[주64]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강하게 잔존하고 있고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남아선호 가치관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부부의 가치관이 반드시 자녀의 규모 및 성 구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제인 출산수준과 가족복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자녀가치관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한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파악한 결과, 1991년 90.3%,[주65] 1997년 73.7%, 2000년 58.1%,

---

주64) 이는 출산력과 관련된 과거 조사에서 유사하게 활용되었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하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그리고 2003년에는 54.5%로 수준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자녀를 선택적 사항으로 판단하는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부인은 1991년 8.5%, 1997년 26.0%, 2000년 41.5%, 그리고 2003년 44.9%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특히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이 1997년 9.4%, 2000년 10.0%, 그리고 2003년 12.6%로 증가하고 있음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큰 변화가 소자녀관의 정착뿐만 아니라 자녀의 불필요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8-1 참조).

〈표 8-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1991~2003년)

(단위: %)

연도	반드시 가져야 함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모르겠음	계(수)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1991[1)]	90.3	8.5	-	-	1.2	100.0(7,448)
1997[2)]	73.7	26.0	16.6	9.4	0.3	100.0(5,409)
2000[3)]	58.1	41.5	31.5	10.0	0.5	100.0(6,363)
2003[4)]	54.5	44.9	32.3	12.6	0.6	100.0(6,593)

주: 1991년은 15~4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 또는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 지만을 질문함.

자료: 1)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4) 본 조사결과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8-2>와 같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53.0%,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62.5%이었고, 자녀가 '있는 것이 낫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33.2%,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주65) 1991년 자료는 15~4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15~44세 유배우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한 본 조사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추세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하겠음.

27.2%이었으며, 반면에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3.1%,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9.4%로 나타나 지역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자녀 필요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동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보다 더 많이 저하되었다.주66)

그러나,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인의 태도는 2000년의 조사결과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부인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60.5%로 가장 많았고, 그 외의 연령층은 약 53.4~55.5%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자녀가 '있는 것이 나음'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25.0%로 가장 적었고, 다른 연령층은 약 31.7~32.9%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전체 연령층 부인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14.5%로 가장 많았고, 30~34세 연령층 부인이 11.8%로 가장 적었다.주67) 따라서 15~24세의 젊은 연령층 부인의 자녀 가치관이 '중간적 위치'에서 '꼭 필요함'으로 다소 변화를 보였다고 하겠다.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영향을 다소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가치관이 실제 출산에 얼마나 연결될 것인지의 여부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제도의 확충에 의하여 좌우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초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61.9%로 가장 많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51.2%로 가장 적었다. 반면에 자

주66)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57.6%,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62.6%이었고, 자녀가 '있는 것이 낫다'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31.6%,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30.4%이었으며, 반면에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0.3%,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6.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보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비율이 낮았음.

주67)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함 경우는 35~39세 연령층이 5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44세 연령층으로 58.6%이었으며, 15~24세 연령층은 50.0%로 가장 낮았음. 반면에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15~24세 연령층이 1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5~29세 연령층이 12.8%이었으며, 30세 이상의 연령층은 약 8.8~9.3% 수준이었음.

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약 12.1~12.7%의 범주에 있었다. 따라서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는 자녀가 '꼭 필요함'과 '있는 것이 나음'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꼭 필요함	있는 것이 나음	없어도 상관없음	모르겠음	계(수)
전체	54.5	32.3	12.6	0.6	100.0(6,593)
지역					
동부	53.0	33.2	13.1	0.6	100.0(5,571)
읍·면부	62.5	27.2	9.4	0.9	100.0(1,022)
연령					
15~24세	60.5	25.0	14.5	-	100.0(124)
25~29세	55.0	31.7	12.2	1.1	100.0(836)
30~34세	55.5	31.9	11.8	0.8	100.0(1,706)
35~39세	53.4	32.7	13.3	0.6	100.0(1,959)
40~44세	54.1	32.9	12.5	0.5	100.0(1,969)
교육수준					
초교 이하	61.9	26.0	12.1	-	100.0(215)
중학교	55.0	31.6	12.2	1.2	100.0(658)
고등학교	56.0	30.6	12.5	0.8	100.0(3,576)
대학 이상	51.2	35.8	12.7	0.3	100.0(2,137)
취업여부					
취업	54.8	31.0	13.6	0.6	100.0(3,154)
비취업	54.2	33.5	11.6	0.7	100.0(3,439)
현존자녀수					
0명	44.1	30.0	24.8	1.1	100.0(537)
1명	55.7	31.0	12.9	0.3	100.0(1,263)
2명	54.1	33.5	11.8	0.7	100.0(3,988)
3명	61.7	30.4	7.5	0.4	100.0(707)
4명 이상	61.9	29.8	7.1	1.2	100.0(84)

이와 같은 결과는 2000년의 경우와 다소 상이한 것이다. 즉, 2000년의 분석결

과에서는 학력수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양상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젊은 연령층의 부인이 대체로 고학력층이 많기 때문에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자녀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어 자녀 필요성이 저하되었다.주68)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가치관은 미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2000년의 조사결과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취업부인이 54.8%, 비취업부인 54.2%이었고, 반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취업부인 13.6%, 비취업부인 11.6%이었다.주69) 결국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 가치관의 차이는 자녀가 '있는 것이 나음'과 '없어도 상관없음'의 차이에서만 다소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인의 취업여부와 자녀가치관에는 현저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러한 태도가 현실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실화, 육아휴직 등 사회제도의 확충 등이 얼마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판단된다.

현존자녀수에 따른 부인의 자녀가치관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61.9%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없는 부인이 44.1%로 가장 적었다. 이와는 상반되는 개념인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은 자녀가 적을수록 높아 자녀가 없는 부인은 24.8%나 되었고,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7.1%에 불과하였다.주70) 이는 2000년의 조사결과보다 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현실적인 자녀양육 부담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주68) 2000년 조사결과는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이 59.1%로 가장 많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56.3%로 가장 적었음. 반면에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중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이 1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으로 10.8%이었으며,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층 부인은 6.3%로 가장 적었음.

주69) 2000년 조사결과는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취업부인이 58.3%, 비취업부인 57.9%이었고, 반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취업부인 10.2%, 비취업부인 9.8%이었음.

주70)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66.3%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없는 부인이 49.0%로 가장 적었으며, 반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자녀가 적을수록 많아 자녀가 없는 부인은 16.3%,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2.4%에 불과하였음.

2. 이상자녀수

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녀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는 전술한 자녀 가치관 외에도 '이상자녀수'가 있다. 실제로 이상자녀수는 자녀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지표이며, 응답자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규모(수)'를 의미한다. 물론 이는 응답자가 실제 두고 있는 현존자녀수와 관계없이 몇 명의 자녀를 두면 이상적인가를 묻는 주관적인 자녀규모에 대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이 실제로 한 부부의 자녀수를 결정하는 행동에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향후 자녀출산을 예측할 수 있는 간접지표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20003년 이상자녀수는 2.2명으로 200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자녀수를 연도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0년은 약간 저하하여 2003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즉, 이상자녀수는 1976년의 2.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88년에는 2.0명이었고,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1997년에는 2.3명이었으며, 2000년 2.2명으로 감소하여 2003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부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의 차이가 과거년도 조사에서는 0.2~0.8명이었으나 2003년 분석결과는 0.1명에 불과하였다. 즉, 이상자녀수는 15~24세와 25~29세 연령층 부인의 경우 2.2명이었고, 그 외의 연령층 부인들은 2.3명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합계출산율은 1993년 1.75명, 1996년 1.71명, 1999년 1.425명, 2002년 1.165명으로 지속적인 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이상자녀수는 상승하여 2.2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과 이상자녀수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그 내용은 다르지만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산율이 이상자녀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상자녀수가 합계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김승권 외, 2000). 이와 같은 사례는 서구 선진국과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72이던 1986년에 이상자녀수는 2.5명으로 나타났고, 199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50으로 저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자녀수는 2.6명으로 상승하였다(The Population Problems Research Council, 1996).주71)

〈표 8-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 변동추이

(단위: 명)

연령	1976[1)]	1982[2)]	1985[3)]	1988[4)]	1991[5)]	1994[6)]	1997[7)]	2000[8)]	2003[9)]
15~24세	2.4	2.1	1.8	1.8	1.8	2.0	2.1	2.1	2.2
25~29세	2.5	2.2	1.9	1.9	1.9	2.1	2.1	2.1	2.2
30~34세	2.8	2.5	2.0	2.0	2.1	2.2	2.2	2.2	2.3
35~39세	3.0	2.6	2.1	2.0	2.2	2.3	2.3	2.3	2.3
40~44세	3.2	2.9	2.2	2.1	2.3	2.3	2.3	2.3	2.3
전체	2.8	2.5	2.0	2.0	2.1	2.2	2.3	2.2	2.2

주: 1991년은 기혼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1) 박병태 외, 『1976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78.
2) 문현상 외,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3) _____,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4) _____,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 보건연구원, 1989.
5)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6)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7)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8)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9)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거주지역 및 연령별 이상자녀수 분포를 살펴보면 <표 8-4>와 같다. 0~1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한 부인은 1997년 10.0%, 2000년 9.3%, 그리고 2003년 11.5%로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또한 3명 이상을 이상

주71) 이 자료에서의 이상자녀수는 미혼 및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임.

자녀수라고 응답한 경우도 1997년 26.5%, 2000년 25.8%, 그리고 2003년 28.4%로 최근 증가하여 평균 이상자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따라서 2명을 이상자녀수 규모라는 부인이 1997년 62.6%에서 2000년 64.3%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3년에는 58.8%로 크게 감소하였고, 감소된 몫은 0~1명과 3명 이상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2003년의 이상자녀수 분포와 평균 이상자녀수를 부인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거주지역별로는 0~1명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1.7%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10.5%보다 다소 많았고, 반면에 3명 이상이라고 한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32.9%로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27.6% 많았다. 따라서 평균 이상자녀수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3명으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2.2명보다 0.1명 많았다.

부인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이상자녀수는 많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이상자녀수는 적었다. 즉, 2명 이하를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74.2%, 25~29세 연령층 부인 77.1%, 그 외 연령층은 약 70% 전·후였으며, 반면에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40~44세 연령층 부인이 31.2%이었으나 15~24세 연령층 부인 21.8%, 25~29세 연령층 부인 22.3%로 차이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크지 않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부인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는 15~24세와 25~29세 연령층 부인의 경우 2.2명이었고, 그 외 연령층은 모두 2.3명이었다.

부인의 교육수준별 이상자녀수 분포를 살펴보면, 2명 이하를 이상자녀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이 71.3%로 가장 많았고, 초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이 65.0%로 가장 적었다. 반면에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초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이 33.2%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이 27.5%로 가장 적었다. 그렇지만 교육수준에 따른 이상자녀수 분포는 차이가 현저하지 않았으며, 평균 이상자녀수의 차이도 초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2.4명,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은 2.2명이었고, 그 외 학력수준의 부인은 2.3명으로 나타났다.

〈표 8-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및 연령별 이상자녀수 분포

(단위: %, 명)

지역 및 연령	이상자녀수 분포						평균 이상자녀수
	1명 이하	2명	3명	4명 이상	기타	계(수)	
1997년[1]	10.0	62.6	20.3	6.2	0.9	100.0(5,409)	2.3
2000년[2]	9.3	64.3	20.1	5.7	0.7	100.0(6,361)	2.2
2003년[3]	11.5	58.8	21.7	6.7	1.2	100.0(6,599)	2.2
지역							
동부	11.7	59.4	21.2	6.4	1.2	100.0(5,577)	2.2
읍·면부	10.5	55.7	24.5	8.4	1.0	100.0(1,022)	2.3
연령							
15~24세	9.7	64.5	19.4	2.4	4.0	100.0(124)	2.2
25~29세	12.1	65.0	18.0	4.3	0.6	100.0(837)	2.2
30~34세	9.4	60.5	23.5	5.2	1.3	100.0(1,704)	2.3
35~39세	11.9	58.6	20.4	8.2	0.9	100.0(1,961)	2.3
40~44세	12.9	54.6	23.2	8.0	1.3	100.0(1,971)	2.3
교육수준							
초교 이하	12.0	53.0	21.7	11.5	1.8	100.0(217)	2.4
중학교	14.0	55.4	22.0	7.6	1.1	100.0(659)	2.3
고등학교	11.8	59.5	21.1	6.4	1.1	100.0(3,576)	2.2
대학 이상	10.0	59.3	22.8	6.6	1.3	100.0(2,139)	2.3
취업여부							
취업	12.3	56.7	22.8	7.3	0.9	100.0(3,154)	2.3
비취업	10.8	60.7	20.8	6.3	1.4	100.0(3,445)	2.2
현존자녀수							
0명	21.5	61.9	11.5	1.7	3.5	100.0(540)	1.9
1명	14.3	61.9	19.7	3.2	0.9	100.0(1,264)	2.1
2명	9.6	59.8	22.5	7.2	0.9	100.0(3,993)	2.3
3명	9.8	46.6	28.9	13.5	1.3	100.0(706)	2.5
4명 이상	11.5	45.2	28.6	16.7	1.2	100.0(84)	2.6

자료: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3) 본 조사결과

2명 이하를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비취업부인이 71.5%, 취업부인은 69.0%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도 취업부인이 30.1%, 비취업부인은 27.1%로 차이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취업여부별 부인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취업부인이 2.3명, 비취업부인이 2.2명으로 0.1명

의 차이만을 보였다.

현존자녀수에 따른 부인의 자녀가치관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현존자녀수에 따른 이상자녀수 분포와 평균 이상자녀수도 큰 차이를 보였다. 즉, 0~1명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현재 자녀가 없는 부인이 21.5%로 가장 많았으나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9.6%로 가장 적었다. 반면에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현재 자녀가 없는 부인이 13.2%로 가장 적었으나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45.3%로 많았다. 따라서 현존자녀수가 0명인 부인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1.9명으로 가장 적었고,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다자녀를 이상자녀수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이상자녀수 분포와 평균 이상자녀수를 살펴보았다. 여전히 2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과거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0~1명과 3명 이상을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간 증가하였고, 2명의 자녀를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인연령별 이상자녀수 분포를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2명 이하의 자녀규모를 이상적이라고 한 비율은 동부지역에서는 25~29세 연령층 부인이 7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73.1%이었으며, 읍·면부지역에서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이 8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5~29세 연령층 부인이 76.5%로 나타났다.[주72] 이와는 상반되게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40~44세 연령층이 29.7%로 가장 많았고,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도 동 연령층이 40.2%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지역에 관계없이 30대 미만의 젊은 연령층 부인은 소자녀 가치관이 강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72) 2000년 조사에서는 2명 이하의 자녀규모를 이상적이라고 한 비율은 동부지역에서는 25~29세 연령층 부인이 8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77.2%이었으며, 읍·면부지역에서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이 8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5~29세 연령층 부인이 73.4%로 나타났음.

〈표 8-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및 연령별 이상자녀수 분포

(단위: %, 명)

지역 및 연령	이상자녀수 분포						평균 이상자녀수
	1명 이하	2명	3명	4명 이상	기타	계(수)	
동부							
15~24세	8.7	64.4	19.2	2.9	4.8	100.0(104)	2.2
25~29세	12.9	64.3	17.8	4.4	0.6	100.0(681)	2.1
30~34세	9.3	61.4	22.9	4.9	1.5	100.0(1,435)	2.2
35~39세	11.8	59.3	20.0	8.1	0.8	100.0(1,686)	2.3
40~44세	13.5	55.5	22.6	7.1	1.4	100.0(1,671)	2.3
읍·면부							
15~24세	15.0	65.0	20.0	-	-	100.0(20)	2.0
25~29세	8.3	68.2	19.1	3.2	1.3	100.0(157)	2.2
30~34세	10.1	55.4	26.8	7.1	0.7	100.0(269)	2.3
35~39세	13.1	54.7	22.5	8.3	1.4	100.0(276)	2.3
40~44세	9.6	49.5	27.2	13.0	0.7	100.0(301)	2.5

제 2 절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

남아선호 가치관은 '아들의 필요성 여부'의 질문에 의하여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들의 필요이유를 규명하는 것은 성선호 가치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항목을 중심으로 15~44세 유배우부인의 남아선가치관의호 변화를 파악 제시 하였다.

1. 아들 필요성

유배우부인 중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인은 1991년 40.5%, 1994년 26.3%, 1997년 24.8%, 2000년 16.2%, 그리고 금번 조사에서는 14.1%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1991년 28.0%, 1994년 38.9%, 1997년 39.4%, 2000년 39.5%, 그리고 금번 조사에서는 43.3%로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소 정체현상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표 8-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 필요성의 변화(1991~2003년)

(단위: %)

연도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1991[1)]	40.5	30.7	28.0	0.8	100.0(7,448)
1994[2)]	26.3	34.3	38.9	0.5	100.0(5,175)
1997[3)]	24.8	35.0	39.4	0.8	100.0(5,409)
2000[4)]	16.2	43.2	39.5	1.1	100.0(6,350)
2003[5)]	14.1	41.8	43.3	0.8	100.0(6,599)

주: 1991년은 15~49세 기혼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표 8-1〉과 동일

또한 아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이라는 태도는 1991년 30.7%, 1994년 34.3%, 1997년 35.0%, 2000년 43.2%, 그리고 금번조사에서는 41.8%로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아들이 '꼭 있어야 함'과 '있는 것이 좋음'에서 '없어도 무관함'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강도는 현저히 낮아졌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치관이 어느 정도 현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사회구조적 및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느냐에 달렸다고 하겠다.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먼저 부인의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0.5%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13.0%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없어도 무관함'의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44.3%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38.0%보다 현저

히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자녀를 가진 부인이 동부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학력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에 많은 자녀를 가진 부인은 읍·면부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학력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후술하는 교육수준의 차이, 현존자녀수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부인의 연령과 아들선호도는 다소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에 따라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차이도 크지 않았다. 즉,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부인은 35~39세 연령층이 12.2%로 가장 적었으나 40~44세 연령층은 17.0%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아들이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인은 40~44세 연령층이 40.1%로 가장 적었고, 15~24세 연령층이 48.4%로 가장 많았다.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들의 선호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경우는 초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이 29.5%로 많았고, 대학 이상 학력수준의 부인은 10.9%로 적었다.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인은 대학 이상 학력수준의 부인이 45.6%로 가장 많았고, 초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은 28.1%로 적었다.

아들 선호도는 적은 자녀를 가진 부인이 낮았고, 많은 자녀를 가진 부인이 높았다. 즉,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경우는 자녀가 없는 부인이 11.9%로 가장 적었고, 현재 자녀가 4명 이상인 부인이 32.9%로 많았다.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무관하다'는 경우는 현재 자녀가 없는 부인이 57.6%로 가장 많았고, 현재 자녀가 4명 이상인 부인은 가장 25.9%로 적었다.

이어서 현재 아들이 몇 명인지에 따라 아들 선호도의 양상을 살펴보면, 개략적으로 아들이 많을수록 아들 선호도가 높고, 아들이 적을수록 아들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경우는 아들이 없는 부인이 8.2%로 가장 적었고, 현재 아들이 3명 이상인 부인은 25.3%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무관하다'는 경우는 현재 아들이 없는 부인이 59.4%로 가장 많았고, 현재 아들이 1명이라도 있는 부인은 약 37.0~38.0%의 범주에 있었다.

〈표 8-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전체	14.1	41.8	43.3	0.8	100.0(6,599)
지역					
동부	13.0	41.9	44.3	0.8	100.0(5,578)
읍·면부	20.5	40.7	38.0	0.8	100.0(1,021)
연령					
15~24세	15.3	33.9	48.4	2.4	100.0(124)
25~29세	14.1	38.1	47.1	0.7	100.0(838)
30~34세	13.0	42.4	44.0	0.6	100.0(1,704)
35~39세	12.2	43.0	44.0	0.8	100.0(1,963)
40~44세	17.0	42.0	40.1	1.0	100.0(1,973)
교육수준					
초교 이하	29.5	41.5	28.1	0.9	100.0(217)
중학교	20.8	39.5	37.8	1.8	100.0(658)
고등학교	13.9	41.6	43.9	0.7	100.0(3,578)
대학 이상	10.9	42.9	45.6	0.6	100.0(2,139)
취업여부					
취업중	15.5	40.7	42.8	1.0	100.0(3,156)
비취업	12.9	42.7	43.7	0.7	100.0(3,446)
현존자녀수					
0명	11.9	28.1	57.6	2.4	100.0(538)
1명	10.6	38.7	49.9	0.8	100.0(1,264)
2명	13.8	44.2	41.2	0.7	100.0(3,994)
3명	21.4	44.1	34.3	0.1	100.0(709)
4명 이상	32.9	40.0	25.9	1.2	100.0(85)
현존아들수					
0명	8.2	31.0	59.4	1.4	100.0(1,850)
1명	16.1	46.5	37.0	0.5	100.0(3,372)
2명	16.7	45.3	37.2	0.8	100.0(1,285)
3명 이상	25.3	35.4	38.0	1.3	100.0(79)

2. 아들의 필요이유

전술한 바와 같이 2003년 조사에서는 아들 선호도가 상당히 낮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들 선호 가치관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필요이유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들의 필요이유를 전통적 가계계승의 측면에서 '가문유지와 제사'를, 자식으로부터의 도움과 관련하여 '노후생활과 경제적 도움'을, 정신적 만족감의 측면에서 '심리적 만족과 가정행복', 그리고 '기타이유'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주7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는 심리적 만족이 72.9%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00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69.8%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다음은 가정행복이 53.3%로 높았는데 이 또한 2000년의 조사결과인 43.3%보다 높은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정신적 만족을 주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정신적 만족감 다음으로 아들이 필요 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 가계계승이다. 이를 위한 지표는 가문유지와 제사상속인데, 가문유지를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인은 23.0%로 2000년의 23.1%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제사상속을 위하여 아들이 필요한 경우는 7.5%로서 2000년의 5.7%보다 미미하나마 증가하였다.

반면에 자식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기 위한 이유로는 노후생활를 위해와 경제적 도움 등의 두 지표에 의하여 측정되었는데, 전자는 5.3%로 2000년의 5.4%와 유사하였고, 후자는 1.6%로 2000년의 2.4%보다 미미하나마 감소하였다. 아무튼 아들로부터의 도움을 거의 기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들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인 '정신적 만족감'인 심리적 만족과 가정행복을 제시한 경우를 부인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주73) 분석결과는 복수응답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함. 즉, 한 응답자가 두 가지 이상의 아들 필요이유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임.

먼저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두 지표 모두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았다. 즉,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77.6%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71.9%보다 높았고,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경우도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59.4%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56.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인연령별로 살펴보면,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경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여 15~24세 연령층 부인은 66.1%이었으나 40~44세 연령층 부인은 75.6%로 많았다.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경우는 연령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로 높은 연령층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24세 연령층 부인은 45.9%로 낮았으나 35~39세 연령층 부인은 58.8%, 40~44세 연령층 부인은 56.5%이었다.

아들의 필요성이 정신적 만족감에 있는 비율을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비교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만족에 의한 아들 필요성이 높았고, 가정행복을 위한 아들 필요성은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즉,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교 이하 학력의 부인이 84.3%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이 상승할수록 낮아져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66.8%이었다. 또한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모든 학력수준의 부인이 약 56.1~58.4%의 좁은 범주에 있었다.

취업중인 부인이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75.3%로 비취업 부인의 70.6%보다 높았으며,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유사한 수준이었다(취업부인 56.5%, 비취업부인 56.8%).

현존자녀수별로 심리적 만족에 의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살펴보면,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74.8%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없는 부인은 61.7%로 가장 적었다. 또한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59.2%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없는 부인은 47.0%로 가장 적었다.

〈표 8-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의 필요이유[1)]

(단위: %)

특성	전통적 가계계승		자식으로부터의 도움		정신적 만족감		기타
	가문유지	제사	노후생활	경제적 도움	심리적 만족	가정 행복	
2000년	23.1	5.7	5.4	2.4	69.8	43.3	0.7
2003년	23.0	7.5	5.3	1.6	72.9	56.6	0.4
지역							
동부	21.7	7.1	4.8	1.3	71.9	56.1	0.4
읍·면부	28.9	9.6	7.8	3.0	77.6	59.4	0.2
연령							
15~24세	32.3	8.2	3.3	4.8	66.1	45.9	-
25~29세	27.0	9.8	4.3	1.8	69.6	53.5	0.5
30~34세	22.9	7.5	3.9	1.0	70.9	56.3	0.6
35~39세	19.7	5.5	4.2	1.4	73.4	58.8	0.5
40~44세	24.2	8.6	7.9	2.1	75.6	56.5	0.1
교육수준							
초교 이하	31.4	12.3	18.3	7.8	84.3	58.4	-
중학교	29.4	10.4	8.6	1.0	80.5	56.1	-
고등학교	22.3	7.3	4.5	1.5	74.0	56.2	0.2
대학 이상	20.9	6.3	3.8	1.1	66.8	57.2	0.9
취업여부							
취업중	23.3	8.4	6.6	1.7	75.3	56.5	0.3
비취업	22.7	6.7	4.1	1.5	70.6	56.8	0.4
현존자녀수							
0명	37.2	9.3	5.1	2.8	61.7	47.0	0.5
1명	22.5	8.2	4.7	0.8	71.3	49.7	0.5
2명	20.4	6.9	5.0	1.7	73.9	59.2	0.3
3명	28.2	8.0	7.3	1.7	74.8	58.3	0.6
4명 이상	32.8	12.9	11.5	1.6	73.8	54.8	-
현존아들수							
0명	25.9	7.2	4.0	1.1	68.1	50.4	0.8
1명	21.8	7.7	5.2	1.1	73.7	58.9	0.3
2명	23.1	7.2	6.5	3.3	74.9	56.1	0.4
3명 이상	22.9	8.3	10.2	2.0	75.5	61.2	-

주: 1)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본 조사결과

현존 아들수와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들이 없는 부인의 경우는 68.1%로 가장 적었고, 3명 이상의 아들을 가진 부인은 75.5%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실제 아들이 많은 경우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들이 많은 부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비례하지는 않았다. 즉, 아들이 한명도 없는 부인의 50.4%와 3명 이상의 아들을 가진 부인의 61.2%가 가정행복과 아들을 연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비율은 정신적 만족감과 같이 높지는 않았지만 가문유지와 제사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한 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많았으며, 연령이 적거나 많은 부인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았다.

3. 이상자녀수의 성 선호

성선호의 수준은 전술한 '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부인의 이상자녀수가 성구분 없이 결정되는지 아니면 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의해서도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이상자녀수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상자녀수를 남아 및 여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주74] 이는 남아선호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실제 자녀규모를 결정하는 한 요인[주75]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갖기 위하여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는 등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이고 법적 및 윤리적 측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가치관적 측면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이상자녀수가 어떠한 성 구성을 갖기 원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물론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원한다고 하여 반드시 남아를 선호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남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자녀수를 성 구별없이 원한다는 부인은 64.3%로 나타나 2000년의 57.3%보

주74) 이상자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술하였음.

주75) 딸을 출산한 경우 아들을 갖기 위하여 계속 출산하기도 하여 딸이 여러 명 있고 마지막 자녀는 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음.

다 7.0%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에 성 구별하여 이상자녀수를 원한다는 경우는 35.6%로 2000년의 42.1%보다 6.5%포인트 감소하였다.

〈표 8-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이상자녀의 성구별 여부

(단위: %)

특성	구별없이	구별해서	기타	계(수)
2000년[1)]	57.3	42.1	0.7*	100.0(6,349)
2003년[2)]	64.3	35.6	0.1	100.0(6,509)
지역				
동부	64.9	35.0	0.1	100.0(5,499)
읍·면부	60.6	39.3	0.1	100.0(1,010)
연령				
15~24세	71.4	28.6	-	100.0(119)
25~29세	63.1	36.8	0.1	100.0(832)
30~34세	64.9	34.9	0.2	100.0(1,679)
35~39세	65.3	34.6	0.1	100.0(1,940)
40~44세	62.7	37.2	0.1	100.0(1,939)
교육수준				
초교 이하	50.2	49.3	0.5	100.0(213)
중학교	61.7	38.3	-	100.0(650)
고등학교	63.6	36.3	0.1	100.0(3,529)
대학 이상	67.7	32.2	0.1	100.0(2,110)
취업여부				
취업중	63.2	36.6	0.2	100.0(3,117)
비취업	65.2	34.7	0.1	100.0(3,393)
현존자녀수				
0명	72.4	27.4	0.2	100.0(519)
1명	69.1	30.9	0.1	100.0(1,251)
2명	63.3	36.5	0.1	100.0(3,950)
3명	56.7	43.3	-	100.0(695)
4명 이상	46.3	53.7	-	100.0(82)

주: *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부인 포함.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본 조사자료

따라서 양성평등적 측면이 다소 강화된 가치관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 부인의 35.6%가 남아선호에 기초한 성구별에 의한 이상자녀

수를 제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구별에 의한 이상자녀수를 제시한 부인의 비율을 부인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된다. 성 선호적 가치관을 가진 부인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35.0%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39.3%보다 많았다.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성 선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24세 연령층 부인은 28.6%로 가장 적었으나, 40~44세 연령층 부인은 37.2%로 많았다.

또한 학력수준이 낮은 부인일수록 성 선호적 가치관이 높았는데, 초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의 성 선호적 가치관은 49.3%로 많았으나 학력수준이 상승할수록 점차 낮아져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32.2%로 가장 적었다.

취업중인 부인의 성 선호적 가치관 소유율은 36,6%로 비취업부인의 34.7%보다는 미미하나마 높았고, 현존자녀수가 많은 부인의 성 선호적 가치관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무자녀 부인 27.4%,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 53.7%).

제 3 절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은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책임한계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1.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태도는 네 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①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을 통제, 자율성 거의 없음, ② 뚜렷한 자녀양육방법이 없으며, 지나친 자율성 부여, ③ 그냥 내버려두며, 자녀들에게 요구도 반응도 보이지 않음, ④ 자녀들을 적극 지원하며, 부모의 규칙을 설명하여 이해하고 따르도록 함 등이다.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들의 자녀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 74.8%가 '자녀들을 적극 지원하며, 부모의 규칙을 설명하여 이

해하고 따르도록 함'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뚜렷한 자녀양육방법이 없으며, 지나친 자율성 부여'가 13.5%,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을 통제, 자율성 거의 없음' 9.7%,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며, 자녀들에게 요구도 반응도 보이지 않음' 1.9%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가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다행스러우나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25.2%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같이 문제점을 보이는 경우를 중심으로 그 수준을 가구특성과 가구주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지역별로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인 비율이 읍·면부지역 가구가 28.4%로 동부지역 가구의 24.4%보다 4.0%포인트 많았다.

가구특성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가 많았는데, 300만원 이상 소득을 가진 가구는 19.5%이었으나 99만원 이하의 가구는 37.6%의 높은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였다.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2~3세대 가구는 약 23.2~23.8%가 부적절하였으나 1세대 가구는 36.0%가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였다. 이는 1세대 가구의 경우 자녀가 교육 등으로 인하여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가구주의 특성은 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혼인상태 등으로 살펴보았다.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인 비율은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가 33.4%로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의 24.2%보다 많았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로 젊은 연령층의 가구주가 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많이 갖고 있었고, 가구주 연령이 높은 계층에서 부적절한 자녀양육 태도를 많이 갖고 있었다. 즉, 자녀양육태도가 부적절한 비율은 30~39세 연령층이 20.7%, 60세 이상 연령층이 32.0%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가진 비율이 높았다. 즉,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33.3%,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가구주의 25.4%,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가구주의 28.4%가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0〉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태도

(단위: %)

구분	①규칙을 만들어 자녀들을 통제, 자율성 거의 없음 ②뚜렷한 자녀양육방법이 없으며, 지나친 자율성 부여 ③그냥 내버려두며, 자녀들에게 요구도 반응도 보이지 않음 ④자녀들을 적극 지원하며, 부모의 규칙을 설명하여 이해하고 따르도록 함				
	①	②	③	④	계(수)
전체	9.7	13.5	1.9	74.8	100.0(10,147)
지역					
동부	9.4	13.3	1.7	75.6	100.0(8,259)
읍·면부	11.6	14.2	2.6	71.6	100.0(1,88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2.3	20.3	5.0	62.4	100.0(1,015)
100~199만원	9.8	17.3	2.6	70.3	100.0(2,370)
200~299만원	9.3	13.4	1.4	75.9	100.0(2,855)
300만원 이상	9.2	9.4	0.9	80.5	100.0(3,526)
가구유형					
1세대	12.9	18.9	4.2	64.0	100.0(1,182)
2세대	9.4	12.8	1.6	76.2	100.0(7,892)
3세대 이상	8.9	12.9	1.5	76.8	100.0(1,072)
가구주 성					
남성	9.8	12.8	1.7	75.8	100.0(9,136)
여성	9.4	20.1	3.8	66.6	100.0(1,013)
가구주 연령					
29세 이하	11.7	13.7	1.0	73.7	100.0(205)
30~39세	9.4	10.1	1.3	79.3	100.0(2,614)
40~49세	9.0	13.4	1.7	75.9	100.0(4,101)
50~59세	10.5	16.0	2.8	70.6	100.0(2,527)
60세 이상	11.7	17.7	2.6	68.0	100.0(701)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7	19.9	3.7	66.7	100.0(2,689)
고등학교	10.7	12.9	1.8	74.6	100.0(4,075)
대학 이상	8.7	9.1	0.7	81.6	100.0(3,375)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중	9.7	13.1	1.7	75.5	100.0(9,129)
비취업	10.2	16.9	3.5	69.4	100.0(1,020)
가구주 혼인상태					
유배우	9.8	12.5	1.5	76.2	100.0(8,977)
사별	8.9	21.9	3.6	65.6	100.0(448)
이혼·별거	9.3	20.6	5.8	64.3	100.0(719)

주: 1)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또한 가구주의 취업에 따라서는 비취업 가구주와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가 자녀양육태도의 부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가 취업 중인 경우는 24.5%가, 비취업 가구주는 30.6%가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였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는 23.8%가, 사별 또는 이혼·별거 중인 가구주는 각각 34.4%, 35.7%가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였다.

2. 자녀양육 책임

자녀양육 책임의 한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다섯 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③ 취업할 때까지, ④ 혼인할 때까지, ⑤ 언제(까지)라도 등이며, 응답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⑥ 기타, ⑦ 생각해 보지 않음/모르겠음 등도 답변항으로 제시하였다.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교 졸업 할 때까지가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32.1%, 취업할 때까지 11.5%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8.3%, 언제(까지)라도 6.3% 등이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가족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가구와 가구주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지역별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는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41.1%로 높았으나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36.3%로 다소 낮았다. 반면에 혼인할 때까지를 책임한계라고 응답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38.1%로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30.7% 보다 높았다. 또한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7.2%로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6.1% 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99만원 이하 소득가구 31.2%, 200만원대의 소득가구 43.8%, 300만원 이상 소득가구 42.0% 등이었다.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녀양육의 책임한계가 있다는 응답은 99만원 이하 소득가구

13.0%, 100만원대의 소득가구 9.9%, 200만원대의 소득가구 7.9%, 300만원 이상 소득가구 6.5% 등이었다. 또한 혼인할 때까지 자녀양육 책임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99만원 이하 소득가구가 35.7%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대의 소득가구는 30.2%로 가장 적었다. 평생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인 '언제(까지)라도'의 비율은 99만원 이하 소득가구가 7.4%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의 소득가구는 6.0%로 적었다. 따라서 소득이 높다고 자녀양육책임을 반드시 넓게 인식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세대와 3세대 가구유형의 응답자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대학교 졸업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2.1%, 39.8%로 가장 많았으며, 1세대의 경우는 혼인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37.8%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2세대와 3세대 가구유형의 응답자의 경우는 혼인할 때까지(각각 31.1%, 30.5%)이었으며, 1세대 가구유형의 응답자는 대학교 졸업 때까지(31.5%)로 나타났다.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경우는 1세대 가구유형의 응답자가 7.1%로 가장 많았고, 2세대 가구유형의 응답자는 6.1%로 나타나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4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31.9%이었다. 반면에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가 각각 34.6%, 34.1%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경우도 남성가구주 6.3%, 여성가구주 6.0%이었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는 대체로 가구주 연령이 높은 경우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높았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 책임한계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52.9%나 되었으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경우는 다른 연령층보다는 낮은 24.5%이었다. 관심을 끄는 연령층은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을 책임한계로 응답한 비율이 19.6%나 되어 가장 많았으며, 반대로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9.9%로 가장 많았다.

〈표 8-11〉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단위: %)

구분	①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③취업할 때까지 ④혼인할 때까지 ⑤언제(까지)라도 ⑥기타 ⑦생각해 보지 않음/모르겠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8.3	40.2	11.5	32.1	6.3	0.6	1.0	100.0(11,106)
지역								
동부	8.5	41.1	11.7	30.7	6.1	0.6	1.1	100.0(9,083)
읍·면부	7.1	36.3	10.3	38.1	7.2	0.4	0.6	100.0(2,02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3.0	31.2	10.7	35.7	7.4	0.6	1.4	100.0(1,091)
100~199만원	9.9	38.4	11.6	31.5	6.2	0.6	1.8	100.0(2,651)
200~299만원	7.9	43.8	10.6	30.2	6.2	0.5	0.8	100.0(3,164)
300만원 이상	6.5	42.0	12.1	32.3	6.0	0.6	0.5	100.0(3,804)
가구유형								
1세대	11.3	31.5	9.5	37.8	7.1	0.6	2.2	100.0(1,713)
2세대	7.7	42.1	11.6	31.1	6.1	0.6	0.8	100.0(8,279)
3세대 이상	7.7	39.8	13.7	30.5	6.6	0.7	0.9	100.0(1,117)
가구주 성								
남성	8.0	40.8	11.3	31.9	6.3	0.6	1.1	100.0(10,047)
여성	11.1	34.6	12.7	34.1	6.0	0.6	0.8	100.0(1,060)
가구주 연령								
29세 이하	19.6	36.4	8.6	22.5	9.9	0.8	2.1	100.0(382)
30~39세	11.8	45.9	11.2	21.4	7.5	0.8	1.4	100.0(3,206)
40~49세	6.2	44.1	12.4	30.3	5.3	0.7	1.0	100.0(4,245)
50~59세	6.2	31.8	11.7	44.1	5.6	0.1	0.5	100.0(2,566)
60세 이상	6.2	24.5	7.9	52.9	7.6	0.1	0.7	100.0(707)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9	32.5	10.7	41.9	5.7	0.3	1.1	100.0(2,779)
고등학교	8.6	41.9	12.3	29.1	6.3	0.7	1.1	100.0(4,463)
대학 이상	8.2	43.9	11.1	28.5	6.7	0.6	1.0	100.0(3,853)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중	8.2	40.8	11.7	31.3	6.3	0.6	1.1	100.0(10,013)
비취업	8.6	35.2	8.9	39.5	6.4	0.5	1.0	100.0(1,095)
가구주 혼인상태								
유배우	7.8	40.9	11.3	32.2	6.2	0.6	1.0	100.0(9,863)
사별	9.1	29.1	13.5	41.1	6.6	0.2	0.4	100.0(453)
이혼·별거	13.5	38.5	12.1	25.6	7.3	0.9	2.2	100.0(786)

주: 1) 기타에는 아들은 군대 제대까지, 딸은 결혼할 때까지 또는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대학입학 때까지, 자녀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이 끝날 때까지 등이 있음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 가구주의 41.9%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 하였고,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32.5%이었다. 반면에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43.9%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하였고, 28.5%만이 혼일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 책임한계를 제시한 경우는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주가 6.7%,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5.7%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가 가구주가 취업중인 경우 각각 40.8%, 31.3%이었고, 가구주가 비취업인 경우는 각각 35.2%, 39.5%이었다.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가구주의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자녀양육의 책임한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가 유배우 상태인 경우에는 자녀양육의 책임한계에 대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4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로 32.2%이었다. 그렇지만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에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대해 '혼인할 때까지'는 41.1%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로 29.1%이었다. 그리고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인 경우에는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38.5%로 가장 많았으나 유배우 가구주보다는 적었다. 또한 '혼인할 때까지'는 2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혼인상태 가구보다 적었으며,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13.5%로 다른 혼인상태의 가구주 가구보다 많았다.

제 4 절 혼인가치관의 변화

한국 사회는 모든 남녀가 일정 연령에 달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보편혼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결혼관이 점차 변화하여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는 개인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

을 수도 있다는 상대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통사회에서는 금기시하였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도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같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재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결혼, 이혼, 재혼 등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승권 외, 2000).

1. 결혼가치관

결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는 다양한 가치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부인특성별 결혼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15세 이상 기혼부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2000년과 비교하여 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는 약간 감소한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2000년 26.2%에서 2003년에는 25.7%로 감소하였고,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 태도는 같은 연도에 29.4%에서 28.7%로, 그리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38.2%에서 37.1%로 1.1%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5.4%에서 7.9%로 2.5%포인트 증가하였다. 따라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또는 긍정적 태도는 2000년 55.6%에서 2003년에는 54.4%로 감소한 반면, 소극적 및 부정적 태도는 같은 연도에 43.6%에서 4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혼부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부인의 특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지역별로는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모두 동부 보다는 읍·면부에서 높았고, 소극적인 태도만이 동부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연령별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30대까지는 점차 감소하다가 40대부터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었으며,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은 낮아졌다. 또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30대 까지는 점차 증가하여 44.9%까지 증가하였으나 40대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50세 이상은 22.9%까지 낮아졌다. 결혼에 대한 강한 부정적 태도인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한 부인은 연령에 따라서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24세 이하를 제외할 경우 30대 이전보다는 40대 이상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중년부인의 경우 가사,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의 부담으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높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부인들은 40.6%, 대학 이상 학력의 부인들은 21.2%이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비율도 높아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학력이 낮은 층에서도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저학력층의 경우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많아 실제 이들이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비율은 사별인 경우 가장 높았고, 이혼·별거의 경우 가장 낮았으며,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사별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외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와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비율은 이혼·별거의 경우 가장 높아 결혼상태별 결혼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별의 경우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아 유배우자나 이혼·별거부인들 보다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혼·별거의 경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은 본인의 결혼이 실패로 끝난 것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부인보다 비취업 부인이 결혼에 대하여 긍

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부정적인 태도는 비취업 부인보다 취업부인이 약간 높았다.

〈표 8-12〉 15세 이상 기혼부인의 특성별 결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겠음	계(수)
2000년	26.2	29.4	38.2	5.4	0.8	100.0(10,601)
2003년	25.7	28.7	37.1	7.9	0.7	100.0(11,145)
지역						
동부	24.1	29.2	38.3	7.6	0.7	100.0(9,116)
읍·면부	32.6	26.1	31.6	9.1	0.6	100.0(2,029)
연령						
15～24세	26.8	37.8	25.2	10.2	-	100.0(127)
25～29세	20.4	32.5	42.0	4.6	0.5	100.0(845)
30～34세	17.8	30.8	44.8	6.1	0.5	100.0(1,738)
35～39세	17.8	28.7	44.9	8.0	0.6	100.0(2,071)
40～44세	22.1	28.1	39.9	9.3	0.7	100.0(2,137)
45～49세	28.2	27.9	34.1	8.9	0.9	100.0(1,625)
50세 이상	43.0	25.4	22.9	8.1	0.6	100.0(2,208)
교육수준						
초교 이하	40.6	25.1	22.2	11.2	0.8	100.0(1,682)
중학교	29.8	25.6	33.2	10.2	1.3	100.0(1,737)
고등학교	21.4	28.0	42.0	8.1	0.5	100.0(4,801)
대학 이상	21.2	33.7	41.2	3.6	0.3	100.0(2,522)
결혼상태						
유배우	26.3	29.1	37.2	6.9	0.5	100.0(9,897)
사별	31.1	28.4	25.6	13.7	1.3	100.0(454)
이혼·별거	15.0	23.5	42.1	16.6	2.8	100.0(791)
현 취업여부						
비취업	24.8	30.0	38.0	6.8	0.5	100.0(5,187)
취업	26.7	27.2	36.5	8.8	0.8	100.0(5,609)

2. 이혼가치관

부인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이 2000년에는 52.8%이었으나 2003년에는 50.4%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는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2000년 30.2%, 2003년 30.3%,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와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03년에는 18.6%로 3.1%포인트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이혼을 수용하는 부인의 비율은 2000년 45.7%에서 2003년 48.9%로 증가하여 이혼에 대해 점차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동부가 읍·면부 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동부보다 읍·면부가 높은 비율이었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비율이 높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과 '이유가 있을 경우 하는 편이 좋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혼은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높아 15~24세 연령층 부인은 38.6%로 낮았으나 50세 이상 부인은 66.0%나 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허용적인 태도까지 포함할 경우 초등학교 이하는 33.8%이었으나 대학 이상은 55.7%로 학력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도 차이를 보여 이혼에 찬성하거나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이혼·별거부인이 가장 높아 61.4%이었으며, 사별부인의 경우 가장 낮아 35.9%이었다.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도 유배우부인이 가장 높았으나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비율까지 포함할 경우 사별부인이 63.6%로 가장 높았으며, 이혼·별거부인은 37.5%로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이는 사별부인의 경우 고연령층(평균 50.6세)으로 결혼, 이혼 등에 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한 이혼·별거부인은 본인들이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로 이혼에 대해 유배우나 사별부인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부인

(52.2%)이 비취업 부인(48.3%)보다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취업 부인의 경우 비취업부인 보다 무배우자의 비율이 높아 부인이 가구의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8-13〉 15세 이상 기혼부인의 특성별 이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됨	절대로 해서는 안됨	모르겠음	계(수)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2000년	3.3	12.2	30.2	38.0	14.8	1.4	100.0(10,598)
2003년	3.3	15.3	30.3	36.2	14.2	0.7	100.0(11,145)
지역							
동부	3.5	15.8	31.6	36.6	11.8	0.7	100.0(9,116)
읍·면부	2.6	13.0	24.3	34.7	24.8	0.6	100.0(2,029)
연령							
15～24세	4.7	21.3	33.9	27.6	11.0	1.6	100.0(127)
25～29세	3.1	19.3	38.9	30.0	7.8	0.9	100.0(846)
30～34세	3.3	17.2	37.5	31.7	9.4	0.9	100.0(1,738)
35～39세	3.6	16.9	35.4	34.5	9.2	0.5	100.0(2,070)
40～44세	2.9	15.4	30.7	39.8	10.3	0.9	100.0(2,138)
45～49세	3.3	14.2	27.2	38.1	16.7	0.6	100.0(1,625)
50세 이상	2.9	11.2	19.7	38.6	27.4	0.2	100.0(2,208)
교육수준							
초교 이하	3.0	11.4	19.4	37.8	28.3	0.2	100.0(1,682)
중학교	3.0	14.1	24.7	39.2	18.3	0.7	100.0(1,736)
고등학교	3.4	16.5	33.7	35.3	10.3	0.7	100.0(4,801)
대학 이상	3.1	16.4	36.2	34.4	9.4	0.6	100.0(2,522)
결혼상태							
유배우	2.8	14.8	30.9	36.6	14.3	0.6	100.0(9,896)
사별	2.2	14.5	19.2	35.2	28.4	0.4	100.0(454)
이혼·별거	10.2	22.5	28.7	32.4	5.1	1.1	100.0(792)
현 취업여부							
비취업	2.9	16.1	32.1	35.7	12.6	0.6	100.0(5,188)
취업	3.4	14.6	29.2	36.4	15.8	0.6	100.0(5,608)

3. 재혼가치관

재혼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전체 부인의 20.7%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적극적 또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47.2%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외 27.4%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재혼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긍정적 태도(2000년 16.8%, 2003년 20.7%)와 소극적인 태도(2000년 46.5%, 2003년 47.2%)는 2000년 보다 2003년이 모두 높았으며, 부정적인 태도는 2000년(30.3%)이 2003년(27.4%) 보다 높아 최근으로 오면서 재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재혼에 관해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동부보다 읍·면부가 높았으나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동부가 읍·면부 보다 높았다. 이 외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동부(26.0%)보다 읍·면부(33.6%)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재혼에 관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25~29세에 21.9%로 가장 높다가 점차 낮아져 35~39세에는 18.5%에 이르나 40세 이후부터는 다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재혼에 대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높아졌다.

교육수준별로는 재혼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 고학력일수록 높았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저학력층 일수록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사별한 부인(41.7%)이 유배우부인(26.5%)이나 이혼·별거중인 부인(30.6%)보다 재혼에 대한 반대비율이 높았다. 이는 사별부인들이 현재 유배우 또는 이혼·별거중인 부인들 보다 고연령층으로 구성[주76)]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부인(29.9%)이 비취업부인(25.3%)보다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비취업부인의 연령이 취업부인보다 젊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재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

주76) 결혼상태별 부인들의 평균 현 연령을 살펴보면, 유배우부인이 40.8세, 사별부인 50.6세, 그리고 이혼·별거부인은 44.5세로 사별부인이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8-14〉 15세 이상 기혼부인의 특성별 재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	모르겠음	계(수)
2000년	0.7	16.1	46.5	23.7	6.6	6.3	100.0(10,590)
2003년	0.8	19.9	47.2	21.5	5.9	4.6	100.0(11,127)
지역							
동부	0.8	19.8	48.6	20.8	5.2	4.8	100.0(9,099)
읍·면부	1.0	20.4	41.1	24.7	8.9	3.9	100.0(2,028)
연령							
15～24세	2.4	16.7	53.2	14.3	6.3	7.1	100.0(126)
25～29세	0.5	21.4	55.5	13.2	3.3	6.2	100.0(844)
30～34세	0.6	20.3	53.5	16.8	3.3	5.5	100.0(1,736)
35～39세	0.4	18.1	51.7	21.8	3.8	4.2	100.0(2,064)
40～44세	1.1	19.0	46.8	22.6	5.7	4.9	100.0(2,136)
45～49세	1.0	19.4	41.8	25.2	8.1	4.4	100.0(1,624)
50세 이상	0.8	20.3	39.5	26.1	9.7	3.5	100.0(2,203)
교육수준							
초교 이하	1.1	19.4	34.1	30.2	11.3	3.8	100.0(1,677)
중학교	0.5	18.7	40.0	27.5	8.8	4.5	100.0(1,736)
고등학교	0.8	19.6	49.3	20.7	4.8	4.8	100.0(4,791)
대학 이상	0.6	20.2	57.3	14.4	2.7	4.8	100.0(2,519)
결혼상태							
유배우	0.8	20.1	47.9	21.0	5.5	4.7	100.0(9,878)
사별	0.7	18.5	36.6	29.1	12.6	2.6	100.0(454)
이혼·별거	1.1	18.5	44.8	23.8	6.8	5.1	100.0(791)
현 취업여부							
비취업	0.8	20.8	48.5	20.3	5.0	4.7	100.0(5,178)
취업	0.8	18.5	46.3	23.1	6.8	4.6	100.0(5,600)

제 5 절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 변화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는 자녀가치관, 남아선호가치관, 자녀양육가치관, 혼인가치관 등이다. 특히 혼인가치관은 결혼가치관, 이혼가치관, 재혼가치관을 포함하였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는 20세기 후

반의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동시에 사회구성원인 가족 개개인의 의식변화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소자녀관의 정착과 지속적인 저출산 초래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한국사회 특유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높은 책임감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양육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물론 이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며,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 교육정책의 오류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는 상대적 가치로 변하여 전통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누구나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개인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점차 약화되고, 결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가치관도 점차 변하여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기 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 이후 자녀를 키우면서 일생을 홀로 보내기 보다는 재혼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남아선호가치관을 제외하고는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 가족, 사회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9 장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일반적으로 결혼여부는 재생산(reproduction)가능성을 결정하며, 재생산기간은 결혼연령과 사별·이혼·별거 등에 의한 해혼시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력과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또한 가족주기에 있어서도 결혼은 가족을 형성하는 첫 단계로서, 해혼은 가족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해체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승권 외, 2000). 이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는 결혼양상과 해혼실태 및 그 원인 등을 살펴보고, 특히 최근 이혼율의 상승으로 인한 이혼가정의 자녀양육 문제와 관련하여 이혼·별거가족의 자녀양육 및 부양책임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초혼연령의 상승, 미혼율의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력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가족주기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결혼 및 가족주기의 변화양상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결혼양상

1. 결혼상태

15세 이상 기혼부인 11,219명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부인이 88.6%로 대부분의 부인이 유배우 상태이었으며, 사별 4.1%, 이혼·별거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유배우부인과 사별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이 높은 반면, 이혼·별거한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7.8%)이 읍·면부지역(4.6%)보다 높았다. 이는 동부지역은 읍·면부지역보다 젊은 층 부인들의 거주비율이 높고, 반대로 읍·면부지역은 고연령층 부인들의 거주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진다.

〈표 9-1〉 기혼부인의 지역별 결혼상태

(단위: %, 명)

결혼상태	전국	동부	읍·면부
유배우	88.6	88.5	89.2
사별	4.1	3.7	6.2
이혼·별거[1)]	7.2	7.8	4.6
계	100.0	100.0	100.0
(수)	(11,219)	(9,187)	(2,032)

주: 1) 미혼모 포함

결혼경력별로는 대부분의 부인이 초혼(97.8%)으로서 재혼부인의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2.2%)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의 재혼부인 비율이 동부지역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다(동부 2.0%, 읍·면부 2.7%). 기혼부인 남편의 경우 초혼 비율은 부인의 초혼비율 보다는 낮았고(97.5%), 재혼비율은 부인들보다 높았다(2.5%). 지역별로는 부인과 마찬가지로 초혼은 동부지역에서, 그리고 재혼은 읍·면부지역에서 보다 높았다. 이를 2000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인의 경우 초혼 비율은 2000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주77)], 재혼비율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은 2000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9-2〉 기혼부인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

(단위: %, 명)

결혼경력	전국	동부	읍·면부
부인			
초혼	97.8	98.0	97.3
재혼	2.2	2.0	2.7
계	100.0	100.0	100.0
(수)	(11,214)	(9,183)	(2,031)
남편			
초혼	97.5	97.7	96.7
재혼	2.5	2.3	3.3
계	100.0	100.0	100.0
(수)	(11,199)	(9,169)	(2,030)

주77) 2000년 조사결과, 부인의 초혼비율은 98.2%이었으며, 재혼비율은 1.8%이었음(김승권 외, 2000).

부부의 결혼경력별 결합형태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96.9%로 대부분이었으며, 남편, 부인 모두 재혼 1.6%, 부인 초혼·남편 재혼 0.9%, 그리고 부인 재혼·남편 초혼은 0.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여자보다는 남자의 재혼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의 재혼을 금기시 해온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경우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며, 재혼인 경우는 다소 높은 편으로 최근으로 오면서 전체적인 결혼관의 변화와 함께 재혼에 대한 태도 등도 변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9-3〉 기혼부인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의 비교

(단위: %, 명)

결혼경력	2000[1)]	2003[2)]
남편과 부인 모두 초혼	97.3	96.9
남편 초혼, 부인 재혼	0.3	0.6
부인 초혼, 남편 재혼	0.9	0.9
남편, 부인 모두 재혼	1.5	1.6
계	100.0	100.0
(수)	(10,700)	(11,200)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본 조사자료.

이러한 변화양상은 15~49세 기혼부인주78)만을 대상으로 부부간 결혼경력별 결합형태를 살펴 본 <표 9-4>에서 보다 더 잘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 모두 초혼인 결합형태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재혼인 결합형태의 비율은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7년의 경우 부인, 남편 모두 초혼인 비율은 98.4%이었으나 2000년에는 98.0%, 그리고 2003년

주78) 15~49세 부인만을 대상으로 비교한 것은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의 대상이 15~49세 부인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임.

에는 97.4%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남편 초혼, 부인 재혼비율은 같은 연도에 0.3%, 0.4%, 그리고 0.7%로 점차 증가추세이었다. 또한 남편 재혼, 부인 초혼인 비율은 1997년 0.5%, 2000년 0.6%, 2003년 0.7%로, 그리고 남편 부인 모두 재혼인 비율은 같은 연도에 0.8%, 1.0%, 1.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었다.주79)

〈표 9-4〉 15～49세 기혼부인과 남편의 결혼경력

(단위: %)

부인의 결혼경력	남편의 결혼경력		계(수)
	초혼	재혼	
1997[1)]	98.7	1.3	100.0(6,450)
초혼	98.4	0.5	98.9(6,381)
재혼	0.3	0.8	1.1(69)
2000[2)]	98.4	1.6	100.0(7,961)
초혼	98.0	0.6	98.6(7,852)
재혼	0.4	1.0	1.4(109)
2003[3)]	98.0	2.0	100.0(8,890)
초혼	97.4	0.7	98.1(8,719)
재혼	0.7	1.3	1.9(171)

주: 1997년과의 비교를 위해 2000년, 2003년 자료 중 15～49세 기혼부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3) 본 조사자료.

주79) 이러한 남녀 결혼경력별 결합형태의 변화양상은 통계청의 연도별 자료에서 보다 뚜렷하게 알 수 있음.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1990년에 89.3%에서 2000년 82.0%로, 2003년 77.7%로 감소하였으며, 남자 재혼·여자 초혼은 같은 연도에 3.6%에서 3.5%로 감소하였으나 2003년에는 3.9%로 약간 상승하였으며, 남자 초혼·여자 재혼 비율은 2.3%에서 4.9%, 5.8%로, 그리고 남녀 모두 재혼인 비율은 4.7%에서 9.6%, 12.6%로 증가하여 결합형태ㅣ 변화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2004).

2. 남녀 특성별 결합형태

가. 초혼연령별 결합형태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점으로 최근 이러한 성인기로의 이행 시기가 남녀 모두 점차 늦추어지고 있다. 이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교육 및 취업기회의 확대, 그리고 교육,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서 부모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 결정에 있어서도 결혼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되는 자율혼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초혼연령의 상승은 출산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가족주기 단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부인과 남편의 초혼연령별 결합형태를 보면, 아직도 남자가 연상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점차 남녀 동갑이거나 여자가 연상인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녀의 초혼연령별 결합형태를 살펴보면, 19세 이하 여성의 경우 20~24세 이하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44.2%, 25~29세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41.8%로 대부분(86.0%)이 20대의 남성과 결혼하였다. 20~24세에 결혼한 여성은 25~29세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6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같은 연령층인 20~24세 연령층과 결혼한 비율(24.1%)이 높았다. 이에 비해 25~29세에 결혼한 여성은 같은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65.3%이었으며, 30~34세에 결혼한 여성은 같은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56.6%, 그리고 35세 이상에 결혼한 여성은 같은 35세 이상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74.6%에 달했다(표 9-5 참조). 이는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의 선택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비슷한 연령대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결혼연령상의 동질혼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인의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연하의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최근의 초혼연령별 결합형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

러한 추세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초혼부부의 연령차이별 결합형태를 보면 남자가 연상인 경우는 1993년 82.1%에서 2003년 73.6%로 10년간에 8.5%포인트나 감소하였고, 남녀동갑은 같은 연도에 9.4%에서 14.7%로 5.3%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여자가 연상인 경우는 8.5%에서 11.7%로 3.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4).

〈표 9-5〉 15세 이상 기혼부인과 남편의 초혼연령별 분포

(단위: %, 명)

부인	남편					계(수)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19세 이하	9.4	44.2	41.8	4.2	0.4	100.0(1,144)
20~24세	0.7	24.1	65.9	8.4	0.9	100.0(5,863)
25~29세	0.1	4.1	65.3	28.2	2.3	100.0(3,610)
30~34세	-	2.0	18.3	56.6	23.1	100.0(394)
35세 이상	1.6	6.3	7.9	9.5	74.6	100.0(63)
전체	1.4	18.7	61.2	16.2	2.5	100.0(11,074)

남편과 부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편 27.02세, 부인 23.58세로 남녀간에 3.44세의 차이를 보였다(표 9-6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읍·면부지역 거주자 보다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높았으나, 남녀간의 초혼연령 차이는 읍·면부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동부 3.33세, 읍·면부 3.88세).

남편의 초혼연령을 보면, 동부지역 거주자는 27.14세,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26.46세로 0.68세의 차이를 보였으나, 부인의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자는 23.81세,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22.58세로 부인의 초혼연령의 지역간 차이는 1.23세로 남성보다 여성의 초혼연령이 지역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초혼연령은 남편은 39세 이하까지 높아지다가 40세 이후부터 점차 낮아지고, 부인은 34세 이하까지는 증가추세이나 35세 이상부터 차츰 감소하여 연령이 많을수록 초혼연령은 낮아졌다. 남편과 부인간의 초혼연령의 차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 초혼연령간의 차이도 많아져 2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0.08세로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60세 이상의 경우 5.54세의 차이를 보였다.

〈표 9-6〉 남편 및 부인의 특성별 평균 초혼연령[1)]

(단위: 세)

특성	남편	부인	차이(남편－부인)
전체	27.02	23.58	3.44
지역			
동부	27.14	23.81	3.33
읍·면부	26.46	22.58	3.88
연령			
15～24세	20.81	20.73	0.08
25～29세	25.27	23.85	1.42
30～34세	27.22	24.73	2.49
35～39세	27.46	24.42	3.04
40～44세	27.43	23.61	3.82
45～49세	26.65	23.00	3.65
50～54세	26.58	22.47	4.11
55～59세	26.78	22.25	4.53
60세 이상	27.36	21.82	5.54
교육수준			
초교 이하	26.04	21.30	4.74
중학교	26.05	22.39	3.66
고등학교	26.88	23.89	2.99
대학 이상	27.87	25.46	2.41
초혼년도			
1969년 이전	25.11	20.26	4.85
1970～79년	26.02	22.00	4.02
1980～89년	26.61	23.46	3.15
1990～99년	28.08	25.03	3.05
2000년 이후	29.48	26.63	2.85

주: 1) 남편과 부인 모두 초혼인 경우만 대상으로 함.

교육수준별로는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연령은 높아졌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고학력일수록 감소하였다. 즉,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남편의 초혼연령은 26.04세, 동일한 교육수준의 부인 초혼연령은 21.30세이었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초혼연령도 점차 높아져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남편의 초혼연령은 27.87세, 부인은 25.46세이었으며, 남녀간 차이는 초등

학교 이하 학력의 경우 4.74세에서 대학 이상 학력의 경우 2.41세로 감소하였다. 또한 초혼연령별로는 최근에 결혼한 남녀일수록 초혼연령은 높아지고, 남녀별 초혼연령간의 차이는 감소하여 1969년 이전에 결혼한 남편의 초혼연령은 25.11세, 부인의 초혼연령은 20.26세로 남녀간의 초혼연령의 차이는 4.85세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 결혼한 남편은 29.48세, 부인은 26.03세로 그 차이는 2.85세로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남녀 동갑이거나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나. 교육수준별 결합형태

교육수준은 결혼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배우자선택에 있어 경제적 안정성 및 장래성 등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일정한 비율을 보이는 조건이다. 본 조사대상 부인의 남편과의 교육수준별 결합형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경우 같은 학력을 가진 남성과의 결합률이 가장 높아 60.7%를 차지하였으며, 중학교 학력의 부인은 약간의 차이를 보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성과의 결합률(47.4%)이 같은 학력의 남성과의 결합률(40.4%)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동일한 학력간의 결합률이 높게 나타나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이 동일한 학력의 남성과 결합한 비율은 63.2%이었으며, 대학 이상 부인의 동일학력 남성과의 결합률은 더욱 높아 89.8%에 이른다(표 9-7 참조). 반대로 남성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의 결합비율은 낮은 편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의 상향혼을 선택하는 경향임을 보여준다.

〈표 9-7〉 15세 이상 기혼부인 및 남편의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명)

부인	남편				계(수)
	초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초등학교 이하	60.7	23.8	14.2	1.3	100.0(1,360)
중학교	5.8	40.4	47.4	6.4	100.0(1,526)
고등학교	0.9	3.8	63.2	32.0	100.0(4,408)
대학 이상	0.2	0.7	9.3	89.8	100.0(2,430)
전체	9.9	11.6	40.4	38.1	100.0(9,724)

3. 혼인지속기간

본 조사에서 부인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8.62년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18.03년인데 비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들은 21.27년으로 읍·면부지역 거주 부인의 혼인지속기간이 3.24년 더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부인의 연령 및 학력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저학력일수록, 그리고 초혼연도가 빠를수록 결혼지속기간은 길었으며, 또한 동부지역 거주부인들보다는 읍·면부지역의 거주부인들이 더욱 길었다. 이는 동부지역은 저연령층의 부인들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지역은 고연령층의 부인들의 거주비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은 낮고, 초혼년도는 빨라 혼인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표 9-8〉 기혼부인의 특성별 평균 혼인지속기간[1)]

(단위: 년)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전체	18.62	18.03	21.27
연령			
15～24세	2.89	2.82	3.25
25～29세	4.65	4.52	5.20
30～34세	8.25	8.11	9.03
35～39세	13.61	13.52	14.18
40～44세	19.27	19.08	20.30
45～49세	24.78	24.47	26.19
50～54세	30.41	30.09	31.35
55～59세	35.44	35.06	36.45
60세 이상	39.36	39.79	38.15
교육수준			
초교 이하	30.34	29.89	31.07
중학교	24.71	24.71	24.72
고등학교	15.68	16.01	13.81
대학 이상	12.12	12.26	10.46
초혼년도			
1969년 이전	37.04	36.95	37.22
1970～79년	28.83	28.73	29.14
1980～89년	19.14	19.10	19.43
1990～99년	9.55	9.59	9.31
2000년 이후	2.59	2.60	2.54

주: 1) 초혼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제 2 절 해혼실태

1. 해혼부인[주80)]의 일반특성

최근 중년기 남성의 사망률 증가와 함께 결혼관의 변화,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 등으로 인한 이혼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족

주80) 본 연구에서의 해혼부인이란 기혼부인 중 배우자와의 사별·이혼·별거 등으로 결혼관계가 해소된 부인들을 일컬으며, 여기서의 별거는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만을 의미함.

해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사별한 부인이 전체 응답대상 부인 중 4.1%, 이혼·별거 부인은 7.2%로 전체의 11.3%가 해혼부인 이었다(표 9-1 참조).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전체 해혼부인의 79.5%로 동부지역(78.8%)보다 읍·면부지역(83.3%)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대 이하의 부인들은 20.4%로 읍·면부지역(16.8%)보다는 동부지역(21.2%)에 더 많았다(표 9-9 참조).

〈표 9-9〉 사별·이혼·별거부인의 일반특성

(단위: %, 명)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연령			
29세 이하	1.9	1.6	3.3
30～39세	18.5	19.6	13.5
40～49세	44.2	45.3	39.1
50～59세	35.3	33.5	44.2
계	100.0	100.0	100.0
(수)	(1,246)	(1,031)	(21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4.5	29.3	60.8
중학교	21.1	21.3	20.3
고등학교	37.8	41.8	16.9
대학 이상	6.6	7.5	2.0
계	100.0	100.0	100.0
(수)	(908)	(760)	(148)
취업여부			
취업	74.3	72.6	83.0
비취업	25.7	27.4	17.0
계	100.0	100.0	100.0
(수)	(907)	(760)	(147)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학력층에서 해혼비율이 가장 높았으며(37.8%), 특히 동부지역이 높은 비율이었고, 읍·면부지역은 초등학교 이하의 부인들의 해혼비율이 가장 높았다(60.8%).

해혼부인 중 취업부인은 74.3%로서 읍·면부지역 해혼부인들의 취업률이

83.0%로 동부지역 해혼부인들의 취업률(72.6%) 보다 높았다. 이와 같이 해혼부인들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생계책임자이던 배우자와 사별·이혼·별거함에 따라 가구원의 생계를 본인이 직접 책임지게 됨으로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혼사유별 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별부인의 경우 평균 연령은 50.29세로 이혼·별거부인들의 평균 연령인 43.41세보다 고연령층이었고, 교육수준은 사별부인은 고등학교 이상 비율이 29.7%인데 비해 이혼·별거부인들은 56.7%이었다. 이들의 취업률은 각각 70.8%와 77.1%로 사별부인보다는 이혼·별거부인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이혼·별거부인이 사별부인보다 저연령층이며, 학력수준이 높은 편으로 취업에 있어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표 9-10〉 사별 및 이혼·별거부인의 해혼사유별 특성

(단위: 세, %)

특성	사별	이혼·별거	전체
평균 연령	50.29	43.41	45.97
고등학교 이상 학력	29.7	56.7	43.9
취업률	70.8	77.1	74.3

2. 해혼시기

해혼상태별 해혼당시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사별부인은 사별당시 40대였던 경우가 3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로서 35.9%, 그리고 50대가 17.8%이었다. 그러나 이혼·별거 부인의 경우는 30대가 51.2%, 40대가 30.1%로 30~40대에서 이혼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해혼당시 평균연령은 사별부인은 40.81세, 이혼·별거 부인은 36.38세이었다.

남편의 경우도 사별은 40~50대(67.1%)에서, 그리고 이혼·별거는 30~40대(82.7%)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해혼당시 남편의 평균연령은 사별은 45.40세, 이혼·별거는 40.22세이었다(표 9-11 참조). 이를 2000년 조사결과와 비

교할 경우 이혼·별거시 평균 연령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2000년 40.49세, 2003년 40.22세) 사별시 남편의 연령은 낮아져 사별로 인한 해혼상태는 점차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2000년 49.20세, 2003년 45.40세).[주81)]

전체적으로 사별의 경우 부인은 40대 초반에서, 남편은 40대 후반에서, 그리고 이혼·별거는 부인은 30대 중반에서, 그리고 남편은 40대 초반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1〉 해혼상태별 해혼당시 부인 및 남편의 연령분포

(단위: %, 세)

해혼당시 연령	사별	이혼·별거	전체
부인			
15～29세	9.5	15.8	13.5
30～39세	35.9	51.2	45.5
40～49세	36.8	30.1	32.6
50～59세	17.8	2.9	8.4
계	100.0	100.0	100.0
(수)	(454)	(770)	(1,224)
평균연령(세)	40.81	36.38	38.02
남편			
15～29세	3.6	6.1	5.2
30～39세	23.1	41.0	34.5
40～49세	39.5	41.7	40.9
50～59세	27.6	10.8	16.9
60세 이상	6.3	0.4	2.5
계	100.0	100.0	100.0
(수)	(446)	(770)	(1,216)
평균연령(세)	45.40	40.22	42.13

주81) 부인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2000년 사별시 부인의 평균 연령은 44.27세에서 2003년 40.81세로 3.46세 낮아졌고, 이혼·별거 당시 부인 평균연령은 2000년 36.15세에서 2003년 36.38세로 0.23세 만이 증가하였음.

3. 해혼이유

이혼·별거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한 해혼이유는 성격차이 30.3%, 경제문제 23.6%, 배우자의 외도 20.5%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성격차이와 기타에 의한 해혼은 읍·면부지역에서의 비율이 높았고, 그 외 이유는 모두 동부지역에서 비율이 높았다.

이혼·별거 당시 부인의 연령별 해혼이유를 보면,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는 성격차이가 주요 요인이었으며, 그 다음은 경제문제, 배우자의 외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대 이상은 경제문제가 해혼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어 다른 연령층과의 차이를 보였다.

부인의 교육수준별 이혼·별거의 이유를 보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경우(50.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성격차이(40.7%), 경제문제(37.0%)등의 순이었으나,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들은 성격차이(32.2%), 경제문제(26.1%)등의 순이었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들은 성격차이와 경제문제가 각각 23.5%로 나타났다.

부부의 결혼기간에 따른 이혼·별거의 이유를 살펴보면,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부인은 성격차이에 의한 해혼비율(32.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외도(19.5%)로 인한 해혼비율이 높았다.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부인은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그리고 외도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결혼기간에 따른 해혼이유에 차이를 보였다(표 9-12 참조). 해혼당시 18세 미만의 자녀유무에 따른 해혼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있는 경우보다 성격차이, 경제문제 비율이 높은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외도에 의한 해혼비율이 높았다.

이혼·별거 이유는 부부의 결혼연도별로도 차이를 보여 196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별거가 36.7%로 다른 결혼연도에 비해 높았으며, 1970년대 이후에 결혼한 부인들은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외도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9-13 참조).

〈표 9-12〉 이혼·별거 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이유

(단위: %, 명)

특성	외도	학대·폭력	성격 차이	경제 문제	가족부양 의무 불이행	가족간 불화	기타[1]	계(수)
전체	20.5	6.1	30.3	23.6	8.4	5.6	5.6	100.0(772)
지역								
동부	20.5	6.1	29.7	23.7	8.8	5.7	5.4	100.0(683)
읍·면부	20.2	5.6	34.8	22.5	5.6	4.5	6.7	100.0(89)
이혼·별거당시 연령								
29세 이하	16.1	8.5	34.7	20.3	5.1	8.5	6.8	100.0(118)
30～39세	23.1	5.4	26.5	24.2	10.5	5.9	4.4	100.0(389)
40～49세	18.6	7.1	34.1	22.6	6.6	3.5	7.5	100.0(226)
50세 이상	13.6	-	18.2	50.0	9.1	9.1	-	100.0(2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4.0	15.0	18.0	17.0	16.0	5.0	5.0	100.0(100)
중학교	26.4	9.1	22.7	20.0	9.1	5.5	7.3	100.0(110)
고등학교	17.8	7.0	32.2	26.1	7.8	6.1	3.0	100.0(230)
대학 이상	17.7	8.8	23.5	23.5	8.8	8.8	8.8	100.0(34)
결혼기간								
10년 미만	19.5	5.3	32.1	18.3	9.3	8.5	6.9	100.0(246)
10～19년	21.4	6.6	29.7	24.3	8.6	4.6	4.9	100.0(350)
20년 이상	18.2	5.8	29.9	29.2	8.8	3.6	4.4	100.0(137)
이혼·별거시 18세 미만 자녀유무								
없었음	12.0	5.3	33.1	27.8	6.8	4.5	10.5	100.0(133)
있었음	22.2	6.2	29.5	22.6	8.9	5.9	4.7	100.0(641)

주: 1) 건강상 이유, 가출 등이 포함됨.

〈표 9-13〉 이혼·별거 부인의 결혼연도별 이혼·별거 이유

(단위: %, 명)

결혼년도	외도	학대·폭력	성격 차이	경제 문제	가족부양 의무 불이행	가족간 불화	기타[1]	계(수)
1969년 이전	36.7	3.3	26.7	16.7	10.0	3.3	3.3	100.0(30)
1970～79년	21.4	8.2	32.7	21.7	5.3	5.3	5.3	100.0(281)
1980～89년	20.9	6.5	27.4	24.0	10.0	5.3	5.9	100.0(321)
1990～99년	14.9	1.5	32.8	27.6	11.2	6.0	6.0	100.0(134)
2000년 이후	-		33.3	33.3	-	16.7	16.7	100.0(6)
전체	20.5	6.1	30.3	23.6	8.4	5.4	5.7	100.0(772)

주: 1) 건강상의 이유, 가출 등이 포함됨.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외도로 인한 이혼·별거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경제문제, 가족간 불화로 인한 이혼·별거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로 이는 최근의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가장의 실직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이혼·별거 등 해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4. 해혼부인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주82)]

이들 해혼부인들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24.36년으로 이 중 사별부인은 28.94년, 이혼·별거부인은 21.69년으로 사별부인의 결혼지속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혼·별거부인보다는 사별부인이 고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혼연도별로는 사별이나 이혼·별거부인 모두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혼인지속기간이 짧으며, 특히 이혼·별거부인의 혼인지속기간이 짧았다. 이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젊은 층이며, 저연령층의 경우 사별보다는 이혼·별거에 의한 해혼율이 높기 때문이다.[주83)]

〈표 9-14〉 해혼부인의 결혼년도별 평균 결혼지속기간

(단위: 년)

결혼년도	사별	이혼·별거	전체
1969년 이전	37.31	35.96	37.06
1970～79년	29.61	28.20	28.79
1980～89년	20.23	19.68	19.81
1990～99년	11.51	10.39	10.56
2000년 이후	-	3.56	3.50
전체	28.94	21.69	24.36

주82) 해혼부인의 결혼지속기간은 결혼시부터 배우자의 사별·이혼·별거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주83) 해혼부인의 연령별 이혼·별거율을 보면, 29세 이하의 부인들은 이혼·별거에 의한 해혼율이 91.7%이었으며, 30～39세 부인은 87.0%, 40～49세 부인은 73.1%, 50세 이상 부인은 35.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혼·별거율은 낮아지는 추세이었음.

5. 이혼·별거의 제의자

이혼·별거 제의자는 남편 30.6%, 부인 66.7%, 그 외 시부모나 친정부모 등에 의한 비율이 2.6%로 남편보다는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율이 높았다. 해혼당시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의 저연령층과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율이 높았고, 남편이 제의한 경우는 40대까지는 상승하는 추세이었으나 50대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9-15〉 이혼·별거 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제의자

(단위: %, 명)

특성	남편	부인	기타[1]	계(수)
전체	30.6	66.7	2.6	100.0(757)
이혼·별거당시 연령				
29세 이하	25.4	73.7	0.8	100.0(118)
30~39세	29.3	66.6	4.1	100.0(392)
40~49세	36.0	62.7	1.3	100.0(225)
50세 이상	27.3	72.7	-	100.0(2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1.0	67.0	2.0	100.0(100)
중학교	31.8	64.5	3.6	100.0(110)
고등학교	28.8	66.8	4.4	100.0(229)
대학 이상	18.9	81.1	-	100.0(37)
결혼기간				
10년 미만	29.0	67.8	3.3	100.0(245)
10~19년	31.4	66.0	2.6	100.0(350)
20년 이상	33.8	64.0	2.2	100.0(136)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없음	34.3	63.5	2.2	100.0(137)
1명	22.9	74.3	2.8	100.0(218)
2명 이상	33.8	63.4	2.8	100.0(423)
부부간 연령차이				
동갑	28.1	65.6	6.3	100.0(64)
1~2세	36.2	61.6	2.3	100.0(177)
3~4세	31.8	68.2	-	100.0(195)
5~9세	28.1	68.0	3.9	100.0(256)
10세 이상	26.0	70.0	4.0	100.0(50)

주: 1) 시부모·친정부모 및 기타 가족원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를 제외할 경우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인이 제의한 비율이 높아져 대학 이상 학력의 부인은 81.1%에 이른다. 결혼기간별로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부인이 제의한 비율이 높았으며, 남편이 제의한 경우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점차 비율이 높아졌다.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의율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간의 연령차이에 따른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율은 2세 이하 차이보다는 3세 이상 차이에서 높았고, 특히 부부간 연령이 10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의율(70.0%)이 가장 높았다(표 9-15 참조). 이에 비해 남편이 제의한 경우는 부부간 연령차이가 적은 경우에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1~2세 차이 36.2%, 3~4세 차이 31.8%).

6. 이혼·별거부인의 자녀양육

가.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별거는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주84] 아동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력이 낮고 직업이 불안정하여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으며, 결혼생활에서

주84) 이혼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이유로 자녀의 한 쪽 부모와의 접촉 상실, 이혼 후 함께 사는 부모 자신의 부적응과 비양육적 태도, 이혼 가정에 원래부터 있던 가족갈등, 이혼 후 자녀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이혼 후 자녀가 경험하는 생활상의 변화(이사, 전학, 조부모와의 접촉상실 등) 등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이 중 중요한 것은 이혼 경험 그 자체나 이혼 후의 생활상의 변화보다는 가족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갈등이라고 하였음. Peterson & Zill(1986)은 양친가족을 갈등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어 이들 가족 자녀들과 이혼가족 자녀들을 비교한 결과, 심한 갈등 속에 있는 양친가족 자녀들이 이혼가족 자녀들보다 더 많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경험 그 자체보다 가족갈등이 자녀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음(Amato, 1993; 조정문 외, 2001 재인용).

발생하는 문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Coleman, 1997; 김승권 외, 2003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에 이혼·별거한 부인들의 경우 11.0%가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이었으며, 나머지 88.9%는 자녀를 둔 상태이었다(1명 38.1%, 2명 이상 50.8%). 30대에 이혼·별거한 부인은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 93.9%이었으며, 40대에 이혼한 부인은 65.0%이었다. 그러나 50세 이상에 이혼·별거한 부인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비율은 27.3%에 불과하였다. 이는 18세 미만의 평균 자녀수에서도 나타났는데, 이혼·별거당시 29세 이하인 부인의 경우 평균 1.45명이었으며, 30대는 1.78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이 외 40대는 1.11명, 그리고 50대는 0.27명으로 대부분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을 하였거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비동거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이혼·별거부인 중 비교적 젊은 부인들은 자녀양육에 따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미 자녀들이 결혼 등으로 모두 떠난 중년기 이후 이혼·별거부인들은 노후를 혼자 보내게 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혼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들 이혼·별거가족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9-16〉 이혼·별거 부인의 이혼·별거당시 연령별 18세 미만 자녀수

(단위: %, 명)

이혼·별거당시 연령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평균 자녀수
	없음	1명	2명 이상	계(수)	
29세 이하	11.0	38.1	50.8	100.0(118)	1.45
30～39세	6.1	25.4	68.5	100.0(394)	1.78
40～49세	35.1	28.6	36.4	100.0(231)	1.11
50세 이상	72.7	27.3	-	100.0(22)	0.27
전체	17.5	28.4	54.1	100.0(765)	1.48

나. 자녀와의 동거자 및 양육비 제공자

부모이혼 후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이나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친권행사자나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등의 문제는 민법 제837조에, 그리고 친권행사자의 지정 등의 문제는 민법 제 909조에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85)]

조사당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아와의 동거자는 52.8%가 자녀의 모, 그리고 39.1%는 자녀의 부로서 대부분이 부모 중 한 쪽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8.1%만이 조부모 등 기타 친척 등과 동거하고 있었다. 둘째아와의 동거자는 부와 동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46.6%이었으며, 그 다음은 모 45.4%, 조부모 5.5%, 그리고 기타 2.5%의 순이었다.

〈표 9-17〉 이혼·별거 부인의 18세 미만 자녀의 동거자

(단위: %, 명)

동거자	첫째아	둘째아
부	39.1	46.6
모	52.8	45.4
조부모	6.0	5.5
친척 및 기타	2.1	2.5
계(수)	100.0(466)	100.0(238)

동거자별 양육비 제공자를 보면 대부분 동거자가 아동의 양육비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의 경우 자녀의 부(父)와 동거할 경우 동거

주85) 이에 대하여 법무부의 8차 민법 중 개정 법률안(개정안 제837조 2항 및 제909조)에 따르면, 이혼 후의 양육 및 친권문제를 결정하는데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감독권한을 강화하고 있음(변화순외, 2003).

자인 부가 양육비를 제공하는 비율은 84.6%로 대부분이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모(母)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의 모가 양육비를 제공하는 비율은 72.4%이었으며 자녀의 부는 10.2%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이들 동거자들이 양육비를 제공하는 비율은 60.7%이었으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제공하는 비율은 각각 21.4%와 10.7%로 자녀와 동거하는 부 또는 모가 동거자인 경우보다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제공하는 비율이 낮았다.

둘째아의 경우 역시 부가 동거자이면서 양육비를 제공하는 비율은 89.2%, 모가 동거자이면서 양육비 제공자인 비율은 68.5%, 조부모가 동거자이면서 양육비 제공자인 비율은 61.5%로 대부분이 동거자가 양육비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8〉 이혼·별거 부인의 18세 미만 자녀의 동거자별 양육비 제공자

(단위: %, 명)

자녀의 동거자	양육비 제공자				계(수)
	부	모	조부모	친척 및 기타	
첫째아	41.4	39.9	5.4	13.3	100.0(466)
부	84.6	2.2	1.7	11.5	100.0(182)
모	10.2	72.4	2.0	15.4	100.0(246)
조부모	21.4	10.7	60.7	7.2	100.0(28)
친척 및 기타	80.0	10.0	-	10.0	100.0(10)
둘째아	49.2	31.5	5.0	14.3	100.0(238)
부	89.2	-	0.9	9.9	100.0(111)
모	12.0	68.5	2.8	16.7	100.0(108)
조부모	15.4	-	61.5	23.1	100.0(13)
친척 및 기타	50.0	16.7	-	33.3	100.0(6)

그러나 동거자가 친척 및 기타인 경우에는 이들 친척 및 기타가 양육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저조하였으며(첫째아 10.0%, 둘째아 33.3%), 아동의 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아동의 부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친척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의뢰하면서 자녀양육비를 부담하는 형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혼·별거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하였다. 즉, 자녀의 부가 동거자일 경우 모가 자녀양육비를 제공하는 비율은 첫째아일 경우 2.2%이었으며, 둘째아일 경우에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자녀의 모가 동거자일 경우 부가 자녀양육비를 제공하는 비율은 첫째아일 경우 10.2%, 둘째아일 경우 12.0%로 낮은 수준이었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할 때 모의 자녀양육비 부담은 부에 비해 과중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혼여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해 줄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제 3 절 가족주기

최근 우리나라 가족주기의 변화양상은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력 저하 등에 의해 가족형성기는 늦어지고 자녀출산기는 단축되는 추세이며,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킨 후 부부만이 남는 축소완료기는 점차 길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로 배우자 사망 이후 홀로 남은 생애를 보내는 해체기는 여자의 경우 더욱 길어지고 있어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문제와 더불어 여성노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복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0).

이러한 점에서 본 분석에서는 15~59세 기혼부인의 결혼년도를 중심으로 가족생애사건 발생시 부인연령과 그에 따른 각 주기단계별주86) 기간의 변화양상

주86) 본 연구의 가족주기 단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2세대 핵가족의 기본 가족주기 모형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한 것임. 가족주기의 각 단계별 시작 및 종료시점을 결정짓는 가족생애사건을 살펴보면, 제1단계인 형성기는 결혼부터 첫째아 출산시점까지, 제2단계인 확대기는 첫째아 출산부터 막내아 출산시점까지이며, 제3단계인 확대완료기는 막내아 출산시부터 자녀의 결혼시작시까지, 제4단계인 축소기는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자녀의 결혼이 완료된 시점, 제5단계인 축소완료기는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시점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로, 그리고 마지막 6단계인 해체기는 배우자사망으로부터 본인 사망시까지의 기간으로 함.

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혼 및 가족주기의 변화양상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1. 가족주기 분석대상의 특성

가족주기에 있어서 결혼과 자녀의 출산이 각 가족주기 단계구분의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본 분석대상은 자녀 출산경험이 있는 초혼부인 10,0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부인 중 94.5%가 자녀출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혼연도별로 보면, 1970년대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들이었으며(99.4%), 198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98.7%, 1990년대는 96.2%, 그리고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 중에서는 47.9%만이 출산경험이 있었다. 이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저연령층으로 아직 출산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여겨진다.

〈표 9-19〉 15세 이상 초혼부인의 초혼년도별 출생아 유무

(단위: %)

출생아 유무	초혼년도				전체
	1979년 이전	1980~89년	1990~99년	2000년 이후	
없음	0.6	1.3	3.8	52.1	5.5
있음	99.4	98.7	96.2	47.9	9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207)	(3,318)	(3,303)	(755)	(10,603)

이들의 초혼연도별 평균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51.53세로 고령층에 속하였으며 1980~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41.66세, 1990~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33.61세, 그리고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28.51세이었다. 이들의 평균 출생아 수는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은 2.80명, 1980~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2.07명, 1990~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1.88명, 그리고 200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들은 1.12명으로 최근 결혼한 부인일수록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평균출생아 수의 감소양상은 자녀관의 변화 등과 함께 소자녀 규범의 정착에 기인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평균 현존자녀수는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은 평균 2.71명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들은 1.12명이었다. 따라서 평균 출산자녀수와 평균 현존자녀수와의 차이는 그 간의 사망률 개선에 의한 영향으로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희망자녀수는 출산이 완료되지 않은 부인들이 포함된 198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출산완료율이 낮았으며 추가희망자녀수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많았다.

또한 결혼한 자녀를 둔 부인은 연령이 높고 결혼년도가 빠를수록 비율이 높아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49.2%, 1980~89년에 결혼한 부인은 0.3%에 불과하였다. 평균 결혼자녀수 역시 결혼연도가 빠른 부인일수록 많아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은 1.77명, 1980~89년 결혼한 부인은 1.00명, 그리고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아직 결혼한 자녀가 없었다.

〈표 9-20〉 15세 이상 초혼 출산경험 부인의 초혼연도별 특성

특성	초혼년도			
	1979년 이전	1980~89년	1990~99년	2000년 이후
평균 연령(세)	51.53	41.66	33.61	28.51
평균 출생아수(명)	2.80	2.07	1.88	1.12
평균 현존자녀수(명)	2.71	2.04	1.87	1.12
평균 추가희망자녀수(명)	0.00	0.01	0.12	0.61
출산완료율(%)	100.0	98.9	87.1[1)]	29.4[1)]
결혼자녀 둔 비율(%)	49.2	0.3	-	-
평균 결혼자녀수(명)	1.77	1.00	-	-
(수)	(3,207)	(3,274)	(3,176)	(362)

주: 1) 추가자녀 희망 여부에서 생각중인 경우를 완료에 포함함

2. 가족주기의 변화

가. 가족주기 단계별 시작 및 종료시점의 변화

가족주기의 첫 단계인 형성기의 시작시점인 초혼연령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21.56세에 결혼하였으나, 1980~89년 결혼한 부인은 23.46세에, 1990~99년 결혼한 부인은 24.95세, 그리고 200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은 26.26세에 결혼하여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가족형성기의 시작시점이 늦어짐을 알 수 있다.

확대기의 시작시점인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도 초혼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높아져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22.95세에 첫째아를 출산하였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27.35세에 첫째아를 출산하였다. 확대기의 종료시점이면서 확대완료기의 시작시점인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26.02세, 1980~89년 결혼한 부인은 28.06세로 증가하였다. 1990~99년 년에 결혼한 부인은 29.15세,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30.21세에 출산을 완료할 것으로 추정된다.

확대완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시작시 부인연령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의 경우 51.35세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55.75세로 추정된다.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자녀출산완료 후 자녀결혼 시작시까지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축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완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완료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54.42세,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58.61세로 추정된다.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 자녀수 감소가 보다 뚜렷하여 출산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해체기의 시작시점인 남편사망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69.61세로,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76.82세로 추정되었으며, 해체기의 종

료시점인 부인사망시 연령은 같은 기간에 결혼한 부인들간에 각각 72.76세에서 80.92세로 추정되었다(표 9-21 참조).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남녀간 평균수명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표 9-21〉 가족주기 각 단계의 시작 및 종결당시 부인[1)]의 평균연령

(단위: 세)

결혼년도	초혼 연령	첫째아 출산	막내아 출산	자녀결혼 시작	자녀결혼 완료	남편 사망	본인 사망
1979년 이전	21.56	22.95	26.02	51.35	54.42	69.61	72.76
1980~89년	23.46	24.79	28.06	53.19	56.46	70.75	75.56
1990~99년	24.95	26.29	29.15	54.69	57.55	74.45	78.73
2000년 이후	26.26	27.35	30.21	55.75	58.61	76.82	80.92

주: 1) 15세 이상 기혼부인 중 초혼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나. 가족주기 단계별 기간의 변화

1) 가족형성기

가족형성기는 젊은 부부만의 생활기간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다. 즉,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1.39년이 소요되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1.09년이 소요되어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첫 자녀의 출산시기는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가족확대기

확대기는 한 가족의 전체 출산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3.07년이 소요되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2.86년이 소요되어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자녀출산기는 짧아지고 있다. 이는 출산력 저하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와 출산간격의 단축으로 출산완료시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표 9-22〉 가족주기 각 단계별 기간[1)]

(단위: 년)

결혼년도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해체기	전체
1979년 이전	1.39	3.07	25.33	3.07	15.19	3.15	51.20
1980~89년	1.33	3.27	25.13	3.27	14.29	4.81	52.10
1990~99년	1.34	2.86	25.54	2.86	16.90	4.28	53.78
2000~03년	1.09	2.86	25.54	2.86	18.21	4.10	54.66

주: 1) 15세 이상 기혼부인 중 초혼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가족확대완료기

자녀출산 완료시기부터 자녀결혼 시작까지의 확대완료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25.33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25.54년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출생아 수의 감소 및 출산간격 단축으로 막내아 출산이 빨라지는 반면, 자녀의 초혼연령은 높아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가족축소기

축소기는 자녀의 첫 결혼시점부터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시점까지의 기간이다. 축소기는 확대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차 짧아져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3.07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2.86년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녀수 감소로 모든 자녀가 결혼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도 그만큼 짧아진 것이라 여겨진다.

5) 가족축소완료기

축소완료기는 자녀를 모두 떠나보낸 후 노인부부만이 남는 빈 둥지시기로, 최근에 결혼한 젊은 부인일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즉,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15.19년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18.21년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향후 우리 사회에서 노인부

부만의 가구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 가족해체기

가족해체기는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3.15년이었으나 1980~89년 결혼한 부인들은 4.81년, 그리고 1990~99년 결혼한 부인들은 동 기간이 4.28년으로 길어지다가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4.10년으로 짧아지고 있다. 해체기는 결혼년도별로 볼 때 일관된 증가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나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길어지는 추세이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남녀간 평균수명의 차이주87)에 의한 것이다. 즉,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후 홀로 남은 생애를 보낼 확률은 여자가 더 높고, 또 평균수명의 연장은 홀로 남은 여자의 생활기간 연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여성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앞으로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인의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주기의 전체기간은 점점 길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51.20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54.66년으로 추정되어 약 30여 년 동안 3.46년 정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족주기 전체 기간의 연장은 사망수준의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그에 따른 가족주기 전체기간의 연장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의 시사점

최근으로 오면서 가족형성의 기본요건인 결혼에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주87) 남녀 평균수명의 변화추이를 보면, 1960년에 남자는 51.1세, 여자는 53.7세이었으나 1980년에는 남녀 각각 62.7세와 69.1세로, 2000년에는 71.0세와 78.6세로, 그리고 2002년에는 73.4세, 80.4세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성별 차이 또한 점차 커지고 있음(통계청, 2004).

즉, 교육기회의 증대, 취업률의 상승 등과 같은 혼전역할의 다양화로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결혼연령별 결합 형태는 아직까지 남자가 연상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점차 동갑이거나 여자가 연상인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혼경력별 남녀 결합형태도 최근으로 올수록 초혼남녀의 결합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초혼남자와 재혼여자의 결합비율과 재혼남녀의 결합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가치관의 변화는 특히 저연령층, 고학력층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는 추세로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한 결혼가치관 변화와 함께 이혼·별거율이 상승함으로써 가족해체를 유발하여 한부모가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이혼·별거부인 중 비교적 젊은 부인들은 자녀양육에 따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미 자녀가 결혼 등으로 모두 떠난 중년기 이후 이혼·별거부인들은 노후를 혼자 보내게 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혼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들 이혼·별거가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대상에게 이혼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상담을 통해 후회없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가족주기는 부부의 결혼에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가족생애 사건발생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한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자녀규모의 축소, 그리고 사망률 개선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각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이 뚜렷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가족주기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은 가족주기단계 구분에 있어 주요 출발점과 종료시점이 되고 있는 자녀수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가족주기 단계별 기간변화의 특징은 결혼부터 자녀출산 완료시점인 형성기 및 확대기는 단축되고 있으며,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하는 단계까지 이

르는 확대완료기는 자녀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점차 연장되고 있다. 또한 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결혼시작 시기부터 모든 자녀가 결혼하여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는 시기인 축소기는 점차 단축되는 경향이며, 부부만이 남게 되는 시기인 축소완료기는 젊은 층일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 혼자 남게 되는 해체기는 점차 길어지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부터 남편 사망시까지의 부부 결혼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부부만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주기의 후기단계인 축소완료기 및 해체기의 연장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함께 성별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해 노인부부가구 및 여성노인단독가구의 증가현상을 보여 이들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즉, 보건·의료 요구의 증가와 함께 대부분의 여성노인은 남편이나 자녀들의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배우자나 부양자도 없는 여성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가족주기 후기단계의 연장은 노년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해체기의 연장은 홀로 남는 여성노인들을 위한 노후 생활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후 소득보장정책과 노인 장기요양 대책 등 노인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0 장 기혼부인의 취업실태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꾸준히 증대되어 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국 가족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0). 이러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전반의 변화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구조는 아직도 결혼·출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전통적인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결혼 및 출산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부인의 결혼 전 및 현 취업실태와 취업과 자녀출산 및 양육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혼전 취업실태

1. 기혼부인의 결혼 전 및 현 취업률

조사대상부인 중 결혼 전에는 비취업 중이었으나 현재 취업중인 부인은 전체의 52.2%로 결혼 전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즉, 결혼전 취업경험이 있는 부인은 현재 51.9%가 취업을 하고 있고, 결혼전 취업경험이 없는 부인은 52.2%가 취업을 하고 있어 0.3%포인트의 차이만을 보였다.

기혼부인의 특성별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부인의 결혼전 취업률은 71.0%, 현 취업률은 52.0%로 그 차이는 19.0%포인트나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에서 보다 동부지역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동부지역 24.5%포인트, 읍·면부지역 5.9%포인트). 특히 동부지역의 경우는 혼전 취업률이 높은데 비해 읍·면부지역은 현취업률이 혼전취업률보다 높아 지역간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는 농촌지역 여성은 결혼 후에도 계속 농사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혼전·후 취업률에 변화가 적은 반면 서비스·판매직 종사율이 높은 도시지역 여성은 결혼 및 자녀양육을 위하여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취업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표 10-1〉 15세 이상 기혼부인의 결혼전·후 취업실태

(단위: %, 명)

결혼전 취업여부	현 취업여부		계(수)
	비취업	취업	
전체	48.0	52.0	100.0(10,826)
비취업	47.8	52.2	100.0(3,137)
취업	48.1	51.9	100.0(7,689)

연령별로는 혼전취업률은 24세 이하를 제외할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이었고, 현 취업률은 40대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률도 높아지다가 50대 이후부터는 다소 낮아졌다. 따라서 결혼과 자녀출산 및 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 혼전 취업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 취업률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 결혼 전과 후의 취업률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부인의 결혼 후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학력수준에 반비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김승권 외, 2000).

결혼상태별 결혼전 취업률에 있어서는 유배우부인의 취업률(72.5%)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혼·별거부인이었으며, 사별부인의 혼전 취업률(47.3%)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현 취업률은 유배우부인(50.0%)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사별부인(70.8%)과 이혼·별거부인(77.3%)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유배우 여성이 가장 젊은 층주88)으로 현재 자녀출산 또는 양육기에 있을 확률이

주88) 유배우부인의 평균 연령은 40.8세, 사별부인은 50.3세, 이혼·별거 부인은 43.4세로 유배우부인이 가장 낮은 연령층임.

높고, 해혼부인들의 경우는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주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짐작된다.

〈표 10-2〉 15세 이상 기혼부인의 특성별 결혼전 및 현 취업률

(단위: %)

특성	결혼 전 취업	현 취업
전체	71.0	52.0
지역		
동부	72.7	48.2
읍·면부	63.4	69.3
연령		
15～24세	71.1	30.5
25～29세	91.2	40.2
30～34세	90.4	41.6
35～39세	83.5	50.1
40～44세	71.4	60.1
45～49세	61.4	62.1
50세 이상	43.6	52.6
교육수준		
초교 이하	42.8	65.7
중학교	58.4	60.2
고등학교	78.9	47.8
대학 이상	83.9	45.4
현 결혼상태		
유배우	72.5	50.0
사별	47.3	70.8
이혼·별거[1]	62.1	77.3

주: 1) 미혼모 포함

2. 결혼 전 취업직종, 종사상 지위 및 직장유형

혼전 취업부인의 직종은 사무직(41.3%), 서비스·판매직(13.6%), 기계장치조작원(11.3%), 전문직(10.3%) 등의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도 사무직이 가장 높은 비

율이었고,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부인들의 사무직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서비스·판매직의 경우는 20대 초반에서 비율이 가장 높아 25.3%이었으며, 농·임·어업과 기능직, 그리고 단순노무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들 혼전 취업부인의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 상용직(72.3%)이었으며, 임시고·일용고(19.9%), 자영업자(4.2%), 무급가족종사자(2.0%), 고용주(1.6%)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고용주는 24세 이하에서, 상용고는 30~34세, 임시고·일용고는 20대 초반에서, 그리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고용주나 자영업자는 비교적 낮은 비율이었으며, 결혼 후의 종사상 지위와는 달리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직장유형은 소기업, 개인사업체, 중소기업 순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표 10-3〉 15~49세 혼전 취업부인의 연령별 직업, 종사상 지위 및 직장유형

(단위: %, 명)

구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체
직업							
고위공무원·관리직	-	0.1	-	0.2	0.1	0.1	0.1
전문직	8.8	12.9	11.5	11.2	8.8	7.3	10.3
준전문직	7.7	11.8	14.1	11.0	5.7	4.6	9.6
사무직	36.3	46.1	46.5	42.9	38.6	31.1	41.3
서비스·판매직	25.3	18.9	13.2	13.9	11.9	10.9	13.6
농·임·어업직	-	0.1	0.1	0.3	1.8	6.1	1.5
기능직	-	1.6	2.7	3.8	4.1	7.3	3.8
기계장치조작원	15.4	5.6	7.5	9.2	18.4	14.1	11.3
단순노무직	6.6	3.0	4.5	7.4	10.6	18.5	8.6
종사상 지위							
고용주	3.3	0.5	1.5	2.1	1.4	1.5	1.6
상용고	60.4	75.2	77.8	75.7	69.1	61.7	72.3
임시고·일용고	36.3	22.3	16.1	17.0	21.9	24.5	19.9
자영업자	-	1.6	4.3	4.3	4.8	5.7	4.2
무급가족종사자	-	0.4	0.3	0.9	2.8	6.7	2.0

〈표 10-3〉 계속

구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체
직장유형							
공무원	-	4.2	6.6	6.6	6.8	8.3	6.5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1.1	4.9	3.6	3.1	3.4	4.9	3.7
대기업	29.3	20.9	17.8	21.6	22.1	21.2	20.8
중소기업	15.2	20.7	23.1	21.4	20.9	19.5	21.2
소기업	25.0	26.5	26.0	22.4	23.1	19.5	23.5
개인사업체	26.1	22.1	22.1	24.3	22.3	24.7	23.2
기타	3.3	0.7	0.9	0.6	1.5	1.8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1)	(773)	(1,580)	(1,737)	(1,525)	(1,006)	(6,712)

3. 부인의 혼전 취업 계속여부

혼전 취업 중이던 부인 중 현재까지 취업을 계속중인 부인은 7.4%에 불과하며, 나머지 92.6%는 중단한 상태이었다. 이를 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경우 혼전 취업을 현재까지 지속중인 비율이 읍·면부 지역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이하는 혼전 취업을 계속하는 비율이 30대 후반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대학 이상의 경우 19.0%가 혼전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혼전 취업직종별로는 전문직의 경우 혼전 취업을 현재까지 지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27.3%이었으며, 그 다음은 고위공무원·관리직 14.3%, 준전문직 9.2%, 그리고 사무직 7.5% 등의 순이었다.

〈표 10-4〉 부인의 특성별 혼전 취업 계속여부

(단위: %, 명)

특성	혼전 취업 현재까지 계속	혼전 취업 중단	계(수)
전체	7.4	92.6	100.0(7,684)
지역			
동부	7.9	92.1	100.0(6,444)
읍·면부	4.9	95.1	100.0(1,240)
연령			
15~24세	12.1	87.9	100.0(91)
25~29세	18.7	81.3	100.0(772)
30~34세	10.5	89.5	100.0(1,579)
35~39세	6.4	93.6	100.0(1,736)
40~44세	4.4	95.6	100.0(1,527)
45~49세	4.4	95.6	100.0(1,008)
50세 이상	2.7	97.3	100.0(971)
교육수준			
초교 이하	1.7	98.3	100.0(721)
중학교	1.1	98.9	100.0(1,019)
고등학교	3.7	96.3	100.0(3,798)
대학 이상	19.0	81.0	100.0(2,123)
혼전 직종			
고위공무원·관리직	14.3	85.7	100.0(7)
전문직	27.3	72.7	100.0(751)
준전문직	9.2	90.8	100.0(683)
사무직	7.5	92.5	100.0(2,948)
서비스·판매직	4.9	95.1	100.0(1,041)
농·임·어업직	2.5	97.5	100.0(278)
기능직	1.5	98.5	100.0(333)
기계장치조작원	1.4	98.6	100.0(880)
단순노무직	0.5	99.5	100.0(748)

4. 부인의 혼전 취업중단 시기

혼전 취업경험 부인의 취업중단 시기는 다음 <표 10-5>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혼전 6개월~혼후 6개월 이내에 중단하는 비율이 5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혼전 6개월 이전 24.8%, 혼인 출산과 상관없이 14.1%, 첫째아 출산 전·

후 9.0%, 둘째~최종아 출산 전·후 1.9%로 자녀출산 전·후에 혼전취업을 중단한 경우가 10.9%나 되었다.

지역별로는 혼전 6개월~혼후 6개월 만이 읍·면부지역이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동부지역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는 혼전 6개월~혼후 6개월에 중단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혼인·출산과 상관없이 중단한 경우, 혼전 6개월 이전 중단 순으로 타 연령층과 차이를 보였다. 25~34세 이하는 혼전 6개월~혼후 6개월에 중단, 혼인 전 6개월 이내 중단, 그리고 첫째 자녀 출산전·후, 혼인·출산과 상관없이의 순이었으며, 35세 이상은 혼전 6개월~혼후 6개월에 중단, 혼전 6개월 이내 중단, 그리고 혼인·출산과 상관없이 중단한 경우로 연령별 혼전취업 중단시기에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도 혼전 6개월~혼후 6개월에 중단, 혼전 6개월 이내 중단, 그리고 혼인·출산과 상관없이 중단한 경우의 순이었으며, 첫째 자녀 출산전·후의 비율은 대학 이상의 학력층에서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혼전 직종별로는 고위공무원·관리직은 첫째 자녀 출산 전·후에 혼전 취업을 중단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문직은 혼전 6개월~혼후 6개월에 중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첫째 자녀 출산 전·후 이었다. 그 외 직종에서는 혼전 6개월~혼후 6개월에 중단, 혼전 6개월 이전 중단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전취업을 중단하는 시기는 결혼을 전·후한 시기에 중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자녀출산기 연령층에서는 첫째 자녀 출산 전·후에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출산기가 지난 부인들의 경우에는 혼인이나 출산과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혼전 취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의 지속여부는 아직도 결혼이나 자녀출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0-5〉 혼전 취업 중단 부인의 중단시기

(단위: %, 명)

특성	혼전 6개월 이전	혼전 6개월~혼후 6개월	첫째자녀 출산전·후	둘째~최종 자녀출산 전·후	혼인·출산과 상관없이	계(수)
전체	24.8	50.2	9.0	1.9	14.1	100.0(7,113)
지역						
동부	25.6	48.4	9.6	2.1	14.3	100.0(5,933)
읍·면부	20.7	59.1	5.8	1.2	13.2	100.0(1,180)
연령						
15~24세	19.8	49.4	6.2	-	24.7	100.0(81)
25~29세	16.7	54.6	16.1	0.8	11.8	100.0(628)
30~34세	24.8	47.5	15.0	2.1	10.6	100.0(1,410)
35~39세	26.3	47.3	10.1	2.5	13.8	100.0(1,623)
40~44세	24.7	50.7	6.1	2.7	15.8	100.0(1,458)
45~49세	25.5	52.0	4.3	0.9	17.3	100.0(961)
50세 이상	27.6	53.6	2.7	1.3	14.8	100.0(938)
교육수준						
초교 이하	24.1	58.8	3.0	0.3	13.9	100.0(706)
중학교	28.3	52.8	3.4	0.6	14.9	100.0(1,006)
고등학교	26.7	50.8	8.4	1.4	12.7	100.0(3,658)
혼전 직종						
고위공무원· 관리직	-	33.3	50.0	-	16.7	100.0(6)
전문직	14.6	39.5	21.0	6.2	18.6	100.0(547)
준전문직	22.1	45.0	15.3	3.2	14.4	100.0(620)
사무직	26.5	49.7	9.0	2.0	12.8	100.0(2,726)
서비스·판매직	24.8	49.6	7.8	1.7	16.1	100.0(990)
농·임·어업직	21.9	73.3	0.7	-	4.1	100.0(270)
기능직	29.4	44.0	8.6	0.9	17.1	100.0(327)
기계장치조작원	23.4	55.8	5.6	0.6	14.6	100.0(868)
단순노무직	29.1	52.4	3.4	0.4	14.8	100.0(743)

5. 혼전 취업중단 부인의 혼전 취업 중단이유

혼전 취업부인 중 혼전 또는 출산 전·후 취업을 중단한 이유가 자발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인들이 자발적(97.9%)으로 취업을 중단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2.3%는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해 취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인 이유로는 구조조정, 결혼을 할 경우 퇴직, 회사 부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 등의 반대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취업중단 부인들의 경우에도 취업여성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제도 및 관습 등의 요인에 의해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자발적 취업중단에 속하는 부인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다.

부인의 특성별로는 읍·면부지역 보다는 동부지역이, 연령별로는 25~29세가 4.5%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30~34세(3.5%), 35~39세(2.4%), 그리고 50세 이상(2.3%) 순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자발적 취업 중단율이 높아 초등학교 이하는 0.8%이었으나 대학 이상은 3.6%로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였다. 직장 중단시기별로는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과 둘째아~최종아 출산 전·후에 그만둔 경우 비자발적으로 중단한 비율이 더 높아 자녀출산이 기혼여성의 비자발적 취업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10-6〉 혼전취업 부인의 특성별 혼인 전, 출산 전·후 중단한 이유

(단위: %, 명)

특성	자발적	비자발적	계(수)
전체	97.7	2.3	100.0(6,107)
지역			
동부	97.5	2.5	100.0(5,084)
읍·면부	98.8	1.2	100.0(1,023)
연령			
15~24세	98.3	1.7	100.0(60)
25~29세	95.5	4.5	100.0(555)
30~34세	97.5	2.5	100.0(1,260)
35~39세	97.6	2.4	100.0(1,399)
40~44세	98.8	1.2	100.0(1,228)
45~49세	98.1	1.9	100.0(795)
50세 이상	97.7	2.3	100.0(799)

〈표 10-6〉 계속

특성	자발적	비자발적	계(수)
교육수준			
초교 이하	99.2	0.8	100.0(609)
중학교	98.9	1.1	100.0(856)
고등학교	97.7	2.3	100.0(3,192)
대학 이상	96.4	3.6	100.0(1,435)
직장 중단 시기			
혼전 6개월 이전	98.3	1.7	100.0(1,765)
혼전 6개월~혼후	98.1	1.9	100.0(3,567)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94.7	5.3	100.0(638)
둘째~최종아 출산 전·후	95.6	4.4	100.0(136)
혼인 출산과 상관없이	-	-	-

제 2 절 현 취업실태

1. 현 취업 부인의 취업직종, 종사상 지위 및 직장유형

현재 취업중인 15~49세 부인들의 직업 분포율은 서비스·판매직이 3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단순노무직(14.1%), 사무직(11.6%), 전문직(8.4%) 등의 순이었다.

2000년 본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서비스·판매직은 0.5%포인트, 사무직은 2.9%포인트, 전문직은 2.4%포인트 증가한 것이며, 단순노무직은 3.8%포인트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주89)] 2000년 조사결과에 비해 전문직이나 사무직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서비스·판매직 종사율이나 단순노무직 종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혼여성의 취업이 여전히 임금수준이나 고용지위 등이 낮은 직종에 취업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89) 2000년 조사결과, 서비스·판매직은 39.2%, 사무직 8.75, 그리고 전 문 직은 6.0%이었음(김승권 외, 2000).

종사상 지위는 상용고 비율이 가장 높아 30.5%, 임시고·일용고 28.7%, 무급가족종사자 21.3%, 자영업자 16.3%, 고용주 3.3% 등으로 혼전 취업의 종사상 지위와 비교할 때 상용고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41.8%),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각각 약 4배, 11배정도 증가하였다. 직장유형은 개인사업체 종사비율이 54.3%로 가장 높았고,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종사비율은 2.3%로 가장 낮았다.

〈표 10-7〉 15~49세 현 취업부인의 연령별 직업, 종사상 지위 및 직장유형

(단위: %, 명)

구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체
직업							
고위공무원·관리직	-	-	-	0.6	0.7	1.1	0.6
전문직	2.6	15.2	11.8	10.6	6.1	4.5	8.4
준전문직	2.6	13.4	11.0	9.4	4.5	2.8	7.0
사무직	4.10	34.1	20.7	12.0	5.1	4.0	11.6
서비스·판매직	41.0	24.2	32.9	41.0	43.9	43.2	39.7
축·임·어업직	2.6	1.5	4.1	4.3	8.5	13.4	7.3
기능직	-	2.0	2.7	4.7	5.5	4.6	4.3
기계장치조작원	7.7	4.7	6.2	5.7	8.9	7.3	7.0
단순노무직	2.6	5.0	10.7	11.7	16.8	19.1	14.1
종사상 지위							
고용주	0.0	0.6	2.6	3.5	4.0	3.6	3.3
상용고	43.6	60.5	40.0	30.8	24.5	20.6	30.5
임시고·일용고	46.2	20.6	29.8	27.7	30.0	29.2	28.7
자영업자	0.0	8.6	11.2	17.8	18.1	19.3	16.3
무급가족종사자	10.3	9.7	16.4	20.3	23.4	27.3	21.3
직장유형							
공무원	0.0	8.3	9.4	7.6	3.7	3.5	5.8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2.6	5.3	2.2	2.86	1.2	2.2	2.3
대기업	18.4	19.5	10.8	9.2	8.6	7.6	9.8
중소기업	15.8	11.8	9.1	7.5	6.0	6.8	7.6
소기업	28.9	18.9	19.1	14.5	16.8	12.9	16.0
개인사업체	31.6	34.5	46.5	53.8	59.5	61.3	54.3
기타	2.6	1.8	2.9	4.7	4.2	5.7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9)	(343)	(730)	(1,044)	(1,288)	(1,022)	(4,466)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는 가구의 특성이나 남편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특성별로는 월소득이 많은 경우 부인 취업률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고소득층은 고학력 젊은 부인의 자아성취를 위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외 가구원 규모가 2인 이하이거나 5인 이상인 가구, 1세대 또는 3세대인 가구, 그리고 현존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부인 취업률이 높았다. 영유아 자녀유무별로는 영유아가 모두 있는 경우 부인 취업률이 가장 낮았고(26.1%), 영아만 있는 경우에도 낮은 취업률(29.1%)을 보였으나 영유아가 모두 없는 경우 취업률이 가장 높아(57.5%) 자녀가 부인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남편의 특성별로는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인 취업률이 높았으며, 남편이 비취업인 경우에도 부인의 취업률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재산소득 등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경우나 최근의 경기악화에 따른 영향과 함께 개인적인 취업조건인 학력, 건강, 연령 등의 이유로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 남편의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남편이 무급가족종사자일 경우 부인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남편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부인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8〉 가구 및 남편 특성별 15세 이상 기혼부인의 취업률

(단위: %)

가구특성	취업률	남편특성[1]	취업률
전체	52.2	전체	49.7
가구 월소득		연령	
99만원 이하	54.5	15～29세	41.5
100～199만원	49.0	30～34세	37.1
200～299만원	50.1	35～39세	42.4
300～399만원	51.3	40～44세	52.2
400～499만원	62.2	45～49세	60.2
500만원 이상	57.4	50세 이상	53.2
가구 규모		교육수준	
2인 이하	61.5	초등 이하	65.9
3～4인	49.0	중학교	61.6
5인 이상	52.8	고등학교	48.0
		대학 이상	43.6
세대결합형태		취업여부	
1세대	58.5	취업	50.3
2세대	49.6	비취업	45.9
3세대 이상	60.2		
현존 자녀수		종사상 지위	
1명 이하	50.1	고용주	43.1
2명	50.0	상용고	41.9
3명 이상	58.7	임시·일용고	51.1
		자영업자	64.7
		무급가족종사자	92.7
영유아 자녀 유무		월 평균 근로소득	
영아 있음	29.1	99만원 이하	68.2
유아 있음	43.7	100～199만원	56.2
영유아 모두 있음	26.1	200～299만원	47.4
영유아 모두 없음	57.5	300～399만원	38.6
		400～499만원	39.5
		500만원 이상	37.0

주: 1) 유배우 상태에 있는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현 취업 계속여부 및 만족도

현 취업부인들의 경우 현 취업의 계속여부에 대해 대부분 계속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계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타 직종보다 높은 편이었다.

현 취업부인의 취업 만족도는 만족 34.9%, 매우 만족 2.5%로 37.4%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전문직(73.4%), 준전문직(63.0%), 사무직(58.7%)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농·임·어업직(17.3%)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 외 단순노무직(25.5%), 기능직(34.5%) 및 기계장치 조작원(32.0%)등의 경우에도 만족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평균 만족도는 3.11점으로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직종별로는 차이를 보여 전문직 3.76점, 준전문직 3.61점, 사무직 3.52점 순으로 높았고, 단순노무직(2.92점), 농·임·어업(2.72점)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표 10-9〉 직종별 현 취업 계속여부

(단위: %, 명)

현 취업 계속여부	고위 공무원 관리직	전문직	준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 판매직	농·임· 어업	기능직	기계 장치 조작원	단순 노무직	전체
예	96.7	95.5	90.5	90.7	86.5	96.5	94.0	91.1	87.7	89.8
아니오	3.3	2.0	5.5	6.0	8.0	2.3	0.9	5.0	7.2	5.9
모르겠음	-	2.5	4.0	3.4	5.5	1.2	5.2	3.9	5.2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0)	(398)	(329)	(536)	(2,141)	(654)	(231)	(359)	(913)	(5,591)

〈표 10-10〉 직종별 취업만족도

(단위: %, 명, 점)

취업 만족도	고위 공무원 관리직	전문직	준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 판매직	농·임· 어업	기능직	기계 장치 조작원	단순 노무직	전체
매우 불만족	-	2.3	0.3	0.6	3.6	5.7	3.0	1.4	4.3	3.2
불만족	22.6	4.8	7.6	9.5	26.3	34.6	21.6	23.4	26.2	22.6
보통	35.5	19.6	29.1	31.2	36.4	42.4	40.9	43.2	44.1	36.8
만족	41.9	62.1	56.6	55.2	31.9	16.5	33.6	30.9	24.8	34.9
매우 만족	-	11.3	6.4	3.5	1.8	0.8	0.9	1.1	0.7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0)	(398)	(329)	(536)	(2,141)	(654)	(231)	(359)	(913)	(5,591)
평균	3.22	3.76	3.61	3.52	3.02	2.72	3.08	3.07	2.92	3.11

3. 현 취업 애로사항

현 취업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가사부담이 4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육아 및 자녀양육 부담이 22.7%,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이 14.6%의 순이었다. 취업부인의 직종별로는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은 육아 및 자녀양육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고, 나머지 직종은 가사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농·임·어업직의 경우 가사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62.9%). 이로서 기혼여성의 취업상의 애로사항은 가사부담과 육아 및 자녀양육 부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11〉 직종별 애로사항

(단위: %, 명)

애로사항	고위 공무원 관리직	전문직	준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임·어업	기능직	기계 장치 조작원	단순 노무직	전체
없음	27.6	10.6	9.8	10.2	13.8	11.0	12.6	9.5	12.4	12.2
육아 및 자녀양육부담	13.8	36.7	37.4	34.2	21.4	12.0	16.5	24.3	16.5	22.7
가사부담	34.5	26.6	23.9	25.9	39.6	62.9	47.6	41.6	47.9	40.9
부부간 공유시간부족	3.4	4.1	6.1	7.0	3.3	1.9	3.5	1.7	2.1	3.4
자녀와의 공유시간부족	20.7	18.0	19.3	17.8	16.6	4.7	13.4	14.8	12.0	14.6
노부모 부양	-	1.8	1.2	0.2	1.6	2.2	0.9	3.1	0.9	1.5
기타[1]	-	2.3	2.1	4.7	3.7	5.4	5.6	5.0	8.1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0)	(398)	(329)	(536)	(2,141)	(654)	(231)	(359)	(913)	(5,591)

주: 1) 기타에는 기혼여성의 근로요건, 사회적 편견 등이 포함됨.

4. 부인의 취업 및 비취업 이유

본 조사결과 15~49세 기혼부인 중 취업부인의 특성별 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생활비 보탬이 주요 이유로 72.5%이었으며, 특히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4세 이하와 40세 이상의 부인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비 보탬을 위해 취업중인 경우가 많았다.

〈표 10-12〉 15～49세 기혼부인의 특성별 현 취업이유

(단위: %, 명)

특성	생활비에 보탬	자녀 교육비 충당	노후 대책 마련	시간이 많아 지루해서	사회적 성취, 자기발전	기타	계(수)
전체	72.5	12.2	1.9	1.4	11.8	0.2	100.0(4,429)
지역							
동부	71.8	11.5	2.1	1.5	12.8	0.3	100.0(3,542)
읍·면부	75.1	15.0	1.2	1.1	7.6	-	100.0(887)
연령							
15～24세	81.6	-	-	5.3	13.2	-	100.0(38)
25～29세	68.8	4.5	2.4	2.4	21.7	0.3	100.0(337)
30～34세	70.8	9.6	1.2	1.1	16.9	0.3	100.0(727)
35～39세	67.8	14.5	2.0	2.1	13.1	0.5	100.0(1,033)
40～44세	73.7	14.7	2.0	0.9	8.5	0.2	100.0(1,278)
45～49세	77.9	11.5	2.3	1.2	7.1	0.1	100.0(1,007)
교육수준							
초교 이하	85.3	11.7	1.3	0.4	0.6	0.6	100.0(463)
중학교	82.7	13.0	2.1	0.7	1.4	0.1	100.0(769)
고등학교	74.4	14.3	2.1	2.1	6.9	0.1	100.0(2,096)
대학 이상	55.9	7.8	1.7	1.3	33.0	0.3	100.0(1,086)

다음으로 제시된 조사대상부인의 현재 취업의 직접적인 이유는 자녀교육비 충당 12.2%, 사회적 성취·자기발전이 11.8%, 노후대책 마련 1.9% 등이었다. 사회적 성취·자기발전을 위한 취업은 동부지역 거주, 젊은 연령층, 그리고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부인에게서 두드러졌다. 특히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부인의 33.0%나 되어 고등학교 학력 이하의 부인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교육비 충당을 위한 취업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35세 이상, 그리고 고졸학력 부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본생계비 외에 자녀교육비 충당이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49세 이하 비취업 기혼부인들의 비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양육(49.0%)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그 다음은 일하고 싶지 않아서(21.4%), 건강상의 이유(16.0%) 순이었으며, 이 외 남편·시댁식구의 반대(4.6%), 가사(4.2%) 등도 포함되어 있다.

〈표 10-13〉 15-49세 기혼부인의 특성별 비취업이유

(단위: %, 명)

특성	일하고 싶지 않아서	건강상	기타 개인적인 이유	자녀양육	가사일	남편 및 시댁 식구 반대	기타 가족 부양	사회적 이유 (기타)	계(수)
전체	21.4	16.0	3.3	49.0	4.2	4.6	0.9	0.5	100.0(1,654)
지역									
동부	22.3	15.5	3.4	48.4	4.1	4.8	0.9	0.6	100.0(1,477)
읍·면부	14.1	20.3	2.3	54.2	5.1	2.8	1.1	-	100.0(177)
연령									
15～24세	8.1	2.7	-	62.2	13.5	13.5	-	-	100.0(37)
25～29세	8.6	1.8	-	81.6	3.7	1.8	1.2	1.2	100.0(163)
30～34세	10.8	2.4	1.6	79.8	2.4	2.2	0.5	0.3	100.0(372)
35～39세	18.0	12.2	3.2	56.4	3.2	5.0	1.2	0.7	100.0(401)
40～44세	30.4	22.7	4.1	30.4	3.9	7.2	0.6	0.8	100.0(362)
45～49세	35.5	38.4	6.6	6.6	7.2	4.7	0.9	-	100.0(318)
교육수준									
초교 이하	17.6	62.7	2.0	13.7	2.0	1.0	1.0	-	100.0(102)
중학교	23.5	41.4	6.2	21.0	4.9	3.1	-	-	100.0(162)
고등학교	20.8	12.1	3.6	51.8	5.4	4.9	0.9	0.5	100.0(865)
대학 이상	22.2	5.7	2.1	60.2	2.5	5.4	1.1	0.8	100.0(522)

특히 자녀양육으로 인한 비취업은 부인연령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인 경우와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연령대의 경우 자녀가 어린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자녀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일수록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비취업은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에게서,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는 자발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부지역과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초등학교 이하 수준보다는 중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높았다.

제 3 절 비취업 부인의 향후 취업희망 여부 및 이유

1. 비취업 부인의 향후 취업희망 여부

현 비취업부인의 향후 취업희망 여부는 전체 비취업부인의 52.0%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희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낮은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보다 취업희망률이 낮았고, 또한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부인보다는 사별, 이혼·별거 부인의 취업희망률이 높았다. 이는 고연령층은 학력이 낮고 건강상의 이유, 전문기술 부족 등의 취업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며, 해혼부인들의 경우에는 유배우부인들보다 가족의 생계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10-14〉 비취업 부인의 특성별 향후 취업희망 여부

(단위: %, 명)

특성	희망	비희망	모르겠음	계(수)
전체	52.0	45.0	3.1	100.0(5,169)
지역				
동부	55.6	45.2	3.3	100.0(4,580)
읍·면부	55.2	43.3	1.5	100.0(589)
연령				
15~24세	56.7	40.0	3.3	100.0(90)
25~29세	64.6	32.3	10.2	100.0(505)
30~34세	60.2	36.6	20.4	100.0(1,016)
35~39세	58.0	38.8	3.2	100.0(1,032)
40~44세	54.1	42.7	3.3	100.0(851)
45~49세	45.7	51.4	2.9	100.0(619)
50세 이상	33.5	63.9	2.6	100.0(1,051)
교육수준				
초교 이하	39.0	58.9	2.1	100.0(577)
중학교	44.7	53.5	1.9	100.0(694)
고등학교	55.8	41.7	2.5	100.0(2,512)
대학 이상	54.1	41.0	4.9	100.0(1,378)
결혼상태				
유배우	51.5	45.4	3.0	100.0(4,938)
사별	56.3	39.5	4.2	100.0(119)
이혼·별거	66.4	31.0	2.7	100.0(113)

2. 비취업 부인의 향후 취업희망 이유

현재 비취업 부인들 중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가계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가 가장 높은 비율(70.8%)이었으며,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을 위해(24.7%), 경제적 독립을 위해(4.2%), 기타(0.3%) 순이었다.

가계에 경제적 도움을 위해서는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이후부터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았으며, 그리고 유배우인 경우 사별이나 이혼·별거인 경우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10-15〉 비취업 부인의 특성별 향후 취업희망 이유

(단위: %, 명)

특성	가계에 경제적 도움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 위해	경제적 독립 위해	기타	계(수)
전체	70.8	24.7	4.2	0.3	100.0(2,685)
지역					
동부	70.3	25.3	4.0	0.3	100.0(2,360)
읍·면부	74.2	19.7	5.5	0.6	100.0(325)
연령					
15～24세	78.0	18.0	2.0	2.0	100.0(50)
25～29세	69.9	26.1	4.0	-	100.0(326)
30～34세	66.8	26.8	6.2	0.2	100.0(612)
35～39세	66.4	28.0	5.0	0.5	100.0(599)
40～44세	68.5	28.0	2.8	0.7	100.0(460)
45～49세	79.2	15.5	4.6	0.7	100.0(283)
50세 이상	80.8	17.8	1.4	-	100.0(349)
교육수준					
초교 이하	93.3	5.4	1.3	-	100.0(224)
중학교	88.0	8.1	3.9	-	100.0(309)
고등학교	73.0	22.4	4.1	0.5	100.0(1,400)
대학 이상	52.6	41.7	5.5	0.3	100.0(744)
결혼상태					
유배우	69.7	25.6	4.2	0.4	100.0(2,542)
사별	85.7	11.9	3.0	-	100.0(67)
이혼·별거	94.6	1.4	4.1	-	100.0(74)

이에 비해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읍·면부 지역보다는 동부지역에서, 30대 후반부터 40대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별이나 이혼·별거부인보다는 유배우부인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읍·면부 지역에서, 30대의 연령층에서,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희망률이 높았으며,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부인의 취업희망률이 가장 높았다.

제 4 절 기혼부인의 취업실태의 시사점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직까지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한 연령인 1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결혼적령기인 25~29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30~34세를 기점으로 다시 급격히 증가하여 40~44세에 절정을 이루다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산 및 육아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취업여성들이 결혼과 자녀출산 및 집중적인 양육기에 취업률이 낮았고, 영유아기 자녀가 없는 경우 취업률이 높았다. 또한 혼전 취업의 중단시기를 보면, 혼인 전 6개월에서 혼인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50.2%나 되었으며, 자녀출산 전·후에 혼전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10.9%나 되었다.

취업직종에 있어서는 결혼 전에는 사무직 종사자가 41.3%, 서비스·판매직 13.6% 등이었으나 결혼 후에는 서비스·판매직(39.7%), 단순노무직(14.1%) 순이며, 사무직 종사자는 11.6%에 불과하여 혼전 취업직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비취업 부인들의 비취업 이유로 자녀양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출산 및 집중 양육기에 있는 34세 이하 부인들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양육이 기혼부인들의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혼전에 취업 중이던 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일정기간이 지나 자녀가 성장한 후에 재취업하고자 하나 아직도 입직에서의 성 차별과 더불어 승진, 보직, 훈련 등 기업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특히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인해 여성의 노동력 공급은 저기능·저숙련 직종 또는 직무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분야에서의 낮은 임금수준은 고학력·고소득 가구의 여성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최강식 외 1997).[주90)]

한국에서의 성차별은 외국의 경우보다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차별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금재호, 2002).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녀양육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제반 환경적 요인, 즉,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없애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여성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환경과 직장환경의 변화 모두를 요구한다. 가족환경의 경우 여성의 공식적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위해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해 왔던 가사나 자녀양육의 비공식적 노동에 대한 남성의 참가를 요구한다. 직장환경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남성의 가사분담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이연주, 2003).

최근 정부에서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성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OECD 차원에서도 남녀의 경제활동 및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며,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

주90) 최강식 등(1997)에 의하면, 여성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0세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 고학력자는 일반적으로 남편의 소득수준이 높고 취업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 결혼 또는 출산이후에도 저임금·저생산성 분야에 계속 취업하는 것보다 노동시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

원하기 위한 보육정책이나 모성보호정책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경우에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가제도 실시 등에 있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 내의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외 보육에 있어서도 보육료 지원의 확대, 특수보육의 활성화, 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1 장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실태

제 1 절 가족부양 실태

1. 부모의 생존 및 동거 여부

가족부양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물론 이에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지, 떨어져 살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가족부양의 테두리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절의 분석대상인 15~59세 기혼가구 중 일방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함께 사는 부부의 각각 부모 생존율을 살펴보았다.

가구주 부부 중 부인의 부모 생존율을 살펴보면, 부(父)의 생존율은 55.1%, 모(母)의 생존율은 94.7%로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부인의 부(父) 생존율은 56.3%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의 부인의 부(父) 생존율 49.0%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모(母)의 경우에도 유사하였다.

가구주 부부 중 남편의 부모 생존율을 살펴보면, 부(父)의 생존율은 50.5%, 모(母)의 생존율은 94.1%로 전술한 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남편의 부(父) 생존율은 51.9%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의 남편의 부(父) 생존율 43.8%보다 높았으며, 모(母)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편 부모의 생존율은 부인의 부모 생존율보다는 낮았는데 이는 부부간의 연령 차이가 약 3세 전·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부 중 여성배우자의 부모 생존율이 더 높았으며, 이는 가족부양 체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표 11-1〉 15~59세 기혼가구 부부의 부모 생존율[1)]

(단위: %)

구분	부인		남편	
	부	모	부	모
(분석대상수)	(8,226)	(8,222)	(7,431)	(7,431)
전체	55.1	94.7	50.5	94.1
동부	56.3	95.0	51.9	94.1
읍·면부	49.0	93.2	43.8	94.1

주: 1)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분석대상 15~59세 기혼가구 중 일방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가 그들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구주 부부 중 부인의 부(父)와의 동거율은 1.1%, 모(母)와의 동거율은 2.1%로 나타났다. 물론 부모 모두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만 부(父)와의 동거율이 모(母)와의 동거율보다 높은 것은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부인의 부(父)와의 동거율이 1.2%로 동부지역 거주가구 부인의 부(父)와의 동거율 1.0%보다 높았다으며, 모(母)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가구주 부부 중 남편부모와의 동거율을 살펴보면, 부(父)와의 동거율은 8.7%, 모(母)의 동거율은 14.2%이었다. 이러한 수준은 부인 부모와의 동거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남편의 부(父)와의 동거율이 18.6%로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남편 부(父)와의 동거율 7.1%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남편의 모(父)와의 동거율도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27.4%, 동부지역 거주가구 11.5%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별 부모의 생존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거율이 낮은 것은 확대가족이 농촌지역에 많고, 핵가족은 도시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인 부모의 생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부모와의 동거율이 부인 부모와의 동거율보다 높게 나

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남편 부모와의 동거가 부인 부모와의 동거보다 한국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모(母)와의 동거율이 부(父)와의 동거율보다 높은 것은 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2〉 15~59세 기혼가구 부부의 부모와 동거율[1)]

(단위: %)

구분	부인		남편	
	부	모	부	모
(분석대상수)	(4,525)	(7,770)	(3,752)	(6,986)
전체	1.1	2.1	8.7	14.2
동부	1.0	2.1	7.1	11.5
읍·면부	1.2	2.2	18.6	27.4

주: 1)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사망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비동거 부모와의 접촉빈도

조사대상 기혼부부가구들이 그들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얼마나 자주 부모와 접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접촉방법은 직접 만나는 횟수와 전화 등에 의한 연락횟수 등 두 가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얼마나 자주인지의 빈도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와 만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만나는 경우는 부인 부모와 남편 부모가 유사한 수준이었다. 즉, 부인의 부(父)와는 98.1%, 모(母)와는 98.6% 만나고 있었으며, 남편의 부(父)와는 98.9%, 모(母)와는 98.8%가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만나지 않은 경우가 미미하나마 있음은 문제점이라 하겠다.

부모와 만나는 빈도는 월 1~3회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2~3개월에 1회 또는 1년에 2~3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부모와 만나는 빈도를 살펴보면, 부인의 부(父)와는 월 1~3회가 29.4%로 가장 많았고,

2~3개월에 1회 22.9%, 1년에 2~3회 22.5% 등의 순이었으며, 부인의 모(母)와는 월 1~3회가 27.2%로 가장 많았고, 1년에 2~3회 24.2%, 2~3개월에 1회 22.4% 등의 순이었다. 남편의 부모와의 만나는 빈도를 살펴보면, 남편의 부(父)와는 월 1~3회가 35.0%로 가장 많았고, 2~3개월에 1회 22.0%, 1년에 2~3회 14.4% 등의 순이었으며, 남편의 모(母)와는 월 1~3회가 33.5%로 가장 많았고, 2~3개월에 1회 22.0%, 1년에 2~3회 16.9%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부인 부모보다는 남편 부모와 만나는 빈도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명절 또는 제사를 주로 남편 부모 댁에서 보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부모와 만나는 빈도가 비교적 많은 주 1회 이상의 경우도 부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다는 남편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율이 높았다. 즉, 주 1회 이상 만나는 경우는 남편의 부(父)와는 25.4%, 모(母)와는 23.6%에 비해 부인의 부(父)와는 18.0%, 모(母)와는 17.6%로 남편 부모와 더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매일 만나는 경우가 남편의 부(父)와는 6.2%, 모(母)와는 6.3%인 반면 부인의 부(父)와는 4.2%, 모(母)와는 4.7%이었고, 주 2~3회 만나는 경우는 남편의 부(父)와는 6.6%, 모(母)와는 6.7%인 반면 부인의 부(父)와는 5.9%, 모(母)와는 5.5%이었으며, 그리고 주 1회 만나는 경우는 남편의 부(父)와는 12.6%, 모(母)와는 10.6%인 반면 부인의 부(父)와는 7.9%, 모(母)와는 7.4%이었다.

부모와 만나는지의 여부는 지역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만나는 경우 그 빈도는 지역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즉, 거의 매일 만나는 경우와 주 2~3회 만나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가구가 동부지역 가구보다 현저히 많았다. 이는 읍·면부지역에서는 같은 동네 또는 인근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농사를 같이 짓거나 도와주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또한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의 모두가 부인의 부모와 만나는 빈도보다 남편의 부모와 만나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남편가족 중심의 가족문화가 부인가족 중심의 가족문화보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1-3〉 15~59세 기혼가구의 비동거 부모와 만난 횟수[1)]

(단위: %)

구분	부인		남편	
	부	모	부	모
전체				
전혀 만나지 않음	1.9	1.4	1.1	1.2
거의 매일	4.2	4.7	6.2	6.3
주 2~3회	5.9	5.5	6.6	6.7
주 1회	7.9	7.4	12.6	10.6
월 1~3회	29.4	27.2	35.0	33.5
2~3개월 1회	22.9	22.4	22.0	22.0
1년에 2~3회	22.5	24.2	14.4	16.9
1년에 1회 이하	5.2	7.0	2.1	2.7
기타	0.1	0.1	0.1	0.0
계(수)	100.0(4,466)	100.0(7,590)	100.0(3,413)	100.0(5,984)
동부				
전혀 만나지 않음	2.0	1.4	0.9	1.1
거의 매일	3.9	4.4	4.8	4.7
주 2~3회	5.5	5.2	5.9	5.9
주 1회	7.8	7.4	12.1	10.3
월 1~3회	30.1	27.9	35.5	34.2
2~3개월 1회	23.3	23.0	23.3	23.1
1년에 2~3회	22.6	23.8	15.2	17.9
1년에 1회 이하	4.8	6.8	2.2	2.8
기타	0.1	-	0.1	0.0
계(수)	100.0(3,802)	100.0(6,341)	100.0(2,969)	100.0(5,130)
읍·면부				
전혀 만나지 않음	1.2	1.4	2.0	1.6
거의 매일	6.0	6.4	15.8	16.0
주 2~3회	8.3	7.3	11.3	11.7
주 1회	8.6	7.4	15.8	12.9
월 1~3회	25.8	23.5	31.5	29.0
2~3개월 1회	20.9	19.8	13.5	15.8
1년에 2~3회	22.0	26.0	9.0	10.9
1년에 1회 이하	7.2	8.1	1.1	2.0
기타	-	0.1	-	-
계(수)	100.0(664)	100.0(1,249)	100.0(444)	100.0(854)

주: 1)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사망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 여부를 살펴보면, 연락하는 경우는 부인 부모와 남편 부모가 유사한 수준이었다. 즉, 부인의 부(父)와는 98.8%, 모(母)와는 98.9%, 남편의 부(父)와는 98.4%, 모(母)와도 98.4%가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연락하지 않은 경우가 미미하나마 있음은 사회적 지지가 거의 없는 노인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인 부모와 연락여부를 살펴보면, 월 1~3회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주 2~3회, 주 1회, 거의 매일 등의 순이었으며, 남편 부모와는 주 1회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월 1~3회, 주 2~3회, 거의 매일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부모와 만나지는 못하지만 연락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 '만나는 빈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락빈도도 남편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다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인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월 1~3회 연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부(父)와는 27.8%, 모(母)와는 27.5%이었다. 또한 주 2~3회 연락하는 경우가 부(父)와는 23.5%, 모(母)와는 23.2%이었으며, 주 1회 연락하는 경우는 부(父)와는 22.6%, 모(母)와는 22.3%이었다. 남편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주 1회 연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부(父)와는 27.6%, 모(母)와는 27.1%이었다. 또한 월 1~3회 연락하는 경우는 부(父)와는 26.1%, 모(母)와는 27.0%이었으며, 주 2~3회 연락하는 경우는 부(父)와는 23.0%, 모(母)와는 22.0%이었다.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경우는 부인의 부(父)와는 15.4%, 모(母)와는 15.3%이었고, 남편의 부(父)와는 13.7%, 모(母)와는 13.1%로 나타나 남편 부모보다는 부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빈도가 높았다. 이는 전술한 '거의 매일 만나는 빈도'의 경우와는 상반된 것으로서, 남편의 부모와 만나는 빈도가 높았으며, 부인의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동부지역 가구보다 현저히 높았음은 특이 할 점이었다.

〈표 11-4〉 15~59세 기혼가구의 비동거 부모와 연락횟수[1)]

(단위: %)

구분	부인		남편	
	부	모	부	모
전체				
전혀 연락 않음	1.2	1.1	1.6	1.6
거의 매일	15.4	15.3	13.7	13.1
주 2~3회	23.5	23.2	23.0	22.0
주 1회	22.6	22.3	27.6	27.1
월 1~3회	27.8	27.5	26.1	27.0
2~3개월 1회	6.6	7.2	5.6	6.3
1년에 2~3회	2.1	2.6	1.9	2.3
1년에 1회 이하	0.7	0.8	0.5	0.7
기타	0.0	0.0	-	0.0
계(수)	100.0(4,452)	100.0(7,579)	100.0(3,415)	100.0(5,975)
동부				
전혀 연락 않음	1.2	1.0	1.4	1.4
거의 매일	15.5	15.5	12.4	12.0
주 2~3회	23.3	23.3	22.8	21.7
주 1회	23.0	22.6	28.2	27.7
월 1~3회	27.8	27.3	26.6	27.9
2~3개월 1회	6.5	7.1	6.0	6.5
1년에 2~3회	2.0	2.5	2.0	2.3
1년에 1회 이하	0.6	0.7	0.5	0.6
기타	0.1	0.0	-	0.0
계(수)	100.0(3,792)	100.0(6,332)	100.0(2,970)	100.0(5,121)
읍·면부				
전혀 연락 않음	1.2	1.8	2.5	2.5
거의 매일	15.3	14.4	22.5	19.1
주 2~3회	24.5	23.0	24.5	24.0
주 1회	20.3	20.7	22.9	23.8
월 1~3회	27.7	28.4	22.7	22.0
2~3개월 1회	7.6	7.8	3.1	5.2
1년에 2~3회	2.6	2.8	1.6	2.2
1년에 1회 이하	0.8	1.1	0.2	1.3
기타	-	-	-	0.0
계(수)	100.0(660)	100.0(1,247)	100.0(445)	100.0(854)

주: 1)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사망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3. 부모와의 상호지원

15~59세 기혼가구 중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가 사망한 가구를 제외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와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은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들 가구가 지난 1년간 부모와 주고받은 도움의 비율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부인의 부(父) 및 모(母)와의 관계에서는 각각 72.7%, 66.4%이었고, 남편의 부(父) 및 모(母)의 경우에는 각각 74.8%, 69.8%이었다. 따라서 부인의 부모보다는 남편의 부모와 주고받은 도움의 비율이 더 높았고, 모(母)와 주고받은 비율보다는 부(父)와 주고받은 비율이 더 높았다.

부모와 도움을 주고받은 정도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전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부(父)와 주고받은 도움의 비율이 높았으나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모(母)와 주고받은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부인의 부모와 남편의 부모를 불문하고 나타난 현상이었다. 도움을 주고받은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표 11-5〉 15~59세 기혼가구의 지난 1년간 도움을 주고받은 비율[1)]

(단위: %)

구분	부인		남편	
	부	모	부	모
(분석대상수)	(4,515)	(7,759)	(3,740)	(6,972)
전체	72.7	66.4	74.8	69.8
동부	73.3	65.1	75.7	68.2
읍·면부	69.5	73.1	69.1	77.8

주: 1)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사망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먼저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도움의 비율을 살펴본다. 신체적 도움을 받은 비율은 부인의 부모로부터는 약 10.9~11.0% 수준이었고, 남편의 부모로부터 받은 비율은 약 11.0~14.9% 수준이었다. 부인의 부모로부터 신체적 도움을 받은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가구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보다 많았으나, 남편의

부모로부터 신체적 도움을 받은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동부지역 거주가구보다 많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도움은 적은 편이며, 최저 10.9%에서 최고 23.8%까지 범위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남편의 모(母)로부터 신체적 도움을 받은 경우가 23.8%나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신체적 도움을 부모로부터 받았는지를 살펴보았다. 대체로 시장보기·식사준비, 손자녀 돌보기, 집안청소·세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를 제공자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인의 부(父)로부터는 시장보기·식사준비 4.8%, 손자녀 돌보기 4.5% 등이었으며, 부인의 모(母)로부터는 시장보기·식사준비 3.7%, 손자녀 돌보기 3.5%, 집안청소·세탁 3.0% 등이 비교적 많았다. 또한 남편의 부(父)로부터는 손자녀 돌보기 5.6%, 시장보기·식사준비 3.2% 등이었으며, 남편의 모(母)로부터는 집안청소·세탁 6.0%, 손자녀 돌보기 4.6%, 시장보기·식사준비 3.8%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신체적 도움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산후조리는 부인의 부모가 약 0.2~0.3%, 남편의 부모가 약 0.1~0.2%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출산이 없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출산층 여성의 연령으로 비추어보아 부모들의 경제활동으로 산후조리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신체적 도움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또 다른 양상을 찾을 수 있다. 부인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는 시장보기·식사준비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보다 동부지역 거주가구에서 많았고, 손자녀 돌보기는 동부지역 거주가구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보다 많이 나타났다. 남편 부모의 경우는 부(父)와 모(母)가 상이하였는데, 시장보기·식사준비의 경우 남편의 부가 도와주는 비율이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모(母)가 도와주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많았다. 이와는 달리 손자녀 돌보기는 부 또는 모의 구분없이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동부지역 거주가구보다 많았다.

〈표 11-6〉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큰 신체적 도움[1)]

(단위: %)

구분	부인		남편	
	부	모	부	모
전체				
없음	89.0	89.1	89.0	85.1
간병/수발	0.2	0.3	0.1	0.2
집안청소/세탁	1.2	3.0	1.9	6.0
시장보기/식사준비	4.8	3.7	3.2	3.8
손자녀 돌보기	4.5	3.5	5.6	4.6
산후조리	0.2	0.3	0.1	0.2
농사일/가게일	0.0	0.1	0.1	0.2
기타	0.1	0.0	-	0.0
계(수)	100.0(4,243)	100.0(7,427)	100.0(3,565)	100.0(6,737)
동부				
없음	88.6	88.8	89.6	86.9
간병/수발	0.2	0.4	0.1	0.1
집안청소/세탁	1.2	3.2	1.5	4.9
시장보기/식사준비	5.3	3.9	3.5	3.6
손자녀 돌보기	4.4	3.5	5.3	4.4
산후조리	0.2	0.2	0.1	0.1
농사일/가게일	0.0	0.0	0.0	0.1
기타	0.1	0.0	-	0.0
계(수)	100.0(3,608)	100.0(6,208)	100.0(3,036)	100.0(5,598)
읍·면부				
없음	91.0	90.3	85.6	76.2
간병/수발	0.2	0.2	0.2	0.4
집안청소/세탁	0.9	2.1	4.2	11.2
시장보기/식사준비	2.2	2.5	1.7	4.9
손자녀 돌보기	5.5	3.7	7.8	6.0
산후조리	0.2	0.8	0.4	0.6
농사일/가게일	-	0.3	0.2	0.6
기타	-	-	-	-
계(수)	100.0(635)	100.0(1,221)	100.0(529)	100.0(1,139)

주: 1)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사망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신체적 도움을 받은 평균 횟수는 부인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보다는 남편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즉, 부인의 부(父)로부터 받은 신체적 도움의 횟수는 평균 5.0회, 모(母)로부터 받은 횟수는 평균 4.2회이었으며, 남편의 부(父)로부터 받은 횟수는 평균 5.7회, 모(母)로부터 받은 횟수는 평균 7.0회이었다. 따라서 부인의 부모 중에서는 부(父)로부터, 남편의 부모 중에서는 모(母)로부터 신체적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즉,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부인의 모(母)보다는 부(父)로부터 더 자주 신체적 도움을 받았으나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부인의 부(父)보다는 모(母)로부터 더 자주 신체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렇지만 남편의 부모로부터 받는 신체적 도움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母)로부터의 도움이 더 빈번하였다. 특히 읍·면부지역 거주가구의 경우는 신체적 도움을 남편의 모(母)로부터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11.3%).

〈표 11-7〉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도움의 평균횟수[1)]

(단위: %)

구분	부인		남편	
	부	모	부	모
(분석대상수)	(1,443)	(3,109)	(1,171)	(2,885)
전체	5.0	4.2	5.7	7.0
동부	5.3	4.1	5.7	6.1
읍·면부	3.5	4.4	5.7	11.3

주: 1)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사망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다음으로 부모에게 제공한 신체적 도움의 비율을 살펴본다. 신체적 도움을 제공한 비율은 부모로부터 받은 비율보다 높았다. 부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약 17.3~17.7% 수준이었고, 남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약 29.4~30.0% 수준이었다.

부인의 부모에게 신체적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가구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이와 상반되게 남편의 부모에게 신체적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동부지역 거주가구보다 다소 많았다. 특히 남편의 모에게 제공한 신체적 도움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38.8%로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27.5%보다 현저히 많았는데, 이는 고령의 여자노인이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신체적 도움을 부모에게 주었는지를 살펴보면, 대체로 시장보기·식사준비, 집안청소·세탁, 간병·수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를 제공자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인의 부(父)에게 제공한 경우는 시장보기·식사준비가 8.2%, 집안청소·세탁은 6.7%, 간병·수발이 1.9%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의 모(母)에게 제공한 경우는 시장보기·식사준비가 8.8%, 집안청소·세탁 5.7%, 간병·수발 2.3% 등의 순으로 신체적 도움울 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부(父)에게는 시장보기·식사준비가 14.7%, 집안청소·세탁 11.9%, 간병·수발 2.7% 등의 순으로 남편의 모(母)에게는 시장보기·식사준비 12.9%, 집안청소·세탁 12.2%, 간병·수발 3.8% 등의 신체적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은 부모에게 제공한 신체적 도움의 유형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또 다른 양상을 찾을 수 있다. 부인의 부(父)에게 제공한 신체적 도움은 동부지역의 경우는 시장보기·식사준비가 8.5%로 가장 많았으나 읍·면부지역은 집안청소·세탁이 6.9%로 가장 많았고, 부인의 모(母)에게 제공한 신체적 도움은 지역에 관계없이 시장보기·식사준비가 가장 많았다. 또한 남편의 부(父)에게 제공한 신체적 도움은 동부지역의 경우는 시장보기·식사준비가 15.3%로 가장 많았으나 읍·면부지역은 집안청소·세탁이 16.1%로 가장 많았고, 남편의 모(母)에게 제공한 신체적 도움도 동부지역의 경우는 시장보기·식사준비가 12.6%로 가장 많았으나, 읍·면부지역은 집안청소·세탁이 16.8%로 가장 많았다.[주91)]

주91) 부모에게 제공한 신체적 도움의 유형으로 손자녀 돌보기, 산후조리 등이 있었는데, 이는 다른 형제자매의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부모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음.

〈표 11-8〉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에게 제공한 가장 큰 신체적 도움[1)]

(단위: %)

구분	부인		남편	
	부	모	부	모
전체				
없음	82.3	82.7	70.0	70.6
간병/수발	1.9	2.3	2.7	3.8
집안청소/세탁	6.7	5.7	11.9	12.2
시장보기/식사준비	8.2	8.8	14.7	12.9
손자녀 돌보기	0.0	0.1	0.1	0.0
산후조리	0.4	0.2	0.2	0.2
농사일/가게일	0.5	0.1	0.4	0.3
기타	0.0	-	-	0.0
계(수)	100.0(4,243)	100.0(7,426)	100.0(3,564)	100.0(6,739)
동부				
없음	82.1	82.9	70.7	72.5
간병/수발	1.9	2.2	2.3	3.2
집안청소/세탁	6.7	5.6	11.2	11.2
시장보기/식사준비	8.5	8.9	15.3	12.6
손자녀 돌보기	-	0.1	0.1	0.1
산후조리	0.4	0.2	0.1	0.2
농사일/가게일	0.5	0.1	0.4	0.3
기타	-	-	-	0.0
계(수)	100.0(3,608)	100.0(7,426)	100.0(3,036)	100.0(5,601)
읍·면부				
없음	83.5	82.1	66.1	61.2
간병/수발	2.0	2.8	5.3	6.8
집안청소/세탁	6.9	6.1	16.1	16.8
시장보기/식사준비	6.1	8.4	11.7	14.4
손자녀 돌보기	0.2	-	-	-
산후조리	0.5	0.2	0.6	0.4
농사일/가게일	0.6	0.3	0.2	0.5
기타	0.0	-	-	-
계(수)	100.0(635)	100.0(1,221)	100.0(528)	100.0(1,138)

주: 1)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사망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전반적으로 부모에게 신체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남편의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가구가 많았다. 또한 도움의 유형은 동부지역 거주

가구에서는 시장보기·식사준비를, 읍·면부지역 거주가구에서는 집안청소·세탁을 지원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부모에게 신체적 도움을 제공한 평균 횟수는 부인의 부모에게 제공한 경우보다 남편 부모에게 제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즉, 부인의 부(父)에게 제공한 횟수는 평균 6.8회, 모(母)에게 제공한 횟수는 평균 6.0회이었으며, 남편의 부(父)에게 제공한 횟수는 평균 8.4회, 모(母)에게 제공한 횟수는 평균 9.0회이었다. 따라서 부인의 부모 중에서는 부(父)에게, 남편의 부모 중에서는 모(母)에게 신체적 도움을 제공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즉,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부인의 모(母)보다는 부(父)에게 더 자주 신체적 도움을 주었으나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부인의 부(父)보다는 모(母)에게 더 자주 신체적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렇지만 남편의 부모에게 제공한 신체적 도움 중 부(父)에게 제공한 경우는 지역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으나 모(母)에게 제공한 경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읍·면부지역 거주가구의 경우는 신체적 도움을 남편의 모(母)에게 가장 많이 주고 있었다(12.4%).

〈표 11-9〉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에게 제공한 가장 큰 신체적 도움의 평균 횟수[1)]

(단위: 회)

구분	부인		남편	
	부	모	부	모
(분석대상수)	(1,720)	(3,578)	(1,841)	(3,844)
전체	6.8	6.0	8.4	9.0
동부	7.0	5.9	8.4	8.3
읍·면부	5.5	6.9	8.5	12.4

주: 1)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사망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도움의 비율을 살펴본다. 정서적 도움을 받은 비율은 부인의 부모로부터는 약 57.0~60.1% 수준이었고, 남편의 부모로부터 받은

비율은 약 54.4~55.7% 수준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부인의 부모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받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 부(父)와 모(母)가 상이하였다. 즉,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보다 부(父)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고(동부지역 60.5%, 읍·면부지역 57.7%),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동부지역 거주가구보다 모(母)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읍·면부지역 64.3%, 동부지역 55.6%).

또한 남편 부모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받은 경우도 지역에 따라 부(父)와 모(母)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보다 부(父)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고(동부지역 56.3%, 읍·면부지역 52.3%),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동부지역 거주가구보다 모(母)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읍·면부지역 64.3%, 동부지역 52.4%).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신체적 도움을 부모로부터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대화상대(말벗), 중대결정시 의논상대, 그리고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서적 도움의 유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부인의 부모, 남편의 부모,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를 도움의 제공자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인의 부(父)로부터는 대화상대(말벗)에 의하여 정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이 37.5%, 중대결정시 의논상대 14.2%,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이 8.3% 등이었고, 부인의 모(母)의 경우 정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대화상대(말벗)가 40.1%, 중대결정시 의논상대 9.9%,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이 6.9%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화상대(말벗)는 부인의 모(母)로부터, 중대결정시 의논상대와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은 부(父)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부(父)로부터는 대화상대(말벗)에 의하여 정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이 33.2%, 중대결정시 의논상대 16.9%,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 5.6% 등이었고, 남편의 모(母)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대화상대(말벗) 37.6%, 중대결정시 의논상대 11.3%,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 5.5% 등이었다. 따라서 대화상대(말벗)는 남편의 모(母)로부터, 중대결정시 의논상대와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은 부(父)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받는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체적 도움을 받는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가족형태의 특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부모가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은 아쉽다고 하겠다. 즉, 대화상대, 중대사안 결정시 의논상대, 어려운 일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거나 않고 있다는 것은 가족관계의 강화를 위한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표 11-10〉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큰 정서적 도움[1)]

(단위: %)

구분	부인		남편	
	부	모	부	모
전체				
없음	39.9	43.0	44.3	45.6
대화상대(말벗)	37.5	40.1	33.2	37.6
중대결정시 의논상대	14.2	9.9	16.9	11.3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	8.3	6.9	5.6	5.5
기타	-	0.1	-	-
계(수)	100.0(4,242)	100.0(7,428)	100.0(3,565)	100.0(6,737)
동부				
없음	39.5	44.4	43.7	47.6
대화상대(말벗)	37.5	38.9	33.1	36.0
중대결정시 의논상대	14.1	9.6	17.2	10.8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	8.9	7.0	6.0	5.6
기타	-	0.1	-	-
계(수)	100.0(3,608)	100.0(6,207)	100.0(3,036)	100.0(5,600)
읍·면부				
없음	42.3	35.7	47.4	35.7
대화상대(말벗)	37.4	45.9	34.2	45.6
중대결정시 의논상대	15.1	11.7	14.9	13.8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	5.2	6.6	3.4	4.9
기타	-	0.1	-	-
계(수)	100.0(634)	100.0(1,221)	100.0(529)	100.0(1,137)

주: 1)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사망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다음으로 부모에게 제공한 정서적 도움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서적 도움을

제공한 비율은 부모로부터 받은 비율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부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약 62.0~64.5% 수준이었고, 남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약 60.2~61.0% 수준이었는데, 이는 신체적 도움의 경우 부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 약 17.3~17.7%와 남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약 29.4~30.0%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부인의 부(父)에게 정서적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가구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모(母)에게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부인의 모(母)에게 정서적 도움을 제공한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69.3%로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60.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편의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남편의 부(父)에게 정서적 도움을 61.4%가 주어 읍·면부지역 거주가구의 58.6%보다 많았으며, 남편의 모(母)에세 정서적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69.6%로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58.3%보다 현저히 많았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정서적 도움을 부모에게 주었는지를 살펴본다. 대체로 대화상대(말벗)와 중대결정시 의논상대가 대부분이었고,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도 다소 있었다. 이와 같은 정서적 도움의 유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부인의 부모, 남편의 부모,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같았다.

이를 제공자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인의 부(父)에게 대화상대(말벗)에 의하여 정서적 도움을 제공한 비율이 49.7%, 중대결정시 의논상대의 경우 10.0%,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을 4.7% 등이었고, 부인의 모(母)에게 정서적 도움을 제공한 비율은 대화상대(말벗)의 경우 49.3%, 중대결정시 의논상대 8.1%,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 4.5%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서적 도움을 부인의 부모에게 제공한 수준이 부모로부터 받은 수준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부(父)에게 대화상대(말벗)에 의하여 정서적 도움을 제공한 비율은 44.4%, 중대결정시 의논상대 12.7%,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 3.9% 등이었고, 남편의 모(母)에게 정서적 도움을 제공한 비율은 대화상대(말벗) 47.0%, 중대결정시 의논상대 9.8%,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 3.4% 등이었다. 따라서 대화상대(말벗)는 남편의 모(母)에게, 중대결정시 의논상대와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은 부

(父)에게 도움을 조금이나마 많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대화상대, 중대사안 결정시 의논상대, 어려운 일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이 필요한 부모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음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11-11〉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에게 제공한 가장 큰 정서적 도움[1)]

(단위: %)

구분	부인		남편	
	부	모	부	모
전체				
없음	35.5	38.0	39.0	39.8
대화상대(말벗)	49.7	49.3	44.4	47.0
중대결정시 의논상대	10.0	8.1	12.7	9.8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	4.7	4.5	3.9	3.4
기타	-	0.1	0.0	0.1
계(수)	100.0(4,242)	100.0(7,428)	100.0(3,565)	100.0(6,735)
동부				
없음	35.4	39.4	38.6	41.7
대화상대(말벗)	49.6	48.2	44.3	45.6
중대결정시 의논상대	10.0	7.6	12.7	9.1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	5.0	4.6	4.2	3.5
기타	-	0.1	0.0	0.1
계(수)	100.0(3,608)	100.0(6,207)	100.0(3,036)	100.0(5,599)
읍·면부				
없음	35.8	30.7	41.4	30.4
대화상대(말벗)	50.6	54.8	44.8	53.7
중대결정시 의논상대	10.3	10.5	12.1	12.9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	3.3	3.8	1.7	3.0
기타	-	0.2	-	-
계(수)	100.0(634)	100.0(1,221)	100.0(529)	100.0(1,136)

주: 1)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사망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의 비율은 부인의 부모로부터가 약 14.8~21.8% 수준으로, 남편의 부모로부터

받은 비율(약 14.4~24.0%)과 유사하였다. 부인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부(父)와 모(母)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와 부(父)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비율은 유사하였고(동부지역 21.9%, 읍·면부지역 20.8%), 모(母)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도 지역에 따라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다(동부지역 15.1%, 읍·면부지역 13.6%). 그렇지만 부인의 부(父)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과 모(母)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은 동부지역의 경우와 6.8%포인트의 차이가 있었고, 읍·면부지역의 경우에는 7.2%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즉, 부(父)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이 모(母)로부터의 경제적 도움보다 컸다.

부인 부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부(父)와 모(母)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부(父)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와 유사하였고(동부지역 24.3%, 읍·면부지역 22.3%), 모(母)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도 지역에 따라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다(동부지역 14.5%, 읍·면부지역 14.2%). 그렇지만 부인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부(父)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과 모(母)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은 동부지역의 경우 9.8%포인트의 차이가 있었고, 읍·면부지역의 경우에는 8.1%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즉, 부(父)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이 모(母)로부터의 경제적 도움보다 컸다.

어떤 유형의 경제적 도움을 부모로부터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기타 물품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적으나마 일시적 큰 지출 지원과 용돈 지원이 있었고, 생계비 지원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부인의 부모와 남편의 부모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父) 또는 모(母)인지의 여부에 따라서는 다소 상이하였다. 즉, 부(父)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이 모(母)로부터의 경제적 도움보다 많았다. 이는 부(父)가 모(母)보다 경제적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고 취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12〉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큰 경제적 도움[1)]

(단위: %)

구분	부인		남편	
	부	모	부	모
전체				
없음	78.2	85.2	76.0	85.6
생계비지원	0.7	0.4	2.0	0.7
일시적 큰 지출에 지원	2.3	1.1	2.6	1.2
용돈	2.1	2.3	2.5	2.0
기타 물품지원	16.7	11.0	16.9	10.6
계(수)	100.0(4,243)	100.0(7,427)	100.0(3,565)	100.0(6,732)
동부				
없음	78.1	84.9	75.7	85.5
생계비지원	0.6	0.4	2.1	0.6
일시적 큰 지출에 지원	2.4	1.0	2.7	1.2
용돈	2.1	2.4	2.6	1.9
기타 물품지원	16.8	11.3	16.9	10.7
계(수)	100.0(3,609)	100.0(6,207)	100.0(3,037)	100.0(5,597)
읍·면부				
없음	79.2	86.4	77.7	85.8
생계비지원	1.1	0.3	1.1	1.1
일시적 큰 지출에 지원	1.6	1.4	2.3	1.0
용돈	2.2	2.2	2.1	2.2
기타 물품지원	15.9	9.7	16.9	10.0
계(수)	100.0(634)	100.0(1,220)	100.0(5289)	100.0(1,135)

주: 1)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사망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의 금액을 살펴보면, 부인의 부모로부터는 약 9만 9천원, 남편의 부모로부터는 약 15만 3천원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부인의 부모로부터 약 10만 4천원, 남편의 부모로부터 약 15만 1천원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고,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부인의 부모로부터 약 7만 1천원, 남편의 부모로부터 약 16만 4천원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은 약 25

만 2천원이었고,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약 25만 5천원,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약 23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1-13〉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의 총 금액[1)]

(단위: 만원)

구분	부인		남편	
	부	모	부	모
(분석대상수)	(1,894)	(3,385)	(1,627)	(2,839)
전체	4.7	5.2	10.0	5.3
동부	4.8	5.6	9.5	5.6
읍·면부	4.1	3.0	12.9	3.5

주: 1)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사망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어서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도움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 비율은 부인의 부모에게는 약 52.3~56.8% 수준이었고, 남편의 부모에게는 약 58.2~59.6% 수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부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부(父)에게 제공한 비율이,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모(母)에게 제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편의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도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도움의 유형을 살펴보면, 용돈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기타 물품지원, 생계비 지원, 일시적 큰 지출에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생계비 지원인데 남편의 부모에게는 약 7.3~7.8%, 부인의 부모에게는 약 1.9~2.1%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남편부모에게는 약 7.5~8.3%가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읍·면부지역 거주가구의 약 4.7~6.1%보다 높았으며, 또한 동부지역은 남편의 부(父)에게, 읍·면부지역은 남편의 모(母)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도움을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보다는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향이 많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도움을 제공받는 대상자도 남편의 부모가 많았으며, 부인의 부모도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인의 부모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된다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14〉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에게 제공한 가장 큰 경제적 도움[1)]

(단위: %)

구분	부인		남편	
	부	모	부	모
전체				
없음	43.2	47.7	40.4	41.8
생계비지원	2.1	1.9	7.8	7.3
일시적 큰 지출에 지원	2.0	1.7	2.6	2.2
용돈	47.0	43.1	44.4	44.7
기타 물품지원	5.7	5.5	4.8	4.1
계(수)	100.0(4,242)	100.0(7,429)	100.0(3,566)	100.0(6,736)
동부				
없음	42.0	47.7	38.5	41.3
생계비지원	2.3	1.9	8.3	7.5
일시적 큰 지출에 지원	1.9	1.7	2.4	2.2
용돈	48.0	43.6	46.0	45.2
기타 물품지원	5.7	5.0	4.8	3.8
계(수)	100.0(3,608)	100.0(6,208)	100.0(3,037)	100.0(5,599)
읍·면부				
없음	49.7	47.7	51.4	44.0
생계비지원	1.3	1.7	4.7	6.1
일시적 큰 지출에 지원	2.5	1.4	3.6	2.1
용돈	40.9	40.7	35.5	42.1
기타 물품지원	5.7	8.4	4.7	5.7
계(수)	100.0(634)	100.0(1,221)	100.0(529)	100.0(1,137)

주: 1)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사망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 금액을 살펴보면 부인의 부모에게는 약 9만 9천원, 남편의 부모에게는 약 17만 3천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부인의 부모에게 약 10만원, 남편의 부모에

게는 약 17만 9천원의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고,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부인의 부모에게 약 8만 6천원, 남편의 부모에게 약 14만 3천원의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도움은 약 27만 2천원이었고,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약 27만 9천원,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약 22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1-15〉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도움의 총 금액[1)]

(단위: 만원)

구분	부인		남편	
	부	모	부	모
(분석대상수)	(3,385)	(6,176)	(2,901)	(5,790)
전체	5.3	4.6	8.6	8.7
동부	5.5	4.5	9.0	8.9
읍·면부	3.8	4.8	6.4	7.9

주: 1)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가정과 부모사망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제 2 절 자녀의 양육실태

1. 영유아의 양육실태

가. 영유아 및 모의 특성

자녀의 양육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대상은 15~59세 기혼부인과 그들의 자녀이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가구에 있는 모든 아동과 조사대상부인의 자녀로서 양육 등을 위하여 친척집 등 다른 가구에 머무르고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조사대상가구에 살고 있으나 조사대상부인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하고 조사대상부인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주92)]

주92) 따라서 조사대상가구에 있는 조카 등 친인척의 자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조사대상

본 분석을 위한 전체 영유아는 3,679명이었으며, 이 중 취업모의 자녀는 33.9%인 1247명, 비취업모의 자녀는 66.1%인 2,432명이었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영유아 자녀의 연령분포는 <표 11-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16〉 15~49세 기혼부인의 취업유형별 영유아 연령분포

(단위: %)

아동연령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0세	8.1	16.5	13.7
1세	9.8	15.6	13.6
2세	15.6	16.4	16.1
3세	18.5	16.4	17.1
4세	18.4	15.5	16.5
5세	29.6	19.6	23.0
0~2세	33.5	48.5	43.4
3~5세	66.5	51.5	56.6
계(수)	100.0(1247)	100.0(2432)	100.0(3679)

조사대상 기혼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아동분포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양육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의 취업여부와 자녀연령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17>은 기혼부인의 특성별 아동수를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 본 것이다.

영유아의 지역별 분포는 읍·면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이 높았는데, 이는 인구분포가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가구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가족구성으로 보아 취업모의 자녀양육이 가족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영유아를 가진 취업모의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인 경

부인의 자녀이지만 타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였음. 다만 연구의 필요에 따라서는 조사대상가구 내의 친인척의 자녀를 포함하였는데, 이 경우는 별도로 설명을 함.

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200~249만원으로 16.2%를 차지하였으며, 250~259만원은 14.8%로 뒤를 이었다. 영유아 자녀를 가진 비취업모의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2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0~249만원으로 22.3%, 150~199만원 21.5%로 나타나 취업모의 가구소득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1-17〉 15~59세 기혼부인의 특성별 영유아 분포

(단위: %)

특성	취업모의 아동연령			비취업모의 아동연령		
	0~2세	3~5세	전체	0~2세	3~5세	전체
지역						
동부	78.0	77.7	77.8	83.6	86.0	84.8
읍·면부	22.0	22.3	22.2	16.4	14.0	15.2
가구형태						
부부+자녀	74.3	74.7	74.3	84.3	85.3	84.8
기타	26.6	25.3	25.7	15.7	14.7	15.2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1.02	4.3	3.2	4.5	3.0	3.7
100~149만원	5.4	5.5	5.5	11.1	7.7	9.4
150~199만원	7.1	11.3	9.9	22.9	20.0	21.5
200~249만원	14.5	17.1	16.2	24.0	20.7	22.3
250~299만원	15.4	14.5	14.8	16.0	15.9	15.9
300만원 이상	56.6	47.2	50.4	21.6	32.6	27.2
연령						
29세 이하	31.6	14.2	20.0	35.8	16.9	26.1
30~34세	47.8	49.9	49.2	47.2	52.1	49.7
35~39세	13.9	25.6	21.7	12.0	23.3	17.8
40세 이상	6.7	10.3	9.1	5.0	7.7	6.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7	8.7	8.1	6.1	5.6	5.8
고등학교	41.7	54.9	50.5	54.8	58.4	56.6
대학교 이상	51.6	36.4	41.5	39.1	36.0	3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18)	(830)	(1248)	(2064)	(369)	(2433)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부인의 연령은 30~34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5~

39세 이하이었다. 따라서 영유아를 가진 부인 중 30~39세 이하의 부인은 취업모의 70.9%, 비취업모의 67.5%로 매우 높게 나타나 최근의 만혼에 따른 만산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학력이 취업모 50.5%, 비취업모 56.6%, 대학 이상의 학력은 취업모 41.5%, 비취업모는 37.5%로 높게 나타났다.

나. 영유아의 양육실태

영유아는 다양한 형태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영유아 양육형태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전체 영유아의 35.1%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5.4%, '유치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4.4%, '어머니가 돌보면서 보육시설에도 보내는 경우'는 9.7%, '어머니가 돌보면서 유치원에도 보내는 경우'는 13.1%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족의 도움', '사설학원 이용' 등이 있었으며, 특히, 보육시설, 유치원, 사설학원 등 두 가지 이상의 시설보육을 하고 있는 경우도 5.4%나 되었다.

영유아 자녀의 양육실태를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취업모의 영유아 자녀 양육형태는 '가족이나 가족외의 사람의 도움'의 경우가 1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보육시설에만 의존'하는 경우 10.7%,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10.2%, '어머니가 돌보면서 가족이나 가족외의 도움'이 9.3%, '유치원에 전적으로 의존'이 8.8%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영유아 자녀 양육형태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4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어머니가 돌보면서 유치원에도 의존'이15.6%, '어머니가 돌보면서 보육시설에도 의존' 10.6%, '어머니가 돌보면서 사설학원에 의존'이 8.7%이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자녀를 돌봄은 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비취업모인 경우에는 더욱 강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취업모인 경우에도 영유아 양육의 책임은 어머니가 상당히 부담하는 것임도 나

타났다. 그런데 취업을 하고 있으면서, 직접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는 주위에 자녀를 돌봐 줄 친·인척, 보육시설 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이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된다.

〈표 11-18〉 15~59세 기혼부인의 영유아 양육형태

(단위: %)

특성	취업모의 아동연령					비취업모의 아동연령					전체
	0세	1세	2세	3~5세	소계	0세	1세	2세	3~5세	소계	
양육형태의 구성[1]											
양육자 없음	-	-	0.6	-	0.1	-	0.8	-	-	0.1	0.1
어머니가 전적 담당	27.3	22.7	19.0	4.5	10.2	86.8	87.3	70.8	15.5	47.6	35.1
가족(외)[2] 도움	48.5	45.4	21.2	3.3	13.7	1.7	2.4	1.5	0.4	1.1	5.3
시설에만 전적 의존											
유치원	-	-	1.7	12.7	8.8	-	-	0.3	4.1	2.1	4.4
보육시설	-	5.0	15.1	11.8	10.7	-	0.3	3.0	4.4	2.8	5.4
사설학원	-	-	0.6	5.6	3.9	-	0.3	0.8	2.8	1.6	2.4
어머니+가족(외) 도움	23.2	22.7	19.0	3.5	9.3	11.4	5.8	6.3	1.6	4.6	6.2
어머니+시설보육											
어머니+유치원	-	-	2.2	11.5	8.1	-	-	2.5	29.5	15.6	13.1
어머니+보육시설	1.0	2.5	7.8	9.6	8.0	-	1.3	9.6	17.1	10.6	9.7
어머니+사설학원	-	-	0.6	3.2	2.2	-	1.6	4.5	14.9	8.7	6.5
가족(외)도움+시설보육											
가족(외)도움+유치원	-	0.8	0.6	11.6	8.0	-	-	-	1.0	0.5	3.0
가족(외)도움+보육시설	-	0.8	10.6	8.4	7.3	-	0.3	0.3	0.6	0.4	2.7
가족(외)도움+사설학원	-	-	1.1	2.3	1.7	-	-	0.3	0.4	0.2	0.7
2가지 이상의 시설보육				12.0	8.1	-	-	0.3	7.8	4.0	5.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수)	(99)	(119)	(179)	(820)	(1217)	(402)	(379)	(397)	(1251)	(2429)	(3646)
시설의 종류별 이용률[3]											
보육시설	1.0	8.4	32.6	34.0	28.2	-	1.3	12.6	23.4	14.3	18.9
유치원	-	0.8	4.6	46.5	32.0	-	-	2.6	41.1	21.4	24.9
학원	-	-	2.2	24.6	13.1	-	0.5	5.9	29.7	16.4	15.3

주: 1) 한 아동당 중요한 양육방식 순으로 3가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아동의 5%만이 3가지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식까지의 조합을 통하여 양육방식을 살펴보았음.

2) 파출부, 가정부, 이웃, 위탁모, 아동지도원 등 비가족원에 의해서 가정보육되는 경우

3) 각 시설 이용률은 조사된 양육방식 3가지 중 한 번이라도 언급된 경우를 포함하여 산출되었음.

다른 한편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중 어느 기관을 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자녀는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비취업모의 자녀는 유치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과거에는 영아(0~2세)의 경우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취업모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비취업모의 자녀에게서도 어느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어릴 때부터 자녀의 교육을 시설에 의존하려는 최근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조사대상가구에 살고있는 전체 영유아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이들 아동이 다수의 양육자 및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한 분석결과는 <표 11-18>에 나타났다.주93) 아동양육자 및 이용시설 유형을 보면, 현재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7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이 각각 22.2%, 24.8%로 유사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가족의 보살핌 18.1%, 과외·학원의 이용률 16.3%의 순이었으며, 아동혼자 있는 경우는 0.1%로 나타나 2000년의 조사결과 나타난 6.7%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표 11-19〉 0~5세 아동의 자녀양육자 및 이용시설의 유형[1)]

(단위: %)

구분	본인	가족	파출부·이웃	혼자	보육시설	유치원	과외·학원	기타[2)]	(수)
전체	74.3	18.1	2.0	0.1	22.2	24.8	16.3	7.6	(3,775)

주: 1) 중복응답이며, 조사대상가구에 살고 있는 전체 영유아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에는 아동지도원, 장애인복지시설, 비츠교육(놀이) 등이 포함됨

특히 영아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와 같은 보육을 담당하는 시설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립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연령별 현 자녀양육자 및 이용시설 유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가구에 있는 아동의 주 양육자는 기혼부인 본인으로 주로 자신에 의해 아동이 양육되고 있었으며(83.8%), 가족에 의해 돌봄

주93) 부인의 자녀로서 가구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을 받거나(20.7%),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경우는 12.0%로 나타났다. 0세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은 1.2%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출부나 이웃에 맡기는 경우(2.0%)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0〉 영아 연령별 현 자녀양육자 및 이용시설 유형[1)]

(단위: %)

구분	본인	가족	파출부·이웃	혼자	보육시설	유치원	과외·학원	기타[2)]	(수)
0세	88.6	22.9	2.0	-	1.2	-	-	1.0	(511)
1세	83.2	20.2	4.3	0.6	7.1	0.2	1.3	2.1	(524)
2세	80.3	19.2	3.6	0.2	25.5	3.2	5.0	7.1	(603)
전체	83.8	20.7	3.4	0.2	12.0	1.2	0.4	3.6	(1638)

주: 1) 중복응답이며, 조사대상가구에 살고 있는 전체 영유아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에는 아동지도원, 장애인복지시설, 비츠교육(놀이) 등이 포함됨.

현재 0~5세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4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36.2%, 법인보육시설 20.3% 등의 순이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률은 취업모 자녀는 41.3%, 비취업모 자녀는 42.3%로 모두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시설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경우 모두 민간보육시설이었다(표 11-21 참조).

〈표 11-21〉 15~59세 기혼부인의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운영주체

(단위: %)

구분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국·공립	41.3	42.3	41.9
법인	20.5	20.0	20.3
민간	36.1	36.2	36.2
직장	1.6	0.6	1.0
장애인	0.3	0.3	0.2
기타	0.1	0.6	0.4
계(수)	100.0(460)	100.0(793)	100.0(1253)

그런데 2000년 6월 현재 전체 보육시설 중에서 민간보육시설은 80.3%를 차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은 6.7%에 불과하며, 법인보육시설은 10.3%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타 유형의 보육시설보다 월등히 많아 보육서비스가 질적인 측면에서 양호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00년 자료로 보완 필요

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보내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학원, 유치원이 교육효과가 크기 때문'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다음 이유로는 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다 '본인, 가까운 사람이 돌보아 주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가 19.9%로 나타나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태도가 부정적인 측면이 높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육료 부담'(8.1%), '가까운 곳에 돌보아 줄 사람 있음'(3.9%) 등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학원, 유치원이 교육효과가 큼'은 동부지역의 아동의 60.3%, 읍·면부지역이 49.9%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어 보육시설에서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2세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 기혼부인의 76.5%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주된 이유로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3세 이상 유아를 돌보는 기혼부인의 68.7%가 '교육효과가 큰 기관인 학원이나 유치원'으로 자녀를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영아시설에서의 적절한 보호와 유아시설에서의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제공하는 적극적으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부인이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교육효과가 큰 기관인 학원이나 유치원'으로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비율이 6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으로 11.4%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비취업부인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효과가 큰 기관인 학원이나 유치원'으로 자녀를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이 5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이 26.3%로 뒤를 이었다.

〈표 11-22〉 15~59세 기혼부인의 특성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

(단위: %)

특성	본인, 가까운 사람이 안심	가까운 곳에 돌봐줄 곳이 있음	2세 미만이라 거절함	보육 시간 맞지 않음	보육료가 부담됨	학원, 유치원이 교육효과 가큼	아이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음	기타	계(수)
전체	19.9	3.9	2.1	1.5	8.1	58.7	1.1	4.6	100(6,955)
지역									
동부	19.7	3.5	2.1	1.6	7.6	60.3	1.0	4.3	100(5,884)
읍·면부	21.4	6.4	2.4	0.9	11.1	49.9	1.7	6.4	100(1,071)
아동연령									
0~2세	76.5	1.8	9.7	0.5	7.1	2.1	0.1	2.2	100(1,431)
3~5세	10.2	3.4	0.3	1.8	9.0	68.7	0.4	6.1	100(1,489)
취업여부									
취업	11.4	5.1	1.3	2.3	8.0	64.2	1.9	5.8	100(2,770)
비취업	26.3	3.0	2.7	0.8	6.8	56.1	0.4	3.9	100(3,967)
직업									
무직(전업주부)	26.3	3.0	2.7	0.8	6.8	56.1	0.4	3.9	100(3,967)
고위공무원 및 관리직	-	-	-	-	-	57.2	-	42.8	100(5)
전문직	14.4	4.6	3.0	2.7	2.7	68.4	1.2	3.0	100(303)
준전문직	17.7	4.4	2.9	2.2	5.0	60.8	1.1	5.9	100(260)
사무직	19.6	5.8	1.9	3.4	3.5	56.6	1.7	7.5	100(383)
기능직	10.3	4.8	0.8	2.0	8.4	65.8	2.1	5.7	100(1,066)
기계·장치조작원	9.1	4.4	-	4.5	6.2	65.2	3.3	7.4	100(118)
단순노무직	4.1	3.5	-	1.4	10.6	75.3	0.7	4.4	100(155)
학생	5.6	3.9	-	1.7	17.1	65.2	1.7	4.8	100(337)
기타	2.6	14.6	1.6	1.9	12.4	53.7	4.2	9.1	100(133)

주: 1) 조사대상가구에 살고 있는 전체 영유아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에는 자녀가 가기 싫어서/적응 못해서, 시설사정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키우고 싶어서,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아서 등이 포함됨.
3) 실수가 적어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함.

부인의 직업특성별로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전 직종에서

‘교육효과가 큰 기관인 학원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단순노무직의 10.6%는 ‘보육료가 부담됨’이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내지 않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육시설 이용률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저조하였으므로 영아의 각 연령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본인 또는 가까운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이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세 미만이라서 시설에서 거절함’의 경우도 9.7%나 되었다. 이는 영아보육시설에 있어 첫 번째 선결조건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함을 말하며, 나아가 현재 영아보육시설 설치나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그 이유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11-23〉 영아 연령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

(단위: %)

특성	본인, 가까운 사람이 안심	가까운 곳에 돌봐줄 곳이 있음	2세 미만이라 거절함	보육 시간이 맞지않아서	보육료가 부담됨	학원, 유치원이 교육효과가 큼	아이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음	기타	계(수)
0세	86.8	1.5	10.2	-	0.8	-	-	0.7	100.0(503)
1세	74.8	1.7	13.8	0.7	6.3	0.9	0.3	1.6	100.0(484)
2세	66.9	2.2	4.6	0.8	15.2	5.7	-	4.6	100.0(445)
전체	76.5	1.7	9.7	0.5	7.2	2.0	0.1	2.2	100.0(1,432)

주: 1) 기타에는 자녀가 가기 싫어해서/적응 못해서, 시설사정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키우고 싶어서,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아서 등이 포함됨.

라. 향후 아동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여부

아동의 보육 또는 교육을 위한 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는 아동양육과 관련한 보육시설, 교육기관 등의 수요공급을 예측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가진 15~59세 기혼부인이 향후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가진 기혼부인의 39.1%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희망률을 보면, 0세아 67.3%, 1세아 64.9%, 2세아 53.9%로 매우 높게 나타나 영아전담보육시설의 확충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표 11-24 참조).

〈표 11-24〉 0~5세 아동을 가진 기혼부인의 향후 보육시설 및 아동교육기관 이용률 및 이용기관

(단위: %)

구분	이용률	이용기관				(수)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기타[1]	
취업모						
0세	82.4	77.1	16.9	2.4	3.6	(83)
1세	91.8	69.6	26.8	1.8	1.8	(112)
2세	91.3	59.4	32.2	3.3	5.0	(180)
3~5세	95.4	28.5	47.3	21.4	2.8	(790)
비취업모						
0세	69.9	64.4	27.3	4.7	3.6	(275)
1세	87.4	63.5	26.7	4.0	5.8	(329)
2세	92.7	50.8	34.1	10.2	4.9	(364)
3~5세	96.0	21.5	45.4	28.4	4.7	(1,202)
전체	90.9	39.1	39.3	17.5	4.1	(3,333)
0세	75.0	67.3	24.9	4.2	3.6	(358)
1세	80.0	64.9	26.9	3.4	4.8	(442)
2세	90.0	53.9	33.5	7.7	4.9	(542)
3~5세	88.9	24.3	46.2	25.6	3.9	(1,991)

주: 1) 학습지, 위탁모, 아기 스포츠단, 비츠교육 등이 포함됨.

취학전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고자 하는 경우는 취업모가 93.4%, 비취업모가 89.8%로 가정에서의 양육보다는 보육시설에서의 양육을 대다수가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향상과 안전성의 요소가 해결되어서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녀에 대한 보육의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미취학아동에 대한 시설양육에의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25〉 미취학 아동[1)]을 가진 15~59세 기혼부인의 보육시설 이용희망률

(단위: %)

아동연령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0세	82.4	69.9	72.6
1세	91.8	87.4	88.1
2세	91.3	92.7	92.2
3~5세	95.4	96.0	95.6
전체	93.4	89.8	90.9

주: 1) 미취학 아동이 1명 이상인 경우는 나이가 어린 자녀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이용희망률을 산출하였음.

2. 취학자녀의 양육실태

가. 취학자녀 및 모의 특성

본 조사에서 취학 연령 자녀를 둔 기혼부인 중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인은 47.8%이었으며, 고학년 자녀를 둔 부인은 52.2%이었다. 자녀의 학년차이는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저학년의 경우는 취업모가 45.2%, 비취업모가 50.5%로 비취업모가 5.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학년의 경우는 취업모가 54.8%, 비취업모가 49.5%로 취업모의 경우가 5.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하지 않으나, 자녀가 고학년이 될 수록 사교육비 등의 문제로 취업하는 어머니가 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표 11-26〉 15~59세 기혼부인의 아동연령별 초등학교 아동분포

(단위: %)

구분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저학년	45.2	50.5	47.8
고학년	54.8	49.5	52.2
계(수)	100(2161)	100(2098)	100.0(4259)

조사대상 기혼부인의 자녀학령별 특성을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비추

어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35~39세의 연령대가 48.9%, 비취업모는 54.3%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령대의 고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취업모는 51.4%이었으며, 비취업모의 경우는 61.5%가 이에 해당하였다. 반면, 40세 이상 연령대의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저학년과 고학년의 자녀분포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취업으로 인해 자녀출산의 지연에 의한 영향으로 추측된다.

〈표 11-27〉 아동학령별 기혼부인 특성

(단위: %)

특성	취업모			비취업모		
	저학년	고학년	전체	저학년	고학년	전체
지역						
동부	80.6	83.1	82.0	87.7	89.5	88.6
읍·면부	19.4	18.0	18.0	12.3	10.5	11.4
가구형태						
부부+자녀	77.5	77.1	77.3	90.2	89.5	89.9
기타	22.5	22.9	22.7	9.8	10.5	10.1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5.3	5.0	5.1	3.7	3.3	3.5
100~149만원	4.7	7.8	6.4	5.2	6.3	5.7
150~199만원	11.2	10.1	10.6	14.3	12.4	13.3
200~249만원	16.3	16.6	16.5	17.8	15.9	16.9
250~299만원	14.8	13.4	14.1	17.3	14.4	15.9
300만원 이상	47.7	47.0	47.3	41.7	47.7	44.7
연령						
29세 이하	3.5	0.2	1.7	3.4	0.9	2.1
30~34세	33.2	15.7	23.6	37.5	12.2	25.0
35~39세	45.9	51.4	48.9	47.3	61.5	54.3
40세 이상	17.4	32.7	25.8	11.9	25.4	18.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4	14.2	12.5	5.7	8.6	7.1
고등학교	60.1	60.4	60.2	58.8	56.9	57.9
대학교 이상	29.6	25.4	27.3	35.5	34.6	3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76)	(1184)	(2160)	(1060)	(1038)	(2098)

교육수준은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보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에서 낮은 분포

를 나타내고 있었다. 지역별 특성에서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읍·면부의 비취업모의 분포가 11.4%인데 반하여 취업모의 경우 18.0%에 달하고 있었는데, 이는 농·임·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분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소득 수준을 보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각각 47.3%, 4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00~249만원이 각각 16.5%, 16.9%를 차지하였다.

나. 취학아동의 양육실태

초등학교 자녀의 양육형태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가장 핵심적인 영유아 양육형태와는 달리 '어머니가 돌보면서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45.2%(취업모 26.5%, 비취업모 6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설학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로 취업모가 42.9%, 비취업모가 17.2%로 나타났다.

방과후 보육과 관련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방과후 아동교실 및 공부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은 취업모 2.7%, 비취업모 0.2%이었고, 어머니가 돌보면서 병행하여 방과후 아동교실 및 공부방을 이용하는 비율은 취업모 1.5%, 비취업모 2.0%, 그리고 가족(외) 도움과 방과후 아동교실 및 공부방을 이용하는 경우는 취업모 0.6%이었고, 비취업모는 거의 없었다.

이와는 달리 사설학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사설학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취업모 42.9%, 비취업모 29.9%이었고, 어머니가 돌보면서 병행하여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취업모 26.5%, 비취업모 45.2%이었으며, 그리고 가족(외) 도움을 병행하여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취업모 9.7%, 비취업모 5.3%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모는 사설학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자녀양육은 방과후 보육 또는 공부방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설학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이는 취업모 자녀의 경우에 더욱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점은 후술하는 자녀양육비 중 높

은 사교육비와 직결되는 것이라 하겠다.

〈표 11-28〉 15~59세 기혼부인의 아동학령별 보육유형 및 시설이용률

(단위: %)

특성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보육방법의 구성[1]							
양육자 없음	0.5	0.8	0.7	-	-	-	0.3
어머니가 전적 담당	7.3	6.6	6.9	11.3	9.5	10.4	8.7
가족(외)[2] 도움	2.7	2.1	2.4	0.4	0.8	0.6	1.5
시설에만 전적 의존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3.5	2.0	2.7	0.3	0.2	0.2	1.4
사설학원	40.9	44.5	42.9	15.1	19.3	17.2	29.9
어머니+가족(외) 도움	2.3	1.0	1.6	1.8	1.6	1.7	1.6
어머니+시설보육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1.6	1.3	1.5	2.8	1.2	2.0	1.7
사설학원	23.5	29.0	26.5	63.8	63.3	63.5	45.2
가족(외)도움+시설보육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1.1	0.3	0.6	-	0.1	-	0.3
사설학원	11.0	8.7	9.7	0.6	1.3	0.9	5.3
2가지 이상의 시설보육	5.6	3.7	4.5	4.0	2.8	3.4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29)	(1,118)	(2,047)	(1,060)	(1,032)	(2,092)	(4,139)
시설의 종류별 이용률[3]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13.1	7.7	10.2	9.4	4.8	7.1	8.6
학원	82.9	87.5	85.4	84.9	87.7	86.3	85.9

주: 1) 한 아동당 중요한 양육방식 순으로 3가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아동의 5%만이 3가지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식까지의 조합으로 살펴봄.
2) 파출부, 가정부, 이웃, 위탁모, 아동지도원 등 비가족원에 의해서 가정보육되는 경우.
3) 각 시설 이용률은 조사된 양육방식 3가지 중 한 번이라도 언급된 경우를 포함하여 산출되었음.

제 3 절 자녀양육비 실태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인구학적 측면에서 자녀부양부담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의 높은 자녀교육열과 자녀의 다양한 복지욕구

등은 자녀를 위한 교육비 및 양육비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김승권 외, 2003). 특히 한국사회에서 사교육비의 증가주94)는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사실이다.주95)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은 빈곤가족의 부적절한 자녀양육의 주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자녀의 양육비 규모의 추정은 개별가구 측면에서는 출산과 관련한 각종 의사결정, 가계예산 수립, 생애주기를 통한 가계재무관리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빈곤이나 소득분배, 공공복지정책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양육비 측정은 자녀의 비용과 관련하여 가계의 자녀수 결정 또는 출산과 관련한 경제적 접근의 연구분야, 인적자본 연구분야, 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관련한 연구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또한 자녀의 존재는 가계의 총지출, 지출패턴, 소득배분구조 등 가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모의 취업결정, 시간사용구조 등의 측면에도 영향을 준다(허경옥, 1997). 그러나 자녀양육비 추정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의 자녀양육비 지출규모와 이러한 자녀양육비 지출규모의 실제 가계의 부담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실제 가구소비지출 중 18세 미만의 자녀주96)에게 소비되는 지출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소비지출의 구조별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구원 모두의 가구소비지출 항목으로 10개를 분류하였으며, 이는 식료품비,

주94)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교육비의 문제는 학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차등적으로 주어짐으로써 경제력에 따라 실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양과 질의 차이를 증폭시켜 저소득층의 교육부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주95) 통계청 자료(2002)에 의하면, 연간소비지출 중 교육비 지출률은 도시가구의 경우 1980년에 5.8%이었으나 1990년에 8.1%, 그리고 2001년에 11.1%로 증가하였고, 농촌가구의 경우는 각각 9.4%(1980년), 10.5%(1990년), 그리고 9.7%(2001년)이었음. 이러한 교육비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72.5%(2000년)이었으며, 부담원인 중에서는 각종 과외비, 즉, 사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는 비율이 56.0%나 되었음.

주96) 조사대상 자녀에는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로 하였으며, 재수생과 대학생은 18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포함하였음.

피복비,[주97]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 등이다[주98]. 이 중에서 식료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는 자녀순위별 지출액을 각각 질문하여 자녀의 소비지출 규모를 파악하였다. 각 소비지출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29〉 지출항목별 내용

항목	내용
식료품비	• 곡류, 육류, 낙농류, 어패류, 채소, 해조류, 과실류,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외식비(학교급식비 포함), (각종 이유식)
피복비	• 외의, 스웨터, 셔츠, 내의, 직물, 기타 피복, 신발 등(양말, 모자, 운동화, 교복, 종이기저귀, 세탁비, 수선비 등)
보건의료비	•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안경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비 및 입원비 등)/(영양제, 한약제)
교육비	• 유치원비, 초·중·고등학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교과서 및 기타 학교교재, 참고서, 학습용 테이프), 문방구비
보충교육비	•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미술·기타 예능계 학원 등
주거 및 광열 수도비	• 주택설비 및 수선비, 공동주택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연료비(도시가스, 기름) 등
가구집기·가사용품비	• 일반가구, 가정용기기, 식기 주방용품, 침구 및 직물제품, 실내장식품(커텐 등 포함)
교양오락비	• 신문, 잡지, 도서, 교양오락기구(TV, 오디오, 컴퓨터 등)구입, 극장입장료, 스포츠관람료, 스포츠시설 이용료, 문화시설 입장료, 교양오락강습료, 사진대, 단체여행비 등/(완구, 오락기기 구입)
교통통신비	•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자동차구입, 연료비, 정비수리비, 자동차보험료 등), 통신비(일반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및 PC 통신이용료, 기타 통신/(스쿨버스비)
기타 소비지출	• 담배, 술, 이·미용비(목욕비 포함), 장신구(가방, 핸드백 등)구입비, 종교관계비, 회비 및 교제비, 경조금, 기타 잡비(용돈 등)

주97) 일반적으로 피복비라 함은 신발이나 장신구까지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함.

주98) 가계소비지출은 응답자 가구의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합으로 계산되며, 소비지출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출임.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비소비지출, 즉, 법적 또는 제도에 의한 의무적 지출로써 소득세, 재산세 등의 각종 조세와 기여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가구소비 지출조사에서 제외하였음.

1. 가구의 자녀양육비 구조 및 규모

가. 가구의 자녀양육비의 구조

가구특성별 가족공통비용 중 자녀 몫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55만 6천원이었는데, 이를 소비지출 항목별로 보면 기타 소비지출이 26만 2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통신비 15만 5천원이었고, 주거 및 광열수도비 9만 1천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가구가 56만원으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의 53만 2천원보다 많았다.

가구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가족공통 비용 중 자녀 몫의 비용도 점차 증가하여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의 가구에서는 27만 3천원, 100~199만원 가구에서는 33만원, 200~299만원 가구는 45만 5천원, 300~399만원 가구는 59만 5천원, 400~499만원 가구는 73만 3천원, 그리고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116만 7천원으로 증가하여 가구소득에 따라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표 11-30〉 가구특성별 평균 자녀양육비: 공동비용 중 자녀 몫

(단위: 가구, 만원)

특성	(분석대상 가구)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계
전체	(8,199)	9.1	1.6	3.2	15.5	26.2	55.6
지역							
동부	(6,808)	9.2	1.7	3.4	15.4	26.3	56.0
읍·면부	(1,391)	8.5	1.1	2.2	15.4	26.0	53.2
가구소득							
99만원 미만	(493)	7.3	0.6	1.0	7.9	10.4	27.3
100~199만원	(1,747)	7.4	0.8	1.4	10.1	13.3	33.0
200~299만원	(2,509)	8.2	1.1	2.3	13.7	20.2	45.5
300~399만원	(1,628)	9.1	1.6	3.5	17.2	28.1	59.5
400~499만원	(752)	9.9	2.0	4.4	19.5	37.5	73.3
500만원 이상	(906)	14.5	4.1	8.4	27.2	62.5	116.7

다음의 <표 11-31>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개인비용을 지출항목별로 제시한

것이다. 자녀의 개인비용은 80만 2천원이었으며, 지출항목별로는 자녀 사교육비(26만 6천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식료품비(22만 5천원), 자녀 교육비(21만 6천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자녀의 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할 경우 48만 2천원으로 전체 자녀개인비용의 60.1%나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피복 및 신발비(6만 5천원), 보건의료비(3만원) 등이 있었다.

자녀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개인비용은 동부지역 거주가구가 83만 9천원으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의 61만 4천원보다 현저히 많았다. 특히 사교육비에서 차이가 가장 컸는데, 동부지역은 28만 7천원, 읍·면부지역은 15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자녀양육비용은 정비례 관계를 보여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자녀양육 비용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공통비용과 개인비용 모두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계층의 사교육비는 9만 5천원이었지만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67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의 경우는 사교육비보다는 차이가 덜 하였으나 2배 이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표 11-31〉 가구특성별 평균 자녀양육아 개인비용 중 자녀 몫

(단위: 만원)

특성	(분석대상 가구)	식료품비	피복비 및 신발	보건 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계
전체	(8,199)	22.5	6.5	3.0	21.6	26.6	80.2
지역							
동부	(6,808)	23.1	6.8	3.0	22.3	28.7	83.9
읍·면부	(1,391)	19.4	5.3	2.7	18.1	15.9	61.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93)	16.2	3.3	1.7	14.4	9.5	45.1
100～199만원	(1,747)	17.9	4.3	2.3	15.9	12.5	52.9
200～299만원	(2,509)	20.5	5.6	2.6	19.5	20.3	68.5
300～399만원	(1,628)	24.2	7.5	3.3	23.7	29.2	87.9
400～499만원	(752)	26.0	8.5	3.4	26.6	34.2	98.7
500만원 이상	(906)	33.4	11.7	4.8	33.0	67.0	149.9

나. 가구의 자녀양육비 규모

본 조사결과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는 135만 8천원으로 가구원 공통비용 중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의 자녀 관련 비용은 55만 6천원이었고, 자녀만의 비용은 80만 2천원이었다. 또한 전체 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290만 2천원, 소비지출액은 236만 5천원으로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8%이었고,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7.4%나 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300만 7천원, 소비지출액은 243만 7천원으로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5%이었고,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7.4%나 되었다. 읍·면부지역 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239만원, 소비지출액은 201만 1천원으로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7.9%이었고,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7.0%로 지역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낮은 99만원 이하의 가구는 월 평균 가구소득은 59만 3천원, 소비지출액은 124만 1천원이었고, 월소득 100~199만원 이하의 가구는 월 평균 가구소득은 147만 6천원, 소비지출액은 150만 1천원으로 이 소득계층에서는 부채에 의하여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살펴보면, 월소득 99만원 이하의 가구는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1%이었고,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8.3%이었으며, 월소득 100~199만원 이하의 가구는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8.2%이었고,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7.2%이었다. 따라서 이들 소득계층에서는 빚을 내어 생활과 자녀양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추가자녀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계층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소득대비 자녀양육비의 비율이 40% 대로 저하되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 비율은 낮아 자녀양육부담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대비 자녀양육비의 비율은 소득계층별로 약 56.9~58.3%의 범주에 있었다.

〈표 11-32〉 가구특성별 평균 자녀양육비

(단위: 가구, 만원, %)

특성	(분석대상 가구)	가구 소득 (A)	가구 소비 (B)	자녀양육비			소득대비 자녀양육비 비율 (C/A*100)	소비대비 자녀양육비 비율 (C/B*100)
				소계	공통비용중 자녀몫[1]	자녀 개인 비용		
전체	(8,199)	290.2	236.5	135.8	55.6	80.2	46.8	57.4
지역								
동부	(6,808)	300.7	243.7	139.9	56.0	83.9	46.5	57.4
읍·면부	(1,391)	239.0	201.1	114.6	53.2	61.4	47.9	57.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93)	59.3	124.1	72.4	27.3	45.1	122.1	58.3
100~199만원	(1,747)	147.6	150.1	85.9	33.0	52.9	58.2	57.2
200~299만원	(2,509)	235.9	200.3	114.0	45.5	68.5	48.3	56.9
300~399만원	(1,628)	327.6	256.1	147.4	59.5	87.9	45.0	57.6
400~499만원	(752)	425.6	305.9	172.0	73.3	98.7	40.4	56.2
500만원 이상	(906)	662.6	458.0	266.6	116.7	149.9	40.2	58.2

주: 1) 가족공통경비를 동거가구원수로 나눈 것임.

2. 개별아동의 양육비 구조 및 규모

가. 개별아동의 자녀양육비 구조

가족공동 지출비목 중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29만 4천원이었으며, 구조를 살펴보면, 기타 소비지출이 13만 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통통신비 8만 2천원, 주거 및 광열수도비 4만 8천원, 교양오락비 1만 7천원,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9천원 등이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가족공통경비의 평균 자녀양육비도 많아져 99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15만 7천원이었으나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는 57만 8천원으로 소득계층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남아는 월평균 29만 8천원, 여아는 28만 9천원이었다.

그러나 자녀연령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 영아(0~2세)가 유아(3~5세)보다 평균 5천원이 더 지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녀연령이 증가할수록 비

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와 자녀의 특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기타 소비지출과 교통통신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었다.

〈표 11-33〉 자녀 1인당 평균 자녀양육비의 구조: 가족공동비용 중 개인자녀 몫

(단위: 만원)

특성	(분석 아동수)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계
전체	(14,221)	4.8	0.9	1.7	8.2	13.8	29.4
지역							
동부	(11,884)	5.0	0.9	1.8	8.3	13.9	29.9
읍·면부	(2,337)	4.3	0.6	1.1	7.8	13.0	26.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765)	4.1	0.3	0.6	4.6	6.1	15.7
100~199만원	(2,893)	4.1	0.4	0.8	5.6	7.1	18.0
200~299만원	(4,360)	4.3	0.6	1.2	7.2	10.4	23.7
300~399만원	(2,954)	4.7	0.8	1.8	8.6	14.0	29.9
400~499만원	(1,301)	5.2	1.0	2.3	10.1	19.1	37.7
500만원 이상	(1,640)	7.3	2.1	4.1	13.6	30.7	57.8
자녀의 성							
남아	(7,564)	4.8	0.9	1.7	8.3	14.1	29.8
여아	(6,654)	4.9	0.8	1.7	8.1	13.4	28.9
자녀연령							
0~ 2세	(1,586)	4.4	0.9	1.6	7.4	12.7	26.9
3~ 5세	(1,940)	4.3	1.0	1.5	7.1	12.5	26.4
6~11세	(4,429)	4.7	0.8	1.7	7.6	12.6	27.4
12~14세	(2,021)	4.9	0.8	1.7	8.1	13.5	29.0
15~17세	(1,905)	5.0	0.8	1.6	9.0	14.1	30.5
18세 이상	(2,337)	5.6	0.9	1.9	10.4	18.1	36.9

주: 가족공통비용은 모든 가구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자녀 1인당 개인비용이 지출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교육비 15만 2천원, 식료품비 12만 7천원, 교육비 12만 1천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항목이었으며, 그 외에 의복·신발비(3만 7천원), 보건의료비(1만 7천원)등도 있었다.

거주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자녀개인비용으로 1인당 47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읍·면부지역은 34만 1천원으로 지역간에 현저한 차이가 났다. 특히 사교육

비는 약 2배 차이가 있었는데, 동부지역은 한 자녀당 16만 3천원, 읍·면부지역은 한 자녀당 8만 8천원이 지출되었다.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자녀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개인비용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4〉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의 구조: 자녀 개인비용

(단위: 만원)

특성	(분석 아동수)	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계
전체	(14,221)	12.7	3.7	1.7	12.1	15.2	45.4
지역							
동부	(11,884)	13.0	3.8	1.7	12.5	16.3	47.3
읍·면부	(2,337)	10.8	2.9	1.5	10.1	8.8	34.1
가구소득							
99만원 미만	(765)	10.2	2.2	1.1	9.4	5.9	28.8
100~199만원	(2,893)	10.5	2.5	1.4	9.4	7.8	31.6
200~299만원	(4,360)	11.5	3.1	1.5	11.0	11.4	38.5
300~399만원	(2,954)	13.1	4.0	1.8	12.7	15.7	47.3
400~499만원	(1,301)	14.4	4.7	1.9	14.8	19.0	54.8
500만원 이상	(1,640)	18.1	6.1	2.5	17.3	35.6	79.6
자녀의 성							
남아	(7,564)	13.0	3.6	1.7	11.8	14.9	45.0
여아	(6,654)	12.3	3.8	1.6	12.5	15.2	45.4
자녀연령							
0~ 2세	(1,586)	11.0	4.6	2.6	1.4	3.6	23.2
3~ 5세	(1,940)	10.1	3.0	1.9	7.8	10.8	33.6
6~11세	(4,429)	12.0	3.1	1.5	2.9	19.0	38.5
12~14세	(2,021)	13.5	3.4	1.8	5.1	23.9	47.7
15~17세	(1,905)	14.6	3.6	1.5	14.5	22.4	56.6
18세 이상	(2,337)	14.9	4.8	1.3	42.8	5.5	69.3

나. 개별아동의 자녀양육비 규모

가구 및 자녀특성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를 살펴보면, 가족공동 경비중 개인자녀의 몫은 29만 4천원이었고, 자녀개인비용은 45만 4천원으로 자녀 1인당 양육비는 74만 8천원이었다.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77만 2천원,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60만 9천원으로 지역별 자녀 1인당 양육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절대금액만 가지고 비교할 경우 도시지역에서 자녀양육부담이 농촌지역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양육비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연령별로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 영아(0~2세)는 월평균 50만 1천원이 양육비로 지출되며, 18세 이상의 자녀는 106만 2천원이 지출되어 약 2배의 차이가 있었다.

〈표 11-35〉 가구 및 자녀 특성별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

(단위: 만원)

특성	가족 공통비용 중 개인자녀 몫	자녀 개인비용	계
전체	29.4	45.4	74.8
지역			
동부	29.9	47.3	77.2
읍·면부	26.8	34.1	60.9
가구소득			
99만원 미만	15.7	28.8	44.5
100~199만원	18.0	31.6	49.6
200~299만원	23.7	38.5	62.2
300~399만원	29.9	47.3	77.2
400~499만원	37.7	54.8	92.5
500만원 이상	57.8	79.6	37.4
자녀의 성			
남아	29.8	45.0	74.8
여아	28.9	45.4	74.3
자녀연령			
0~ 2세	26.9	23.2	50.1
3~ 5세	26.4	33.6	60.0
6~11세	27.4	38.5	65.9
12~14세	29.0	47.7	76.7
15~17세	30.5	56.6	87.1
18세 이상	36.9	69.3	106.2

제 4 절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실태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한국가족의 부양관계 및 자녀양육 실태를 검토하였다. 가족부양 관계는 주로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이 보다는 적지만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도움의 정도는 크지 않아 노부모부양을 성인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부모들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가계부담이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결국 한국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교육이며, 노부모 부양은 그 뒷전이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노부모가 능력이 있는 경우는 큰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미리 준비하도록 사회보장제도가 안정되어야 할 것임과 아울러 노인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지출되는 과다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과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할 것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 자녀양육비 지원 등이 요구되며, 후자를 위해서는 노인부양 비용의 세금감면, 노인복지의 확충 등이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제 1 2 장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욕구

제 1 절 가족관계

1. 부부관계

가. 가사분담 형태

부부관계는 가사분담형태와 중요한 집안 사건에 대한 결정방식에 의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부부의 가사분담형태는 여덟 가지 유형으로 접근하였는데 ①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②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③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④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⑤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⑥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⑦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그리고 ⑧ 남편이나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등이다.

부부의 가사분담형태를 살펴보면,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3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33.6%로 많았다. 그리고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도 18.4%로 많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인의 취업여부를 떠나서 양육과 가사는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출산율의 저하와도 직결될 것이다.

〈표 12-1〉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분담 형태

(단위: %)

특성	①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②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③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④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⑤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⑥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⑦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⑧ 남편이나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38.6	33.6	0.6	4.2	18.4	0.7	2.4	1.4	100.0(9,882)
지역									
동부	41.8	30.0	0.7	4.3	18.6	0.7	2.5	1.3	100.0(8,076)
읍·면부	24.0	49.7	0.4	3.9	17.8	0.9	1.7	1.7	100.0(1,80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6.7	25.5	0.2	2.5	42.5	1.1	4.9	6.7	100.0(652)
100~199만원	43.1	28.7	0.5	2.2	20.9	0.7	2.5	1.5	100.0(2,177)
200~299만원	40.2	33.8	0.6	3.8	16.9	0.8	2.6	1.2	100.0(2,968)
300만원 이상	38.2	38.2	0.7	5.9	14.1	0.6	1.7	0.6	100.0(3,837)
응답자 성									
남자	25.8	37.3	2.2	6.6	17.4	3.2	2.7	4.7	100.0(740)
여자	39.6	33.3	0.5	4.0	18.5	0.5	2.4	1.1	100.0(9,144)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47.2	22.9	0.4	8.7	16.0	0.2	3.4	1.2	100.0(931)
30~39세	45.5	31.4	0.8	4.3	14.7	0.5	2.2	0.8	100.0(3,634)
40~49세	34.0	39.6	0.6	3.9	18.1	0.8	1.9	1.0	100.0(3,397)
50세 이상	29.5	32.5	0.5	2.5	27.3	1.4	3.1	3.2	100.0(1,920)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7.0	41.0	0.5	2.8	23.3	1.3	2.4	1.8	100.0(2,916)
고등학교	43.5	30.4	0.8	4.0	17.4	0.5	2.1	1.3	100.0(4,449)
대학 이상	43.1	30.8	0.6	6.3	14.8	0.6	2.9	1.0	100.0(2,548)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6.4	63.2	1.2	7.5	17.0	0.9	2.4	1.4	100.0(5,114)
비취업	73.0	1.9	0.1	0.7	20.0	0.6	2.3	1.4	100.0(4,768)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반면에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가사분담을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는 4.2%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도

2.4%가 있었음은 특기할 사실이다. 이들 두 가지 유형의 가사분담 형태는 동부지역 거주가구가, 젊은 부인들이,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부권력 관계

본 연구에서는 기혼가구의 부부권력관계를 일상생활비 지출,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지표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응답 항으로는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등의 5점 척도에 의하였다.

먼저 일상생활비 지출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33.6%,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32.5%이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가구도 27.1%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부공동 결정이 59.5%로 가장 많았으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4.5%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36.0%나 되었다. 따라서 일상생활비 지출은 주로 부인이, 자녀양육 및 교육도 부부공동 또는 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주택매매 및 이사는 부부공동 결정이 74.2%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14.5%,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11.3%이었다. 또한 투자 및 재산증식도 부부공동 결정이 69.1%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결정이 16.1%,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결정이 14.8%가 있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일상생활비 지출은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의 지표인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은 부부공동 결정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등은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가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보다 약간 많았음에 비하여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현저히 많았다. 따라서 기혼

가구의 부부권력관계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면, 일상생활비 지출과 자녀양육 및 교육은 주로 부인이 결정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 등의 재산과 관련된 것은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케 한다.

〈표 12-2〉 15~59세 기혼가구의 부부권력관계

(단위: %)

권력관계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계(수)
일상생활비 지출	1.8	5.0	27.1	33.6	32.5	100.0(9,892)
주택매매 및 이사	4.2	10.3	74.2	6.8	4.5	100.0(9,883)
투자 및 재산증식	5.0	11.1	69.1	9.0	5.8	100.0(9,876)
자녀양육 및 교육	1.1	3.4	59.4	24.1	11.9	100.0(9,401)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일상생활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부간에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일상생활비 지출은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부인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였다.

먼저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일상생활비 지출에 대한 결정은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69.4%)이 읍·면부지역 거주가구(51.1%)보다 많았다. 반면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5.1%)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14.0%)보다 적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300만원 이상 계층 69.5%, 99만원 이하 계층 54.7%), 소득이 낮을수록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99만원 이하 계층 13.6%, 300만원 이상 계층 4.9%).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에 비하여 일상생활비 지출의 결정을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여자응답자 66.8%, 남자응답자 57.3%). 일상생활비 지출결정을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는 경우는 3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고(69.3%),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가장 적었으며(59.9%), 반면

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는 경우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으나(11.3%), 30대 연령층에서 가장 적었다(4.7%).

〈표 12-3〉 15~59세 기혼가구의 일상생활비 지출에서의 의사결정

(단위: %)

특성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계(수)
전체	1.8	5.0	27.1	33.6	32.5	100.0(9,892)
지역						
동부	1.2	3.9	25.4	35.3	34.1	100.0(8,085)
읍·면부	4.5	9.5	34.9	25.9	25.2	100.0(1,80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5	10.1	31.7	28.7	26.0	100.0(654)
100~199만원	2.1	5.5	28.9	33.5	30.0	100.0(2,173)
200~299만원	1.8	5.0	27.5	34.6	31.2	100.0(2,972)
300만원 이상	1.3	3.6	25.5	34.5	35.0	100.0(3,840)
응답자 성						
남자	4.5	12.9	25.3	37.5	19.8	100.0(738)
여자	1.6	4.3	27.3	33.3	33.5	100.0(9,150)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1.0	4.2	34.9	33.5	26.4	100.0(931)
30~39세	0.9	3.8	26.1	37.3	32.0	100.0(3,639)
40~49세	1.9	5.1	25.9	31.7	35.4	100.0(3,399)
50세 이상	3.9	7.4	27.4	30.1	31.2	100.0(1,921)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6	7.2	28.5	30.4	30.3	100.0(2,879)
고등학교	1.1	4.3	26.5	34.3	33.8	100.0(4,451)
대학 이상	1.0	3.6	26.8	36.2	32.4	100.0(2,551)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2.1	6.2	29.9	32.4	29.5	100.0(5,122)
비취업	1.5	3.6	24.2	35.0	35.7	100.0(4,767)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비의 지출결정을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중학교 이하 60.7%, 대학 이상 68.6%),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이 높았다(중학교 이하 10.8%, 대학

이상 4.6%). 비취업 응답자가 취업응답자보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일상생활비 결정을 부인이 하는 경우가 높았으며(취업자 61.9%, 비취업자 70.7%), 반대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취업자가 다소 높았다(취업자 8.3%, 비취업자 5.1%). 많은 응답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취업자는 취업부인이고, 비취업자는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이해된다.

주택매매 및 이사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부간에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택매매 및 이사는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였다.

먼저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주택매매 및 이사에 대한 결정을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74.3%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73.8%)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13.5%)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18.7%)보다 적었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12.2%)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7.4%)보다 많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주택매매 및 이사를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월가구소득 200～299만원인 계층이 76.6%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99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이 가장 많았으며(19.5%), 200～299만원 소득계층이 가장 적었다(13.1%). 그러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소득계층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에 비하여 주택매매 및 이사를 부부공동으로 결정한다고 한 비율이 많았으며(여자 74.5%, 남자 70.2%),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남자응답자(20.2%)가 여자응답자(14.1%)보다 많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여자응답자(11.5%)가 남자응답자(9.5%)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별 주택매매 및 이사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한을 살펴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낮았다(29세 이하 81.2%, 50세 이상 67.9%). 반면에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도 높아졌고(29세 이하 12.1%, 50세 이상 19.5%), 동시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도 높아졌다(29세 이하 6.7%, 50세 이상 12.6%). 이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부부공동결정보다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전담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표 12-4〉 15~59세 기혼가구의 주택매매 및 이사에서의 의사결정

(단위: %)

특성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계(수)
전체	4.2	10.3	74.2	6.8	4.5	100.0(9,883)
지역						
동부	3.4	10.1	74.3	7.4	4.8	100.0(8,076)
읍·면부	7.4	11.3	73.8	4.0	3.4	100.0(1,80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6.6	12.9	67.9	6.6	6.0	100.0(651
100~199만원	4.5	9.6	74.7	7.6	3.6	100.0(2,172)
200~299만원	3.8	9.3	76.6	6.2	4.0	100.0(2,966)
300만원 이상	3.8	10.6	73.7	7.0	4.9	100.0(3,840)
응답자 성						
남자	5.4	14.8	70.2	7.5	2.0	100.0(736)
여자	4.1	10.0	74.5	6.8	4.7	100.0(9,143)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3.1	9.0	81.2	3.7	3.0	100.0(926)
30~39세	3.2	9.5	76.2	7.2	4.0	100.0(3,636)
40~49세	3.7	10.6	73.7	6.7	5.2	100.0(3,398)
50세 이상	7.4	12.1	67.9	7.8	4.8	100.0(1,918)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2	11.5	71.0	7.0	4.3	100.0(2,878)
고등학교	3.6	9.4	75.6	6.7	4.6	100.0(4,448)
대학 이상	2.8	10.7	75.2	6.8	4.5	100.0(2,548)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3.9	11.0	73.0	7.2	5.0	100.0(5,120)
비취업	4.5	9.7	75.4	6.4	4.5	100.0(4,761)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주택매매 및 이사에 대한 결정은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는 71.0%로 낮았으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들은 약 75.2~75.6%이었다. 반면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소지자가 17.7%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약 13.0~13.5%이었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11.3%)이었다.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주택매매 및 이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취업자 73.0%, 비취업자 75.4%). 또한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도 많았고(취업자 14.9%, 비취업자 14.2%), 동시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도 많았다(취업자 12.2%, 비취업자 10.9%). 이와 같은 현상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결국 취업자는 취업부인이고 비취업자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해된다. 즉, 취업부인이 주택매매 및 이사에 신경 쓸 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주택매매 및 이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가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보다는 미미하나마 약간 많았다. 이는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된 현상이었으며, 다만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었다.

투자 및 재산증식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부간에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술한 주택매매 및 이사의 경우와 같이 이는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었다.

먼저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투자 및 재산증식에 대한 결정을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68.8%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70.2%)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15.4%)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19.5%)보다 적었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15.7%)가 읍·면부지

역 거주가구(10.4%)보다 많았다. 따라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남편 또는 부인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결정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동부지역 거주가구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투자 및 재산증식을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월가구소득 200~299만원인 계층이 70.9%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99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이 가장 많았으며(20.4%), 100~199만원 소득계층이 가장 적었다(14.3%). 그러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소득계층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약 14.7~15.3%의 범주에 있었다.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에 비하여 투자 및 재산증식을 부부공동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여자 69.4%, 남자 64.5%),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남자응답자(22.8%)가 여자응답자(15.6%)보다 많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여자응답자(14.9%)가 남자응답자(12.7%)보다 다소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별 투자 및 재산증식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한을 살펴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낮았다(29세 이하 75.5%, 50세 이상 64.5%). 반면에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도 높아졌고(29세 이하 13.2%, 50세 이상 19.9%), 동시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도 높아졌다(29세 이하 11.5%, 50세 이상 15.5%). 이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부부공동결정보다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전담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투자 및 재산증식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가장 많았으며, 학력간에는 1.0%포인트 차이에 불과하였다. 또한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도 학력간에 2.3%포인트 차이였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도 학력간에 2.2%포인트 차이였다. 그런데 모든 학력수준에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이 미미하나마 높았다.

비취업자와 취업자가 투자 및 재산증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유사한 수준이었다(취업자 68.7%, 비취업자 69.4%). 또한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취업자 15.8%, 비취업자 16.5%), 반면에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취업자 15.5%, 비취업자 14.0%). 이와 같은 현상은 많은 응답자가 여성이므로 취업자는 취업부인, 비취업자는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취업부인이 투자 및 재산증식에 대한 정보를 비취업부인보다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표 12-5〉 15~59세 기혼가구의 투자 및 재산증식에서의 의사결정

(단위: %)

특성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계(수)
전체	5.0	11.1	69.1	9.0	5.8	100.0(9,876)
지역						
동부	4.4	11.0	68.8	9.6	6.1	100.0(8,074)
읍·면부	7.8	11.7	70.2	6.0	4.4	100.0(1,80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7.1	13.3	64.4	8.8	6.5	100.0(648)
100~199만원	4.8	9.5	70.6	9.7	5.3	100.0(2,169)
200~299만원	4.3	10.1	70.9	8.9	5.8	100.0(2,966)
300만원 이상	5.3	12.1	67.8	8.8	6.0	100.0(3,841)
응답자 성						
남자	6.5	16.3	64.5	9.4	3.3	100.0(736)
여자	4.9	10.7	69.4	8.9	6.0	100.0(9,139)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3.7	9.5	75.5	6.5	5.0	100.0(929)
30~39세	4.1	11.3	69.8	9.0	5.8	100.0(3,631)
40~49세	4.8	10.8	69.1	9.1	6.2	100.0(3,398)
50세 이상	7.7	12.2	64.5	9.8	5.7	100.0(1,916)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3	11.0	68.5	8.8	5.5	100.0(2,874)
고등학교	4.3	10.7	69.2	9.7	6.1	100.0(4,447)
대학 이상	4.8	12.2	69.5	7.9	5.7	100.0(2,545)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4.2	11.6	68.7	9.2	6.3	100.0(5,115)
비취업	5.8	10.7	69.4	8.7	5.3	100.0(4,759)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결과적으로 투자 및 재산증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가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보다는 미미하나마 약간 많았다. 그렇지만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거주지역과 부인의 취업여부 등에서 나타났다.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부간에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자녀양육 및 교육은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다음은 부인이 결정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였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결정을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57.2%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69.3%)보다 현저히 적었다. 그러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39.2%)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22.5%)보다 현저히 많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3.7%)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8.2%)보다 다소 적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양육 및 교육을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월소득 99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이 64.3%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도 이 소득계층이 가장 많았다(8.3%). 그러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99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은 27.4%이었고, 300만원 이상의 계층은 38.6%로 현저히 많았다.

남자응답자가 여자응답자에 비하여 자녀양육 및 교육을 부부공동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남자 62.2%, 여자 59.2%),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남자응답자(11.6%)가 여자응답자(3.9%)보다 많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여자응답자(36.8%)가 남자응답자(26.2%)보다 현저히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한을 살펴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일관성

을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세 이상과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부부공동결정이 가장 많았고(50세 이상 64.3%, 29세 이하 63.3%),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30대 연령층이 44.2%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50세 이상 연령층은 26.6%로 가장 낮았다. 이와는 달리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도 높았다(29세 이하 1.5%, 50세 이상 9.1%).

〈표 12-6〉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의 의사결정

(단위: %)

특성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계(수)
전체	1.1	3.4	59.4	24.1	11.9	100.0(9,401)
지역						
동부	0.8	2.9	57.2	26.3	12.9	100.0(7,644)
읍·면부	2.5	5.7	69.3	14.8	7.7	100.0(1,75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4	5.9	64.3	16.7	10.7	100.0(627)
100~199만원	1.4	4.4	60.4	23.6	10.1	100.0(2,048)
200~299만원	1.3	2.7	59.7	23.8	12.4	100.0(2,822)
300만원 이상	0.6	2.7	58.1	25.9	12.7	100.0(3,658)
응답자 성						
남자	3.5	8.1	62.2	19.7	6.5	100.0(679)
여자	0.9	3.0	59.2	24.4	12.4	100.0(8,720)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0.6	0.9	63.3	23.0	12.3	100.0(692)
30~39세	0.4	2.3	53.1	30.1	14.1	100.0(3,466)
40~49세	1.0	3.5	62.4	22.1	11.0	100.0(3,337)
50세 이상	2.8	6.3	64.3	17.2	9.4	100.0(1,906)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3	6.0	64.5	18.0	9.2	100.0(2,837)
고등학교	0.7	2.4	58.0	25.8	13.1	100.0(4,224)
대학 이상	0.5	1.9	56.0	28.5	13.1	100.0(2,331)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1.2	3.8	61.8	22.1	11.0	100.0(4,833)
비취업	1.0	2.9	57.0	26.2	12.9	100.0(4,565)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결정을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적었고, 학력이 낮을수록 많았다. 반면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현저히 증가하였으며(중학교 이하 27.2%, 고등학교 38.9%, 대학 이상 41.6%),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중학교 이하 8.3%, 고등학교 3.1%, 대학 이상 2.4%).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양육 및 교육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자가 61.8%로 비취업자의 57.0%보다 4.8%포인트 많았다. 그렇지만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많았고(비취업자 39.1%, 취업자 33.1%), 반면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미미하나마 많았다(취업자 5.0%, 비취업자 3.9%).

다. 배우자 만족도

배우자에 대한 만족수준은 8개 지표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이는 배우자 이해도,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량, 부부 성생활, 배우자 부담 가사량,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대화,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 그리고 포괄적 의미에서의 전반적 부부관계 등이다. 응답 항으로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등의 5점 척도에 의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배우자 이해도,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대화 등은 (매우) 만족이 많았으며, 그 외의 지표는 보통이 많았고, 다음이 (매우) 만족이 많았다. 만족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하여 51.1%가 (매우) 만족하고 있었고, 다음은 배우자 이해도 47.6%, 부부대화 43.6%, 부부간의 성생활 38.5%,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량 35.6%. 배우자 부담의 가사량 34.3%,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 26.6%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전반적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43.3%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불만족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매우) 불만족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배우자 부담의 가사량 28.1%,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량 20.9%, 부부대화 17.3%, 배우자 이해도 13.1% 등의 순이었으며, 부부 성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7.7%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족도는 9.7%로 낮아 전술한 만족도 43.3%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만족도보다 불만족도가 높은 것은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이었다. 이에 대한 불만족도는 38.4%로 높았지만 만족도는 26.6%이어서 동일한 스포츠, 취미, 관심사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엿볼 수 있다.

〈표 12-7〉 15~59세 기혼가구의 배우자 만족수준

(단위: %)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배우자 이해도	1.7	11.4	39.4	41.6	6.0	100.0(9,869)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량	2.4	18.5	43.5	32.9	2.7	100.0(9,868)
부부 성생활	1.2	6.5	53.9	36.1	2.4	100.0(9,858)
배우자 부담 가사량	4.9	23.2	37.5	31.7	2.6	100.0(9,869)
배우자의 소비성향	1.7	10.6	36.7	45.6	5.5	100.0(9,868)
부부대화	2.1	15.2	39.1	39.1	4.5	100.0(9,866)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	7.1	31.3	35.0	23.6	3.0	100.0(9,866)
전반적 부부관계	0.9	8.8	46.9	40.2	3.1	100.0(9,867)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들 8개의 지표를 가구특성과 응답자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배우자의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는 동부지역 거주가구가 47.8%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46.3%보다 다소 높았던 반면, 불만족도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14.6%로 동부지역 거주가구12.6%보다 다소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99만원 이하 40.7%, 300만원 이상 53.4%), 이와는 상반되게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불만족도는 높았다(99만원 이하 18.1%, 300만원 이상 10.0%).

남자응답자가 여자응답자보다 배우자의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남자 50.1%, 여자 47.3%), 이와는 달리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보다 배우자의 이

해도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다(여자 13.4%, 남자 9.0%).

또한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29세 이하 62.6%, 50세 이상 42.4%),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았다(29세 이하 8.8%, 50세 이상 15.8%).

〈표 12-8〉 15~59세 기혼가구의 배우자 이해도에 대한 만족수준

(단위: %)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1.7	11.4	39.4	41.6	6.0	100.0(9,869)
지역						
동부	1.6	11.1	39.4	41.5	6.3	100.0(8,068)
읍·면부	1.8	12.8	39.1	41.6	4.7	100.0(1,80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8	15.3	41.3	38.2	2.5	100.0(649)
100~199만원	1.8	15.2	40.4	38.4	4.1	100.0(2,171)
200~299만원	1.4	11.5	41.8	40.4	4.9	100.0(2,966)
300만원 이상	1.4	8.6	36.6	45.2	8.2	100.0(3,840)
응답자 성						
남자	0.9	8.1	40.8	43.9	6.2	100.0(738)
여자	1.7	11.7	39.2	41.4	5.9	100.0(9,130)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1.2	7.6	28.7	50.2	12.4	100.0(931)
30~39세	1.6	9.8	37.7	43.8	7.0	100.0(3,631)
40~49세	1.9	12.7	42.7	38.4	4.4	100.0(3,387)
50세 이상	1.6	14.2	41.8	38.8	3.6	100.0(1,918)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1	15.7	42.6	37.0	2.6	100.0(2,869)
고등학교	1.7	11.0	41.2	41.0	5.1	100.0(4,447)
대학 이상	1.1	7.5	32.5	47.6	11.2	100.0(2,545)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1.8	13.0	40.2	39.2	5.8	100.0(5,107)
비취업	1.5	9.8	38.4	44.1	6.2	100.0(4,761)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중학교 이하 39.6%, 대학 이상 58.8%),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도

가 높았다(중학교 이하 17.8%, 대학 이상 8.6%).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취업자 45.0%, 비취업자 50.3%), 불만족도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높았다(취업자 14.8%, 비취업자 11.3%).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취업여성은 직장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측면에서 남편의 협조와 이해를 필요로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불만이 쌓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량에 대한 만족도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39.0%로 동부지역 거주가구 34.9%보다 다소 높았던 반면, 불만족도는 동부지역 거주가구가 21.2%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19.4%로 보다 다소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99만원 이하 31.5%, 300만원 이상 37.9%), 불만족도는 소득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100～199만원의 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22.4%).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보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남자 34.5%, 여자 38.6%), 이와는 달리 남자응답자가 여자응답자보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량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다(남자 17.7%, 여자 7.7%).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일관성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만족도는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고(38.3%), 불만족도 역시 이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27.1%).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중학교 이하 33.7%, 대학 이상 39.8%), 불만족도는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높았다(32.2%).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며(취업자 34.1%, 비취업자 37.2%), 불만족도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다소 높았다(취업자 22.4%, 비취업자 19.3%).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취업여성은 직장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측면에서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량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표 12-9〉 15~59세 기혼가구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량에 대한 만족수준

(단위: %)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2.4	18.5	43.5	32.9	2.7	100.0(9,868)
지역						
동부	2.5	18.7	43.9	32.1	2.8	100.0(8,068)
읍·면부	1.9	17.5	41.6	36.8	2.2	100.0(1,80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3	17.4	48.8	30.4	1.1	100.0(648)
100~199만원	2.6	19.8	43.4	32.0	2.3	100.0(2,170)
200~299만원	1.9	18.7	44.5	32.3	2.6	100.0(2,965)
300만원 이상	2.7	17.9	41.5	34.6	3.3	100.0(3,840)
응답자 성						
남자	1.5	16.2	47.8	31.9	2.6	100.0(739)
여자	1.1	6.6	53.7	36.3	2.3	100.0(9,129)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3.4	23.7	34.5	33.5	4.8	100.0(931)
30~39세	3.2	20.8	41.1	31.8	3.1	100.0(3,631)
40~49세	1.7	17.1	46.3	32.7	2.2	100.0(3,387)
50세 이상	1.6	14.2	47.5	35.1	1.6	100.0(1,919)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	17.2	47.6	32.7	1.0	100.0(2,870)
고등학교	2.5	18.5	44.4	31.9	2.6	100.0(4,446)
대학 이상	3.2	19.9	37.2	35.0	4.8	100.0(2,545)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2.5	19.9	43.5	31.5	2.6	100.0(5,106)
비취업	2.3	17.0	43.5	34.4	2.8	100.0(4,762)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은 보통이 가장 높은 53.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9세 이하인 연령층과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계층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성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은 불만족보다 현저히 높았는데,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38.5%이었고,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7.7%로 낮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 보다 부부 성생활의 만족도가 다소 높았고, 불만족도는 다소 낮았다(만족도 차이 1.4%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2.0%포인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부 성생활의 만족도가 높았고, 불만족도는

낮았다(만족도 차이 21.5%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8.7%포인트).

부부 성생활의 만족도는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보다 다소 높았으며, 불만족도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응답자가 젊을수록 성생활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았고, 불만족도는 낮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생활의 만족도는 높았으며,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았다. 비취업 응답자가 취업응답자보다 성생활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반대로 취업응답자가 비취업응답자보다 불만족도가 높았다.

〈표 12-10〉 15~59세 기혼가구의 부부 성생활에 대한 만족수준

(단위: %)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1.2	6.5	53.9	36.1	2.4	100.0(9,858)
지역						
동부	1.2	6.1	53.9	36.2	2.5	100.0(8,058)
읍·면부	0.8	8.5	53.4	35.6	1.7	100.0(1,80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6	11.9	62.9	22.1	0.5	100.0(657)
100~199만원	1.2	9.0	57.3	30.4	2.2	100.0(2,164)
200~299만원	1.3	5.7	53.7	36.9	2.3	100.0(2,965)
300만원 이상	0.8	5.0	50.1	41.3	2.8	100.0(3,836)
응답자 성						
남자	1.5	6.4	55.9	33.4	2.8	100.0(738)
여자	1.1	6.6	53.7	36.3	2.3	100.0(9,130)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0.9	3.9	40.2	47.9	7.2	100.0(931)
30~39세	0.9	5.5	48.6	41.9	3.2	100.0(3,629)
40~49세	1.3	7.0	56.7	33.8	1.3	100.0(3,380)
50세 이상	1.5	9.2	65.5	23.3	0.5	100.0(1,915)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	9.1	62.9	26.1	0.3	100.0(2,862)
고등학교	1.2	6.3	52.8	37.4	2.4	100.0(4,443)
대학 이상	0.6	4.1	45.6	45.0	4.7	100.0(2,541)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1.3	7.5	55.2	33.7	2.3	100.0(5,099)
비취업	1.0	5.6	52.4	38.6	2.5	100.0(4,757)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배우자 부담 가사량에 대한 만족수준은 보통이 가장 많은 37.5%를 차지하였으며,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34.3%이었고,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28.1%로 다소 낮았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 가부장제적인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어 '남편-일, 부인-가사 및 자녀양육'의 성역할 분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결과로 만족하는 경우가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많다고 판단된다.

배우자 부담 가사량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비율을 조사완료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동부지역 거주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불만족도는 낮았다(만족도 차이 3.6%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1.2%포인트).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소득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계층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불만족도는 100~199만원 소득계층에서 가장 높았다(만족도 차이 3.4%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3.3%포인트).

배우자 부담 가사량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응답자가 여자응답자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불만족도는 여자응답자가 현저히 높았다. 즉, 남편의 가사량에 대한 부인의 불만은 대단하지만, 부인의 가사량에 대해 남편의 불만은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남편들은 여전히 가사에 대해 무관심하며, 이로 인하여 부인의 불만은 매우 높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또한 응답자가 29세 이하의 젊은 층이거나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배우자 부담 가사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불만족도는 3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경우가 배우자 부담 가사량에 대하여 가장 만족하고 있었으며, 30대 연령층이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취업중인 응답자가 비취업 응답자보다 배우자의 가사량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며 불만족도는 미미하나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자의 배우자가 비취업자의 배우자보다 가사량이 많기 때문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2-11〉 15~59세 기혼가구의 배우자 부담 가사량에 대한 만족수준

(단위: %)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4.9	23.2	37.5	31.7	2.6	100.0(9,869)
지역						
동부	4.9	23.5	38.0	31.0	2.7	100.0(8,068)
읍·면부	4.9	22.3	35.5	34.9	2.4	100.0(1,80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9	22.4	39.7	31.9	2.2	100.0(648)
100~199만원	4.9	24.7	37.8	30.8	1.8	100.0(2,170)
200~299만원	4.7	24.3	37.2	31.5	2.3	100.0(2,967)
300만원 이상	5.3	22.0	36.7	32.7	3.3	100.0(3,840)
응답자 성						
남자	1.5	8.0	43.2	44.2	3.1	100.0(738)
여자	5.2	24.5	37.0	30.7	2.6	100.0(9,130)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5.0	22.4	33.4	33.9	5.3	100.0(932)
30~39세	5.8	25.9	35.3	30.0	2.9	100.0(3,630)
40~49세	4.9	22.6	39.6	30.9	2.0	100.0(3,387)
50세 이상	3.3	19.7	39.9	35.4	1.7	100.0(1,918)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5	22.9	38.2	33.9	1.4	100.0(2,869)
고등학교	5.8	24.5	37.6	29.5	2.5	100.0(4,445)
대학 이상	5.0	21.5	36.4	33.1	4.0	100.0(2,544)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4.8	23.0	37.3	32.4	2.5	100.0(5,106)
비취업	5.0	23.5	37.8	31.0	2.7	100.0(4,762)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수준은 보통이 가장 많은 36.7%를 차지하였다. 만족수준은 불만족보다 높았는데,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51.1%이었고,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12.3%로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비패턴에 대하여 일부 불만족해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만족해 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수준을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가구가 동부지역 가구보다 만족수

준이 다소 높았으며, 불만족 수준은 유사하였다(만족도 차아 2.8%포인트, 불만족도 차이0.3%포인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불만족도는 낮았다(만족도 차이 6.4%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5.5%포인트).

〈표 12-12〉 15~59세 기혼가구의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수준

(단위: %)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1.7	10.6	36.7	45.6	5.5	100.0(9,868)
지역						
동부	1.7	10.5	37.3	44.8	5.7	100.0(8,066)
읍·면부	1.6	10.9	34.2	49.1	4.2	100.0(1,80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9	13.4	37.1	43.3	3.2	100.0(649)
100~199만원	1.4	12.0	37.9	45.0	3.7	100.0(2,167)
200~299만원	1.7	10.6	36.1	46.1	5.6	100.0(2,965)
300만원 이상	1.7	9.1	36.3	46.2	6.7	100.0(3,839)
응답자 성						
남자	0.8	4.7	39.2	49.9	5.3	100.0(737)
여자	1.8	11.0	36.5	45.2	5.5	100.0(9,128)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1.7	10.2	33.7	45.2	9.1	100.0(931)
30~39세	1.5	10.6	35.9	44.8	7.2	100.0(3,631)
40~49세	2.1	11.1	37.3	45.6	3.9	100.0(3,387)
50세 이상	1.5	9.7	38.4	47.2	3.1	100.0(1,918)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	11.9	36.5	47.7	2.4	100.0(2,869)
고등학교	2.1	10.9	38.6	43.2	5.2	100.0(4,445)
대학 이상	1.2	8.4	33.7	47.3	9.4	100.0(2,545)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1.9	10.5	37.4	44.7	5.5	100.0(5,104)
비취업	1.6	10.7	35.9	46.5	5.4	100.0(4,763)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수준을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자응답자가 여자응답자보다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

도가 높았으며(남자 55.2%, 여자 50.7%), 불만족도는 여자응답자가 높았다(여자 12.8%, 남자 4.7%). 이는 부인들이 남편의 소비성향에 만족하는 수준보다 남편들이 부인의 소비성향에 만족하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소비성향에서 남편이 부인보다 문제점이 더 많음을 엿볼 수 있다.

응답자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배우자의 소비성향 만족수준은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응답자가 29세 이하의 젊은 층이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54.3%), 불만족도는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13.2%). 그리고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경우가 배우자 부담 가사량에 대하여 가장 만족하고 있었으며(56.7%), 중학교 이하의 학력층이 가장 불만족하고 있었다(13.5%). 비취업 응답자가 취업중인 응답자보다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비취업 51.9%, 취업중 50.2%). 불만족도는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부부간의 대화에 대한 만족수준은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44.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보통이 39.1%를 차지하였고,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17.3%로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대화가 부족하거나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부부간에 대화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간 대화의 만족수준을 가구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가구가 동부지역 가구보다 만족수준이 높았으며, 불만족 수준은 약간 높았다(만족도 차이 4.2%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0.7%포인트).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부부간 대화의 만족도가 높았고, 불만족도는 낮았다(만족도 차이 9.3%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8.9%포인트).

배우자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수준을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자응답자가 여자응답자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며(남자 44.8%, 여자 43.4%), 불만족도는 여자응답자가 높았다(여자 17.8%, 남자 13.3%). 이는 부인들은 남편과 대화를 더 자주하고 싶고, 대화의 내용이 민주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배우자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수준은 대체로 젊은 층이 만족도가 높았고(29세 이하 53.2%, 30대 45.4%, 40대 40.3%, 50대 이상 40.9%),

연령이 상승할수록 불만족수준이 높았다(29세 이하 13.9%, 50대 이상 19.2%).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중학교 이하 38.2%, 대학 이상 53.0%),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았다(중학교 이하 21.7%, 대학 이상 12.4%). 비취업 응답자가 취업중인 응답자보다 부부간의 대화수준에 만족하였고(취업중 42.4%, 비취업 44.7%), 반대로 불만족도는 취업중인 응답자가 높았다(취업중 18.5%, 비취업 16.2%). 이는 취업하고 있는 경우 대화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표 12-13〉 15~59세 기혼가구의 부부대화에 대한 만족수준

(단위: %)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2.1	15.2	39.1	39.1	4.5	100.0(9,866)
지역						
동부	2.1	15.2	40.0	38.0	4.8	100.0(8,065)
읍·면부	2.5	15.5	34.9	44.0	3.0	100.0(1,80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3	18.2	39.3	35.7	2.5	100.0(647)
100~199만원	3.0	19.2	38.2	36.6	3.0	100.0(2,169)
200~299만원	2.0	15.6	40.1	38.6	3.7	100.0(2,965)
300만원 이상	1.4	12.2	38.8	41.4	6.1	100.0(3,840)
응답자 성						
남자	0.9	12.4	41.8	40.9	3.9	100.0(739)
여자	2.3	15.5	38.9	38.9	4.5	100.0(9,127)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2.4	11.5	32.9	45.7	7.5	100.0(932)
30~39세	1.9	14.3	38.4	39.4	6.0	100.0(3,632)
40~49세	2.2	16.4	41.0	36.9	3.4	100.0(3,385)
50세 이상	2.4	16.8	39.9	39.0	1.9	100.0(1,919)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	18.9	40.1	36.7	1.5	100.0(2,869)
고등학교	2.2	15.3	41.0	37.3	4.2	100.0(4,444)
대학 이상	1.4	11.0	34.6	44.8	8.2	100.0(2,543)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2.1	16.4	39.2	38.1	4.3	100.0(5,106)
비취업	2.2	14.0	38.9	40.1	4.6	100.0(4,760)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은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보통수준이 35.0%이었고,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29.6%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이 부부공동의 문화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많은 것은 문화생활을 부부가 함께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우리 사회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생활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을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가구가 읍·면부지역 가구보다 만족수준이 다소 높았으며, 불만족 수준은 읍·면부지역 가구가 높았다(만족도 차이 3.3%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4.9%포인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불만족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만족도 차이 20.8%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16.5%포인트). 특히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만족도가 불만족도보다 높았으나, 그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수준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지만 불만족도가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을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며(여자 26.9%, 남자 22.3%), 불만족도 역시 여자응답자가 높았다(여자 38.7%, 남자 36.4%).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은 대체로 젊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29세 이하 34.2%, 50대 이상 21.2%), 연령이 상승할수록 불만족수준이 높았다(29세 이하 33.6%, 50대 이상 41.8%).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중학교 이하 17.0%, 대학 이상 38.6%),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았다(중학교 이하 49.1%, 대학 이상 26.8%). 비취업 응답자가 취업중인 응답자보다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만족하였고(취업중 23.7%, 비취업 29.7%), 반대로 불만족도는 취업중인 응답자가 높았다(취업중 42.7%, 비취업 33.8%).

전반적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해 불만족도가 만족도보다 높았는데, 3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 29세 이하 연령층, 그리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계층은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4〉 15~59세 기혼가구의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수준

(단위: %)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7.1	31.3	35.0	23.6	3.0	100.0(9,866)
지역						
동부	6.6	30.9	35.3	24.0	3.1	100.0(8,065)
읍·면부	9.3	33.1	33.8	21.5	2.3	100.0(1,80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1.7	35.0	39.7	12.2	1.4	100.0(648)
100~199만원	9.0	37.1	34.3	18.0	1.7	100.0(2,169)
200~299만원	7.3	34.7	34.1	21.5	2.3	100.0(2,966)
300만원 이상	5.2	25.0	35.4	29.9	4.5	100.0(3,839)
응답자 성						
남자	3.9	32.5	41.2	19.2	3.1	100.0(738)
여자	7.4	31.3	34.5	23.9	3.0	100.0(9,126)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7.6	26.0	32.2	28.0	6.2	100.0(932)
30~39세	7.1	30.0	34.2	25.1	3.6	100.0(3,632)
40~49세	7.0	32.4	35.4	23.1	2.2	100.0(3,383)
50세 이상	7.1	34.7	37.0	19.4	1.8	100.0(1,918)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40.3	33.8	16.1	0.9	100.0(2,870)
고등학교	7.5	30.7	35.9	23.1	2.7	100.0(4,442)
대학 이상	4.4	22.4	34.6	32.9	5.7	100.0(2,544)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7.8	34.9	33.5	21.1	2.6	100.0(5,103)
비취업	6.3	27.5	36.5	26.3	3.4	100.0(4,760)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전반적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수준은 보통이 가장 많은 46.9%를 차지하였다. 만족수준은 불만족보다 높았는데,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43.3%이었고,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9.7%로 낮았다. 따라서 다소 불만족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한국사회의 부부관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부부들은 불만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

한 노력을 스스로 하여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으며, 대부분의 부부들은 현재의 부부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겠다.

〈표 12-15〉 15~59세 기혼가구의 전반적 부부관계 만족수준

(단위: %)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0.9	8.8	46.9	40.2	3.1	100.0(9,867)
지역						
동부	1.0	8.6	46.4	40.6	3.4	100.0(8,066)
읍·면부	0.7	9.8	49.0	38.8	1.8	100.0(1,80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4	16.0	54.3	27.0	1.2	100.0(648)
100~199만원	1.0	13.0	50.2	33.5	2.3	100.0(2,170)
200~299만원	1.0	8.0	49.1	39.0	2.9	100.0(2,966)
300만원 이상	0.8	5.8	41.9	47.6	3.9	100.0(3,840)
응답자 성						
남자	0.4	5.1	49.3	41.7	3.5	100.0(739)
여자	1.0	9.1	46.7	40.1	3.1	100.0(9,128)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0.6	5.4	34.0	52.5	7.5	100.0(932)
30~39세	0.9	7.9	42.7	44.6	4.0	100.0(3,631)
40~49세	1.1	9.5	50.9	36.6	2.0	100.0(3,384)
50세 이상	0.8	11.1	54.0	32.7	1.4	100.0(1,917)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	12.6	54.5	30.9	0.7	100.0(2,869)
고등학교	1.0	8.6	48.0	39.7	2.6	100.0(4,444)
대학 이상	0.4	4.8	36.2	51.8	6.7	100.0(2,544)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1.1	9.6	48.2	38.1	3.0	100.0(5,105)
비취업	0.7	8.0	45.4	42.6	3.3	100.0(4,760)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전반적 부부관계의 만족수준을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가구가 읍·면부지역 가구보다 만족수준이 다소 높았으며, 불만족 수준은 읍·면부지역 가구가 다소 높았다(만족도 차이 3.4%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0.9%포인트).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만족도가 불만족

도보다는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현저히 높았고, 불만족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만족도 차이 23.3%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10.8%포인트).

전반적 부부관계의 만족수준을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자응답자가 여자응답자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며(남자 45.2%, 여자 43.2%), 불만족도는 여자응답자가 높았다(남자 5.5%, 여자 10.1%).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전반적 부부관계의 만족수준은 젊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29세 이하 60.0%, 50대 이상 34.1%), 연령이 상승할수록 불만족수준이 높았다(29세 이하 6.0%, 50대 이상 11.9%).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중학교 이하 31.6%, 대학 이상 58.6%),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았다(중학교 이하 13.8%, 대학 이상 5.2%). 비취업 응답자가 취업중인 응답자보다 전반적 부부관계의 만족수준이 높았고(취업중 41.1%, 비취업 45.9%), 반대로 불만족도는 비취업 응답자가 높았다(취업중 10.7%, 비취업 8.7%).

2. 부모-자녀관계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수준은 4개 지표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이는 자녀와의 대화, 자녀와의 문화생활, 부모의견·기대 충족여부, 그리고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응답 항으로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등의 5점 척도에 의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녀와의 대화, 자녀관계 전반은 만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는 보통인 경우가 많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와의 대화는 55.8%가 (매우) 만족하고 있었고, 보통은 35.0%이었다. 자녀와의 문화생활은 보통수준이 41.8%이었고, (매우) 만족은 27.5%이었으나 (매우) 불만족이 오히려 많은 30.8%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자녀들이 학업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가족이 함께 문화생활을 할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부모의 의견·기대 충족여부는 보통과 (매우) 만족수준이 각각

41.7%, 41.9%로 유사하였고, (매우) 불만족은 16.3%이었다.

전반적으로 (매우) 불만족은 자녀와의 문화생활 30.8%, 부모의 의견·기대 충족여부 16.3%, 자녀와의 대화 9.5% 등이었으며, 따라서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족 수준은 6.3%로 낮게 나타났다.

〈표 12-16〉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관계 만족도

(단위: %)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자녀와의 대화	0.8	8.4	35.0	51.5	4.3	100.0(8,826)
자녀와의 문화생활	3.0	27.8	41.8	25.5	2.0	100.0(8,828)
부모 의견·기대 충족여부	1.1	15.2	41.7	38.8	3.1	100.0(8,827)
자녀관계 전반	0.7	5.6	41.4	49.1	3.2	100.0(8,827)

주: 1) 자녀가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녀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수준을 살펴보면,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55.8%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35.0%를 차지하였으며, 그리고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9.2%로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대화가 부족하거나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녀와의 대화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적, 학원이용 등과 관련한 대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렇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대화에 문제가 있음을 엿볼 수 있어 부모의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된다.

자녀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수준을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가구가 동부지역 가구보다 만족수준이 높았으며, 불만족 수준은 동부지역 가구가 다소 높았다(만족도 차이 5.4%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0.6%포인트).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만족도가 불만족도보다는 높았으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고, 불만족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만족도 차이 6.3%포인트, 불만족

도 차이 6.2%포인트).

〈표 12-17〉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0.8	8.4	35.0	51.5	4.3	100.0(8,826)
지역						
동부	0.8	8.6	36.0	50.3	4.4	100.0(7,156)
읍·면부	1.0	7.8	31.1	56.6	3.5	100.0(1,67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8	11.3	34.1	50.7	2.1	100.0(954)
100~199만원	1.0	10.3	35.8	49.7	3.2	100.0(2,026)
200~299만원	0.5	8.4	36.9	50.2	3.9	100.0(2,381)
300만원 이상	0.5	6.4	34.1	53.4	5.7	100.0(3,231)
응답자 성						
남자	1.6	14.3	38.6	42.2	3.3	100.0(911)
여자	0.7	7.7	34.6	52.6	4.4	100.0(7,915)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3.9	9.1	44.2	40.3	2.6	100.0(77)
30~39세	0.7	5.5	38.0	50.7	5.1	100.0(2,589)
40~49세	0.7	9.5	34.6	51.0	4.2	100.0(3,787)
50세 이상	1.1	9.8	32.1	53.5	3.5	100.0(2,372)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	10.8	33.9	51.6	2.5	100.0(3,383)
고등학교	0.6	7.2	37.7	50.5	4.0	100.0(3,779)
대학 이상	0.5	6.2	31.1	53.7	8.4	100.0(1,657)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0.9	9.7	35.9	49.3	4.2	100.0(5,124)
비취업	0.7	6.6	33.8	54.5	4.4	100.0(3,703)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0.5	7.4	35.0	52.5	4.4	100.0(7,681)
사별	1.3	13.9	33.7	48.5	2.5	100.0(445)
이혼·별거	3.5	15.9	35.8	41.3	3.5	100.0(692)

주: 1) 자녀가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녀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수준을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남자 45.5%, 여자

57.0%), 불만족도는 남자응답자가 높았다(남자 15.9%, 여자 8.4%).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자녀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수준은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29세 이하 42.9%, 50대 이상 57.0%), 동시에 불만족수준은 낮았다(29세 이하 13.0%, 50대 이상 10.9%).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중학교 이하 54.1%, 대학 이상 62.1%),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았다(중학교 이하 12.0%, 대학 이상 6.7%).

비취업 응답자가 취업중인 응답자보다 자녀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았고(취업중 53.5%, 비취업 58.9%), 반대로 불만족도는 취업중인 응답자가 높았다(취업중 10.6%, 비취업 7.3%). 응답자가 유배우자인 경우 자녀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높았고(유배우 56.9%, 사별 51.0%, 이혼·별거 44.8%), 불만족도는 유배우자가 가장 낮았다(유배우 7.9%, 사별 15.2%, 이혼·별거 19.4%).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은 보통이 가장 많은 41.8%를 차지하였다. 불만족도는 만족도보다 높았는데,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30.8%이었고,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27.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공간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정책적 뒷받침도 있어야 겠다.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을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가구가 읍·면부지역 가구보다 만족수준이 높았으며, 불만족 수준은 읍·면부지역 가구가 높았다(만족도 차이 4.6%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5.8%포인트).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만족여부가 현저하였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불만족도는 높았다(만족도 차이 15.4%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19.5%포인트).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을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남자 20.0%, 여자 28.3%), 불만족도는 남자응답자가 높았다(남자 39.2%, 여자 29.8%).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30대 연령층이 가장 높았고, 불만족도는 이 연령층이 가장 낮았다. 다른 연

령층의 만족 및 불만족 수준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현저히 높았고(중학교 이하 19.8%, 대학 이상 42.8%),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현저히 높았다(중학교 이하 40.2%, 대학 이상 16.1%).

〈표 12-18〉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3.0	27.8	41.8	25.5	2.0	100.0(8,828)
지역						
동부	2.8	26.9	42.0	26.2	2.2	100.0(7,156)
읍·면부	3.9	31.6	40.7	22.7	1.1	100.0(1,67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5	36.1	39.0	18.4	0.9	100.0(955)
100~199만원	4.4	34.5	39.4	20.9	0.7	100.0(2,025)
200~299만원	2.6	29.0	43.0	23.8	1.6	100.0(2,382)
300만원 이상	1.6	20.5	43.2	31.5	3.2	100.0(3,230)
응답자 성						
남자	4.8	34.4	40.7	18.5	1.5	100.0(912)
여자	2.8	27.0	41.9	26.3	2.0	100.0(7,915)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2.6	29.9	45.5	22.1	-	100.0(77)
30~39세	2.2	20.3	42.2	32.1	3.2	100.0(2,590)
40~49세	3.1	31.3	40.9	23.1	1.7	100.0(3,788)
50세 이상	3.7	30.4	42.6	22.3	1.1	100.0(2,372)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8	35.4	40.0	19.1	0.7	100.0(3,384)
고등학교	2.3	26.4	43.6	25.9	1.7	100.0(3,779)
대학 이상	0.8	15.3	41.2	37.7	5.1	100.0(1,657)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3.6	32.1	40.6	21.9	1.7	100.0(5,124)
비취업	2.1	21.8	43.4	30.5	2.3	100.0(3,703)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2.3	26.3	42.9	26.5	2.1	100.0(7,682)
사별	5.4	35.5	37.8	20.9	0.4	100.0(445)
이혼·별거	9.1	40.3	31.2	17.6	1.9	100.0(693)

주: 1) 자녀가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비취업 응답자가 취업중인 응답자보다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았고(취업중 23.6%, 비취업 32.8%), 반대로 불만족도는 취업중인 응답자가 높았다(취업중 35.7%, 비취업 23.9%). 이는 취업자의 경우 비취업자보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응답자가 유배우자인 경우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높았고(유배우 28.6%, 사별 21.3%, 이혼·별거 19.5%), 불만족도는 유배우자가 가장 낮았다(유배우 28.6%, 사별 40.9%, 이혼·별거 49.4%).

부모 의견·기대에 대한 자녀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았는데,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41.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불만족하는 비율은 16.3%이었다. 따라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녀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자녀는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과다한 기대 또는 자녀의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행동 또는 성적 등과 관련될 것으로 추측된다.

부모 의견·기대에 대한 자녀의 충족여부의 만족수준을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가구가 동부지역 가구보다 만족도가 미미한 수준에서 높았으며, 불만족도 역시 읍·면부지역 가구가 다소 높았다(만족도 차이 0.7%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1.9%포인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 의견·기대에 대한 자녀의 충족여부의 만족도가 높았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불만족도는 높았다(만족도 차이 11.2%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7.0%포인트).

부모 의견·기대에 대한 자녀의 충족여부는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남자 42.5%, 여자 37.4%), 불만족도는 남자응답자가 높았다(남자 18.5%, 여자 16.1%).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부모 의견·기대에 대한 자녀의 충족여부의 만족수준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30대 연령층이 가장 높았고(44.9%), 40대 연령층이 가장 낮았으며(38.7%), 불만족도는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연령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세 이하 7.9%, 50대 이상 19.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현저히 높았고(중학교 이하 37.4%, 대학 이상 52.6%),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현저히 높았다(중학교 이하 20.0%, 대학 이상 10.2%).

비취업 응답자가 취업중인 응답자보다 부모 의견·기대에 대한 자녀의 충족여부의 만족수준이 높았고(취업중 40.4%, 비취업 44.1%), 반대로 불만족도는 취업중인 응답자가 높았다(취업중 17.8%, 비취업 14.4%). 응답자가 유배우자인 경우가 만족수준이 가장 높았고(유배우 42.7%, 사별 42.0%, 이혼·별거 33.1%), 불만족도는 유배우자가 가장 낮았다(유배우 15.4%, 사별 20.4%, 이혼·별거 24.6%).

〈표 12-19〉 15~59세 기혼가구의 부모 의견·기대에 대한 자녀의 충족여부

(단위: %)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1.1	15.2	41.7	38.8	3.1	100.0(8,827)
지역						
동부	1.1	14.9	42.2	38.4	3.4	100.0(7,155)
읍·면부	1.2	16.7	39.6	40.6	1.9	100.0(1,67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6	18.3	43.8	33.9	1.4	100.0(955)
100~199만원	1.6	16.7	43.1	36.6	2.0	100.0(2,025)
200~299만원	0.5	15.6	42.8	38.1	3.0	100.0(2,381)
300만원 이상	0.8	13.1	39.7	42.2	4.3	100.0(3,230)
응답자 성						
남자	1.9	16.6	44.2	35.4	2.0	100.0(912)
여자	1.0	15.1	41.4	39.2	3.3	100.0(7,914)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2.6	5.3	50.0	40.8	1.3	100.0(76)
30~39세	0.5	11.2	43.4	40.8	4.1	100.0(2,587)
40~49세	1.2	16.6	43.5	35.8	2.9	100.0(3,788)
50세 이상	1.7	17.8	36.6	41.5	2.4	100.0(2,373)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	18.3	36.1	36.1	1.3	100.0(3,383)
고등학교	0.8	15.0	38.3	38.3	3.2	100.0(3,777)
대학 이상	0.7	9.5	46.0	46.0	6.6	100.0(1,657)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1.2	16.6	41.8	37.6	2.8	100.0(5,122)
비취업	1.0	13.4	41.5	40.6	3.5	100.0(3,703)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0.8	14.6	41.9	39.5	3.2	100.0(7,680)
사별	2.0	18.4	37.5	40.9	1.1	100.0(445)
이혼·별거	3.6	21.0	42.3	29.8	3.3	100.0(692)

주: 1) 자녀가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52.3%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불만족도는 6.3%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에 대하여 일부 불만족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만족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수준을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가구가 읍·면부지역 가구보다 만족도가 미미한 수준에서 높았으며, 불만족도는 읍·면부지역 가구가 미미하게 높았다(만족도 차이 1.0%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0.5%포인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불만족도는 높았다(만족도 차이 14.9%포인트, 불만족도 차이 6.5%포인트).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성별로는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남자 42.5%, 여자 53.5%), 불만족도는 남자응답자가 높았다(남자 10.1%, 여자 5.8%).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수준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30대 연령층이 가장 높았고(56.7%), 5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낮았으며(49.8%), 불만족도는 30대 연령층이 가장 낮았고(3.4%), 5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높았다(8.4%).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현저히 높았고(중학교 이하 45.3%, 대학 이상 65.2%),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았다(중학교 이하 9.1%, 대학 이상 3.0%).

비취업 응답자가 취업중인 응답자보다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았고(취업중 49.9%, 비취업 55.7%), 반대로 불만족도는 취업중인 응답자가 높았다(취업중 7.4%, 비취업 4.6%). 응답자가 유배우자인 경우가 만족수준이 가장 높았고(유배우 53.8%, 사별 47.3%, 이혼·별거 38.3%), 불만족도는 유배우자가 가장 낮았고, 이혼·별거상태의 응답자가 가장 높았다(유배우 5.2%, 사별 9.7%, 이혼·별거 15.0%).

〈표 12-20〉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0.7	5.6	41.4	49.1	3.2	100.0(8,827)
지역						
동부	0.7	5.5	41.3	49.0	3.5	100.0(7,155)
읍·면부	0.7	6.0	41.9	49.6	1.9	100.0(1,67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5	8.9	46.0	40.6	3.0	100.0(954)
100~199만원	0.9	6.9	45.9	44.5	1.8	100.0(2,026)
200~299만원	0.4	5.8	41.7	49.2	3.0	100.0(2,381)
300만원 이상	0.4	3.5	37.6	54.4	4.1	100.0(3,229)
응답자 성						
남자	1.5	8.6	47.4	39.8	2.7	100.0(910)
여자	0.6	5.2	40.8	50.2	3.3	100.0(7,914)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	7.8	41.6	46.8	3.9	100.0(77)
30~39세	0.5	2.9	40.0	52.7	4.0	100.0(2,589)
40~49세	0.7	6.2	42.1	47.8	3.2	100.0(3,787)
50세 이상	0.9	7.5	41.8	47.5	2.3	100.0(2,373)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	8.0	45.6	43.8	1.5	100.0(3,384)
고등학교	0.4	4.6	41.9	49.6	3.4	100.0(3,779)
대학 이상	0.3	2.7	31.8	58.8	6.4	100.0(1,656)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0.8	6.6	42.7	47.0	2.9	100.0(5,123)
비취업	0.5	4.1	39.7	52.1	3.6	100.0(3,702)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0.4	4.8	40.9	50.6	3.2	100.0(7,680)
사별	1.6	8.1	43.0	45.7	1.6	100.0(446)
이혼·별거	2.7	12.3	46.3	35.2	3.1	100.0(691)

주: 1) 자녀가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제 2 절 가족생활의 질

가족생활의 질(Quality of Family Life)은 개별 가족의 특성과 객관적 생활조건, 그리고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주관적 인지의 영향을 받는다(Campbell, 1992). 가족생활의 질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 국가나 사회 내에서 가족의 삶과 관련된 경제적 상태, 인구학적 특성, 소득, 건강, 교육, 노동 및 문화생활 수준 등 가족생활과 관련된 객관적 측면을 강조한다. 또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개인의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개개인의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안녕감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주관적 측면을 고려한다. 특히, 주관적 측면을 강조할 경우, 가족생활의 질은 가족의 안녕(well-being),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 등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전술된 가족생활에 대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작위적으로 양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주관적인 만족의 충분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의 질을 개별 가족원이 실제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상태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만족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가족생활은 경제·사회환경적, 신체적, 심리적 측면 등 인간생활의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구 중에서 15~59세 유배우 부인이 있는 11,217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생활의 질과 가족정책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1. 가정생활의 질

가.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요인

가족생활의 질을 분석하기에 앞서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가족

원 모두의 사회적 성공, 가정의 안정, 권력이나 재산의 소유,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자녀의 역할수행정도, 자녀의 효도 및 가족의 건강 등으로 구분하여 응답가구의 특성 및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가정의 행복요인으로서 가족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의 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1%였다. 그 밖의 조건들을 가정행복의 주요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즉,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안정은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행복의 결정요인은 거주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의 건강은 6.2%, 가족의 안정이 31.6%였고,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건강은 59.9%, 가족의 안정이 28.8%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가정의 행복결정요인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경우, 가정의 안정을 가정행복의 결정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5%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권력이나 재산의 소유를 가정의 주요 행복결정요인으로 응답한 경우는 6.8%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2세대 가구의 경우, 가족의 건강을 응답한 비율이 57.6%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의 안정은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높았다(32.9%).

한편, 남자에 비해 여자가 가족의 건강을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남자 54.6%, 여자 57.1%), 가정의 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의 경우가 더 높았다(남자 33.2%, 여자 30.8%). 또한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가족의 건강(62.4%)을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안정(23.3%)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에 30~39세 연령에서는 가족의 건강(54.2%)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가정의 안정(35.6%)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 살펴보면, 응답자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가정의 안정(36.8%)이라고 응답

한 비율이 높았으며,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에는 가족의 건강(62.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2-21〉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정의 행복결정 요인

(단위: %)

특성	성공	가정 안정	권력 재산	배우자 역할	자식 역할	자식 효도	가족 건강	기타	계(수)
전체	1.8	31.1	4.3	2.3	3.1	0.3	56.8	0.3	100.0(11,126)
지역									
동부	1.8	31.6	4.4	2.6	2.9	0.2	56.2	0.3	100.0(9,102)
읍·면부	1.5	28.8	4.0	1.3	3.9	0.5	59.9	0.2	100.0(2,02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2	25.5	6.8	2.8	4.6	0.6	58.1	0.5	100.0(1,088)
100~199만원	1.6	30.5	5.5	2.6	3.7	0.1	55.8	0.3	100.0(2,656)
200~299만원	1.3	31.3	3.9	2.1	2.7	0.3	58.1	0.1	100.0(3,168)
300만원 이상	2.5	32.5	2.9	2.1	2.7	0.3	56.8	0.3	100.0(3,942)
가구유형									
1세대	1.0	30.1	4.8	2.7	3.6	0.2	57.0	0.5	100.0(1,306)
2세대	1.8	30.7	4.2	2.3	2.8	0.3	57.6	0.2	100.0(8,280)
3세대 이상	2.0	32.9	3.3	2.2	3.6	0.3	55.5	0.2	100.0(1,122)
기타	2.2	36.5	8.4	1.9	5.3	1.0	44.0	0.7	100.0(416)
응답자 성									
남자	2.4	33.2	5.5	0.4	2.9	0.5	54.6	0.5	100.0(1,089)
여자	1.7	30.8	4.2	2.5	3.1	0.3	57.1	0.3	100.0(10,035)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1.6	33.6	4.5	2.9	0.6	0.2	56.1	0.5	100.0(943)
30~39세	1.8	35.6	3.6	2.7	1.7	0.3	54.2	0.2	100.0(3,825)
40~49세	1.9	30.9	4.6	2.3	3.6	0.2	56.3	0.3	100.0(3,937)
50세 이상	1.7	23.3	5.0	1.6	5.5	0.5	62.4	0.2	100.0(2,417)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	23.6	5.3	2.0	4.5	0.3	62.6	0.2	100.0(3,534)
고등학교	1.7	33.3	4.6	2.8	2.7	0.3	54.3	0.2	100.0(4,926)
대학 이상	2.1	36.8	2.6	2.0	1.9	0.2	54.0.	0.5	100.0(2,658)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2.0	31.1	5.0	2.3	3.4	0.4	55.6	0.2	100.0(6,076)
비취업	1.5	31.0	3.5	2.4	2.8	0.1	58.3	0.4	100.0(5,051)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1.7	30.9	4.1	2.3	2.8	0.2	57.6	0.3	100.0(9,882)
이혼·별거·사별	2.0	32.2	6.0	2.3	5.6	0.6	50.8	0.4	100.0(1,242)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가정의 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족의 건강을 가정행복의 주요 요인으로 응답한 경우는 취업중인 경우 55.6%, 비취업인 경우 58.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의 건강이 가정행복의 주요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6%이었고 이혼·별거·사별의 경우에는 50.8%로 유배우자인 경우 보다 낮았다.

나. 가족생활의 변화정도

가족생활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가족생활의 변화를 1년 전과 비교해 보도록 질문한 결과, '더 좋아졌다'고 응답한 경우는 20.8%에 불과하였고,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 29.4%, 그리고 '동일하다'고 응답한 경우 48.4%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특성 및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더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4.0%로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28.4%)보다 높았다. 반면, '더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가 21.5%이었고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7.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수준에 따라서도 과거 1년 전과 비교하여 생활수준의 변화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소득수준이 99만원 이하인 경우 생활수준이 '더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8.0%에 불과하였으며, '더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5.0%였다.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높은 소득수준을 갖는 계층에서 생활수준이 과거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7.4%에 불과하였으며, '동일하다'거나 '더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각각 53.0%, 28.2%).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생활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가족생활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3세대 이상의 가구이거나 비혈연가구 등 기타 가구유형에서 가족생활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2.9%와 45.2%였다.

〈표 12-22〉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생활의 변화정도

(단위: %)

특성	나빠졌다	동일하다	좋아졌다	모르겠다	계(수)
전체	29.4	48.4	20.8	1.4	100.0(11,131)
지역					
동부	28.4	48.6	21.5	1.5	100.0(9,105)
읍·면부	34.0	47.6	17.5	0.9	100.0(2,02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5.0	36.4	8.0	0.6	100.0(1,092)
100~199만원	39.6	43.1	15.8	1.5	100.0(2,658)
200~299만원	27.2	51.7	19.9	1.3	100.0(3,167)
300만원 이상	17.4	53.0	28.2	1.4	100.0(3,945)
가구유형					
1세대	28.6	45.9	20.6	4.9	100.0(1,308)
2세대	28.3	49.1	21.8	0.9	100.0(8,285)
3세대 이상	32.9	48.6	17.1	1.3	100.0(1,123)
기타	45.2	41.6	12.7	0.5	100.0(416)
응답자 성					
남자	37.7	47.8	13.0	1.5	100.0(1,090)
여자	28.5	48.4	21.7	1.4	100.0(10,040)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18.5	42.6	32.4	6.6	100.0(942)
30~39세	22.5	48.2	28.0	1.3	100.0(3,830)
40~49세	33.9	48.4	16.9	0.8	100.0(3,939)
50세 이상	37.5	50.9	11.2	0.4	100.0(2,420)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0.7	46.3	12.4	0.6	100.0(3,536)
고등학교	28.7	48.1	21.8	1.4	100.0(4,924)
대학 이상	15.8	51.6	30.2	2.3	100.0(2,664)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32.2	45.8	20.6	1.4	100.0(6,080)
비취업	26.2	51.4	21.0	1.4	100.0(5,052)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27.3	49.3	22.0	1.4	100.0(9,886)
이혼·별거·사별	46.6	41.1	11.5	0.8	100.0(1,242)

응답자의 성에 따라서도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한 생각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1년 전과 비교하여 가족생활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는

37.7%로 여자(28.5%)에 비해 높았다. 반면, '더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가 21.7%인데 반하여 남자는 13.0%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가족생활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가족생활이 과거와 비교하여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15.8%인 것에 반해,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 '더 나빠졌다'의 비율이 40.7%에 이르렀다.

또한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취업 중인 경우에 '더 나빠졌다' 고 응답한 경우는 32.2%로 비취업인 경우(26.2%) 보다 높게 나타났고,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인 경우에 '더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7.3%였으며, 그리고 이혼·별거·사별의 경우에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46.6%로서 해체가정의 경우, 가족생활의 부정적 변화가 심각한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생활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가구의 주요 악화요인을 살펴본 결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생활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87.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원의 건강상 어려움이 5.9%, 가족간의 대화 및 가족 공유시간의 부족이 3.4%, 그리고 함께하는 문화생활의 부족이 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이 악화된 것으로 인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최근 경제구조 및 생활수준의 양극화가 심화로 인한 각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가족생활이 악화된 주요 요인은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거주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간의 대화 및 공유시간 부족 등이었다. 즉, 경제적 어려움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89.7%)가 동부지역 거주가구(87.3%)보다 약간 많았고, 가족간의 대화 및 공유시간의 부족은 동부지역 거주가구(3.7%)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2.3%)보다 다소 많았다.

〈표 12-23〉 15~59세 기혼가구의 거주지역별 가족생활 악화의 주요 요인

(단위: %)

주요 요인	전국	지역	
		동부	읍·면부
가족간의 대화 및 공유시간 부족	3.4	3.7	2.3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생활부족	1.0	1.0	1.0
경제적 어려움으로	87.8	87.3	89.7
가족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0.2	0.2	0.3
가족문제를 가족 밖에서 해결하므로	0.5	0.6	0.1
이웃이나 친구들과 교제가 거의 없으므로	0.2	0.2	0.1
가족원의 건강상의 어려움	5.9	6.0	5.8
기타	0.9	1.0	0.6
계(수)	100.0(3,263)	100.0(2,574)	100.0(689)

다.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가족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가구의 70.6%가 중산층(중상위층 12.3%, 중중위층 38.0%, 중하위층 20.3%)으로 응답하였으며, 상위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6%에 불과하였고(상상위층 0.3%, 상중위층 2.0%, 상하위층 1.3%), 나머지 25.9%는 하위층으로(하상위층 9.5%, 하중위층 8.9%, 하하위층 7.5%)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비추어보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산층 귀속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경기침체, 청년실업, 인력구조조정 등이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하위층으로 전락한 가족도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상위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3.7%인 것과 비교하여 읍·면부에 거주하면서 상위층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하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5.3%이었고,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8.5%로 나타나 거주지역에 따르는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12-24〉 15~59세 기혼가구의 거주지역별 주관적 사회적 지위

(단위: %)

사회적 지위	전국	지역	
		동부	읍·면부
상상	0.3	0.3	0.2
상중	2.0	2.0	1.8
상하	1.3	1.4	0.5
중상	12.3	12.7	10.4
중중	38.0	37.9	38.3
중하	20.3	20.3	20.2
하상	9.5	9.3	10.6
하중	8.9	8.7	9.5
하하	7.5	7.3	8.4
계(수)	100.0(11,112)	100.0(9,091)	100.0(2,021)

라. 전반적인 가족생활 만족도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1.1%가 '만족스럽다' 또는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했으며, 12.3%는 '불만족스럽다' 혹은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46.6%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가구특성 및 응답자 특성별로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거주지역이 동부인 경우 '만족스럽다'로 응답한 비율이 39.9%이었고 '매우 만족스럽다'가 2.1%로 나타나 읍·면부에 거주하면서 '만족스럽다'로 응답한 비율 35.7%와 '매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 1.7%보다 높았다. 반면에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에 '매우 불만족스럽다(1.4%)'와 '불만족스럽다(12.4%)'가 동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인 것과 비교하여 월평균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가구에서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2.1%에 불과하였다.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1세대 가구

에서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9.7%로 가장 낮아 가구 유형 중에서는 부부로 구성된 1세대 가구가 가족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 전반적인 가족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만족스럽다'로 응답한 비율이 30.5%, '매우 만족스럽다'로 응답한 비율은 2.4%였고, 여자의 경우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40.1%였으며, '매우 만족스럽다'로 응답한 경우는 2.0%이었다. 가족생활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남자가 2.5%, 15.3%로 여자(각각 1.1%, 10.5%)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에 비해 가족생활에 대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고, 연령이 적을수록 가족생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젊은 층이 가족생활을 만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0세 이상의 계층에서 1.5%였고, 30~39세 층에서는 0.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9세 이하의 계층은 49.8%인 것에 비해 50세 이상에서는 31.7%에 불과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4.5%였으나 중학교 이하의 학력인 경우에는 '만족스럽다'의 응답이 29.6%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응답자가 취업중인 경우 '만족스럽다'는 비율이 35.5%로 비취업인 경우의 43.5%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의 경우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따르는 역할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반적인 가족생활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는 응답자의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나타났는데, 유배우인 경우에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1.4%였으나 이혼·별거·사별의 경우에는 21.1%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이혼·별거·사별한 가구에서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6.1%였고,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5.9%에 이르러 해체가정의 생활만족도가 유배우 가정에 비하여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12-25〉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생활만족도

(단위: %)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1.3	11.0	46.6	39.1	2.0	100.0(11,131)
지역						
동부	1.3	10.7	46.1	39.9	2.1	100.0(9,105)
읍·면부	1.4	12.4	48.8	35.7	1.7	100.0(2,02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2	26.6	44.9	22.1	1.1	100.0(1,093)
100~199만원	1.6	15.8	53.0	28.4	1.2	100.0(2,659)
200~299만원	0.7	9.8	49.4	38.6	1.4	100.0(3,169)
300만원 이상	0.5	4.5	40.5	51.4	3.1	100.0(3,945)
가구유형						
1세대	1.0	9.7	43.3	43.1	3.0	100.0(1,310)
2세대	1.0	10.2	47.0	40.0	1.9	100.0(8,284)
3세대 이상	1.5	11.0	48.7	36.6	2.1	100.0(1,123)
기타	7.5	30.4	44.3	16.9	1.0	100.0(415)
응답자 성						
남자	2.5	15.3	49.3	30.5	2.4	100.0(1,091)
여자	1.1	10.5	46.3	40.1	2.0	100.0(10,041)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1.2	7.2	38.6	49.8	3.3	100.0(944)
30~39세	0.9	9.1	43.6	43.8	2.6	100.0(3,831)
40~49세	1.5	11.4	49.2	36.5	1.4	100.0(3,938)
50세 이상	1.5	14.8	50.4	31.7	1.4	100.0(2,419)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8	16.3	51.7	29.6	0.6	100.0(3,536)
고등학교	1.2	10.2	49.1	37.6	1.8	100.0(4,924)
대학 이상	0.8	5.4	35.1	54.5	4.2	100.0(2,664)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1.4	12.9	48.4	35.5	1.8	100.0(6 ,081)
비취업	1.1	8.7	44.5	43.5	2.3	100.0(5,051)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0.7	9.1	46.7	41.4	2.1	100.0(9,885)
이혼·별거·사별	5.9	26.1	45.9	21.2	1.0	100.0(1,243)

전술된 바와 같이 가족생활만족도는 개별 가족원이 실제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실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정도 또는 행복감으로서, 가족 내 역할과 가족관계 및 다양한 생활양식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 전반적인 가족생활의 만족도 조사에 이어서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사노동 분담 정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 가족의 의식주 수준, 가족갈등의 해결방식,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가족원의 건강, 그리고 삶의 성취도 등 9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각 영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여 '매우 불만족스럽다' 1점, '불만족스럽다'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스럽다' 4점, 그리고 '매우 만족스럽다' 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때,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영역으로서 5점 만점에 평균 2.86점이었다. 한편,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가족간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한 영역으로 5점 만점에 평균 3.42점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 3.36점, 가족의 건강수준 3.35점, 그리고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3.3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26〉 15~59세 기혼가구의 가정생활 영역별 만족도 평균

(단위: 점)

가정생활 영역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수)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3.34	0.767	11,088
가사노동 분담정도	3.11	0.831	11,074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3.42	0.723	11,086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	3.36	0.707	11,093
가족의 의식주 수준	3.15	0.726	11,095
가족갈등 및 문제해결 정도	3.31	0.732	11,077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2.86	0.844	11,085
가족원의 건강수준	3.35	0.847	11,090
삶의 성취도	2.91	0.831	11,094

조사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각 영역별 만족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 내 지위와 역할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지역, 가구소득, 가구유형, 응답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및 혼인상태에 따라서 집

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읍·면부 지역보다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응답자의 가정내지위와 역할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부부로 구성된 1세대 가구(3.46점)의 만족도가 2세대(3.34점) 또는 3세대 이상(3.27점)으로 구성된 가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자녀양육이나 부모부양의 부담이 없는 경우 역할갈등이 비교적 적고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정 내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여자인 경우(3.35점)가 남자(3.2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족내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비취업 중인 경우(3.37점)가 취업인 경우(3.31점)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3.38점)가 이혼·별거·사별한 경우(3.02점)에 비해 높았다.

가정 내 가사노동 분담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분담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99만원 이하 3.05점, 300만원 이상 3.16점),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2세대(3.08점)나 3세대 이상(3.13점)의 경우보다 부부로 구성된 1세대(3.32점)의 가구가 가사노동 분담정도에 대하여 훨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응답자가 남자인 경우(3.23점)가 여자(3.09점) 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연령의 경우 29세 이하(3.19점)와 50세 이상(3.16점)의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 이상(3.18점)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 응답자(3.13점)가,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의 응답자(3.12점)가 가정내 가사노동분담 만족도가 더 높았다.

가족원과의 대화 및 친밀감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부부로 구성된 1세대 가구(3.51점)의 만족도가 2세대(3.43점) 또는 3세대 이상(3.39점)으로 구성된 가구에 비하여 높았다.

〈표 12-27〉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정 내 지위와 역할 및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만족도

(단위: %)

특성	지위와 역할만족도 평균점수(표준편차)	F-검증	가사노동분담만족도 평균점수(표준편차)	F-검증
지역				
동부	3.35(0.766)	2.4(11086)*	3.10(0.827)	-0.8(2929.7)
읍·면부	3.30(0.771)		3.12(0.84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07(0.808)	143.8(3)***	3.05(0.801)	8.8(3)***
100~199만원	3.19(0.788)		3.07(0.817)	
200~299만원	3.33(0.735)		3.09(0.826)	
300만원 이상	3.50(0.726)		3.16(0.852)	
가구유형				
1세대	3.46(0.768)	43.4(3)***	3.32(0.823)	34.4(3)***
2세대	3.34(0.753)		3.08(0.832)	
3세대 이상	3.27(0.788)		3.13(0.823)	
기타	2.980.867)		2.99(0.749)	
응답자 성				
남자	3.24(0.828)	-3.9(1272.7)***	3.23(0.725)	5.8(1389.8)***
여자	3.35(0.759)		3.09(0.840)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3.43(0.804)	12.4(3)***	3.19(0.904)	8.8(3)***
30~39세	3.37(0.760)		3.08(0.861)	
40~49세	3.30(0.766)		3.08(0.817)	
50세 이상	3.30(0.758)		3.16(0.769)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21(0.772)	140.1(2)***	3.09(0.796)	13.6(2)***
고등학교	3.32(0.749)		3.08(0.832)	
대학 이상	3.53(0.754)		3.18(0.869)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3.31(0.775)	-4.7(11086)***	3.09(0.836)	-2.7(11072)**
비취업	3.37(0.755)		3.13(0.825)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3.38(0.746)	15.3(11082)***	3.12(0.837)	3.9(1570.0)***
이혼·별거·사별	3.02(0.858)		3.02(0.772)	

주: 1) 지역, 응답자의 성, 응답자의 취업여부,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두 집단의 차이를 검증한 것으로 F-검증이 아닌 t-test 결과임.

2) *p<.05, **p<.01, ***p<.001

또한 응답자가 여자인 경우 3.43점으로 남자(3.30점)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았으며, 응답자가 비취업인 경우(3.45점)가 취업중인 경우(3.39점)에 비하여 높았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혼인상태 또한 유배우인 경우(3.44점)가 이혼·별거·사별의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거주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3.48점)가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3.33점)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3세대 이상인 경우(3.40점)의 만족도가 1세대(3.38점)나 2세대(3.36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가(3.37점) 남자(3.28점)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대체로 관계지향적인 여자가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에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50세 이상(3.39점)의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비취업인 경우(3.39점)와 응답자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3.38점)에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지역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부부로 구성된 1세대인 경우(3.23점)가 2세대(3.16점)와 3세대 이상(3.18점)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자의 경우(3.16점)가 남자(3.02점)에 비하여 의식주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응답자가 비취업 중인 경우(3.22점)가 취업중인 경우(3.10점)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자(3.20점)가 이혼·별거·사별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2.73점). 유배우 가정과 비교하여 해체가정에서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따르는 만족도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간의 갈등 및 가족문제의 해결정도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형은 2세대(3.32), 3세대 이상(3.22)으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부부로

구성된 1세대(3.39) 가구의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2-28〉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와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대화와 친밀도 만족도 평균점수(표준편차)	F-검증	친인척관계 만족도 평균점수(표준편차)	F-검증
지역				
동부	3.42(0.725)	0.5(11084)	3.33(0.711)	-8.9(11091)***
읍·면부	3.41(0.714)		3.48(0.67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22(0.769)	81.6(3)***	3.20(0.792)	43.9(3)***
100~199만원	3.32(0.741)		3.31(0.733)	
200~299만원	3.41(0.691)		3.35(0.682)	
300만원 이상	3.54(0.697)		3.44(0.675)	
가구유형				
1세대	3.51(0.749)	41.5(3)***	3.38(0.716)	13.7(3)***
2세대	3.43(0.707)		3.36(0.704)	
3세대 이상	3.39(0.714)		3.40(0.656)	
기타	3.05(0.861)		3.14(0.832)	
응답자 성				
남자	3.30(0.767)	-5.8(11084)***	3.28(0.765)	-3.6(1273.0)***
여자	3.43(0.717)		3.37(0.700)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3.51(0.799)	23.2(3)***	3.37(0.699)	7.4(3)***
30~39세	3.48(0.710)		3.38(0.693)	
40~49세	3.37(0.723)		3.32(0.724)	
50세 이상	3.36(0.701)		3.39(0.703)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31(0.716)	145.5(2)***	3.34(0.729)	8.2(2)***
고등학교	3.39(0.713)		3.34(0.698)	
대학 이상	3.61(0.712)		3.41(0.691)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3.39(0.718)	-4.7(11084)***	3.33(0.720)	-3.9(10876.7)***
비취업	3.45(0.727)		3.39(0.691)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3.44(0.707)	9.9(1452.5)***	3.38(0.688)	9.9(1445.1)***
이혼·별거·사별	3.20(0.805)		3.14(0.816)	

주: <표 12-27>과 동일.

또한 응답자가 여자인 경우(3.32점), 취업여부는 비취업중인 경우(3.35점), 혼

인상태는 유배우인 경우(3.34)가 상대적으로 가족간의 갈등 및 가족문제의 해결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29〉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의식주수준 만족도 평균점수(표준편차)	F-검증	가족갈등 해결 만족도 평균점수(표준편차)	F-검증
지역				
동부	3.16(0.725)	1.5(11093)	3.31(0.732)	1.1(11075)
읍·면부	3.13(0.729)		3.29(0.72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70(0.761)	408.1(3)***	3.09(0.791)	115.2(3)***
100~199만원	2.95(0.729)		3.17(0.755)	
200~299만원	3.15(0.673)		3.31(0.689)	
300만원 이상	3.40(0.647)		3.45(0.699)	
가구유형				
1세대	3.23(0.750)	50.1(3)***	3.39(0.729)	41.1(3)***
2세대	3.16(0.715)		3.32(0.717)	
3세대 이상	3.18(0.688)		3.22(0.759)	
기타	2.73(0.840)		2.96(0.853)	
응답자 성				
남자	3.02(0.767)	-6.2(11093)***	3.17(0.780)	-6.7(11075)***
여자	3.16(0.720)		3.32(0.725)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3.32(0.727)	83.3(3)***	3.41(0.753)	15.8(3)***
30~39세	3.25(0.701)		3.35(0.724)	
40~49세	3.10(0.731)		3.28(0.746)	
50세 이상	3.00(0.720)		3.26(0.704)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95(0.714)	364.200(2)***	3.20(0.722)	92.1(2)***
고등학교	3.15(0.709)		3.30(0.726)	
대학 이상	3.43(0.677)		3.46(0.730)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3.10(0.739)	-8.7(11093)***	3.27(0.735)	-5.3(11075)***
비취업	3.22(0.705)		3.35(0.726)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3.20(0.699)	20.0(1467.2)***	3.34(0.713)	13.6(11071)***
이혼·별거·사별	2.73(0.794)		3.04(0.823)	

주: <표 12-27>과 동일.

가족의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다른 가정생활영역과 비교하여 만족도가 낮았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동부에 거주하는 가구(2.89점)의 만족도가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2.75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읍·면부지역과 비교하여 동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가구유형별로는 2세대(2.88점), 3세대 이상(2.78점)의 가구에 비해 1세대(2.98점) 가구의 경우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자응답자의 경우(2.74점)와 응답자가 취업중인 경우(2.76점), 그리고 응답자의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사별인 경우(2.51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들의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동부에 거주하는 응답가구(3.38점)의 경우가 읍·면부(3.21점)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즉, 29세 이하 연령층의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3.54점이었으나, 응답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3.05점으로 나타나, 노화에 따르는 건강문제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이혼·별거·사별의 경우(3.00점)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과 취업여부에 따라서 가족원들의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희망하는 중요한 안건에 대한 성취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의 만족도(2.92점)가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에(2.84점) 비하여 높았으며,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았다.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1세대 가구(2.99점)에서의 성취도가 2세대(2.92점) 또는 3세대 이상(2.86점) 가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가 여자인 경우(2.92점)와 비취업 상태인 경우(2.96점), 그리고 응답자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2.97점)가 개인적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2-30〉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문화·여가활동과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평균점수(표준편차)	F-검증	건강수준 만족도 평균점수(표준편차)	F-검증
지역				
동부	2.89(0.846)	6.5(11083)***	3.38(0.829)	7.5(2814.5)***
읍·면부	2.75(0.826)		3.21(0.91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51(0.805)	236.7(3)***	2.76(0.971)	291.8(3)***
100~199만원	2.66(0.818)		3.21(0.870)	
200~299만원	2.86(0.807)		3.40(0.785)	
300만원 이상	3.10(0.826)		3.55(0.750)	
가구유형				
1세대	2.98(0.877)	39.7(3)***	3.21(0.933)	66.5(3)***
2세대	2.88(0.837)		3.40(0.816)	
3세대 이상	2.78(0.797)		3.28(0.825)	
기타	2.48(0.892)		2.88(1.1014)	
응답자 성				
남자	2.74(0.818)	-5.0(11083)***	3.32(0.886)	-1.2(11088)
여자	2.88(0.846)		3.35(0.842)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3.02(0.883)	49.1(3)***	3.54(0.747)	176.8(3)***
30~39세	2.96(0.855)		3.52(0.747)	
40~49세	2.79(0.828)		3.32(0.851)	
50세 이상	2.77(0.813)		3.05(0.933)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62(0.788)	379.1(2)***	3.06(0.928)	335.5(2)***
고등학교	2.86(0.828)		3.43(0.787)	
대학 이상	3.20(0.834)		3.57(0.732)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2.76(0.835)	-14.6(11083)***	3.34(0.844)	-1.5(11088)
비취업	2.99(0.839)		3.36(0.850)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2.91(0.839)	16.1(1562.4)***	3.39(0.826)	15.6(11084)***
이혼·별거·사별	2.51(0.808)		3.00(0.929)	

주: 1) 지역, 응답자의 성, 응답자의 취업여부,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두 집단의 차이를 검증한 것으로 F-검증이 아닌 t-test 결과임.
2) *p<.05, **p<.01, ***p<.001

〈표 12-31〉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개인적 성취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성취감 만족도 평균점수(표준편차)	F-검증
지역		
동부	2.92(0.832)	3.8(11092)***
읍·면부	2.84(0.82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46(0.837)	
100~199만원	2.72(0.815)	293.9(3)***
200~299만원	2.89(0.770)	
300만원 이상	3.16(0.799)	
가구유형		
1세대	2.99(0.849)	
2세대	2.92(0.815)	59.3(3)***
3세대 이상	2.86(0.825)	
기타	2.39(0.925)	
응답자 성		
남자	2.77(0.882)	-5.4(1285.7)***
여자	2.92(0.824)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3.06(0.839)	
30~39세	2.99(0.816)	40.1(3)***
40~49세	2.85(0.833)	
509세 이상	2.81(0.827)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72(0.799)	
고등학교	2.89(0.813)	248.4(2)***
대학 이상	3.19(0.830)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2.86(0.835)	-5.9(10794.5)***
비취업	2.96(0.823)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2.97(0.808)	21.3(1509.8)***
이혼·별거·사별	2.42(0.854)	

주: 1) 지역, 응답자의 성, 응답자의 취업여부,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두 집단의 차이를 검증한 것으로 F-검증이 아닌 t-test 결과임.

2) *p<.05, **p<.01, ***p<.001

제 3 절 가족정책과 복지욕구

가족정책은 가족의 욕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족친화적 사회정책으로서 가족을 단위로 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면서 가족의 약화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원칙 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즉, 가족단위의 종합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가족구성원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정책이어야 하며,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복지정책을 개발·시행함으로써 가족원 개개인의 개인주의와 세대간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족단위의 여가를 보냄으로서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여 가족중심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15~59세 기혼가구가 희망하는 가족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책임의 소재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가구의 67.8%가 국가 또는 사회와 가족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29.1%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문제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가 져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0%에 불과하였다. 이를 응답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에 따라서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사회와 가족의 공동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9.5%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60.2%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 전통주의 생활양식이 잔재되어 있는 읍·면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족문제를 다분히 사적인 영역으로 규정하고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또는 사회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개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문제 해결의 책임은 국가 또는 사회와 가족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2-32〉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문제의 책임소재 인식

(단위: %)

특성	전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	공동책임	기타	계(수)
전체	3.0	29.1	67.8	0.0	100.0(11,106)
지역					
동부	2.8	27.6	69.5	0.0	100.0(9,086)
읍·면부	4.0	35.7	60.2	0.0	100.0(2,02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4	37.7	56.8	0.1	100.0(1,092)
100~199만원	3.4	31.0	65.5	0.0	100.0(2,655)
200~299만원	2.6	28.9	68.4	0.1	100.0(3,161)
300만원 이상	2.4	25.9	71.7	0.0	100.0(3,936)
가구유형					
1세대	4.4	33.3	62.3	0.1	100.0(1,307)
2세대	3.0	27.8	69.2	0.0	100.0(8,267)
3세대 이상	2.1	28.4	69.4	0.1	100.0(1,118)
기타	3.1	42.9	54.0	0.0	100.0(415)
응답자 성					
남자	3.9	39.9	56.2	0.1	100.0(1,089)
여자	2.9	27.9	69.1	0.0	100.0(10,016)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3.1	18.6	78.1	0.2	100.0(944)
30~39세	2.3	22.0	75.7	0.0	100.0(3,822)
40~49세	3.3	31.5	65.2	0.1	100.0(3,927)
50~59세	3.9	40.6	55.6	0.0	100.0(2,414)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8	39.9	56.2	0.1	100.0(3,523)
고등학교	2.9	27.0	70.0	0.0	100.0(4,918)
대학 이상	2.4	18.6	79.0	0.0	100.0(2,656)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3.1	30.9	66.0	0.1	100.0(6,070)
비취업	3.0	26.9	70.0	0.0	100.0(5,036)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3.0	28.0	68.9	0.0	100.0(9,862)
이혼·별거·사별	3.3	37.5	59.1	0.1	100.0(1,241)

가구유형별로는 3세대 이상일 경우(69.4%)와 응답자의 성이 여자인 경우(69.1%)에 가족문제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족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문제는 국가 또는 사회가 가족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문제는 국가 또는 사회, 그리고 가족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응답자가 비취업인 경우(70%)에 공동의 책임을 응답한 비율이 취업중인 경우(66%)에 비하여 높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자인 경우(68.9%)가 이혼·별거·사별한 경우(59.1%)에 비하여 공동책임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다양한 가족정책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가족정책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보육정책,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 취업부인 지원정책, 중년남자 대상정책, 장애인 복지정책, 그리고 노인복지 정책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정책은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3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정책 26.2%, 중년남자 대상의 정책 11.7%, 보육정책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가구에 정책대상 가족원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 우선정책의 유형이 상이하였다.

즉,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보육정책(32.9%)과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35.9%)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55.2%)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부인이 있는 경우에도 취업부인에 대한 지원정책(11.9%) 보다는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32.6%)이나 노인복지정책(26.2%)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중년기 남자가 있는 경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 오히려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을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 또는 노인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장애인 정책41.6%, 노인복지정책 40.3%)하였다. 따라서 한국 가족정책은 가족원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2-33〉 15~59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 및 대상가구원 동거여부에 따른 가족정책

(단위: %)

동거가구원	보육정책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	취업부인 지원정책	중년남자 대상정책	장애인 복지정책	노인 복지정책	기타	계(수)
전체	11.4	33.4	9.1	11.7	7.4	26.2	0.8	100.0(11,071)
영유아	32.9	35.9	5.5	6.7	5.4	13.3	0.3	100.0(2,641)
초중고생	5.8	55.2	5.8	10.3	5.1	17.6	0.2	100.0(4,905)
취업부인	10.2	32.6	11.9	11.1	7.2	26.2	0.8	100.0(5,562)
중년기남자	5.0	34.2	7.7	16.0	7.5	28.8	0.8	100.0(5,942)
장애인	5.4	15.3	6.2	5.9	41.6	23.5	2.0	100.0(353)
노인	9.1	24.0	6.7	10.9	7.9	40.3	1.1	100.0(1,073)

가족정책의 수립은 건강한 가족생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가족이 생각하는 건강가족 형성의 주요 요건을 살펴보았다.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주요 요건으로서 가족의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원간의 심리·정서적 유대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은 34.3%이었으며, 그밖에 경제적 자립 8.5%, 가족공유의 문화생활 3.9%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응답가구의 특성 및 응답자의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우선 거주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즉,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가족을 형성하는 주요 요건은 가족의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9%였으나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63.6%로 높았다. 또한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원간의 심리·정서적 유대강화를 주요 요건으로 응답한 비율은 36.3%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25.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한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가정의 요건으로서 경제적 자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원간의 심리·정서적 유대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유형별로는 부부로 구성된 1세대가 가족의 건강을, 2세대 가구는 심리·정서적 유대강화를 건강가족 형성의 주요 요건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자응답자(11.5%)가 여자응답자(8.2%)에 비하여 경제적 자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30~39세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리·정서적 유대강화를 강조하였다.

〈표 12-34〉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건강가족 형성의 주요 요건

(단위: %)

특성	경제적 자립	심리·정서적 유대강화	가족 건강	가족공유 문화생활	기타	계(수)
전체	8.5	34.3	53.2	3.9	0.1	100.0(11,117)
지역						
동부	8.8	36.3	50.9	4.0	0.1	100.0(9,092)
읍·면부	7.1	25.7	63.6	3.6	0.0	100.0(2,02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2.0	22.3	63.1	2.6	0.0	100.0(1,090)
100~199만원	10.1	29.0	57.4	3.4	0.0	100.0(2,655)
200~299만원	8.3	33.4	54.0	4.3	0.0	100.0(3,163)
300만원 이상	6.6	41.7	47.2	4.5	0.1	100.0(3,938)
가구유형						
1세대	8.6	27.7	59.8	3.9	0.0	100.0(1,307)
2세대	8.1	35.9	51.8	4.0	0.1	100.0(8,276)
3세대 이상	9.4	31.4	56.5	2.8	0.0	100.0(1,122)
기타	13.3	31.6	51.0	4.1	0.0	100.0(412)
응답자 성						
남자	11.5	31.7	52.2	4.7	0.0	100.0(1,090)
여자	8.2	34.6	53.3	3.8	0.1	100.0(10,026)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8.6	37.0	47.2	7.2	0.0	100.0(943)
30~39세	8.6	41.0	45.7	4.7	0.0	100.0(3,821)
40~49세	8.7	33.5	54.4	3.3	0.1	100.0(3,935)
50~59세	8.0	24.1	65.5	2.4	0.0	100.0(2,415)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9	23.0	65.8	3.3	0.0	100.0(3,529)
고등학교	9.2	33.9	52.2	4.6	0.1	100.0(4,916)
대학 이상	8.0	50.2	38.3	3.4	0.0	100.0(2,663)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9.5	33.9	53.0	3.6	0.0	100.0(6,070)
비취업	7.3	34.8	53.5	4.3	0.1	100.0(5,048)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8.1	34.8	53.1	4.0	0.1	100.0(9,873)
이혼·별거·사별	11.9	30.9	54.2.	3.0	0.1	100.0(1,239)

응답자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정서적 유대강화를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의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응답자가 취업중인 경우가, 그리고 응답자의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이혼·별거·사별의 경우가 경제적 자립(11.9%)을 건강가족 형성의 주요 요건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응답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하는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시된 정책유형으로는 <표 12-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양육 및 부양지원정책, 의료보장정책, 가정생활문화 관련 정책, 가족보호정책 등이었다.

〈표 12-35〉 15~59세 기혼가구가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정책

정책유형	희망정책		
소득보장 정책	• 생계비지원 • 취업지원 • 직업교육	• 농어촌세금감면 • 서민대출제도 확대 • 저리생계자금 융자확대,	• 농어촌부채탕감 • 노인생계비 지원확대 등
주거보장 정책	• 주거비지원 • 주거지 주변 환경개선 • 주택가격의 안정화	• 농가개선 지원 • 노후 상하수도 교체	• 임대주택 확대 • 주거환경 개선 등
양육 및 부양 지원정책	• 자녀학자금 지원 • 가사도우미 • 아동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료 • 지원	• 방과후 학습지도 및 공부방 제공 • 사교육비 절감 • 공교육의 현실화 • 자녀양육비 지원	• 취학연령 수정 • 병설유치원 확충 • 학교급식 질적 개선 • 의무교육의 확대 • 노인부양서비스 등
의료보장 정책	• 의료비지원 또는 보조 • 체력강화비용 지원 및 보조	• 만성질환자 지원확대 • 의료시설 확충	• 의료보험 확대 • 의약분업 폐지 등
가정생활문화 관련 정책	• 가정생활교육 • 가족간 유대강화를 위한 가족상담서비스	• 지방 문화시설 확충 • 사회체육시설 확충	• 성교육 강화 • 중년기 남자의 가정생활 상담 등
가족보호정책	• 소년소녀가정 지원확대 • 여성복지시설 확충	• 장애인복지 향상	• 식품안전 제고 등
기타 정책	• 물가안정 • 치안 및 질서회복	• 지역개발 시 보상비 현실화 • 깨끗한 정치	• 교통정책의 강화 • 호주제 폐지 등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가족정책 욕구가 파악되었으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5% 이상이 희망한 정책은 자녀학자금 지원정책(14.1%), 취업지원정책(13.4%), 의료비 지원 및 보조정책(13.2%), 노인보호서비스(8.8%), 아동보육시설의 확충(8.7%), 그리고 생계비지원 정책(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주99)

제 4 절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욕구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욕구를 검토하였다.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가족생활과 부부권력관계에서는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남성에게 잔존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만족수준은 높았으며, 불만족은 낮았다. 이는 갈등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장 중심의 가족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한국가족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사료된다. 즉, 민주평등,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남성에게 강하게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 시간의 투입과 문화생활의 방법의 합리적 결정 등을 위한 가족 스스로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책적 차원에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문화공간을 널리 조성하여야 하겠다.

가족생활은 개별가족의 사회·경제·문화·정서 전반에 걸쳐 수행되는 일상의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일상의 경험에 대한 객관적 또는 주관적 느낌이나 판단을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할 수 있다. 가족원 각자가 표현하는 인간생활의 제 측면을 포함하면서도 단순히 개별인간의 경험의 합(合) 이상의 의미를 갖는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생활전반에 대한 포괄적이

주99) 분석결과표는 제시하지 않음.

고 종합적인 판단의 의미가 있다.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기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다양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행복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과 그 가족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사회·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과제로서 남게 된다.

본 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가구는 현재의 가족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응답자가 남자거나 취업 중이거나 또는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에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았다. 경제적 위기가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통해 논의하고 있으나, 동일한 경제위기의 수준에 대해서도 가족이 반응하는 수준은 각양각색이므로 일반화된 논리를 전개하기는 어렵다. 물론, 급박한 경제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적절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직적접인 소득보장 외에 다양한 가족정책 및 가족단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사회, 그리고 가족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양육에 따르는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의 심화 등을 고려한다면, 가족의 자녀양육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가족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가족정책은 자녀교육 및 양육과 관련된 정책으로 나타나, 이들 분야에 대한 국가개입의 시급함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한편,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실업률의 증가는 가족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통합정책을 강구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1 3 장 종합논의 및 정책적 제언

산업화 초기에 한국사회에서는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인구증가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와 어우러지면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에 저출산·저사망 수준의 인구전환을 달성하였다. 즉, 한 사회의 출산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의 6.0명에서 1984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1987년 이후에는 약 1.6~1.75명 수준의 저출산율을 유지하였으며, 최근에는 1.165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동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로서 한국은 세계적 저출산 국가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수준의 지속적 유지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것이 우려된다. 예를 들면, 2020년 전·후를 절정으로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이며, 21세기 중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어렵지 않다. 특히 한국의 인구전환은 장기간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형성된 서구 선진국의 인구전환과는 달리 정부차원의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실현된 것으로 그 영향은 어느 저출산 국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닥친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한' 사회적 변화현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가족계획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노출된 인구자질 관련 제반 문제점과 가부장제적 가치관에 기인되는 남아선호사상이 상존하고 있음도 문제이다. 이 외에도 불법의료행위에 의한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과 출생성비 불균형 등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염려가 있다.

출산과 관련되는 제반 인구사회학적, 가족보건 및 가족복지적 측면의 환경변화는 가치관뿐만 아니라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1964년 이래 19번째이며, 정부의 인구정책이 전환된 1996년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된 출산력 및 가족보건 관련 전국적인 규모의 실태조사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복지 등이 출산행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조사명칭을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라고 변경하였다. 전반적으로 조사결과는 한편으로 과거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인식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사분석 결과의 주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저출산시대의 새로운 인구정책, 가족보건정책, 그리고 가족복지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1989년 가족계획사업의 축소,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 그리고 1997년 말 IMF 경제위기 등 인구관련 주요 현상의 다양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구정책의 발전적 전략을 강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제 1 절 종합논의

본 조사는 인구사회학 측면, 가족보건 측면, 그리고 가족복지 측면의 다양한 영역의 실태를 시계열적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그리고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각 분야의 장(章)에서 상세히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분석결과의 모든 내용을 나열하고 설명하기보다는 최근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코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2절에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부인의 임신경험은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며,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임신은 점차 감소하고 정상출생이 증가하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높은 피임실천율과 장기간에 추진된 모자보건사업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사산 등의 임신소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과거 부인의 임신경험은 4회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1991년 44.9%, 1994년 31.7%, 1997년 29.2%, 2000년 26.5%), 2003년 조사에서는 2회의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의 비율이 30.3%로 가장 높았고, 4회 이상 임신경험이 있는 부인은 26.5%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부인의 평균임신횟수는 1994년 3.0회, 1997년 2.8회에서 2000년에는 2.7회로 감소하였으나, 2003년에는 감소를 멈추고 2000년의 수준과 동일하였다.

부인의 임신횟수와 부인연령은 정비례하고, 임신횟수와 부인의 교육수준과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임신횟수의 차이도 이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부인의 학력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영아사망률의 감소, 피임실천의 생활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향후 부인의 임신경험은 저출산관의 정착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감소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인 저하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1994년, 1997년, 2000년, 그리고 2003년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응답부인이 경험한 전체 임신횟수 중 정상출생이 1994년 조사에서는 1.80회이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1.72회로 감소하였고, 2003년 조사에서는 다시 1.78회로 증가하여 1997년 조사결과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또한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조사의 36.9%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35.5%, 2000년 조사에서는 34.0%, 그리고 2003년 조사에서는 32.9%로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보여 바람직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임신소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은 1994년 조사의 28.3%에서 1997년 조사 26.1%, 2000년 조사 24.1%, 그리고 2003년 조사 23.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부인의 임신종결 형태를 분석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임신 중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임신의 32.9%가 소모되고 있음은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는 감소되고 있으나 높은 피임실천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신의 23.1%, 임신소모의 약 70%가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었음은 피임실천의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아직까지 불원임신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불원임신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이다.

셋째, 사산과 자연유산은 많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회적 및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임신소모는 흡연, 음주, 약물복용 등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청소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계몽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가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철저한 임산부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넷째, 불원임신의 예방을 위한 효과적 피임사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피임법 사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청소년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2. 1989년 가족계획사업의 축소와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사회변화, 개인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읍·면부지역보다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동부지역의 출산율이 현저히 낮음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현재의 출산수준이 쉽게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합계출산율은 1990년 1.6명에서 가족계획사업의 급격한 축소에 의한 일시적 반동으로 1993년 1.75명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1996년 6월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1996년 1.71명, 1999년 1.425명, 2002년 1.165명으로 감소되어 저출산 행태가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본 조사결과인 2002년의 출산수준은 '인구동태통계자료에 기초하여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의 합계출산율 1.17명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통계의 정확성을 상호 확인하였다.

최근에 진행된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소자녀관의 정착 외에도 IMF 경제위기의 지속과 청년실업, 자녀양육부담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미혼남녀의 결혼이 연기되었고 출산이 포기 또는 연기되고 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자녀양육부담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출산당사자인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저출산 수준은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유배우부인들의 출산수준은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최근의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핵심적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즉, 유배우출산율의 저하가 합계출산율의 저하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합계출산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유배우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출산율의 저하는 1960년 이후 전체 연령층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이나 합계출산율에의 기여율은 1990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즉, 25~29세 연령층이 합계출산율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은 합계출산율이 6.0명이던 1960년에는 27.6%이었으며,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이었던 1984년에는 44.8%로 상승하였다. 그런데 기여율은 합계출산율이 1.6명이었던 1990년에는 60.5%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3년에는 55.9%, 1996년 52.8%, 1999년에는

49.8%, 그리고 2002년에는 47.2%로 점차 낮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연령층이 25~29세 연령층에서 서서히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1960~2002년 기간중 출산율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24세 연령층과 35~39세 연령층에서 보여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나 20~24세 연령층의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고용기회의 확대, 초혼연령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이며, 35~39세 연령층에서의 출산율 감소는 소자녀관의 형성에 따른 피임실천율의 증가, 인공임신중절, 그리고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최근 한국사회 출산율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하를 멈추고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 동 연령층에서의 출산율(여성 1,000명당)은 257명이었으며 점차 저하하여 1987년에는 39명 수준으로 최저점에 있었으나 점차 상승하여 1990년 50명, 1993년 64명, 1996년 83명이었으며, 1999년에는 75명으로 다시 저하하였으나 2002년에는 83명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연령 상승으로 20~24세와 25~29세 연령층의 출산율 저하에서 나타나는 파급효과라 하겠다. 특히, 25~29세와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 차이가 좁혀지고 있음이 큰 의미를 가진다.

넷째, 최근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변동의 또 다른 특징은 비록 그 정도는 미미하지만 199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늦둥이 출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40~44세 연령층의 출산율(여성 1,000명당)은 1960년 80명에서 점차 저하하여 1984년에는 1명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는 늦둥이 출산이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4. 정부지원에 의한 피임보급이 폐지되었고, 피임비용은 스스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임의 생활화에 힘입어 피임실천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임실천자가 여성위주에서 이제

는 남성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 양성 평등적인 측면이 엿보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질적 측면에서 피임실천은 종전보다도 오히려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피임실천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피임비실천과 피임실패로 인한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피임실천율은 1991년에는 79.4%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임대상이 실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는 1994년에는 77.4%로 다소 저하되었으나, 1997년에 증가하여 80.5%의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다. 2000년에는 1997년에 비하여 1.2%포인트가 감소한 79.3%이었으나 다시 증가하여 2003년에는 84.5%라는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다. 이 수준은 폐경, 자궁적출 등에 의한 임신불가, 자연불임, 임신중인 경우 등을 감안할 때 피임실천의 한계수준이라 할 수 있다.

가족계획사업의 활성화 시기에는 정부정책의 목표가 여성으로 난관수술이 주도 하였으나, 정부의 피임보급이 감소함에 따라 난관수술의 의존도가 떨어졌으며, 오히려 남자피임법인 정관수술과 일시적 피임방법인 자궁내장치, 기타 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피임방법의 변화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피임방법이 여성피임방법인 난관수술에서 탈피하여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성 평등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둘째,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자궁내장치, 기타 피임방법 등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어 피임효과가 낮은 피임방법의 사용증가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에 노출되어 여성건강 및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우려된다.

5.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임신

노출상태의 부인이 각 연령층에 산재해 있었다. 이와 같은 피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임신할 경우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향후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9.0%이었으며, 추가자녀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4.2%로 나타났다.주100) 반면 추가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하는 경우는 74.5%, 추가자녀를 원하지만 피임을 하는 경우는 12.3%이었다. 따라서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자녀희망여부		
		희망(+)	비희망(-)	
피임 실천 여부	실천(+)	A(12.3%)	B(74.5%)	86.7%
	비실천(-)	C(9.0%)	D(4.2%)	13.3%
		21.3%	78.7%	100.0%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3.8%)이 동부지역 거주부인(3.0%)보다 약간 많았고, 25~29세 연령층이 4.8%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5.5%,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3.8%이었고,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3.4%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이들 위험집단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모성보호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6.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적인 경우가 대부분

주100) 2000년의 조사결과에서는 동 수준이 5.3%이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되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위험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은 주의할 점임에 틀림없음.

이어서 사회윤리적 측면, 준법적 측면, 그리고 모성건강의 측면에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은 1990년을 절정으로 전체 연령층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2년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증가하였다, 즉, 30～34세 연령층의 부인만이 감소하였고,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일제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0～90년대 초반에는 약 52～54%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2000년 39%, 2003년 40%가 되었다. 인공임신중절을 2회 이상 반복경험한 부인은 1994년 조사에서는 20.9%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0년 17.1%, 2003년 15.8%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공임신중절의 평균 경험횟수도 1994년 0.8회에서 2000년 0.7회, 2003년 0.6회로 낮아지는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부인연령이 상승할수록 인공임신중절 평균 경험횟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부인의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임신력(pregnant history) 기간이 길어지고, 임신노출 또는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의 발생가능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는 모자보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14.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터울조절 16.1%, 혼전임신 12.4%, 임부의 건강과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경우가 9.4%, 경제적 곤란 7.5%, 태아이상 4.6%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성 선택적인 경우(태아가 딸이어서) 1.7%, 취업중이어서와 가정문제가 각각 1.4% 등이 있었고, 기타 이유로서 쌍둥이어서, 입덧이 너무 심해, 임신중 약물복용, 혼외임신, 딸일 것 같아서, 아들이어서, 아들일 것 같아, 기형아 우려 등이 있었다.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곤란에 의한 경우가 1994년 3.7%, 1997년 7.3%, 2000년 6.5%,

2003년 8.4%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혼전임신으로 인하여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부인은 1994년 3.3%, 1997년 4.0%, 2000년 5.1%, 2003년 6.9%로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었다. 셋째, 태아가 딸이어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한 부인은 1994년 1.7%, 1997년 2.6%, 2000년 2.3%, 2003년 2.1%로 있어 사회발전이 이루어지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준이 계속되고 있었다.

7.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태아 성감별을 위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더군다나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도 자행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의료인에 대한 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을 한 경험률은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에는 유배우부인 중 자연요법에 의하여 노력한 비율은 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초음파검사 2.5%이었으며, 이들 외에도 양수검사 0.5%, 융모막검사 0.1% 등이 있었다. 특히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이 높아져 문제의 심각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남아출산 노력을 실행하는 것은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다.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을 실시한 부인은 2.1%이었고,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경험률은 2.5%이었다. 자녀 중에 딸이 한명일 경우에는 태아 성감별에 의한 아들출산을 주장하는 경우가 높지 않았으나 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 성감별에 의해서라도 추가자녀는 아들을 강하게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수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시설분만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전분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율의 상승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2001년 1월부터 2003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자녀를 출산한 부인의 산전수진율은 99.8%로 부인의 인구학적 특성(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에 관계없이 높았다. 이와 같은 산전수진율은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1985년 82.4%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이며, 1994년 조사이후에는 전국적으로 9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3년도 조사결과(99.8%)는 2000년의 100%에 비하여 미미하나마 다소 감소한 것이다.

산전수진을 받기 위한 평균 초진시기는 임신 후 5.88주였으며, 초진시기는 임신 1주 후에서 임신 후 32주까지 분포하였다. 특히 임신 5~8주 시기에 초진을 받은 부인이 전체 조사대상의 4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신 4주 이전이 38.3%를 차지하여, 전체 부인의 87.3%가 임신 후 8주 이내에 초진을 받고 있었다. 전국 평균 산전수진 횟수는 12.68회였으며, 임신기간 중 총 11회에서 15회 방문한 경우가 53.7%로 가장 많았다.

산후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산후검진을 받은 비율은 1988년 52.3%, 1997년 81.0%, 그리고 2000년에는 85.0%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15~49세 유배우부인의 산후수진율이 90.9%로 나타났다. 그러나 15~24세 부인의 셋째아 이상 출산인 경우 산후수진율이 50.0%에 그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최종출생아의 시설분만율은 1997년 99.7%, 2000년 99.9%였으나 2003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여 99.3%로 나타났다. 시설분만의 장소로는 병원이 4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의원 28.3%, 종합병원 22.4%의 순이었으며, 조산소나 보건소에서 분만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종합병원에서의 분만은 1997년 39.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31.5%, 이어서 2003년에는 22.4%까지 낮아졌으나 병원분만의 경우 1994년 21.3%에서 1997년 28.2%, 2000년 43.1%, 그리고 2003년에 48.6%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는 종합병원과 일반병원과의 분만시설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중분만, 그네분만 등 다양한 분만시술을 제공하고 있는 병원이 증가하면서 이용이 번거로운 종합병원에서의 분만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왕절개분만율은 39.2%로 1997년 35.9%, 2000년의 37.7%와 비교하여 증가하였

다. 거주지역별로 제왕절개분만율을 비교해보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39.1%, 읍·면부 거주하는 경우는 39.8%로 나타났다. 제왕절개 분만의 주요 이유는 첫 출산을 제왕절개로 분만했기 때문에 선택한 경우가 3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산모의 이상이 23.8%이었으며, 이 외에도 태아이상 19.0%, 산모의 건강 또는 노산 8.9%, 양수 조기파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 요인으로 제왕절개를 선택한 경우는 3.6%에 불과하였다.

9. 최근 출생아 중 저체중아와 과체중아가 나타났다. 특히 저체중아는 임신 중 산모의 음주, 흡연, 약물복용 및 조기분만과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 등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모유수유율이 증가하지만 여전히 낮은 상태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자보건차원의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종출생아의 출생시 평균체중은 3,257.7g이었는데, 남아는 3,313.0g으로 여아의 3,200.2g에 비해 다소 높았다. 최종출생아의 정상체중 비율은 90.5%이며, 출생시 정상체중 비율은 여아의 경우가 92.7%로 남아의 경우 88.6%보다 높았다. 반대로 1,000~1,500g 미만의 극저체중아 비율은 0.4%였는데, 여아가 0.6%로 남아인 경우 0.2%에 비해 다소 높았다. 반면 1,500~2,000g 미만인 경우의 비율은 전체 출생아의 0.5%였는데, 남아가 0.7%로 여아의 0.2%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한편, 출생시 4,000g 이상인 과체중의 비율은 5.3%이었고, 남아가 과체중인 경우는 7.5%로 여아의 경우 3.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저체중 이유로는 산모의 임신 중 음주, 흡연, 약물복용 및 조기분만과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 등이었다. 그러나 산모의 음주나 흡연 또는 약물복용에 의한 저체중아의 출생은 나타나지 않았다.

모유수유율은 지난 2000년보다 6.3% 포인트 증가한 16.5%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를 증대시키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0. 현존자녀수는 다소 증가하였고, 이상자녀수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이상자녀수와 현존자녀수의 차이가 크고, 현존자녀수의 증가현상이 출산율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미혼층의 초혼연령 상승과 독신율 증가 등이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3년 이상자녀수는 2.2명으로 2000년 조사결과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상자녀수를 연도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1997년에는 2.3명, 2000년은 약간 저하한 2.2명이었고, 금번 조사에서도 2.2명이었다. 2003년 조사결과에서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8명으로 2000년보다는 0.1명이 증가하였고, 1994년과 1997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는데, 최근 현존자녀수가 증가한 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는 달리 합계출산율이 더욱 저하되었음은 이러한 현상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현재의 합계출산율은 기혼부인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혼층에서 원인을 찾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가치관 변화, 직장불안정, 경제적 곤란 등의 복합적 요인이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결혼기피 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은 개인주의화 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부모의 책임을 대학 졸업시까지로 생각하는 부모가 가장 많았다. 남아선호가치관이 약화되고 있어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으나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우려된다. 이러한 가치관이 실제 행위로 연결될 경우 불법적 의료 행위에 의한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파악한 결과, 1991년 90.3%, 1997년 73.7%, 2000년 58.1%, 그리고 2003년에는 54.5%로 수준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결혼하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와 같은 가치관은 퇴색하여 점차 자녀필요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인은 1991년 40.5%, 1994년 26.3%, 1997년 24.8%, 2000년 16.2%, 그리고 금번 조사에서는 14.1%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견은 1991년 28.0%, 1994년 38.9%, 1997년 39.4%, 2000년 39.5%, 그리고 금번 조사에서는 43.3%로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소 정체현상을 보였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하였다.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들의 자녀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 74.8%가 '자녀들을 적극 지원하며, 부모의 규칙을 설명하여 이해하고 따르도록 함'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뚜렷한 자녀양육방법이 없으며, 지나친 자율성 부여'가 13.5%,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을 통제, 자율성 거의 없음' 9.7%,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며, 자녀들에게 요구도 반응도 보이지 않음' 1.9% 등의 순이었다. 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가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다행스러우나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25.2%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교 졸업 때까지가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32.1%, 취업할 때까지 11.5%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8.3%, 언제(까지)라도 6.3% 등이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가족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대학 졸업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학 졸업~언제(까지)라도의 비율은 90.1%).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2000년

26.2%에서 2003년에는 25.7%로 감소하였고,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 태도는 같은 연도에 29.4%에서 28.9%로, 그리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38.2%에서 37.1%로 1.1%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5.4%에서 7.9%로 2.5%포인트 증가하였다. 따라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또는 긍정적 태도는 2000년 55.6%에서 2003년에는 54.4%로 감소한 반면, 소극적 및 부정적 태도는 같은 연도에 43.6%에서 45.0%로 증가하였다.

부인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이 2000년에는 52.8%이었으나 2003년에는 50.4%로 약간 감소하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라고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2000년 30.2%, 2003년 30.3%,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와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03년에는 18.6%로 3.1%포인트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이혼을 수용하는 부인의 비율은 2000년 45.7%에서 2003년 48.9%로 증가하여 이혼에 대해 점차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혼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전체 부인의 20.7%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적극적 또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47.2%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외 27.4%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재혼에 대해 적극적, 긍정적 태도(2000년 16.8%, 2003년 20.7%)와 소극적인 태도(2000년 46.5%, 2003년 47.2%)는 2000년보다 2003년이 모두 높았으며, 부정적인 태도는 2000년(30.3%)이 2003년(27.4%)보다 높아 최근일수록 재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12.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로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서 이혼가정의 자녀양육 문제를 들 수 있다.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에 이혼·별거한 부인들의 88.9%와 30대에 이혼·별거한 부인들의 93.9%, 40대에 이혼한 부인들의 65.0%, 그리고 50세 이상에 이혼·별거한 부인 중 27.3%가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었다. 조사당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의 동거자는 대부분 아동의 부 또는 모이었으며, 아동양육비 제공자도 대부분 동거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비율이 높았고, 비동거 부 또는 모가 아동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하였다.

15~59세의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의 경우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를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볼 때, 이혼가정의 자녀양육비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할 때 모의 자녀양육비 부담은 부에 비해 과중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혼여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해 줄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이들 이혼·별거부인 중 비교적 젊은 부인들은 자녀양육에 따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녀와 동거중인 기혼부인들의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혼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들 이혼·별거가족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3. 초혼연령의 상승, 결혼행태의 변화, 자녀출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주기의 전체 기간 및 단계별 기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기혼부인 11,219명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 부인이 89.2%로 대부분의 부인이 유배우 상태이었으며, 사별 6.2%, 이혼·별거 4.6%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유배우부인과 사별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이 높은 반면, 이혼·별거한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7.8%)이 읍·면부

지역(4.6%)보다 높았다. 부부의 결혼경력별 결합형태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96.9%로 대부분이었으며, 남편, 부인 모두 재혼 1.6%, 부인 초혼·남편 재혼 0.9%, 그리고 부인 재혼·남편 초혼은 0.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여자보다는 남자의 재혼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의 재혼을 금기시 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중년기 남자의 사망률 증가와 함께 결혼관의 변화,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 등으로 인한 이혼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족해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사별한 부인이 전체 응답대상 부인 중 4.1%, 이혼·별거 부인은 7.2%로 전체의 11.3%가 해혼부인이었다. 해혼상태별 해혼당시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사별부인은 사별당시 40대였던 경우가 3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로서 35.9%, 그리고 50대가 17.8%이었다. 그러나 이혼·별거 부인의 경우는 30대가 51.2%, 40대가 30.1%로 30~40대에서 이혼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해혼당시 평균연령은 사별부인은 40.81세, 이혼·별거 부인은 36.38세이었다. 이혼·별거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한 해혼이유는 성격차이 30.3%, 경제문제 23.6%, 배우자의 외도 20.5%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혼·별거 제의자는 남편 30.6%, 부인 66.7%, 그 외 시부모나 친정부모 등에 의한 비율이 2.6%로 남편보다는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율이 높았다. 해혼당시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의 저연령층과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율이 높았고, 남편이 제의한 경우는 40대까지는 상승하는 추세이었으나 50대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에 이혼·별거한 부인들의 경우 11.0%가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이었으며, 나머지 88.9%는 자녀를 둔 상태이었다(1명 38.1%, 2명 이상 50.8%). 30대에 이혼·별거한 부인은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 93.9%이었으며, 40대에 이혼한 부인은 65.0%이었다. 그러나 50세 이상에 이혼·별거한 부인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비율은 27.3%에 불과하였다. 이는 18세 미만의 평균 자녀수에서도 나타나는데, 이혼·별거당시 29세 이하인 부인의 경우

평균 1.45명이었으며, 30대는 1.78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부인의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주기의 전체기간이 점점 길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51.20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54.66년으로 추정되어 약 30여 년 동안 3.46년 정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족주기 전체 기간의 연장은 사망수준의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그에 따른 가족주기 전체기간의 연장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직까지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한 연령인 1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결혼적령기인 25~29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30~34세를 기점으로 다시 급격히 증가하여 40~44세에 절정을 이루다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산 및 육아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취업여성들이 결혼과 자녀출산 및 집중적인 양육기에 취업률이 낮았고, 영유아기 자녀가 없는 경우 취업률이 높았다. 또한 혼전 취업의 중단시기를 보면, 혼인 전 6개월에서 혼인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50.2%나 되었으며, 자녀출산 전·후에 혼전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10.9%나 되었다.

취업직종이 결혼 전에는 사무직 종사자가 41.3%, 서비스·판매직 13.6% 등이었으나 결혼 후에는 서비스·판매직(39.7%), 단순노무직(14.1%) 순이며, 사무직 종사자는 11.6%에 불과하여 혼전 취업직종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비취업 부인들의 비취업 이유로 자녀양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출산 및 집중 양육기에 있는 34세 이하 부인들에게서 보다 높아 자녀양육이 기혼부인들의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 취업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가사부담이 4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육아 및 자녀양육 부담이 22.7%,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이 14.6%의 순이었다. 또한 비취업 기혼부인들의 비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양육(49.0%)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그 다음은 일하고 싶지 않아서(21.4%), 건강상의 이유(16.0%) 순이었으며, 이 외 남편·시댁식구의 반대(4.6%), 가사(4.2%)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 비취업부인의 52.0%가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취업하고 있거나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부인들을 위한 사회제도적 개선, 특히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15. 기혼자녀들의 부모와의 동거율은 매우 낮았고, 비동거부모와 접촉율은 높았으나 평균 횟수는 월 1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자주 접촉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구주 부부 중 부인의 부(父)와의 동거율은 1.1%, 모(母)와의 동거율은 2.1%로 나타났다. 물론 부모 모두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만 부(父)와의 동거율이 모(母)와의 동거율 보다 높은 것은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혼부부가구들이 그들의 비동거 부모와 만나는 경우는 부인 부모와 남편 부모가 유사한 수준이었다. 즉, 부인의 부(父)와는 98.1%, 모(母)와는 98.6%가 만나고 있었으며, 남편의 부(父)와는 98.9%, 모(母)와는 98.8%가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만나는 빈도는 월 1~3회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2~3개월에 1회 또는 1년에 2~3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 부모보다는 남편 부모와 만나는 빈도가 더 많았는데, 이는 명절 또는 제사를 주로 남편 부모 댁에서 보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비동거 부모와 연락하는 경우는 부인 부모와 남편 부모가 유사한 수준이었다. 즉, 부인의 부(父)와는 98.8%, 모(母)와는 98.9%, 남편의 부(父)와는 98.4%, 모(母)와도 98.4%가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연락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만나는 빈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락빈도도 남편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다 많았다.

16. 기혼자녀들의 부모와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는 매우 빈번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제공한 신체적 도움, 정서적 도움, 그리고 경제적 도움의 비율이 부모로부터 받은 비율보다 높았다. 이는 부모공경이 우리 사회에 강하게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편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움이 부인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움보다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부모와 주고받은 비율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부인의 부(父) 및 모(母)와는 각각 72.7%, 66.4%이었고, 남편의 부(父) 및 모(母)와는 각각 74.8%, 69.8%이었다. 따라서 부인의 부모보다는 남편의 부모와 주고받은 비율이 더 높았고, 모(母)와 주고받은 비율 보다는 부(父)와 주고받은 비율이 더 높았다.

먼저 신체적 도움을 받은 비율은 부인의 부모로부터는 약 10.9~11.0% 수준이었고, 남편의 부모로부터 받은 비율은 약 11.0~14.9% 수준이었다. 신체적 도움을 받은 평균 횟수는 부인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보다는 남편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신체적 도움을 부모로부터 받은 내용은 시장보기·식사준비, 손자녀 돌보기, 집안청소·세탁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부모에게 제공한 신체적 도움의 비율이 부모로부터 받은 비율보다 높았다. 부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약 17.3~17.7% 수준이었고, 남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약 29.4~30.0% 수준이었다. 부모에게 신체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남편의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가구가 많았다. 부모에게 제공한 주요 신체적 도움의 내용은 시장보기·식사준비, 집안청소·세탁, 간병·수발 등이었다

부모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받은 비율은 부인의 부모로부터는 약 39.9~43.0%

수준이었고, 남편의 부모로부터 받은 비율은 약 44.3~45.6% 수준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도움의 내용은 대화상대(말벗), 중대결정시 의논상대, 그리고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 등의 순이었다.

부모에게 정서적 도움을 제공한 비율은 약 62.0~64.5% 수준이었고, 남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약 60.2~61.0%의 범위에 있었는데, 이는 신체적 도움의 경우 부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약 17.3~17.7%의 범위였으므로 남편의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 약 29.4~30.0%인 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았다. 부모에게 제공한 정서적 도움의 유형은 대화상대(말벗)와 중대결정시 의논상대가 대부분이었고, 어려운 일 상담 및 조언도 다소 있었다.

경제적 도움을 받은 비율은 부인의 부모로부터는 약 14.8~21.8% 수준이었고, 남편의 부모로부터 받은 비율은 약 14.4~24.0% 수준으로 유사하였다.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의 금액을 살펴보면, 부인의 부모로부터는 약 9만 9천원, 남편의 부모로부터는 약 15만 3천원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부인의 부모로부터 약 10만 4천원, 남편의 부모로부터 약 15만 1천원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고,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부인의 부모로부터 약 7만 1천원, 남편의 부모로부터 약 16만 4천원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 비율은 부인의 부모에게는 약 52.3~56.8% 수준이었고, 남편의 부모에게는 약 58.2~59.6% 수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부인의 부모에게는 약 9만 9천원, 남편의 부모에게는 약 17만 3천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부인의 부모에게 약 10만원, 남편의 부모에게는 약 17만 9천원의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고,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부인의 부모에게 약 8만 6천원, 남편의 부모에게 약 14만 3천원의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다.

17. 영유아 자녀를 돌봄은 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취업모인 경우에도 영유아 양육의 책임은 어머니가 상당히 부담하

고 있었고, 비취업모인 경우에는 더욱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의 자녀양육은 방과후 보육 또는 공부방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설학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는 취업모 자녀의 경우에 더욱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높은 사교육비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출산의 한 원인임에 틀림없다.

영유아 양육형태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이었는데, 전체 영유아의 35.1%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5.4%, '유치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4.4%, '어머니가 돌보면서 보육시설에도 보내는 경우'는 9.7%, '어머니가 돌보면서 유치원에도 보내는 경우'는 13.1% 등이었다.

취업모의 영유아 자녀 양육형태는 '가족이나 가족외의 사람의 도움'의 경우가 13.7%로 많았으며, 다음은 '보육시설에만 의존' 10.7%,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 10.2%, '어머니가 돌보면서 가족이나 가족외의 도움' 9.3%, '유치원에 전적으로 의존' 8.8% 등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영유아 자녀 양육형태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 47.6%, 다음은 '어머니가 돌보면서 유치원 의존'이 15.6%, '어머니가 돌보면서 보육시설에도 의존' 10.6%, '어머니가 돌보면서 사설학원에 의존' 8.7% 등이었다.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보내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학원, 유치원이 교육효과가 크기 때문'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다음 이유로는 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다 '본인, 가까운 사람이 돌보아 주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가 19.9%로 나타나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태도가 부정적인 측면이 높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육료 부담'(8.1%), '가까운 곳에 돌보아 줄 사람 있음'(3.9%) 등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전체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가진 기혼부인의 39.1%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희망률을 보면, 0세아 67.3%, 1세아 64.9%, 2세아

53.9%로 매우 높게 나타나 영아전담보육시설의 확충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초등학교 자녀의 양육형태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돌보면서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45.2%(취업모 26.5%, 비취업모 6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설학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로 취업모가 42.9%, 비취업모가 17.2%로 나타났다. 방과후 아동교실 및 공부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은 취업모 2.7%, 비취업모 0.2%이었고, 어머니가 돌보면서 병행하여 방과후 아동교실 및 공부방을 이용하는 비율은 취업모 1.5%, 비취업모 2.0%, 그리고 가족(외) 도움과 방과후 아동교실 및 공부방을 이용하는 경우는 취업모 0.6%이었고, 비취업모는 거의 없었다.

사설학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취업모 42.9%, 비취업모 29.9%이었고, 어머니가 돌보면서 병행하여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취업모 26.5%, 비취업모 45.2%이었으며, 그리고 가족(외) 도움을 병행하여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취업모 9.7%, 비취업모 5.3%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모는 사설학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8. 자녀양육비는 가족생활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구소득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심하였으며,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서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자녀양육비 중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므로 이를 경감시킬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만이 가족생활의 안정과 출산율 제고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는 135만 8천원으로 가구원 공통비용 중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의 자녀 관련 비용은 55만 6천원이었고, 자녀만의 비용은 80만 2천원이었다. 또한 전체 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290만 2천원, 소비지출액은 236만 5

천원이었으므로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8%이었고,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7.4%나 되었다.

소득이 가장 낮은 99만원 이하의 가구는 월 평균 가구소득은 59만 3천원, 소비지출액은 124만 1천원이었고, 월소득 100~199만원 이하의 가구는 월 평균 가구소득은 147만 6천원, 소비지출액은 150만 1천원이어서 부채에 의하여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살펴보면, 월소득 99만원 이하의 가구는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1%이었고,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8.3%이었으며, 월소득 100~199만원 이하의 가구는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8.2%이었고,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7.2%이었다. 따라서 이들 소득계층에서는 빚을 내어 생활과 자녀양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를 살펴보면, 가족공동 경비중 개인자녀의 몫은 29만 4천원이었고, 자녀개인비용은 45만 4천원으로 자녀 1인당 양육비는 74만 8천원이었다.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77만 2천원,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60만 9천원으로 지역별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차이가 현저하였다. 자녀연령별로도 자녀양육비가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영아(0~2세)는 월평균 50만 1천원이 양육비로 지출되며, 18세 이상의 자녀는 106만 2천원이 지출되어 약 2배의 차이가 있었다.

19. 가족관계는 남자가장중심에서 점차 부부중심의 가족관계가 중요시되고 배우자에 대하여 만족하는 수준이 높음을 보였다. 또한 과거의 성 역할분담의 행동양식은 감소되고 있어 양성 평등적이고, 능력중심의 균등부담 형태로의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과 많은 남성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가치관의 향수에 젖어 사회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문화적 지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갈등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3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33.7%로 많았다. 그리고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도 18.5%로 많았다. 그런데 양성평등적 가사분담을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는 4.2%에 불과하였고,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도 2.4%이었다.

일상생활비 지출은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의 지표인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은 부부공동 결정이 가장 많았다. 일상생활비 지출을 살펴보면,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33.6%,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32.6% 이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가구도 27.1%가 있었다. 또한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부공동 결정이 가장 많은 59.5%이었으며,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4.5%에 불과하였으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36.0%나 되었다. 그렇지만 주택매매 및 이사는 부부공동 결정이 74.2%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14.2%,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11.3%이었다. 또한 투자 및 재산증식도 부부공동 결정이 69.1%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가 16.1%,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14.8%이었다.

배우자 이해도,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대화 등은 (매우) 만족이 많았으며, 그 외의 지표는 보통이 많았고, 다음이 (매우) 만족이 많았다. 불만족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배우자 부담 가사량에 대한 불만이 28.1%,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량에 대한 불만이 20.8%, 부부대화에 대한 불만이 17.4%, 배우자 이해도에 대한 불만이 13.1% 등의 순이었다. 그렇지만 전반적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족도는 9.6%로 낮은 수준이었다.

제 2 절 정책적 제언

향후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의 방향은 저출산의 지속에 따른 제반 사회경제적 현상을 분석하고 적정인구규모의 산출과 인구구조의 적정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청소년 성 보건사업 등 생식보건 관련사업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통하여 인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들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의 변화수준과 제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율 회복, 인구자질향상, 가족복지증대 등의 분야를 위한 주요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적정 인구규모와 인구구조를 산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출산율을 제시하며, 장·단기 사회정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적정 인구규모와 인구구조를 산출하기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렇지만 먼저 다학제적인 접근에 의하여 인구의 적정화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이상적인 개념이라 할지라도 인구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적정화에 대한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이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율을 다양하게 가정하여 적정 출산율을 산출하고 이러한 출산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저출산 국가에서 적정출산율의 유지 및 달성을 위한 노력은 서구 선진국의 많은 경험에서 보았듯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즉,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수준의 회복이 성공한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인구정책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사회에 알맞은 정책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부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TFR 2.1)의 70% 수준까지 저하한 근본 원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혼부인의 소자녀관 정착과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또는 기피현상이 병존한 결과이며, 최근에는 후자가 더욱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점차 서구화,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미혼남녀의 결혼가치관을 변화시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가족형성에 대한 관심을 증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혼여성의 자아성취를 위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결혼이 경제활동에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양육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육정책의 내실화, 출산휴가기간의 확대, 육아휴직의 활성화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인이 주로 담당하는 가사역할이 양성 평등차원에서 분담되어 자녀양육이 부인의 몫으로 되는 현실을 타파하여야 한다. 물론 남편의 가사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인이 담당하는 가사를 지원하는 자세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가사를 분담하려는 남편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범정부차원의 기구를 설치하고 다양한 정책의 개발 및 추진하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환류시키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출산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한, 두개 부처에 국한될 수 없으며, 전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 인공임신중절, 사산, 자연유산 등으로 많은 임신이 소모되고 있는

것은 인구자질, 모성보호, 낮은 출산율 등의 측면에서 큰 문제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전·후 관리, 피임실천의 효율화, 피임보급 및 관리의 사각지대와 비효율적 피임방법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임신의 약 1/4이 임신소모로 종결되고 있는 것은 사회윤리적 측면, 인구자질 측면, 저출산 대책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또한 정부차원의 피임보급물량 감소, 가족계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피임은 개별부부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임실패임신과 임신노출부인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임신에 노출되어 있는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30대 후반 이상의 연령층 부인은 임신이 될 경우 인공임신중절로 귀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임신소모감소를 위한 청소년 성교육의 강화, 산전·후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질적 강화 등이 요구된다.

둘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흡연, 음주의 위해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겠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임산부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교육을 통한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피임사용의 효과적 방법,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에 대한 제한적 형태의 피임보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만연되고 있는 성 개방 물결로 인한 혼전임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임신의 대부분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실패임신

을 예방하고 피임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피임목적에 적합한 피임방법의 선택과 정확한 피임실천에 대한 홍보·계몽, 상담 등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부부의 성생활 행태에 따라서는 일시적 피임방법보다는 효과가 높은 정관수술 및 난관수술과 같은 영구피임방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실패임신을 예방하고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일곱째,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고연령층 부인의 임신은 양적으로는 많지 않을지라도 임신이 될 경우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들 연령층 부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저소득층 고연령 부인에게는 피임기구의 무료보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최근 남자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관수술 또는 콘돔에 의한 피임수용이 많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콘돔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계몽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성병 및 에이즈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3.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기혼부인의 부정적 태도가 그들의 개별행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양성 평등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태아 성감별의 불법의료행위의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소자녀관의 정착으로 2명 이상의 여아를 가진 부인은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대처로서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이를 실시하는 행위자체를 강력하게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남아선호가치관은 단기간에 근절될 수 없는 전통적 의식구조에 기인되는 것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사회지원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 및 사회에 잔존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부장제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겠다.

둘째, 태아 성감별과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부정적 행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태아성감별,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 등 불법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관련단체의 자율적인 자정노력 및 감시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의료행위를 요청하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쌍벌죄(雙罰罪)를 도입하는 것이다.

4 인구자질향상을 위해서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산전 및 산후 수진의 질적 향상, 저체중 및 과체중 출생아 예방, 자연분만의 증대, 모유수유율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부인의 산전수진율이나 시설분만율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사산 등 임신소모율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자보건사업 평가에 의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통하여 내실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겠다.

첫째, 자녀를 원하는 부인에 대하여는 임신여부에 불문하고 '행동준칙'의 제

공으로 홍보·계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임산부에 대하여는 산전수진의 내용을 더욱 확대하여 질적 관리를 증대하여야 한다.

둘째, 증가하고 있는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왕절개의 분만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일본의 경우처럼 분만을 의료수가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비의학적인 이유에 의한 제왕절개의 시술비용의 본인부담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체중아의 출생으로 인한 신생아 및 영유아기의 사망과 질병이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고위험부인군을 집중 대상으로 저체중아의 출생방지를 위한 홍보·계몽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시기가 20대에서 30대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자연유산이나 기형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임신기간 중 기형아 검사, 출산후 선천성대사이상의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임산부와 출산아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유아의 건강 및 지능발달을 위해서 모유수유율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상호 협조하여야겠다. 무엇보다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데, 이는 출산휴가기간의 연장과 육아휴직제도의 내실화를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가족부양에서 부모와의 상호접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는 용돈과 선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봉양에 대한 기혼부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남편

과 부인의 부모를 불문하고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정서적 도움을 제외하고 신체적 도움과 경제적 도움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더군다나 부인의 부모보다는 남편의 부모와 주고받은 비율이 더 높았고, 모(母)와 주고받은 비율 보다는 부(父)와 주고받은 비율이 더 높았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부모와의 동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부모와의 동거시 과감한 세제혜택, 주거지원, 생활비지원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3세대 이상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주택구조, 특히 아파트 구조도 다양화 되어야겠다.

둘째, 비동거 부모에게 제공하는 생계비, 용돈, 기타 물품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어야겠다. 이는 주거는 떨어져 살면서 경제적 지원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의 노부모 봉양을 지원하는 적절한 방안이라 사료된다.

6.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의 내실화, 취학자녀의 방과후 지도 강화, 그리고 자녀양육비 지원 등의 정책이 과감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보육사업의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자녀양육수당의 지원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가구의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심화되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족생활의 안정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영유아보육시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이는 우수한 보육교사의 확보, 양질의 프로그램, 안전이 확보된 시설환경 등이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특히, 영아보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확충,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취약계층, 농어촌지역 및 소외계층 아동들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자재(PC, 인터넷 통신비, 교재비 등)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재능 취미를 계발하고, 예체능 및 기술 교육을 보완하고 인성을 함양한다. 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위하여 순회 강사를 확보하고 지역거점학교를 육성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시설인적 자원 및 프로그램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넷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 후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준별 보충 수업을 실시한다. 학교장의 심의를 거쳐서 학생 및 부모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강좌 내용 및 운영을 결정하며,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보육 및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다섯째, 장기대책으로는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 극복 등 사회제도 및 의식을 개혁한다.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학문분야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여섯째,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한다. 소득공제 한

도 확대 및 자녀 양육비 세제 감면 확대 등의 추가적인 공제확대는 향후 재정여건과 세제 지원의 실효성 및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대출상환기간을 장기로 전환하도록 하고, 가계안정을 위한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여덟째, 아동수당제도를 단계별로 도입하며, 예산한계를 감안하여 출생순위별·소득계층별·연령별 차등지급토록 한다. 제1단계는 출생순위로는 셋째 자녀 이상에게만 지급하며, 지급액은 셋째 자녀 이상의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2단계는 지급대상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지급액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며, 둘째 자녀 이상에게 지급한다. 제3단계는 지급대상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첫째 자녀까지 포함하여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7. 이혼 예방 및 이혼 후 적응 측면에서 가정생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실시와 함께 이혼 전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이혼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혼율 증가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이혼가족의 증가는 이혼 당사자인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및 결혼, 가족관계에 대한 교과내용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알맞은 결혼관과 새로운 부부의 역할 및 윤리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등 세부적인 기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된다.

둘째,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가족문제 및 이혼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상담서비스는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의 갈등을 조절하거나 가족관계를 개선하여 이혼을 예방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종적으로 이혼을 선택한 가족에게 이혼이 가정생활이나 가족관계, 나아가 가족원 개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정서적 악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혼 전·후의 가족관계, 가정생활, 가족문제 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혼을 고려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혼 전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망된다.

셋째, 이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혼가정의 여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확대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실시가 요구된다.

8. 저출산관의 정착,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가족주기의 전체 및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을 적극 고려한 가족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노인만의 생활기간이 연장되고 있음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최근의 가족주기 전체 기간의 연장과 단계별 기간의 변화는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노인부부 및 독거노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핵가족화 현상과 함께 가족주기에 있어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연장되고 있어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평등적, 협력적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의 고령화 추세는 가족주기의 후기단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부부 및 여성노인 단독가구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책 확충, 노인성질환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사업 활성화 및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실시 등이 요구된다.

9. 경제적 풍요의 추구, 여성의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증대, 출산부담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가정 및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가족들의 경우에도 자아성취 및 가족소득지원을 위한 부인취업은 보편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욕구를 증대시키고 취업으로 인한 자녀양육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다양한 취업직종의 개발, 직급별 할당제 실시, 취업연령의 제한철폐 등을 통하여 취업의 문을 넓히고, 직업훈련·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여성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수준에 알맞은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취업희망자와 채용기관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혼부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의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지역적 균형설치를 기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가정도우미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채택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와 가정간호휴직제도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 활용도가 매우 낮으므로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통한 내실화로 실질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 제도가 민간영역, 특히 중소기업까지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세제혜택이 병행되어야 한다.

10. 최근 가족관계는 양성평등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도 민주적이고 평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족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제적이고,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가 없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질을 저하시켰으며, 심지어 가족해체로 연결될 우려도 없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적은 수의 자녀를 둠으로써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중심적인 관심사이며, 특히 최근 서구화의 영향으로 부부관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많은 가족은 양성평등적 가치관에서 가족문화를 펼쳐가고 있으나 일부 가족에서는 그렇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특히 맞벌이 가족에서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부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양성평등적 문화가 가족 내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을 강화하

고, 상담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부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만한 대화를 위한 기술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교육에서도 이를 위한 강좌가 다양하게 개설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지배-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인격체로서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관계임을 강조하는 홍보·계몽이 있어야겠다. 특히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대리성취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과도한 요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제기획원, 『1966년도 인구센서스 보고』, 제1권, 전국편, 1969.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5년도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제1권, 전국편, 197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1977.

고갑석 외, 『1979년 한국피임보급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80.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금재호,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김광옥, 「산욕기 산모의 산후간호지식과 자가간호수행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승권 외,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김태홍·김미경,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2.

김혜련 외, 「모유수유 실천수준과 모유수유 결정요인」,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김희숙, 「출산여성의 일반 분만과 선택 분만에 따른 출산경험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문현상 외,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_____,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_____,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박미숙·김혜원, 「초임부의 산전 자가간호행위와 모성관련 지식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1), 2000.

박병태 외,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78.

박인화·황나미, 『모자보건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3.

보건복지부, 『모자보건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3.

박천만, 「모유수유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17(3), 2000.

변화순·조은희,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이광렬 외, 「임신간격이 신생아 체중에 미치는 영향」, 『영남의대학술지』, 16(2), 1999.

이무식 외, 「산모의 임신전 비만지수, 임신중 체중증가와 출생아 체중과의 관련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3권, 1999.

이연주,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변화와 가정 및 직장의 양립방안」,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200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이정명,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의 재검율, 소환율

및 참고치 설정」,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장지연 외,『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모성관련 휴가제도를 중심으로』, 2004.

조정문·장상희, 『가족사회학: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대우학술총서, 2001.

조남훈 외,『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강식·정진화,『여성 잠재인력의 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7.

최재석,『현대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1985.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2000.

통계청,『주로 찾는 통계』, 2004.

통계청,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전국편, 1997.

통계청,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전국편, 2001.

통계청,『2003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4.

통계청,『한국의 사회지표』,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1999.

한영자 외,『영아사망 사산원인 및 위험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한영자 외,『저출생체중아 발생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황원주,「모유수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허경옥,「가계의 자녀양육에서 지출액 측정: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소비자학 연구』, 제8권 제2호, 1997.

홍문식 외,『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Campbell, A.,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Simon & Schuster, 1992.

U. N., *1997 World Population Data Sheet*, Population Reference Bureau Inc, 1997.

WHO, *Health and the Family: Studies on the Demography of Family Life Cycle and their Health Implications*, Geneva, 1978.

부 록

부록 1. 조사표

부록 2. 조사지역

부 록 1. 조사표

1-1.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표

1-2. 2003년 자녀양육 및 비용부담 실태조사표

1-1.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승 인 번 호
제 33101 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조 사 표 번 호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조사구내 가구번호		부인번호		
							가구내 부인번호	응답부인 일련번호	

주소	____시·도 ____구시군 ____동읍면 ____아파트·리 ____동·번지 ____호 ____통 ____반			
가구주성명		응답자성명		☎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지도원 검토결과
1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①완료 ②외출 ③장기출타 ④응답거절 ⑤기타(___)		①양호 ②약간수정 ③재방문지시
2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①완료 ②외출 ③장기출타 ④응답거절 ⑤기타(___)		①양호 ②약간수정 ③재방문지시
3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①완료 ②외출 ③장기출타 ④응답거절 ⑤기타(___)		①양호 ②약간수정 ③재방문지시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인사말씀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매 3년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200개 조사지역의 약 16,000 가구에 대한 가구조사와 15~59세 기혼가구의 개인조사가 실시되는 것이며, 귀댁이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저출산의 실태와 가족보건 및 가족복지 등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이며,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가족의 지속적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개인 및 가구의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Ⅳ. 가구에 관한 사항

1.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단독주택 ②아파트 ③연립주택 ④다세대주택 ⑤기타(_____)

2.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은 댁의 소유인가요? 전세 또는 월세인가요?

①자가 →
②전세
③전·월세(보증부 월세)
④월세
⑤기타(_____)

2-1. 누구의 소유입니까?
①남편 ②부인 ③부부 공동명의 ④기타(_____)

2-2.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시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시가: _____만원

2-3. 가족 소유의 집이 따로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2-4. 전세, 전·월세 보증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증금: _____만원

3.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는지요?(소득은 세금공제전의 금액)

소득구분	소득액(만원)	소득구분	소득액(만원)
3-1. 근로사업 및 부업소득(본인, 배우자, 동거자녀, 기타 가족)	_____만원	3-5. 사회보장수혜	_____만원
3-2.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집세)	_____만원	3-6. 기타(민간단체의 지원금, 장학금 등)	_____만원
3-3. 퇴직금, 개인연금	_____만원		
3-4. 이전소득(비동거 자녀, 부모, 기타 친척으로부터의 보조)	_____만원	3-7. **가구소득 총계(월)**	_____만원

4. 귀댁의 월평균 저축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월_____만원

5.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비는 얼마나 됩니까? → 월 _____만원

6. 귀댁의 재산(동산+부동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 _____만원

7. 귀댁의 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_____만원

7-1. 귀 댁 부채의 <u>주된 원인</u>은 무엇입니까?
①생계비 ②주거비/주택마련 ③교육비 ④사업자금
⑤의료비 ⑥관혼상제비 ⑦기타(_____)

8. 현재 귀댁의 생활 중에서 경제적으로 <u>가장</u>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
①자녀양육 및 교육비(수업료, 등록금 등) ②사교육비(학원, 과외 등)
③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 ④식료품비(주식·부식비 등)
⑤각종 공과금(소득세, 보험료, 각종세금) ⑥의료비
⑦주거비(주택유지비, 집세 및 주택융자금 상환) ⑧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⑨자동차유지비 등 교통비 ⑩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⑪기타(_____)

9. 귀댁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자립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②별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자립하고 있다 ⑤상당히 자립하고 있다

제2장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15~59세 기혼가구 대상)

(응답자 가구원번호: _____)

Ⅰ. 응답자 및 배우자의 일반특성과 혼인사항

※ 조사원: 현재 이혼·별거·사별중인 응답자의 남편(부인)에 관한 사항은 이혼·별거 사별 당시의 남편(부인)에 관하여 질문하시오. 단, 이혼·별거·사별 중인 남편(부인)의 가구원번호는 [88]로 기재하시오.

질문내용	부인 (가구원번호:___)	남편 (가구원번호:___)
◈ 두 분의 생년월일은 언제이며, 만 연령은 몇 세입니까? (※ 조사원: 가구원 사항 참조) 생년월일: 19___년___월____일(양, 음)(만____세)	_____년 ____월 만 _____세	_____년 ____월 만 _____세
1. 부인/남편께서는 언제 혼인하셨습니까?(**현재혼인**) 혼인당시 연월일: ____년 ____월 ____일(양, 음)	혼인연령: 만___세	혼인연령: 만___세
2. 현재의 혼인이 두분 모두에게 초혼입니까? ①초혼⟶**조사원 확인사항으로** ②재혼 이상		
2-1. (재혼 이상인 경우) 그러면 초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초혼연월: _____년___월___일(양, 음) 초혼연령: 만___세	_____년 ____월 만 _____세	_____년 ____월 만 _____세

※ 조사원: 응답자의 현 혼인상태를 가구원사항을 참조하여 표시하시오	①유배우 ⟶(p.5의 Ⅱ. 가족주기로) ②이혼, 별거, 사별 ⟶(질문 3으로)

질문내용	부인	남편
3. (이혼/별거/사별) 당시 부인/남편께서는 각각 몇 세이셨습니까?	해혼시 연령: 만_____세	해혼시 연령: 만_____세
	해혼 당시 연월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양, 음)	
※ 조사원: 현재 사별인 응답자는 p.5의 Ⅱ. 가족주기사항으로		

4. (이혼/별거의 경우) 이혼/별거하게 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외도 (㉠남편 ㉡부인) ②학대 또는 폭력 (㉠남편 ㉡부인 ㉢기타 가족)
③성격차이 ④가족부양의무 불이행 (㉠남편 ㉡부인)
⑤가족간 불화 (㉠시댁식구 ㉡친정식구) ⑥경제적문제 (㉠남편 ㉡부인 ㉢시댁식구 ㉣친정식구)
⑦건강상 이유(㉠ 남편 ㉡부인 ㉢자녀 ㉣기타(_____)
⑧기타(_____ _____)

4-1. (이혼/별거의 경우) 이혼/별거를 먼저 제의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①남편 ②부인 ③시부모 또는 기타 시댁식구 ④친정부모 또는 기타 친정식구 ⑤기타(_____)

4-2. 이혼/별거 당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었습니까?
⓪없었음⟶(p.5의 Ⅱ. 가족주기사항으로) ①있었음(_____명)⟶(질문 4-3으로)

4-3. 이혼/별거 당시 만 18세 자녀 중 현재까지도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습니까?
⓪없음⟶(p.5의 Ⅱ. 가족주기사항으로) ①있음(_____명)⟶(질문 4-3-1로)

4-3-1.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조사원: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적으시오) **첫째아**: _____ **둘째아**:_____
⓪없음 ①자녀의 부(남편) ②자녀의 모(부인) ③조부모(친가/외가) ④기타 친척
⑤혼자 살고 있음 ⑥사회복지시설 ⑦기타(_____) ⑧비해당

4-3-2. 현재 그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은 누구입니까?(중복응답 가능)
첫째아: ____, _____, _____ **둘째아**:_____, _____, _____
⓪없음 ①자녀의 부(남편) ②자녀의 모(부인) ③조부모(친가/외가) ④기타 친척
⑤국가(생활보호대상자, 모부자가정) ⑥사회복지시설 ⑦모르겠음 ⑧기타(_____)

Ⅱ.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

[자녀출생에 관한 사항]

※조사원: 현재 초혼인 부인만(p. 4의 질문 2에서 응답자가 ①로 응답한 경우)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며, 재혼한 남편의 자녀는 제외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오	• 현존자녀수: ____명(아들:____명, 딸:____명) • 사망자녀수: ____명(아들:____명, 딸:____명) • 총출생아수: ____명(아들:____명, 딸:____명)
※현재 비동거중인 자녀중 <p.1의 Ⅰ.가구원사항>의 비동거자녀에 기재된 경우 가구원 번호는 21 또는 22를 기재하고 그외 비동거자녀는 「77」로 기재토록 한다. 사망한 자녀의 가구원 번호는 「88」로 기재하고, 출산자녀(사망자녀 포함)가 한 명도 없는 경우는 p.6의 <조사원 사항: 가족주기단계>로	

질문내용	첫째아(가구원 번호: _____)	막내아(가구원 번호: _____)
1. (첫째/막내) 자녀의 연령은 몇 세이며,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연령: 만 _____ 세 생년월일:____년___월___일(양,음)	연령: 만 _____ 세 생년월일:____년___월___일(양,음)
1-1.(첫째/막내)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자 ②여자	①남자 ②여자

※ 조사원: (첫째/막내) 자녀를 낳을 당시 부인의 연령을 가구사항을 참조하여 확인하시오.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 만____세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 만____세

[자녀혼인에 관한 사항]

2.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들은 몇 명이나 혼인하였습니까?
①모두 혼인 (혼인자녀수: ___명) ②일부 혼인, 일부 미혼 (혼인자녀수: ___명, 미혼자녀수: ___명)
③모두 미혼 ⟶ p.6의 <가족주기단계>로

※ 조사원: 부인이 낳은 자녀중 첫 번째 또는 맨 마지막에 혼인한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내용	첫 번째 혼인한 자녀(가구원 번호: _____)	마지막 혼인한 자녀(가구원 번호: _____)
3. (첫 번째/마지막) 혼인한 자녀가 혼인한 연월일은 언제이며, 그 당시 자녀의 연령은 몇 세이었습니까?(출생순위와 다를 경우 생년월일 확인)	자녀 혼인년월일 ____년 ____월___일(양, 음) (자녀혼인 연령: 만____세) 생년월일:__년__월__일(양, 음)	자녀 혼인년월일 ____년 ____월___일(양, 음) (자녀혼인 연령: 만____세) 생년월일:__년__월__일(양, 음)
3-1. (첫 번째/마지막) 혼인한 자녀가 혼인할 당시 부인께서는 몇세이셨습니까?	세는 나이: ____세 (만_____세)	세는 나이: ____세 (만_____세)
3-2. (첫 번째/마지막) 혼인한 자녀의 성은 무엇입니까?	①남자 ②여자	①남자 ②여자
3-3. (첫 번째/마지막) 혼인한 자녀의 출생순위는 몇 째입니까?	출생순위: _____번째	출생순위: _____번째
4. (질문 2에서 ②에 응답한 자녀중 일부만 혼인한 경우 질문) 마지막 혼인할 자녀는 몇 세에 혼인하기를 희망하십니까? 그 때 부인의 연령은 몇 세가 되십니까?		자녀의 성: ① 남자 ② 여자 자녀의 출생순위: _____째 자녀혼인 희망연령: 만 _____세 자녀혼인시 부인연령: 만 ___세

※조사원: 가구사항, 혼인사항 및 위의 질문사항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단계를 골라 체크하시오.	
<가족주기단계>	<남편이 이혼·별거·사망한 단계>
⓪혼인후 출산경험 없는 경우(자연불임)	①혼인후 첫 자녀 출산전 사망
①혼인후 출산전인 경우(현 임신중, 앞으로 출산할 계획인 경우)	②현존자녀 없고 출산할 단계에서 사망
②출산경험이 있으나 현존자녀는 없는 경우로 계속 출산할 예정인 경우	③현존자녀 있고 계속 출산할 단계에서 사망
③출산경험이 있으나 현존자녀는 없는 경우로 계속 출산을 안(못)할 경우	④자녀출산 완료후 사망
④현존자녀가 1명 이상 있으면서 계속 출산할 예정인 경우	⑤자녀가 1명도 혼인하지 않은 단계에서 사망
⑤출산을 완료한 경우	⑥자녀중 일부가 혼인한 후 사망
⑥자녀가 1명도 혼인하지 않은 경우	⑦자녀가 모두 혼인한 후 사망
⑦자녀중 일부가 혼인한 경우(자녀의 혼인이 시작된 경우)	
⑧자녀가 모두 혼인한 경우	
⑨남편이 이혼·별거·사망한 경우(※ 조사원: 오른쪽에서 단계에 체크하시오)	

III. 응답자와 배우자의 취업에 관한 사항

1. 귀댁 부인의 혼인 전 취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 조사원: 편부가구는 p.7의 〈질문2〉 의 현재 취업에 관한 사항으로

질문내용	부 인 (가구원번호: ____)
1-1. 혼인직전 취업여부 ⓞ미취업·비취업 ⟶(p.7의 질문2로) ①취업(어떤 일:_____)	
1-2. 혼인직전 종사상의 지위 ①고용주 ②상용고 ③임시고·일용고 ④자영업자 ⑤무급 가족종사자(※조사원: 주당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경우는 <질문 1-1>로 돌아가 미취업·비취업으로 수정하시오)	
1-3. 혼인직전 직장유형 ①공무원(국공립교사포함) ②정부투자·출연기관 ③기타 공공기관 ④대기업(300인 이상) ⑤중소기업(50~299인) ⑥소기업(5~49인) ⑦개인사업체(5인 미만) ⑧기타(_____)	
※조사원: 부인의 혼인직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오. 단, 혼인 후 근무기간은 혼인직전 직장과 현재 직장이 동일한 경우는 부인에게 질문하여 기재하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혼인 후 근무기간을 '0'으로 표시하고 전체 근무기간은 혼인 전과 혼인 후를 합하여 기재하시오. 혼인전 근무기간: _____년 _____개월, 혼인후 근무기간: _____년 _____개월, 전체 근무기간: _____년 _____개월	
1-4. 혼인 전에 가졌던 직장에서의 계속 근무 여부 ①현재까지 계속⟶(질문 2-1로) ②취업 중단	
1-4-1. 그 직장을 그만 둔 시기 ①혼인 전 6개월 이전 ②혼인 전 6개월~혼인 후 6개월 ③첫째 자녀 출산 전후 ④둘째~최종 자녀 출산 전후 ⑤혼인·출산과 상관 없이⟶(p.7의 〈질문 2-1〉 로)	
1-4-2. 혼인전이나 출산전·후 그 직장을 그만 둔 이유 ①자발 ②비자발(이유:_____)	

2. 응답자와 남편(부인)의 현재 취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 조사원: 귀댁의 부인이 현재 취업중인 경우 부인 질문 후 <질문 2-7>로, 현재 부인이 비취업중인 경우는 부인 질문후 <질문 3>으로 가고, 현재 비취업중인 남편의 경우는 <p. 8의 Ⅳ. 가족부양>으로

질문내용	부 인(가구원번호: _____)	남 편(가구원번호: _____)
2-1. 현 취업여부 ⓪미취업·비취업 ⟶(질문 3으로) ①취업(어떤 일:_____)		
2-2.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총 취업기간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2-3. 현재 종사상의 지위 ①고용주 ②상용고 ③임시고·일용고 ④자영업자 ⑤무급 가족종사자(※조사원: 주당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경우는 <질문 2-1>로 돌아가 미취업·비취업으로 수정하시오)		
2-4. 현재 직장유형 ①공무원(국공립교사포함) ②정부투자·출연기관 ③기타 공공기관 ④대기업(300인 이상) ⑤중소기업(50~299인) ⑥소기업(5~49인) ⑦개인사업체(5인 미만) ⑧기타(_____)		
2-5. 주당 평균근무시간	_____ 시간	_____ 시간
2-6.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근로소득	_____ 만원	_____ 만원

2-7. (부인이 일을 하는 경우) 귀하께서 일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②자녀교육비 충당을 위해 ③노후대책 마련을 위해
④시간이 너무 많아 지루하므로 ⑤사회적 성취도, 자아발견, 자기발전 ⑥기타(_____)

2-8. (부인이 일을 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현재 하시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불만족스럽다 ②불만족스럽다 ③보통 ④만족스럽다 ⑤매우 만족스럽다

2-9. (부인이 일을 하는 경우)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자녀양육 부담 ②가사부담 ③부부간의 공유시간(대화) 부족 ④자녀와의 공유시간(대화) 부족
⑤직장생활과 육아병행 ⑥노부모 부양 ⑦기혼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근로요건(채용, 승진 등)
⑧ 기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및 제도 ⑨ 기타(_____)

2-10. (부인이 일을 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이 일을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 조사원: <질문 2-10> 또는 <질문 3>이 끝난 후 p.8의 <Ⅳ. 가족부양>으로

3. (부인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는 앞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①원한다⟶(질문 3-1로) ②원하지 않는다⟶(질문 3-2로) ③모르겠다⟶(Ⅳ. 가족부양으로)

3-1.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 귀하가 일을 하기를 원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가계에 경제적 도움 ②사회활동 및 자기발전을 위해 ③경제적 독립을 위해 ④ 기타(_____)

3-2. (일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앞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개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건강상 이유로 ㉢ 일자리 찾는 방법을 몰라서 ㉣ 기타(_____))
②가족(㉠ 자녀양육 ㉡ 가사일 ㉢ 남편 및 시댁식구의 반대 ㉣ 기타(_____))
③사회(㉠ 임금 ㉡ 근무시간 ㉢ 학력수준에 맞지 않아서 ㉣ 기타(_____))

Ⅳ. 가족부양

※ 다음은 귀하나 귀하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귀하나 귀하의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인: ___남 ___녀 중 ___째, 남편: ___남 ___녀 중 ___째

내용	부인		남편		형제/자매
	부	모	부	모	
1. 생존 여부: ①생존 함 ②생존하지 않음					
2. 동거여부 ①동거 ⟶(질문3으로) ②비동거(걸어서 30분 이내) ③비동거(차로 1시간 이내) ④비동거(차로 1시간 이상)					
2-1. (비동거인 경우) <u>지난 1년 간</u> 만나는 빈도 ①거의 매일 ②주 2~3회 정도 ③주 1회 정도 ④월1~3회 정도 ⑤2~3개월에 1회정도 ⑥1년에 2~3회 정도 ⑦1년에 1회 이하 ⑧전혀 만나지않음 ⑨ 기타(_____)					
2-2. (비동거인 경우) <u>지난 1년 간</u> 연락 빈도 ①거의 매일 ②주 2~3회 정도 ③주 1회 정도 ④월1~3회 정도 ⑤2~3개월에 1회정도 ⑥1년에 2~3회 정도 ⑦1년에 1회 이하 ⑧전혀 연락하지 않음 ⑨ 기타(_____)					
3. (생존부모의) 만 연령	_____세	_____세	_____세	_____세	
4. (생존부모의) 혼인상태: ①유배우 ②이혼/별거 ③사별					
5. (생존부모의) 교육 ⓪무학 ①초등학교 ②중학교 ③고등학교 ④전문대학 ⑤대학이상					
6. (생존부모의) 취업여부: ①취업 ②미취업					
7. (생존부모의) 건강상태 ①건강함 ②일상생활은 불편하지 않으나 건강이 좋지 않음 ③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음					
8. <u>지난 1년간</u> 도움(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 ①주거나 받았음 ②<u>주지도 받지도 않았음</u> ⬇ (p.9의 Ⅴ. 가치관 및 가족관계로)					
8-1. 신체적 도움정도(우선순위 2가지) ⓪없음 ①간병/ 수발 ②집안청소/세탁 ③시장보기/식사준비 ④손자녀돌보기 ⑤기타(_____) ⑧비해당(8번에서②로 응답한 경우) * 위 ①~⑤까지의 모든 도움 횟수; 월 _____회	받은 경우; ___, ___ 월____회 준경우; ___, ___ 월____회	받은 경우; ___, ___ 월____회 준경우; ___, ___ 월____회	받은 경우; ___, ___ 월____회 준경우; ___, ___ 월____회	받은 경우; ___, ___ 월____회 준경우; ___, ___ 월____회	받은 경우; ___, ___ 월___회 준경우; ___, ___ 월___회
8-2. 정서적 도움정도(우선순위 2가지) ⓪없음 ①대화상대(말벗되기) ②중대결정시의논상대 ③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하고 조언을 함 ④기타(_____) ⑧비해당(8번에서 ②로 응답한 경우)	받은 경우; ___, ___ 준경우; ___, ___	받은 경우; ___, ___ 준경우; ___, ___	받은 경우; ___, ___ 준경우; ___, ___	받은 경우; ___, ___ 준경우; ___, ___	받은 경우; ___, ___ 준경우; ___, ___
8-3. 경제적 도움정도(우선순위 2가지) ⓪없음 ①생계비 지원 ②일시적으로 큰 지출에의 지원 ③용돈 ④기타 물품지원 ⑧비해당(8번에서 ②로 응답한 경우) * 위 ①~④까지의 모든 도움 액수; 월 _____천원	받은 경우; ___, ___ 월___천원 준경우; ___, ___ 월___천원	받은 경우; ___, ___ 월___천원 준경우; ___, ___ 월___천원	받은 경우; ___, ___ 월___천원 준경우; ___, ___ 월___천원	받은 경우; ___, ___ 월___천원 준경우; ___, ___ 월___천원	받은 경우; ___, ___ 월___천원 준경우; ___, ___ 월___천원

Ⅴ. 가치관 및 가족관계

〔혼인, 이혼 및 재혼에 관한 태도〕

1. 귀하께서는 혼인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반드시 해야 한다 ②하는 편이 좋다 ③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경우에 따라서)
   ④하지 않는 편이 좋다 ⑤모르겠다

2. 귀하께서는 이혼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②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③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④이혼은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
   ⑤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⑥모르겠다

3. 귀하께서는 재혼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②하는 것이 좋다 ③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④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⑥모르겠다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4. 귀하께서는 혼인을 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꼭 있어야 한다 ②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③없어도 상관없다 ④모르겠다

5. 귀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이상자녀수: ____ 명 ②잘 모르겠다

⬇

> 5-1. 딸·아들 구별해서 입니까? 구별없이 입니까?
> ①구별없이 ②구별해서(㉠아들: ____명, ㉡딸: ____명) ③기타(_____)

6.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아들의 필요성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꼭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꼭 있어야 한다⟶(질문 6-1로) ②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질문 6-1로)
   ③없어도 상관없다 ④모르겠다

> 6-1. 왜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 모두 체크)**
> ①가문(대)를 잇기 위해 ②노후 생활을 위해서
> ③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④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 ⑤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든든하다, 울타리가된다, 얕보이지 않는다 등)
> ⑥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⑦기타(_____)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 ※ 조사원: 응답가구가 모부자가정인 경우 ⟶ p.10의 <질문 10>으로

7. 귀댁은 현재 가사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이 양육과 가사행위를 맡는다
   ②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행위를 맡고 경우에 따라 남편이 돕는다
   ③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행위를 맡고 경우에 따라 부인이 돕는다
   ④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행위를 나눈다
   ⑤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행위를 맡고 경우에 따라 남편이 돕는다
   ⑥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행위를 맡고 경우에 따라 부인이 돕는다
   ⑦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행위를 나눈다
   ⑧집에 있는 남편이나 부인의 경우 주로 양육과 가사행위를 맡는다

8. 귀댁의 다음 가정일에 대한 최종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일	전적으로 남편 결정	대체로 남편 결정	부부 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 결정	전적으로 부인 결정
8-1. 일상생활비 지출	①	②	③	④	⑤
8-2. 주택매매 및 이사	①	②	③	④	⑤
8-3. 투자 및 재산증식	①	②	③	④	⑤
8-4. 자녀양육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9. 배우자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번호기재)

①매우 불만족스럽다 ②불만족스럽다 ③보통이다 ④만족스럽다 ⑤매우 만족스럽다	
9-1. 배우자의 이해도	
9-2.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양)	
9-3. 부부의 성생활	
9-4.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	
9-5. 배우자의 소비성향	
9-6. 부부간의 대화	
9-7. 부부간의 문화생활(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 운동, 산책, 외식)	
9-8.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10. 귀하의 자녀 양육태도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부모들이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을 통제하며 자녀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
②자녀들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를 가하지 않으며 뚜렷한 자녀양육방법이 없으며 자녀에게 지나친 자율성을 부여한다
③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며 자녀들에게 요구도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④자녀들을 적극 지원하며 부모들의 규칙을 설명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따르도록 한다.

11. 귀하는 부모로써 자녀양육(교육, 정서, 경제)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한다 ②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한다
③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한다 ④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책임져야한다
⑤언제(까지)라도 책임져야한다 ⑥기타(_____)
⑦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12. 자녀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번호기재)

①매우 불만족스럽다 ②불만족스럽다 ③보통이다 ④만족스럽다 ⑤매우 만족스럽다	
12-1. 자녀와의 대화정도	
12-2. 자녀와의 문화생활(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 운동, 산책, 외식)	
12-3. 자녀들이 귀하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성적, 취업)에 대하여	
12-4.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Ⅵ. 가족생활의 질

1. 귀하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로 두 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 2순위:_____
①가족원 모두 일에 성공하여야 한다 ②가정이 안정되어야 한다
③권력이나 재산이 있어야 한다 ④배우자가 사회에 나가 제 구실을 하여야 한다
⑤자식이 사회에 나가 제 구실을 하여야 한다 ⑥효성이 뛰어난 자식들이 있어야 한다
⑦가족의 건강 ⑧기타(_____)

2. 귀댁의 가족생활을 1년 전과 비교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더 나빠졌다 ②동일하다 ③더 좋아졌다 ④모르겠다

⬇

2-1. 더 나빠진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가족간의 대화나 공유시간이 부족하므로 ②가족원이 함께 하는 문화생활이 거의 없음
③경제적 어려움으로 ④가족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⑤가족문제를 가족 밖에서 해결하므로 ⑥이웃이나 친구들과 교제가 거의 없으므로
⑦가족원의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⑧기타(_____)

3. 귀하께서는 판단할 때 귀하가족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상상 ②상중 ③상하 ④중상 ⑤중중 ⑥중하 ⑦하상 ⑧하중 ⑨하하

4. 귀하께서 판단할 때 전반적인 가족생활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①매우 불만족스럽다 ②불만족스럽다 ③보통이다 ④만족스럽다 ⑤매우 만족스럽다

5. 귀하는 다음의 가정생활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번호기재)

①매우 불만족스럽다 ②불만족스럽다 ③보통이다 ④만족스럽다 ⑤매우 만족스럽다	
5-1. 가정에서 나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5-2.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하여	
5-3.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하여	
5-4.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하여	
5-5.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하여	
5-6.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하여	
5-7.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하여	
5-8.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하여	
5-9.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의 성취정도에 대해서	

Ⅶ. 가족정책

1. 최근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많은 가족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적으로 국가또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②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③국가 또는 사회와 가족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④기타(_____)

※ 조사원: 응답가구의 다음 가구원 중 현재 동거중인 경우를 체크하시오.
□영유아 □초중고 학생 □취업부인 □중년기 남성(40~50대) □장애인 □노인

2. 귀하께서는 다음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한 가족정책이 <u>가장 우선</u>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영유아 보육정책 ②초, 중, 고등학교 학생 등 자녀 교육 및 양육정책 ③취업부인에 대한 지원정책
   ④중년기 남성을 위한 정책 ⑤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⑥노인복지정책
   ⑦기타(_____)

3. 귀하께서는 건강가족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 <u>가장 중요</u>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가족의 경제적 욕구충족 또는 자립 ②가족원간의 심리·정서적 유대강화
   ③가족원의 건강 ④가족공유의 문화생활(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 운동, 산책, 외식 등)
   ⑤기타(_____)

4. 귀하의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 주기를 원하는 정책을 세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예	생계비지원, 취업지원, 주거비지원, 의료비지원 또는 보조, 자녀학자금지원, 직업교육, 가정생활교육, 가사도우미, 아동보육시설제공, 국공립교육시설 이용료 지원, 방과후 학습지도 및 공부방 제공, 노인보호서비스제공, 가족원간 유대강화를 위한 가족상담서비스지원, 간병서비스지원 등

제3장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15～49세 기혼부인 대상)

Ⅰ. 임신·출산사항

1. 부인께서는 현재 몇남 몇녀를 두고 계십니까? (출가/분가한 자녀 모두 포함)

   현존자녀수: ____명 (아들: ____명, 딸: ____명)

2. 부인께서는 지금까지 모두 몇 번의 임신을 하셨으며, 그 중에서 정상출생은 몇 번 하셨습니까?
   또한 낳으신 아들, 딸은 각각 몇 명입니까? (※ 현재 임신중인 경우는 현재의 임신 포함할 것)

   2-1. 총임신횟수: ____회 ⟶ 임신횟수가 0회인 경우는 p.14의 <질문 7>로

   2-2. 정상출생횟수: ____회(쌍생아 이상인 경우는 1회 출생으로 간주)⟶ 쌍태아:___회, 삼태아:___회

   2-3. 출생아수: ____명(아들: ____명, 딸: ____명)

3.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가운데 혹시 사망한 자녀가 있습니까?

   ⓪없다 ①있다 (사망자녀수: ____명 (아들: ____명, 딸: ____명)

4. 혹시 임신 중에 인공유산을 하셨거나 자연유산이나 사산이 된 적이 있습니까?

   ⓪없다 ①있다 (총___회= 인공유산 ___회, 자연유산___회, 사산___회)

질문내용	첫 인공유산	마지막 인공유산
4-1 첫 번째/마지막 인공유산시킨 임신은 몇 번째 임신이었으며, 그 당시 부인의 연령은 몇세였습니까?	임신순위: ____번째 임신 그 당시 부인연령: 만 ____세	임신순위: ____번째 임신 그 당시 부인 연령: 만 ____세
4-2 인공유산 할 당시 현존자녀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또한 그 당시의 남아와 여아의 수는 각각 몇 명이었습니까?	현존자녀수:_____명 (남아: ___명, 여아: ___명)	현존자녀수:_____명 (남아:_____명, 여아: ____명)
4-3 인공유산시 태아 성감별을 실시하셨습니까?	⓪실시 안함 ①실시함	⓪실시 안함 ①실시함
4-4 인공유산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었이었습니까?	①자녀 원치않음 ②터울조절 ③ 임부의 건강상/자궁외임신 ④태아이상 ⑤혼전임신	⑥가정문제 ⑦경제적 곤란 ⑧태아가 딸이었으므로 ⑨취업중이어서 ⑩기타(_____)
	번호: ____	번호: ____

5. 부인께서는 현재 임신중이십니까?

   ⓪아니다 ①그렇다

   5-1. 현재의 임신을 출산할 예정이십니까?
   ⓪아니다 ①그렇다 ⟶ 출산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출산예정일: _____ 년 ___ 월 ___ 일

6. 부인께서는 남아출산을 위해 임신전 또는 임신후에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⓪ 없다 ①있다

   6-1.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중복응답**)
   ①자연요법 ②양수검사 ③융모막검사 ④초음파검사 ⑤기타(_____)

※ 조사원: 이상에서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기록하여 확인하시오.
총임신횟수(___회) = 출생횟수(___회) + 자연유산수(___회) + 사산횟수(___회)
+ 인공유산수(___회) + 현임신(0 또는 1)

7. 부인께서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임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000년에 임신하여 2001년까지 진행된 경우와 현재 임신중인 경우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①있다(임신횟수: ___회, 정상출생횟수: ___회) ⓪ 없다 → <질문8>로

⬇

(※ 조사원: 2001년 1월 이후 **임신·출산기록표**를 간단히 작성한 후 매 임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연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1												
2002												
2003												

기입요령	**임**: 임신 **출**: 출생 **사**: 사산 **자**: 자연유산 **인**: 인공유산 또는 월경조절술(MR)

번호	7-1. 언제 임신하셨는지요?	7-2. 임신당시 그 임신은 원했었는지요? 원하지 않았었는지요?	7-3. 그 임신 당시 피임을 하셨는지요? 하셨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기참조)	7-4 임신 당시 자녀수는 몇명이었습니까?	7-5. 임신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7-6.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 조사원: 출생아가 p.2의 <출생에 관한 사항>에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오.
1	___년 ___월	⓪원치 않음 ①원함	⓪비사용 ①사용 ↓ (피임방법: _____)	아들:___명 딸: ___명 계: ___명	①출생 ②사산 ③자연유산 ④인공유산 ⑤임신중	①___년 ___월 ②임신중	①예 ②아니오 ③비출생
2	___년 ___월	⓪원치 않음 ①원함	⓪비사용 ①사용 ↓ (피임방법: _____)	아들:___명 딸: ___명 계: ___명	①출생 ②사산 ③자연유산 ④인공유산 ⑤임신중	①___년 ___월 ②임신중	①예 ②아니오 ③비출생
3	___년 ___월	⓪원치 않음 ①원함	⓪비사용 ①사용 ↓ (피임방법: _____)	아들:___명 딸: ___명 계: ___명	①출생 ②사산 ③자연유산 ④인공유산 ⑤임신중	①___년 ___월 ②임신중	①예 ②아니오 ③비출생

<보기> 피임방법: ①난관수술 ②정관수술 ③자궁내장치 ④먹는 피임약 ⑤콘돔 ⑥살(질)정제 ⑦월경주기법 ⑧콘돔+ 월경주기법 ⑨기타(_____)

8. 부인께서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 조사원: 현재 임신중인 부인은 현재의 임신 외에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인지의 여부를 질문하시오)

①낳겠다 ②낳지 않겠다 ③생각중이다

⬇

8-1. 지금 생각으로 몇명이나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_____명

8-2. 그러면 그 자녀는 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딸이기를 원하십니까?

①구별없이 ②구별해서(아들: _____명, 딸 : _____명)

Ⅱ. 가족계획실태

※ 조사원: <Ⅱ. 가족계획실태>는 15~49세 **유배우 부인**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혼, 별거, 사별상태의 부인은 제4장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1. 부인과 남편께서는 지금까지 실제로 피임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⓪없다 → p.15 <질문 7>로 ①있다

1-1. 그러면 부인과 남편께서는 지금도 피임을 하고 계십니까?
⓪안한다 → <질문 5로> ①한다

2.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은 무엇입니까?
(※ 조사원: 일시적 피임방법을 두가지 이상 병용하는 경우 모두 체크하시오)

①난관수술 ②정관수술 ③자궁내장치 ④먹는피임약 ⑤콘돔
⑥살(질)정제 ⑦월경주기법 ⑧콘돔+월경주기법 ⑨기타(_____)

3. 현재 피임하는 목적은 자녀의 터울을 늦추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단산을 위해서인가요?
①터울조절 ②단산 ③기타(_____)

4. 현재 사용중인 피임방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보실 생각입니까?
①계속 사용하겠다 ②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③바꾸겠다/바꾸고 싶다

4-1. 어떤 방법으로 바꾸시겠습니까?/바꾸고 싶으십니까?(해당사항 모두 체크 하시오)
①난관수술 ②정관수술 ③자궁내장치 ④먹는피임약 ⑤콘돔
⑥살(질)정제 ⑦월경주기법 ⑧콘돔+월경주기법 ⑨기타(_____)
⑩미결정/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 조사원: <질문 4-1> 질문후 p.16의 〔제4장〕으로

〈과거에 피임경험이 있으나 현재 피임을 중단하고 있는 부인〉

5. 그러면 부인과 남편께서 그동안 사용해보신 피임방법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 조사원: 두가지 이상 병용했을 경우 모두 체크하시오)

①난관수술 ②정관수술 ③자궁내장치 ④먹는피임약 ⑤콘돔
⑥살(질)정제 ⑦월경주기법 ⑧콘돔+월경주기법 ⑨기타(_____)

6. 왜 피임방법 사용을 중단하셨는지요?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①임신하기 위해/자녀를 갖기 위해 ②피임중 임신이 되어서/실패임신
③자연배출되어서(자궁내장치의 경우) ④사용상 불편해서/번거로워서
⑤일시적으로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해외출장, 산후무월경 등) ⑥부작용 때문에
⑦영구적으로 더 이상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자궁적출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기타(____)
→ p.16의 〔제4장〕으로
⑧기타(_____)

※ 조사원: <질문 6>이 ①~⑥, ⑧인 경우 p.15의 <질문 9>로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

7. 혼인후 아직 한번도 피임방법을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가장 주된 이유를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①자연불임 ②자녀를 원해서 ③피임방법을 잘 몰라서
   ④일시적 불필요(해외취업 등으로 인한 남편과의 별거, 산후 무월경 기간 등)
   ⑤기타(_____)

8. 부인께서는 임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혼인후 최소 1년동안 임신이 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⓪없다 ①있다

〈현재 피임중단과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

9. 부인께서는 앞으로 피임방법을 사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있다→(질문 9-1로) ②모르겠다/생각해보지 않았다 ⟶(제4장 모자보건으로)
   ③없다/피임할 필요가 없다→(질문 9-2로)

9-1. 앞으로 어떤 피임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해당 피임방법 모두 체크) ①난관수술 ②정관수술 ③자궁내장치 ④먹는피임약 ⑤콘돔 ⑥살(질)정제 ⑦월경주기법 ⑧콘돔+월경주기법 ⑨난관이든 정관이든 불임수술 ⑩기타(_____) ⑪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9-2. 계속해서 피임을 하지 않으시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피임불필요 ㉠자궁적출 ㉡폐경 ㉢양측나팔관 모두 제거 ㉣산후 무월경 기간 ㉤자녀를 원함 ②자연불임 ㉠10년이상 임신 안됨 ㉡5~10년미만 임신 안됨 ㉢3~5년미만 임신 안됨 ㉣1~3년미만 임신 안됨 ③기타(_____)

제4장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 조사원: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현존자녀 유무를 확인(p.13의 제3장 질문Ⅰ-7)하여 아래 해당란에 표시한 후 질문으로 들어가되, 아기 이름을 호명하면서 질문하시오.
•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현존자녀 유무: ⓪없음⟶(**조사종료**) ①있음 • 최종출생아의 생년월일 및 만나이: ①생년월일(양력): ___년 ___월 ___일 ②만나이: 만___년 ___개월 • 최종아 출생시 어머니의 연령 (※ 조사원: 질문하지 말고 앞에서 조사된 부인의 생년월일과 최종출생아의 생년월일을 기초로 출생시 어머니의 연령을 계산하여 기입하시오) ◎ 출생시 어머니의 연령 : 만_____세 •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 _____번째 • 최종출생아의 성: ①남아 ②여아 • 최종출생아의 이름: (_____) (※ 조사원: 이 이하의 질문에서는 최종출생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질문하시오)

Ⅰ. 산전관리, 분만에 관한 사항

1. 부인께서는 최종출생아 ○○(이)의 임신기간동안에 산전진찰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⓪없다 ①있다

1-1. 있다면 언제부터 몇 회나 받았습니까? 산전진찰(초진)시기: 임신 후_____주 산전진찰 총 횟수: _____회

2. 부인께서는 최종출생아 ○○(이)를 어디에서 분만하셨습니까?
   ①종합병원 ②병원 ③의원 ④조산소
   ⑤보건소 ⑥기타(_____)

3. 부인께서는 최종출생아 ○○(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으셨습니까? 제왕절개로 낳으셨습니까?
   ①자연분만 ②제왕절개

3-1. 분만시 제왕절개를 누가 권유하였습니까? ①본인의사 ②가족의 권유로 ③의사의 권유로 ④기타 (_____) 3-2. 제왕절개를 결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왕절개 이유: _____

4. 부인께서는 최종출생아 ○○(이)를 임신 몇 주만에 분만하였으며, 출생시 체중은 얼마였습니까?

   4-1. 출산시기: 임신 _____ 주후 분만

   4-2. 출생시 아기체중: ____ g

   4-3. 출생시 아이의 체중이 2,500g 이하인 경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의사 등으로부터 진찰내용을 기억하여 응답토록 하고, **해당 사항 모두에 체크** 하시오).
   ⓪이유없음 ①산모의 음주습관 때문에 ②산모의 흡연습관 때문에 ③산모의 약물복용 때문에
   ④조기분만 ⑤산모의 건강상의 이유로 ⑥기타(_____) ⑦알지 못함/모름
   ⑧비해당(2,500g 초과)

II.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1. 부인께서는 최종출생아 ○○(이)를 출산한 후 산후진찰(산모의 출산과 관련하여)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⓪없다 ①있다
2. ○○(이)의 뇌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에 관한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셨습니까?
   ⓪하지 않았다 ①했다 ②잘 모르겠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

2-1. 그러면 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하셨습니까?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셨습니까?
   ①자비부담(병의원)(지불금액: _____원) → 검사항목수: _____개
   ②무료(보건소/보건요원) → 검사항목수: _____개
   ③자비+정부(보건소) 지원(본인 지불금액: _____원) → 자비검사항목수: _____개
   정부지원검사항목수: _____개
   ④기타(_____)
   ⑤잘 모르겠다

III. 수유에 관한 사항

1. 최종출생아 ○○(이)가 돌(만 1세)이 될 때 까지(돌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연령까지) 모유, 인공유(분유)를 얼마동안 먹였는지에 대하여 각각 월별로 말씀해주십시오.
   (※ 조사원: 출생 이후 매월별로 수유양상을 파악하여 해당 란에 체크 하시오)

※ 조사원: 최종출생아의 현 월령을 확인하시오. _____개월

수유 양상	신생아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1주	2주	3주	4주															
아기월령	0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완전 모유수유																			
인공수유/분유																			
혼합모유수유 (모유+인공수유)																			

↑ 출생 ↑ 백일 ↑ 첫돌

2. 전혀 모유를 먹이지 않거나 먹이다가 뗀 이유는 무엇입니까?(**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모유량이 부족하여 ②엄마 건강 때문에 ③아기 건강 때문에
   ④아기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젖을 빨지 않아 ⑤취업 때문에 ⑥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⑦젖을 땔 시기가 되어 ⑧기타(_____)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2003년 자녀양육 및 비용부담 실태조사표

2003년
자녀양육 및 비용부담 실태조사

조 사 표 번 호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조사구내 가구번호	

※조사대상 :

- 만00～만18세 미만의 동거·비동거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
- 만 18세 이상의 자녀라도 대학생이나 재수생이 있는 가구 포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제1장 가구사항

Ⅰ. 가구원 사항

번호	1. 가구원 이름	2. 가구주와의 관계	3. 성	4. 연령(생년월일 및 띠)		5. 교육정도 및 졸업여부		6. 취업		7. 혼인상태	조사대상 구분Ⅰ	조사대상구분Ⅱ
								취업여부	6-1. 직종			
일련번호	가구주부터 기록 (가족은 아니지 만 같이 먹고 자는 사람은 포함)	예:조부, 장모, 처, 장남, 장남의 처, 조카, 2녀, 매, 제, 가정부 하숙등	①남 ②여	사실상의 연령 확인	생년월일(띠), 양·음력 확인 (※ 조사원: 음력인 경우,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시오)	⓪무학 ①초등학교 ②중학교 ③고등학교 ④전문대학 ⑤대학 이상 ⑥미취학	①재학중 (___학년) ②중퇴 (___학년) ③졸업 ④졸업/재수중 ⑧비해당	①취업중 ②비취업 ⑧비해당 (만14세이하)	①전문가 ②기술공·준전문가 ③사무 종사자 ④서비스 종사자 ⑤판매종사자 ⑥농·임업·어업 숙련 종사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단순노무 종사자 ⑩기타(_____) 88 비해당	**※ 조사원: 사실상의 혼인상태 확인 요망** (취업으로 인한 별거는 동거로 간주)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별거 ⑤미혼 ⑧비해당(14세 이하)	①출산력조사대상 (15~49세 기혼부인) ⑧비해당 (15~49세 기혼부인이 아닌 사람)	**※ 조사원: 다음 해당번호에 '체크' 하시오.** **□ 가족복지실태조사대상가구 (15~59세 기혼가구)여부** ①대상가구임 ②대상가구 아님 **□ 자녀양육조사대상가구여부** · 만0세~만18세 미만의 (동거·비동거)자녀가 있는가구, 단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생이면 포함 · (동거·비동거)대학생이나 재수생이 있는 경우는 만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①대상가구임** 동거자녀수____명 비동거자녀수____명 **②대상가구 아님**
01		01(가구주)		세는나이:___세 만 나이:___세	_____년___월___일 (_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_년___월							
02				세는나이:___세 만 나이:___세	_____년___월___일 (_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_년___월							
03				세는나이:___세 만 나이:___세	_____년___월___일 (_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_년___월							
04				세는나이:___세 만 나이:___세	_____년___월___일 (_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_년___월							
05				세는나이:___세 만 나이:___세	_____년___월___일 (_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_년___월							
06				세는나이:___세 만 나이:___세	_____년___월___일 (_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_년___월							
07				세는나이:___세 만 나이:___세	_____년___월___일 (_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_년___월							

Ⅱ. 비동거 자녀(양육하는 비동거 손자녀, 기타 친척 포함)

21				세는나이:___세 만 나이:___세	_____년___월___일 (_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_년___월					
22				세는나이:___세 만 나이:___세	_____년___월___일 (_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_년___월					

Ⅲ. 출생아 사항

* ①현재 이 가구에 살고 있는 아이중에서 2001년 1월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이 가구에서 출생한 아기와
②2001년 1월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이 가구에서 출생하였으나 현재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는 아기(사망아 포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조사원**: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로 가구원사항에 기록된 아이부터 먼저 한명씩 질문하고 (출생년월, 성별, 연령은 가구원 사항에서 그대로 이기하고 나머지 사항만 질문)
그 다음 이 가구에서 2001년 1월 이후 출산하였으나 가구원으로는 기록되지 않은 아기에 대해 질문하시오.
※ **조사원**: 어머니 조사에서의 기록여부는 임신·출산기록표(p.13)를 작성한 후 확인하여 기입하시오.

※ 우선 그런 아기가 있는지요?: ⓪없다 ➡ p.3의 <Ⅳ. 가구에 관한 사항>으로 가시오 ①있다 (_____명)

번호	1. 출생년월일	2. 성별	3. 출생당시 모의 연령	4. 생존여부 및 사망일시	5. 아기의 현동거여부 및 비동거이유	6. 어머니 현동거여부 및 비동거이유	아기연령 (생존기간)	* 어머니 조사에서의 기록여부
일련번호	이 아기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①남 ②여	이 아기 출생당시 아주머니(아기엄마)는 몇세이셨습니까?	이 아기는 현재 살아 있습니까? 언제 사망하였습니까? (아기가 사망한 경우)	이 아기는 현재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1 참조】	이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현재 이댁에 살고 계신지요?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2 참조】	※ 조사원이 계산하여 기입한 후 확인 하시오.	※ 조사원: 부인조사 p.13의 임신출산 기록표에 반드시 기입하시오.
1	____년___월___일 (양, 음) (_____)띠		세는나이: ____세 19__년 __월 __일 (양, 음) 만나이: _____세	①생존 ②사망 → (___년___월 ___일) (양, 음) ③모름	①산다(가구원번호:____) ②안산다(이유:_____) ⑧비해당(사망, 생존여부 모름)	①산다(가구원번호:_____) ②안산다(이유:_____)	____년 ____개월 ____일	①기록 ②비기록 (부인조사 불능)
2	____년___월___일 (양, 음) (_____)띠		세는나이: ____세 19__년 __월 __일 (양, 음) 만나이: _____세	①생존 ②사망 → (___년___월 ___일) (양, 음) ③모름	①산다(가구원번호:____) ②안산다(이유:_____) ⑧비해당(사망, 생존여부 모름)	①산다(가구원번호:_____) ②안산다(이유:_____)	____년 ____개월 ____일	①기록 ②비기록 (부인조사 불능)
3	____년___월___일 (양, 음) (_____)띠		세는나이: ____세 19__년 __월 __일 (양, 음) 만나이: _____세	①생존 ②사망 → (___년___월 ___일) (양, 음) ③모름	①산다(가구원번호:____) ②안산다(이유:_____) ⑧비해당(사망, 생존여부 모름)	①산다(가구원번호:_____) ②안산다(이유:_____)	____년 ____개월 ____일	①기록 ②비기록 (부인조사 불능)

※ 확인사항: 혹시 2001년 1월~조사시점까지의 기간중 태어나서 바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얼마동안 자라다가 사망한 아기는 없는지요?
⓪없다 ①있다 ➡ (위 표에 추가 기입하시오)

【보기 1】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살고 있으나 아기는 같이 살지 않는 이유:** 아기사망, 아기를 친정·시댁·남의 집에 맡겨 놓은 경우, 아기를 양자로 보낸 경우, 아기 어머니의 이혼·재혼 등으로 아기를 어머니가 데리고 살지 않는 경우 등

【보기 2】 **아기는 살고 있으나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살고 있지 않는 이유:** 어머니 사망, 아기 어머니가 이혼·별거·재혼 등으로 타지역에 거주, 아기만 맡겨 놓고 어머니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처의 자식인 경우 등

III. 가구에 관한 사항

1.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단독주택 ②아파트 ③연립주택 ④다세대주택 ⑤기타(_____)

2.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은 댁의 소유인가요? 전세 또는 월세인가요?

①자가 →

2-1. 누구의 소유입니까?
① 남편 ② 부인
③ 부부 공동명의 ④ 기타(_____)

2-2.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현 싯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시가: _____만원

②전세

③전·월세(보증부 월세)

④월세

⑤기타(_____)

2-3. 가족 소유의 집이 따로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2-4. 전세, 전·월세 보증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증금: _____만원

3.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지난 3개월간 평균)은 얼마나 되는지요?
(소득은 세금공제전의 금액)

소득구분	소득액	소득구분	소득액
3-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본인 및 배우자 및 기타 동거가족의 일, 직업)	____만원	3-2.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집세 등)	____만원
3-3. 퇴직금, 개인연금 등	____만원	3-4. 이전소득(비동거 자녀·부모·기타 친척으로부터의 보조)	____만원
3-5. 사회보장 수혜	____만원	3-6. 기타(민간단체의 지원금, 장학금 등)	___만원
		3-7. **가구소득 총계(월)**	만원

4. 귀댁의 월 평균 저축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월 _____만원

5. 귀댁의 월 평균 가구소비(지난 3개월간 평균)는 얼마나 됩니까?
월 _____만원

6. 귀댁의 재산(동산+부동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_____만원

7. 귀댁의 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_____만원

7-1. 귀댁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생계비 ②주거비/주택마련 ③교육비 ④사업자금
⑤의료비 ⑥관혼상제비 ⑦ 기타(_____)

8. 현재 귀댁의 생활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
①자녀 양육 및 교육비 ②사교육비(학원,과외 등)
③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 ④식료품비(주식·부식비 등)
⑤각종 공과금(소득세, 보험료, 각종세금 등) ⑥의료비
⑦주거비(주택유지비, 집세 및 주택융자금 상환)
⑧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⑨자동차 유지비 등 교통비
⑩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⑪기타(_____)

9. 귀댁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자립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② 별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자립하고 있다 ⑤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

제2장 자녀양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Ⅰ. 보육에 관한 사항

1. 귀댁에는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이 있습니까?
   (※ 조사원: 떨어져 사는 자녀도 기재하시오).

   ⓪ 없다 ➡ Ⅱ.가구소비지출 사항으로 ①있다(____명)

2.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를 희망하십니까? 제일 어린 아이부터 한명씩 대답해 주십시오.

(※ 조사원: 해당사항을 모두 기입하시오. 초등학생인 경우는 방과후에 누가 돌보고 있는지 질문하시오)

(※ 조사원: 가구사항을 참조하여 가구원 번호, 성, 연령 또는 학년을 체크해주십시오. 단,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부인에게 확인하시오)	1. 이름 ____	2. 이름 ____	3. 이름 ____
• 가구원 번호	____	____	____
• 성: ①남아 ②여아	____	____	____
• 연령 또는 학년: (예: 미취학 3세인 경우 → ① (3)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 → ② (5)) ①미취학아동(세) ②초등학생(학년)	___( )	___( )	___( )
2-1. 돌보아 주는 사람이나 시설(해당사항 모두 체크): (※ 조사원: 가장 빈번히 이용하고 있는 순서대로 3개 체크하시오.) ①본인이 돌본다 ②가족(시/친정부모, 형제자매 등) ③파출부, 가정부가 돌본다 ④이웃·위탁모(아이만 보는 사람) ⑤아동지도원 ⑥유치원(유아반포함)반일반 ⑦유치원 종일반 ⑧놀이방 ⑨어린이 집 ⑩방과후 아동교실/복지관 등의 공부방 ⑪과외(학원 등) ⑫선교원(교회의 보육) ⑬봐주는 사람 없음 ⑭기타(_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2-1-1. (2-1이 ⑧, ⑨인 경우) 어떤 유형의 시설입니까? ①국공립보육시설 ②법인보육시설 ③민간보육시설 ④직장보육시설 ⑤기타(_____)			
(※ 조사원: <질문 2-1>에서 ⑧, ⑨, ⑩ 이 체크되지 않은 경우) 2-2.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주된** 이유: ①본인이 돌보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안심이 되므로 ②가까운 곳에 아이를 돌보아 줄 곳이 없어서 ③만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으므로 ④보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⑤보육료가 부담이 되어서 ⑥학원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크므로 ⑦아이 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기에 ⑧장애보육이 필요하나 시설이 없어서 ⑨기타(_____)			
2-3. 앞으로 이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 또는 아동교육기관을 (계속)이 하실 계획이십니까? ⓪이용하지 않겠다 (II. 가구소비지출사항으로) ①이용하겠다 ②모르겠다			
※ (계속/새롭게) 이용하겠다는 경우만 해당) 2-3-1. 어떤 시설을 이용하시겠습니까? ①유치원(유아반포함)반일반 ②어린이 집 ③놀이방 ④방과후 아동교실/복지관 등의 공부방 ⑤과외 (학원 등) ⑥선교원(교회의 보육) ⑦유치원 종일반 ⑧기타(_____)			
2-3-2. (2-3-1이 ②, ③인 경우) 어떤 유형의 시설을 이용하시겠습니까? ①국공립보육시설 ②법인보육시설 ③민간보육시설 ④직장보육시설 ⑤장애인보육시설 ⑥기타(_____)			

Ⅱ. 가구소비지출 사항

1. 귀댁의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지난 3개월간 평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체가구의 소비지출액중 귀댁의 자녀를 위해 지출된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각 항목별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조사원: ( )에는 자녀의 가구원 번호를 기입토록 한다. 단, 비동거자녀도 포함할 경우 가구원 번호는 21번부터 별도로 부여토록 한다.(**제1장 가구사항 참조**)

번호	전체 가구원		자녀 출생순위별		
	항목	지출금액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①	식료품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②	피복 및 신발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③	보건의료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④	교육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④-1	보충교육비 (사교육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⑤	주거 및 광열수도비	만원			
⑥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만원			
⑦	교양오락비	만원			
⑧	교통통신비	만원			
⑨	기타소비 지출	만원			
⑩	**총계**(①~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지출항목별 내용(조사원 참고사항)

항목	내용
1. 식료품비	- 곡류, 육류, 낙농류, 어개류, 채소, 해조류, 과실류,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외식비(학교급식비 포함), (각종 이유식)
2. 피복 및 신발비	- 외의, 스웨터, 셔츠, 내의, 직물, 기타 피복, 신발 등(양말, 모자, 운동화, 교복, 종이기저귀, 세탁비, 수선비 등)
3. 보건의료비	-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안경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비 및 입원비 등)/(영양제, 한약제)
4. 교육비	- 유치원비, 초·중·고등학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교과서 및 기타 학교교재, 참고서, 학습용 테이프), 문방구비
4-1. 보충교육비	-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미술·기타 예능계 학원 등
5. 주거 및 광열 수도비	- 주택설비 및 수선비, 공동주택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연료비(도시가스, 기름) 등
6. 가구집기·가사용품비	- 일반가구, 가정용기기, 식기 주방용품, 침구 및 직물제품, 실내장식품(커텐 등 포함)
7. 교양 오락비	- 신문, 잡지, 도서, 교양오락기구(TV, 오디오, 컴퓨터 등)구입, 극장입장료, 스포츠관람료, 스포츠시설 이용료, 문화시설 입장료, 교양오락강습료, 사진대, 단체여행비 등/(완구, 오락기기 구입)
8. 교통통신비	-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자동차구입, 연료비, 정비수리비, 자동차보험료 등), 통신비(일반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및 PC 통신이용료, 기타 통신/(스쿨버스비)
9. 기타 소비 지출	- 담배, 술, 이·미용비(목욕비 포함), 장신구(가방, 핸드백 등) 구입비, 종교관계비, 회비 및 교제비, 경조금, 기타 잡비(용돈 등)

부 록 2. 조사지역

조사구 번호		행정구역	비고
101	서울시	용산구	청파1동
102		용산구	원효로 2동
103		중랑구	면목 6동
104		중랑구	중화 3동
105		성북구	성북2동
106		성북구	안암동
107		강북구	미아 4동
108		강북구	수유 3동
109		도봉구	도봉 2동
110		노원구	월계 2동
111		노원구	상계 5동
112		노원구	상계 10동
113		은평구	불광 3동
114		서대문구	연희 1동
115		서대문구	연희 2동
116		서대문구	남가좌 2동
117		양천구	목 6동
118		양천구	신월 7동
119		양천구	신정 2동
120		강서구	화곡 1동
121		강서구	화곡 6동
122		강서구	화곡 8동
123		강서구	가양 2동
124		강서구	발산 1동
125		구로구	가리봉 2동
126		구로구	오류 2동
127		금천구	독산 2동
128		동작구	사당 3동
129		관악구	신림 본동
130		관악구	신림 1동
131		관악구	신림 5동
132		서초구	잠원동
133		강남구	대치 1동
134		송파구	거여 2동
135		송파구	방이 2동
136		송파구	장지동
137		강동구	암사 3동
	소계	37개 조사구	

조사구 번호		행정구역	비고
138	부산시	서구	서대신 1동
139		진구	연지동
140		진구	연지동
141		동래구	온천 3동
142		동래구	안락 2동
143		북구	금곡동
144		북구	만덕 1동
145		북구	만덕 2동
146		해운대구	좌동
147		사하구	괴정 3동
148		사하구	하단 1동
149		연제구	연산 4동
150		수영구	광안 1동
	소계	13개 조사구	
151	대구시	남구	대명 2,8동
152		북구	침산 2동
153		북구	복현 2동
154		북구	검단동
155		수성구	황금 1동
156		수성구	황금 2동
157		달서구	두류 2동
158		달서구	두류 3동
159		달서구	장기동
160		달서구	상인 1동
161		달서구	상인 1동
162		달서구	도원동
	소계	12개 조사구	
163	인천시	남동구	만수 1동
164		부평구	산곡 1동
165		계양구	작전 2동
166		계양구	작전서운동
	소계	4개 조사구	
167	광주시	서구	양동
168		서구	서창동
169		북구	두암 1동
170		광산구	비아동
	소계	4개 조사구	

조사구 번호		행정구역	비고
171	대전시	동구	산내동
172		서구	월평 2동
173		유성구	전민동
174		대덕구	중리동
175		대덕구	덕암동
	소계	5개 조사구	
176	울산시	동구	화정동
177		동구	남목 2동
178		북구	농소 2동
179		북구	강동동
	소계	4개 조사구	
201	경기도	수원/장안구	정자 1동
202		수원/장안구	정자 2동
203		수원/권선구	세류 3동
204		수원/팔달구	우만 1동
205		수원/팔달구	매탄 3동
206		성남/중원구	상대원 1동
207		안양/만안구	석수 2동
208		안양/동안구	귀인동
209		부천/원미구	중 1동
210		부천/소사구	소사본 3동
211		부천/소사구	송내 2동
212		부천/오정구	신흥동
301		평택시	팽성읍
302		평택시	진위면
213		안산시	대부동
214		일산구	주엽 2동
215		과천시	갈현동
216		과천시	부림동
217		시흥시	신현동
218		군포시	대야동
219		의왕시	내손 2동
220		의왕시	내손 2동
221		하남시	풍산동
303		용인시	수지읍
304		파주시	월롱면
222		이천시	창전동
305		안성시	보개면
306		김포시	양촌면
307		화성군	장안면
	소계	29개 조사구	

조사구 번호		행정구역	비고
223	강원도	춘천시	조운동
224		춘천시	후평 2동
308		원주시	흥업면
225		강릉시	교 1동
226		동해시	천곡동
309		영월군	영월읍
310		정선군	신동읍
311		양구군	양구읍
	소계	8개 조사구	
227	충청북도	청주/흥덕구	사창동
228		청주/흥덕구	운천,신봉동
229		청주/흥덕구	복대 1동
230		충주시	가금면
231		충주시	교현,안림동
312		제천시	백운면
313		제천시	동현동
314		영동군	매곡면
315		진천군	진천읍
316		음성군	음성읍
	소계	10개 조사구	
232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 2동
233		천안시	봉명동
234		천안시	봉명동
235		공주시	정안면
236		아산시	탕정면
317		서산시	대산읍
318		서산시	인지면
319		서산시	수석동
320		논산시	연무읍
321		논산시	연산면
322		논산시	양촌면
323		논산시	취암동
324		금산군	금산읍
325		금산군	금산읍(신대리)
326		금산군	추부면
327		금산군	추부면(마전3)
328		홍성군	홍성읍
329		예산군	예산읍
330		예산군	광시면
331		태안군	남면
	소계	20개 조사구	

조사구 번호		행정구역	비고
237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평화2동
238		군산시	나운 2동
239		익산시	망성면
332		정읍시	농소동
333		임실군	임실읍
	소계	5개 조사구	
334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240		여수시	여천동
335		순천시	해룡면
336		순천시	월등면
241		순천시	삼산동
242		순천시	삼산동
337		나주시	공산면
338		광양시	광양읍
339		고흥군	고흥읍
340		고흥군	도양읍
341		강진군	신전면
342		해남군	해남읍
343		해남군	송지면
344		해남군	북일면
345		완도군	금일읍
346		완도군	군외면
	소계	16개 조사구	
347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348		김천시	아포읍
349		김천시	어모면
350		김천시	지례면
243		김천시	평화동
351		구미시	도개면
244		구미시	도량동
245		구미시	비산동
246		영천시	서부동
352		경산시	진량읍
353		군위군	부계면
354		청송군	안덕면
355		영덕군	영해면
356		고령군	고령읍
	소계	14개 조사구	

조사구 번호		행정구역	비고
247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248		창원시	중앙동
249		창원시	사파동
250		창원시	사파동
357		진주시	대곡면
358		통영시	도산면
251		통영시	정량동
252		통영시	도남동
359		사천시	곤명면
360		사천시	곤명면
361		밀양시	산내면
362		거제시	장목면
363		양산시	웅상읍
364		의령군	대의면
365		고성군	고성읍
366		남해군	창선면
	계	16	
253	제주도	제주시	삼양동
367		제주군	한경면
368		제주군	대정읍
	소계	3개 조사구	

□ 저자 약력 □

• 김 승 권

미국 University of Hawaii 사회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Hawaii 사회학 석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공저)
『사이버 시대의 가족생활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공저)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공저)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공저)

• 조 애 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 유 경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박 세 경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인간발달학 박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 건 우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2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Survey on The National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발행일 2004년 3월 일 값 14,000원
저 자 김 승 권 외
발행인 박 순 일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ISBN 89-8187-336-4 93330